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 책임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 ▶ 공동연구원 : 김경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지혜(남서울대학교 · 교수)
이민희(평택대학교 · 교수)
- ▶ 연구보조원 : 유설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최윤호(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다.

2013년도에는 기존에 인권영역을 나누어 격년 조사하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한 해에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 인권지표체계와 조사도구를 보완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7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7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7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5개)’, ‘특별보호조치(15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30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3년도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521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와 타분야의 관련 통계를 보완적으로 분석·활용하였다.

연구결과물은 ‘기본보고서’, ‘데이터분석보고서’, ‘통계집’ 등 총 3권으로 구성된다. 기본보고서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를 분석하였고, ‘데이터분석보고서’는 인권 주제의 소논문을 발간한 것으로, 인권데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새롭게 시도하였다. 통계집인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권실태 분석 결과에 따라 6개 대분류 영역별로 정책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우선 추진 인권정책과제 17개를 선정하여 세부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인권/권리, 청소년인권/권리, 인권지표, 인권실태, 반복 횡단조사

연구 요약

1.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되고 있음.
- 그동안 아동·청소년의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홀수년도(2009년, 2011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 짝수년도(2010년, 2012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을 격년으로 조사하였으나, 2013년도부터는 4개 아동·청소년 인권영역을 통합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지표를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의 130개 지표항목으로 재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9,521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환경의 종합적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와 타분야의 관련 통계를 보완적으로 분석·활용하였음.
- 이 연구의 보고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기본보고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와 「데이터분석보고서」 등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기본보고서」에서는 인권지표체계에 따라 인권실태를 분석하였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Ⅲ: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는 국가승인통계 이용자를 위해 국가통계포털(KOSIS)에 등록할 조사결과표를 수록하였으며, 「데이터분석보고서」에서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한 논문으로 인권데이터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발간한 것임.

2.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체계의 개편과 인권지표체계의 수정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합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분석
- 행정통계와 기존 통계자료원을 활용한 지표결과의 생산
-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3. 연구결과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하위영역의 9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의 법적 근거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운영인력과 예산은 부족함.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열악하며, 아동·청소년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어려움.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인식 수준은 약 70~90%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나 일부 응답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다소 있었고,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단체 참가 등 실천적 행동의사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남. 생활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인권준중 정도는 80~90%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해서는 67.6%만이 '준중받는다'고 응답함. 아동권리협약의 내용을 아는 경우는 13.1%에 불과함. 아동·청소년은 학업성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 장애 청소년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7%, 87.9%로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3개년 추이를 살펴볼 때,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줄어들고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에서는 이름과 국적 및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7개 하위영역의 27개 지표를 살펴보았

음. 가정 내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존중도는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학교에서의 참여수준은 40~50% 내외의 응답률을 보였음.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편이었고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51.6%의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5.7%)’이었음.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모든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지난 1년간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체벌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음.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입양,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의 5개 하위영역의 17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가정 어린이집이 5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34.0%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2%에 불과하였음. 즉,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공공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음. 청소년의 5.1%는 가출경험이 있고, 가출청소년의 93.7%는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음.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기관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입양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 조치되도록 함으로써 국외 입양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음.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03년 19개소에서 2011년 44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방임의 빈도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방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1년부터 실시된 시설평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으나 평가지표의 사전 개발과 질적 평가의 도입, 시설 간 무리한 경쟁 방지 등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음.

-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 방지 대책,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7개

하위영역의 37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음.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1.8명이고, 2011년 영아사망률은 1,000명당 3.0명으로 2012년 3.2명 대비 5.1%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10-19세, 20-29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은 모두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들의 36.9%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이고, 특히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3%에 불과하여 청소년들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음.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았으며,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수면시간, 비만율, 청소년 유병률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은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은 학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청소년의 약물남용 경험률이 낮았으나 1-2회의 단순교육이 아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에서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는 교육에의 권리, 교육의 목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활동의 3개 하위영역의 25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취학률,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업중단율, 학교부적응, 사교육 경험률,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등의 지표에 따른 조사결과에서는 교육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학교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1/3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은 더욱 심각한.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음. 2011년 현재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은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청소년수련시설도 1992

년 이전에 150여개에서 2011년에 738개로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음. 하지만 청소년들의 인식과 이용 현황은 다르게 나타남. 지난 1년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은 28.3%에 불과하고 62.3%는 이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내 여가문화시설에 대해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청소년은 48.8%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며, 청소년들이 여가를 활용하는 방법이 주로 TV나 DVD(61.6%), 컴퓨터 게임(49.6%) 등이었으며, 스포츠활동(11.4%), 문화예술관람(15.9%), 여행(5.1%) 등은 적은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은 20% 미만에 불과하였으나 동아리활동의 경우에는 70.9%가 활동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의 지지는 60.1%가 받고 있었는데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별보호조치」 영역에서는 난민아동, 소년사범의 운영, 자유가 박탈된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5개 영역에 각 3개 지표로 구성, 총 15개 지표를 살펴보았음.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난민 아동·청소년은 2013년 6월 현재 난민 신청자가 207명이고, 이 중 난민지위 인정자가 52명으로, 난민신청자 중 1/4 정도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음. 난민신청자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매해 30~40명에 달하고 있음.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아동은 2012년 현재 중국 동북 3성내 약 2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국내에 입국한 탈북 아동·청소년은 2013년 2월 현재 29세 미만이 24,695명이며, 2004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소년범죄자 비율은 2011년에 전체범죄자의 4.4%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에 있음. 범죄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흉악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은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음.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리는 소년범죄자 90% 이상을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음. 최근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11년 현재 114명으로 2007년 657명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음. 2011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제 남자근로자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음. 2012년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9세 이하가 5,942원, 20~29세가 10,070원으로, 2011년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30세 이상 성인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2013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로, 2011년(13.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2011년 기준으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6명으로 성매매 단속 시행 여부에 따라 증감을 지속하고 있음.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 검거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15.2%)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까지 낮아지고 있음.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4. 정책제언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다양한 정책과제가 제안되었음. 특히 6개 인권영역별로 제안된 정책과제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7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의 과제는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기구 기능 활성화와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이며,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과제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임.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의 과제는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30% 확대, 입양 아동·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제도 실시이고,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과제는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및 청소년포래상담 활성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임.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과제는 부처간 사업 조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방과후 여가 및 문화 활동 강화, 청소년디딤센터 및 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임. 「특별보호조치」의 과제는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인권침해적인 처우 개선, 성폭력피해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임.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II.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11
1.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13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동향과 시사점	20
3.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46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2009~2012)	46
2)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의 개념과 정의	67
III.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97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99
1) 인권일반	99
2) 일반원칙	126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145
1)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145
2)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147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167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	173
5) 사생활의 보호	177
6) 정보접근권	184
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195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208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208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219

3) 입양	230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233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241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243
1) 장애	243
2) 생존 및 발달	250
3) 보건서비스	265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270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297
6) 약물남용 방지 대책	299
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303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311
1) 교육에의 권리	311
2) 교육의 목표	335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344
6. 특별보호조치	361
1) 난민아동	361
2) 소년사법의 운영	367
3) 자유를 빼앗긴 아동	373
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379
5)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385
IV. 요약 및 정책제안	395
1. 요약	397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409

참고 문헌	461

부 록	481

부록 1.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지표항목별 생산방법)	483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494

부록 3. 설문지	500

표 목차

〈표 Ⅰ-2-1〉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작성 변경내용	6
〈표 Ⅰ-2-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9
〈표 Ⅱ-2-1〉 지표의 범주와 용도	23
〈표 Ⅱ-2-2〉 지표 집단별 각 지표 핵심영역의 범위	40
〈표 Ⅱ-2-3〉 지표집단과 하위집단의 예시(아동에 대한 폭력 지표의 경우)	41
〈표 Ⅱ-2-4〉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지표예시(가족정의: 국가별 이혼과 부모 분리)	43
〈표 Ⅱ-3-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항목(2006~2010)	48
〈표 Ⅱ-3-2〉 2011~201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56
〈표 Ⅱ-3-3〉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67
〈표 Ⅱ-3-4〉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92
〈표 Ⅲ-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연도별 추진현황(2004~2007)	100
〈표 Ⅲ-1-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년도 예산	101
〈표 Ⅲ-1-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년도 예산	101
〈표 Ⅲ-1-4〉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업무	102
〈표 Ⅲ-1-5〉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03
〈표 Ⅲ-1-6〉 연도별 청소년예산(2003~2012)	103
〈표 Ⅲ-1-7〉 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104
〈표 Ⅲ-1-8〉 2013년도 지자체별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105
〈표 Ⅲ-1-9〉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106
〈표 Ⅲ-1-10〉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한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107
〈표 Ⅲ-1-11〉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108
〈표 Ⅲ-1-12〉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109
〈표 Ⅲ-1-13〉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110

〈표 III-1-14〉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111
〈표 III-1-15〉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111
〈표 III-1-1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112
〈표 III-1-17〉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113
〈표 III-1-18〉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114
〈표 III-1-19〉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115
〈표 III-1-20〉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16
〈표 III-1-2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17
〈표 III-1-22〉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18
〈표 III-1-23〉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119
〈표 III-1-24〉 유엔(UN)아동권리협약 인지도	120
〈표 III-1-25〉 학생인권조례 인지도	122
〈표 III-1-2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123
〈표 III-1-27〉 차별 경험(전체)	126
〈표 III-1-28〉 성차별 경험	128
〈표 III-1-29〉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	129
〈표 III-1-30〉 연령차별 경험	130
〈표 III-1-31〉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경험	131
〈표 III-1-32〉 지역차별 경험	132
〈표 III-1-33〉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133
〈표 III-1-34〉 종교차별 경험	134
〈표 III-1-35〉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경험	135

〈표 III-1-36〉 다문화가정의 또래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36
〈표 III-1-37〉 다문화가정의 또래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137
〈표 III-1-38〉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138
〈표 III-1-39〉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139
〈표 III-1-40〉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140
〈표 III-1-41〉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141
〈표 III-1-42〉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142
〈표 III-1-4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고등학생)	143
〈표 III-2-1〉 영아 유기 발생건수	146
〈표 III-2-2〉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47
〈표 III-2-3〉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48
〈표 III-2-4〉 장래희망을 결정 시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148
〈표 III-2-5〉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149
〈표 III-2-6〉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150
〈표 III-2-7〉 학교는 학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151
〈표 III-2-8〉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152
〈표 III-2-9〉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152
〈표 III-2-10〉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153
〈표 III-2-11〉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153
〈표 III-2-12〉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154

〈표 III-2-1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155
〈표 III-2-14〉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2)	156
〈표 III-2-15〉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2) ...	156
〈표 III-2-16〉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2)	157
〈표 III-2-17〉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158
〈표 III-2-1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159
〈표 III-2-19〉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160
〈표 III-2-20〉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의견	161
〈표 III-2-21〉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162
〈표 III-2-22〉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167
〈표 III-2-23〉 연도별 종교적 사유의 병역 거부자 발생현황	168
〈표 III-2-24〉 최근 10년간(2004~2013.6.30.) 병역거부자 처리 현황	168
〈표 III-2-25〉 학교의 종교행사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169
〈표 III-2-26〉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173
〈표 III-2-27〉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174
〈표 III-2-28〉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175
〈표 III-2-29〉 학교에서 용모검사 경험	177
〈표 III-2-30〉 학교에서 복장검사 경험	178
〈표 III-2-31〉 학교에서 소지품검사 경험	179
〈표 III-2-32〉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180
〈표 III-2-33〉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 공개	181
〈표 III-2-34〉 징계받은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과 이름 공개	182
〈표 III-2-35〉 개인의 시험 성적 공개	183
〈표 III-2-3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185
〈표 III-2-37〉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186

〈표 III-2-38〉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187
〈표 III-2-39〉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187
〈표 III-2-40〉 학생-성인 독서율	189
〈표 III-2-41〉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189
〈표 III-2-42〉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변화추이	190
〈표 III-2-43〉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191
〈표 III-2-44〉 학교규칙 공지 정도	192
〈표 III-2-45〉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보	193
〈표 III-2-46〉 최근 1년간 체벌 받은 경험 정도	196
〈표 III-2-47〉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 정도	199
〈표 III-2-48〉 폭력 피해 생애경험률	202
〈표 III-2-49〉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202
〈표 III-3-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209
〈표 III-3-2〉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210
〈표 III-3-3〉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210
〈표 III-3-4〉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211
〈표 III-3-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13
〈표 III-3-6〉 방과후 학교 참여 실태	214
〈표 III-3-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214
〈표 III-3-8〉 부모와의 대화시간	215
〈표 III-3-9〉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220
〈표 III-3-10〉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220
〈표 III-3-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222
〈표 III-3-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23
〈표 III-3-13〉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223
〈표 III-3-1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224

〈표 III-3-15〉 소년소녀가정 현황	225
〈표 III-3-16〉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226
〈표 III-3-17〉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227
〈표 III-3-18〉 국내 외 입양 현황	231
〈표 III-3-19〉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233
〈표 III-3-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234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235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236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237
〈표 III-3-2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n=266)	241
〈표 III-4-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244
〈표 III-4-2〉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245
〈표 III-4-3〉 2012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246
〈표 III-4-4〉 2012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247
〈표 III-4-5〉 201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248
〈표 III-4-6〉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250
〈표 III-4-7〉 0세의 기대여명	251
〈표 III-4-8〉 연도별 영아사망률	252
〈표 III-4-9〉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252
〈표 III-4-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253
〈표 III-4-11〉 사고 사망률	254
〈표 III-4-12〉 자살률	255
〈표 III-4-13〉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256
〈표 III-4-14〉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257
〈표 III-4-15〉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259
〈표 III-4-16〉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261

〈표 III-4-17〉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도	262
〈표 III-4-18〉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263
〈표 III-4-19〉 보건교사 배치현황	265
〈표 III-4-20〉 의료급여 대상자 수	266
〈표 III-4-21〉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267
〈표 III-4-22〉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267
〈표 III-4-23〉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이 불안한 이유	268
〈표 III-4-2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270
〈표 III-4-25〉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	271
〈표 III-4-26〉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273
〈표 III-4-2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275
〈표 III-4-28〉 수면시간	278
〈표 III-4-29〉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279
〈표 III-4-30〉 잠이 부족한 이유	280
〈표 III-4-3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2011)	281
〈표 III-4-32〉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2011)	282
〈표 III-4-33〉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2011)	282
〈표 III-4-34〉 우울증 정도	284
〈표 III-4-35〉 스트레스 인지율	285
〈표 III-4-36〉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286
〈표 III-4-37〉 자아존중감	290
〈표 III-4-38〉 행복도	291
〈표 III-4-39〉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	293
〈표 III-4-40〉 연간 성교육 경험률	297
〈표 III-4-41〉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299
〈표 III-4-42〉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300

〈표 III-4-43〉 현재 흡연을 추이	300
〈표 III-4-44〉 현재 음주를 추이	301
〈표 III-4-45〉 아동빈곤율(절대 빈곤율) 변화 추이	303
〈표 III-4-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304
〈표 III-4-47〉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305
〈표 III-4-48〉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305
〈표 III-4-4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306
〈표 III-4-5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307
〈표 III-4-51〉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	308
〈표 III-4-52〉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309
〈표 III-4-53〉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	309
〈표 III-5-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2000, 2008~2012)	312
〈표 III-5-2〉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2000, 2008~2012)	313
〈표 III-5-3〉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00, 2008~2011)	314
〈표 III-5-4〉 최근 1년 동안 학교 포기 결심 여부	315
〈표 III-5-5〉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	316
〈표 III-5-6〉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317
〈표 III-5-7〉 최근 1년 동안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한 경우	318
〈표 III-5-8〉 최근 1년 동안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잔 경우	319
〈표 III-5-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320
〈표 III-5-10〉 주요 국가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2009)	321
〈표 III-5-11〉 사교육 경험 여부	322
〈표 III-5-12〉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2009~2012)	323
〈표 III-5-13〉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08~2012)	324

〈표 III-5-14〉 주요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	325
〈표 III-5-15〉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326
〈표 III-5-16〉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327
〈표 III-5-17〉 일반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 현황	328
〈표 III-5-18〉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329
〈표 III-5-19〉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330
〈표 III-5-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330
〈표 III-5-21〉 방과 후 평일 공부 시간	331
〈표 III-5-22〉 진로교육 경험	332
〈표 III-5-23〉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336
〈표 III-5-24〉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	337
〈표 III-5-25〉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가?	338
〈표 III-5-26〉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339
〈표 III-5-27〉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	340
〈표 III-5-28〉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	341
〈표 III-5-29〉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344
〈표 III-5-3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345
〈표 III-5-3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346
〈표 III-5-32〉 최근 1년 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현황	347
〈표 III-5-33〉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348
〈표 III-5-34〉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의 충분성	350
〈표 III-5-3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350
〈표 III-5-36〉 평일 하루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	351
〈표 III-5-37〉 휴일에 주로 하는 활동	352
〈표 III-5-37〉 휴일에 주로 하는 활동(계속)	353

〈표 III-5-38〉 여가활동 만족도	355
〈표 III-5-39〉 최근 1년 간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356
〈표 III-5-40〉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356
〈표 III-5-41〉 최근 1년 간 취미나 문화 동아리 활동 여부	357
〈표 III-5-42〉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의 지지 여부	358
〈표 III-5-43〉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의 지지 여부	359
〈표 III-6-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362
〈표 III-6-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13.2 현재)	363
〈표 III-6-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364
〈표 III-6-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2. 4)	364
〈표 III-6-5〉 소년범죄자 구성비	368
〈표 III-6-6〉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368
〈표 III-6-7〉 소년범죄 처리 현황	369
〈표 III-6-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370
〈표 III-6-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371
〈표 III-6-10〉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374
〈표 III-6-11〉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375
〈표 III-6-12〉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375
〈표 III-6-13〉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376
〈표 III-6-14〉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376
〈표 III-6-15〉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377
〈표 III-6-16〉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380
〈표 III-6-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381
〈표 III-6-18〉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381
〈표 III-6-19〉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382
〈표 III-6-20〉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386
〈표 III-6-21〉 최근 1년 동안의 성적인 피해 경험	387

〈표 III-6-22〉 성적 피해 유형	388
〈표 III-6-23〉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	389
〈표 III-6-24〉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390
〈표 III-6-25〉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391
〈표 I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409

그림 목차

【그림 Ⅱ-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46
【그림 Ⅲ-1-1】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	119
【그림 Ⅲ-1-2】 차별경험	127
【그림 Ⅲ-1-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 (3개년 추이 : 전체)	140
【그림 Ⅲ-1-4】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 (3개년 추이 : 초등학교)	141
【그림 Ⅲ-1-5】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 (3개년 추이 : 중학생)	142
【그림 Ⅲ-1-6】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 (3개년 추이 : 고등학교)	143
【그림 Ⅲ-2-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교)	154
【그림 Ⅲ-2-2】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156
【그림 Ⅲ-2-3】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교)	159
【그림 Ⅲ-2-4】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교)	180
【그림 Ⅲ-2-5】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187
【그림 Ⅲ-2-6】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188
【그림 Ⅲ-2-7】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변화추이(2009~2012)	190
【그림 Ⅲ-2-8】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3개년 추이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197
【그림 Ⅲ-2-9】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 (3개년 추이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197
【그림 Ⅲ-2-10】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3개년 추이 : 초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201

【그림 Ⅲ-2-11】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을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1
【그림 Ⅲ-2-12】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203
【그림 Ⅲ-2-13】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204
【그림 Ⅲ-2-14】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5
【그림 Ⅲ-2-15】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5
【그림 Ⅲ-2-16】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6
【그림 Ⅲ-2-17】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6
【그림 Ⅲ-3-1】 최근 1년간 가출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21
【그림 Ⅲ-3-2】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3개년 추이 (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224
【그림 Ⅲ-3-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 (3개년 추이 : 초등학생)	237
【그림 Ⅲ-3-4】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 (3개년 추이 : 중학생)	238
【그림 Ⅲ-3-5】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 (3개년 추이 : 고등학생) ...	238
【그림 Ⅲ-4-1】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 여부(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256
【그림 Ⅲ-4-2】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258
【그림 Ⅲ-4-3】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생)	259
【그림 Ⅲ-4-4】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	260
【그림 Ⅲ-4-5】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60
【그림 Ⅲ-4-6】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72
【그림 Ⅲ-4-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274
【그림 Ⅲ-4-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276

【그림 Ⅲ-4-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276
【그림 Ⅲ-4-1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77
【그림 Ⅲ-4-11】 평균수면시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78
【그림 Ⅲ-4-1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288
【그림 Ⅲ-4-1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288
【그림 Ⅲ-4-14】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88
【그림 Ⅲ-4-15】 행복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92
【그림 Ⅲ-4-16】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294
【그림 Ⅲ-4-17】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294
【그림 Ⅲ-4-18】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95
【그림 Ⅲ-6-1】 아르바이트 부담 처우 경험률	383
【그림 Ⅲ-6-2】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3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387

제 I 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I. 서론¹⁾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따라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조사하여, 아동·청소년 인권의 실태와 변화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최창욱·박영균·김진호·임성택·전성민, 2006: 23)”라 할 수 있다.

인권지표에 기반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 및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인권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이후 3차례에 걸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고 인권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통계수집체계와 인권지표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 : 1차 1996년, 2차 2003년, 3·4차 2011년,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03년) 등).

국제적 권고와 국내적 인권 관심 확대에 따라 2000년대 초반부터 다양한 주체에 의해 아동·청소년 분야에서 인권지표 개발 및 인권백서 발간과 각종 인권실태 조사연구 등이 시도되어 왔지만, 대부분 기초연구나 시범적용에 그치거나 설문조사 중심의 부분적 실태조사로 진행되었다. 이에 2006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합적인 청소년 인권실태 파악을 위한 지표체계 개발을 추진하였다.

2006년부터 추진된 인권실태 연구는 크게 두 시기로 구분될 수 있다. 제1기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I~V)’ 일환으로 지표개발과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1) 이 장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5년간이며, 제2기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I~VI)’가 추진되는 6년간이다. 특히 2009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어 국가통계로서 인권지표 결과를 생산하고 있다(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안’은 아동·청소년의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객관적 지표에 근거한 주기적·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진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 등 5개 영역, 152개(정량 77개, 정성 75개) 개별지표 항목으로 구성).

본격적인 실태조사가 실시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홀수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짝수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을 조사하여 인권영역 전체를 아우르는 실태조사가 4년에 걸쳐 총 2차례 실시되었다. 그러나 상호불가분성과 연관성을 기본 특성으로 하는 인권내용을 4개로 구분하고 이를 2개 영역씩 나누어 각기 다른 해에 조사함에 따라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 부족 및 중요 인권지표의 누락, 인권실태의 통합적 파악 제한, 이론적 근거 부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1년~2012년에는 결과분석 틀을 4개의 인권영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틀로 전환하여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는 여전히 홀수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을, 짝수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여 통합적 조사체계 구축의 과제를 남겨놓았다.

2013년도 연구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2011~2016)’ 3차년도 연구로, 선행연구와의 연계선상에서 2013년도의 지표결과를 생산하고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라 하겠다. 여기에 2011~2012년의 지표 재구성 작업의 보완 및 체계화와 반복 횡단조사 시스템 재구축(2년 주기 → 1년 주기)을 위한 조사도구 통합안 마련이 올해 주어진 추가과업이라 할 수 있다.

2개의 인권영역씩 격년으로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통합조사하는 것으로 조사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은 그 간의 선행연구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과제로,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실태 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1년부터 시도한 지표체계 재구성 작업을 완료하여 행정통계나 타 통계자료원을 통해 산출하는 객관적 지표에 대한 보완 검토를 병행함으로써 보다 타당성있고 체계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지표결과 산출을 통해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수준 및 인권상황 변화양상과 진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의 기초자료를 축적하여 정책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²⁾, 데이터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반복 횡단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와 변화양상에 대한 시계열적 자료를 축적하여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는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조사체계 개편 및 인권지표체계 수정·보완

2013년부터는 2개 인권영역씩 격년 조사하던 조사체계를 개선하여 한 해에 종합적인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4개의 인권영역으로 구분한 기존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안으로 2011년과 2012년도에 시도된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틀 기준의 지표에 대한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최종 보완 완료된 지표들에 따라 개별지표 타당화 및 재구성 작업을 시도하였다. 국가보고서 작성틀 검토 시에는 2010년도 작성지침(CRC/C58/Rev.2), 클러스터별로 보다 상세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는 1996년도 최초의 작성지침(CRC/C58)과 유엔아동권리협약 해설서 및 일반논평 등 국제문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클러스터별 의미와 내용 이해도를 높이고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 검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통합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분석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별로 핵심지표를 선정하여 지표를 근거로 인권실태조사 통합문항을 구성하였다. 2년에 걸쳐 2회 실시되었던 설문문항을 한 해 조사문항으로 통합하는 작업인 만큼 타당도와 중요도가 높은 핵심문항 중심으로 문항 수를 줄이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기존 지표체계의 불완전성으로 누락되었던 중요 문항을 발굴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설문지는 초·중·고등학교 2종으로 개발되었다. 최종 확정된 통합조사도구와 조사주기 등 변경사항에

2)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통합국가보고서는 2017년 6월 19일까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대해 5월 7일 통계청에 통계작성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5월 15일 승인 완료되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승인통계 제40201호) 통계작성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I-2-1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작성 변경내용

변경 전(2011~2012)	변경 후(2013)	변경사유
○ 표본설계 - 대상지역 : 전국(제주도 제외) - 고등학교 구분 : 일반계, 전문계	○ 표본설계 - 대상지역 : 전국(제주도 포함) - 고등학교 구분 :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 조사대상 지역에 제주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 표본설계시 고등학교 구분을 초·중등교육법상 구분에 따름(시행령 제76조의2)
○ 조사영역 및 주기 - 인권영역을 4개로 나누어 2개 영역씩 격년 조사(설문지 2종, 2년에 걸쳐 전체 조사 완료) · 홀수년도 : 생존권·보호권 조사 · 짝수년도 : 발달권·참여권 조사	○ 조사영역 및 주기 - 매년 인권 전체 영역을 종합적으로 조사(종합설문지 1종, 한 해에 전체 조사 완료)	· 한 해에 인권영역을 종합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포괄적·종합적 인권실태 파악 가능 · 통합적 접근을 통해 핵심 문항 선정, 중요 누락 문항 발굴 → 아동·청소년 인권 설문지로서의 정체성 강화
○ 설문지 문항 수 - 중·고등학생용 : 106문항 · 2011년 60개, 2012년 46개 - 초등학생용 : 90문항 · 2011년 49개, 2012년 41개	○ 설문지 문항 수 - 중·고등학생용 : 48문항 - 초등학생용 : 37문항 ○ 문항 변경 내역 - 삭제 · 중·고등학생용 : 58문항 · 초등학생용 : 53문항 - 추가 · 중·고등학생용 : 15문항 · 초등학생용 : 13문항 ※ 기타 문항 수정·보완	※ 2년에 걸쳐 조사하던 설문지 2종을 매년 조사용 1종 종합설문지로 통합함에 따라 문항 수 축소 · 타당성 및 중요도가 낮거나 인권실태와 관련성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여 응답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 신뢰도 제고 · 인권의식 파악 문항 강화, 인권 현안문제, 인권실태와의 관련성이나 효과파악 문항 반영 · 조사의 정확성과 응답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문장 수정·보완

개발된 통합조사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특히, 문항에 따라 2년 또는 3년차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권실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데이터에 대한 성별(남, 여), 학교유형(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자율고, 특성화고), 지역구

모(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가족유형(양부모 가정,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기타), 경제적 수준(상, 중, 하)별 분석결과를 국가통계포털시스템(KOSIS)에 등록 완료하도록 한다.

(3) 행정통계와 기존 통계자료원을 활용한 지표결과 생산

객관적 지표 중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행정통계와 기존 통계자료원을 활용한 지표결과를 생산하도록 한다. 2009년과 2010년에는 객관적 지표(행정통계 등을 활용)와 주관적 지표(설문조사를 통해 생산) 결과를 분권하여 별도의 단행본으로 발간하였으나, 2011년과 2012년에는 지표 영역별로 두 가지 지표결과를 통합 기술하는 형태로 지표를 산출한 바 있다. 2013년도에도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통합 기술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행정통계와 타분야 통계자료원으로는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청소년통계, 청소년백서, 출판통계, 간추린 교육통계, 보육통계,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백서 등이 활용되었다.

(4)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안

첫째, 세부 인권지표항목별로 결과를 산출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특히, 인권실태와 정책현황의 종합 검토를 통해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를 선정하여 이의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둘째,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종합적 제언을 하도록 한다. 특히, 현단계 주요 인권이슈와 관련한 종합제언으로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결국 인권지표체계 개발과 인권지표 생산은 인권모니터링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모니터링을 통해 생산되므로, 모니터링 기구 운영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방안이 마련되어야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데이터의 효과적 활용이 가능하다.

셋째, 2016년도까지 기획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중장기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도록 한다. 승인통계 생산 외에 이슈 분석 리포트나 데이터분석 보고서 등의 발간 형태와 아이템, 인권실태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연구지원 방안, 인권지수 작업 등 장기적인 연구 활성화 과제를 제안한다.

(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데이터분석보고서 발간

2012년도부터는 정책현안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및 결과 분석만으로 담아내기 어려운 정책연구성 과제나 시의적인 인권이슈를 주제로 다룰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기 시작하였다(2012년도 주제 : 아동·청소년의 놀 권리).

2013년도에는 인권실태 조사영역을 통합하여 새롭게 인권지표체계를 갖추어 향후 4년간 데이터가 축적될 예정이므로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과 학술적 활용도에 주안점을 두어 데이터 분석 성격의 리포트를 발간하여 정책적·학술적 의의를 높이고자 하였다. 조사를 통해 구축한 데이터를 활용한 소논문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아동·청소년 분야 연구자들의 인권실태 데이터의 인지도와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으며, 더불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시사점 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13년도에는 ‘고등학생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과 ‘청소년의 참여권 인식수준 결정요인’ 등 두 편의 데이터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이 시작된 2006년 이후부터 2012년도까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표개발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및 통계체계 관련 국내·외 자료를 수집·분석하며, 조사도구 보완 및 지표결과 생산을 위해 각종 관련 승인통계 조사도구 및 행정통계 자료들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및 모니터링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비롯하여 정책적 시사점 제안을 위한 문헌자료를 검토하였다.

(2) 전문가 자문 및 전문가 협의회

연구내용과 방법 등 실행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통합조사도구 개발을 위한 자문, 인권신장 정책 및 인권지표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 등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표체계 검토 및 지표결과의 효율적 생산 등을 위해 지표 영역별 전문가와 수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하여 지표항목별 타당성 검토, 통계자료원 발굴, 조사결과 분석 및 해석, 정책과제 도출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3) 전문가 의견조사

인권지표체계 검토 및 통합조사문항 타당성 검토를 위해 이메일을 통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의견조사지는 지표체계에 따라 지표항목별로 조사문항과 통계자료원을 제시한 후, 대상자에게 지표항목 타당도(1~5점)와 설문문항 유지 여부(1~3점)를 점수로 기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기타 조사문항과 지표항목 신규 제안, 인권지표 연구 및 아동·청소년 인권통계 생산 시스템 관련 의견, 인권실태 데이터의 이론적·학술적 활용도 강화를 위한 조사도구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조사는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최종 의견을 제출한 응답자는 학계전문가 21명, 현장전문가 12명, 정부 정책관계자 3명 등 총 36명이었다.

(4) 설문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결과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1호)로 2009년부터 생산·공표되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통합조사도구를 개발하여 한 해에 조사를 실시하는 체제로 변경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5월 27일부터 7월 18일까지였으며, 조사원이 조사대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단위로 안내를 하고 학생들이 자기기입식 방식으로 조사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추진하였다.

모집단은 조사시점 기준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며 표본수는 2012년 교육통계연보를 기준으로 층화다단계집락표집을 통해 추출된 8,535명을 목표로 하였으며 최종 조사완료된 표본수는 9,521명이다(상세한 표본설계 내용은 별권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보고서 II장 2절에 수록하였음).

표 1-2-2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전체(N)	비율(%)
전체		9,521	100.0
성별	남자	4,988	52.4
	여자	4,533	47.6
학교유형	초등학교	2,829	29.7
	중학교	3,281	34.5
	일반/특목/자율고*	2,801	29.4
	특성화고	610	6.4
지역규모	대도시	3,945	41.4
	중소도시	4,397	46.2
	읍면지역	1,179	12.4
가족유형	양부모가정	8,508	89.6
	한부모가정	758	8.0
	조손가정	80	0.8
	기타	154	1.6
학업성적	상	2,851	30.0
	중	4,001	42.1
	하	2,651	27.9
경제적 수준	상	4,316	45.4
	중	3,536	37.2
	하	1,656	17.4

* 보고서에서 분석기술 시에는 '일반/특목/자율고' 또는 '일반계고등학교'로 통칭하여 사용함.

(5) 국외출장

유럽의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국제기구 및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연구 사례 조사와 연구정보 교류를 위해 국외출장을 실시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국제기구(ENOC), 유럽평의회(COE)의 아동·청소년인권부서, 유럽연합의 아동인권지표 개발 연구소(FRA) 등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현황과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I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동향 파악, III장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관련 시사점 도출, 11월 과제 일환으로 개최한 인권 학술대회의 인권모니터링 기구 발표원고 구성 등에 활용하였다.

(6) 정책협의회, 전문가워크숍, 학술대회 등 개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책 현안 논의, 지표결과 생산을 위한 행정통계 발굴,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논의, 인권정책과제의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여성가족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부처와의 정책협의회 및 관계자 자문을 실시하였다(3월, 10월, 11월).

또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및 지표영역별 정책적 대안 모색 등 연구결과의 심층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내용을 심화시키고자 하였다. 1차 워크숍은 6월 11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7명의 외부 전문가의 참여로 진행되었으며, 2차 워크숍은 9월 27일 인권정책 개발을 주제로 7명의 외부 전문가 참여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가 도출된 후에는 연구성과의 사회적 확산 및 인권신장 방안 학계 공동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11월 27일 한국시민청소년학회, 글로벌청소년학회, 한국아동권리학회와 공동 개최).

제 Ⅱ 장

20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

1. 아동 · 청소년 인권 동향
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연구동향과 시사점
3. 2013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체계

II.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구성³⁾⁴⁾

1.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는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와 수준 및 이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 현 단계 우리사회의 아동·청소년 인권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인권 관련 환경과 주요 이슈, 정책·사회적 노력 등의 현황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가늠하는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핵심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정부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한 내용,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을 소개하는 것으로 주로 정리되었다. 즉, 아동권리협약의 핵심이 무차별의 원칙, 아동 최선의 이익보장, 아동의 생존·보호·발달의 권리, 아동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아동권리협약의 각 영역별로 협약의 내용이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아동·청소년의 인권동향을 살펴보는 주된 준거들이었다. 이러한 준거들에 의한 현황은 본문의 지표결과 생산 내용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최근 우리사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거나 새로운 변화로 나타난 사항들을 아홉 가지 주제로 뽑아 인권 동향을 살펴본다.

첫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에 권고한 사항의 이행여부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를 2011년

3) 이 장의 1절은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가, 2절은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가, 3절의 1)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음. 3절 2)의 인권지표 영역별 개념과 정의의 경우,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김영지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및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는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이만희 교수(평택대학교)가, 그리고 ‘특별보호조치’는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4) 이 연구는 진행과정에서 두 차례의 전문가 워크숍(6월, 9월)과 학회 공동 학술대회(11월)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내용을 심화시키는 과정을 거침에 따라, II 장과 III 장의 주요 원고 초안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워크숍자료 13-S22)」,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워크숍자료 13-S39)」,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학술대회자료 13-S48)」 등에 게재되었음.

9월 10일부터 10월 7일까지 심의한 뒤 최종권고를 채택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보고서와 한국 내 18개 단체가 참여한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 연대의 민간보고서 등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에 수많은 내용을 권고하였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정부 보고서의 분석적이고 자기비판적인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대한민국의 여러 분야의 대표단과 가진 건설적인 대화에 대해 감사하고”(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입양특례법, 민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가사소송법, 아동복지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제정 등을 환영했다. 또한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장애인 권리협약의 비준, 여성에 대한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 그리고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을 환영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1차 보고서, 2차 보고서를 검토한 후의 권고사항에 비교하여 장문의 권고사항을 채택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서 88개 문단 중에서 무려 83개가 ‘주요 관심분야와 권고사항’이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사항 중에는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와 차별 철폐, 아동복지 예산 확충 등 매우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한국의 아동복지 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임을 지적하고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은 예산 확충을 강조했다. 실제로 김미숙(2011)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복지 지출 비중(2007년 기준)은 OECD 최저수준인 0.458%에 그쳤다.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소수자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강조하였다. 즉, 국내 소수자 아동의 권익과 관련해 난민 신청자, 미등록 이주민 자녀의 출생등록이 되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 초안이 지난 2007년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과 차별금지법안에 성적 지향 및 국적에 기반한 차별금지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둘째, 아동·청소년권리 증진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 노력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는 등 정책적 노력이 유명무실화되고 아동·청소년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점,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가 만들어지지 않는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러한 사항들은 과거 권고사항에도 지적된 것으로 수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2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다양한 관련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것을 높이 평가하였지만,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그리고 아동이 겪는 고도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교육정책 검토와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체벌과 같은 이슈가 여전히 거론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조차도 무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011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이후 2년가량 되었지만, 한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2~2016)은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하여 국가 수준의 아동정책 수립,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기능 복구, 학생자치 활동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 과도한 학업 부담 완화를 위한 학원 심야교습시간 단축 지속적 추진 등 11개의 추진과제를 신설하고, 청소년 참여 기반 확대, 청소년 동아리 활동 및 체험활동 활성화 지원 등 9개의 추진과제를 연속사업으로 채택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2).

제2차 기본계획은 그 실행기간이 남아있지만 대부분 계획으로 남겨진 상황이다. 인권기본계획은 있지만 실행력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중에도 일부 시·도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일부 자치단체가 ‘인권도시’ 혹은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시도하며, NGO가 중심이 되어 ‘아동친화기업’을 선정하는 것 등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셋째, 시·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시행이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이래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등이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인권상황이 매우 열악한 학생의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대부분은 초·중·고등학생이기에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삶의 주체로 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시·도별로 약간 차이가 있지만, 헌법, 세계인권선언,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학생도 인간으로서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같다. 학생인권조례는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만약 학교에서 학생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이를 구제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할 약속이다(광주광역시교육청, 2011).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서울시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반대로 조례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 무산되는 것을 볼 때, 한국 사회에서 학생인권의 증진을 여전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는 시·도별로 다르지만 최근 몇 년간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의 금지, 복장과 두발의 자유, 학교급식의 확대, 방과 후 교육의 자율적인 선택 등을 통해서 학생 인권이 실질적으로 향상된 근거가 되었다.

2012년 8월 경기도교육청이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새 법의 제정을 촉구한 것은 향후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인권법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새로운 준거가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인권법에 무상유아교육, 무상급식,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국고부담 확대, 아동 및 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지면 이들의 인권상황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주로 학생에게 적용되지만 아동청소년인권법은 전체 아동·청소년에게 적용되고 조례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최근 시·도와 시·도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을 만들어서 학교에서 벗어난 아동·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이들이 학교 밖에서도 학습활동을 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권리가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에서도 적절히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증거이다.

넷째, 어린이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역사회 실천이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지역사회에서 보다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어린이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에 참여하는 것이다. 유니세프가 중심이 되어 이 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데, 서울 성북구는 2012년에 ‘어린이가 살기 좋은 성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어린이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와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아시아경제, 2012.4.30).

‘어린이친화도시’란 어린이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 친구를 만나고 놀 권리, 착취 폭력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민족 종교 소득 성별 장애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권리, 문화와 사회 행사에 참여할 권리 등이 실현되는 곳을 뜻하는데(김영지, 2012), NGO와 자치단체들이 협력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전국의 많은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면서 여성과 함께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활동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익산시, 2010), 구체적인 사업으로 아동양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과 아동에게 편리한 정책은 모든 시민이 보다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를 위해서 아동관련 NGO들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 가상공간도 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이 생활시간의 상당부분을 개인용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정보검색,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하므로 가상공간을 아동친화공간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바람직하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전체 시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도시 만들기이다.

광주광역시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인권도시 만들기를 시도한 것은 아동·청소년

년을 포함한 전체 시민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광주광역시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2012년에 시민사회협약인 광주인권헌장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갈 인권지표를 발표했다. 광주인권헌장은 모든 사람은 인종, 성별, 연령, 종교, 장애, 국적, 출신지역, 경제·사회적 신분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으며,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인권지표는 민·관이 함께 실천해야 할 100개 항목을 담고 있다(시사코리아저널, 2012.12.10.).

광주광역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를 만들기 위해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광주 인권도시가이드라인 전문가 회의, 인권제도와 정책, 공무원 인권교육, 건축과 인권, 환경과 인권, 도시와 장애, 도시와 여성, 도시와 어린이·청소년, 국가폭력과 인권도시 등으로 구성되었다(뉴시스, 2013.5.10.). 이 포럼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은 다른 분야와 함께 총체적으로 다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은 아동·청소년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 지역의 정책, 환경, 건축 등과 연계되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여성 등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주광역시의 인권도시 만들기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아동친화 도시 만들기를 넘어서 지속가능한 인권도시를 지향할 때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기업으로 확장시킨 아동친화기업의 선정이다.

아동권리협약의 이행을 기업으로 확장시킨 것은 새로운 시도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012년 유니세프·유엔글로벌콤팩트와 함께 영국 런던에서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을 발표했다. 이 원칙은 아동노동 철폐, 아동의 보호자에게 적당한 일자리 제공,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마케팅과 광고 사용,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 지원 등 기업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10개 항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업이 아동의 삶에 직간접으로 미치는 모든 영향을 고려해 아동에 대한 존중과 지원을 경영전략에 통합하자는 것이다.

이 원칙에 근거하여 세이브더칠드런 코리아는 2013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함께 유한킴벌리·LG전자·현대자동차 등 아동친화경영 모범기업 9곳을 선정했다(한겨레, 2013.5.30.). 그동안 기업의 사회공헌은 기부나 후원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아동친화기업은 기업이 제품·마케팅·광고·근무환경 등 경영활동에서부터 아동의 권리를 유념하자는 취지이다. 즉 기업이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과정에서 연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고, 육아휴직을 보장하는 등 근무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아동친화기업은 일터와 시장, 환경 및 지역사회 등 3개 부문에서 선정되었다. 일터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된 한 기업은 해외 사업장인 멕시코 농장에 최저 임금 보장, 자녀 대학 학비 지원 등 풍부한 복지 제도를 마련해 아동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고 양질의 노동 환경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보건의뉴스, 2013.6.4).

일곱째, 한국정부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하였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아동인권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해방과 한국전쟁을 계기로 혼혈아를 국외로 입양을 보냈고, 이후 고아와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을 외국으로 입양을 보냈다. 보호가 필요한 아이는 원칙적으로 원래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할 수 없을 때는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국제입양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입양이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은 ‘고아수출국’이란 오명을 얻었는데, 대한민국이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비준함으로써 입양 대상아동의 권리는 크게 변화될 것이다. 한국정부는 헤이그협약에 가입하기 앞서 2012년에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였다. 이전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아동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반드시 친부모가 출생신고를 한 후에야 입양을 보낼 수 있도록 ‘입양허가제’를 도입하였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친가정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한 국내가정에서 보호, 마지막 순서로 국외입양을 시키겠다는 정책의 방향은 옳다. 그러나 출생신고를 꺼리는 일부 미혼모가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앞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이가 최근 급증하여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는 2010년 4명, 2011년 37명, 2012년 79명, 2013년 10월 15일까지 202명이나 되었다(연합뉴스, 2013.10.25). 이는 2012년 8월 개정입양특례법이 출생신고 등을 필요로 하기에 이에 부담을 느낀 미혼부모들이 아이를 유기하기 때문이다(미디어오늘, 2013.4.14). 아동에게 정확한 출생의 기록을 남겨주는 정책이 오히려 뿌리를 알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기에 보다 섬세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국외 입양된 아동의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화 된 것도 아동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것이다. 국외입양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무국적자가 수 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는 우울하게 하였는데,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헤이그협약과 입양특례법 간에는 조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향후 국내법이 헤이그협약에 맞추어서 개정될 것이다. 이미 한국 정부는 중앙입양원의 기능과 인력을 확충하여 입양인의 사후관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

여덟째, 아동·청소년 참여활동의 위축이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의 보장에 비취볼 때 참여권은 여전히 담보상태에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권의 하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추어졌지만 많은 선진국의 하한 연령이 18세인 것에 비취볼 때, 선거권 하한 연령은 아직도 높다. 또한 대부분의 나라가 선거권과 함께 피선거권의 연령도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 국회의원 25세, 대통령 40세 이상으로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넘어 청년의 참정권까지 제한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통해서 상당히 향상되었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제한된 측면이 있다. 즉 중앙정부의 청소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수련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조직되지 않거나 조직되었다도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 청소년기본법에 규정된 청소년특별회의도 그 개최 회수가 축소되었고, 특별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이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도 약해졌다. 청소년은 촛불집회나 온라인공간을 통해서 참여욕구를 분출시키고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거나, 그들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

아홉째, 아동·청소년 권리 이슈의 세분화이다.

한국사회에서 아동의 권리 이슈는 점차 세분화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미혼모의 학습권, 미등록 이주자가 낳은 아동의 국적 취득,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등이다.

먼저, 청소년이 임신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고등학교에서 자퇴를 권유받는 것은 당사자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는 미혼모보호시설에서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거나,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자격을 취득하도록 돕고 있지만, 미혼모에 대한 차별로 정규학교를 다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한국의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에 미등록 외국인이 한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아버지 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할 경우에는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학교장의 재량으로 초·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취학을 망설인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인종 국적 등에 의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 사회에서 미등록 외국인과 그 자녀의 인권은 열악한 상황에 있다.

또한 청소년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학교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학교교육에서 동성애도 이성애와 동등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적 시각에 의해서 묵살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등 관련 단체들은 동성애는 찬반·선택의 문제가 아닌데, 여전히 ‘다름’을 ‘틀림’으로 보는 시각이 문제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학교에서 폭넓게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있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가 강원도 학생인권조례(안)는 보수교계

의 압력으로 입법예고를 앞두고 성 소수자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관한 문구가 삭제되었다. 한국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민감한 주제이고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를 이유로 차별은 계속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연구동향과 시사점⁵⁾

인권에 대한 평가와 인권의 이행 및 실현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지표(indicators)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는 양적지표와 질적지표를 찾는 접근법과 그에 따른 방법론 등을 포함하여 조작적 도구와 함께 하나의 준거자원을 개발하여 지표로 제시한 바 있다(UN, 2012).

여기에서는 최근 인권모니터링을 위해 다양하게 사용된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주요한 노력과 접근들을 개관하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 국제기구는 물론, 주요 선진국이나 비정부단체와 시민사회 등이 사용한 정보와 지표 등이 포함될 것이며,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연구들을 고찰한다. 명시적으로 인권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지표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통계’로 범주화되는 지표에 관한 연구들이 포함될 것이며, 앞서 언급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개발한 인권지표는 물론, 유럽연합의 인권지표 등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알아본다.

일반적으로 지표(indicator)의 사용은 의사소통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보를 효율적으로 기록하게 하며 관련 이슈와 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쉽게 해 준다. 잘 만들어진 지표들은 적절한 사용을 통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진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UN, 2012). 그러므로 국제적인 인권지표의 연구동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표의 개념과 용례, 그리고 유사용어 등에 대해 알아보고,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지표분석틀, 인권모니터링에 관한 주요한 지표연구, 그리고 최근의 가장 대표적인 지표연구로 평가되는 유엔(UN) 인권지표와 유럽연합(EU)의 인권지표 연구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⁶⁾.

5) 이 절은 천정웅 교수(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

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연구와 관련하여 2006년과 2011년 두 차례의 기초연구 단계(최창욱 외, 2006; 임희진·김현신, 2011)에서 인권지표 관련 광범위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지표 개발 및 보완을 해왔다. 여기에서는 그 이후 새롭게 진전된 인권지표 관련 국제적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2013년도 인권지표체계 보완과정에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인권지표의 개념과 용례

지표(indicator)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공통의 목적을 가진 모든 지표, 즉 어떤 사건, 활동의 상태와 상황에 관한 구체적 정보나 성과를 제공하는 모든 지표를 포함한다. 지표는 양적 또는 질적인 특성을 갖는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이 점은 지표를 구축하는 개념과 방법론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복수의 범주를 창출하게 되고, 그것은 때로 혼란을 주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Malhotra & Fasel, 2005: 2). 또한, 인권과 관련한 지표는 두 가지 주요한 용례가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표를 좁게 보아 ‘통계(statistics)’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다른 하나는 보다 ‘주제적(thematic)’ 용례로 하나의 구체적 권리를 관찰하거나 향유하는데 관련된 정보들을 포함한다(Green, 2001).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지표는 양적 지표를 찾고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면 학교 취약 연령 아동의 등록률, 조약 비준에 관한 지표, 의회에서의 여성의원의 점유비율, 고문의 발생수 등이 있다. 이와 동시에 ‘점검표(checklist)’를 많이 사용하거나 일련의 질문들을 지표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인권의 실현에 관해 숫자적 정보를 보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지표’라는 단어는 통계 이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된다.

현재 가장 넓게 승인되고 사용되는 인권지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에서 개발한 인권지표로 볼 수 있다(UN, 2012). 유엔을 중심으로 개발한 인권모니터링 메카니즘은 다양한 국제적 도구를 구성하는 인권규범 분석틀(framework)에 반영되고 있으며, 일반 논평을 통해 세분화되기도 하고, 국가별 인권상황보고 가이드라인이나 인권의 실현을 모니터링하는데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양적 지표들은 명시적으로 인권 조약에 인용되고 있기도 하지만, ‘조약 주체(Treaty bodies)’에 의해 채택되는 일반 논평과 권고안은 이러한 지표의 유형과 역할을 구체화하고 있다. 당사국 보고서의 가이드라인 또한 국가가 제공해야하는 지표의 유형을 열거하는 보충적 자료가 된다(Malhotra & Fasel, 2005: 5).

인권조약 수준에서는 예를 들어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10조의 교육권에서 ‘여성 학생 중도탈락율’의 감소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 제12조에서는 모든 사람이 신체적·정신적 건강기준을 향유할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 “당사국이 취해야하는 조치에는 사산율(stillbirth-rate)와 유아사망율(infant mortality)의 감소를 위한 조항에 필요한 지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24조 제2항에서는 “모든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해야 하고 이름을 가져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유사한 조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제 7조 제1항)에도 있다(UN, 1989).

조약의 조항에서 통계적이거나 양적 지표들에 대한 내용들은 관련된 권리의 내용을 정의하는데 기여하며, 이를 실행하는 것을 재강화 해준다. 따라서 출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데에는 출생기록이 직접적으로 중요한 것과 같이 다른 권리의 향유를 위해서는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조건이 된다. 모든 아동의 등록은 국가가 모든 개인들에게 수반되는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법에 의해 그들의 신분을 규정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다른 공식적 통계들(예, 사망원인 통계, 소득 불평등 측정과 실업률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은 동일하다(Malhotra & Fasel, 2005: 4).

이와 같이 양적 지표는 특정 이벤트에 대해 측정함으로써 계량적 평가를 촉진한다. 마찬가지로 질적 정보는 양적 지표의 해석을 보완할 수 있다. 주관적(subjective) 지표와 객관적(objective) 지표라는 용어 간에도 유사한 보완성이 있다. 인권지표는 또한 사실기반(fact-based) 지표와 판단기반(judgement-based) 지표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는 객관적 지표이며 후자는 주관적 지표에 상응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실기반의 양적지표로는 ‘5세 미만 저체중 아동의 발생률’을 생각할 수 있으며, 질적 지표로는 ‘인권조약의 비준상태’ 또는 ‘신체적 폭력행위, 가해자와 피해자 등을 포함한 사건의 실제적 서술’ 등이 있다. 한편, 판단기반에 따른 양적 지표로는 ‘야간 보행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대상국가의 표현의 자유 상태에 대해 전문가나 저널리스트들이 점수화한 평균에 기반하여 매긴 순위’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질적 지표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내러티브 형태로 표현된 평가’, 또는 ‘대상국가에서 음식을 먹을 권리가 법과 실제에서 완전히 보장되는지 여부’ 등과 관련한 지표를 예로 들 수 있다(UN, 2012: 18).

또한 인권분야에서는 종종 수행지표(indicators of conduct)와 결과지표(indicators of result)간의 차이점이 있다. 수행지표가 의무담당자의 약속과 준수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결과 지표는 권리보유자가 권리를 존중하고 완수하는 것을 향유하거나 의무담당자가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 중의 하나에 초점을 둔다(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Kapoor, 1996).

인권과 관련한 지표에서는 또한 실행지표와 준수지표의 개념도 구별할 수 있다. 실행지표(performance indicator)의 주요 목적은 계획된 것과 관련한 발전개입(development intervention)에 의해 발생된 변화를 확인하도록 해 주는 것이다. 실행지표는 프로그래밍 원칙과 용어들에 기반하고 있으며 개별적 프로그램 활동과 본질적으로 맞물려있다. 이러한 지표는 프로그램 활동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공통적인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 인권맥락에서 준수지표(compliance indicator)는 인권 기준을 지키는 것과 확실히 관련된다. 그러한 인권기준으로부터 제시되는 의무들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인권의 개선된 향유와 연관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UN, 2012: 19-20).

표 II-2-1 지표의 범주와 용도

범주	설명	용도
결과(result)지표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에 관하여 존재하는 조건을 측정	인권 용어에서 수행 지표와 대조됨
수행(conduct)지표	국가와 같은 의무이행자의 약속이나 준수를 측정	인권용어에서 결과지표와 대조됨
실행(peformance)지표	프로젝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의 프로젝트 실행에 관한 지표	용어에서는 전략적 분석틀을 계획하는데 실례를 사용함
이정표(milestones)지표	계획된 목표와 기준과 관련한 실행을 측정	발달과 인권 용어에서 계획된 성취에 관한 자세한 검토를 위해 사용함
효과(effect)와 영향(impact)지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개인의 결과를 측정	효과 지표는 즉각적 결과를 측정하지만, 영향 지표는 장기적 결과를 측정함
산출(output)지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활동의 결과를 측정	개인활동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임

* 출처: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Human rights indicators at programme and project level: Guidelines for defining indicators, monitoring and evaluation, p.19. 발췌 번역 요약

한편, 지표의 개념은 벤치마크(측정기준: benchmark)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벤치마크는 사전에 정해진 값을 갖는 규범적이거나 경험적 고려사항에 의해 제한되는 지표들을 말한다. 규범적 고려사항들이 국제적 기준과 사람들의 정치적·사회적 열망에 입각하는 것에 비하여, 경험적 고려사항들은 주로 시행가능성과 자원에 관한 이슈들에 관련된다(Brann, Walter, & Coombs, 2011: 128). 예를 들어,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질병에 대한 면역을 가진 1세의 비율이라는 지표를 생각해보면, 이 지표에 대한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그 지표에 관한 하나의 구체적인 값을 고정할 것을 필요로 한다. 또한 그것을 90%로 끌어올린다거나 기존 적용범위를 10% 개선하는 것과 같이 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행하는 기관의 노력은 정해진 기간 내에 그 값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게 되는 것이다(Brann, Walter, & Coombs, 2011: 129).

조약 기구에 의한 당사국의 준수를 평가하는 상황에서는 지표가 아니라,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것이 당사국의 책무성을 확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유엔사회권위원회(ICESCR)는 실행과정을 가속하게 위하여 벤치마크를 설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의 실행을 증진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벤치마크를 사용하는 첫 단계는 추적하는 지표의 선택에 대해 동의하도록 하는 것이며, 그 다음 단계는 이렇게 규명된 지표에 대해 실행 벤치마크를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OHCHR, 2007).

한편, 아동권리를 측정하는 일은 아동 복지(child well-being)와 아동 권리(child rights)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혼용되고 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Ben-Arieh, 2008a; Hanafin, Brooks, Carroll, Fitzgerald, Gabhainn, & Sixsmith, 2006). 실제 아동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지표들도 아동 권리의 측정치로서 자주 사용되었으며, 이 경우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가 발달지표(development indicators)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다(Ben-Arieh, 2008b; Chaaban, 2009).

그러나 아동 복지지표와 아동 권리지표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할 수 있다(Carvalho, 2009; Fattore, Mason, & Watson, 2007; Lippman, 2007). 첫째, 개념적으로 아동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의해 정의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료한 개념이지만, 아동 복지라는 개념은 아직도 모호한 구성개념이다. 둘째, 아동 권리지표는 데이터를 분해(disaggregation)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지만, 아동 복지지표에서는 이것이 선택적이다. 셋째, 아동 권리지표는 아동의 견해 획득을 중요시하지만, 아동 복지지표에서는 이것을 본질적인 필수요소로 하지는 않는다. 넷째, 아동 권리지표는 국가 의무를 측정하고 그에 따라 정부가 준수 의무를 지도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지만, 아동 복지지표는 그러한 특징이 없다는 점이다(Carvalho, 2008: 549).

2) 인권지표의 기능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은 아동 권리의 달성을 위한 국제적 기준과 준거(yardstick)를 제공하는 보편적으로 승인된 주요 인권조약이다. 동 협약은 비준한 국가들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들이 협약의 모니터링 기관인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협약의 일부로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모니터링은 각국의 정부가 협약의 이행을 보다 잘 이해, 실행, 모니터링하도록 가이드하는 일반 논평을 발간한다. 이를 통해 아동권리지표를 개발하는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Habashi, Wright, & Hathcoat, 2012).

8세 이하 아동의 권리의 실행에 관한 일반논평 제7호는 인권에 입각한 아동지표개발을 위한 좋은 토대가 되고 있다. 개발된 매뉴얼과 분석틀(framework)은 국가가 보고하는 의무를 완수하도록 정부를 돕고, 하나의 구조화된 가이드에 관한 조항을 통하여 아동과 사회의 권리 보유자들이 보다 나은 데이터 수집, 분석, 모니터링 및 보고로 아동권리를 구현하도록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가장 널리 승인된 국제인권도구일 뿐만 아니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연결함으로써 인권에 관해 이념적으로 구분된 것을 극복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점진적으로 실현되기 쉽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겨있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또한 점진적으로 실현된다. 국가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아동에 대한 의무를 완수하

도록 기대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8세 이하의 아동권리의 실현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국가는 이러한 변수 차원을 측정하는 도구를 필요로 한다. 일반논평 제7호에서는 당사국들이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와 벤치마크를 사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유엔개발계획(UNDP)에서는 지표는 인권을 위한 투쟁에서 강력한 도구이며, 풀뿌리 활동가에서부터 시민사회와 정보기관, 그리고 유엔에 이르는 사람들과 단체들로 하여금 중요한 행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각자의 행동에 책임을 갖도록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Green, 2001). 또한 지표는 다음과 같이 사용될 수 있다. 첫째,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들고 그 진전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둘째, 법, 정책 및 실천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어떤 행위자들이 권리의 실현에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이러한 행위자들의 의무가 충족되는 것을 나타내 줄 수 있다. 다섯째, 잠재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조기 경고를 주고 예방적 행위를 가능하게 한다. 여섯째, 그동안 방임하거나 제기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드러낸다. 결정적으로 인권지표는 국내적·국제적으로 정책 조정이 필요한 시기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Vaghri, Arkadas, Kruse, & Hertzman, 2011: 180).

3) 양적지표 중심의 인권모니터링 연구동향

아동권리의 실행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체화하고 이들을 국제적 연구로 활용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Carvalho, 2008). 이는 부분적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이 다른 인권조약보다 늦게 시행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동기와 관련된 통계는 따로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고, 아동권리를 따로 측정하는 것에 대한 유용성이 제한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과도 관련된다(Ennew & Miljeteig, 1996). 아동권리와 관련한 통계가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도 각기 다른 기관에 산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측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Malhotra와 Fasel(2005)은 주요한 인권지표 연구들을 조사하면서, 양적 인권지표에 관한 네 가지 주요한 범주를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이러한 네 가지의 범주별로 주요한 인권연구들을 밝히고 이러한 노력이 인권모니터링을 위한 과정과 방법론에 기여한 점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평가를 함에 있어서 그들이 찾은 주도적 연구(initiative)와 관련 지표들은 여러 가지 통계적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고 국제적 인권 도구, 관련 조항과 인권원칙 등에 대한 적용범위를 갖는지를 분석하였다(Malhotra &

Fasel, 2005: 5-22). 한편, 유엔의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방법에서도 자료원(sources)과 데이터 창출(data-generating) 메카니즘(mechanism)을 기반으로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UN, 2012: 51-68), 사건기반 데이터, 사회경제적 행정통계, 가계인식과 의견조사, 그리고 전문가 판단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분은 Malhotra와 Fasel(2005)의 네 가지 범주와 Beco(2008)가 인권지표 개발을 위해 사용한 사건기반, 사회경제적 데이터, 가계인식, 그리고 전문가 판단 등의 네 가지 기준과도 유사하다. 이런 점에서 인권지표 개발과 관련한 국제적 연구동향은 양적 지표를 사용한 인권모니터에 관한 주요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지표가 통계적 적절성(statistical adequacy)이란 측면에서 그 신뢰성(reliability)과 타당성(validity)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Gran, 2010). 지표의 신뢰성이란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메카니즘을 하나의 지표를 고안하는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그 지표의 수치나 가치가 일관성을 갖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다. 타당성의 개념은 그 지표의 수치나 가치에 의해 제공된 정보의 신실성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타당성의 기준은 지표가 측정해야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Malhotra와 Fasel(2005)은 인권지표연구를 통해,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엄격하게 추구하지 않았지만, 가능하면 조사한 지표들이 이러한 기준에 적합한 지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분석하려고 하였다. 2012년 유엔인권지표의 경우, 자료원과 데이터 창출 메카니즘으로 양적지표를 구분하면서 각 지표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개발을 추구하였다.

한편, 인권연구의 주요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고려한 또 다른 통계적 기준에는 데이터의 획득가능성과 주기성, 분해성(disaggregation)과 가분성(decomposability), 국제비교를 위해 사용될 때의 수정가능성(ameability), 그리고 방법론상의 투명성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도 유엔 2012년 인권지표 연구나 Malhotra와 Fasel(2005)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인권 관점에서는 국제적인 인권지표의 주도적 연구와 그에 상응하는 지표들이 인권기준과 원칙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인권지표에 대한 개념정의에 있어 지표들이 국제인권도구와의 연계뿐만 아니라 관련된 일반 논평이 그 규범적이며 개념적인 편견을 평가하는 입장을 가지고 분석되어야 한다. 주도적인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지표의 선택과 설계에서 그것이 범주화할 수 있는 포괄능력, 비차별의 인권원칙, 불가분성과 상호의존성, 책무성 등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양적 지표를 주로 사용한 국제적 인권모니터에 관한 주요한 주도적 연구들은 인권위반에 관한 사건기반 데이터사용 연구, 사회경제적 통계와 행정통계 연구, 가계 등 의견 설문조사 연구, 그리고 전문가의 판단에 근거한 데이터를 사용한 연구 등의 네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Malhotra & Fasel, 2005; UN, 2012).

(1) 사건기반(event-based) 데이터 사용연구

인권위반에 관한 사건기반 데이터(event-based data)는 인권위반 사건의 발생에 의해 특징화되는 양적 또는 질적 데이터를 말한다. 수집된 정보는 주로 인권위반의 행동을 서술하고 희생자와 가해자를 규명한다(Malhotra & Fasel, 2005; UN, 2012).

사건기반 데이터에서 추출된 양적 지표는 인권위반한 사건을 ‘희생자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제시한다. 이러한 위반행위는 다양한 조약들에서 코드화한 인권기준을 적용하여 규명하고 결정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사건기반 데이터를 사용한 주도적 연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 생명권, 개인적 고결성, 개인의 자유와 안전 등과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위반과 관련한 정보들도 이러한 방법을 통해 수집되고 있다.

현재 이 범주에 드는 아니시어티브들 가운데에는 국제 인권정보·문서 시스템(HURIDOCs, Human Rights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System, International)이 인권위반에 관한 사건기반(event-based)정보를 기록하는 가장 종합적인 표준화된 도구세트를 제공하고 있다(Malhotra & Fasel, 2005).

(2) 사회경제적 통계와 행정통계 중심 연구

사회경제적 통계와 여타 행정적 통계는 삶의 기준과 다른 삶의 측면에 관련된 객관적인 양적 또는 질적 정보(즉, 임금, 연령, 성별, 인종 등과 같이 관찰되고 증명될 수 있는 정보)에 기반하여 취합한 데이터 세트 및 지표와 관련된다(Malhotra & Fasel, 2005; UN, 2012). 사회경제적 통계는 주로 국가별 통계연구소와 국제기관 등이 공동 협력하여 정책 형성과 실행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하는 것이다. 주로 행정관리 기록과 통계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집한다. 이러한 기관의 지위와 역할은 각기 다르지만, 공식 통계를 수집하고 해석하고 보급하는 기능은 유사하다.

사건기반 데이터와는 달리, 인권모니터링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통계는 인권위반 사건이나 행위내용, 또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희생자의 수 등을 공식적으로 수량화하지 않는다. 사회경제적 통계가 인권기준과 연결되는지도 항상 분명한 것은 아니다. 사회경제적 통계는 가장 일반적으로는 국가에 의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보다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보다 많은 관련성을 갖고 취합된다. 그러나 범죄사법통계에 관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기관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분명히 관련되는 사회 경제적 통계를 종합·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를 모니터링하는데 있어서는 사건기반 데이터를 보완하는 중요한 정보 출처가 되고 있다(Malhotra & Fasel, 2005).

이런 점에서 유엔 사회지표 핸드북(Handbook on Social Indicators)은 사회경제적 통계의 범위를 개관하는 이 분야에 관한 종합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구구성과 변화, 주거상황, 인구의

지리적 분포, 건강과 보건서비스, 장애, 영양, 학습과 교육서비스, 경제활동과 비경제활동인구, 사회경제 집단과 사회적 이동성, 수입, 소비와 부, 사회 안전과 복지서비스, 레저, 문화와 소통, 시간사용, 공공질서와 안전, 자연환경 및 정치적 활동 등을 포함한다(Malhotra & Fasel, 2005 p.11에서 재인용).

이러한 목록들이 인권 목록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적·경제적 통계는 관련 입법을 추구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국제적 수준에서는 유엔과 다른 국제회의 및 정상회담 등이 사회통계 즉, 성별 통계를 개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유엔기구와 프로그램 중에서는 특히 FAO, ILO, UNESCO, UNICEF, WHO, UNDP 등이 통계적 지표를 만드는데 오랫동안 관여해오고 있다(Pond, Kim, Carroquino, Pirad, Gore & Cucu, et al., 2007).

한편, 비정부단체가 인권을 모니터링하는데 사회경제적 통계를 사용하는 예는 국제사회감시연합(Social Watch) 연차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이 기관은 1995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엔 세계사회개발정상회의 이후 비정부기구(NGO) 국제 네트워크로 등장했으며, 대규모의 사회경제적 통계를 사용하여 세계 약 50개국에서의 빈곤 타파와 성평등에 관한 국제적 약속의 이행을 평가한다. 여기에는 빈곤, 식량과 보건안전, 여성출산보건, 식수와 위생, 교육, 정보과학과 기술, 성평등, 공공지출과 개발원조 등에 관한 지표를 포함한다(Malhotra & Fasel, 2005. p. 12에서 재인용).

(3) 가계 인식과 의견조사 중심 연구

가계 인식과 의견조사는 주어진 이슈에 관한 각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표본에 대한 여론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수집된 정보의 성격은 질적이며 주관적인 것이 우세하고 그러므로 직접적으로 수량화할 수는 없다. 데이터 집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인식과 의견을 지표로 하기 위해서는 순서척도나 서열척도에 따라 답을 적은 형태를 사용한다. 설문조사의 상황과 주제에 따라서, 응답자는 면대면 인터뷰, 자기기입식 설문지 응답 또는 전화인터뷰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Malhotra & Fasel, 2005; UN, 2012).

인권모니터링에서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가계 인식과 의견 설문조사는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물론,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도 관련된다. 이러한 설문조사는 정부기관과 제도의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직접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이며 기회가 된다. 결과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그 결과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국제갤럽연맹(Gallup International Association)은 약 60개국에서 대중의 의견을 설문조사하는 국제적인 연구기관 네트워크이다. 여기에서 수행된 많은 조사 중에서도 1999년의 국제갤럽밀레니엄서

베이(Gallup International Millennium Survey)는 60여 개국에서 57,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버넌스, 민주주의, 기본 가치, 범죄, 여성인권, 환경, 유엔, 인권, 고문”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주제를 포함하였다(Malhotra & Fasel, 2005: 18). 남아프리카에 있는 민주주의 연구소와 가나의 민주주의 발전센터, 그리고 미시간 주립대학이 공동으로 하는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 연구 프로젝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 국가에서의 민주주의, 거버넌스, 생계상황, 참여, 갈등과 범죄 등에 관한 대중의 의견과 인식을 국제적으로 측정하는 것이다(Malhotra & Fasel, 2005. p.19에서 재인용).

(4)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데이터 사용 연구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데이터들은 양적인 형태로 변환될 수 있는 질적 특성을 가진 평가를 포함하는 이니시어티브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제한된 수의 고지 받은 전문가(informed experts)에 의해 수행된다(Malhotra & Fasel, 2005; UN, 2012). 가계 인식과 의견 설문조사와 달리, 미디어, 정부 보고서, 비정부단체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원을 사용하고, 옹호집단, 학술연구자, 사회과학자, 관리자 등 제한된 수의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서열적이나 간격적도 그리고 관련된 기준이나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국가의 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점수화하도록 요청받는다. 전문가 판단에 입각한 데이터 등은 그 방법상 분명한 제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순위나 연도별 비교들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시민적·정치적 자유의 정도에 따라 국가별 평가와 순위를 매긴 이니시어티브들 중에는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와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한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로 잘 알려져 있고 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는 1941년에 설립된 비정부단체이며 설문조사는 1972년 이후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Malhotra & Fasel, 2005: 20-21). 다양한 출판물과 정보원을 사용하며, 설문조사는 저널리스트와 학술연구가 등의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대해 각각 10-15개의 질문을 담고 있는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전 세계 191개 국가와 18개 분쟁 영토에 대해 각 질문에 대해 0(매우 자유롭다)에서 4(가장 자유롭지 못하다)까지의 점수 중에서 한 개의 점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각 국가와 영토는 총점을 기준으로 1(가장 자유롭다)에서 7(가장 자유롭지 못하다)이 숫자 가운데서 그 순위가 매겨진다. 두 개에 대한 순위의 평균에 입각하여, 국가와 영토들은 자유(1-2.5), 일부 자유(3-5.5) 그리고 비자유(5.5-7)의 세 가지 집단으로 분류되고 있다(Malhotra & Fasel, 2005, p.21에서 재인용).

전문가 판단에 입각하여 정보를 사용하는 주요한 이점은 신속히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상황에

대해 첫 번째 평가를 발표하는 데에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종 그러한 평가는 전반적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잘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기준에 제한점이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의 수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Malhotra & Fasel, 2005: 22). 인권평가 방법으로써 특히 시간 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당사국의 국제인권도구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데에는 단지 제한된 목적으로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인권지표 연구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지표개발을 시작한 것은 협약당사국들의 위원회 간 회의(inter-committee meeting)에서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그것은 당사국보고서에 있는 통계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것을 지원하였으며 당사국이 비준한 인권조약을 준수하는 것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문헌과 함께 인권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양적 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것을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UN, 2012: 5).

1993년 1월에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실현에 관한 전 특별 보고자(Rapporteur)인 다닐로 투르크(Danilo Turk)의 권고로 따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점진적 실현에서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지표’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그 후, 1999년 9월에는 OHCHR에 의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지표가 부족하였던 시민적·정치적 권리 지표에 관한 워크숍이 조직되었다. 2000년 9월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통계, 발달, 및 인권에 관한 몽트뢰 회의(Montreux Conference)에 참가하였다. 이는 국제공인통계연맹(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Official Statistics)의 후원으로 조직되었다. 다양한 국제기관과 비정부단체에서 약 700명이 참가하였다. 2002년에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은 폴 헌트(Paul Hunt), 멘프레드 노왁(Manfred Nowak), 시디크 오스마니(Siddiq Osmani) 등의 여러 학자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빈곤감소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에 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는 빈곤감소를 위해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진 시민적·문화적·경제적·정치적 및 사회적 권리를 위한 양적이며 질적인 ‘핵심 목표와 지표’의 하나의 목록이었다(Malhotra & Fasel, 2005). 이후 전문가 패널의 지문을 받으면서 조작적으로 가시적인 인권 지표를 만들기 위한 개념적이며 방법론적인 분석들을 개발하였다. 그 분석들은 2006년 6월의 위원회 간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2008년 6월에 수정되었다(UN, 2012: 6).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물론,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많은 인권에 대하여 예시

지표들을 개발하였다. 이들 지표들은 타당성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처음에는 조약 전문가, 인권위원회 특별보고자, 학자, 및 시민사회와 국제단체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국제적 전문 패널의 토론이 있었다. 그 뒤를 이어서 인권기관, 정책결정가 및 인권조약의 이행에 대해 보고하는 책임이 있는 기관, 통계 기구와 시민사회 대표자 등이 참가하는 국가별 당사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다음 내용은 이러한 배경 하에 개발된 유엔인권지표의 주요 내용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2012년 발행한 유엔인권지표(Human rights Indicators)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하면서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것이다(UN, 2012).

(1) 개념적 분석틀의 두 가지 접근법

유엔 지표는 2가지 접근법(a two-part approach)을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권의 속성적(attributes) 특질을 규명하는 것이고, 둘째는 해당 권리와 연관된 기준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측면을 밝히는 지표군(cluster)을 개발하는 것이다. 먼저 어떤 권리의 속성적 특질을 규명함으로써 적절한 지표나 지표군을 선택하고 개발하는 과정이 촉진되고, 분명하고 구체화된 보다 ‘유형적(tangible)’ 범주화를 할 수 있게 한다. 유엔 인권지표에 제시된 예시지표에는 평균 4개의 속성적 특질들로 그 핵심적·규범적 내용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권(right to life)의 경우, 주로 세계인권선언 3조, 자유권규약 6조, 국제인권위원회의 생명권에 관한 일반논평 6(1982)에 입각하여, 불법적인 생명박탈(arbitrary deprivation of life), 실종(disappearances of individuals), 보건과 영양, 사형 등의 네 가지 속성적 특질을 확인하였다(UN, 2012: 31).

또한 보건권(right to health)은 주로 세계인권선언 25조, 사회권 규약 12조, 유엔사회권 규약 위원회 일반논평 14(2000),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반논평 24(1999), 아동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2003), 일반논평 4(2003) 등에 입각하여 다섯 개의 속성적 특질을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생식 및 재생산 보건(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유아사망율과 건강보호(child mortality and health care), 환경 및 산업 위생(natural and occupational environment), 질병의 예방, 치료 및 통제(prevention, treatment, and control of diseases), 의료 시설과 필수 의약품 접근성(accessibility to health facilities and essential medicines) 등이 포함된다(UN, 2012: 31).

이러한 속성적 특질을 규명한 다음 단계는 규범적 기준과 그러한 속성적 특질에 관련된 의무를 위한 지표 선택과 개발에 일관된 접근법을 갖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인권 이행의 각기 다른 측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각기 다른 유형의 지표를 고려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2) 구조·과정·성과 지표체계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무주체(duty bearer), 주로 당사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인권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인권의 실현에 상응하는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성과를 가져온 과정들이 관련 인권 기준에 맞는 지를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유엔 인권지표에서는 국가의 이행책무(commitment), 노력(efforts), 결과(results)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구조·과정·성과(structure-process-outcome)지표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UN, 2012).

먼저, 구조지표(structural indicators)는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제도적 메커니즘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법적 도구와 존재를 비준하고 채택하는 것을 반영한다. 당사국이 인권조약을 비준한다면 그 기준을 이행하는 책무(commitment)를 평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조적 지표는 해당 권리와 관련된 국내법이 국제적 기준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적 기준을 보호하고 촉진하는 제도를 갖고 있는지 등에 초점을 둔다. 유엔 인권지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조항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를 비롯하여, 적합한 식생활에 대한 권리(제6조) 등 14가지 권리와 관련한 예시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구조적 지표를 통해 세부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구조지표로는 ‘노동권과 관련한 국제인권과 국제노동기구의 규약 및 협약’, ‘헌법 혹은 다른 상위법에서 노동권 시행 시점과 적용범위’, ‘기회 평등 보장과 제반 고용차별 철폐에 대한 규제를 포함한 노동권 실행을 위한 국내법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등의 4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완전 및 생산적 고용을 위한 국가정책의 시행시기 및 적용범위’, ‘법정 주당 최대노동시간’, ‘직업유형별 최저고용연령’ 등의 5개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UN, 2012, 35;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김기곤, 2012, 104-105).

둘째, 과정지표(process indicators)는 의무주체들이 인권적 책무를 바람직한 결과로 전환시키는 지속적인 노력을 측정한다. 구조지표와는 달리, 과정지표는 의무주체들이 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갖는 정책과 구체적 수단들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국가의 정책 수단(state policy measures)은 국가발전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위한 공공 프로그램, 예산배분, 구체적·규제적 개입 등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인권 실현과 관련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조치들을 말하는 것이다(UN, 2012: 36). 유엔 인권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지표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과정지표를 보면, ‘효과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받는 목표집단 비율’, ‘학력별 연간 고용증가(직업

창출율), ‘여성, 남성, 그리고 아동의 무급가족돌봄(unpaid domestic or family care work)과 무급가족 노동(unpaid work in family business)에 투입하는 평균시간’ 등 6가지 항목이 제시되어 있다(김태홍 외, 2012: 105).

셋째, 성과지표(outcome indicators)는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권향유 상태를 반영하는 개인적·집단적 성취, 즉, 인권실현 상태를 파악하게 한다. 인권의 이행정도 뿐만 아니라 권리의 향유 정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성과지표는 시간경과에 따라 다양한 과정(몇 가지의 과정지표로 파악가능)의 영향을 통합하며, 과정지표보다는 순간적 변화에 덜 민감하며, 천천히 움직이는 지표이다. 예를 들면, 평균기대수명 지표는 면역, 공중보건에 대한 지각, 적절한 영양에 대한 접근성 또는 신체적 폭력과 범죄의 감소에 따른 성과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고문이나 비인간적 처우 등과 같은 보고사례와 관련된 성과는 보통 수사를 담당하는 법단속경찰의 훈련과 행동에 대한 책무성을 개선하는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들과 관련을 갖게 될 수 있다(UN, 2012: 37-38). 유엔 인권지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시지표 중 세계인권선언 제23조의 노동권과 관련한 ‘양질의 생산적 노동(access to decent and productive work)에 대한 접근권’으로 제시된 성과지표를 보면, ‘성별, 목표집단, 그리고 학력별 고용율(employment-to-population ratios)’, ‘전체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자발적 시간제 근로자 비율’, ‘비농림부문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비율’, ‘단기,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proportion of workers in precarious employment)’ 등 다섯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김태홍 외, 2012: 105-106).

(3) 방법론적 접근법

인권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지표를 규명하는 것을 돕는 개념적 분석들은 효과적인 방법론적 접근에 의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지표는 명료하게 또는 엄밀하게 정의되지 않거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고 확산하는 수용할 만한 표준화된 방법에 입각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으면 인권의 이행과 모니터링을 촉진하는데 의미가 없게 된다. 이런 점에서 유엔의 인권지표는 세 가지 측면의 방법론적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UN, 2012).

그 첫째는 지표 선정에서의 윤리적·인권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권지표를 위한 주요한 데이터 산출 메카니즘과 자료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셋째는 인권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를 성분별로 분해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점이다. 이 가운데 두 번째의 자료원과 데이터 산출 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인권위반과 관련된 사건(event)에 기반한 데이터, 사회경제적 행정통계, 인권관련 이슈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과 의견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제한된 수의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informed experts)들의 도움으로 인권상황을 판단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Malhotra & Fasel, 2005).

한편, 유엔 인권지표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행정통계로는 행정관리 데이터(administrative data)와 통계조사(statistical survey) 및 인구센서스(census) 등이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 2012). 이러한 세 가지 자료원의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관리데이터는 모든 경제적 관심사 또는 규칙 등을 기록하는 것이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불완성 또는 부정확한 기록은 편견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 통계조사는 인구샘플만 포함하며 비용은 중간정도이지만 빈도는 3년에서 5년을 주기로 산출한다. 중요한 편견의 위험이 있지만, 조사계획이 잘되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센서스는 인구수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므로 비용이 높고 주기는 10년으로 한다. 이론적으로는 편견이 없으나 적절한 보완이 없다면 편견이 발생하는 점이 지적된다. 한편, 이러한 세 가지 자료원 중에서 모니터링과 정책결정가를 위해서는 행정관리 데이터가 가장 양호하며, 통계조사도 양호한 편이며, 센서스의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양호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양호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UN, 2012: 64).

(4) 인권지표의 분석틀 예시

통계와 지표들은 인권 평가와 모니터링에서 효과적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사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욕구를 충족해야 한다. 평가 과정에서 통계가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적용되는 상황의 의미 있고, 국가들이 그것을 적용하는 소유권을 가질 때 최적화될 수 있다.

지표를 국가적 상황에 적용하는 것에는 지표의 세 가지 범주에 각기 상응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 그러나 구조적 지표와 성과적 지표의 경우에는 적용이 제한된다. 한편, 유엔 인권지표는 세계인권선언의 주요 조항에 따라 14개의 예시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①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제3조) ② 적합한 식생활에 대한 권리(제25조) ③ 최고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25조) ④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아니할 권리(제5조), ⑤ 공무참여권(제21조) 등을 비롯하여 ⑥ 제26조, ⑦ 제25조, ⑧ 제23조, ⑨ 제22조, ⑩ 제19조, ⑪ 제10조-11조, ⑫ 제1-5조 및 제16조, ⑬ 제1조, 2조, 및 7조, 그리고 ⑭ 생명권(제3조) 등이 포함된다(UN, 2012; 김태홍 외, 2012).

(5) 권리의 이행과 모니터링의 실천적 분석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인권의 이행을 증진하고 모니터하는 개념적, 방법론적, 경험적 측면을 포함하는 지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인권기준에 대한 책무, 책무이행 노력, 그리고 노력의

결과를 개념화하였다(UN, 2012). 구조·과정·성과지표로 구축하는 분석틀에 입각한 지표는 정책입안자와 인권전문가에게도 익숙한 체계로 볼 수 있다(김태홍 외, 2012: 107).

그러나 유엔 인권지표는 제시한 지표를 국가 단위에서 적용하는데 몇 가지 도전과제가 있다. 이들 중의 일부는 적절한 지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는 역량이 제한되어 있는 점과 주기성, 분석 기법 및 인권 평가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 적절한 자원의 결여와 인권에 대한 정치적 무관심 등과 관련된다. 또한 인권모니터링 시스템을 수립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단계를 고려할 수 있다. 즉, 1단계는 모니터링 주관자 확인, 2단계는 국가 소유의 모니터링 메카니즘 촉진, 3단계는 주요 취약 집단의 확인, 4단계는 비차별과 접근성에 초점두기, 5단계는 데이터 수집과 개별요소화를 위한 역량의 구축, 그리고 6단계는 주기성 보고, 공포, 정보에 대한 공적 접근성과 후속관리 등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단계별로 체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권개념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정책 수립과 개발과정에서 인권기준과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김태홍 외, 2012).

5)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아동·청소년권리지표 연구

유럽연합 아동·청소년인권지표는 2007년 7월에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에 요청하여 개발되기 시작한 것으로 15개월의 연구를 통해 첫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처음 소개되었다(FRA, 2010). 2012년 이후부터는 유엔(UN)이 제시한 구조지표·과정지표·성과지표의 분석틀을 근거로 하여 각 영역별로 지표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에서 발간한 유럽연합 아동·청소년권리지표는 지금까지 채택된 유럽연합법과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 업적을 확인하면서 유럽연합의 아동관련 법 조항들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여러 기관과 회원국, 단체와 개인들로 하여금 적절한 법적 자원과 정책 자원을 개발하는데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유럽연합(EU)에 의한 아동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확장하고자 하였다(FRA, 2010: 7).

현재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아동권리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채택하는 과정에 있으며 중점업무를 확정하고 우선순위의 영역을 설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인권 연구보고서에 제시된 지표는 아동의 지위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에 관한 이미 채택된 유럽연합(EU) 법과 정책의 영향에 대해 평가하는 시범적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된 제공, 원칙과 과정을 유럽연합(EU) 수준에서의 아동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개발하는 기준으로

삼고, 국제인권법 도구에 대한 준수를 모니터링하는 유엔지표보고서에 의해 제시된 지표들의 개념정의 를 채택한다(FRA, 2010: 7-8).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 인권보고서는 서론을 포함하면 전체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표는 제 4장에서 도표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이를 위해 먼저 제 1장에서는 지표를 개발하는 데 사용된 방법론과 개념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제 2장은 프로젝트의 범위와 핵심 개념을 개관하고 있으며, 제 3장은 자료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에 관련된 도전과제들에 대해 강조하였다. 마지막 부분에는 개발된 지표를 향후 적용하고 개발하는 데에서 취하는 가능한 단계들을 소개하면서 지표개발 의 점검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에서 제시한 내용은 2010년 발간된 유럽연합 청소년인권지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발췌하여 정리·소개한 것이다(FRA, 2010).

(1) 개발 기준과 개념적 틀

유럽연합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슈를 선정하고 지표를 개발하였다.

-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비준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개발한 아동 권리 틀에 입각한 것
- 유럽연합(EU) 역량의 범위에 부합한 것
- 영역별 지표 개발에는 유럽연합(EU)의 중요한 부가적 가치들이 있는 것
- 아동들이 중요한 것으로 규명한 것
- 지표를 적용하는데 사용할 접근 가능한 기존의 좋은 연구와 데이터가 있는 것
- 영역에서의 지표에 대한 유럽연합(EU) 수준에서의 정책 관심의 표시가 있는 것

보고서는 아동에게 측정 가능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는 유럽연합(EU) 활동의 구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너비 보다는 깊이를 우선으로 하고, 어떻게 유럽연합(EU)법과 정책이 아동 권리에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 의해 설정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재강화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4개의 핵심 영역에 관하여 분석하도록 도우며 아동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유럽연합(EU)의 조항들에 관한 중요한 부분을 파악하게 한다(FRA, 2010: 8).

-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4.1 섹션)
-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4.2 섹션)
- 적절한 생활수준(4.3 섹션)

- 교육, 시민성 및 학교와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의 참여(4.4. 섹션)

한편,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핵심 특징에 의해 특징화되는 구체적인 개념적 분석들에 입각하여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규범적 분석틀로 채택하였다는 점, 둘째, 유럽연합(EU)의 역량의 한계를 존중한다는 점, 셋째, 아동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점, 넷째는 ‘아동 복지(child well-being)’지표가 아니라 ‘아동 권리(child rights)지표를 개발한다는 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기존의 지표 세트에 입각하여 보완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는 점 등이다(FRA, 2010).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의 인권보고서에서 규명한 핵심지표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에서 개발한 군집에 상응한다. 그러나 가능한 유럽연합(EU) 역량을 지키고 현존하는 유럽연합(EU) 활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클러스터에 포함된 모든 영역이 완전히 또는 체계적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보고서에서 나타나는 착취와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에 관한 지표는 일부는 가족 보호(남용과 방임, 재할, 19조와 39조)에 그리고 일부는 특별보호조치(성적, 경제적 착취, 재할, 32-36조, 39조)에 관련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남용, 폭력, 착취 및 인신매매에 관한 EU활동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호 관련되며, 유럽연합(EU) 수준에서의 관련 입법이 동일한 법적 기반에서 채택되었다는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하나의 핵심영역 아래 그룹화하였다(FRA, 2013: 1-2).

또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유럽연합의 보고서는 아동 복지지표가 아니라 이외는 구별되는 아동 권리지표를 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 복지지표가 아동의 삶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 반면에 아동 권리지표는 아동 및 아동에 관한 사안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아동 권리지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아동 권리지표는 명료하게 정의된 법적 개념과 정책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둘째, 아동 권리지표는 평가적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아동의 견해를 포함하는 것은 아동 권리지표의 적용에는 중심적인 일이다(Carvalho, 2008).

(2) 지표의 선정과 개발 범위

유럽연합 보고서의 지표개발의 첫 단계는 지표연구와 문헌에 관한 많은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었다. 여기에는 인권과 발달에 관한 광범위한 분야에서 수행된 것과 유럽연합(EU) 수준, 그리고 특히 아동 권리 및 복지와 관련되어 수행한 것이 포함된다. 지표 개발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국가수준, 유럽연합

(EU) 수준, 그리고 국제적 수준에서의 아동 권리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그들의 지표개발 경험과 연구 수행,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하는 정책개발의 경험을 도출하였다. 온라인 토론 포럼, 온라인 설문조사, 자문회의, 그리고 일대일 핵심가 면담 등을 수행하였다(FRA, 2013).

지표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첫째는 유럽연합(EU)법과 정책이 아동권리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그 영향은 어느 정도 주는가? 둘째는 유럽연합(EU)법과 정책이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아동권리 원칙과 실천례를 지키면서 재강화하는가? 그리고 셋째는 이러한 실천례와 원칙들이 국가 수준에서 적절히 지켜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지켜지는가? (FRA, 2010: 19)

지표의 내용은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4가지 일반원칙에 의해 정의되는데 비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 CRC 2조), 아동이익 최상의 원칙(Best interest - CRC 3조), 생명, 생존, 발달의 원칙(right to life, survival, and development - CRC 6조), 참여권(child participation - CRC 12조) 등이다.

유럽연합(EU) 보고서는 이러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널리 인정되어 사용되고 있는 매트릭스를 사용하여 구조, 과정, 성과 측정으로 구성하였다. 유럽연합의 경우 구조적 지표는 특별한 아동 권리 조항의 실현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제도적·예산적 메카니즘뿐만 아니라, 법적 도구의 존재를 반영한다. 과정지표는 구조적 조항들을 실행하기 위해 국내적, 지역적 또는 현지 수준의 노력을 반영한다. 성과지표는 아동이 개입과 행동프로그램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정도뿐만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의 아동권리의 실현 상태에 관한 개인적이며 집합적인 달성정도(attainments)를 반영한다. 통계적으로 수량화할 수 있는 경향이지만 그러한 비교적 데이터가 이용가능하거나 할 수 있다면 질적인 수단을 통해서도 측정된다(FRA, 2013: 1-2).

이와 같이 지표를 구조·과정·성파로 측정하는 모델은 유사한 연구들도 있지만, 특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아동 복지지표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단순히 성과에 초점을 맞춘 지표로부터 정책의 수행과 영향을 보다 잘 반영하는 지표로 변화된 것을 말한다.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의 연구진은 세 가지 지표 범주로 분류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균형 있는 접근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적절한 생활수준과 교육, 시민성 그리고 문화활동 등의 일부 핵심 영역에서는 성과지표에 초점이 많아지기도 하였고, 가족 환경과 대안적 보호, 그리고 폭력과 착취 등의 다른 영역에서는 과정 지표가 지배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접근법은 각 지표 집단의 이용가능성이나 비교 가능한 자료가 부분적으로 반영된 것이며, 아동의 삶에 관한

유럽연합(EU)의 조항들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보다 평가적이고 질적인 접근을 하는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데이터 이용가능성과 비교가능성

유럽연합(EU) 인권보고서에 제시된 각 지표군은 가장 관련성이 있으면서 믿을 만한 국제적이며 비교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자료를 수집하는 시점에서 참여적이며 아동 중심적인 접근을 한 자료를 얻는 것이다. 이 일은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비교정책분석에서의 아동에 대한 관심의 결여는 어느 정도 비교적 낮은 정치적 우선순위가 유럽연합(EU) 수준의 아동 이슈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한다(FRA, 2010: 23).

최근에 유럽연합(EU)의 공식 데이터 수집 기구인 유럽연합통계청(Eurostat)은 보다 유럽연합(EU)에 적합한 인구사회학적, 이주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러한 자료에서도 아동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통계는 아동을 분석수준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드물며, 취급하는 경우에도 11세 이상의 연령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확실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기울여졌다(FRA, 2013: 23; FRA, 2013).

(4) 주요 지표의 예시

유럽연합(EU)의 인권보고서에서 제시된 지표는 적용되고 시험되는 시범적 조합을 구성한다. 각 지표는 유럽연합(EU)법과 정책의 구체적 영역을 개관하는 부분, 지표가 측정하려고 하는 유엔아동권리 협약(UNCRC)의 구체적인 원칙, 그리고 지표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원에 대한 내용을 수반한다. 각 지표마다 따로 각주를 달지 않은 경우는 성별, 연령집단, 인종, 지역(도시 또는 농촌), 장애와 망명 신청 상태 등을 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FRA, 2010: 26; FRA, 2013).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체적인 지표 집단별 각 핵심영역의 범위에 대한 총괄표와 지표영역별 지표와 지표 집단, 하위 지표 집단의 예시 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시된 구조·과정·성과 지표의 예시로 가족정의 분야의 지표 중 국가별 이혼과 부모분리에 대한 것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가족 환경과 대안적 보호,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적절한 생활수준, 그리고 교육, 문화, 적극적 시민성과 학교와 스포츠 관련 활동에서의 참여 등의 네 가지 핵심 분석 영역 내에서 다음과 같은 지표 집단과 하위 집단이 개발되었다(FRA, 2010).

- 가족 환경과 대안적 보호
 - 국가별 이혼과 부모 분리에 따른 분리된 아동
 - 이주에 따라 분리된 아동
 - 가족 재결합과정
-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
 - 아동 인신매매
 - 성적·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
 - 아동에 대한 폭력
- 적절한 생활수준
 - 아동 수입 빈곤
 - 정부 개입의 영향
 - 아동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수입, 빈곤 외의 측면
- 교육, 문화, 적극적 시민성과 학교와 스포츠 관련 활동에서의 참여
 - 교육의 접근 가능성
 - 교육의 적합 가능성
 - 아동의 개인적 발달
 - 아동의 적극적 시민성과 학교, 문화, 스포츠 관련 활동에서의 참여

표 II-2-2 지표 집단별 각 지표 핵심영역의 범위

지표 영역	지표 집단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가족정의: 국가별 이혼과 부모 분리 - 보호, 접근, 유지 명령 집행 - 아동 복지 모니터링 메카니즘	이주로 인한 가족과 분리된 아동의 권리와 복지 - 이민 과정에서의 아동 참여 - 이민과정의 적응	가족 재결합 - 아동을 위한 가족 재결합에 호의적인 조항의 존재 - 아동관련 사례에서 신속한 가족 재결합절차의 존재 - 가족 재결합 후 아동 복지를 보장하는 조항의 존재
착취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아동 인신매매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성적·경제적 착취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아동에 대한 폭력 - 희생자 확인 - 희생자 보호 - 가해자 처벌 - 예방

지표 영역	지표 집단		
적절한 생활수준	아동 수입 빈곤 - 상대적 아동빈곤 - 관계적-세대적 아동빈곤 - 빈곤 격차 - 절대빈곤 - 빈곤 지속성	정부 반응의 효과 - 아동에 대한 상대적 공공 지출 - 상대적 아동 빈곤에 대한 정부 개입의 영향 - 아동공공부조수급	아동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수입, 빈곤 이외의 측면들 - 가족의 경제적 여유 - 아동 교육
교육, 문화, 시민성, 학교와 스포츠 관련 활동참여	교육 접근 가능성	교육 적합 가능성	개인적 발달

* 출처: FRA(2010).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Conference Edition). pp. 26-29. 종합 재구성

다음은 지표 영역별 지표와 지표집단, 하위지표 집단의 예시로 착취와 폭력으로부터의 보호(지표영역), 아동에 대한 폭력(지표집단과 하위집단)의 경우를 제시한 것이다. 지표의 영역이 어떻게 구분되고 있으며, 지표유형으로 구조·과정·성과지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핵심데이터에는 해당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한 것이다(FRA, 2010).

표 II-2-3 지표집단과 하위집단의 예시(아동에 대한 폭력 지표의 경우)

지표 집단	아동에 대한 폭력 (violence against children)
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가	유럽연합(EU)은 이미 아동을 폭력에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측정치를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최근의 유럽의회 결정은 ‘아동,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고 이에 맞서 싸우며 희생자와 위기에 처한 집단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생략)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 관련사항	- 19조(모든 종류의 폭력으로 부터의 보호), w, e, 6, 12 (CRC 일반 원칙), 24(건강권), 28.2(폭력없는 학교 규율), 37, 39, 9, 20, 25, 27, 24, 26, 28, 29, 31 - 일반 논평 8(2006)
기타 관련 국제조항	-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에 관한 국제협약(1979) - 장애인 인권 협약(2006) - 유럽인권협약(1950)
유럽연합(EU) 관련사항	- 유럽연합(EU) 기본권 헌장 24조 (아동의 권리) - 아동 인터넷 포르노와 투쟁하는 2009년 5월 29일 유럽의회 결의
지표하위집단	희생자의 확인 (identification)
지표 유형	구조·성과
지표	- 아동에 대한 폭력 심각성·차원·형태와 아동을 위한 서비스의 효과에 관한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국가 예산의 존재 - 아동방임으로 아동복지당국에 보고된 아동의 수

지표하위집단	희생자 보호 (protection)
지표유형	구조 · 성과
지표	- 모든 환경(가정, 학교 보호기관과 사법기관을 포함하여)에서 아동을 규율하는 수단으로써 모든 형태의 폭력을 금하는 법적 조항의 존재 - 가정 · 학교에서 교육의 수단으로서 아동에 대한 폭력을 수용하는 성인과 아동의 비율이 감소하는 증거
지표하위집단	가해자 기소 (prosecution)
지표유형	구조 · 과정 · 성과
지표	- 아동에 대한 폭력사건의 수(신체적 폭력과 성적 남용 포함) - 아동 희생자 · 폭력의 증인을 위해 법정에서 아동과 성별에 민감한 절차를 보장하는 목적을 가진 법적 조항의 존재
핵심 데이터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조약 기구 DB,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OPSC) 국가 보고 절차, NGO 모니터링(비공개) 보고서 - UNICEF 복합지표군 설문조사(MICS) 3 (아동 보호) - 세계보건기구(WHO), HBSC,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의 아동 사망률, 폭력, 따돌림에 대한 DB - EU Daphne 프로그램 최상의 실천 보고서 검토 - 국가별 입법과 판례법 분석 - 국가별 통계 (결찰, 법원, 통계청) - 국가 실행 계획 - 국가경찰문서 · 교육전략 - 아동예산 분석 등

* 출처: FRA(2010). Developing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Conference Edition). pp. 86-90에서 재구성

또한 유럽연합 기본권 기구(FRA)는 2010년의 연구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각 영역별 지표개발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3년 현재 가족 정의 분야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전의 지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으며, 유엔(UN)에서 제시한 구조지표, 과정 지표, 성과지표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유럽이사회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른 지표와 브뤼셀 II BIS/Maintenance 규정에 따른 지표의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유럽이사회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른 지표의 주요 내용을 예시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FRA, 2013, 6-7).

표 II-2-4 유럽연합 지침에 따른 지표예시(가족정의: 국가별 이혼과 부모 분리)

	구조지표	과정지표	성과지표
비차별	아동에 대한 비차별적 처우를 보장하는 법적 의무의 존재	전체 아동인구 중에서 전국적 가족정의과정을 포함하는 아동의 빈도	전국적인 가족 사례와 관련한 차별 불만의 빈도
정보권	단기적 기간 내에 아동에게 정보를 알려주는 법적 의무의 존재	웹사이트와 구조요청 전화(help-lines) 등의 정보서비스의 이용가능성	사법적, 비사법적 청문절차에 관련된 아동의 빈도
개인데이터 보호	아동에 관한 정보나 개인데이터를 공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의 존재	가족 사례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대한 연수에서 데이터 보호 이슈의 포함 여부	아동과 관련한 경찰, 관리, 판사, 법 실천가들이 데이터 보호정책을 위반한 사례의 빈도

* 출처 : FRA(2013), Child rights' indicators in the field of family justice, pp. 6-7에서 재구성

6) 국제 인권지표 연구의 시사점

인권지표에 대한 수요와 사용은 권리를 이행·모니터·실현하는 체계적인 작업과정의 일부이다. 국가인권행동계획, 발전과 거버넌스에 대한 기초선 연구(base-line studies)와 인권기반 접근, 유엔 인권 메카니즘의 감시 사업(oversight work), 그리고 지역적, 국가적 인권기구들과 함께 지표는 인권을 집행하고 그 이행을 측정하는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통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인권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지표를 찾는 방향으로 옮겨가야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 통계는 간접적이고 명료하게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만, 구체적 지표는 관련한 인권 규범 틀에 내재화되고 잠재적 사용자에게 의해서 해석되고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까지 고찰한 인권지표 개발을 위한 주요한 국제적 연구동향을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생각할 수 있다. 당사국의 국제 인권도구를 준수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한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의미 있고, 종합적이며, 하나의 수용할 수 있는 접근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권지표 연구의 대안적 접근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준을 따라가고 있는 한국의 현실에서 수용하거나 비판적으로 활용할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인권 모니터링 지원을 위해 양적, 질적 지표를 사용하는 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지만, 지표란 단지 하나의 도구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질의 자료에서 적절히 구성된다면, 인권 평가에 가치를 추가한다는 점에서는 유용하다. 지표는 인권의 실행을 보다 목적적이며 투명한

게 하고 확실한 후속적 방법론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표는 질적 또는 내러티브 기반 평가, 사법적이거나 준사법적 평가 및 종합적 평가를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들은 그 한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앞서 고찰한 양적 지표를 사용한 인권모니터에 관한 주도적 연구들은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공공정책을 가이드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인권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분석틀을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권사건기반 연구, 사회경제적 행정통계 연구, 가계인식 설문조사 연구, 그리고 전문가 판단 데이터 사용 등은 각기 나름의 영역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인권을 하나로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는 합의된 지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이다. 이들 이니셔티브들 중의 일부는 하나의 하위 세트의 인권도구의 준수와 위반에 관한 제한된 측면에 대응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Malhotra & Fasel, 2005).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종합한 전체적 분석틀을 사용한 지표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기존의 연구동향에서 각기 다른 데이터 발생 메카니즘의 효과성과 이용 가능한 정보를 당사국에 의한 인권조약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데 적합한 지표로 변환하는 방법과 관련된다. 분명히 양적 지표와 질적 평가를 위한 데이터 수집과 공포의 객관적 방법에 입각한 제도화된 접근법은 인권조약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접근법은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고 인권 평가에서 양적 지표가 보다 수용적임을 말해준다. 특히, 사회경제적 통계와 다른 행정 통계들의 잠재적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으나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일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국제적·국가적·국가 내부적 수준의 행정기관에 의해 수집된 사회경제적 지표에 관한 이용 가능한 정보들이 인권지표로 사용되는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이는 보다 적합도가 높은 인권지표를 위한 통계설계와 자료수집 및 측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계는 그것이 제한적이며, 이용 가능한 경우에도 여러 연령에 걸친 통계수치에서 분해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넷째, 유엔인권지표와 유럽연합 인권지표 연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편적인 인권기준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념적 방법론적 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인권규약의 관련조문과 인권위원회의 일반논평에 제시된 인권과 관련된 규범적인 내용을 담은 지표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김태홍 외, 2012). 실제로,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국제아동보호기구 등의 국제단체와 미국, 독일, 아이슬란드 등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임희진·김현신, 2011). 한국에서도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및 청소년인권 인프라 등과 관련된 영역별 또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등 몇 가지 범주로 분류하거나 개발한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영역별 범주화를 통한 접근은 지표체계의 분류의 편의성은 제공해주지만, 이론적 체계를 결여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엔의 인권지표와 유럽연합의 인권지표는 이러한 점에서 지표체계를 구분하는 이론적, 방법론적, 경험론적 접근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한국의 아동·청소년인권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적 기준에 따른 지표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론적 체계를 갖는 구조 속에서 지표를 개발하는 일은 인권수준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위해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점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은 지표개발의 방향과 정량지표의 구성과 관련한 논의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Andrew & Kuafman, 1999).

첫째, 지표의 자료원에 대한 것으로 유엔 인권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데이터, 센서스와 서베이, 1차적 사회연구데이터 등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표구성에서 비용과 이점을 고려하는 것이다. 비용이 많이 들거나 복잡한 지표를 구성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접근이 용이한 기존자료의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표는 보다 나은 계획을 위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동일 국가 내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 다양한 지역별 실태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향후의 정책수립을 위해 효과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넷째, 지표는 지속적 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의 실행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기적으로 결과를 공표하는 일은 사회의 진전 상태를 알게 해준다.

3.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검토(2009~2012)

(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의 발전과정

먼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연구의 발전과정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3-1】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연도별 추진과정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내용은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에 기반하여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1년 아동권리협약 가입에 따라 한국정부가 국제조약 이행에 대한 의무를 지니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인권지표 개발과 지표에 근거한 인권모니터링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었고,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기모니터링 과정에서 이에 대한 권고가 강화되면서 2006년도에 5개년 연구로 설계된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의 1차년도 연구가 착수되었다.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인권지표를 “청소년인권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회체제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에 비추어 청소년인권이 어느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고, 청소년인권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청소년인권 실태와 변화양상을 나타내는 의미있는 통계치(최창욱 외, 2006: 23)”라고 정의하고, 청소년 인권의 현 상태와 변동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2006년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는 타당성,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실용성, 해석의 용이성, 계속성의 지표선정 기준에 따라 5개 대분류(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인권인프라) - 20개 관심영역 - 56개 세부관심영역 - 총 152개의(생존권 36개, 보호권 34개, 발달권 35개, 참여권 31개, 인권인프라 16개) 개별지표 항목으로 개발되었는데, 이 중 객관적 계량화가 가능한 객관적 지표가 77개, 주관적 태도나 의식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가 75개이다.

2007년도에는 주관적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측정가능성, 국제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기준을 중심으로 지표 선별 후 이에 대한 조사문항 개발작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생존권 영역 22개, 보호권 영역 29개, 발달권 영역 31개, 참여권 영역 14개 등 총 96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이종원·장근영·김형주, 2007).

2008년도에는 인권실태 국제비교 조사를 목적으로 하여 개별지표의 타당도와 중요도,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을 중심으로 지표선별 및 문항개발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총 115개 조사문항(생존권 15개, 보호권 38개, 발달권 43개, 참여권 17개, 권리일반·인프라 2개)을 개발하여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스웨덴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비교하였다(김영지·김희진·김진숙·김진호·안재희·이경자, 2008). 이 해에는 5개국 공통조사 문항 개발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지표체계 검토보다는 5개국 조사가능성을 중심으로 국가별 연구주체가 설문지 문항을 협의·조정하는 것이 주요 연구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2006년에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2009년과 2010년도 연구를 통해 수행된 셈이다. 이 두 해에는 2006년에 설정한 4개의 인권영역을 2개씩 나누어(2009년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영역, 2010년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영역) 해당영역의 지표체계를 수정·보완하고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객관적 지표에 대해서는 행정통계나 관련 분야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지표결과를 생산하였다(모상현·김희진, 2009;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2009년과 2010년도의 지표체계 검토 결과 생존권 13개, 보호권 16개, 발달권 18개, 참여권 17개(1개 삭제, 18개 추가) 등 총 64개의 개별지표 항목이 추가되었다. 설문지 개발을 위해 측정가능성, 비교가능성, 조사실용성, 상대적 중요성을 기준으로 관심영역별 대표항목을 선별하여 생존권 영역 46개, 보호권 영역 99개, 발달권 영역 65개, 참여권 영역에 59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총 269개의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2009년 6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가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면서(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 국가차원의 통계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기초자료로서의 공신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인권지표체계와 지표항목은 <표 II-3-1>과 같다.

표 II-3-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와 조사항목(2006~2010)⁸⁾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1. 생존권	1-1. 고유의 생명권	1-1-1. 출생	1-1-1-1. 15-19세 여성 청소년 1,000명당 출산율
		1-1-2. 생명	1-1-2-1. 청소년 인공 임신중절률
			1-1-2-2. 청소년 타살률
			1-1-2-3. 0세의 기대여명*
		1-1-3. 사망	1-1-3-1. 청소년 사망률
	1-2. 신체적 생존권	1-2-1. 수명	1-2-1-1. 15세 청소년 기대여명
		1-2-2. 빈곤	1-2-2-1.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사는 청소년의 비율
			1-2-2-2. 최저생계비 미만 청소년의 비율
			1-2-2-3.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
			1-2-2-4.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3. 질병	1-2-3-1. 청소년 유병률
			1-2-3-2. 청소년 주요만성질환 유병률
			1-2-3-3. 청소년 HIV/AIDS 감염률
		1-2-4. 영양	1-2-4-1. 청소년 1일당 영양권장량 75%미만 섭취자 비율
			1-2-4-2. 청소년 아침식사 결식 비율
			1-2-4-3. 학교 급식 만족도*
		1-2-5. 신체 충실도	1-2-5-1.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저체중률
			1-2-5-2. 청소년 신체질량지수상 비만을
			1-2-5-3. 신체충실에 대한 자기평가*

7) 조사문항 수는 중등용 설문지 기준으로 배경변인 문항은 제외한 것이며 하위 세부문항들을 포함한 것임.

8) 이 표는 2006년 개발된 청소년인권지표체계(최창욱 외, 2006: 14-157)를 기준으로 하여, 2009년과 2010년에 추가된 지표를 *(2009년도 추가지표)와 **(2010년도 추가지표)로 표시함.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1-2-6. 건강	1-2-6-1. 청소년 장애유형별 장애율
			1-2-6-2. 청소년 흡연율
			1-2-6-3. 청소년 음주율
			1-2-6-4. 청소년 규칙적 운동실천율
			1-2-6-5. 청소년 주관적 건강평가
			1-2-6-6. 청소년 스트레스 인식정도
			1-2-6-7. 수면시간*
			1-2-6-8.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1-2-6-9. 건강 검진율*
			1-2-6-10. 전반적인 건강에 대한 인식*
		1-2-7. 치료	1-2-7-1.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래수진율
			1-2-7-2. 청소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입원수진율
			1-2-7-3. 청소년 의료급여 대상자의 비율
			1-2-7-4. 질병에 대한 본인과 보호자의 대처 방식*
		1-2-8. 안전	1-2-8-1. 범죄피해에 대한 청소년의 두려움
			1-2-8-2. 사회 안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1-2-8-3. 학교 급식의 안전도에 대한 인식
		1-2-9. 사고	1-2-9-1. 청소년 자동차 사고 사망자율
			1-2-9-2. 청소년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1-2-9-3. 청소년 학교 안전사고 발생률
			1-2-9-4.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률
	1-3. 질적 생존권	1-3-1. 자살	1-3-1-1. 청소년 자살률
		1-3-2. 가족	1-3-2-1. 소년소녀가정 비율
			1-3-2-2. 조손가족 청소년 비율
			1-3-2-3. 가출청소년 비율
			1-3-2-4.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비율*
		1-3-3. 사회보장	1-3-3-1. 청소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비율
			1-3-3-2.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대한 청소년의 만족도
			1-3-3-3.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과 만족도*
			1-3-3-4. 정부의 어려운 아동·청소년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1-3-4. 행복감	1-3-4-1. 행복한 정도와 행복한 이유*
			1-3-4-2.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보호권	2-1. 학대 및 착취로 부터의 보호	2-1-1. 신체적 학대	2-1-1-1. 학교폭력발생률
			2-1-1-2. 체벌경험률
			2-1-1-3. 신체적 체벌에 대한 인식*
		2-1-2. 정서적 학대	2-1-2-1. 정서적 체벌경험*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2-1-3. 부모의 방임	2-1-2-2. 정서적 차별에 대한 인식*
			2-1-3-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방임 유형과 정도*
		2-1-4. 성매매 및 성적 착취	2-1-4-1. 청소년의 성폭행피해발생률
			2-1-4-2. 성매매의 연간발생률
			2-1-4-3. 미혼부모의 발생률
			2-1-4-4.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 현황*
			2-1-4-5. 청소년의 성매매 경험 현황*
			2-1-4-6. 성교육 시점과 그 효과*
		2-1-5. 경제적 착취	2-1-5-1.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사업취업률
			2-1-5-2. 평균근로시간
			2-1-5-3. 성인 근로자 평균 임금대비 청소년 임금비율
			2-1-5-4. 최저임금미보장 근로청소년비율
			2-1-5-5. 근로여건 만족도
			2-1-5-6.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유형과 인식*
	2-2. 차별로부터의 보호	2-2-1. 성차별	2-2-1-1. 양성평등의식지수
			2-2-1-2. 성적 차별경험*
		2-2-2. 민족차별	2-2-2-1. 인종별 취학률
			2-2-2-2. 혼혈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2-2-2-3. 이주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2-2-3. 지역차별	2-2-3-1. 지역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2-2-3-2. 지역·거주지로 인한 차별경험*
		2-2-4. 연령차별	2-2-4-1. 연령차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2-2-4-2. 연령으로 인한 차별경험*
		2-2-5. 고용차별	2-2-5-1. 청소년의 직종별 취업 인구
			2-2-6-1. 장애청소년의 취학률
		2-2-6. 장애차별	2-2-6-2. 장애청소년취업률
			2-2-6-3. 장애청소년에 대한 인식
			2-2-6-4.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
		2-2-7. 기타 유형의 차별	2-2-7-1. 학교성적으로 인한 차별경험*
			2-2-7-2. 경제적 형편으로 인한 차별경험*
			2-2-7-3. 신체·외모적 조건으로 인한 차별경험*
			2-2-7-4. 종교로 인한 차별경험*
			2-2-7-5. 가정 결손으로 인한 차별경험*
2-3. 위기·응급상황으로부터의 보호	2-3-1. 대안적 양육	2-3-1-2. 대안적 양육시설 운영예산	2-3-1-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청소년의 비율
			2-3-2-1. 청소년 범죄율: 유형별/연령별/동기별/교육수준별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2-3-2-2. 범죄 및 비행의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비율
			2-3-2-3. 누범률
			2-3-2-4. 청소년문제해결전화(1388) 접수건수 대비 처리율
			2-3-2-5.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2-3-2-6. 범죄청소년 1인당 교정예산액
			2-3-2-7. 학교에서의 비행 및 일탈 행동 피해 경험과 대처*
		2-3-3. 가출로부터의 보호	2-3-3-1. 가출청소년 비율
			2-3-3-2. 가출청소년보호시설수
			2-3-3-3. 가출청소년의 보호시설수용 비율
			2-3-3-4. 가출원인과 서비스 시설 이용 유형*
	2-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부터의 보호	2-4-1. 청소년 유해 시설로부터의 보호	2-4-1-1. 학교주변유해업소 수 및 연간 단속 수
			2-4-1-2.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수
			2-4-1-3. 청소년 유해업체 아르바이트 유형*
			2-4-1-4. 청소년 유해업체 이용유형 및 빈도*
			2-4-1-5. 담배, 주류 구입 및 유해시설 이용 성공률*
			2-4-1-6. 청소년 유해물, 유해매체, 유해업체 예방교육과 효과*
		2-4-2. 청소년 유해매체로 부터의 보호	2-4-2-1. 청소년유해매체모니터링 실적
			2-4-2-2. 청소년의 유해 매체 이용 현황*
			2-4-2-3.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 보호*
			2-4-2-4.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경험 종류 · 대처*
	2-5. 청소년 사생활 침해로부터의 보호	2-5-1. 교내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2-5-1-1. 학교 내에서 청소년 인권침해 유형과 인식*
3. 발달권	3-1. 인지적 발달	3-1-1. 인지발달기회	3-1-1-1. 취학률
			3-1-1-2A. 중퇴율
			3-1-1-2B. 학교등교거부이유**
			3-1-1-3. 대학진학률
			3-1-1-4.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
			3-1-1-5.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
			3-1-1-6.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3-1-1-7. 하루 평균 학습시간**
		3-1-2. 인지능력	3-1-2-1. 학습부진아 출현율**
			3-1-2-2. 창의성 지수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3-2. 정서적 발달	3-2-1. 정서발달환경	3-1-2-3. 문제해결능력 지수
			3-1-2-4.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1-2-5. 지능지수
			3-2-1-1.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2. 교사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 정도
			3-2-1-3.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가치부여 정도
			3-2-1-4. 청소년 여가시간과 유형**
			3-2-1-5. 청소년 여가시설 수
		3-2-2. 정서적 안정	3-2-1-6. 생활영역에서의 만족도**
			3-2-1-7. 고민유형과 고민상담**
			3-2-1-8. 부모·자녀관계**
			3-2-2-1. 우울증 지수
			3-2-2-2. 스트레스 지수(학업)
			3-2-2-3. 행복(심리적 안정) 지수
			3-2-2-4. 자존감 수준**
			3-2-2-5. 자기 효능감**
			3-2-2-6. 정서 조절감**
			3-2-2-7. 정서적 고립감**
			3-2-2-8. 낙관성**
			3-2-2-9. 학교생활의 적응**
	3-3. 사회적 발달	3-3-1. 사회성 발달기회	3-3-1-1. 청소년 1인당 평균 단짝 수
			3-3-1-2A. 청소년 1인당 청소년단체/시설 프로그램 참여횟수
			3-3-1-2B.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
			3-3-1-3. 청소년 1인당 월평균 자원봉사 활동 시간
			3-3-1-4. 청소년 1인당 평균 가입동아리 수
		3-3-2. 사회성 발달정도	3-3-1-5. 사회적 고립감 인식 정도
			3-3-2-1. 갈등해결능력지수(기존의 갈등이해능력)**
			3-3-2-2. 문화감수성 지수
			3-3-2-3. 타문화수용능력 지수**
			3-3-2-4. 리더십능력 지수
	3-4. 직업적 발달	3-4-1. 진로준비기회	3-4-1-1. 월 평균 진로교육 실시 시간 수
			3-4-1-2. 진로탐색기회의 충분성
			3-4-1-3. 진로교육에 대한 만족도
		3-4-2. 직업능력	3-4-2-1. 진로성숙도 지수
			3-4-2-2. 직업기초능력 수준
	3-5. 신체적 발달	3-5-1. 신체발달 기회	3-5-1-1. 청소년 주당 평균 운동시간
			3-5-1-2. 청소년의 1일 평균 수면시간
			3-5-1-3. 건강에 대한 관심과 평가**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4. 참여권	4-1. 자기 결정권 (=청소년의견 존중)과 사생활 보호	3-5-2. 신체적 능력	3-5-2-1. 50m 달리기
			3-5-2-2. 근지구력(팔굽혀펴기/팔굽혀 매달리기)
			3-5-2-3.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3-5-2-4.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
			3-5-2-5. 심폐지구력(오래달리기)**
			3-5-2-6. 유연성(앉아 윗몸 일으키기)**
	4-2. 표현의 자유	4-1-1. 종교 결정권	4-1-1-1. 청소년의 종교 자유에 대한 부모의 존중도
			4-1-1-2. 종교재단별 설립 학교 수 및 재학생의 비율
			4-1-1-3. 종교대체과목 개설 및 자유선택 허용비율
		4-1-2. 가정사에 대한 결정권	4-1-2-1. 가정의 대소사 결정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 정도
			4-1-2-2. 부모의 이혼 시 청소년의 부모선택권이 반영되는 사례 비율
			4-1-2-3. 부모의 이혼 시 면접권 확보비율
		4-1-3. 교육 및 진로 결정권	4-1-3-1. 상급학교 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3-2. 진로선택 시 부모의 청소년 의견존중 정도
		4-1-4. 문화·여가 활동 결정권	4-1-4-1. 문화 및 여가활동 선택에 대한 부모의 청소년 의견 존중정도
			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4-1-5. 사생활에 대한 결정권	4-1-5-2. 사생활의 자유와 적법절차의 권리**
			4-2-1-1. 두발 및 복장 자율화하는 학교의 비율
	4-3. 집회·결사의 자유	4-2-1. 사적 취향의 표현	4-2-1-2. 부모의 청소년의 두발 및 복장에 대한 규제의 정도
			4-2-2-1. 교지 및 학교신문 발행하는 학교의 비율
		4-2-2. 학교에서의 의견 표현	4-2-2-2. 교내 징계 시 의사 소명권이 있는 학교의 비율
			4-2-2-3. 학생으로서 의견 표명 정도
		4-2-3. 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1. 대중매체를 통한 표현활동**
			4-2-3-2. 인터넷 이용 표현활동**
	4-3. 집회·결사의 자유	4-2-4. 청소년 발언권 존중정도	4-2-4-1. 청소년 의견에 대한 사회의 인식**
		4-3-1. 학교에서의 집회·결사	4-3-1-1. 교내 자치회가 있는 학교의 비율
			4-3-1-2. 학생자치회에 참여한 학생의 비율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4-3-2. 학교밖에서의 집회·결사	4-3-2-1. 청소년 관련단체에 가입한 청소년의 비율
			4-3-2-2. 청소년 관련단체 가입 및 단체 활동에 대한 학교 규제 정도
			4-3-2-3. 사회문제에 대한 참여행동 경험**
			4-3-2-4.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정도**
	4-4. 정보접근권 및 정보참여	4-4-1. 도서에 대한 접근	4-4-1-1. 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4-4-1-2. 청소년 1인당 도서대출 현황
		4-4-2. 인터넷에 대한 접근	4-4-2-1. 청소년 가구의 컴퓨터 보유율
			4-4-2-2. 청소년 가구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한 비율
			4-4-2-3.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4-4-3. 알권리	4-4-3-1. 청소년의 법적 권리안내 정도**
			4-4-3-2. 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4-5. 사회참여 및 참정권	4-5-1. 사회참여	4-5-1-1.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4-5-1-2. 부모나 학교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재 정도
			4-5-1-3. 청(소)년 실업률
			4-5-1-4. 문화적 활동 참여현황**
			4-5-1-5. 청소년 정책참여 동아리 참여율
			4-5-1-6.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2. 학교에서의 참여	4-5-2-1. 학생 대표 피선출권을 제한하는 학교비율
			4-5-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학교비율
			4-5-2-3.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참여 보장하는 학교 비율
			4-5-2-4. 교육활동 결정과정 참여 정도**
		4-5-3. 참정권	4-5-3-1. 청소년의 선거참가율
			4-5-3-2. 선거연령에 대한 인식/선거 참여 의향**
	4-6. 참여관련 인식		4-6-0-1. 참여 의의와 필요성**
			4-6-0-2. 참여의 장애**
			4-6-0-3. 참여 효과**
			4-6-0-4. 참여 활성화 방안**
			4-6-0-5. 우리사회의 참여권 보장 수준**
5. 청소년인권 인프라	5-1. 청소년연구	5-1-1. 청소년 총인구	5-1-1-1. 총 인구수
		5-1-2. 특수 청소년인구	5-1-2-1. 장애 청소년 인구수
			5-1-2-2. 한부모가정 청소년 인구수
			5-1-2-3. 이주노동자 자녀 청소년 인구수
			5-1-2-4. 다문화가정 자녀 청소년 인구수
	5-2. 법·제도 구축	5-2-1. 청소년인권 관련 법의 정비	5-2-1-1. 청소년인권관련 법의 정비 실태와 기능

영역	관심영역	세부 관심영역	개별지표항목
		및 기능	5-2-1-2. 청소년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의 종류
			5-2-1-3. 실제 청소년인권 향상 효과
		5-2-2. 중앙행정조직의 정비 및 활동 노력	5-2-2-1. 청소년인권 관련 중앙정부의 정비 현황
			5-2-2-2. 행정조직의 청소년인권 보호 정도
			5-2-2-3. 중앙행정부의 청소년 향상 노력
			5-2-2-4. 중앙행정부의 청소년인권 증진 효과
		5-3-1.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	5-3-1-1. 비정부조직의 구성 현황
	5-3. 비정부조직	5-3-2. 청소년인권관련 비정부조직의 활동노력	5-3-2-1.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노력
			5-3-2-2. 비정부조직의 청소년인권 증진 실적
			5-3-2-3. 비정부조직의 인권운동에 대한 인지도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수준 연구(2006~2010)’가 종료됨에 따라 2011년부터는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2011~2016)’라는 과제명으로 인권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2011년과 2012년도에는 4개의 영역으로 구분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틀을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틀로 재구성하고 설문문항을 수정·보완하였다(임희진·김현신, 2011; 임희진·김현신, 2012). 지표틀에 따라시민적 권리와 자유(34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18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42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34개), 특별보호조치(8개) 등 5개 영역에 총 136개 지표를 산출하였다.

문항 보완 내용으로, 먼저 2011년 생존권 및 보호권 조사에서는 조사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성매매 관련 3개 문항을 삭제하였다. 2012년 발달권 및 참여권 조사에서는 인권실태와 관련성이 낮은 35개 문항과 2011년도 생존권 및 보호권 조사문항과 중복되는 9개 문항을 삭제하였으며, 현안문제를 반영한 2개 문항을 추가하였다(4-1-5-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지표와 관련된 ‘비공개 상담 가능 여부’, 4-6-0-2 ‘참여의 장애’ 지표와 관련된 ‘참여 공간이나 통로 부족’ 문항). 조사영역별로 보면, 보호권 영역 4개, 발달권 영역 43개, 참여권 영역에서 8개 등 총 55개 문항을 삭제하고, 생존권 영역 2개, 보호권 영역 4개, 발달권 영역 7개, 참여권 영역에서 3개 문항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생존권 영역 56개, 보호권 99개 영역, 발달권 영역 30개, 참여권 영역에 57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총 242개 문항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와 함께 행정통계 및 관련 분야 국가승인통계 등의 자료원을 활용하여 객관적 지표에 대한 결과를 산출하였다. 문항 삭제·추가 외의 보완사항으로 전체적으로 설문구조와 문장 기술방식을 조사대상자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일부 문항의 경우 응답지의 5점 척도를 4점 척도로 수정하였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인권지표체계는 <표 II-3-2>와 같다.

표 II-3-2 2011~2012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⁹⁾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시민적 권리와 자유	표현의 자유 (제13조)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의의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사회참여 경험도	- 사회참여 경험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존중도
		-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정책 수립 및 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의견 반영도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 최근 국회의원 선거의 성별·연령대별 투표율 변화
			- 선거연령 하향 조정에 대한 인식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온라인 매체를 통한 참여 경험률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 정도	-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 제시 가능정도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참여권 보장 수준	- 참여권 보장 수준
			- 참여의 장애요인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 종립 초·중·고등·대학교 현황	- 종립 초·중·고등·대학교 현황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 정도
	결사·집회 경험률	- 결사·집회 경험률	- 결사·집회 경험률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정도에 대한 인식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5조)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조직 및 활동 인정 여부

9) 임희진·김현신(2012).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pp. 343-357. 부록표 '지표의 자료 및 출처' 중에서 지표와 자료 부분만 제시함.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 및 빈도
		-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회수에 대한 인권침해 인식률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학교상황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 학교 내 비공개 상담 가능정도
	정보접근권 (제17조)	-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 어린이도서관 수	- 시도별 공공도서관 수
		- 학교도서관 설치 및 장서 보유율	- 교급별 학교도서관 설치율 - 학교도서관(실)의 학생 1인당 장서수
		- 매체 이용률	- 매체 이용률
		- 유해매체 이용률	-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 경험 및 빈도 - 유해매체물 이용 경험률
		-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유해매체 예방교육 경험률 - 유해매체 예방교육 효과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1항)	- 체벌 경험률	- 최근 1년간의 체벌 경험 여부 및 빈도
		-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체벌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 유무 및 빈도
		-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률
		-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학교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학교에서의 피해 시 대처방법
		-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이버 상에서의 피해 경험 및 빈도 - 사이버 상에서 피해 시, 대처방법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가정 환경과 대안 양육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자녀 관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와의 대화시간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 여부
		- 보육시설 수	-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제20조) 입양 (제21조)	-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소년소녀가정 현황	-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 국내·외 입양 현황	- 소년소녀가정 현황
		- 가출청소년 비율	- 국내·외 입양 현황
		- 가출 시 관련 서비스 이용 경험률	- 가출인 발생 현황
		-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 최근 1년간 가출경험 유무
			- 가출인 처리 현황
			- 아동·청소년의 가출 원인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 가출 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시설 혹은 기관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청소년쉼터 시설 수 및 보호청소년 현황
		- 방임 경험률	-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양육 및 보호기관에 대한 심사 (제25조)	- 평가인증제 통과 어린이집 수	- 연령별 아동학대 사례유형
			-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제23조)	-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 장애 청소년 취업률	-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 시·도별, 학교과정별 일반학급 통합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 인공임신중절률	- 15-44세 유배우부인의 인공임신중절 경험률 변동추이
		- 15-19세 출산율	-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 0세의 기대여명	- 0세의 기대여명
		- 사고 사망률	- 사망의 외인에 의한 연령별 사망률 추이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자살률	- 자살률 추이 - 최근 1년간 자살에 대해 생각해 본 경험 - 자살을 생각하게 된 이유
		- 가정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률	- 최근 1년간 학교 내에서 심하게 다친 경험 유무 및 빈도
		- 범죄 피해건수	-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 거주지 및 학교주변의 범죄 위험에 대한 안전성 인식률
	보건서비스 (제24조)	- 영아 사망률	- 영아 사망률 추이
		- 아동·청소년 사망률	-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 건강검진율	- 최근 1년간 건강검진 여부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아동·청소년) - 치료를 받지 않았던 이유 - 질병에 대한 대처방식(보호자)
		-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의료급여 대상자 수
		- 주관적 건강평가	-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아동·청소년의 건강에 대한 보호자의 관심도
		- 비만율	- 아동·청소년의 비만도 - 아동·청소년의 자신의 체형에 대한 인식률
		- 운동실천율	-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학교 체육시간 제외)
		- 아침식사 결식률	-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
		- 수면시간	- 평일 평균 수면시간
		- 스트레스 인지율	- 스트레스 인지율 추이 -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 행복도	- 행복도 -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 행복의 조건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 성교육 경험률
			- 최초의 성교육 시기 - 최근 1년간 성교육 경험 여부 - 최근 1년간 성교육을 받은 횟수 - 성교육 도움 정도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 흡연율	- 현재 흡연을 추이
		- 음주율	- 현재 음주를 추이
		담배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담배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주류 구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주류 구입 시도 성공률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여부 - 최근 1년간 술집 출입 시도 횟수와 성공률
		- 유해업소 이용 성공률	-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 경험 여부 -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 -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금연 및 음주예방교육을 받은 횟수 -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 약물남용예방교육 도움 정도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 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 빈곤율	- 절대빈곤율 변화 추이 - 지역별 아동청소년 빈곤율 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결식률	- 최근 1년간 가정 형편으로 인한 결식 여부와 빈도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수혜율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정부의 지원수준에 대한 인식	- 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위한 국가의 지원 수준에 대한 인식
	생활수준 (제27조 1항, 2항, 3항)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 방과후 학교 참여실태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수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 청소년 경제활동 참가율
			-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청소년 실업률	- 청소년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 학교 현황	- 학교급별 규모
		- 취학률	- 취학률
		- 진학률	- 진학률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진로교육 경험률	- 진로교육 경험 유무
			- 진로관련 경험
		- 진로교육 만족도	- 진로교육 만족도
		- 학업 중단율	- 학교급별 학업 중단율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지 여부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 학교상담교사 배치율	- 전국 초·중·고 학교상담교사 배치 현황
		-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보장정도	-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 입학 시 힘들었던 점
	교육의 목표 (제29조)	- 교원 1인당 학생 수	- 교원 1인당 학생 수
		- 학업성취도	-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PISA 결과 학업 성취도 국제 비교
		- 학습부진아 출현율	- 기초학력 미달 비율
		- 학교수업 이해도	- 학교수업 이해도
			- 학교수업 진행 수준
		- 학교수업 만족도	- 학교수업에 대한 만족도
		- 사교육 경험률	-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유무
			- 사교육 효과성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여부	- 징계대상 학생에 대한 소명권 부여 정도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 인권교육 실시율	- 인권교육 실시율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 인권옹호기구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영역	하위영역	지표	자료
		-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연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 청소년수련시설 수	- 시도별 문화기반시설 수
	여가·오락 및 문화적 활동 (제31조)	- 청소년수련시설 수	-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이 충분한지에 대한 의견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가문화활동 필요도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여가문화활동 참여도
		-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 학교수업 이외의 하루 평균 학습시간
		-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 평일 하루 평균 활용 가능한 여가시간
		- 동아리 활동 참가율	- 여가시간 충분성에 대한 인식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인식도	- 아동·청소년단체 가입 및 활동 여부
		- 자원봉사활동 참여정도	- 동아리 가입 및 활동 여부
		- 여가활동 만족도	- 동아리 활동 형태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능성에 대한 의견
			-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 자원봉사활동 총 참여횟수 및 참여시간
			-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
			- 여가활동 만족도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특별 보호 조치	법적 분쟁상의 아동	-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착취 상황하의 아동	- 평균 근로 시간	- 소년범죄 처리 현황
		- 최저임금미보장 연소근로자 비율	- 연령별 월평균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 근로여건 만족도	-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추이(정액 및 초과급여)
		- 아르바이트 부담 처우 경험률	-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도점검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수	- 근로여건 만족도
		- 성매매 경험률	-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성피해 경험률	- 아르바이트 부담 처우 경험률
			- 성매매 발생 및 검거 조치 현황
			- 조건만남 경험
			- 최근 1년간 성적인 피해 경험 유무
			- 성피해 보호자 인지율 및 경찰신고율
			- 성피해 의논 대상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연구는 기존의 인권지표체계가 이론적 또는 실용적 근거를 충분히 갖추고 있지 않음을 비판하고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지표체계를 새롭게 구성하여 정책 활용도에 더 방점을 둔 개선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설문조사 체계는 4개 영역을 2개씩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여 인권실태의 종합적 파악을 위한 개선과제를 남겨두었다.

(2) 선행연구 검토를 통한 시사점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7년간의 성과를 검토한 결과 향후 연구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 검토 작업과 관련한 사항이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근간이 되고 있는 2006년도의 청소년인권지표체계는 인권영역을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¹⁰⁾. 이러한 구분은 세이브더칠드런 등을 비롯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 인권분야 국제 민간단체의 인권 활동의 틀로 일반화되어 있기는 하나 이론적·학문적 근거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 2006년도 지표개발 당시에는 연구역량 극대화를 위해 4개 영역으로 인권내용을 구분하여 영역별로 협동연구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함으로써 팀별로 해당 영역에 대한 집중적인 지표 발굴 작업이 가능하여 영역별로 최대한 많은 개별지표품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지표개발 첫 해에 필요한 연구성과를 가져온 점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호 불가분성과 연관성, 상호의존성을 주요 특성으로 하는 인권내용을 4개 영역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면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 확보에 제한점이 발생했고, 지표의 중복 또는 누락의 여지가 생기는 단점이 있었다. 특히, 2009년도부터 2개 인권 영역씩 격년으로 조사 시기를 달리 실시하게 되면서 영역간 경계 모호성과 중복성, 필요지표의 누락, 인권실태의 통합적 파악 제한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와 인권실태의 영역별 분리 조사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0) 청소년인권지표를 개발한 2006년도 연구에 따르면, 5개 인권 관심영역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최창욱 외, 2006: 15-22). '생존권'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권'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발달권'은 청소년이 잠재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직업적 발달과 신체적 발달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참여권'은 청소년이 자신의 국가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인권 인프라'는 청소년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보장하고 이를 촉진시킬 수 있는 모든 사회적 기반 및 여건, 시설, 조직, 정책, 제도 등 모든 인적·물적 자원과 체제를 의미한다.

불가분성이라는 근본적인 인권의 특성상 같은 주제라도 서로 다른 영역의 실태를 나타내는 세부 지표로 활용될 수도 있고(예를 들어, 정보접근권의 경우 발달권과 참여권영역의 하위지표로 가능) 여러 지표를 종합적으로 봐야만 인권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영역을 상호배타적으로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미 제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4개 인권영역 구분으로 인한 문제점은 통합설문지 개발을 통해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2011년과 2012년에는 조사결과 분석보고서의 목차들을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 틀에 따라 재구성을 시도하여 4개 영역분류의 한계를 벗어나고 정책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의 8개 클러스터(cluster)인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조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 보호조치 중 일반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등 3개 클러스터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클러스터를 새로운 지표체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과 2012년도에도 2009년과 2010년도에 실시된 조사체계를 그대로 따름으로써 설문조사는 여전히 영역별로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홀수년에는 생존권과 보호권, 짝수년에는 발달권과 참여권 조사), 이에 따라 본격적인 지표체계 재구성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조사결과 분석의 목차들을 수정한 수준에서 제한적인 지표 보완작업이 이루어졌다. 향후 본격적인 지표체계 재구성을 위해서는 ‘대분류 - 관심영역 - 세부관심영역 - 개별지표’로 이루어진 전체 지표체계 재검토와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한 전체 215개의 인권 개별지표(2006년 152개 개발, 2009·2010년 63개 추가)의 타당성 검토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된 2013년도 연구 고려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도에는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통합안을 마련하여 2개 인권영역씩 격년 조사 실시가 아닌 한 해에 전체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도구를 수정·보완하고 조사주기와 시스템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2011년과 2012년도에 일부 시도된 지표체계 재구성 작업을 심화시켜 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틀의 지표체계로서의 타당성 검토와 개별지표들의 선별 및 보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실태뿐만 아니라 변동 추이 파악과 미래 예측에도 있다는 점에서 인권지표의 체계화 작업이 중요하며 이는 향후 인권지수 개발의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도 갖는다.

둘째, 위와 관련하여 지표체계 검토에 대한 보완작업이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11년과 2012년의 보완 지표체계가 따르고 있는 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틀은 정책적 활용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이 또한 보완사항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와 '아동의 정의' 클러스터는 다른 지표와의 중복성 여지가 있어 지표 영역에서 제외되었으나 이 두 부분은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법·제도적 인프라 등과 관련되는 영역으로 2006년도 지표체계에 따르면 '인권 인프라' 지표에 해당한다. 2009년 이후 조사에서 인권 인프라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지 않아 아동·청소년 인권과 관련된 인권기구 등 자원들과 인권환경 및 정책적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문항이 부재하여 보완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두 개의 클러스터를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인프라 지표로 재검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일반원칙' 클러스터 또한 다른 영역과 중복성이 있으나 차별금지나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은 중복성이 낮고 협약의 중요 조항인 만큼 지표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표 검토 시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내용은 인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포괄하므로 인권적 특성을 담아내지 못하면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실태조사와 차별성을 갖추기 어렵게 된다. 특히 인권지표와 인권실태조사의 경우 인권 실태파악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 인권규범에 근거하여 인권의 담론으로 이를 재구성함으로써 인권 관련 의무이행 당사자의 국제적 규범 이행 노력 촉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인권신장과 보호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을 신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에 맞게 현 인권실태를 파악하고 국제적 권고를 이행하는 데 기여하는 지표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일례로 인권실태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인권 의식'인데 이는 4개의 인권영역별 하위지표를 기준으로 접근할 경우 누락하기 쉬운 내용이다. 인권지표로서 필요한 항목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인권지표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검토에 있어서도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 환경과 국내·외적 인권 수준 변화에 따라 지표를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지표 생산에서도 이와 관련된 실태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6년도 지표개발 당시 가장 기본적인 준거가 되었던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두 개의 선택의정서(아동매매·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 아동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에 대해서는 고려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후 두 개 선택의정서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유엔권고(2008, 2011), 개인청원권(Communications procedure)에 대한 선택의정서 유엔 채택(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및 유엔권고(2011), 제2차 유엔인권이사회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2012) 등 국제적 인권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반영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 인권조약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이 2013년 현재 제17호(2013)까지 발표되어 있는 바 이의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파악 시 착안점을 도출할 수 있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강하고 지표항목 보완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06년 인권지표체계 개발 이후 후속 연구들은 연구 추진일정 상 지표체계와 지표항목에 대한 재검토나 보완적 논의를 충분히 하지 못한 채 주어진 지표와 조사도구로 해당 년도의 실태조사와 결과산출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인권지표와 조사도구의 기반이 된 2006년도 연구는 당시 인권지표개발을 위한 분류체계와 개별지표 항목 개발 자체에 비중을 두고 작업을 진행하여 개별지표 항목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은 상대적으로 소홀했음을 자평하고 향후 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제안한 바 있다(최창욱 외, 2006: 212).

특히 선행 연구들은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개발 과정에서 일반 인권지표 관련 논의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 간에 국내·외적으로 인권지표와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었으므로(구정우·공석기·박병진, 2011; 김태홍 외, 2012;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2010; United Nations, 2012 등) 이의 검토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 특히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 2012년 발간한 인권지표 가이드는 구조·과정·성과(structure-process-outcome)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지표 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론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보완 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2013년도 연구는 2006년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흐름에서 중요한 전환기적 과업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2개의 영역씩 격년으로 나누어 조사되던 것을 한 해에 통합조사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전환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실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최근 제3·4차 유엔권고를 비롯하여 국내·외적으로 인권적 요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초적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인권신장을 위한 국가적 이행 노력의 방향과 전략 등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정보 제공의 기대도 요구받고 있다. 이에 2016년도까지 기획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의 중장기 연구계획(로드맵)을 수립하는 것 자체도 중요한 연구내용의 하나로 인식하고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에 대한 기초데이터 제공과 정책적 기여의 기대에 부응하는 연구내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중 하나로 인권실태조사 데이터의 사회적 확산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해 아동·청소년 연구자들에게 데이터를 배포하고 이를 활용한 다양한 기초 및 정책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설문지 보완과정에서 인권관련 이론적·학술적 분석을 시도할 수 있는 변수 문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영역의 개념과 정의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수정·보완을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3개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1호~17호, 유니세프 등 국제 민간단체의 협약 해설서, 협약 이행에 대한 한국의 국가보고서,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심의의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1996, 2005, 2010) 등을 검토하였다.

기본적인 틀은 2010년에 2차 수정본이 발표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지침(<표 II-3-3>)의 각 영역(cluster)이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대분류 단위로 구성되는 것으로 2011~2012년의 틀과 동일하다. 보완사항은 2011~2012년에는 1, 2, 3 영역을 제외한 5개 영역을 기본 대분류 영역으로 설정한 반면, 2013년에는 1, 2, 3 영역을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으로 구성하여 총 6개 대분류 영역을 설정하였다.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영역 신설을 통해 인권의식과 인권인프라와 관련된 지표항목 개발이 가능하며, 차별금지 및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 협약의 중요한 일반원칙을 지표로 설정할 수 있다.

표 II-3-3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과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¹¹⁾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위내용 (협약 조항)
1.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 조치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제4조) ○ 협약 홍보(제42조) ○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2. 아동의 정의		○ 국내법상 아동의 정의(제1조)
3. 일반 원칙		○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 아동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이름과 국적(제7조) ○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 표현의 자유(제13조) ○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 사생활의 보호(제16조) ○ 정보접근권(제17조) ○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11) 표 안의 ‘영역’과 ‘하위내용’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인 ‘Treaty-specific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CRC/C/58/Rev.2(2010, 11, 23))’에 따른 영역과 조항 분류를 그대로 표로 정리한 것임.

영역	지표체계 대분류	하위내용 (협약 조항)
5.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3.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 부모의 자녀지도 책임과 권리 및 의무(제5조, 제18조 1항), 부모의 양육 지원 및 아동보호 시설 및 서비스 개발(제18조 2항) ○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 가족의 재결합(제10조) ○ 아동 양육비 확보(제27조 4항) ○ 가정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제20조) ○ 보호 및 양육 관련 조치의 정기적 심사(제25조) ○ 입양(제21조) ○ 불법 해외 이송 및 미귀환(제11조) ○ 아동학대, 유기(제19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6.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4.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 장애아동(제23조) ○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 건강 및 보건서비스(제24조) ○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와 건강한 생활양식 촉진 ○ 유해한 전통관습 폐지(제24조 3항) ○ 약물남용(제33조) ○ 부모가 투옥된 아동, 모와 교도소에서 생활하는 아동 보호 ○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제18조 3항) ○ 영양, 의복, 주거 등 적절한 생활수준(제27조 1, 2, 3항)
7.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 교육에의 권리(제28조) ○ 교육의 목적, 교육의 질(제29조) ○ 원주민, 소수집단 아동의 문화권(제30조) ○ 인권교육과 시민교육 ○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제31조)
8. 특별보호 조치	6. 특별보호 조치	○ 난민아동(제22조) ○ 무력분쟁하의 아동(제38조),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착취상황하의 아동 - 경제적 착취(제32조) - 약물남용(제33조) - 성적 착취 및 학대(제34조) - 인신매매 및 유괴(제35조) - 기타형태의 착취(제36조) ○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동 ○ 법에 저촉된 아동, 범죄 피해자와 목격자 - 소년사법 운영(제40조) -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제37조 가) -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39조) ○ 소수민족, 원주민 아동(제30조)

2013년에는 2011~201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대분류 - 지표항목」)를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지표항목」의 틀로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광범위한 전문가 자문과 검토과정을 거쳐 확정된 2013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대분류 6개 영역 - 중분류 29개 - 소분류 48개 - 지표항목 130개」로 구성되어 있다¹²⁾.

2013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 따른 인권지표 영역별 개념과 정의를 통해 인권지표체계 구성의 이론적 토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2013년도 지표체계 대분류 영역에 새롭게 구성된 영역으로, 2011년도부터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국가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협약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등 세 개의 클러스터를 포괄하는 영역이다. 「일반조치」는 당사국의 협약 이행의무(협약 제4조), 협약 홍보(제42조), 국가보고서 활용(제44조 6항) 등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예산 등 인프라와 협약 및 국가보고서 홍보에 대한 사항을 말한다. 「일반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등 아동권리협약 전체 조항의 바탕이 되는 네 개의 일반원칙이다.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2011~2012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5개 영역구분(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포괄적인 인권관련 법·제도 등 인프라, 아동권리협약 전체 조항의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일반원칙 관련 실태들을 살펴보기 위해 새롭게 구성한 영역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인권감수성과 태도,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등 일반적인 인권의식을 알아볼 수 있는 지표가 부재했던 것을 보완하여 인권의식에 대한 지표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중요도와 자료수집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013년도 지표체계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하위 영역은 「인권일반」 중분류의 경우 「인권인프라」와 「인권의식」, 「일반 원칙」 중분류의 경우 「차별금지」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이다. 즉,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대분류 영역은 인권증진을 위한 조직과 예산 등 인프라와 인권의식을 파악하고 차별금지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등 협약의 일반원칙 실현 수준과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12) 대분류 영역별 지표 개수를 「중분류 - 소분류 - 지표항목」 순서로 제시하면,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개-4개-9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 7개-14개-27개, 가정환경 및 대안양육 5개-7개-17개, 장애·기초보건 및 복지 7개-11개-37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3개-7개-25개, 특별보호조치 5개-5개-15개 등이다.

① 인권 일반

‘인권 일반’ 중분류의 하위영역은 ‘인권인프라’와 ‘인권의식’으로 구성된다. ‘인권인프라’는 아동권리 협약의 일반조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일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4조는 아동·청소년 권리 실현을 위해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협약 제42조와 44조는 협약과 협약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적극 홍보하고 널리 이용하게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발표한 일반논평 제5호(‘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이행을 위한 일반조치’)에 따르면 일반조치들은 입법, 유보조항 검토, 조정과 감시를 위한 독립적 기구 설립, 종합적인 자료의 수집과 지표 개발,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산, 인식교양과 훈련 및 적절한 정책, 서비스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행을 통해 모든 아동의 협약상의 모든 권리의 전적인 향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협약의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의 번역 및 개발, 인권교육의 학교 교육과정 반영,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성인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화, 협약 홍보에서 언론의 역할, 국가보고서의 공개와 논의 활성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견의 공개 광범위한 논의 촉진 등도 중요한 일반조치의 영역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5-86).

본 지표체계에서는 ‘인권일반’의 첫 번째 하위영역인 ‘인권인프라’에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과 아동·청소년 예산 현황을 대표 지표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두 번째 하위영역인 ‘인권의식’에는 아동·청소년의 인권관련 감수성과 인권상황들에 대한 인식수준,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구에 대한 인지도 등을 알아보는 주관적 지표항목들을 구성하였다. ‘인권의식’ 관련 지표결과는 그 자체로 현황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관계나 인과관계 등을 분석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설문조사 문항을 보강하였다. 한편 인권교육 관련 내용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 영역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였으므로 ‘인권일반’ 중분류 영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② 일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은 차별금지의 원칙(제2조),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제3조), 아동의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제6조), 의견표명의 권리(제12조) 등 네 가지이다. 이 중 제6조 ‘생명·생존 및 발달의 권리’는 ‘장애, 기초보건 및 복지’ 영역(대분류 4)과, 제12조 ‘의견표명의 권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대분류 2)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당 두 개 원칙은 제외하고 ‘차별금지’와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하위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차별금지의 원칙'에 대한 아동권리협약 제2조는 아동·청소년이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출생이나 기타 신분 등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아야 하며 이러한 모든 형태의 차별에서 보호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 제12항은 국가가 차별상황에 있어(잠재적 차별 포함)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차별적 태도 변화를 위한 교육과 입법, 행정, 자원배분 등을 통해 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을 제시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6). 특히,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아동권리협약 제3조와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5호(2003) 및 제14호(2013)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협약 제3조는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은 실질적인 권리이며, 기본적이고 해석적인 법적 원리이자 의사결정 시 아동에 대한 영향평가를 포함하는 절차의 규칙이라 할 수 있다(UNCRC, 2013: 4).

일반논평 제5호는 “아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 정책, 행정행위나 법원의 결정 등이 아동의 권리와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고려해야(12항)” 하며, “아동영향평가(child assessment: 아동과 그들의 권리의 향유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제안된 입법, 정책 또는 예산 배치의 영향을 예측하는 것)와 이행의 실질적인 영향 평가(child impact evaluation)를 통해 입법 및 정책 개발과 정부의 모든 수준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45항)”고 제안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66-77). 본 지표체계에서는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해당하는 지표항목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설정하였으나 아직 국내에서 시행된 사례가 없어 지표결과는 추후 생산될 예정이며, 정부가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의 하나로 제안하였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7조(이름과 국적), 제8조(신분의 등록 및 유지), 제12조(아동 의견표명의 권리), 제13조(표현의 자유), 제14조(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5조(결사 및 집회의 자유), 제16조(사생활의 보호), 제17조(정보접근권), 제37조 가 및 제28조 2항(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9조(피해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지)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영역이다.

여기서 제12조(아동 의견표명의 권리)는 아동권리협약의 네 개의 일반원칙 중 하나로 국가보고서 작성 시 ‘일반원칙’ 영역에서 별도 기술되나 내용적으로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 영역과 일맥상통한다. 이에 본 지표체계 대분류 1.의 일반원칙에서는 다른 영역과 중복성이 낮은 ‘차별금지’와 ‘아동의 최우선의 원칙’ 2가지만 다루고, 제12조 의견표명권은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서 다루었다. 본 지표체계에서는 제12조 의견표명권과 제13조 표현의 자유를 하나의 중분류 지표영역으로 설정하였으나, 이는 현단계 지표구성을 위한 제한적 결정이며 향후 제12조의 아동·청소년 참여권에 대한 포괄적인 특성을 보다 잘 담아낼 수 있는 지표체계 구성을 위해 지속적인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12조가 담고 있는 권리내용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The right of the child to be heard)에서 포괄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제12조는 하나의 권리내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일반원칙으로서 다른 모든 권리들의 해석과 이행에 고려되어야 하는 조항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한 모든 협약 조항에 나타난 권리의 실행에서 아동·청소년이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존중받지 못한다면 다른 권리들도 온전히 실현될 수 없으므로 협약의 다른 많은 조항들과도 관련되어 있다(UNCRC, 2009: para 2, 68)는 점에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지표 보완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인권지표체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 대분류 영역의 중분류는 의견표명권(제12조)과 표현의 자유(제13조),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사생활의 보호(제16조), 정보접근권(제17조), 체벌·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위 영역은 소분류 14개, 지표항목은 총 27개로 설정하였다.

① 이름과 국적,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아동권리협약 제7조 1항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생등록은 국가가 아동의 존재를 인지하는 첫 공식 절차로서 아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아동의 신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출생등록은 정확한 인구분포 파악을 통한 효과적인 국가 아동·청소년정책 계획 수립에도 필수적이며 아동의 납치, 노예 매매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등 다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 수단이기도 하다(김승권 외, 2009: 190-193). 아동권리협약 제8조는 아동이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신분을 유지하고 필요시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르면 협약 7조의 이행상황으로, 보호시설, 난민

아동, 시골이나 오지의 아동들이 출생 후 즉시 등록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아동 출생 등록에 대한 여론의 경각심을 높이고 담당자를 훈련하기 위한 방안, 출생 등록 시 기록하는 아동의 신분요소 중 낙인이나 차별 관련요소가 있는지, 무국적 아동의 국적취득 보장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제8조의 이행상황으로는 아동의 신분을 보존하고 위법적 간섭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아동 신분의 불법적 박탈에 대한 원조와 보호 방안과 신속한 회복 대책 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UNCRC, 1996: para 49~54). 개정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서는 출생신고 아동의 수와 비율, 출생 신고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도록 하였다(UNCRC, 2010: para 8).

②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권리협약 제12조(의견표명권)는 협약의 모든 조항의 권리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인 일반원칙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내용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참여권에 대한 조항이다. 조항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하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상 절차규칙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국가는 아동·청소년에게 적절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일반논평 제12호는 참여권과 관련된 당사국의 의무로, 의견표명권을 제한하는 법령이나 유보조항 재검토 및 철회, 아동권리 옴부즈맨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관 설립, 변호사, 판사, 경찰,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보육시설 종사자, 수용시설 종사자 및 교도관, 교사, 의사 등 의료종사원, 공무원 등 아동·청소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전문가에 대해 제12조 교육 및 훈련 제공, 아동·청소년에게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고무하는 환경 조성 및 의사결정과정에서 아동 견해의 존중, 대중 캠페인을 통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태도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다(UNCRC, 2009: para 49). 또한 일반논평 제12호는 의견표명권은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실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족, 대안양육, 보건의료, 교육과 학교, 놀이·레

크레이션·스포츠·문화활동, 직장, 폭력상황, 예방전략 개발, 이주·망명 절차, 비상상황, 국가적·국제적 환경 등이 그것이다(UNCRC, 2009).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초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은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법률에 반영한 내용, 가족·학교·소년사법 절차 등의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표명권 보장을 위한 입법 조치 등을 적시하도록 하였고(UNCRC, 1996: para 42-47), 개정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서는 아동·청소년 단체나 협회 수 및 회원 수, 독립적인 학생회(student councils)가 있는 학교 수, 사법 및 행정절차 참여 아동·청소년 수 등에 관한 정보를 적시하도록 하였다(UNCRC, 2010: para 7).

제13조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으로 협약은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제1항)”를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공공질서·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제2항). 제13조 이행과 관련된 이슈들로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가 법률로 인정되고 있는가, 정책이나 관습이 아동·청소년의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가(가족, 대안양육, 학교, 소년원, 지역사회, 미디어 등에서의 표현의 자유 등), 표현의 자유 제한이 동조항 제2항의 조건과 일치하는가, 장애아동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가, 표현의 자유 침해 시 아동·청소년의 민원 심의 및 처리 규정이 있는가 등이 있다(김승권 외, 2009: 360-361).

한편, 제12조와 제13조는 긴밀한 관계에 있지만 각자 다른 권리의 내용을 갖는다. 제13조 표현의 자유는 당사국에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하는 것 또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을 의무, 통신수단 및 공적 대화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한다. 제12조는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이 표현한 견해를 존중하는데 필요한 법적 틀과 기제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제13조는 국가에 그러한 의무를 요구하지는 않는다(UNCRC 2009: para 8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에서는 차선택으로 이 두 개의 권리영역을 하나의 중분류로 설정하였는데 향후 타당성에 대한 심층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③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14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1항),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법정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하고(2항),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정,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음”(3항)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권 행사 정도와 이 때 아동·청소년의 능력 발달이 고려되는 정도, 소수자나 원주민 집단의 종교나 신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공립학교 종교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 존중 조치 등을 적시하게 하고 있다(UNCRC, 1996: para 56~57). 유니세프는 협약 제14조의 이행과 관련된 주요 주제들로 동 조항에 보장된 아동·청소년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존중하는 법적 조치나 조정장치가 있는가, 아동·청소년이 특정 종교 공동체에 들어가거나 나올 수 있는 권리 규정이 아동의 발달단계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가, 법률상 아동이나 부모가 학교에서 종교교육이나 예배를 거부하는 요청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상황으로 종교적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등을 제시하였다(김승권 외, 2009: 384-385).

④ 결사 및 집회의 자유

아동권리협약 제15조는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이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제15조 제2항).” 결사 및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아동·청소년이 단체에 가입·탈퇴하거나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을 기본적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유니세프는 아동의 결사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결사와 집회의 자유 향유 기회 증진을 위한 조치가 있는가, 근로 아동·청소년의 노동조합 결성 및 참여·탈퇴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장애아동의 해당 권리 증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등을 협약 이행 점검 목록으로 제시하였다(김승권 외, 2009: 398-399).

⑤ 사생활의 보호

아동권리협약 제16조는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망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하며(1항),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에서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사생활 간섭을 방지하는 법적 대책과 아동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제책, 사법 또는 행정절차 및 치료·보호기관 아동을 위한 특별 조치에 대한 정보 등을 적시하게 하고 있다(UNCRC, 1996: para 59). 일례로 교정시설 아동·청소년

의 경우, 시설의 물리적 환경과 디자인, 개인소지품, 가족 및 변호사의 방문과 연락 등에 있어 사생활 보호가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 대중매체가 아동학대나 가족문제, 입양 문제 등을 다룰 때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문제 등도 사생활 보호의 권리와 관련된다(김승권, 2009: 413-422).

⑥ 정보접근권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아동·청소년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무한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나 정보에 대한 잘못된 이용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을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유해한 정보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7조에서는 아동의 복지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국내·외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공과 유해한 정보·자료로부터의 아동의 보호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도서의 제작과 보급의 장려’와 특별히 ‘대중매체가 소수집단이나 원주민 아동의 언어상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⑦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아동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특히 교육적 상황에서의 인격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사형, 종신형, 고문,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 규율도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가에서는 “어떤 아동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된다. 18세 미만의 아동이 범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 2항에서는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 협약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의 하위내용은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입양(제21조),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19조, 제39조)로 구성된다. 이 외에 부모로부터의 분리(제9조), 가족의 재결합(제10조), 아동을 위한 양육비 회수(제27조 4항)도 가정환경과 대안양육에 해당하는 조항이지만 이 부분은 지표를 생산하기 보다는 관련법이나 사례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되어(임희진·김현신, 2011:100) 본 연구에서는 하위내용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본 영역과 관련하여 정부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대안양육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그룹홈’과 ‘가정위탁보호’ 등 대안양육을 확대하고 있으며, 위탁가정을 대상으로 양육보조금, 아동상해보험료, 전세자금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UN, 1989).

① 부모의 지도와 책임(제5조, 제18조 1항, 2항)

부모의 지도와 책임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조와 제18조 1항과 2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5조에서는 부모나 확대가족, 법정 후견인 등이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위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제18조 1항과 2항에서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기본적 관심이 되어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법정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국가는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1996년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서는 제5조 부모의 지도와 관련하여 사회 내 가족구조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존중받기 위해 채택한 조치를 기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족상담 서비스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제18조 1, 2항 부모의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아동보호기관, 시설,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모와 법정 후견인이 아동 양육 책임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를 기술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부모가정아동, 빈곤가정아동 등 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기술해야 한다(UNCRC, 1996).

②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제20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0조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기술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해 가정 내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대체적 보호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임희진·김현신, 2011: 100).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족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족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허용될 수 없을 경우,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를 지닌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대체적 보호를 받는 아동의 실태를 감독하여야 하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들(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이익 보호원칙, 아동견해 존중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을 존중해야 함을 기술하고 있다(UNCRC, 1996). “본 조항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회복지 사업 또는 복지기관과 사회복지사, 위탁부모 및 입양부모에게 적용된다”(김승권 외, 2009: 538).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에는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첫째,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아동 수치에 대한 원인별 분류(무력분쟁, 가난, 차별에 기인한 유기 등), 둘째, 법원의 판결 결과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 수치, 셋째, 이러한 아동들을 위하여 지역별로 분류된 시설 수, 이러한 시설 중에서 이용 가능한 장소 수, 아동들 돌보는 사람의 비율과 위탁가정 수, 보호조치 기간과 그에 대한 평가의 빈도와 시설이나 위탁부모와 살고 있는 부모와 분리된 아동 수치와 비율, 보호조치 후에 부모와 재결합 하는 아동의 수치와 비율, 연령별로 분류된 국내와 국가 간 입양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아동 수와 함께 해당 아동의 조국과 입양국가와 관련한 정보”(김승권 외, 2009: 543).

③ 입양(제21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들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국가가 입양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572).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입양의 바람직함에 대해 중립적이며, 입양이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을 위한 하나의 가능한 선택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의 개별적인 애착과 관련한 아동의 욕구는 입양이 아닌 다른 형태로도 충족될 수 있으나 입양을 할 경우에 입양은 국가에 의해 적절하게 규정되어 아동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김승권 외, 2009: 572).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서는 입양제도를 인정하는 국가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아동의 입양은 법률과 절차를 따라서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 국제입양이 고려될 수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제입양의 경우에는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지 않아야 하며, 국제 입양되는 아동은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장 장치와 기준을 보장받아야 한다.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1996)에서는 국가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들(예를 들면, 국제 입양시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 1993년 5월), 아동의 타국 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해 실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채택한 조치, 연령, 성별, 아동의 지위, 출신국과 입양국의 아동가족상황, 출신국, 입양국 등을 포함하여 국제입양 관련아동들에 대한 각각의 통계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UNCRC, 1996).

④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제3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아동이 부모나 법적 후견인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김승권 외, 2009: 485). 구체적으로 아동이 부모, 법적 후견인 또는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학대, 유기, 성적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확인, 보고, 조사, 처리 및 추적하고, 필요시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기술되어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9조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소년원과 같은 공공·사립기관, 양육·보호시설, 가정 내에서 신체적 처벌, 고의적인 모욕, 상해·학대·유기·착취 등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금지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법적인 보장장치들이다. 이외에 아동이 폭력, 학대, 유기 등으로부터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관계당국의 개입을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들이 있는지,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아동을 훈육하고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교육적 조치들과 기타 다른 조치들이 있는지를 적시해야 한다. 또한 가정이나 복지, 교육, 교도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학대 등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들 및 이와 관련하여 연령, 성별, 가족상황, 지역 등 관련아동에 대한 통계 자료들이 요청된다(UNCRC, 1996).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9조에는 유기, 착취, 학대받은 아동이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⑤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5조에서는 양육지정된 아동에 대한 심사의 필요성과 심사 대상 아동 및 심사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5조는 아동 건강의 관리, 보호, 치료를 위하여 관계 당국이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의 상황 및 치료에 대해 정기적인 심사를 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위탁가정, 입양가정, 그룹홈, 아동시설 등 가정 외에서 생활하는 아동과 장애아동, 난민아동, 기숙학교에 거주하는 아동, 자유를 박탈 당한 아동, 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 소년원 거주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심사는 양육지정의 적합성과 치료 및 돌봄 과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김승권 외, 2009: 724).

관련 아동들에 대한 통계로는 유기, 장애, 보호시설과 난민수용소 등의 아동의 연령, 성별, 국적, 인종, 거주지, 가족상황, 양육지정의 지속기간, 심사의 빈도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UNCRC, 1996). ‘정기적인 심사’는 관계당국의 양육지정이 영구적으로 계속되거나 망각된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중요하다. “모든 단계에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위한 조치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 편의시설 등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을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30조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복지시설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자치단체장은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사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년마다 아동복지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내용은 장애(제23조), 생존 및 발달(제6조2항), 보건서비스(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제24조),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방지대책(제33조),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3항)로 구성된다.

① 장애(장애아동의 권리)(제23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는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장애아동들은 존엄성을 보장받고, 자립과 적극적 사회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장애아동의 발전을 위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지원 등이 효과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제23조 1항에서는 장애아동이 사회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육과 건강 분야에서 장애아동을 사회에 최대한 통합시키는 것을 분명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UNCRC, 2006). 제23조 2항은 국가는 특별한 보살핌을 받을 장애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장애아동을 보살필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원조를 제공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 원조는 아동의 조건 및 보살피는 사람의 상황에 적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23조 3항은 원조에 의해 달성되어야 할 것들, 예를 들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 등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3조의 이행을 위해서 국가는 포괄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2006년도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아동권리위원회의 제43차 회기에서는 일반논평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살핌과 원조는 가용한 자원 내에서 가능한 무료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철폐와 사회통합을 위해 가용자원의 최대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UNCRC, 2006). 이와 관련하여 장애유형별 관련아동, 제공된 원조범위, 교육, 훈련, 보호, 사회복지 등 각 영역에서 이용가능한 프로그램과 서비스, 고용과 오락, 재정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UNCRC, 1996).

② 생존 및 발달(제6조 2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6조 2항에는 국가는 가능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가능한 한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전체의 이행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김승권 외, 2009: 161). 아동권리협약이행핸드북(김승권 외, 2009)에는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많은 조항들이 발달의 목표에 속해 있다. 다른 조항들은 아동의 발달을 위한 부모와 가족의 역할 및 아동을 지원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폭력과 착취로부터의 보호 또한 생존과 발달권을 최대 보장해 주기 위해 꼭 필요하다”(김승권 외, 2009: 161)고 기술되어 있다.

1996년 343번째 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최대한 가능하게 하는 데에 공헌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들, 자유로운 사회에서 아동들이 개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사망의 등록, 사망 원인, 사망에 대한 연구와 보고 등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 아동 자살 방지와 그 빈도 조사, 모든 연령 아동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정책들, 각 집단이 특별히 노출되는 위험(성병, 거리 폭력 등) 방지를 보장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들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UNCRC, 1996).

③ 보건서비스(제24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의 보건관련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제24조는 제6조의 생존 및 발달에 관한 권리를 토대로 수립되고 발전된 것이다. 또한 제2조의 무차별 원칙은 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과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김승권 외, 2009: 662). 구체적으로 1항은 국가는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2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해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넷째,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3항은 국가는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해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으며, 4항은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을 촉진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다.

④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제24조)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은 2010년에 개정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CRC, 2010)에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임희진·김현신, 2011:164). 이 작성지침에는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소년이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⑤ 청소년의 생식보건관리

“청소년의 생식보건관리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지침(UNCRC, 2010)에서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의 하위영역으로 추가된 항목”이다(임희진·김현신, 2011:186-187). 이 항목에는 청소년의 성교육 관련 내용이 포함된다.

⑥ 약물남용방지대책(제33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3조에는 청소년의 약물남용방지대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관련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는 이 항목과 관련하여 적시해야 할 내용으로 일반 국민과 아동들 사이에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제도와 체계들(학교 구조와 커리큘럼을 포함해서), 상담 등 아동과 가족을 돕기 위한 조치와 관련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들, 아동의 약물남용 및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관련된 발생률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들, 연령, 성별, 지역, 인종별 각각의 관련 통계, 술, 담배와 기타 아동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약물 등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 및 다른 조치 등이다(UNCRC, 1996).

⑦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제26조 및 제18조 3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6조는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아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다루고 있다. 아동은 일반적으로 성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만, 성인이 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일자리가 없거나 일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는 아동에게 직접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성인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의무를 가진다”(김승권 외, 2009: 737). 제26조에는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져야 하며,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를 위한 일반적인 기준에는 위의 권리 이행과 관련된 법률규정들, 아동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사회보장책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들, 혜택을 주기 위해 고려되는 기준들 등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 기준들에는 그러한 조치의 범위와 재정적 관계, 연령, 성별, 가구당 자녀수, 부모의 지위, 한부모 상황 등에 따른 빈도수, 사회보장과 실업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정보가 포함된다. 제18조 3항과 관련하여서는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다(UNCRC, 1996).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하위내용은 크게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 30조),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으로 먼저 분류된다. 이 분류는 2012년도에 더 세부적으로 분리되지 않았으나 2013년도에는 UNCRC/C/58/Rev.1(2005)을 참고로 세부적으로 다시 지표가 분류되어 교육에의 권리는 교육의 기회(제28조 1항 가, 나, 다, 마호)와 진로교육의 기회(제28조 1항 라호)로 분류되었다. 하위내용 중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제28조 2항),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제28조 2항, 제29조 1항 가, 나호), 다문화이해(제29조 1항 다, 라, 마호, 30조)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하위내용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1항, 2항), 아동·청소년 활동(제31조 1항, 2항),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활동 권리(제31조 2항)로 세부적인 분류가 이루어져 지표들이 형성되었다(UN, 1989). 말하자면 2013년에는 기존 지표산출과는 달리 지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세부적인 체계로 나누어 범주화함으로써 보다 명료한 지표들의 의미와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지표들의 산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표체계가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①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하위내용 중 교육에의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에 1항에 잘 나타나있다. 2012년에는 교육에의 권리에 관하여 곧바로 해당 지표들이 산출되었으나(임희진·김현신, 2011: 70) 2013년도에는 교육에의 권리를 다시 교육의 기회(제28조 1항 가, 나, 다, 마호)와 진로교육의 기회(제28조 1항 라호)로 분류하여 각각의 지표들이 산출되었다. 협약의 제28조 1항에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무엇보다 먼저 아동들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먼저 인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의 교육에의 권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먼저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배분되는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기회에 직접 해당되는 협약의 제28조 1항 가호의 내용은 각국이 초등교육을 의무화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이의 준수 여부를 알기 위하여 취학율의 지표가 필요하다. 또한 협약의 제28조 1항 나호는 특히 초등학교 아동들의 중등교육의 발전 장려를 권고하면서, 구체적으로 중등교육까지의 무상교육 도입과 필요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항 다호에서는 고등교육의 기회에 관하여도 기회가 적절히 주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준수하는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국가의 무상교육 도입여부와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이 지표로 채택될 수 있다. 같은 조항 마호에서도 교육에의 기회를 균등이 줄 수 있기 위하여 아동들의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률과 탈락률을 조사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학교부적응에 대한 지표와 대안학교 및 방과후학교의 운영 수에 대한 지표가 산출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교육에의 권리를 말하고 있는 협약의 제28조 1항 라호에서는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는 특히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아동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권고의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으로 인해 직업 및 진로 교육이 매우 취약한 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이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의 기회는 특히 정보사회에 들어와 글로벌 청년실업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장하는 아동의 장차 생존권과도 관련이 있는 중요한 내용이므로 이에 대한 협약의 준수 여부를 묻는 진로교육에 대한 지표 구성이 중요하고 이에 따라 진로교육의 체계 형성 여부와 진로를 위한 상담교사의 배치 여부가 세부지표로 채택되었다.

②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 1항, 30조)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하위내용 중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제28조 2항),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제28조 2항, 제29조 1항 가, 나호), 다문화이해(제29조 1항 다, 라호, 30조)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협약의 제28조 1항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와 교육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있어 교육의 목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2항은 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사례를 말하고 있다. 즉, 학교는 학교규율을 통해 아동권리의 존엄성에 합치하도록 학교의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들이 있어야 함을 교육목표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실제로 이러한 협약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관한 지표가 생성되었다. 즉, 학교의 의미와 기능을 묻는 지표는 현재 증가하고 있는 학업중단청소년과 맥락을 지어 아동이 원하는 바에 대하여 학교가 존재하고 있는가와 학교가 아동들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지표로 묻고 있다.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은 무엇보다 배움의 터전인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아동의 인권을 존중하려는 노력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살피려는 지표의 설정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아동에 대하여 인권교육 경험의 여부, 학교규율에 있어서 인권 반영 정도, 정부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노력 정도를 지표로 묻고 있다. 한편, 협약의 제29조 1항에서는 아동교육이 지향하여야 할 목표를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특히 가호는 타고난 아동의 능력에 대한 계발, 나호는 인간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의 원칙에 대한 계발을 아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다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권에 관하여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협약의 28조 2항에 의거하여 직접 학교 규율이 학교의 교육현장에서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을 반영하는 지에 대한 여부가 지표로 채택하였다. 협약의 제28조 3항에서는 교육의 국제화와 국제협력,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글로벌 교육적 지원들이 아동 인권차원에서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것을 읽을 수 있다. 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협약에서 제28조 3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국제적 수준 차원의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지표가 마련되었다.

중분류된 지표체계의 교육의 목표는 다시 다문화이해(제29조 1항 다, 라호, 30조)로 세분화된 하위 분류체계를 삽입하였다. 이는 협약의 제29조 1항의 다호와 라호에서 가속화되는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 현상에 주목하여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교육 현황을 살피는 지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채택되었다.

③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제31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1조는 아동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놀이와 오락 및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와 이를 위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중분류로 구성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은 2012년도에는 ‘여가, 오락 및 문화적 활동’으로 표기되었는데 원문의 ‘play’는 ‘오락’보다는 ‘놀이’가 더 적합한 의미의 번역이다. 또한 협약 제31조는 단지 ‘문화’만 말하고 있지 않고, 문화와 함께 ‘예술’도 아동이 향수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어서 문화와 예술을 함께 ‘문화·예술’로 표기하였다. 2012년에는 지표의 구성체계가 중분류까지 있었지만 2013년에는 다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1항, 2항), 아동·청소년 활동(제31조 1항, 2항),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활동 권리(제31조 2항)로 세부적인 소분류가 이루어져 지표들이 형성되었다(UN, 1989).

먼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 1항, 2항)과 관련된 세부지표들은 주로 여가와 문화 및 예술 활동들에 아동들이 잘 참여하고 있는가, 만족하고 있는가, 참여의 기반인 해당 활동의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가와 관련된 지표들이 생성되었다. 특히, 대학입학을 준비하느라 절대 활동시간이 부족한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과 ‘휴일을 보내는 방법’의 세부 지표를 통해 이들의 여가와 놀 권리가 잘 보장되어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 채택된 지표들이다. UNESCO와 UNICEF에 자문기구인 IPA(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hild's Right to Play)에서도 세상이 점차 많은 위급을 알리는 유행들이 만연하고, 아동의 발달에 있어 그들이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아동의 놀 권리 선언(Declaration of the Child's Right to Play)”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UNICEF, 2007: 472).

아동·청소년 활동(제31조 1항, 2항)의 소분류 지표들은 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활동관련 단체나 동아리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실천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마련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동 및 청소년 단체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과 동아리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이 지표로 마련되었다. 한국에서는 아동들의 여가, 놀이, 문화·예술 활동 참가율이 매우 낮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학입학시험만을 준비하는 교육으로 일관된 한국의 교육에서 학교와 가정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의 이러한 권리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정도의 지표가 채택되었다.

마지막으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중분류 지표체계의 소분류 체계 중 하나인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활동 권리(제31조 2항)는 협약 제31조의 2항의 문화, 예술, 놀이 및 여가 활동을 위한 균등한 기회의 제공과 관련된 내용이다. 여기서 말하는 ‘균등한 기회’란 소수집단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배제하지 말하는 의미이다. 이러한 소수집단에는 각국에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은 아동 및 청소년들로 장애 아동 및 청소년, 가출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결식아동 및 청소년, 한 부모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 그리고 다문화 아동 및 청소년들을 말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6년 UN에서 채택된 ‘장애인 권리협약(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1조에서도 “당사국은 문화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과 동등한 기초위에서 참가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를 인정(UNICEF, 2007: 475)”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에서 소수집단 아동 및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기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협약의 31조 2항을 고려하여 채택되었다.

(6) 특별보호조치

(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 (b)-(d),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권리 침해에 특별히 취약한 일부 아동집단들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UN, 1989).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정기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특별보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긴급사태 하에 있는 아동(난민아동, 무력분쟁하의 아동), 법에 저촉된 아동(소년사법시스템 상에 있는 아동, 자유를 빼앗긴 아동), 착취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 기타 형태의 착취, 인신매매 및 유괴), 소수민족 또는 원주민 그룹에 속한 아동, 거리에서 생활하는 있는 아동 등이 포함된다(UNCRC, 2005; UNCRC, 2010).

① 난민아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2조는 난민 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 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은 이미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획득한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난민 신청 중인 아동까지를 포함한다(UN, 1989).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1951)에 의하면,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러한 사건의 결과로 인하여 종전의 상주국 밖에 있는 무국적자로서, 상주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상주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장복희, 1997: 180).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는 1,000만 명의 난민 중 약 절반이 아동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UNICEF, 2007).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13년 4월 현재 난민신청자 5,382명 중 인정자가 329명,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자가 173명이며(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18세 미만의 난민아동은 2012년 12월말 현재 173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김현미·이호택·이혜진·신정희·이연주, 2013).

우리나라 제3·4차 국가보고서에 의하면, “난민은 정부가 1992년에 가입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적용을 받는 자를 말한다.”(대한민국정부, 2008:134). 정부에서는 난민자격 인정자에게 취업활동의 자유와 기초생활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난민아동들에게는 국적을 불문하고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세이브칠드런에서 의뢰한 최근 조사에 의하면, 난민아동의 절반 정도가 무국적자로, 학교 입학이나 병원 이용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외, 2013). 이 밖에도 정부에서는 2008년에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난민인정·지원 시스템 구축 방안, 난민관련 정책담당 부서 기능의 강화, 심사 전문 직원 배치, 난민인정 결정 권한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2008).

② 소년사법의 운영

소년사법은 일반 사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범죄 소년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나, 소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반 형벌 이외에 다른 처리절차를 가져야 하며, 이런 점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소년사법은 본래적 의미에서는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을 발동하는 작용을 말하나, 근대적 의미에서는 범죄소년을 비롯한 비행소년에 대하여 형벌과는 그 내용이 다른 독특한 제재수단과 일반형사절차와는 별도의 처리절차를 마련한 데에 그 고유성이 있다”(최병각, 2007: 20).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경우에 처음에는 유죄판결을 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을 포함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따라서 소년사법의 대상은 법에 저촉되어 경찰에 체포된 18세 미만의 아동, 법원에 의해서 유죄로 인정된 또는 집행유예의 형 및 자유의 박탈 이외의 처벌을 받은 18세 미만의 아동, 특별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등이 대상이 된다. 또한 유엔아동

권리협약 제40조 3항에 의하면 “이들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UN, 1989). 이와 같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원칙과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년사법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조직과 종합적인 소년사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최병각, 2007).

③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자유를 빼앗긴 아동은 자유가 박탈된 아동과 같은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아동보호를 위한 유엔 규칙에서는 자유의 박탈에 대한 정의와 자유의 박탈이 행해지는 시기와 방법 및 원칙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자유를 박탈이란 사법적, 행정적 또는 다른 공권력에 의해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대로 벗어날 수 없는 공공·사적 보호소에 구금하거나 체포 또는 억류하는 것을 의미한다(rule 11b).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의 일반원칙인 무차별원칙, 아동의 최상 이익 원칙, 아동 견해 존중 원칙, 생명권, 가능한 최대한 생존과 발달을 보장받을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UNCRC, 1996).

특히 아동에 대한 자유의 박탈은 오직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아동의 생존과 발달 등 아동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에서는 아동에 대한 고문, 비인간적인 대우나 처벌, 사형, 종신형 등을 금하고 있으며, 어떠한 아동도 성인으로부터의 격리가 아동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과의 접촉에 대한 권리를 갖으며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접근할 권리 등을 가질 수 있다고 되어 있다(UN, 1989).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UN, 1989).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엄격하게 법률에 의해서만 행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자유의 제한은 최대한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소년 형사사건에서도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상의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 특히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이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을 처우할 때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140).

④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에 대한 경제적 착취, 위험한 노동, 교육에 방해되는 노동, 아동의 건강이나 발달에 유해한 노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동으로부터의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연령, 고용조건, 처벌 또는 제재수단을 명시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UN, 1989).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험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본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여타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본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유엔아동권리협약 제32조, UN, 1989).

또한 이를 위해 각국 당사자들로 하여금 관련 법률의 정비, 정보의 제공, 교육훈련 및 캠페인, 조정감시체계 등을 구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는 1999년 1월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취업의 최저연령협약(제138호)」과 2001년 3월에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협약(제182호)」을 비준하여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자의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아동은 근로자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임희진·김현신, 2011). 또한 「근로기준법」

에 연소자 보호의 별도의 장을 두어 아동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으며, 모든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이밖에 노동착취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조건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업주, 교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확대하고,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대한민국정부, 2008).

⑤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조에서는 “아동이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제35조에서는 “여하한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UN, 1989). 이와 관련하여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에서는 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행위자를 확실하게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24).

“아동매매는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어느 개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하는 모든 행위와 거래를 의미하며, 아동매춘은 금전적 이익을 포함한 어떤 대가를 받고 아동을 성 관련 활동에 이용함을 의미하며, 아동포르노그래피는 그 방법을 불문하고 아동이 실제 또는 모의로 노골적 성 행위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는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인 신체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한다”(아동매매·아동매춘·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2. 1. 18일부터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한국 정부에서는 아동을 성적착취 및 성적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검찰을 통해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범인의 성향, 재범의 위험성, 소아기호증, 피해아동의 피해정도 등 양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조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있으며(대한민국정부, 2008), 최근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설치와 16세 미만 대상 강간범죄자의 집행유예 배제를 추진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지원센터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13.6.21.).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의 이론적 토대에 기반하여 광범위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마련된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를 표로 정리하면 <표 II-3-4>와 같다. 각 지표항목의 생산방법이 포함된 종합표는 <부록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II-3-4 2013년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1. 인권일반 및 일반 원칙	1-1. 인권일반 (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1-1-1-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1-1-2. 인권의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1-1-2-3.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1-1-2-4.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1-2-1-1. 차별경험*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1-2.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1-2-1. 차별금지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 (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제8조)	2-1-1. 국적 및 신분	2-1-1-1. 출생신고율
	2-2. 의견표명권 (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2-1. 가정에서의 참여	2-2-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2-2-2. 학교에서의 참여	2-2-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 결정권 보장정도* 2-2-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2-2-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2-2-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2-2-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2-2-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2-2-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2-2-3-4. 참여권 보장 수준* 2-2-3-5. 참여의 장애*
	2-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3-1. 양심적 병역 거부	2-3-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2-3-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3-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2-4. 결사 및 집회 의 자유 (제15조)	2-4-1. 결사·집회	2-4-1-1. 결사·집회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2-5.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5-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5-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2-5-2. 학생 정보 보호	2-5-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정도*
			2-5-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2-5-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2-6. 정보접근권 (제17조)	2-6-1. 매체에 대한 접근	2-6-1-1. 매체 이용률
			2-6-1-2. 유해매체 이용률
			2-6-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2-6-2. 알권리	2-6-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2-6-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2-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7-1. 체벌	2-7-1-1. 체벌 경험률*
		2-7-2. 정서적 학대	2-7-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2-7-3. 청소년 폭력	2-7-3-1. 폭력피해 경험*
			2-7-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3.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3-1. 부모의 지도와 책임 (제5조, 제18조 1항, 2항)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3-1-1-2. 보육시설 수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3-1-2. 부모와의 관계	3-1-2-1. 부모와의 대화시간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3-2-1. 가출청소년·소년소녀 가정	3-2-1-1. 가출청소년 비율
			3-2-1-2. 가출 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3-2-2. 대안적 양육	3-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3-4-1-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3-4-1-3. 방임 경험률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등급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제23조)	4-1-1. 장애아동 · 청소년 보호	4-1-1-1. 장애 아동 · 청소년 취학률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4-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4-2-1-2. 0세의 기대여명 4-2-1-3. 영아 사망률 4-2-1-4. 아동 · 청소년 사망률 4-2-1-5. 사고 사망률 4-2-1-6. 자살률 4-2-1-7. 고민거리 대화 상대 4-2-1-8. 범죄 피해건수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4-3-1-1. 보건교사 배치 현황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4-3-1-3. 학교급식 만족도 4-3-1-4. 학교급식 안전 현황
			4-4-1-1. 주관적 건강평가
			4-4-2-1. 운동 실천율 4-4-2-2. 아침식사 결식율 4-4-2-3. 수면시간 4-4-2-4. 비만율 4-4-2-5. 청소년 유병률
			4-4-3-1. 우울증 지수 4-4-3-2. 스트레스 인지율 4-4-3-3. 자아존중감 4-4-3-4. 행복도
			4-5-1-1. 성교육 경험률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4-6-2-1. 흡연율 4-6-2-2. 음주율
			4-7-1-1. 빈곤율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4-7-2-1. 아동급식지원현황 4-7-2-2.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4-7-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4-7-2-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4-7-2-5.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
	4-5. 청소년의 생식 보건 권리	4-5-1. 성교육	
	4-6. 약물남용방지 대책(제33조)	4-6-1. 예방교육 4-6-2. 음주 · 흡연	
	4-7.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5-1. 교육에의 권리 (제28조)	5-1-1. 교육의 기회	5-1-1-1. 취학률 5-1-1-2. 진학률 5-1-1-3. 학업중단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 특별 보호 조치	5-2. 교육의 목표 (제29조)		5-1-1-4. 학교부적응*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5-1-1-6. 사교육 경험률*	
			5-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5-1-1-8. 대안학교 수와 종류	
			5-1-1-9. 방과후학교 운영수	
			5-1-1-10. 하루 평균 학습시간*	
		5-1-2. 진로교육 기회	5-1-2-1. 진로교육 체계	
			5-1-2-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5-2-1. 학교의 의미와 기능	5-2-1-1.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5-2-2.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5-2-2-1. 인권교육 경험		
		5-2-3. 다문화이해		5-2-3-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현황
	5-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5-3-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5-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5-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5-3-1-3.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5-3-1-4.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5-3-1-5.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5-3-1-6. 휴일을 보내는 방법*	
			5-3-1-7. 여가활동 만족도	
		5-3-2. 아동·청소년활동	5-3-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5-3-2-2. 동아리 활동 참가율*	
			5-3-2-3.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6-1. 난민아동 (제22조)			6-1-1. 난민아동	6-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6-1-1-2. 탈북난민 아동 현황
	6-1-1-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6-2. 소년 사법	6-2-1. 소년사법	6-2-1-1.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6-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6-2-1-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6-3.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3-1.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3-1-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6-3-1-2.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6-3-1-3.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6-4. 경제적 착취	6-4-1. 경제적 착취	6-4-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6-4-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6-4-1-3.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설문조사)
	6-5. 성적 착취	6-5-1. 성적 착취	6-5-1-1.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6-5-1-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6-5-1-3.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

제 3 장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6. 특별보호조치

Ⅲ.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결과 분석 : 아동·청소년 인권실태¹³⁾¹⁴⁾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¹⁵⁾

1) 인권일반(제4조, 제42조)

(1) 지표의 현황

① 인권인프라

가.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종합적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 및 평가 등을 위한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9개 유관부처 장관과 15명 이내의 아동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아동복지법(보건복지부) 제10조 제1항, 제3항).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등 아동정책 관련 주요 사안들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법 제10조 제2항), 아동·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 단위 주요 조직으로서의

13) 이 장은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가 집필하였음. 1절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절 시민적 권리와 자유는 김영지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3절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및 4절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는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가, 5절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6절 특별보호 조치는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4) 이 장에서 제시한 교차분석표는 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해당문항의 전체 결과표는 본 보고서의 별첨인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연구보고 13-R13-2)」에서 참고할 수 있음.

15) 이 절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자료집(워크숍 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위상을 기대 받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제3·4차 국가보고서 제출 이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하는 등 실질적인 활동 부진과 적절한 권한과 지원 자원(예산, 인력 등) 부재 등으로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민간집단들의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고,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2012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및 실무위원회 구성 등 재개 노력을 하였으나, 2013년 현재까지 별다른 추진 실적은 없는 상황이다.

표 III-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연도별 추진현황(2004~2007)

일시		추진내용
2004	11.15	제1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5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2005	04.27	제2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05.03	국무회의 아동정책 추진상황 보고
	11.24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관련 정부기관 과장직회의
	12.02	제3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4	제2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12.28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위원의 간담회 개최
2006	03.1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분과회의 개최
	04.21	제4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07.20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권리분과 회의 개최
	11.24	제5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2.13	제3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서면회의)
2007	11.16	제6차 아동정책실무위원회 개최
	11.30	제4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

*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보고서(2012) p.109.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¹⁶⁾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 수준 및 내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2006년 설치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위탁으로 최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운영되다가 2012년 3월부터 유엔경제이사회(ECOSOC)에서 국내 최초로 포괄적 협의지위를 부여받는 NGO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에서는 우리나라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보건 복지부장관의 위촉에 의해 아동권리옴부즈퍼슨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제1기 아동권리옴

16)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제공 내부자료 및 2012년도 사업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구성함.

부즈퍼슨 21명 및 키즈 10명, 2008년에는 제2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10명 및 키즈 10명이 활동하였으며, 2012년 6월 제3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51명 및 키즈 36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다.

옴부즈퍼슨은 협약 이행 준수 의무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활동을 하게 되며 센터에서는 옴부즈퍼슨의 활동을 바탕으로 법, 정책,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개선방안을 정부에 요청한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아동권리에 대한 정보 수집, 아동관련 정책의 조정 및 협약 이행사항 감시, 법·정책·서비스 개선 촉구, 아동권리 및 협약에 대한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인력과 예산현황을 보면, 먼저 2012년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2013년 3월 15일 위탁기관 선정) 총 169,300,000원(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 69,300,000원)의 예산으로 총 3명(센터장 1명, 팀장 1명, 계약직 연구원 1명)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였다.

표 III -1-2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2년 예산(3월~12월)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100,000	69,300	169,300
인건비(4월~12월)	28,935	66,600	95,535
사업비	64,700	-	64,700
시설비	4,850	-	4,850
운영비	1,515	2,700	4,215

*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

2013년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총 192,292,000원(보조금 100,000,000원, 자부담 92,292,000원)의 예산으로 총 4명(계약직 연구보조원 1명 추가)의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III -1-3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3년도 예산

(단위 : 천원)

구분	2013년 예산		
	보조금	자부담	계
합계	100,000	92,292	192,292
인건비	42,024	88,692	130,716
사업비	56,000	-	56,000
시설비	240	-	296
운영비	1,736	3,600	5,040

* 출처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내부자료.

○ 청소년희망센터

청소년희망센터는 2011년 여성가족부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설치된 청소년권리 전담기구이다. 2012년도 예산은 185,291,270원(집행액 179,478,930원)이었으며, 운영인력은 4명이다.

표 III-1-4 청소년 희망센터 운영인력 및 담당업무

직급	담당업무
센터장(겸직)	- 청소년희망센터 운영 총괄·조정
실장	- 세부 실행 사업계획 수립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협력 - 홍보 사업 기획 및 추진
팀장	- 기획과제 발굴 및 실태조사 - 토론회 기획 및 진행 - 모니터링 추진단 구성 및 운영 - 권리체험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 홍보사업 실무, 실적관리 등
담당	- 지도자 대상 청소년권리교육 세부 추진 및 기관 연계 - 홍보 및 실적관리 등

* 출처 : 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p.3.

2012년도에 추진한 청소년희망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청소년 권리 실태 및 욕구조사 및 토론회를 통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청소년지도자 대상 청소년 권리 교육(권역별 순회교육, 청소년지도자 교육·연수, 전문가 양성 워크숍 등), 청소년권리모니터링단(청소년희망목소리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청소년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의제 발굴 및 모니터링, 청소년권리체험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청소년 권리침해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 및 가이드북 제작(여성가족부·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4) 등이 있다.

나.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다양한 부처와 관련되어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사업’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예산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을 중심으로 0세부터 18세 미만 사이 아동·청소년 연령과 관련이 깊은 유아 및 초중등 교육 예산, 아동복지(보육 포함) 예산, 청소년사업 예산 등을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으로 한정하여 살펴보았다¹⁷⁾.

표 III-1-5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구분		2012	2013	증감 △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천원)	유아 및 초중등 교육	38,804,798	41,523,623	2,718,825
	아동복지(보육포함)	3,237,045,546	4,370,406,000	1,133,360,454
	청소년	47,434,817	57,527,000	10,092,183
	계	3,323,285,161	4,469,456,623	1,146,171,462
아동·청소년인구(0-18세 미만) (천명)		10,276	10,019	-257
1인당 지출비용(천원)		323	446	

* 출처 :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pp.116~119, 271~272, 277~278, 317~319의 내용으로 구성함.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dx_cd=1597)
/원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3년도 아동·청소년 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1,523,623천원, 아동복지(보육 포함) 4,370,406,000천원, 청소년 57,527,000천원 등 총 4,469,456,623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1,146,171,462천원 증가하였다.

표 III-1-6 연도별 청소년예산(2003~2012)

(단위 : 백만원)										
구분	여성가족부 청소년 정책관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책실	문화부 청소년국	청소년 보호위원회	국가청소년 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광특회계 (균특)	예비비	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일반회계	육성사업	시설용자			
2003	—	—	25,084	7,077	—	13,979	7,000	36,607	—	89,747
2004	—	—	23,149	8,817	—	41,610	6,000	30,248	—	109,824
2005	—	—	10,872	9,950	—	52,436	6,000	37,643	8,138	125,039
2006	—	—	—	—	19,825	67,727	4,500	45,442	321	137,815
2007	—	—	—	—	35,388	74,812		43,128	—	153,328
2008	—	116,433	—	—	—	75,182		39,251	—	230,866
2009	—	182,641	—	—	—	81,741 (증진기금 3,463 포함)		36,522	—	300,904
2010	20,885	—	—	—	—	90,652		34,215	—	145,752
2011	21,671	—	—	—	—	73,491		49,417	—	144,579
2012	47,435	—	—	—	—	58,088		41,477		147,0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436.

* 주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예산은 제외되었음.

- 2010년: 4,603백만원(일반회계 1,085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518백만원)
- 2011년: 5,687백만원(일반회계 1,580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181백만원)
- 2012년: 6,240백만원(일반회계 2,053백만원, 청소년육성기금 3,926백만원, 여성발전기금 261백만원)

17) 2013년도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자료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예산구성 세부항목을 제시하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051항 유아 및 초중등교육, ‘아동복지(보육 포함)’ 예산은 1300항 요보호아동+1400항 아동복지+3100항 보육지원+1000항 복지부의 아동·청소년정책 예산, ‘청소년’ 예산은 2100항 청소년정책및역량강화+2200 청소년사회안전망강화 등이다.

한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중심의 협의의 청소년 예산규모를 보면, 2012년도 예산은 총 1,470억원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474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80억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415억원으로 청소년육성기금이 청소년정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7 2013년도 중앙행정기관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구분	예산(백만원)				과제수(개)
	'12년	'13년	증감	%	'13년 시행계획
계	3,712,224	5,448,853	1,736,629	46.8	253
여성가족부	331,643	420,107	88,464	26.7	86
방송통신위원회	3,303	4,622	1,319	39.9	3
국가보훈처	2,784	2,676	-108	-3.9	1
식품의약품안전처	785	823	38	4.8	1
국민권익위원회	542	645	103	19.0	1
교육부	2,110,105	3,147,357	1,037,252	49.2	38
외교부	3,627	3,475	-152	-1.7	12
통일부	1,900	1,900	-	-	2
법무부(대검찰청포함)	836	2,269	1,443	174.7	17
국방부	-	-	-	-	1
안전행정부	146,563	174,491	27,928	19.1	8
문화체육관광부	175,925	295,649	119,724	68.1	23
고용노동부	507,590	602,529	94,939	18.7	8
농림축산식품부	41,223	36,510	-4,713	-11.4	4
산업통상자원부	3,869	2,461	-1,408	-36.4	5
보건복지부	290,744	377,947	47,203	16.2	17
환경부	4,531	5,810	1,279	28.2	1
국토교통부	30,740	308,420	277,680	903.3	4
경찰청	11,130	30,967	19,837	178.2	8
소방방재청	4,646	14,900	10,254	220.7	1
문화재청	918	994	76	8.3	7
농촌진흥청	1,292	1,780	488	37.8	1
산림청	10,960	15,587	4,627	42.2	1
중소기업청	16,850	27,045	10,195	60.5	2
특허청	9,728	9,889	161	1.7	1

* 출처 : 여성가족부(2013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p.28.

중앙행정기관의 2013년도 청소년정책 예산 총규모는 약 5조 4,488억원으로 2012년 3조 7,122억원에서 4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은 일반회계(3조 7,232억원), 기금(9,034억원), 특별회계(797억원), 지방비(7,424억원)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복권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방송발전기금, 국제교류기금 등으로, 특별회계는 광특회계, 농특, 기술료, 환경개선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기관별 예산규모는 교육부(3조 1,474억원), 고용노동부(6,025억원), 여성가족부(4,201억원), 보건복지부(3,379억원) 등의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b: 26).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정책 예산규모를 자체예산 중심으로 살펴보면, 서울이 1,061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613억원, 경기 329억원, 대전 232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세종시를 제외하고는 광주(32억원)와 제주(39억원)의 예산규모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1-8 2013년도 지자체별 청소년정책관련 예산규모

구분	2012 예산합계 (백만원)	2013년 예산(백만원)					
		2013 예산합계	국비보조금	지자체 자체예산			사업수(개)
				소계	지방비	기타	
서울	105,439	112,108	5,973	106,135	106,135	—	38
부산	22,030	21,241	11,900	9,341	9,341	—	45
대구	19,525	7,730	3,144	4,586	4,586	—	47
인천	21,281	15,263	5,550	9,713	9,713	—	38
광주	4,621	6,486	3,279	3,207	3,207	—	35
대전	15,581	25,448	2,214	23,234	23,234	—	21
울산	6,151	8,408	4,070	4,338	4,338	—	31
세종	—	9,015	7,808	1,207	1,207	—	28
경기	49,720	57,253	24,311	32,942	32,672	270	82
강원	39,401	18,642	11,552	7,090	7,090	—	47
충북	11,369	14,774	6,224	8,550	8,550	—	31
충남	13,266	16,059	7,561	8,498	8,498	—	39
전북	13,828	18,001	8,711	9,290	9,290	—	49
전남	15,225	21,066	12,062	9,004	9,004	—	33
경북	72,162	68,375	7,060	61,315	61,306	11	79
경남	13,777	12,570	6,883	5,687	5,687	—	20
제주	6,640	8,212	4,269	3,943	3,943	—	55
총계	430,017	440,651	132,571	308,080	307,799	281	718

* 출처 : 여성가족부(2013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p.13.

여성가족부(2012c).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p.16. 재구성

② 인권의식

가. 인권감수성과 태도

인권감수성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첫 번째 질문으로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인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는 응답이 76.9%(그런 편이다 57.1%, 매우 그렇다 19.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23.2%(그렇지 않은 편이다 18.7%, 전혀 그렇지 않다

4.5%)로 나타나 10명 중 2명은 친구의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7.0%)이 남학생(76.9%)보다, 초등학생(86.1%)이 고등학생과 중학생(74.8%, 71.0%)보다,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7.7%)이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6.3%, 75.9%)보다, 학업성적이 중간인 아동·청소년(79.8%)이 높거나(78.3%) 낮은(71.0%) 아동·청소년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80.1%, 중 76.5%, 하 69.6%) ‘그렇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9 어려움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5	18.7	57.1	19.8	100.0(9,512)	
성별	남자	6.2	17.2	56.6	20.0	100.0(4,981)	457.864***
	여자	2.6	20.3	57.5	19.5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3.9	10.0	50.4	35.7	100.0(2,825)	336.689***
	중학교	6.2	22.8	58.2	12.8	100.0(3,278)	
	고등학교	3.2	21.9	61.4	13.4	100.0(3,409)	
지역 규모	대도시	4.1	19.7	57.1	19.2	100.0(3,940)	38.979***
	중소도시	4.7	17.6	56.7	21.0	100.0(4,393)	
	읍면지역	4.8	19.4	58.4	17.5	100.0(1,179)	
학업 성적	상	3.6	18.1	53.2	25.1	100.0(2,847)	38.679***
	중	3.5	16.7	60.2	19.6	100.0(3,999)	
	하	6.8	22.2	56.7	14.3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4.3	15.7	54.7	25.4	100.0(4,315)	26.177***
	중	4.2	19.3	60.1	16.4	100.0(3,531)	
	하	5.3	25.1	57.0	12.6	100.0(1,656)	

*** $p < 0.001$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결과, 56.3%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4.6%, 매우 그렇다 11.7%)고 응답하여 절반이 조금 넘는 학생들이 인권 관련 단체나 모임 참여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1.5%)이 남학생(51.6%)보다, 초등학생(63.0%)이 고등학생(56.3%)과 중학생(50.6%)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57.1%)이 읍면지역(57.0%)과 중소도시 아동·청소년(55.4%)보다,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57.1%)이 한부모가정(48.6%)과 조손가정(49.2%)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상 61.1%, 중 58.0%, 하 48.6%)과 경제적 수준(상 59.9%, 중 54.8%, 하 50.5%)이 높을수록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III-1-10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한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2.8	30.9	44.6	11.7	100.0(9,504)	
성별	남자	16.7	31.8	40.6	11.0	100.0(4,978)	36.701***
	여자	8.6	29.9	49.0	12.5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0	25.9	44.6	18.4	100.0(2,821)	69.169***
	중학교	16.0	33.4	42.1	8.5	100.0(3,277)	
	고등학교	11.2	32.5	47.0	9.3	100.0(3,407)	
지역 규모	대도시	12.5	30.3	44.9	12.2	100.0(3,938)	25.595**
	중소도시	12.9	31.7	43.6	11.8	100.0(4,387)	
	읍면지역	13.5	29.6	47.3	9.7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2	30.7	45.2	11.9	100.0(8,495)	26.429***
	한부모가정	17.3	34.2	38.5	10.1	100.0(757)	
	조손가정	22.2	28.6	39.8	9.4	100.0(80)	
	기타	16.7	24.4	45.5	13.4	100.0(153)	
학업 성적	상	10.5	28.4	45.1	16.0	100.0(2,844)	44.621***
	중	11.6	30.3	47.2	10.8	100.0(3,997)	
	하	17.1	34.4	40.2	8.4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12.1	28.0	44.9	15.0	100.0(4,311)	127.403***
	중	12.9	32.3	45.6	9.2	100.0(3,529)	
	하	14.3	35.2	42.0	8.5	100.0(1,653)	

** $p < 0.01$, *** $p < 0.001$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에 대해 86.8%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49.6%, 매우 그렇다 37.2%)고 응답하여 90%에 가까운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어려운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었으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도 13.3%(그렇지 않은 편이다 8.3%, 전혀 그렇지 않다 5.0%)로 10명 중 1명은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3.1%)이 남학생(80.9%)보다, 고등학생(89.4%)이 초등학생(87.8%)과 중학생(83.1%)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87.2%)이 읍면지역(86.5%)과 중소도시(86.3%) 아동·청소년보다,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87.1%)이 한부모가정(83.9%)과 조손가정(82.0%)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상 89.3%, 중 87.6%, 하 82.9%)과 경제적 수준(상 87.9%, 중 86.0%, 하 85.5%)이 높을수록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대해 공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계(일반/특목/지울고)고등학생(90.3%)이 특성화고등학생(85.2%)에 비해 공감하는 정도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 -1-11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단위 :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5.0	8.3	49.6	37.2	100.0(9,510)	
성별	남자	7.7	11.4	52.2	28.7	100.0(4,981)	39.801***
	여자	2.0	4.8	46.7	46.4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	7.9	42.9	44.9	100.0(2,824)	16.509*
	중학교	6.8	10.1	54.1	29.0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3.2	6.5	50.5	39.8	100.0(2,799)	
	특성화고	6.1	8.6	52.3	32.9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6	8.2	47.6	39.6	100.0(3,941)	83.971***
	중소도시	5.3	8.3	50.7	35.6	100.0(4,391)	
	읍면지역	5.0	8.4	51.8	34.7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8	8.1	49.7	37.4	100.0(8,500)	112.513***
	한부모가정	6.1	10.1	49.4	34.5	100.0(758)	
	조손가정	10.2	7.8	43.1	38.9	100.0(80)	
	기타	7.3	9.7	45.2	37.8	100.0(153)	
학업 성적	상	3.9	6.8	44.9	44.4	100.0(2,846)	35.387***
	중	4.2	8.2	51.4	36.2	100.0(3,999)	
	하	7.2	9.9	51.9	31.0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4.6	7.4	46.2	41.7	100.0(4,313)	93.831***
	중	5.3	8.8	54.5	31.5	100.0(3,531)	
	하	5.1	9.5	48.1	37.4	100.0(1,656)	

* $p<0.05$, *** $p<0.001$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51.1%(그렇지 않은 편이다 33.3%, 전혀 그렇지 않다 17.8%), ‘그렇다’는 응답이 48.8%(그런 편이다 40.4%, 매우 그렇다 8.4%)로 나타나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약간 많았으나 과반수에 가까운 48.8%의 학생들이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0.5%)이 남학생(47.7%)보다, 중학생(53.4%)이 일반계고등학교생(51.6%)과 특성화고등학교생(43.7%), 그리고 초등학교생(42.0%)보다, 대도시에 살수록(대도시 50.0%, 중소도시 48.3%, 읍면지역 47.2%),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49.1%)이 한부모가정(47.6%)과 조손가정(44.1%) 아동·청소년보다, 학업성적이 높은 아동·청소년(50.3%)이 낮거나(48.4%) 중간인 아동·청소년(48.1%)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은 아동·청소년(50.4%)이 낮거나(48.3%) 중간인 아동·청소년(47.2%)보다 폭력피해 청소년이 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 -1-12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7.8	33.3	40.4	8.4	100.0(9,503)	
성별	남자	20.0	32.2	38.2	9.5	100.0(4,975)	78.731***
	여자	15.4	34.5	42.8	7.2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8	31.3	31.1	10.9	100.0(2,818)	15.867***
	중학교	15.6	31.0	45.5	7.9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11.3	37.0	44.7	6.9	100.0(2,798)	
	특성화고	17.8	38.5	36.5	7.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17.3	32.8	41.5	8.5	100.0(3,938)	309.189***
	중소도시	18.3	33.4	39.3	9.0	100.0(4,388)	
	읍면지역	18.0	34.9	40.8	6.4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5	33.5	40.6	8.4	100.0(8,494)	28.5***
	한부모가정	18.5	33.9	39.0	8.6	100.0(758)	
	조손가정	34.4	21.5	33.7	10.4	100.0(79)	
	기타	23.8	27.3	40.4	8.5	100.0(153)	
학업 성적	상	17.1	32.6	40.7	9.6	100.0(2,843)	782.793***
	중	17.8	34.1	40.3	7.8	100.0(3,997)	
	하	18.6	32.9	40.3	8.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18.7	30.9	39.8	10.6	100.0(4,310)	69.62***
	중	18.2	34.6	40.7	6.5	100.0(3,528)	
	하	14.8	36.9	41.5	6.8	100.0(1,654)	

*** $p < 0.001$

나.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그렇다’는 응답이 31.7%(그런 편이다 26.9%, 매우 그렇다 4.8%),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68.3%(그렇지 않은 편이다 41.9%, 전혀 그렇지 않다 26.4%)로 나타나, 70%에 가까운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34.5%)이 여학생(28.7%)보다 초등학교생(44.1%)이 일반계고등학교생(27.1%)과 중학생(26.5%),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생(23.8%)보다, 대도시 아동·청소년(32.7%)이 읍면지역(31.8%)과 중소도시 아동·청소년(30.8%)보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0.1%)이 양부모가정(31.9%)과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29.3%)보다, 학업성적이 중간인 아동·청소년(33.7%)이 성적이 높거나(32.4%) 낮은 아동·청소년(28.1%)보다,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36.2%, 중 29.6%, 하 24.7%) 청소년의 결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표 III-1-13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므로 어른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4	41.9	26.9	4.8	100.0(9,503)	84.308***
성별	남자	28.0	37.5	29.0	5.5	100.0(4,973)	
	여자	24.6	46.7	24.7	4.0	100.0(4,5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25.0	30.9	33.3	10.8	100.0(2,820)	22.782**
	중학교	29.0	44.5	23.5	3.0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23.7	49.2	25.4	1.7	100.0(2,796)	
	특성화고	30.9	45.2	22.8	1.0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5.8	41.5	27.5	5.2	100.0(3,939)	28.254***
	중소도시	26.8	42.3	26.1	4.7	100.0(4,386)	
	읍면지역	26.9	41.2	28.1	3.7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0	42.1	27.2	4.7	100.0(8,495)	170.099***
	한부모가정	29.1	41.6	23.8	5.5	100.0(756)	
	조손가정	42.3	17.6	34.9	5.2	100.0(80)	
	기타	26.3	43.5	21.5	8.6	100.0(153)	
학업 성적	상	25.7	41.9	27.2	5.2	100.0(2,846)	163.06***
	중	24.6	41.7	28.1	5.6	100.0(3,994)	
	하	29.8	42.1	24.8	3.3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25.5	38.3	29.8	6.4	100.0(4,311)	140.861***
	중	26.5	43.9	25.5	4.1	100.0(3,525)	
	하	28.3	47.0	22.6	2.1	100.0(1,656)	

** $p<0.01$, *** $p<0.001$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7.6%, 매우 그렇다 22.5%)’고 응답하여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일반계고등학생(86.1%), 초등학생(79.4%), 특성화고등학생(76.8%), 중학생(76.4%) 순으로, 대도시(81.0%), 읍면지역(80.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9.2%) 순으로, 양부모가정(80.9%), 한부모가정(76.4%),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2.9%) 순으로, 학업성적(상 84.9%, 중 80.6%, 하 74.4%)과 경제적 수준(81.0%, 중 79.4%, 하 79.4%)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10명중 3명의 초등학생(29.9%)이 청소년의 사회참여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III-1-14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2	12.7	57.6	22.5	100.0(9,495)	
성별	남자	10.3	15.6	53.2	20.9	100.0(4,970)	9.6
	여자	3.9	9.4	62.5	24.2	100.0(4,5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5	13.2	49.5	29.9	100.0(2,815)	64.089***
	중학교	9.3	14.4	58.2	18.2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4.4	9.5	64.9	21.2	100.0(2,795)	
	특성화고	7.9	15.4	59.3	17.5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7.2	11.9	57.8	23.2	100.0(3,932)	197.031***
	중소도시	7.5	13.4	56.5	22.7	100.0(4,387)	
	읍면지역	6.5	12.6	61.6	19.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	12.4	58.1	22.8	100.0(8,489)	54.827***
	한부모가정	9.6	14.0	56.4	20.0	100.0(755)	
	조손가정	22.5	14.7	47.2	15.7	100.0(80)	
	기타	12.4	19.9	46.6	21.1	100.0(153)	
학업 성적	상	5.3	9.7	55.3	29.6	100.0(2,842)	117.277***
	중	6.3	13.0	59.8	20.8	100.0(3,993)	
	하	10.4	15.2	57.1	17.3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7.2	11.7	55.2	25.8	100.0(4,303)	125.75***
	중	7.2	13.4	60.4	19.0	100.0(3,525)	
	하	7.2	13.4	58.2	21.2	100.0(1,656)	

*** $p < 0.001$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의견에 대해 65.5%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5.5%, 매우 그렇다 10.0%)’고 응답하였다. 성별차이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여학생(69.8%)이 남학생(61.8%)보다 ‘그렇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표 III-1-15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7	22.8	55.5	10.0	100.0(6,681)	
성별	남자	15.6	22.7	51.9	9.9	100.0(3,503)	137.557***
	여자	7.4	22.9	59.6	10.2	100.0(3,178)	

*** $p < 0.001$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0.8%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8.3%, 매우 그렇다 42.5%)’고 응답하였다.

표 III -1-16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5	4.7	48.3	42.5	100.0(9,494)	
성별	남자	6.8	6.1	48.4	38.7	100.0(4,967)	10.5*
	여자	2.1	3.0	48.1	46.8	100.0(4,5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4.2	4.7	40.5	50.6	100.0(2,818)	30.85*
	중학교	5.8	5.5	51.8	36.9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2.9	3.1	51.3	42.7	100.0(2,795)	
	특성화고	6.8	7.0	51.4	34.8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4	4.4	47.0	44.2	100.0(3,934)	151.257***
	중소도시	4.5	5.0	48.6	42.0	100.0(4,384)	
	읍면지역	5.1	4.3	51.5	39.2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	4.6	48.4	42.8	100.0(8,489)	129.958***
	한부모가정	6.1	4.8	49.2	39.9	100.0(752)	
	조손가정	15.2	6.1	40.4	38.3	100.0(80)	
	기타	8.8	8.7	38.6	44.0	100.0(153)	
학업 성적	상	2.6	2.9	44.0	50.5	100.0(2,844)	356.238***
	중	3.9	4.9	49.8	41.3	100.0(3,992)	
	하	7.5	6.0	50.5	35.9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4.2	4.4	45.7	45.7	100.0(4,304)	460.914***
	중	4.5	5.0	51.9	38.6	100.0(3,526)	
	하	5.5	4.5	47.1	42.9	100.0(1,653)	

* $p < 0.05$, *** $p < 0.001$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4.9%)이 남학생(87.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94.0%), 초등학생(91.1%), 중학생(88.7%), 특성화고등학생(86.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1.2%), 읍면 지역(90.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90.6%)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1.2%), 한부모가정(89.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8.7%) 순으로, 학업성적(상 94.5%, 중 91.1%, 하 86.4%)과 경제적 수준(상 91.4%, 중 90.5%, 하 90.0%)이 높을수록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매우 그렇다’는 응답률이 초등학생의 경우 50.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난 점, 의견표명의 권리에 대해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 92.6%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8.1%, 매우 그렇다 54.5%)’고 응답하였다.

표 III -1-17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2	3.3	38.1	54.5	100.0(6,680)	
성별	남자	6.5	4.6	38.2	50.6	100.0(3,502)	241.111***
	여자	1.6	1.8	37.9	58.7	100.0(3,178)	
학교 유형	중학교	5.3	3.9	39.7	51.1	100.0(3,275)	106.548***
	일반/특목/자율고	2.4	2.4	36.5	58.8	100.0(2,795)	
	특성화고	6.6	4.1	36.7	52.6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3.9	3.0	36.9	56.2	100.0(2,780)	126.745***
	중소도시	4.5	3.5	39.3	52.7	100.0(3,019)	
	읍면지역	3.9	3.4	37.6	55.1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3.2	38.6	54.4	100.0(5,955)	59.564***
	한부모가정	5.5	3.1	32.9	58.6	100.0(570)	
	조손가정	19.7	2.2	44.0	34.0	100.0(46)	
	기타	13.7	7.5	31.5	47.4	100.0(100)	
학업 성적	상	2.6	2.3	36.1	58.9	100.0(1,741)	196.764***
	중	3.5	3.2	39.7	53.7	100.0(2,639)	
	하	6.1	4.0	37.7	52.2	100.0(2,293)	
경제적 수준	상	3.7	3.2	38.2	54.8	100.0(2,559)	53.97***
	중	4.6	3.2	41.1	51.1	100.0(2,628)	
	하	4.0	3.4	32.5	60.0	100.0(1,484)	

*** $p < 0.001$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96.6%)이 남학생(88.8%)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95.3%), 중학생(90.8%), 특성화고등학교(89.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93.1%), 읍면지역 (92.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92.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3.0%), 한부모가정 (91.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8.0%)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93.0%), 하(92.5%), 중(92.2%) 순으로, 마지막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93.0%, 중 92.2%, 하 92.5%) 경제적 여건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 의견표명권과 마찬가지로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낮은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91.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35.4%, 매우 그렇다 56.3%)’고 응답하였다.

표 III -1-18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1	4.1	35.4	56.3	100.0(9,494)	
성별	남자	6.4	5.4	37.9	50.3	100.0(4,968)	133.404***
	여자	1.5	2.8	32.8	62.9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	3.1	30.3	63.1	100.0(2,820)	190.867***
	중학교	5.0	4.5	37.3	53.1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3.1	4.4	38.3	54.2	100.0(2,794)	
	특성화고	6.5	5.3	36.2	52.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8	3.9	33.6	58.7	100.0(3,931)	571.533***
	중소도시	4.2	4.4	36.3	55.1	100.0(4,385)	
	읍면지역	4.7	3.7	38.4	53.2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7	4.0	35.6	56.6	100.0(8,487)	170.894***
	한부모가정	5.7	4.7	34.2	55.4	100.0(755)	
	조손가정	15.9	0.8	34.5	48.9	100.0(80)	
	기타	7.3	9.5	33.1	50.1	100.0(153)	
학업 성적	상	2.6	3.5	31.7	62.2	100.0(2,842)	2868.833***
	중	3.4	4.0	36.9	55.7	100.0(3,991)	
	하	6.6	5.0	37.3	51.1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3.7	3.8	33.1	59.4	100.0(4,308)	479.887***
	중	4.1	4.1	38.6	53.1	100.0(3,522)	
	하	4.9	4.9	34.8	55.4	100.0(1,655)	

*** $p < 0.001$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5.7%)이 남학생(88.2%)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93.4%), 일반계 고등학교(92.5%), 중학생(90.4%), 특성화고등학교(88.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92.3%), 읍면 지역(91.6%), 중소도시(91.4%)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92.2%), 한부모가정(89.6%), 조손가정(83.4%) 순으로, 학업성적(상 93.9%, 중 92.6%, 하 88.4%)과 경제적 수준(상 92.5%, 중 91.7%, 하 90.2%)이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85.7%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45.5%, 매우 그렇다 40.2%)’고 응답하였다.

표 III-1-19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6.0	8.3	45.5	40.2	100.0(9,500)	
성별	남자	8.4	9.3	45.7	36.7	100.0(4,972)	613.211***
	여자	3.3	7.3	45.3	44.1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	8.0	39.2	46.9	100.0(2,821)	254.34***
	중학교	6.9	8.4	47.2	37.5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4.4	8.0	49.8	37.7	100.0(2,796)	
	특성화고	8.4	10.6	45.9	35.1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5.6	8.0	45.2	41.3	100.0(3,936)	411.334***
	중소도시	6.1	8.9	45.8	39.2	100.0(4,386)	
	읍면지역	6.6	7.5	45.6	40.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5	8.1	45.9	40.4	100.0(8,492)	317.012***
	한부모가정	8.1	9.9	43.2	38.9	100.0(756)	
	조손가정	16.5	13.5	32.3	37.8	100.0(80)	
	기타	11.6	8.1	40.5	39.8	100.0(153)	
학업 성적	상	4.2	6.5	42.8	46.5	100.0(2,846)	378.408***
	중	5.4	8.2	47.3	39.1	100.0(3,994)	
	하	8.6	10.4	45.8	35.2	100.0(2,645)	
경제적 수준	상	5.8	8.0	43.4	42.8	100.0(4,312)	325.65***
	중	5.5	8.4	49.3	36.8	100.0(3,523)	
	하	7.1	8.9	42.9	41.0	100.0(1,655)	

*** $p < 0.001$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9.4%)이 남학생(82.4%)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87.5%), 초등학교(86.1%), 중학생(84.7%), 특성화고등학생(81.0%)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86.5%), 읍면 지역(85.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85.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6.3%), 한부모가정(82.1%), 조손가정(70.1%) 순으로, 학업성적(상 89.3%, 중 86.4%, 하 81.0%)과 경제적 수준(상 86.2%, 중 86.1%, 하 83.9%)이 높을수록 국내거주 타민족 청소년에게도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가정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90.1%(존중받는 편이다 52.5%, 매우 존중받는다 37.6%)로 높게 나타났으나 10명 중 1명은 가정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80.1%(존중받는

편이다 63.6%, 매우 존중받는다 16.5%)로 나타났다.

표 III-1-20 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2.2	7.7	52.5	37.6	100.0(9,513)	
성별	남자	2.9	7.4	52.2	37.5	100.0(4,982)	76.842***
	여자	1.4	8.1	52.8	37.7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8	6.0	43.8	48.4	100.0(2,826)	202.715***
	중학교	3.2	9.0	55.6	32.2	100.0(3,281)	
	일반/특목/자율고	1.2	7.2	56.6	35.0	100.0(2,797)	
	특성화고	3.4	11.2	56.7	28.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4	7.9	51.7	38.0	100.0(3,944)	104.164***
	중소도시	2.2	7.8	52.4	37.6	100.0(4,390)	
	읍면지역	1.9	6.6	55.0	36.5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9	7.3	52.0	38.7	100.0(8,504)	91.429***
	한부모가정	3.5	12.0	56.6	27.8	100.0(758)	
	조손가정	13.9	6.4	59.9	19.9	100.0(80)	
	기타	5.4	9.0	51.4	34.2	100.0(154)	
학업 성적	상	1.7	5.3	44.9	48.2	100.0(2,850)	72.944***
	중	1.3	6.7	55.6	36.4	100.0(4,000)	
	하	4.3	11.8	56.0	27.9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1.5	5.0	45.9	47.5	100.0(4,315)	109.838***
	중	1.9	8.1	58.7	31.3	100.0(3,534)	
	하	4.6	13.9	56.4	25.2	100.0(1,656)	

*** $p < 0.001$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1.3%)이 남학생(78.8%)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87.0%), 중학생(78.7%), 일반계고등학교(77.4%), 특성화고등학교(68.1%)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0.6%), 대도시(80.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8.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0.8%), 한부모가정(76.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55.7%) 순으로, 학업성적(상 85.4%, 중 83.2%, 하 69.6%)과 경제적 수준(상 84.1%, 중 79.3%, 하 71.2%)이 높을수록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손가정 아동·청소년, 학업성적이 낮은 아동·청소년,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학교에서의 인권 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 -1-21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4.6	15.3	63.6	16.5	100.0(9,512)	
성별	남자	6.1	15.0	61.3	17.5	100.0(4,983)	55.811***
	여자	3.0	15.6	66.0	15.3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10.5	60.0	27.0	100.0(2,826)	34.686***
	중학교	5.3	16.0	63.9	14.8	100.0(3,280)	
	일반/특목/자율고	5.3	17.3	67.7	9.7	100.0(2,797)	
	특성화고	7.1	24.8	60.1	8.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4.8	15.1	63.6	16.5	100.0(3,943)	39.221***
	중소도시	4.4	15.0	63.6	17.0	100.0(4,389)	
	읍면지역	5.0	17.0	63.7	14.3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4	14.8	63.8	17.0	100.0(8,503)	41.265***
	한부모가정	5.2	18.7	64.6	11.5	100.0(758)	
	조손가정	12.9	31.4	47.6	8.1	100.0(80)	
	기타	8.2	14.7	59.5	17.6	100.0(154)	
학업 성적	상	3.9	10.7	60.6	24.8	100.0(2,849)	68.144***
	중	2.9	13.9	67.8	15.4	100.0(4,000)	
	하	8.0	22.4	60.7	8.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3.9	12.1	61.5	22.6	100.0(4,314)	6.2
	중	4.3	16.5	66.6	12.7	100.0(3,533)	
	하	7.4	21.4	62.8	8.4	100.0(1,656)	

*** $p < 0.001$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81.1%(존중받는 편이다 64.9%, 매우 존중받는다 16.2%)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1.9%)이 남학생(80.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83.4%), 중학생(80.7%), 초등학생(80.2%), 특성화고등학생(76.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1.4%), 대도시(81.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9.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1.5%), 한부모가정(77.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0.9%) 순으로, 학업성적(상 84.3%, 중 83.4%, 하 74.1%)과 경제적 수준(상 84.5%, 중 80.7%, 하 73.2%)이 높을수록 지역에서 인권을 존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2 지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4.1	14.8	64.9	16.2	100.0(9,511)	
성별	남자	5.3	14.3	62.4	17.9	100.0(4,981)	9.752*
	여자	2.7	15.3	67.6	14.3	100.0(4,5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4.5	15.3	55.5	24.7	100.0(2,825)	14.188**
	중학교	4.3	15.0	65.6	15.1	100.0(3,281)	
	일반/특목/자율고	3.2	13.3	73.1	10.3	100.0(2,796)	
	특성화고	5.1	18.6	67.2	9.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9	15.0	64.9	16.2	100.0(3,943)	9.0
	중소도시	4.5	14.2	64.7	16.7	100.0(4,390)	
	읍면지역	3.4	16.7	65.7	14.2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	14.6	65.0	16.5	100.0(8,502)	6.9
	한부모가정	4.6	17.7	65.5	12.1	100.0(758)	
	조손가정	14.2	14.9	54.5	16.4	100.0(80)	
	기타	11.7	11.5	60.0	16.8	100.0(154)	
학업 성적	상	3.4	12.3	61.8	22.5	100.0(2,850)	5.2
	중	3.0	13.6	68.0	15.4	100.0(3,999)	
	하	6.5	19.4	63.7	10.4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3.5	12.1	62.2	22.3	100.0(4,315)	10.74*
	중	3.6	15.7	68.5	12.2	100.0(3,532)	
	하	6.7	20.1	64.5	8.7	100.0(1,656)	

* $p<0.05$, ** $p<0.01$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해 ‘존중받는다’는 응답은 67.6%(존중받는 편이다 54.6%, 매우 존중받는다 13.0%)로 생활영역별 인권수준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9.0%)이 남학생(66.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70.6%), 일반계고 등학생(67.4%), 초등학교생(66.3%), 특성화고등학생(58.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68.3%), 대도시(67.6%), 읍면지역 아동·청소년(65.3%)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68.2%), 한부모가정(63.0%), 조손가정 아동·청소년(51.8%) 순으로, 학업성적(상 71.8%, 중 69.6%, 하 60.1%)과 경제적 수준(상 71.6%, 중 68.0%, 하 56.0%)이 높을수록 인권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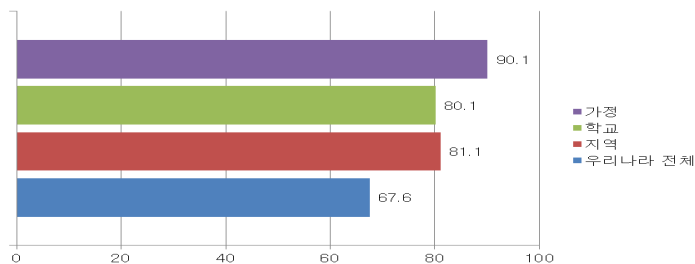
표 Ⅲ-1-23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 존중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전체(N)	χ^2
전체		9.4	23.0	54.6	13.0	100.0(9,508)	
성별	남자	11.0	22.7	51.9	14.4	100.0(4,981)	27.749***
	여자	7.6	23.4	57.6	11.4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4	22.2	46.9	19.4	100.0(2,825)	294.503***
	중학교	8.8	20.6	57.2	13.4	100.0(3,280)	
	일반/특목/자율고	7.4	25.2	60.0	7.4	100.0(2,795)	
	특성화고	12.1	29.6	51.8	6.4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9.5	23.0	54.6	13.0	100.0(3,941)	460.397***
	중소도시	9.3	22.5	54.9	13.4	100.0(4,388)	
	읍면지역	9.4	25.2	53.9	11.4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0	22.8	55.0	13.2	100.0(8,500)	308.348***
	한부모가정	10.3	26.7	53.1	9.9	100.0(757)	
	조손가정	23.3	24.8	41.3	10.5	100.0(80)	
	기타	15.5	18.8	50.3	15.4	100.0(154)	
학업 성적	상	8.9	19.3	54.4	17.4	100.0(2,849)	293.968***
	중	7.8	22.7	57.4	12.2	100.0(3,997)	
	하	12.3	27.6	50.9	9.2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8.3	20.0	54.0	17.6	100.0(4,316)	255.228***
	중	8.6	23.3	58.0	10.0	100.0(3,528)	
	하	13.7	30.3	49.0	7.0	100.0(1,656)	

*** $p < 0.001$

한편 가정, 학교, 지역,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응답한 값을 비교해보면 【그림 Ⅲ-1-1】과 같다. 전체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우리나라 전체(67.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존중받는 편이다’와 ‘매우 존중받는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자신과 밀접한 생활영역에서는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하는 반면 우리나라 전반적인 인권존중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 아동·청소년 인권존중 정도

라. 인권 관련 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

○ 유엔(UN)아동권리협약

유엔(UN)아동권리협약은 국가·사회가 보장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인권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제조약으로 전세계 193개국이 비준한 보편적 인권기준이라 할 수 있다.

표 III -1-24 유엔(UN)아동권리협약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46.8	40.1	13.1	100.0(9,509)	
성별	남자	49.7	36.7	13.6	100.0(4,980)	6.7
	여자	43.6	43.9	12.5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8.0	39.0	13.0	100.0(2,825)	6.3
	중학교	46.5	40.4	13.1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46.3	40.0	13.7	100.0(2,798)	
	특성화고	44.7	44.4	11.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45.7	40.7	13.6	100.0(3,941)	8.082*
	중소도시	48.6	38.7	12.7	100.0(4,389)	
	읍면지역	43.6	43.5	13.0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9	40.8	13.4	100.0(8,499)	19.9
	한부모가정	53.3	35.6	11.1	100.0(758)	
	조손가정	60.5	32.5	6.9	100.0(80)	
	기타	53.4	33.7	12.9	100.0(153)	
학업 성적	상	41.5	41.1	17.4	100.0(2,848)	57.123***
	중	47.7	40.1	12.2	100.0(3,999)	
	하	51.0	39.1	9.8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42.7	41.7	15.6	100.0(4,314)	43.042***
	중	49.7	39.4	10.8	100.0(3,530)	
	하	50.8	37.6	11.6	100.0(1,654)	

* $p<0.05$, *** $p<0.001$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모른다’ 46.8%, ‘이름만 들어봤다’ 40.1%,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3.1%로 나타나, 과반수를 조금 넘는 53.2%의 아동·청소년이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3.1%로 매우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한민국은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로서 협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아동·청소년이 46.8%, 협약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동·청소년이 10명 중 8명이 넘는다는 것은(86.9%) 협약 관련 교육과 홍보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기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협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56.5%), 대도시(54.3%), 중소도시 아동·청소년(51.4%) 순으로, 학업성적(상 58.5%, 중 52.3%, 하 48.9%)과 경제적 수준(상 57.3%, 중 50.2%, 하 49.2%)이 높을수록 협약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다소 순위 차이가 있었는데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13.6%), 읍면지역(13.0%), 중소도시 아동·청소년(12.7%)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17.4%, 중 12.2%, 하 9.8%),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 수준이 높은 경우(15.6%), 낮은 경우(11.6%), 중간인 경우(10.8%)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자치법규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1990년대 후반부터 언급되었던 사안이지만 광범위하고 본격적인 논의는 2008년경부터 시작되어 왔으며, 2010년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시발로 지역별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해당 지역 학생들의 생활공간과 밀접한 인권 기준으로 기능하는데, 특히 학교에서의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이므로 학생들의 인권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39.5%, ‘이름만 들어봤다’ 44.0%,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16.5%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6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16.5%인 것을 볼 수 있다. 2013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4개 시·도(경기, 광주, 서울, 전북)에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조례제정을 위한 논의가 오랜기간 진행되고 있는 곳도 45개 지역(충북, 강원, 경남, 전남, 제주 등)에 이르는 상황을 볼 때, 교육공동체의 소통과 이해 및 이행 노력과 모니터링 등이 조례제정 및 시행의 실효성 확보에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례에 대한 인지도가 16.5%에 불과한 것은 조례 제정 및 시행과정에서 교육구성원인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25 학생인권조례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39.5	44.0	16.5	100.0(9,508)	
성별	남자	42.7	41.8	15.6	100.0(4,979)	117.942***
	여자	36.0	46.5	17.5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50.5	41.2	8.3	100.0(2,826)	42.485***
	중학교	44.7	42.1	13.2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22.5	48.7	28.8	100.0(2,797)	
	특성화고	37.8	46.1	16.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9.7	44.0	16.4	100.0(3,941)	219.137***
	중소도시	39.5	43.6	17.0	100.0(4,390)	
	읍면지역	38.9	45.9	15.2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9.0	44.3	16.7	100.0(8,498)	190.876***
	한부모가정	41.5	42.3	16.2	100.0(758)	
	조손가정	50.9	40.0	9.1	100.0(80)	
	기타	48.3	39.8	11.9	100.0(153)	
학업 성적	상	33.9	45.8	20.3	100.0(2,848)	131.959***
	중	40.5	44.0	15.5	100.0(3,997)	
	하	43.9	42.1	14.0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37.7	44.6	17.7	100.0(4,314)	49.25***
	중	42.3	43.0	14.6	100.0(3,530)	
	하	37.9	44.7	17.5	100.0(1,653)	

*** $p < 0.001$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64.0%)이 남학생(57.4%)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77.5%), 특성화고등학생(62.2%), 중학생(55.3%), 초등학생(49.5%)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61.1%), 중소도시(60.6%), 대도시 아동·청소년(60.4%)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61.0%), 한부모가정(58.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9.1%) 순으로, 학업성적이 높을수록(상 66.1%, 중 59.5%, 하 56.1%),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62.3%), 낮은 경우(62.2%), 중간인 경우(57.6%) 순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봤거나 알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지역규모별 순위만 차이가 있었는데 중소도시(17.0%), 대도시(16.4%), 읍면지역 아동·청소년(15.2%)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여 읍면지역 아동·청소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들어본 비율은 가장 높았으나 무엇인지 알고 있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한편, 일반계고등학생 10명 중 3명 정도(28.8%)가 학생인권조례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러 학교유형별 집단 중에서 가장 높은 인지율을 보였다.

○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인권전담기구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의식 증진부터 인권침해 사례 진정을 통한 구제 등이 가능하므로 아동·청소년 인권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표 III-1-26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28.3	54.2	17.6	100.0(9,506)	
성별	남자	31.3	51.4	17.3	100.0(4,978)	360.847***
	여자	25.0	57.2	17.9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9	53.5	15.6	100.0(2,826)	108.638***
	중학교	26.5	52.2	21.3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6.4	57.2	16.4	100.0(2,797)	
	특성화고	34.4	53.9	11.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7.5	54.1	18.4	100.0(3,941)	219.865***
	중소도시	29.0	53.8	17.1	100.0(4,389)	
	읍면지역	28.1	55.6	16.3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7.5	54.7	17.9	100.0(8,498)	220.306***
	한부모가정	33.6	50.8	15.5	100.0(758)	
	조손가정	38.7	47.6	13.7	100.0(79)	
	기타	36.5	48.2	15.3	100.0(153)	
학업 성적	상	22.7	54.2	23.1	100.0(2,848)	138.358***
	중	28.8	54.4	16.7	100.0(3,997)	
	하	33.4	53.7	12.9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25.0	54.5	20.4	100.0(4,314)	58.189***
	중	30.6	53.8	15.6	100.0(3,529)	
	하	31.5	54.0	14.5	100.0(1,653)	

*** $p < 0.00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본 결과, ‘모른다’ 28.3%, ‘이름만 들어봤다’ 54.2%,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곳인지도 알고 있다’ 17.6%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1.8%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아동·청소년은 17.6%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 11월로 설립 12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 역사에 비하면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 및 아동·청소년 인권증진 분야 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며 기본적인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인권전담기구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75.1%)이 남학생(68.7%)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73.6%), 중학생(73.5%), 초등학생(69.1%), 특성화고등학생(65.6%)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72.5%), 읍면지역(71.9%),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0.9%)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72.6%), 한부모가정(66.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1.3%) 순으로, 학업성적(상 77.3%, 중 71.1%, 하 66.6%)과 경제적 수준(상 74.9%, 중 69.4%, 하 68.5)이 높을수록 들어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와 지역규모별 순위만 차이가 있었는데 대도시(18.4%), 중소도시(17.1%), 읍면지역 아동·청소년(16.3%) 순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였다. 한편, 중학생의 21.3%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높은 인지도를 보인 반면, 특성화고등학생은 11.7%로 초등학생(15.6%)보다도 낮은 인지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유엔(UN)아동권리협약, 학생인권조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경우는 각각 53.2%, 60.5%, 71.8%, 어떤 것(곳)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각각 13.1%, 16.5%, 17.6%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권협약·기구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경향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는지에 대해 중학생의 응답이 21.3%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정책제언

‘인권일반은 인권인프라와 인권의식에 대한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영역이다. 먼저 인권인프라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열악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7년 제3·4차 국가보고서 관련 회의 이후 중단된 활동을 재개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사회적 현안과 정책의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제3·4차 권고의견을 통해 제안했듯이 권한과 인적·기술적·재정적 자원을 확보하여 아동권리협약의 이행과 평가에 대한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해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청소년희망센터 등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구는 계약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사업을 위탁받는 기구로, 독립성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독립 모니터링 기구가 아닐뿐더러 민간 모니터링기구로서 전국의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에도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들 기구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민간 차원의 모니터링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보장과 신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이므로 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확대하고 조사, 홍보, 인권교육 등 다양한 인권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인권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권한과 독립성을 갖는 ‘독립적인 아동권리기구(Independent children’s right institutions, ICRIIs)’의 위상과 기능, 설치 형태와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사회적 합의를 모아 나가고 이를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점차 증대되고는 있으나 OECD 가입국으로서 국제적 수준에는 현저히 못미치고 있음을 지적받은 바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국제적 권고와 같이 국가예산 수립 시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와 연계, 아동·청소년 분야 예산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분리되어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음에 따라 ‘아동·청소년 예산’의 범위와 정의, 산출기준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다는 점도 체계적인 모니터링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기초한 데이터를 축적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인권일반’의 두 번째 하위영역은 인권의식에 대한 것이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은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조사결과 아동권리협약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13.1%에 불과한 것은 인권교육과 홍보 필요성의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유엔은 2011년 유엔인권교육훈련선언 채택을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부여하였으며,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제3·4차 심의를 통해 학교 교과과정에 인권교육 확대, 아동·청소년 관련 교사와 지도자 등의 인권 연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후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초·중등학생의 인권교육 경험률이 낮고 교원의 인권교육 지도역량이 부족한 점, 인권친화적이지 않은 학교문화,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 등은 제한점이라 할 수 있다(김철홍, 2013: 222-223).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기본법에 인권 가치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실천 중심의 학생 인권교육 내실화, 교원 양성과정에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교원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권교육 지도역량 강화, 교사 자격연수 및 직무연수 등에 인권교육 시간 포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김철홍, 2013: 227-229).

2) 일반원칙(제2조, 제3조)

(1) 지표의 현황

① 차별금지

가. 차별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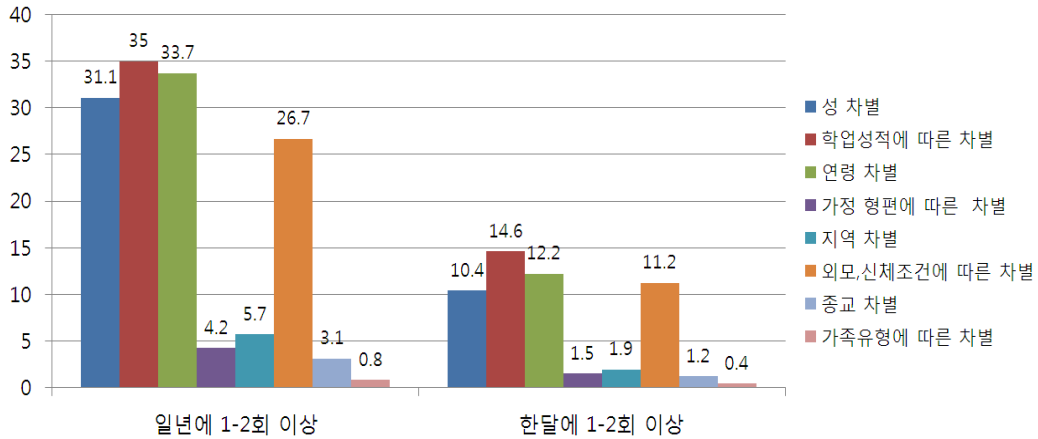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자주 차별을 경험했는지 성별, 학업성적, 연령, 가정형편, 지역, 외모나 신체조건, 종교, 가족유형 등 8가지 차별경험을 알아보았다.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 33.7%, 성차별 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6.7%, 지역차별 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4.2%, 종교차별 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한 달에 1-2회 이상 경험률 또한 경험정도의 순서는 일년에 1-2회 이상의 경우와 같았으며, 10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4.6%), 연령차별(12.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1.2%), 성차별(10.4%)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7 차별 경험(전체)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성차별	68.9	20.7	6.6	2.2	1.6	31.1	100.0(9,512)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65.0	20.4	10.0	2.9	1.7	35.0	100.0(9,513)
연령차별	66.2	21.5	9.0	2.0	1.2	33.7	100.0(9,505)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95.9	2.7	1.0	0.2	0.3	4.2	100.0(9,503)
지역차별	94.3	3.8	1.2	0.3	0.4	5.7	100.0(9,508)
외모,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73.3	15.5	6.8	2.7	1.7	26.7	100.0(9,505)
종교차별	96.9	1.9	0.8	0.2	0.2	3.1	100.0(9,497)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99.3	0.4	0.2	0.1	0.1	0.8	100.0(9,508)



【그림 III-1-2】 차별경험

8가지 차별 경험에 대해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차별 경험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8.9%였으며,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1년에 1-2회 정도는 20.7%, 한 달에 1-2회 정도는 6.6%, 1주일에 1-2회는 2.2%, 1주일에 3회 이상은 1.6%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성차별을 경험한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30.1%)이 남학생(31.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생(38.0%), 중학생(35.7%), 일반계고등학생(34.0%), 초등학생(21.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 아동·청소년(35.2%)이 대도시와 중소도시 아동·청소년(각 30.6%)보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6.6%), 한부모가정(33.2%), 양부모가정(31.1%)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34.1%), 높은 경우(31.0%), 중간인 경우(29.2%)의 순으로,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하 39.2%, 중 30.3%, 상 28.7%) 차별 경험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8 성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68.9	20.7	6.6	2.2	1.6	31.1	100.0(9,512)	
성별	남자	69.9	17.1	7.9	2.9	2.2	30.1	100.0(4,981)	110.966***
	여자	67.7	24.7	5.1	1.4	1.0	32.2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78.6	13.4	4.0	2.2	1.8	21.4	100.0(2,825)	224.404***
	중학교	64.2	22.7	8.8	2.4	1.8	35.7	100.0(3,279)	
	일반/특목/자율고	65.9	24.4	6.5	1.9	1.2	34.0	100.0(2,798)	
	특성화고	62.0	27.3	7.1	2.2	1.4	38.0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69.4	21.1	5.8	2.2	1.5	30.6	100.0(3,943)	288.681***
	중소도시	69.5	19.7	7.1	2.2	1.6	30.6	100.0(4,390)	
	읍면지역	64.8	23.4	7.5	2.4	1.9	35.2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9.0	20.9	6.4	2.1	1.7	31.1	100.0(8,504)	394.677***
	한부모가정	66.8	19.6	9.1	3.2	1.3	33.2	100.0(757)	
	조손가정	63.5	22.6	8.0	4.4	1.6	36.6	100.0(79)	
	기타	74.1	17.0	6.1	1.2	1.5	25.8	100.0(153)	
학업 성적	상	68.9	20.2	6.3	2.5	2.0	31.0	100.0(2,848)	336.474***
	중	70.8	20.0	6.1	2.0	1.1	29.2	100.0(4,000)	
	하	65.9	22.3	7.6	2.3	1.9	34.1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71.2	18.8	6.1	1.9	1.9	28.7	100.0(4,314)	176.973***
	중	69.7	20.8	6.2	2.2	1.1	30.3	100.0(3,533)	
	하	60.8	25.7	8.6	2.9	2.0	39.2	100.0(1,654)	

*** $p < 0.001$

지난 1년간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5.0%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20.4%, 한 달에 1-2회 정도는 10.0%, 1주일에 1-2회는 2.9%, 1주일에 3회 이상은 1.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38.4%)이 남학생(32.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교(48.3%), 특성화고등학교(45.4%), 중학생(37.7%), 초등학교(16.5%)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36.6%), 읍면지역(36.4%), 중소도시(33.2%)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42.7%), 한부모가정(41.1%), 양부모가정(34.5%)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하 53.3%, 중 34.4%, 상 18.8%)과 경제적 수준(하 48.0%, 중 35.7%, 상 29.6%)이 낮을수록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29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65.0	20.4	10.0	2.9	1.7	35.0	100.0(9,513)	
성별	남자	68.0	17.7	9.2	3.3	1.9	32.1	100.0(4,982)	532.849***
	여자	61.7	23.4	10.9	2.5	1.6	38.4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5	11.0	3.0	1.5	1.0	16.5	100.0(2,826)	37.245***
	중학교	62.3	19.9	12.2	3.8	1.8	37.7	100.0(3,279)	
	일반/특목/자율고	51.7	28.7	13.9	3.4	2.3	48.3	100.0(2,798)	
	특성화고	54.6	28.8	12.3	1.8	2.5	45.4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63.4	21.0	10.8	3.0	1.8	36.6	100.0(3,943)	29.232***
	중소도시	66.8	19.8	9.0	2.7	1.7	33.2	100.0(4,391)	
	읍면지역	63.6	20.7	10.8	3.0	1.9	36.4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5.5	20.4	9.7	2.7	1.7	34.5	100.0(8,504)	499.946***
	한부모가정	58.9	22.5	12.9	3.9	1.8	41.1	100.0(758)	
	조손가정	57.3	24.6	12.7	3.0	2.4	42.7	100.0(79)	
	기타	68.6	11.7	10.4	7.1	2.2	31.4	100.0(153)	
학업 성적	상	81.3	12.5	3.9	1.2	1.2	18.8	100.0(2,848)	409.404***
	중	65.5	21.1	9.8	2.5	1.0	34.4	100.0(4,000)	
	하	46.7	27.8	16.9	5.2	3.4	53.3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70.5	17.6	8.2	2.2	1.6	29.6	100.0(4,315)	412.419***
	중	64.3	21.6	9.9	2.8	1.4	35.7	100.0(3,533)	
	하	52.0	25.3	14.9	4.8	3.0	48.0	100.0(1,654)	

*** $p < 0.001$

지난 1년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66.2%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21.5%, 한 달에 1-2회 정도는 9.0%, 1주일에 1-2회는 2.0%, 1주일에 3회 이상은 1.2%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39.4%)이 남학생(33.7%)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43.6%), 일반계고등학교(41.4%), 중학생(37.6%), 초등학교(19.9%)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35.6%), 읍면지역(32.9%), 중소도시(32.4%)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9.6%), 한부모가정(36.7%), 양부모가정(33.7%)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39.7%), 성적이 높은 경우(31.6%), 성적이 중간인 경우(31.5%) 순으로,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하 43.0%, 중 33.6%, 상 30.5%)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0 연령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66.2	21.5	9.0	2.0	1.2	33.7	100.0(9,505)	
성별	남자	71.3	16.8	8.0	2.3	1.6	28.7	100.0(4,980)	337.954***
	여자	60.6	26.7	10.2	1.8	0.7	39.4	100.0(4,5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80.1	12.9	4.6	1.3	1.1	19.9	100.0(2,823)	27.936**
	중학교	62.5	22.6	11.1	2.8	1.1	37.6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58.6	27.5	10.6	2.0	1.3	41.4	100.0(2,798)	
	특성화고	56.5	28.4	11.8	1.8	1.6	43.6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4.3	22.1	10.1	2.2	1.2	35.6	100.0(3,938)	118.191***
	중소도시	67.6	21.0	8.3	1.9	1.2	32.4	100.0(4,389)	
	읍면지역	67.1	21.7	8.2	1.9	1.1	32.9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6.3	21.7	8.9	2.0	1.1	33.7	100.0(8,495)	101.159***
	한부모가정	63.3	20.6	11.7	3.0	1.4	36.7	100.0(758)	
	조손가정	60.4	18.8	12.4	3.5	4.9	39.6	100.0(80)	
	기타	75.4	17.0	5.3	0.3	1.9	24.5	100.0(153)	
학업 성적	상	68.4	20.7	8.0	1.8	1.1	31.6	100.0(2,847)	14.824*
	중	68.5	20.5	8.3	1.8	0.9	31.5	100.0(3,997)	
	하	60.3	23.9	11.3	2.7	1.8	39.7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69.4	19.8	7.7	1.7	1.3	30.5	100.0(4,311)	262.376***
	중	66.5	21.8	8.6	2.2	1.0	33.6	100.0(3,531)	
	하	57.0	25.5	13.4	2.6	1.5	43.0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지난 1년간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95.9%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2.7%, 한 달에 1-2회 정도는 1.0%, 1주일에 1-2회는 0.2%, 1주일에 3회 이상은 0.3%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4.6%)이 여학생(3.6%)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생(10.3%), 일반계고등학생(5.1%), 중학생(4.5%), 초등학생(1.2%)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4.4%), 읍면지역(4.1%), 대도시(3.8%)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11.6%), 한부모가정(9.9%), 양부모가정(3.4%) 순으로, 학업성적(하 6.9%, 중 3.3%, 상 2.6%)과 경제적 수준(하 12.3%, 중 3.0%, 상 1.8%)이 낮을수록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1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5.9	2.7	1.0	0.2	0.3	4.2	100.0(9,503)	
성별	남자	95.5	2.7	1.2	0.2	0.5	4.6	100.0(4,979)	154.463***
	여자	96.4	2.6	0.7	0.2	0.1	3.6	100.0(4,5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7	0.9	0.2	0.1	0.0	1.2	100.0(2,825)	121.253***
	중학교	95.6	2.7	1.1	0.3	0.4	4.5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94.8	3.5	1.2	0.1	0.3	5.1	100.0(2,794)	
	특성화고	89.7	6.5	2.6	0.4	0.8	10.3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96.3	2.5	0.9	0.2	0.2	3.8	100.0(3,938)	26.372***
	중소도시	95.7	2.9	1.0	0.2	0.3	4.4	100.0(4,386)	
	읍면지역	95.9	2.4	1.1	0.2	0.4	4.1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6.6	2.3	0.8	0.1	0.2	3.4	100.0(8,497)	92.059***
	한부모가정	90.1	6.1	2.4	0.6	0.8	9.9	100.0(755)	
	조손가정	88.4	7.4	4.2	0.0	0.0	11.6	100.0(79)	
	기타	94.1	2.4	2.1	0.7	0.8	6.0	100.0(153)	
학업 성적	상	97.4	1.6	0.6	0.2	0.2	2.6	100.0(2,847)	85.701***
	중	96.7	2.1	0.9	0.2	0.1	3.3	100.0(3,998)	
	하	93.2	4.6	1.5	0.2	0.6	6.9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98.2	0.9	0.6	0.1	0.2	1.8	100.0(4,311)	72.255***
	중	97.1	2.0	0.8	0.1	0.1	3.0	100.0(3,532)	
	하	87.7	8.8	2.1	0.6	0.8	12.3	100.0(1,649)	

*** $p < 0.001$

지난 1년간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94.3%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3.8%, 한 달에 1-2회 정도는 1.2%, 1주일에 1-2회는 0.3%, 1주일에 3회 이상은 0.4%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5.9%)이 남학생(5.5%)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9.0%), 중소도시(5.7%), 대도시(4.7%)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13.3%), 한부모가정(6.5%), 양부모가정(5.6%)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7.5%), 성적이 높은 경우(5.0%), 성적이 중위권인 경우(4.9%) 순으로, 경제적 수준은 낮을수록(하 8.5%, 중 5.0%, 상 5.0%) 지역으로 인한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2 지역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4.3	3.8	1.2	0.3	0.4	5.7	100.0(9,508)	
성별	남자	94.6	3.2	1.4	0.4	0.5	5.5	100.0(4,982)	81.336***
	여자	94.0	4.5	1.0	0.2	0.2	5.9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98.2	1.4	0.2	0.1	0.1	1.8	100.0(2,826)	11.0
	중학교	94.2	4.0	1.1	0.4	0.3	5.8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91.1	5.8	2.0	0.3	0.8	8.9	100.0(2,797)	
	특성화고	91.4	5.1	2.6	0.6	0.4	8.7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95.2	3.2	0.9	0.3	0.3	4.7	100.0(3,938)	69.623***
	중소도시	94.4	3.7	1.3	0.3	0.4	5.7	100.0(4,391)	
	읍면지역	91.0	6.4	1.7	0.5	0.4	9.0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4.5	3.8	1.1	0.3	0.4	5.6	100.0(8,499)	87.182***
	한부모가정	93.5	3.6	2.2	0.5	0.2	6.5	100.0(757)	
	조손가정	86.7	4.1	6.1	1.1	2.0	13.3	100.0(80)	
	기타	93.3	3.9	1.3	0.7	0.8	6.7	100.0(153)	
학업 성적	상	95.0	3.6	1.0	0.1	0.3	5.0	100.0(2,848)	113.068***
	중	95.0	3.2	1.1	0.3	0.3	4.9	100.0(3,998)	
	하	92.5	4.9	1.5	0.5	0.6	7.5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94.9	3.5	0.9	0.3	0.3	5.0	100.0(4,313)	10.7
	중	94.9	3.6	1.1	0.1	0.2	5.0	100.0(3,533)	
	하	91.5	5.1	2.0	0.6	0.8	8.5	100.0(1,652)	

*** $p < 0.001$

지난 1년간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73.3%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15.5%, 한 달에 1-2회 정도는 6.8%, 1주일에 1-2회는 2.7%, 1주일에 3회 이상은 1.7%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여학생(28.5%)이 남학생(25.0%)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31.5%), 일반계고등학교(29.1%), 중학생(28.6%), 초등학교(21.0%)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27.8%), 읍면지역(27.3%), 중소도시(25.4%)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31.0%), 한부모가정(29.9%), 양부모가정(26.4%)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32.6%), 성적이 높은 경우(24.5%), 성적이 중간인 경우(24.1%) 순으로, 경제적 수준(하 34.6%, 중 26.1%, 상 24.0%)은 낮을수록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3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73.3	15.5	6.8	2.7	1.7	26.7	100.0(9,505)	
성별	남자	75.0	13.2	7.0	2.6	2.2	25.0	100.0(4,977)	8.7
	여자	71.5	17.9	6.6	2.7	1.3	28.5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79.0	11.2	4.8	2.9	2.1	21.0	100.0(2,823)	25.647**
	중학교	71.4	16.2	7.4	2.9	2.1	28.6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70.9	18.1	7.8	2.1	1.1	29.1	100.0(2,796)	
	특성화고	68.5	18.9	8.5	2.9	1.2	31.5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72.1	16.8	6.8	2.4	1.8	27.8	100.0(3,938)	15.512*
	중소도시	74.6	14.0	6.8	2.9	1.7	25.4	100.0(4,390)	
	읍면지역	72.7	16.5	6.5	2.6	1.7	27.3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73.7	15.4	6.7	2.6	1.7	26.4	100.0(8,497)	16.235*
	한부모가정	70.1	17.0	7.6	3.0	2.3	29.9	100.0(758)	
	조손가정	68.9	14.4	10.3	4.0	2.3	31.0	100.0(79)	
	기타	73.5	13.4	6.7	2.9	3.5	26.5	100.0(153)	
학업 성적	상	75.4	14.5	6.5	2.3	1.2	24.5	100.0(2,847)	8.6
	중	75.8	14.5	5.7	2.4	1.5	24.1	100.0(3,995)	
	하	67.3	17.8	8.7	3.5	2.6	32.6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76.0	14.1	5.9	2.2	1.8	24.0	100.0(4,311)	37.705***
	중	73.9	15.2	6.5	2.9	1.5	26.1	100.0(3,532)	
	하	65.4	19.4	9.8	3.3	2.1	34.6	100.0(1,653)	

* $p<0.05$, ** $p<0.01$, *** $p<0.001$

지난 1년간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96.9%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1.9%, 한 달에 1-2회 정도는 0.8%, 1주일에 1-2회는 0.2%, 1주일에 3회 이상의 경우도 0.2%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3.5%)이 여학생(2.8%)보다, 학교유형별로는 교급(고 3.5%, 중 3.4%, 초 2.3%)이 높을수록,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7%), 대도시(3.2%), 중소도시(2.9%)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5.5%), 한부모가정(3.2%), 양부모가정(3.0%)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하 4.1%, 중 3.1%, 상 2.4%)과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4.3%), 높은 경우(3.0%), 중간층인 경우(2.9%) 순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4 종교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6.9	1.9	0.8	0.2	0.2	3.1	100.0(9,497)	
성별	남자	96.5	1.9	1.1	0.2	0.3	3.5	100.0(4,975)	12.1
	여자	97.2	2.0	0.6	0.2	0.0	2.8	100.0(4,5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7.7	1.7	0.5	0.1	0.0	2.3	100.0(2,823)	28.858***
	중학교	96.6	1.9	1.0	0.3	0.2	3.4	100.0(3,269)	
	고등학교	96.5	2.1	1.0	0.2	0.2	3.5	100.0(3,405)	
지역 규모	대도시	96.7	2.0	0.9	0.2	0.1	3.2	100.0(3,936)	173.342***
	중소도시	97.2	1.7	0.8	0.2	0.2	2.9	100.0(4,384)	
	읍면지역	96.3	2.5	0.9	0.0	0.3	3.7	100.0(1,17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7.0	1.9	0.7	0.2	0.2	3.0	100.0(8,492)	35.758***
	한부모가정	96.8	1.9	1.1	0.0	0.2	3.2	100.0(757)	
	조손가정	94.4	1.3	4.2	0.0	0.0	5.5	100.0(78)	
	기타	93.4	3.0	2.9	0.0	0.8	6.7	100.0(152)	
학업 성적	상	97.6	1.8	0.4	0.1	0.1	2.4	100.0(2,844)	144.816***
	중	97.0	1.9	0.9	0.2	0.1	3.1	100.0(3,990)	
	하	95.9	2.2	1.3	0.3	0.3	4.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97.0	1.9	0.7	0.2	0.2	3.0	100.0(4,310)	198.055***
	중	97.2	1.8	0.8	0.2	0.1	2.9	100.0(3,525)	
	하	95.6	2.4	1.4	0.3	0.2	4.3	100.0(1,651)	

*** $p < 0.001$

지난 1년간 얼마나 아빠가 안계시거나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차별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99.3%로 나타났으며, 1년에 1-2회 정도는 0.4%, 한 달에 1-2회 정도는 0.2%, 1주일에 1-2회는 0.1%, 1주일에 3회 이상의 경우도 0.1%가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0.7%)이 여학생(0.6%)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등학교생(2.2%), 중학생(0.8%), 일반계고등학교생과 초등학교생(각 0.5%)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0.9%), 대도시(0.8%), 중소도시(0.6%)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12.7%), 한부모가정(7.2%) 순으로, 학업성적(하 1.4%, 중 0.6%, 상 0.1%)과 경제적 수준(하 2.3%, 중 0.5%, 상 0.2%)이 낮을수록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5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99.3	0.4	0.2	0.1	0.1	0.8	100.0(9,508)	
성별	남자	99.2	0.3	0.2	0.1	0.1	0.7	100.0(4,980)	151.009***
	여자	99.3	0.5	0.1	0.0	0.0	0.6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5	0.2	0.1	0.1	0.1	0.5	100.0(2,824)	295.062***
	중학교	99.1	0.5	0.1	0.0	0.2	0.8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99.5	0.3	0.1	0.0	0.1	0.5	100.0(2,798)	
	특성화고	97.8	1.1	0.9	0.2	0.0	2.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99.2	0.5	0.1	0.1	0.1	0.8	100.0(3,938)	230.073***
	중소도시	99.4	0.3	0.2	0.1	0.0	0.6	100.0(4,391)	
	읍면지역	99.1	0.4	0.2	0.0	0.3	0.9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00.0	0.0	0.0	0.0	0.0	0.0	100.0(8,499)	142.904***
	한부모가정	92.8	4.7	1.3	0.7	0.5	7.2	100.0(758)	
	조손가정	87.2	4.3	3.5	1.1	3.8	12.7	100.0(79)	
	기타	97.9	0.0	1.3	0.0	0.8	2.1	100.0(153)	
학업 성적	상	99.8	0.1	0.0	0.0	0.0	0.1	100.0(2,848)	90.921***
	중	99.4	0.4	0.1	0.1	0.0	0.6	100.0(3,996)	
	하	98.6	0.8	0.3	0.1	0.2	1.4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99.7	0.1	0.0	0.0	0.1	0.2	100.0(4,311)	16.748***
	중	99.5	0.3	0.1	0.0	0.1	0.5	100.0(3,532)	
	하	97.7	1.3	0.6	0.3	0.1	2.3	100.0(1,654)	

*** $p < 0.001$

나. 차별의식 및 태도

아동·청소년의 차별의식과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다문화 가정 청소년과 장애청소년에 대한 편견 정도와 따돌림 경험을 알아보았다. 먼저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그런 편이다 54.8%, 매우 그렇다 33.1%)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90.8%)이 남학생(85.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92.5%), 특성화고등학생(89.4%), 중학생(86.5%), 초등학생(84.7%) 순으로, 대도시일수록(대도시 88.2%, 중소도시 88.1%, 읍면지역 86.3%),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8.2%), 한부모가정(86.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78.6%) 순으로, 학업성적(상 88.7%, 중 88.5%, 하 86.2%)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중간인 경우(88.3%)가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88.0%) 높은 경우(87.5%)에 비해 다문화 가정 또래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6 다문화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3	8.8	54.8	33.1	100.0(9,513)	
성별	남자	4.9	9.8	55.1	30.2	100.0(4,983)	970.178***
	여자	1.6	7.6	54.4	36.4	100.0(4,5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	9.0	45.6	39.1	100.0(2,827)	210.986***
	중학교	2.4	11.1	58.5	28.0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1.4	6.1	59.1	33.4	100.0(2,801)	
	특성화고	3.0	7.6	57.3	32.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3.1	8.7	54.1	34.1	100.0(3,942)	106.537***
	중소도시	3.4	8.5	55.0	33.1	100.0(4,393)	
	읍면지역	3.7	10.0	56.3	30.0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2	8.6	55.0	33.2	100.0(8,501)	146.357***
	한부모가정	3.2	10.6	53.2	33.1	100.0(758)	
	조손가정	13.4	8.0	52.6	26.0	100.0(80)	
	기타	6.7	11.1	50.7	31.6	100.0(153)	
학업 성적	상	2.7	8.6	51.7	37.0	100.0(2,850)	47.871***
	중	3.0	8.5	55.9	32.6	100.0(3,996)	
	하	4.4	9.4	56.5	29.7	100.0(2,650)	
경제적 수준	상	4.0	8.5	52.1	35.4	100.0(4,315)	131.634***
	중	2.9	8.8	57.8	30.5	100.0(3,530)	
	하	2.6	9.5	55.2	32.8	100.0(1,655)	

*** $p < 0.001$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1.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2.6%)이 여학생(1.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2.4%), 중학생과 특성화고등학생(각 1.8%), 일반계고등학생(1.7%)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9%), 대도시(1.8%), 중소도시 아동·청소년(1.7%)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2.9%), 조손가정(2.8%), 양부모가정(1.8%) 순으로, 학업성적이 중간인 경우(2.0%)가 높거나 낮은 경우(각 1.8%)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2.2%)가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1.9%) 중간인 경우(1.8%)보다 다문화 가정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7 다문화가정의 또래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82.8	15.3	1.6	0.3	100.0(9,504)	104.565***
	남자	79.9	17.5	2.2	0.4	100.0(4,975)	
	여자	86.0	12.8	0.9	0.2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4	9.3	1.9	0.5	100.0(2,820)	390.048***
	중학교	79.3	18.9	1.6	0.2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82.5	15.9	1.4	0.3	100.0(2,800)	
	특성화고	77.7	20.6	1.6	0.2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3.4	14.7	1.6	0.2	100.0(3,943)	232.358***
	중소도시	83.4	14.8	1.4	0.3	100.0(4,385)	
	읍면지역	78.6	18.6	2.3	0.6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3	14.9	1.5	0.3	100.0(8,491)	1389.809***
	한부모가정	79.4	17.7	2.3	0.6	100.0(757)	
	조손가정	80.0	17.2	2.8	0.0	100.0(80)	
	기타	75.6	21.0	3.4	0.0	100.0(154)	
학업 성적	상	86.4	11.8	1.4	0.4	100.0(2,846)	1441.465***
	중	82.4	15.6	1.7	0.3	100.0(3,992)	
	하	79.7	18.5	1.6	0.2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85.0	13.1	1.5	0.4	100.0(4,311)	620.366***
	중	80.8	17.4	1.6	0.2	100.0(3,524)	
	하	81.4	16.4	1.8	0.4	100.0(1,656)	

*** $p < 0.001$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그런 편이다 40.6%, 매우 그렇다 10.1%)로 나타나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2.3%)이 남학생(49.2%)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57.8%), 특성화고등학교(51.1%), 일반계고등학교(50.7%), 중학생(44.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51.3%), 대도시와 읍면지역 아동·청소년(각 50.1%)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50.9%), 한부모가정(49.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40.8%) 순으로, 학업성적이 중간인 경우(52.4%)가 성적이 높거나(51.6%) 낮은 경우(47.2%)에 비해,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상 52.4%, 중 49.7%, 하 48.2%) 장애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1-38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9.0	40.3	40.6	10.1	100.0(9,499)	
성별	남자	11.0	39.9	39.3	9.9	100.0(4,972)	745.114***
	여자	6.9	40.8	41.9	10.4	100.0(4,5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11.1	31.2	41.9	15.9	100.0(2,818)	274.441***
	중학교	9.4	46.2	36.8	7.6	100.0(3,272)	
	일반/특목/자율고	6.6	42.7	43.0	7.7	100.0(2,800)	
	특성화고	8.9	40.0	43.4	7.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8	41.1	40.0	10.1	100.0(3,940)	118.559***
	중소도시	9.8	38.9	40.6	10.7	100.0(4,385)	
	읍면지역	7.1	42.8	42.1	8.0	100.0(1,17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9	40.2	40.7	10.2	100.0(8,488)	1475.409***
	한부모가정	9.1	41.5	40.4	8.9	100.0(757)	
	조손가정	14.7	44.4	33.3	7.5	100.0(80)	
	기타	11.5	38.0	36.4	14.2	100.0(153)	
학업 성적	상	8.9	39.4	40.0	11.6	100.0(2,844)	1607.777***
	중	7.9	39.7	42.1	10.3	100.0(3,990)	
	하	10.7	42.1	39.1	8.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10.3	37.3	40.5	11.9	100.0(4,307)	1009.6***
	중	8.2	42.2	41.0	8.7	100.0(3,524)	
	하	7.6	44.2	39.8	8.4	100.0(1,655)	

*** $p < 0.001$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그런 편이다 1.6%, 매우 그렇다 0.3%)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10.3%)이 여학생(5.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5%), 특성화고등학교(8.5%), 일반계고등학교(7.4%), 초등학교(6.3%) 순으로, 지역규모가 작을수록(읍면지역 8.5%, 중소도시 8.0%, 대도시 7.5%), 가족유형별로는 한부모가정(10.3%), 조손가정(9.1%),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7.7%) 순으로, 학업성적이 낮을수록(하 8.8%, 중 7.6%, 상 7.3%),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9.2%)가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7.6%) 중간인 경우(7.4%)보다 장애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남학생,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 아동·청소년의 집단 따돌림 경험률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표 III-1-39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66.2	26.0	7.2	0.7	100.0(9,506)	
성별	남자	61.3	28.4	9.3	1.0	100.0(4,974)	1315.46***
	여자	71.5	23.3	4.8	0.3	100.0(4,5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5	20.2	5.5	0.8	100.0(2,827)	203.334***
	중학교	61.3	29.2	8.9	0.6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65.0	27.6	6.7	0.7	100.0(2,799)	
	특성화고	63.9	27.5	7.9	0.6	100.0(607)	
지역 규모	대도시	67.1	25.4	6.7	0.8	100.0(3,943)	582.211***
	중소도시	66.2	25.9	7.4	0.6	100.0(4,392)	
	읍면지역	63.2	28.3	7.8	0.7	100.0(1,17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6.3	26.1	7.0	0.7	100.0(8,493)	527.725***
	한부모가정	64.1	25.5	9.3	1.0	100.0(758)	
	조손가정	68.8	22.1	7.3	1.8	100.0(80)	
	기타	68.1	24.2	7.7	0.0	100.0(154)	
학업 성적	상	68.2	24.6	6.3	1.0	100.0(2,850)	19.2
	중	67.1	25.4	7.1	0.5	100.0(3,991)	
	하	62.7	28.4	8.1	0.7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68.8	23.5	6.7	0.9	100.0(4,314)	324.541***
	중	64.0	28.6	7.0	0.4	100.0(3,525)	
	하	64.1	26.7	8.6	0.6	100.0(1,654)	

*** $p < 0.001$

전체적으로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1.9%,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7.9%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주변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나 장애 청소년이 많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1.9%나 7.9%의 경험률은 결코 작지 않은 수치라 할 수 있다.

한편, 차별의식과 태도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값과 교급별 추이 모두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 증가),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 또한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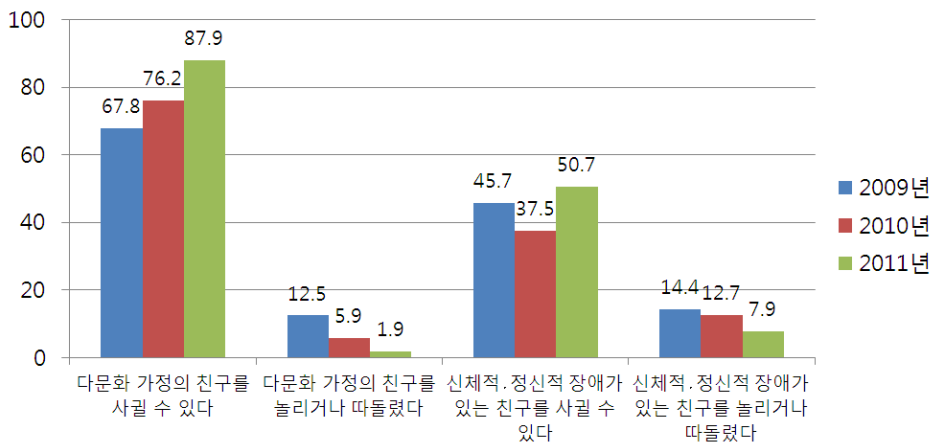
세부 현황을 보면 먼저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전체응답률은 2009년 67.8%, 2011년 76.2%, 2013년 87.9%로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12.5%, 2011년 5.9%, 2013년 1.9%로 줄어들고 있어, 다문화 가정 또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전체응답은 2009년 45.7%에서 2011년 37.5%로 줄어들었으나 2013년 50.7%로 다시 증가하였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14.4%, 2011년 12.7%, 2013년 7.9%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III-1-40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7.8	12.5	45.7	14.4
2011년	76.2	5.9	37.5	12.7
2013년	87.9	1.9	50.7	7.9



【그림 III-1-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교급별 현황으로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먼저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67.8%, 2011년 75.1%, 2013년 84.7%로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12.5%, 2011년 6.3%, 2013년 2.4%로 줄어들고 있어, 다문화 가정 또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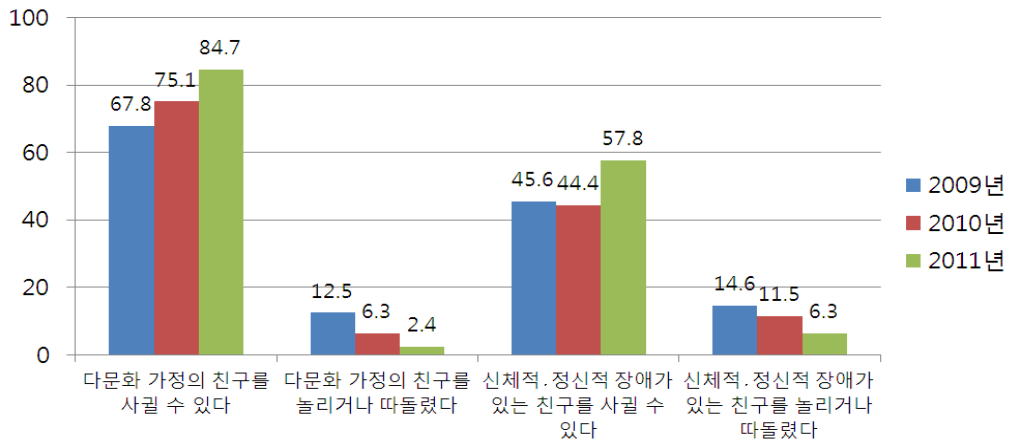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45.6%에서 2011년 44.4%로 줄어들었으나 2013년 다시 57.8%로 증가하였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14.6%, 2011년 11.5%, 2013년 6.3%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Ⅲ-1-41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교)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7.8	12.5	45.6	14.6
2011년	75.1	6.3	44.4	11.5
2013년	84.7	2.4	57.8	6.3



* 주 : 2009년, '약간 있다+많이 있다=그렇다'로, 2011년과 2013, '그런 편이다+매우 그렇다=그렇다'로 계산

【그림 Ⅲ-1-4】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교)

다음으로 중학생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61.1%, 2011년 73.6%, 2013년 86.5%로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8.9%, 2011년 6.2%, 2013년 1.8%로 줄어들고 있어, 다문화 가정 또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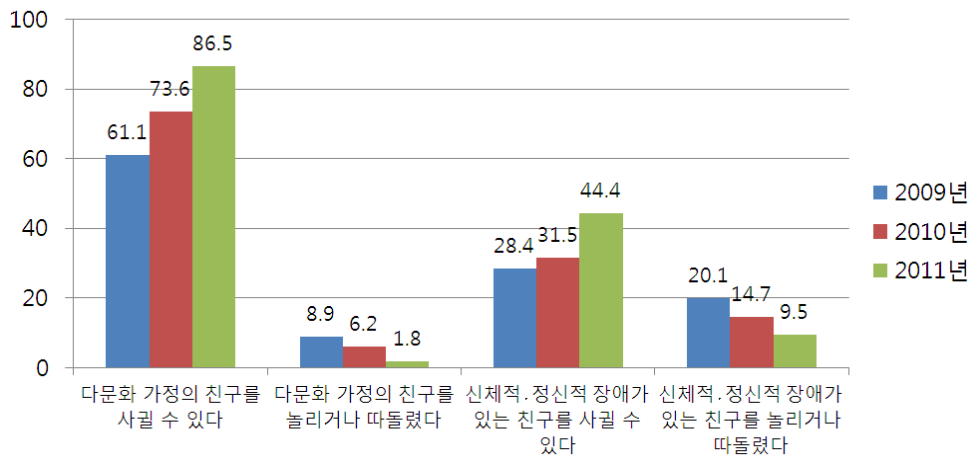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28.4%, 2011년 31.5%, 2013년 44.4%로 증가하였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20.1%, 2011년 14.7%, 2013년 9.5%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Ⅲ-1-42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1.1	8.9	28.4	20.1
2011년	73.6	6.2	31.5	14.7
2013년	86.5	1.8	44.4	9.5



【그림 Ⅲ-1-5】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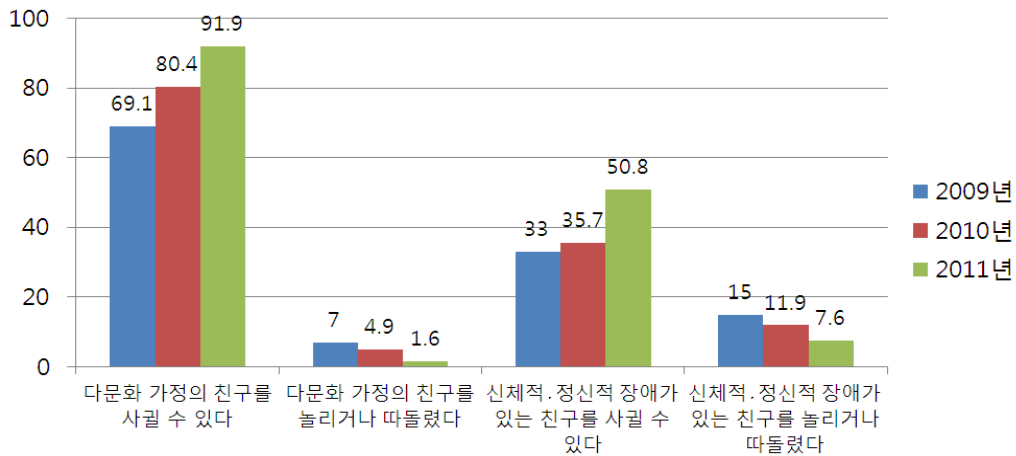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고등학생의 경우를 보면,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69.1%, 2011년 80.4%, 2013년 91.9%로 증가하는 반면, ‘다문화 가정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7.0%, 2011년 4.9%, 2013년 1.6%로 줄어들고 있어, 다문화 가정 또래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2009년 33.0%, 2011년 35.7%, 2013년 50.8%로 증가하였고,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2009년 15.0%, 2011년 11.9%, 2013년 7.6%로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의식도 줄어드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Ⅲ-1-43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단위 : %)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사귄 수 있다	다문화 가정의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신체적·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친구를 사귄 수 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친구를 놀리거나 따돌렸다
2009년	69.1	7.0	33.0	15.0
2011년	80.4	4.9	35.7	11.9
2013년	91.9	1.6	50.8	7.6



【그림 Ⅲ-1-6】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인식과 차별 경험(3개년 추이 : 고등학생)

교급별 현황을 볼 때, 초등학생의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2011년도에 일시적으로 늘어나(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률 감소), 전체응답률 추이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정책제언

‘차별금지’는 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의 하나로 모든 영역의 인권 보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주요원칙이다. 2013년도 본 조사 결과, 아동·청소년들은 지난 일 년 동안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35.0%), 연령차별(33.7%), 성차별(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26.7%), 지역차별(5.7%),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4.2%), 종교차별(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0.8%) 등의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친구를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87.9%, 장애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는 응답은

50.7%로 나타나 학생들이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 예방을 위해서는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차별금지를 위한 제도화 방안이 함께 모색될 필요가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4차 권고와 유엔인권이사회의 제2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권고사항은 정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노력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입법 논의가 있었으나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차별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처벌과 구제에 대한 종합적 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통일된 법률 적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관행이나 제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2011).

조사결과나 사회적 문제로도 부각되고 있듯이 심각한 차별 대상에는 다문화 및 탈북 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장애 아동·청소년, 청소년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취약계층과 소수집단 아동·청소년에 대한 차별의식과 태도를 예방·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캠페인과 수용성 교육, 인권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생 청소년의 경우 학업성적, 연령, 성, 외모 등에 따른 차별을 많이 경험하고 있듯이 우리사회의 학업성적과 외모 지상주의, 성차별 의식, 아동·청소년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무능하다는 선입견을 갖는 성인중심주의 등의 해결을 위해 전국민적 의식개선 노력과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일반원칙’ 영역의 하위 분류인 ‘1-1-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의 지표항목으로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을 설정하고 이의 결과생산을 위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는 2013년 본원에서 수시 연구과제로 기초연구가 수행된 단계로 아직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영향평가제도는 아동·청소년 최우선의 원칙을 실현하는 주효한 전략인만큼 지표항목으로 구성하여 실행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며 더불어 실질적인 지표값 생산의 목표도 달성할 수 있도록 차년도 연구 수행 시에는 초기 추진단계의 성과를 모니터할 수 있는 과도기적 지표생산방법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¹⁸⁾

1)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1) 지표의 현황

① 국적 및 신분

가. 출생신고율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권과 기본적 시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조약기구들은 국가보고서 심의의견을 통해 출생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공적 시스템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쉽게 아동 유기나 불법 입양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현행 출생신고제를 개선하여 출생자등록제도로의 전환을 권고한 바 있다(대한민국정부, 2013;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Human Rights Council, 2012). 국내에서는 주로 입양과 관련된 문제로 출생등록제가 논의되고는 있으나 본격적인 출생등록제도 도입 논의는 미흡한 상태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출생신고제로는 아동관련 통계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출생신고율 자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법정 출생신고 기한(1개월) 내 출생신고율’과 같은 공식통계자료가 생산되고 있지 않으며, 부모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이에 출생신고율의 차선택으로 경찰청의 ‘영아 유기율’을 지표값으로 제시하였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표 III-2-1>), 영아 유기 발생건수는 64건(2008) → 52건(2009) → 69건(2010) → 127건(2011) → 139건(2012) 등으로 2009년도에 주춤한 면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기된 영아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으므로 부모를 비롯하여 자신의 신분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질 수 없으며, 경찰청이 파악한 영아 유기 발생건수 또한 불법적인 입양이나 매매로 연결되었을 수 있는 영아에 대한 정보는 담고 있지 못한 셈이다.

18) 이 절은 김영지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영인 교수(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가 집필하였음(김영지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은 각 중분류 항목의 ‘(1) 지표의 현황’을, 김영인 교수는 ‘(2) 정책제언’을 집필함). 이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자료집(워크숍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표 III-2-1 영아 유기 발생건수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건수	건수	증감	%	건수	증감	%	건수	증감	%	건수	증감	%
전 체	64	52	-12	-18.75	69	17	32.69	127	58	84.06	139	12	9.45
서울청	7	8	1	14.3	14	6	75.0	31	17	121.4	68	37	11.94
부산청	9	5	-4	-44.4	6	1	20.0	6	0	0.0	9	3	50.0
대구청	0	1	1	-	5	4	400.0	1	-4	-80.0	6	5	500.0
인천청	4	3	-1	-25.0	3	0	0.0	10	7	233.3	6	-4	-40.0
광주청	0	3	3	-	3	0	0.0	5	2	66.7	3	-2	-40.0
대전청	2	0	-2	-100.0	1	1	-	5	4	400.0	3	-2	-40.0
울산청	0	1	1	-	0	-1	-100.0	0	0	-	1	1	-
경기청	20	18	-2	-10.0	11	-7	-38.9	26	15	136.4	15	-11	-42.3
강원청	2	0	-2	-100.0	1	1	-	0	-1	-100.0	4	4	-
충북청	5	0	-5	-100.0	1	1	-	6	5	500.0	6	0	0.0
충남청	2	1	-1	-50.0	4	3	300.0	5	1	25.0	3	-2	-40.0
전북청	6	3	-3	-50.0	5	2	66.7	8	3	60.0	3	-5	-62.5
전남청	2	2	0	0.0	4	2	100.0	3	-1	-25.0	4	1	33.3
경북청	2	2	0	0.0	3	1	50.0	7	4	133.3	4	-3	-42.9
경남청	2	3	1	50.0	8	5	166.7	14	6	75.0	4	-10	-71.4
제주청	1	2	1	100.0	0	-2	-100.0	0	0	-	0	0	-

* 출처 : 민현주의원실(2013.3.6).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보도자료(“입양, 이제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어른들의 슬픔과 사랑이 함께 고려되어야”)에 제시된 <최근 5년간 전국 영아유기 발생건수>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영아유기 발생건수> 두 개표를 하나로 구성함.

* 원자료 : 경찰청

* 주 : 해당 통계는 형법상 영아유기죄, 영아유기(교사·방조)죄, 영아유기(치상·치사)죄, 영아유기(치상·치사)(교사·방조)죄로 산출

출생등록은 개인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을 부여받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다. 신생아 인신매매나 유기 등의 허점을 가지고 있는 현 출생신고제를 출생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추후 지표 보완 시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출생등록문제와 신분제에 대한 현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주아동 등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에 관계없이 출생등록을 통해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안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2) 의견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1) 지표의 현황

① 가정에서의 참여

가.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의사결정 시 부모님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지' 물어본 결과, 80.1%의 아동·청소년이 '그렇다(그런 편이다 54.5%, 매우 그렇다 25.6%)'고 응답하였다.

여학생(81.5%)이 남학생(78.9%)보다, 초등학생(84.5%), 일반계고등학생(79.5%), 특성화고등학생(72.6%), 중학생(78.3%)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80.3%), 대도시(80.2%), 읍면지역 아동·청소년(79.1%)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1.0%), 한부모가정(73.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2.8%) 순으로, 학업성적(상 84.3%, 중 82.3%, 하 72.4%)과 경제적 수준(상 85.4%, 중 79.1%, 하 68.7%)이 높을수록 의견존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도 집안의 중요한 문제 결정 시 의견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2 부모님(보호자)은 집안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3	15.6	54.5	25.6	100.0(9,503)	
성별	남자	5.2	15.9	54.3	24.6	100.0(4,979)	358.004***
	여자	3.2	15.3	54.8	26.7	100.0(4,5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4.4	11.1	47.4	37.1	100.0(2,820)	36.607***
	중학교	4.7	17.1	57.2	21.1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3.4	17.1	58.8	20.7	100.0(2,798)	
	특성화고	5.7	21.7	53.8	18.8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4.2	15.6	54.1	26.1	100.0(3,939)	193.881***
	중소도시	4.4	15.3	54.6	25.7	100.0(4,388)	
	읍면지역	3.9	16.9	55.6	23.5	100.0(1,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	15.2	54.9	26.1	100.0(8,494)	73.985***
	한부모가정	7.0	19.5	52.3	21.3	100.0(756)	
	조손가정	19.1	18.1	48.4	14.4	100.0(80)	
	기타	5.4	17.0	48.9	28.7	100.0(153)	
학업 성적	상	3.2	12.5	50.8	33.5	100.0(2,849)	101.513***
	중	3.5	14.2	57.2	25.1	100.0(3,991)	
	하	6.5	21.1	54.6	17.8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3.1	11.6	51.7	33.7	100.0(4,309)	116.285***
	중	4.4	16.5	59.1	20.0	100.0(3,528)	
	하	7.0	24.3	52.3	16.4	100.0(1,654)	

*** $p < 0.001$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84.7%(그런 편이다 58.8%, 매우 그렇다 25.9%)로 나타났다. 성별,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여학생(86.2%)이 남학생(83.3%)보다, 양부모가정(85.5%), 한부모가정(79.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1.4%) 순으로, 경제적 수준(상 87.8%, 중 84.9%, 하 79.0%)이 높을수록 존중받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상급학교 진학 결정 시 내가 원하는 학교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1	12.1	58.8	25.9	100.0(6,686)	
성별	남자	3.8	12.9	60.6	22.7	100.0(3,510)	578.583***
	여자	2.4	11.3	56.8	29.4	100.0(3,1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8	11.6	59.2	26.3	100.0(5,959)	17.268*
	한부모가정	4.4	16.1	56.2	23.3	100.0(571)	
	조손가정	17.5	21.1	51.1	10.3	100.0(46)	
	기타	5.7	14.0	54.0	26.3	100.0(99)	
경제적 수준	상	2.2	10.1	55.2	32.6	100.0(2,561)	76.644***
	중	3.0	12.1	63.2	21.7	100.0(2,631)	
	하	4.9	15.7	57.4	22.0	100.0(1,484)	

* $p<0.05$, *** $p<0.001$

표 III-2-4 장래희망을 결정 시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주신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6	9.5	50.2	37.6	100.0(9,507)	
성별	남자	3.1	9.6	52.6	34.6	100.0(4,981)	62.779***
	여자	2.1	9.4	47.6	40.9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8.0	38.0	51.5	100.0(2,823)	75.141**
	중학교	2.8	10.1	55.9	31.3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2.4	9.3	54.4	33.9	100.0(2,798)	
	특성화고	3.1	14.9	57.4	24.6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2.7	9.9	49.1	38.3	100.0(3,941)	548.76***
	중소도시	2.5	9.2	50.3	38.1	100.0(4,389)	
	읍면지역	2.9	9.7	54.0	33.4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4	9.2	50.5	37.9	100.0(8,497)	445.068***
	한부모가정	3.4	12.3	49.2	35.1	100.0(757)	
	조손가정	15.2	18.7	45.2	20.9	100.0(80)	
	기타	3.5	9.1	47.4	40.1	100.0(153)	
학업 성적	상	1.7	7.1	43.5	47.6	100.0(2,849)	257.903***
	중	2.3	8.9	52.1	36.7	100.0(3,994)	
	하	4.2	13.1	54.6	28.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2.0	7.5	44.3	46.2	100.0(4,310)	459.799***
	중	2.6	9.7	56.4	31.4	100.0(3,530)	
	하	4.3	14.5	52.7	28.5	100.0(1,655)	

** $p<0.01$, *** $p<0.001$

‘장래희망을 결정할 때 내가 원하는 진로(직업)를 부모님(보호자)도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87.8%(그런 편이다 50.2%, 매우 그렇다 37.6%)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8.5%)이 남학생(87.2%)보다, 초등학생(89.5%), 일반계고등학생(88.3%), 중학생(87.2%), 특성화고등학생(82.0%) 순으로, 지역 규모별로는 중소도시(88.4%), 대도시 및 읍면지역 아동·청소년(각각 87.4%) 순으로, 양부모가정(88.4%), 한부모가정(84.3%),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6.1%) 순으로, 학업성적(상 91.1%, 중 88.8%, 하 82.7%)과 경제적 수준(상 90.5%, 중 87.8%, 하 81.2%)이 높을수록 존중받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표 III -2-5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5.5	14.9	50.0	29.6	100.0(9,502)	
성별	남자	6.7	16.4	50.6	26.4	100.0(4,979)	304.442***
	여자	4.2	13.2	49.4	33.2	100.0(4,5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6.8	14.1	38.9	40.2	100.0(2,822)	2954.749***
	중학교	6.3	16.6	52.8	24.3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3.3	12.8	57.1	26.8	100.0(2,798)	
	특성화고	4.6	18.7	54.0	22.7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5.2	14.7	50.1	30.1	100.0(3,938)	2663.275***
	중소도시	5.8	15.1	49.5	29.7	100.0(4,387)	
	읍면지역	5.4	14.8	51.8	27.9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5.3	14.5	50.0	30.1	100.0(8,493)	1764.626***
	한부모가정	5.9	17.5	50.4	26.2	100.0(756)	
	조손가정	15.3	20.4	45.2	19.2	100.0(80)	
	기타	7.1	16.1	50.4	26.4	100.0(153)	
학업 성적	상	4.1	11.9	45.5	38.5	100.0(2,847)	296.277***
	중	5.0	14.3	51.6	29.1	100.0(3,992)	
	하	7.7	19.0	52.3	21.0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4.4	12.9	45.1	37.6	100.0(4,310)	134.935***
	중	5.9	15.2	55.3	23.6	100.0(3,527)	
	하	7.5	19.3	51.5	21.7	100.0(1,654)	

*** $p < 0.001$

‘부모님(보호자)은 공부시간이나 방법(학원 또는 학습지 선택 등)을 결정할 때 나의 의견을 듣고 존중해 준다’는 응답은 79.6%(그런 편이다 50.6%, 매우 그렇다 29.6%)로 나타나 진학(84.7%) 및 진로·직업(87.8%) 결정 시보다 의견을 존중받는 정도가 낮았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82.6%)이 남학생(79.6)보다, 일반계고등학생(83.9%), 초등학생(79.1%), 중학생(77.1%), 특성화고등학생(76.7%) 순으로, 대도시(80.2%), 읍면지역(79.7%), 중소도시 아동·청소년(79.2%) 순으로, 양부모가정(80.1%), 한부모가정(76.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64.4%) 순으로, 학업

성적(상 84.0%, 중 80.7%, 하 73.3%)과 경제적 수준(상 82.7%, 중 78.9%, 하 73.2%)이 높을수록 학업관련 의사결정시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의견존중 현황을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을 존중받는(‘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 응답률이 진로·직업(87.8%) 결정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결정(84.7%),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0.1%)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부시간이나 방법(79.6%)을 결정할 때 존중받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상황에서 80% 이상이 의견을 존중받는다라는 응답을 보여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초등학교의 의견존중도가 높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의견존중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모든 문항에서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인 경우와 학업성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에 존중받는다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② 학교에서의 참여

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결정권 보장정도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절반을 넘지 않았다. 즉, 두 명 중 한 명은 선택권이 없이 부모나 교사의 권유 또는 지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6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28.7	23.1	36.1	12.1	100.0(6,683)	
성별	남자	30.8	21.2	35.1	12.9	100.0(3,505)	21.631*
	여자	26.4	25.1	37.2	11.3	100.0(3,178)	
학교 유형	중학교	27.1	23.6	39.7	9.6	100.0(3,274)	38.171***
	일반/특목/자율고	29.3	24.3	31.6	14.8	100.0(2,800)	
	특성화고	34.7	15.0	37.0	13.4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28.3	23.8	35.9	12.0	100.0(2,781)	17.679*
	중소도시	27.1	22.6	36.8	13.4	100.0(3,020)	
	읍면지역	35.7	22.1	33.9	8.3	100.0(881)	
경제적 수준	상	28.5	22.7	35.5	13.3	100.0(2,559)	46.686***
	중	27.9	23.2	38.1	10.8	100.0(2,631)	
	하	30.5	23.6	33.5	12.3	100.0(1,483)	

* $p<0.05$, *** $p<0.001$

남학생(52.0%)이 여학생(51.5%)보다, 일반계고등학생(53.6%), 중학생(50.7%), 특성화고등학생(49.7%) 순으로, 읍면지역(57.8%), 대도시(52.1%), 중소도시 아동·청소년(49.7%) 순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하 54.1%, 상 51.2%, 중 51.1%) 자신의 의사보다는 강제에 따라 추가학습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다.

나. 교칙 제·개정 과정에의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54.6%(그런 편이다 42.7%, 매우 그렇다 1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등교육법이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2012년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학교규칙 제·개정을 위한 매뉴얼 개발·보급 및 연수 등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45.4%의 학교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여학생(56.1%)이 남학생(53.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81.8%), 중학생(45.8%), 일반계고등학생(42.1%), 특성화고등학생(32.6%)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55.7%), 대도시(54.5%), 읍면지역 아동·청소년(51.0%)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54.9%), 조손가정(53.7%),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51.6%) 순으로, 학업성적(상 59.9%, 중 58.1%, 하 43.8%)과 경제적 수준(상 59.9%, 중 53.6%, 하 42.7%)이 높을수록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III-2-7 학교는 학교규칙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18.2	27.2	42.7	11.9	100.0(9,506)	55.487***
	남자	19.7	27.0	41.0	12.3	100.0(4,977)	
	여자	16.4	27.5	44.5	11.6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6.2	11.9	52.7	29.1	100.0(2,827)	26.319*
	중학교	23.2	30.9	40.3	5.5	100.0(3,272)	
	일반/특목/자율고	21.6	36.3	38.3	3.8	100.0(2,799)	
	특성화고	30.9	36.5	28.8	3.8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18.6	26.9	42.1	12.4	100.0(3,942)	39.29***
	중소도시	17.2	27.1	43.2	12.5	100.0(4,386)	
	읍면지역	20.2	28.8	42.7	8.3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8	27.3	42.8	12.1	100.0(8,494)	25.594*
	한부모가정	20.7	27.7	42.7	8.9	100.0(758)	
	조손가정	23.0	23.4	36.3	17.4	100.0(80)	
	기타	19.3	25.4	42.3	13.1	100.0(153)	

* $p<0.05$, *** $p<0.001$

다.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학생회 운영 자율권 보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학생회의 독립성, 임원후보 자격 제한, 학생회 활동 지원 등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먼저,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질문에 대해 ‘아니다’ 28.8%, ‘그렇다’ 14.5%, ‘잘 모르겠다’ 56.7%로 나타나 학생회의 자율성이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보장받는 경우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운영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과반수를 넘게 나타나 학교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이 큰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교급별로는 특목고가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21.3%로 가장 높았고, 일반고가 13.6%로 가장 낮게 나타나 일반고의 학생회 활동 자율성이 낮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 III-2-8 교사나 교장의 간섭 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8.8	14.5	56.7	100.0(6,687)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28.1	14.8	57.1	100.0(3,279)	214.166***
	일반고	30.5	13.6	55.9	100.0(2,452)	
	특목고	26.6	21.3	52.1	100.0(92)	
	자율고	27.5	13.5	59.0	100.0(255)	
	특성화고	27.0	15.6	57.4	100.0(610)	

*** $p < 0.001$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아니다’ 28.5%, ‘그렇다’ 30.0%, ‘잘 모르겠다’ 41.5%의 응답률을 보여, 학생회 임원 입후보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5%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학생회 임원후보 자격에 성적 제한이 있는 경우는 특성화고가 32.1%로 가장 많았고, 특목고가 22.8%로 가장 낮게 나타나 특목고의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8.5	30.0	41.5	100.0(6,685)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27.3	29.0	43.7	100.0(3,278)	45.491***
	일반고	30.6	31.0	38.3	100.0(2,451)	
	특목고	33.2	22.8	44.0	100.0(92)	
	자율고	32.9	30.1	36.9	100.0(255)	
	특성화고	24.1	32.1	43.7	100.0(610)	

*** $p < 0.001$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하는 경우는 20.8%, ‘그렇지 않은’ 경우는 15.5%로 나타나, 학생회 활동에 예산, 장소, 시간 등을 지원하는 학교가 5.3% 정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학생회 활동과 관련되는 내용인만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63.7%로 높게 나타났으나 학생회 자치공간이 있는 경우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때, 많은 학교들이 학생회 자치공간이 없을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자치 예산,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는 응답은 특목고학생이 27.2%로 가장 높았고, 특성화고등학생이 19.2%로 가장 낮았다.

표 III-2-10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세부 학교 유형	전체	15.5	20.8	63.7	100.0(6,682)	182.017***
	중학교	16.9	20.4	62.7	100.0(3,276)	
	일반고	13.5	21.1	65.4	100.0(2,451)	
	특목고	11.3	27.2	61.4	100.0(92)	
	자율고	12.4	24.8	62.9	100.0(255)	
	특성화고	17.9	19.2	62.9	100.0(609)	

*** $p < 0.001$

라.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8.8%,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 없는 경우’ 7.1%,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경우’ 18.1%로 나타났다.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특목고학생의 경우 21.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특성화고등학생은 15.2%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여 전반적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11 학생회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정도

(단위 : %(명))

구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는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세부 학교 유형	전체	8.8	7.1	18.1	66.0	100.0(6,635)	64.158***
	중학교	10.1	7.4	16.2	66.2	100.0(3,253)	
	일반고	6.9	6.9	20.9	65.4	100.0(2,429)	
	특성화고	10.0	7.4	15.2	67.4	100.0(608)	
	자율고	8.7	5.1	20.4	65.8	100.0(254)	
	특목고	2.4	6.9	21.5	69.2	100.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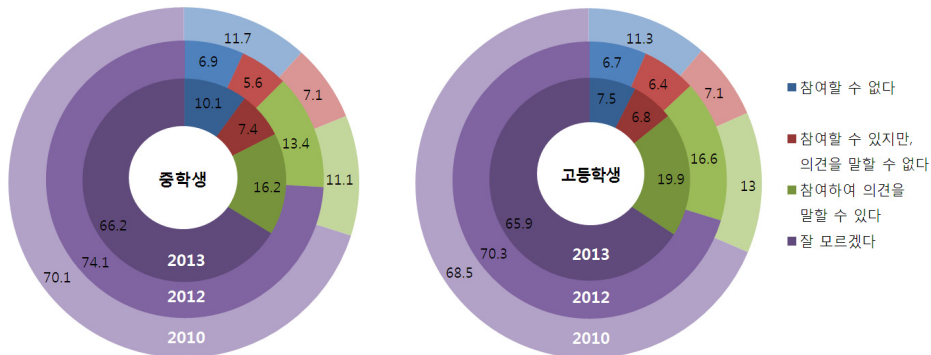
*** $p < 0.001$

한편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11.1% → 13.4% → 16.2%)과 고등학생(13.0% → 16.6% → 19.9%) 모두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12 학생의 학생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 %)

	연도	참여할 수 없다	참여할 수 있지만, 의견을 말할 수 없다	참여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잘 모르겠다
중학생	2010년	11.7	7.1	11.1	70.1
	2012년	6.9	5.6	13.4	74.1
	2013년	10.1	7.4	16.2	66.2
고등학생	2010년	11.3	7.1	13.0	68.5
	2012년	6.7	6.4	16.6	70.3
	2013년	7.5	6.8	19.9	65.9



【그림 III-2-1】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③ 사회참여

가. 청소년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청소년의 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는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수용률로 알아보았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청소년분야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여 범정부적 청소년정책과제를 발굴, 추진, 점검하는 기구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정부에서 청소년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정책과제를 수용한 비율은 2009년도를 제외하고는 80%에서 90% 사이로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3 청소년특별회의 의제 수용률

연도	의제	수용률
2004 (시범)	• 청소년 인권·참여 (13개 과제) – 시범사업 : 청소년특별회의 연1회 개최 정례화	–
2005	• 청소년참여기반 확대(35개 과제) –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참여 등 6개 영역 31개 과제 수용	31개 수용 (88.6%)
2006	• 청소년 성장의 사회자원망 조성(37개 과제)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확대 등 33개 수용	33개 수용 (89.2%)
2007	•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안(18개 과제) – 선거연령 하향 등 15개 수용	15개 수용 (83.3%)
2008	•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35개 과제) – 리틀맘에 대한 정책 마련 등 29개 수용	29개 수용 (82.9%)
2009	• 청소년, 자신의 꿈을 찾을 수 있는 사회만들기(20개 과제) –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등 14개 수용	14개 수용 (70.0%)
2010	• 자기주도적 역량개발, 존중받는 청소년(53개 과제) – 체험활동을 통한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인프라 확대 등 49개 수용	49개 수용 (92.4%)
2011	• 우리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건강하게 성장하는 청소년(41개 과제) – 유해매체로부터의 청소년 성보호 등 3개 영역 41개 과제 제안	36개 수용 (87.8%)
2012	• 자유로운 주말, 스스로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 청소년 체험활동 여건조성 등 3개 영역 30개 과제(89개 세부과제) 제안	81개 수용 (91.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e),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4.

나. 청소년참여기구 활동 경험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현황

■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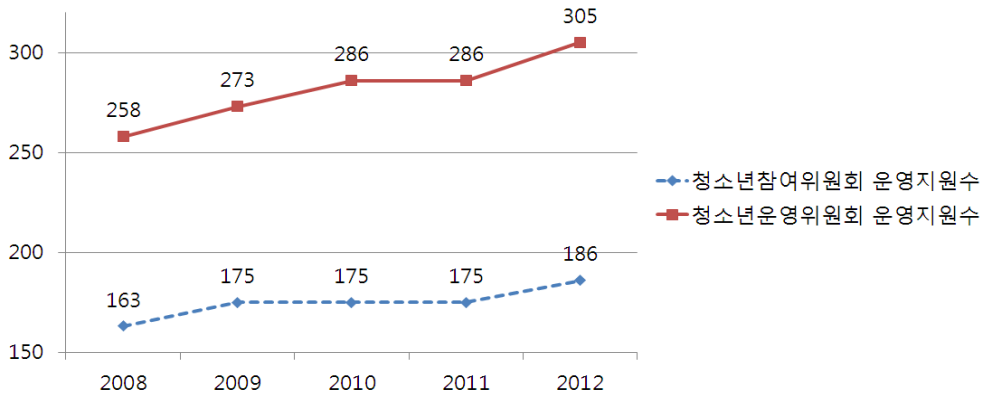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지역의 청소년정책 참여활동을 하는 자치기구이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자치기구이다. 두 기구 모두 점차 늘어나고 있어 청소년의 참여의 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청소년수련관 및 문화의집에 설치·운영되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의 실질적 참여의 장으로 기능하기 위해 다양한 참여프로그램과 예산을 지원하고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도록 한다.

표 III-2-14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08~2012)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지원수	163	175	175	175	186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수	258	273	286	286	305

* 출처 : 여성가족부(2012e).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5.



* 출처 : 여성가족부(2012e).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p.5.

【그림 III-2-2】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

표 III-2-15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지원 현황(2012)

(단위: 개)

	계	여성 가족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청소년참여위원회	186	1	6	3	2	10	2	2	6	32	19	5	16	15	23	23	20	1
청소년운영위원회	305	-	44	14	9	12	6	10	7	62	32	15	14	16	14	13	15	2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p.63-64.

■ 아동총회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들이 아동정책에 대한 토론 및 제안활동을 펼치는 참여기구로 청소년특별회의의 주 참여대상이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면 아동총회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 대상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부터 개최되기 시작하여 2013년으로 10주년을 맞고 있다.

표 Ⅲ-2-16 아동총회 개최현황(2004~2012)

구분	주요내용
제1회	• 일시: 2004. 7. 27 ~ 29(2박 3일) • 주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만들기 • 참여인원: 112명
제2회	• 일시: 2005. 10. 20 ~ 22(2박 3일) • 주제: 아동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480명(지역대회 개최)
제3회	• 일시: 2006. 9. 21 ~ 23(2박 3일) • 주제: 아동, 그 차별의 벽을 넘어서 • 참여인원: 500명(이주아동 참가, 지역대회 개최)
제4회	• 일시: 2007. 8. 14 ~ 16(2박 3일) • 주제: 아동폭력 없는 행복한 세상 • 참여인원: 560명(아동권리 수호천사 및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제5회	• 일시: 2008. 8. 18 ~ 20(2박 3일) • 주제: 우리들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 참여인원: 총 610명(아동 580명, 지도자 30명)
제6회	• 일시: 2009. 11. 17 ~ 19(2박 3일) • 주제: 서로 존중해주는 세상을 위하여 • 참여인원: 총 547명(아동 418명, 지도자 129명) - 지역대회: 410명 - 본대회: 137명(지역대회 선발아동, 교육청 아동단체 추천)
제7회	• 일시: 2010. 8. 24 ~ 26(2박 3일) • 주제: 아동이 원하는 환경을 말하다 • 참여인원: 총 1,335명(아동 1,040명, 지도자 295명) - 지역대회: 1,182명 - 본대회: 153명(지역대회 선발아동, 이주새터민 의장단 등)
제8회	• 일시: 2011. 8. 17 ~ 19(2박 3일) • 주제: 세상과 함께하는 행복한 소통 • 참여인원: 총 1,741명(아동 1,338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3명) - 지역대회: 1,583명(아동 1,216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7명) - 본대회: 15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36명)
제9회	• 일시: 2012. 8. 8 ~ 10(2박 3일) • 주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 참여인원: 총 1,831명(아동 1,529명, 지도자 및 실무자 402명) - 지역대회: 1,663명(아동 1,307명, 지도자 및 실무자 356명) - 본대회: 168명(아동 122명, 지도자 및 실무자 46명)

* 출처 : 보건복지부(2012.8.9), ‘꿈, 행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단체협의회(2012),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과보고서 “꿈, 행복을 향한 도전”, pp.3-4.

○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앞에서 살펴본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62.4%,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28.3%,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7.2%,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2.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62.4%로 나타났다.

표 III-2-17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

(단위 : %(명))

구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름을 들어봤지만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전체(N)	χ^2
전체		62.4	28.3	7.2	2.1	100.0(6,664)	
성별	남자	64.5	26.6	6.6	2.3	100.0(3,493)	22.019**
	여자	60.1	30.1	7.9	1.9	100.0(3,171)	
학교 유형	중학교	62.5	28.2	7.4	1.8	100.0(3,260)	32.516***
	일반/특목/자율고	60.9	29.3	7.3	2.5	100.0(2,795)	
	특성화고	68.1	23.9	6.0	2.1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2.6	28.3	7.2	1.9	100.0(2,776)	24.693*
	중소도시	62.7	28.6	6.4	2.2	100.0(3,009)	
	읍면지역	60.3	26.9	10.3	2.5	100.0(879)	
학업 성적	상	62.5	28.0	6.8	2.7	100.0(1,740)	21.255*
	중	58.6	30.7	8.4	2.3	100.0(2,631)	
	하	66.7	25.6	6.3	1.5	100.0(2,286)	

* $p<0.05$, ** $p<0.01$, *** $p<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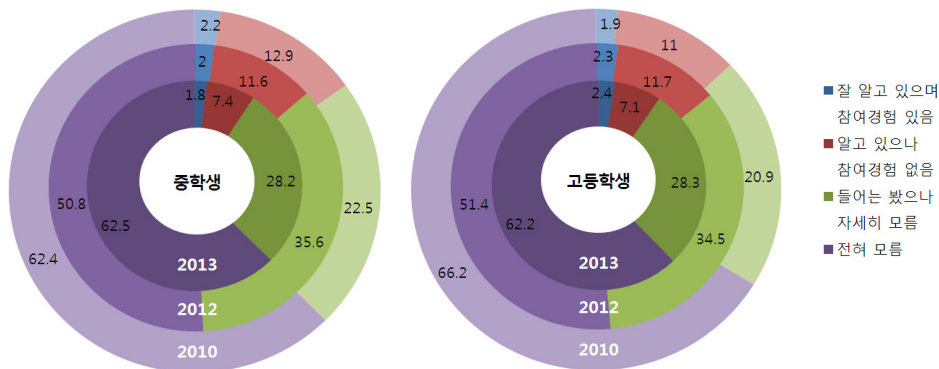
참여경험이 있는 경우에 대한 변인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23%)이 여학생(1.9%)보다, 일반계고 등학생(2.5%)이 특성화고등학생(2.1%)과 중학생(1.8%)보다,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5%), 중소도시(2.2%), 대도시(1.9%) 순으로, 학업성적(상 2.7%, 중 2.3%, 하 1.5%)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해본 경험의 2010년, 2012년, 2013년 3개년 추이를 보면, 중학생의 경우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22% → 20% → 18%), 고등학생의 경우는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1.9% → 2.3% → 2.4%) 볼 수 있다.

표 Ⅲ-2-18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 %)

	연도	잘 알고 있으며 참여경험 있음	알고 있으나 참여경험 없음	들어봤으나 자세히 모름	전혀 모름
중학생	2010년	2.2	12.9	22.5	62.4
	2012년	2.0	11.6	35.6	50.8
	2013년	1.8	7.4	28.2	62.5
고등학생	2010년	1.9	11.0	20.9	66.2
	2012년	2.3	11.7	34.5	51.4
	2013년	2.4	7.1	28.3	62.2



【그림 Ⅲ-2-3】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인지도 및 참여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다.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이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낮추어야 한다’ 26.5%,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53.0%,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6.7%, ‘잘 모르겠다’ 13.8%의 응답율을 보여 만19세 유지 의견이 절반 정도로 나타났다. 여학생일 경우,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선거연령 하향화에 대해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교급별 차이로는 중학생이 선거연령 하향화에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목고학생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목고학생의 경우 ‘만19세보다 높여야 한다’는 응답률이 전체평균보다 2배 가까이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2-19 투표연령 하향화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잘 모르겠다	전체(N)	χ^2
전체		26.5	53.0	6.7	13.8	100.0(6,683)	
성별	남자	27.3	48.7	8.1	15.8	100.0(3,505)	35.136***
	여자	25.6	57.7	5.1	11.6	100.0(3,178)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30.2	47.8	5.1	16.9	100.0(3,276)	93.041***
	일반고	22.9	59.7	7.9	9.4	100.0(2,451)	
	특성화고	23.4	51.5	8.3	16.8	100.0(609)	
	자율고	23.4	56.0	9.8	10.7	100.0(255)	
	특목고	19.2	60.1	11.4	9.3	100.0(9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6.2	53.8	6.5	13.5	100.0(5,956)	22.669*
	한부모가정	28.1	48.4	8.5	15.0	100.0(572)	
	조손가정	36.6	34.6	7.1	21.7	100.0(46)	
	기타	28.6	39.1	7.2	25.1	100.0(100)	
학업 성적	상	26.1	57.2	8.1	8.6	100.0(1,743)	792.065***
	중	26.3	53.9	6.0	13.8	100.0(2,639)	
	하	27.0	48.8	6.4	17.9	100.0(2,294)	
경제적 수준	상	26.4	55.1	7.0	11.5	100.0(2,559)	27.345**
	중	26.2	51.7	5.4	16.6	100.0(2,631)	
	하	27.1	51.8	8.4	12.7	100.0(1,483)	

* $p < 0.05$, ** $p < 0.01$, *** $p < 0.001$

라. 참여권 보장 수준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51.6%(그런 편이다 37.5%, 매우 그렇다 14.1%), ‘그렇지 않다’ 48.4%(그렇지 않은 편이다 31.3%, 전혀 그렇지 않다 17.1%)로 큰 차이는 없으나 긍정적인 답변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75.6%), 중학생(47.7%), 특성화고등학생(44.3%), 일반계 고등학생(33.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중소도시(52.9%), 읍면지역(51.2%), 대도시 이동·청소년(50.2%)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61.6%), 양부모가정(51.5%), 한부모가정 이동·청소년(49.8%) 순으로, 학업성적이 중간인 이동·청소년(55.7%)이 높거나(50.6%), 낮은 경우(46.4%)보다, 경제적 수준(상 57.1%, 중 50.3%, 하 39.8%)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게 나타났다.

표 Ⅲ-2-20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권 보장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17.1	31.3	37.5	14.1	100.0(9,499)	37.38***
	남자	19.2	29.2	37.7	13.9	100.0(4,973)	
	여자	14.8	33.7	37.3	14.3	100.0(4,5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6.7	17.7	51.4	24.2	100.0(2,819)	34.201***
	중학교	19.9	32.4	37.2	10.5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23.3	43.3	24.6	8.8	100.0(2,797)	
	특성화고	22.2	33.6	33.8	10.5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7.5	32.3	35.5	14.7	100.0(3,941)	57.578***
	중소도시	16.9	30.2	38.9	14.0	100.0(4,380)	
	읍면지역	16.6	32.2	39.1	12.1	100.0(1,17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6.8	31.7	37.5	14.0	100.0(8,491)	24.546**
	한부모가정	20.6	29.6	35.7	14.1	100.0(757)	
	조손가정	24.9	13.5	51.0	10.6	100.0(80)	
	기타	15.4	26.8	39.2	18.6	100.0(153)	
학업 성적	상	16.8	32.7	34.2	16.4	100.0(2,849)	42.696***
	중	14.3	30.0	42.0	13.7	100.0(3,992)	
	하	21.8	31.9	34.4	12.0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14.9	28.0	40.3	16.8	100.0(4,308)	71.926***
	중	16.5	33.2	38.6	11.7	100.0(3,526)	
	하	24.2	35.9	27.9	11.9	100.0(1,654)	

** $p < 0.01$, *** $p < 0.001$

마. 참여의 장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35.7%,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부모님(보호자) 반대’ 3.6%, ‘학교 반대’ 1.6% 순의 응답율을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은 ‘시간부족’을, 여학생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참여 기회나 방법 부족’을 참여의 장애로 많이 생각하고 있었고, 세부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은 ‘시간부족’을, 중·고등학생(40.4%·42.4%)은 전반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많이 꼽고 있는가운데 특성화고 학생은 ‘정보부족’, 일반고와 자율고 학생은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을 장애로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목고 학생들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의 편견’에 44.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6개 학교유형 중 ‘시간부족’ 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표 Ⅲ-2-21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 참여가 어려운 이유

(단위 : %(명))

구분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부족	부모님 (보호자) 반대	학교 반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 부족	전체(N)	χ^2
전체		31.5	13.3	3.6	1.6	35.7	14.3	100.0(9,475)	
성별	남자	36.9	12.8	4.4	2.3	30.7	12.9	100.0(4,965)	56.931***
	여자	25.5	13.8	2.7	0.9	41.3	15.9	100.0(4,51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42.6	12.5	6.9	0.9	22.3	14.8	100.0(2,806)	62.58***
	중학교	28.1	14.1	3.4	1.8	40.4	12.2	100.0(3,268)	
	일반고	25.3	12.9	0.7	2.2	42.4	16.5	100.0(2,446)	
	특성화고	23.9	15.5	2.4	1.0	43.8	13.5	100.0(609)	
	자율고	31.7	11.2	1.0	2.2	38.4	15.4	100.0(254)	
	특목고	26.7	7.1	0.7	4.0	44.0	17.6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30.7	13.1	3.2	1.5	37.5	13.8	100.0(3,931)	16.124*
	중소도시	32.5	13.3	3.9	1.6	34.1	14.7	100.0(4,372)	
	읍면지역	30.1	13.5	3.8	1.9	36.1	14.6	100.0(1,171)	

* $p < 0.05$, *** $p < 0.001$

(2)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2조에서는 청소년 자신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안에 대해 해당 청소년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야 하고 행정적·사법적 절차에 있어 진술 기회를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의사결정권이 있는 자는 청소년의 견해 표명에 대해 적절한 비중을 주어 존중해야 함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자기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 제13조에서는 청소년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내용과 방법에 있어 포괄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의 사유에 의한 제한을 명시하고 있다(UN, 1989). 이와 같은 자기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권과 존중, 포괄적인 의사표현의 자유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기본토대인 참여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자신의 문제에 대한 의견표명과 존중, 의사표현의 자유 없이는 참여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를 전제로 본 연구에서는 중분류 영역인 의견표명권, 표현의 자유를 다시 가정에서의 참여, 학교에서의 참여, 사회참여의 세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고, 정책제언에서는 이 세 하위영역의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가정에서의 참여는 청소년들의 삶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성장세대인 청소년에게 가정에서의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가족의 정서적 지원과 관심, 가족들과의 유대관계는 행복한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자양분이기 때문이다. 가정에서의 참여는 민주사회에서의 시민 역할을 익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 조사의 가정에서의 참여 지표 영역은 크게 ‘집안 의사결정 참여(문 21-1)’와 ‘자기결정권 존중(문 21-2, 3, 4)’으로 나눌 수 있다. 두 개의 지표영역 모두 ‘그런 편이다’ 이상의 응답 비율이 80% 안팎이어서 가정에서의 청소년 참여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족유형 별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우려할만한 사항도 있다.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이 양부모가정, 한부모가정에 비해 집안 의사결정 참여나 자기관련 사안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의 정도가 현저히 낮다. 이 점은 청소년의 가정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조손가정에 대한 중점적인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손가정에 있어서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조부모 세대의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에 대한 인식과 기술의 부족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손가정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외에도 시민교육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 역할을 하는 조부모 세대에 대해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세대 차이가 나는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하는 기술을 터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과 정책입안자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단순한 물질 지원과 상담 외에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청소년과의 의사소통 등을 담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자치센터에서의 모둠교육 또는 사회복지사 등의 담당자 가정방문교육을 통해 조부모를 교육하고 지원해야 한다.

가정에서 청소년이 경험하는 참여, 존중, 자율 등은 시민으로서 성장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 귀중한 자원이 된다. 따라서 국가나 공공기관은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참여, 존중, 자율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가정은 사적 영역이어서 제도나 법 등 외적 요소에 의한 개입이 용이하지 않다.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부모를 변화시켜 이들로 하여금 민주적이고 인격적으로 가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를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교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부모교육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지금까지의 부모교육은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을 하는 것이다. 대학생과 고등학생 고학년을 대상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부모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실행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교양과목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교육프랜으로 만들어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교육과정 또는 프로그램내용에는 청소년 인권과 참여, 가정 내 민주적 의사결정, 자녀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은 기존 부모교육에도 포함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의 관점에서 학교에서의 청소년 참여 실태를 볼 때 조사결과는 부정적이

라고 할 수 있다. 교육활동이나 교칙 제·개정에 대한 참여보장 정도에 있어 50% 안팎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다. 학생회 운영의 자율권 보장과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대해서는 60% 안팎의 응답자가 잘 모르는 상태이며, 응답한 경우에도 학생회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66% 정도가 외부의 간섭 없는 자율적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50% 가까이가 학생회 활동에 대한 제한이 있고 지원이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에 있어서도 응답자의 25% 정도가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조사결과는 학교가 청소년들의 민주주의 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의 목적을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자치활동을 권장 보호하도록 하고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조사결과에 나타난 학교에서의 참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 중 하나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활동의 절차와 참여방법, 활동내용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다. 학교는 참여 절차와 활동 내용을 알려야 하고 학생들은 필요한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내용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것이다. 학생회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아는 것은 이 기구에 대한 학생 참여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정보 공개를 제도화 하는 것 외에 학생회 참여, 학교 규칙과 규정을 포함한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을 제도화 하여 학교에서의 참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제도화의 예로 경기학생인권조례를 들 수 있다. 경기학생인권조례에서는 자치 및 참여의 권리로 자치활동의 권리,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 열람, 정보공개청구 등 정보에 관한 권리 역시 명문화하고 있다(<http://shr.goe.go.kr>). 또한 학생인권조례처럼 학생의 학교에서의 참여 절차와 권리를 구체화 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학교 참여 인권지표 실태를 구분하여 제시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기, 서울, 광주와 여타 지역을 구분하여 실태를 제시하면 학생인권조례라는 제도가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지니는 의미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 구성원들의 인식이다. 특히 학교 운영에 있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제도의 성과는 달라진다. 이들 교장, 교사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 중 하나로 교장, 교사들의 일반연수, 자격연수 프로그램에서 청소년(학생)의 인권과 참여에 대한 교육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그 동안 우리 사회 민주화의 진전과 더불어 많이 확대되어온 청소년 참여영역이다. 대표적으로 1998년 제2차 청소년

육성5개년계획 이후 제도적으로 청소년참여가 장려되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졌고, 2002년 월드컵 참여, 효선·미순 사망 항의 촛불집회, 선거권 연령 인하 운동, 광우병소고기 수입금지 촛불집회 등과 같은 길거리 참여가 활성화 되었다. 특히 길거리 참여에서 청소년들은 활기찬 참여 열기와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를 보였다.

길거리 참여 열기에 비해 제도권의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열기는 매우 낮아 보인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4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이후 매년 전국에서 청소년대표를 선발하여 개최되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청소년참여위원회 186개, 청소년운영위원회 305개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여성가족부, 2012b), 조사결과를 62.4%의 청소년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으며, 28.3%의 청소년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고 단지 21%의 청소년만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정부가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하고 청소년의 의견을 정책과 기관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설치한 참여 기구에 대해 당사자인 청소년은 대부분 알고 있지 못한 현실은 개선되어야 한다. 이런 현실은 청소년정책이 당사자인 청소년과 괴리되어 겉돌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참여기구,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 전략으로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장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청소년정책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는 교육정책의 주무부서인 교육부 또는 초·중·등교육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각 교육청과 협력을 강화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참여기구를 포함한 청소년정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매스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홍보를 통해 인지도를 제고한 후에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구사해야 한다.

청소년의 선거 참여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있어서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선거 참여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이 높아지고 정치참여권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18세 선거권 운동이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고 이 결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20세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낮추어졌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일각에서는 강력하게 18세로 선거권을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일례로 2012년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기 위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매일노동뉴스, 2012.10.22),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

조,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013.2.15).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세계 232국 중 92.7% 정도(215국)가 18세 이하를 선거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고, 현재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0세 이상)과 우리나라를 제외한 32개국이 18세 이하로 선거권 연령을 정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을 통해 청소년들이 교내외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청소년의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필요가 있으며, 청소년정책추진부서는 이를 청소년 인권 차원에서 제기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선거권 문제는 정파적 이해득실 차원에서 접근되어서는 안되며 청소년의 인권 또는 시민권 보장이라는 차원과 청소년의 의견과 에너지, 아이디어 등을 국가운영에 투입시킨다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이런 논리와 내용에도 불구하고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19세 선거권연령을 유지 또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59.7%로 선거권연령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다. 이 결과는 매우 흥미롭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들이 중심이 되어 벌인 선거권 인하운동과는 반대되는 응답이고 선거권이 청소년 시민권의 핵심이라는 논리를 청소년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아마도 청소년들이 선거권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응답했기 때문일 수 있다. 추후 이 조사결과가 지니는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내지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언급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참여 장애요인에 대책마련이다. 청소년 참여를 활성화 하려면 청소년 참여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해야 한다. 청소년들은 참여 장애요인으로 청소년에 대한 편견과 시간부족을 가장 많이 들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기성세대의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기성세대가 함께 하는 참여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실행할 필요가 있다. 세대 공감 참여프로그램을 통해 기성세대들이 청소년과 함께 참여해 봄으로써 청소년의 잠재성과 가능성을 기성세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긍정적 모델이 창출되면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시간부족은 입시구조에서 비롯되는 문제로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참여가 입시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협조하여 전국적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발표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여기에서 입상하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에 인센티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제14조)

(1) 지표의 현황

① 양심적 병역 거부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매년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는 500~700명 사이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10년간 전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총 6,090명이다. 병역거부 사유로는 여호와의 증인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종교적 이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 상황에서 이들은 병역법령에 따라 처벌받고 있는 실정인데 6,090명의 처리 현황을 보면, 징역 5,669명, 집행유예 26명, 재판계류 395명 등으로 형이 확정된 자가 93.5%인 5,695명에 달하고 있다.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 이후 2012년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투옥행위는 자유권 규약 위반임을 공표하였고 2012년 UPR 회의에서는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기도 하였으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 하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도입이 어려움을 밝히고 있다. 찬반 여론이 양분되어 있는 어려운 의제만큼 원론적 찬반주장보다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정하고 합리적 대체복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제도적 방안에 대한 실질적 논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표 III-2-22 연도별 병역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계
인원	755	828	781	571	375	728	721	633	598	100	6,090

* 출처 : 형혁규·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 p.2

* 원자료 : 병무청 제출자료(2013. 7)

표 III-2-23 연도별 종교적 사유의 병역 거부자 발생현황

(단위: 명)

발생년도	계	여호와의 증인	불 교	기 타
계	6,163	6,115	2	46
2012년	210	209	-	1
2011년	633	627	-	6
2010년	721	715	-	6
2009년	728	723	-	5
2008년	375	373	-	2
2007년	571	567	-	4
2006년	781	778	-	3
2005년	828	818	1	9
2004년	755	748	-	7
2003년	561	557	1	3

* 출처 : 병무청 2012 국정감사 요구자료(2012.7.31. 현재).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거부자 발생현황
(http://www.mma.go.kr/kor/s_info/assembly/assembly01/assembly0101/1264051_1295.html)

표 III-2-24 최근 10년간(2004~2013.6.30.) 병역거부자 처리 현황

구분	계	형 확정자			재판계류 등
		소계	징역	집행유예	
인원(명)	6,090	5,695	5,669	26	395
비중(%)	100	93.5	93.1	0.4	6.5

* 출처 : 형혁규·김성봉(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제693호. p.2

* 원자료 : 병무청 제출자료(2013. 7)

②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가.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응답으로만 분석한 결과,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6%(그런 편이다 27.4%, 매우 그렇다 13.2%), ‘그렇지 않다’는 59.4%(그렇지 않은 편이다 19.8%, 전혀 그렇지 않다 39.6%)로 나타나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5 학교의 종교행사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단위: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9.6	19.8	27.4	13.2	100.0(708)	
성별	남자	37.6	18.8	26.7	16.8	100.0(351)	20.456*
	여자	42.0	19.6	27.7	10.7	100.0(357)	
학교 유형	중학교	61.5	12.8	17.9	7.7	100.0(131)	73.063***
	일반/특목/자율고	33.0	21.3	30.5	15.2	100.0(546)	
	특성화고	68.0	16.0	8.0	8.0	100.0(30)	
지역 규모	대도시	46.8	17.9	22.4	12.8	100.0(432)	29.241***
	중소도시	28.6	23.1	34.1	14.3	100.0(276)	
	읍면지역	-	-	-	-	-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5	20.2	27.5	13.8	100.0(648)	154.245***
	한부모가정	48.1	17.3	22.2	12.3	100.0(46)	
	조손가정	24.5	46.9	28.6	0.0	100.0(4)	
	기타	71.8	12.9	0.0	15.3	100.0(8)	
학업 성적	상	43.4	18.9	21.7	16.0	100.0(186)	60.82***
	중	38.8	17.3	31.6	12.2	100.0(253)	
	하	38.3	22.6	27.0	12.2	100.0(265)	
경제적 수준	상	39.4	16.5	29.4	14.7	100.0(279)	60.642***
	중	37.5	21.9	28.1	12.5	100.0(252)	
	하	42.4	22.0	22.0	13.6	100.0(176)	

* $p<0.05$, *** $p<0.001$

(2) 정책제언

나달숙(2008)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는 자신의 신앙, 가치관, 도덕률, 정치적·철학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상의 결정으로 무기를 휴대한 병역을 거부하거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이며 어떤 상황 하에서도 인명을 살상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순수한 평화주의에 바탕한 개념”이다.

우리 법체계와 사법적 판단은 비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일반 병역의무 거부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은 지속되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수도 줄어들고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거부에는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수행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 중 양심의 자유에 더 가치를 두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양심의 자유는 인권적 차원의 가치라면 병역의무의 수행은 국가체제의 유지 차원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치가 갈등하고 충돌하는 지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발생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은 양심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존엄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최소한의 인권이자 내면적 권리로서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내포하고 있으며, 병역의 의무보다 양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은 남북한 휴전상태인 우리의 특수상황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면 병역의무는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고 병역의무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국가안보와 국가체제의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논거 하에 양심의 자유보다 병역의무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대법원은 2004년 7월 15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이고,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 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라고 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 인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입법재량 사항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7.15.).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형사처벌만을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고 있다(헌법재판소, 2011.8.30.).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으며,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유럽이사회(Council of Europe)의 결의, 유럽의회 결의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다. 민간대체복무 또는 군대에서 비전투복무를 인정하고 있는 국가도 상당수 있는데,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25개국에 이른다.

분단이라는 특수상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양심의 명령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병역을 거부하는 자를 범죄자로 내모는 것은 인권 차원에서 볼 때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되는 것이라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국가안보가 중시되는 현실을 무시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무조건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입법재량사항으로 남겨둔 대체복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제는 군대 밖에서 하는 것과 군대 안에서 하는 것,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군대 밖에서 하는 경우 대체복무제의 기간을 병역의무기간보다 3~4배 길게 하고 그 업무의 난이도도 높게 할 필요가 있고 군대 안에서 하는 경우도 기간을 일반 병역의무보다 길게 할 필요가 있다. 어떤 경우라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일반 상식의 관점에서 볼 때 훨씬 이익이 되게 대체복무제의 제도를 만들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여 심사하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05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대체복무 제도의 도입을 권고한 적이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2.20.).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한 전제로 이 제도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우리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 제10조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는 핵심적 요소로서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종교행위)의 자유를 포함한다. 신앙의 자유에는 신앙의 형성, 변경, 포기와 불신앙의 자유, 신앙을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고 신앙실행의 자유에는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결사의 자유,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가 포함된다(박종보, 2007). 학생청소년의 경우도 당연히 이와 같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종교를 건학이념으로 삼고 있는 종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종교의 자유 침해해 인권문제로 제기하는 사례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국공립학교는 헌법 제20조 제2항의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원칙에 입각하여 특정 종교를 옹호하거나 전파할 수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종립 사립학교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종립 사립학교는 건학이념에 따른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가지고, 학생은 인권 차원에서 당연히 불신앙의 자유를 포함한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박종보, 2007).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학교가 특정 종교교육을 받거나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강요할 때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고교평준화 제도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이 인정되지 않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학교에 배정되기 때문에 학생의 의사에 반한 종교교육과 종교행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은 “종립학교가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강제 배정된 학생들을 상대로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는 종파적인 종교행사와 종교과목 수업을 실시하면서 참가 거부가 사실상 불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체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등 신앙을 갖지 않거나 학교와 다른 신앙을 가진 학생의 기본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학생의 종교에 관한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4.22).

조사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응답자(89.4%)가 종교학교에 다니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나머지 종교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 59.4%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참여한다고 답변하여 종교의 자유 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른 선교와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하고 학생의 신앙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 방안 중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학생들에게 학교배정거부권을 주거나 전학권을 주는 것이다. 종립학교의 경우 학교 배정 이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그 학교의 선교와 종교교육 정책과 방침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특성을 충분히 소명한 후 특정 종립학교의 배정을 사전에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려우면 배정된 후 전학을 허용하도록 하는 것도 방안이다. 학교배정거부권이나 전학권의 부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특정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를 할 때 이에 종교상 이유로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대체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여 학생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이나 종교행사가 학생들에게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당국은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침해당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1) 지표의 현황

① 결사·집회

가. 결사·집회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한 참여활동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등 세 가지 형태의 사회참여활동 빈도를 물어보았다.

활동경험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면(‘가끔있다’와 ‘자주있다’), ‘친구들과 사회문제 토론’ 27.1%(23.7%+3.4%),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20.1%(15.7%+4.4%),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참여’ 8.1%(7.3%+0.8%)로 나타나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활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최근 1년간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본 경험은 성별과 학교유형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경험이 있다(‘가끔있다’와 ‘자주있다’)는 응답에 대해 성별로는 여학생(30.3%)이 남학생(27.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계고등학생(34.5%), 특성화고등학생(22.8%), 중학생(2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 III-2-26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단위 : %(명))

구분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47.3	25.6	23.7	3.4	100.0(6,679)	14.92*
	남자	50.4	25.4	20.7	3.5	100.0(3,502)	
	여자	43.9	25.9	27.0	3.3	100.0(3,177)	
학교 유형	중학교	50.1	28.3	19.2	2.4	100.0(3,274)	23.501*
	일반/특목/자율고	41.9	23.6	29.5	5.0	100.0(2,797)	
	특성화고	57.1	20.2	21.3	1.5	100.0(609)	

* $p < 0.05$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성별, 학교유형, 학업성적 및 경제적 수준별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20.8%)이 여학생(19.4%)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23.0%), 일반계고등학생(17.6%), 특성화고등학생(16.1%) 순으로, 학업성적(상 23.0%, 중 20.5%, 하 17.5%)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22.6%), 낮은 경우(19.1%), 중간인 경우(18.3%)의 순으로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형태의 사회참여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7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 가입

(단위 : %(명))

구분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N)	χ^2
전체		58.5	21.4	15.7	4.4	100.0(6,675)	
성별	남자	57.9	21.4	16.0	4.8	100.0(3,500)	32.953***
	여자	59.1	21.5	15.5	3.9	100.0(3,175)	
학교 유형	중학교	55.8	21.2	17.9	5.1	100.0(3,271)	26.406**
	일반/특목/자율고	59.9	22.5	13.6	4.0	100.0(2,797)	
	특성화고	66.0	17.9	13.8	2.3	100.0(607)	
학업 성적	상	54.8	22.1	17.5	5.5	100.0(1,742)	27.947***
	중	57.2	22.4	16.4	4.1	100.0(2,637)	
	하	62.7	19.8	13.7	3.8	100.0(2,290)	
경제적 수준	상	56.1	21.3	17.7	4.9	100.0(2,557)	26.81**
	중	59.3	22.5	14.5	3.8	100.0(2,627)	
	하	61.1	19.8	14.7	4.4	100.0(1,481)	

** $p < 0.01$, *** $p < 0.001$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한 경험은 성별로는 남학생(8.2%)이 여학생(8.0%)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9.4%), 일반계고등학생(7.2%), 특성화고등학생(5.1%)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10.0%), 중소도시(8.0%), 대도시(7.6%)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가정(8.3%), 조손가정(6.6%), 한부모가정(6.4%)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중간인 경우(9.0%), 성적이 높은 경우(8.8%), 성적이 낮은 경우(6.5%) 순으로 활동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28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단위 : %(명))

구분		전혀없다	거의없다	가끔있다	자주있다	전체(N)	χ^2
전체		68.8	23.1	7.3	0.8	100.0(6,676)	
성별	남자	69.3	22.5	7.4	0.8	100.0(3,500)	40.373***
	여자	68.1	23.9	7.3	0.7	100.0(3,176)	
학교 유형	중학교	65.6	25.0	8.5	0.9	100.0(3,272)	23.825***
	일반/특목/자율고	70.9	21.9	6.4	0.8	100.0(2,797)	
	특성화고	76.0	18.8	5.1	0.0	100.0(607)	
지역 규모	대도시	70.2	22.3	6.8	0.8	100.0(2,779)	15.338**
	중소도시	68.5	23.5	7.4	0.6	100.0(3,015)	
	읍면지역	65.2	24.8	8.9	1.1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8.4	23.3	7.5	0.8	100.0(5,950)	10.344*
	한부모가정	72.3	21.3	5.3	1.1	100.0(572)	
	조손가정	76.0	17.4	6.6	0.0	100.0(46)	
	기타	67.4	23.8	8.9	0.0	100.0(100)	
학업 성적	상	68.9	22.4	7.8	1.0	100.0(1,742)	17.913***
	중	66.8	24.2	8.2	0.8	100.0(2,637)	
	하	70.9	22.6	6.0	0.5	100.0(2,291)	

* $p<0.05$, ** $p<0.01$, *** $p<0.001$

(2) 정책제언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권 중 하나이다. 민주주의의 발원지인 아테네 민주주의가 집회와 토론을 근간으로 했다는 점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양한 결사체로 보았던 토크빌(A. de Tocqueville)의 견해를 참고할 때 민주주의에서 결사와 집회, 토론의 자유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사전 허가제를 불허하고 있다. 결사와 집회의 자유는 성인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중요한 권리여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5조에서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에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길거리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발 제한 반대 서명운동 참여, 효순이·미선이 사건 촛불집회 참여, 노무현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참여, 미국산쇠고기 반대 집회와 시위 참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런 오프라인 상의 집회와 시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온라인 상에서 블로그나 카페 등을 개설하여 홍보전을 펼치기도 하고 단체를 결성하여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청소년들의 결사·집회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와 토론 등의 경험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조사결과는 이런

예상과는 달리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대의민주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아테네 민주주의를 원형으로 하는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부활과 활성화를 내세우고 있다. 숙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시민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능력이다. 시민의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능력은 하루아침에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과 실습이 필요하다. 대화와 토론능력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고 태도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하고 경험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 전국 차원에서의 다양한 토론 대회를 개최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 학교나 청소년활동기관에서는 토론 클럽을 조직하여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해야 하며 이 단위 토론 클럽 간의 토론대회가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개최될 필요가 있다. 이런 토론 대회 우승자들을 전국적으로 모아 일년에 한번 대통령상을 내걸고 토론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의 관심과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다. 토론 클럽을 안내할 교사,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교육도 준비되어 시행될 필요가 있다. 교사연구, 청소년지도자연수에 토론클럽 운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고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차원에서 토론 클럽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비용과 시간의 제약을 넘어서기 위해 온라인 상에 주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을 하고 사회적 쟁점에 대해 토론을 하며 시위를 한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상에서의 모임활동과 시위가 시민문화 형성에 기여하고 인터넷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시민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 배려와 연대, 예의, 정직성 등을 갖추어야 온라인 상의 모임활동과 시위, 대화와 토론 등이 생산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학교, 청소년교육기관 등에서의 인터넷 시민윤리교육이 활성화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학교에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해 학교 운영자와 교사는 유연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아직도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처벌 위주의 접근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일례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 침해에 관한 결정을 보면, 중학생 150여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해 약 20분간 학생인권, 두발자유 등을 외치며 학내집회를 하자 사전에 신고된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사들이 강제 해산을 하고 집회 주동학생들에게 진술서를 강요하고 외부 청소년인권 단체인 이수나로 가입학생에게 탈퇴를 강요한 사안에 대해 수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심시간의 평화적 집회를 불법집회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여 학교의 강제해산과 진술서 강요 등과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8.9.25.). 학교는 학생들의 평화적인 학내집회와 결사를 무조건 막고 불법시하기 보다는 민주주의사회에서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에 대한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5) 사생활의 보호(제16조)

(1) 지표의 현황

①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가.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최근 1년 동안 용모(머리 모양·길이·염색 또는 화장) 검사,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검사 경험을 알아보았다. 한 번이라도 검사경험이 있다는 응답률을 보면, 용모검사의 경우 56.2%(중 48.8%, 일반계고 63.6%, 특성화고 62.0%), 복장검사 52.5%(중 50.0%, 일반계고 56.8%, 특성화고 45.6%), 소지품검사 17.0%(중 15.6%, 일반계고 16.7%, 특성화고 25.9%)로 나타났다.

먼저, 용모 검사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43.8%였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는 22.3%, 한 달에 1-2회 정도는 21.6%, 1주일에 1-2회 정도는 4.6%, 1주일에 3회 이상은 7.6%가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 차이는 세부 학교유형별 차이만 의미있게 나타났는데, 지난 1년 동안 용모검사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자율고(72.4%), 일반고(63.0%), 특성화고(62.0%), 특목고(57.3%), 중학교(48.8%) 순으로 용모검사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표 III-2-29 학교에서 용모검사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43.8	22.3	21.6	4.6	7.6	56.1	100.0(6,686)	9.493*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51.3	19.1	18.4	4.5	6.8	48.8	100.0(3,277)	
	일반고	36.9	27.1	23.6	4.5	7.8	63.0	100.0(2,452)	
	특성화고	38.1	20.5	26.5	4.4	10.6	62.0	100.0(610)	
	자율고	27.6	18.1	35.0	8.0	11.3	72.4	100.0(255)	
	특목고	42.7	33.9	16.6	5.2	1.6	57.3	100.0(92)	

* $p < 0.05$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47.6%였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는 21.5%, 한 달에 1-2회 정도는 18.5%, 1주일에 1-2회 정도는 4.3%, 1주일에 3회 이상은 8.2%가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경험은 성별,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별 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학생(65.0%)이 남학생(52.5%)보다, 학교유형별로는 자율고(57.8%), 일반고(56.8%), 특목고(56.3%), 중학교(50.0%), 특성화고(45.6%)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52.7%), 높은 경우(52.4%), 중간인 경우(52.3%)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54.3%), 높은 경우(52.3%), 중간인 경우(51.7%) 순으로 검사 경험이 많게 나타났다.

표 III-2-30 학교에서 복장검사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47.6	21.5	18.5	4.3	8.2	52.5	100.0(6,683)	
성별	남자	59.0	17.2	16.2	2.8	4.8	100.0(3,506)	16.54*
	여자	35.0	26.1	21.0	5.9	12.0	100.0(3,177)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50.1	20.0	17.9	4.3	7.8	100.0(3,278)	5.6
	일반고	43.3	24.8	19.1	4.3	8.6	100.0(2,449)	
	특성화고	54.4	14.7	18.2	3.7	9.0	100.0(610)	
	자율고	42.2	19.4	23.4	5.5	9.5	100.0(255)	
	특목고	43.8	35.2	14.6	4.0	2.5	100.0(92)	
학업 성적	상	47.6	22.6	18.5	4.0	7.3	100.0(1,739)	31.322***
	중	47.8	20.9	18.7	4.5	8.2	100.0(2,639)	
	하	47.2	21.2	18.3	4.3	8.9	100.0(2,296)	
경제적 수준	상	47.8	21.5	18.9	4.3	7.6	100.0(2,558)	61.048***
	중	48.4	21.2	18.1	4.2	8.2	100.0(2,633)	
	하	45.8	22.1	18.6	4.5	9.1	100.0(1,481)	

* $p < 0.05$, *** $p < 0.001$

학교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본 결과, 최근 1년 동안 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83.0%였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는 10.5%, 한 달에 1-2회 정도는 4.5%, 1주일에 1-2회 정도는 0.9%, 1주일에 3회 이상은 1.1%가 검사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변인별로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17.8%)이 여학생(17.0%)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25.9%), 자율고(20.1%), 일반고(16.8%), 중학교(15.6%), 특목고(4.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21.3%), 중소도시(16.6%), 대도시(16.1%) 아동·청소년 순으로,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21.3%), 한부모가정(19.6%), 양부모가정(16.8%)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19.2%), 높은 경우(15.9%), 중간인 경우(15.8%) 순으로 소지품 검사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1 학교에서 소지품검사 경험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일 년에 1회 이상 합계	전체(N)	χ^2
전체		83.0	10.5	4.5	0.9	1.1	17.0	100.0(6,681)	
성별	남자	82.1	11.3	4.3	1.1	1.1	17.8	100.0(3,504)	52.577***
	여자	84.0	9.7	4.6	0.6	1.1	16.0	100.0(3,177)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84.4	9.7	4.4	0.6	0.9	15.6	100.0(3,275)	128.072***
	일반고	83.2	11.5	3.0	1.1	1.2	16.8	100.0(2,450)	
	특성화고	74.2	12.6	9.7	1.3	2.3	25.9	100.0(610)	
	자율고	79.9	10.1	8.9	0.5	0.6	20.1	100.0(255)	
	특목고	95.6	2.8	0.0	0.0	1.6	4.4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83.9	10.5	3.7	0.8	1.1	16.1	100.0(2,778)	17.173*
	중소도시	83.4	10.5	4.5	0.8	0.8	16.6	100.0(3,022)	
	읍면지역	78.8	10.8	6.7	1.3	2.5	21.3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3.2	10.6	4.2	0.9	1.1	16.8	100.0(5,953)	17.69*
	한부모가정	80.4	11.3	6.3	0.8	1.2	19.6	100.0(571)	
	조손가정	78.8	7.0	10.2	0.0	4.1	21.3	100.0(46)	
	기타	87.2	6.2	6.6	0.0	0.0	12.8	100.0(100)	
학업 성적	상	84.2	10.8	3.2	0.9	1.0	15.9	100.0(1,739)	24.363**
	중	84.2	10.0	4.6	0.7	0.5	15.8	100.0(2,638)	
	하	80.9	10.9	5.3	1.0	2.0	19.2	100.0(2,295)	

* $p < 0.05$, ** $p < 0.0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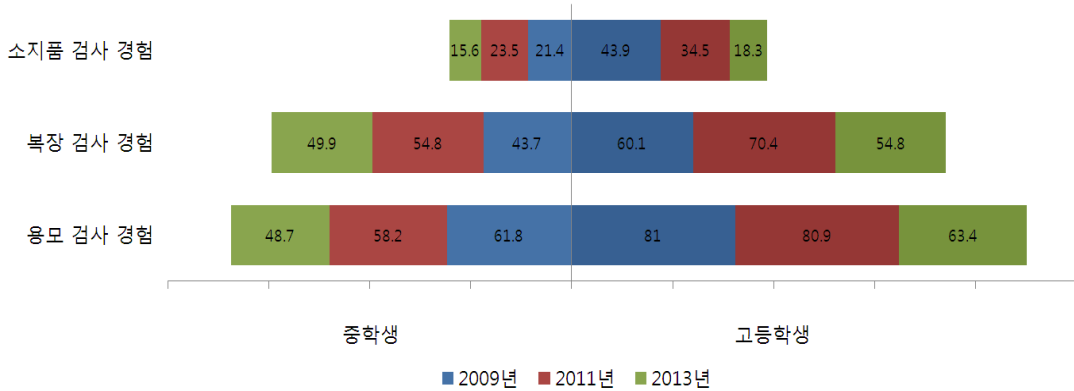
2009년, 2011년, 2013년의 추이를 보면,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표 Ⅲ-2-32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단위 : %)

	연도	용모 검사 경험	복장 검사 경험	소지품 검사 경험
중학생	2009년	61.8	43.7	21.4
	2011년	58.2	54.8	23.5
	2013년	48.7	49.9	15.6
고등학생	2009년	81.0	60.1	43.9
	2011년	80.9	70.4	34.5
	2013년	63.4	54.8	18.3

* 주 : 1) 2009년의 경우, '아니오, 예'의 2척도에서, 2011년의 경우,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의 5척도로 변경, 2013년의 경우, 2011년과 동일.
2) 한 번이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 모두 포함. (용모, 복장, 소지품검사 문항 동일 적용)



【그림 Ⅲ-2-4】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② 학생 정보 보호

가.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 18.1%(그런 편이다 13.4%, 매우 그렇다 4.7%), ‘그렇지 않다’ 81.9%(그렇지 않은 편이다 24.0%, 전혀 그렇지 않다 57.9%)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변인별 응답률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20.0%)이 여학생(15.9%)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38.1%), 일반고(17.1%), 중학교(15.7%), 자율고(13.0%), 특목고(8.1%) 순으로, 학업성적(하 18.3%, 중 17.9%, 상 17.9%)과 경제적 수준(하 20.9%, 중 17.8%, 상 16.7%)이 낮을수록 교육비 미납 정보를

공개하는 경험의 많게 나타났다.

표 III-2-33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 공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57.9	24.0	13.4	4.7	100.0(6,659)	
성별	남자	57.2	22.8	14.6	5.4	100.0(3,491)	75.15***
	여자	58.7	25.4	12.0	3.9	100.0(3,168)	
세부 학교 유형	중학교	61.7	22.6	12.1	3.6	100.0(3,260)	52.229***
	일반고	56.4	26.5	12.7	4.4	100.0(2,444)	
	특성화고	36.2	25.7	25.7	12.4	100.0(609)	
	자율고	66.2	20.8	9.5	3.5	100.0(255)	
	특목고	82.9	9.0	6.2	1.9	100.0(92)	
학업 성적	상	61.3	20.8	12.6	5.3	100.0(1,739)	29.112**
	중	57.3	24.7	13.8	4.1	100.0(2,632)	
	하	55.9	25.8	13.4	4.9	100.0(2,280)	
경제적 수준	상	61.7	21.6	11.7	5.0	100.0(2,551)	22.434*
	중	56.4	25.7	14.2	3.6	100.0(2,618)	
	하	53.8	25.3	14.8	6.1	100.0(1,480)	

* $p<0.05$, ** $p<0.01$, *** $p<0.001$

나.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하는지’에 대해, ‘그렇다’ 31.5%(그런 편이다 22.9%, 매우 그렇다 8.6%), ‘그렇지 않다’ 68.5%(그렇지 않은 편이다 36.5%, 전혀 그렇지 않다 32.0%)의 응답율을 보여 징계받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고 있는 학교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33.5%)이 여학생(29.1%)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40.1%), 자율고(37.8%), 일반고(35.0%), 초등학교(30.9%), 중학교(27.6%), 특목고(16.6%)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6.5%), 중소도시(31.2%), 대도시(30.2%)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높은 경우(34.0%), 낮은 경우(30.5%), 중간인 경우(30.2%)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33.5%), 높은 경우(32.1%), 중간인 경우(29.6%) 순으로 징계처분 사항 공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4 징계받은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과 이름 공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32.0	36.5	22.9	8.6	100.0(9,490)	
성별	남자	32.6	33.9	23.2	10.3	100.0(4,965)	21.848*
	여자	31.4	39.5	22.4	6.7	100.0(4,525)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7	40.4	23.7	7.2	100.0(2,826)	44.114***
	중학교	38.4	34.0	20.6	7.0	100.0(3,266)	
	일반고	29.2	35.8	23.9	11.1	100.0(2,446)	
	특성화고	22.8	37.1	28.5	11.6	100.0(606)	
	자율고	28.7	33.5	21.9	15.9	100.0(255)	
	특목고	52.4	31.1	14.3	2.3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33.3	36.6	22.7	7.5	100.0(3,939)	53.252***
	중소도시	32.3	36.4	22.3	8.9	100.0(4,378)	
	읍면지역	26.6	36.9	25.4	11.1	100.0(1,173)	
학업 성적	상	30.8	35.2	24.6	9.4	100.0(2,848)	57.376***
	중	32.4	37.3	22.5	7.7	100.0(3,990)	
	하	32.6	36.9	21.4	9.1	100.0(2,636)	
경제적 수준	상	32.8	35.1	22.8	9.3	100.0(4,308)	34.252***
	중	31.8	38.5	22.5	7.1	100.0(3,520)	
	하	30.3	36.2	23.8	9.7	100.0(1,651)	

* $p<0.05$, *** $p<0.001$

다.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선생님이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하는지’에 대해 29.1%가 ‘그렇다(그런 편이다 20.8%, 매우 그렇다 8.3%)’, 71.0%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30.3%, 전혀 그렇지 않다 40.7%)’고 응답하여, 10명 중 3명의 학생은 개인성적이 친구들 앞에서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변인별 차이를 보면, 성별로는 남학생(29.7%)이 여학생(28.3%)보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43.5%), 중학교(35.5%), 일반계고(35.1%), 초등학교(12.4%)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읍면지역(34.8%), 중소도시(28.6%), 대도시(27.8%) 아동·청소년 순으로,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낮은 경우(33.0%), 높은 경우(29.0%), 중간인 경우(26.5%) 순으로,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33.7%), 중간인 경우(29.2%), 높은 경우(27.1%) 순으로 개인의 시험성적 공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5 개인의 시험 성적 공개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40.7	30.3	20.8	8.3	100.0(9,492)	
성별	남자	41.4	28.8	20.8	8.9	100.0(4,968)	32.053**
	여자	39.9	31.8	20.7	7.6	100.0(4,5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4	28.1	9.0	3.4	100.0(2,827)	33.51***
	중학교	35.6	28.9	24.8	10.7	100.0(3,265)	
	일반/특목/자율고	31.3	33.5	25.2	9.9	100.0(2,791)	
	특성화고	23.7	32.8	32.7	10.8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43.5	28.7	19.7	8.1	100.0(3,937)	26.41**
	중소도시	40.9	30.5	20.7	7.9	100.0(4,380)	
	읍면지역	30.5	34.7	24.6	10.2	100.0(1,175)	
학업 성적	상	41.9	29.1	20.8	8.2	100.0(2,847)	41.022***
	중	42.1	31.4	19.2	7.3	100.0(3,990)	
	하	37.3	29.7	23.1	9.9	100.0(2,639)	
경제적 수준	상	45.4	27.5	18.6	8.5	100.0(4,307)	19.518*
	중	37.9	32.9	21.4	7.8	100.0(3,523)	
	하	34.4	31.8	25.0	8.7	100.0(1,649)	

* $p < 0.05$, ** $p < 0.01$, *** $p < 0.001$

(2) 정책제언

사람은 사적인 생활의 비밀과 평온이 보장될 때 자존감을 느끼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16조에서는 사적인 생활의 비밀과 평온은 보호하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소년기는 특히 개인의 정체성과 독립성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자신만의 세계의 형성에 대한 환상과 열망이 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이런 자신만의 세계에 대한 침해에 대해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침해는 절제되어야 하며 사적인 비밀과 생활은 보호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인권조례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에 관한 권리를 비중 있게 다루어 보호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 서울학생인권조례, <http://www.st-rights.or.kr>).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인권지표는 크게 용모·복장·소지품 검사와 학생정보보호로 나누어져 있다. 조사결과를 보면 용모와 복장은 응답자의 50% 이상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고, 소지품의 경우는 17%가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2009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검사를 받은 청소년들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용모·복장·소지품과 관련한 청소년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용모·복장·소지품 검사를 받고 있어 사생활과 관련해 인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용모·복장·소지품과 관련한 교육적 차원의 지도는 필요하고 기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런 교육적 차원의 지도라는 이름하에 학생들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적 차원의 지도와 사생활 침해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학교별로 용모·복장·소지품·휴대품에 관한 규약을 학생 참여하에 만들 필요가 있다. 이 규약을 교사나 학부모가 일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학생들이 참여하여 동의하는 규약을 함께 만들어 운영해야 한다.

학생정보 보호와 관련한 인권지표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비 미납, 징계처분, 성적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응답률이 18.1%, 31.5%, 29.1%로 나타나 학교에서 여전히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학생정보보호에 관한 조례나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어 학교에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사생활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구성원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운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학생들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과 자세가 중요하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사생활에 대한 보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6) 정보접근권

(1) 지표의 현황

① 매체에 대한 접근

가. 매체 이용률

매체이용율은 아동·청소년이 정보 습득을 위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체를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율, SNS 이용율, 스마트폰 이용율, 독서율을 조사·분석하였다. 먼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은 대부분이 매일 인터넷을 접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2~3시간씩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10대와 20대로 나누어 살펴보면, 20대가 10대 보다 인터넷 사용을 자주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사용하고 있었다.

표 Ⅲ-2-36 인터넷 이용 빈도 및 주 평균 이용시간

		계(%)	하루에 1회 이상(%)	일주일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이상(%)	한 달에 1회 미만(%)	주평균 이용시간(시간)
2009	10대	100.0	96.7	3.3	—	—	10.8
	20대	100.0	91.3	8.7	—	—	18.6
2010	10대	100.0	97.3	2.7	—	0.0	12.4
	20대	100.0	96.8	3.2	—	—	19.4
2011	10대	100.0	97.8	2.2	0.1	0.0	13.2
	20대	100.0	98.5	1.5	—	0.0	20.4
2012	10대	100.0	97.6	2.4	0.0	0.0	14.1
	20대	100.0	98.5	1.4	0.0	0.0	21.7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31.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2012년 현재 10대 아동·청소년들은 97.6%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2.4%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어, 10대 아동·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평균으로 볼 때 10대 아동·청소년들은 14.1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2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98.5%가 하루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으며, 1.4%는 일주일에 1회 이상 이용하고 있어, 20대 청소년들 대부분이 하루에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 평균으로 볼 때 20대 아동·청소년들은 21.7시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 평균 3시간씩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2009년 이후로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 청소년 모두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9년에 10대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은 10.8시간이었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여 2012년에는 14.1시간으로 증가하였다. 20대 청소년의 경우에도 2009년에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이 18.6시간이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 21.7시간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37 SNS(Social Network Service) 이용률

(단위 : %)

		SNS 이용 ¹⁾ 현황(복수응답)				
		블로그 ²⁾	커뮤니티	미니홈피	프로필 기반 서비스 ³⁾	마이크로블로그 ⁴⁾
2010	초등학생	70.4	73.9	55.9	-	2.6
	중학생	95.5	61.3	82.0	-	12.2
	고등학생	94.1	59.4	95.6	-	18.0
	대학생	87.1	80.4	92.4	-	21.6
2011	초등학생	70.7	74.5	61.5	13.9	3.8
	중학생	92.1	63.5	82.0	11.6	13.2
	고등학생	94.3	61.4	94.3	11.5	17.9
	대학생	91.1	81.4	91.7	18.9	21.9
2012	초등학생	69.0	72.0	61.2	16.5	5.3
	중학생	90.6	62.5	81.2	13.1	13.8
	고등학생	92.6	59.7	93.3	13.6	18.7
	대학생	89.0	80.0	89.9	22.0	23.0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29.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 주 : 1) 최근 1년 이내 이용여부임

2)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

3) 나이, 학력 등 개인정보 및 사진, 친구목록 등이 프로필 페이지에 제공되어 이를 기반으로 인맥형성, 교류하는 서비스(페이스북 등)

4) 한 두 문장 정도의 짧은 메시지를 이용하여 여러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블로그의 한 종류(트위터, 미투데이 등)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률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공통적으로 블로그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 밖에 초등학생은 커뮤니티(72.0%)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반면, 중·고등학생들은 미니홈피(중학생 81.2%, 고등학생 93.3%)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커뮤니티(80.0%), 미니홈피(89.9%), 프로필 기반 서비스(22.0%), 마이크로블로그(23.0%) 등 모든 SNS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에 블로그, 커뮤니티, 미니홈피의 이용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프로필 기반 서비스와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청소년들 사이에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 이용을 선호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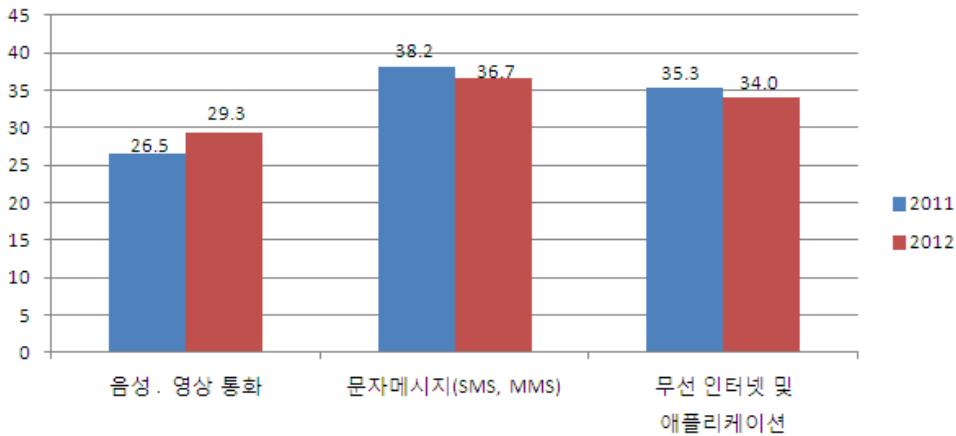
표 Ⅲ-2-38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단위 : %)

	이용률	이용 현황			
		계	음성·영상 통화	문자메시지(SMS, MMS)	무선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2011	40.0	100.0	26.5	38.2	35.3
2012	80.7	100.0	29.3	36.7	34.0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30.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Ⅲ-2-5】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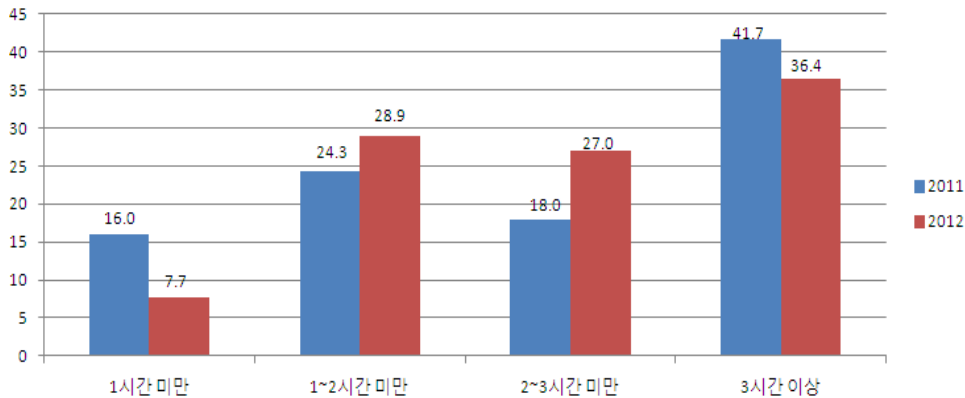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2012년 현재 80.7%로 10명중 8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40.0%)에 비해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은 2배로 증가하였다. 스마트폰을 통한 청소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문자메시지가 36.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무선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34.0%), 음성·영상 통화(29.3%)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에 비해서 문자메시지, 무선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감소한 반면, 음성·영상 통화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39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일)평균 이용시간(시간)	스마트폰 이용시간(%)				
		계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2011	2.7	100.0	16.0	24.3	18.0	41.7
2012	2.6	100.0	7.7	28.9	27.0	36.4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30.

* 원자료 : 미래창조과학부·한국인터넷진흥원(각년도), 인터넷이용실태조사



【그림 III-2-6】 청소년(12-19세) 스마트폰 이용시간

12~19세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은 2012년 현재 하루 평균 2.6시간으로 2011년(2.7시간)에 비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 이용시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3시간 이상 장시간 이용한 청소년은 36.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1-2시간 미만(28.9%), 2-3시간 미만(27.0%), 1시간 미만(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의 스마트폰 이용시간과 비교해 보면, 1시간 미만과 3시간 이상 이용한 비율은 감소했지만, 1-2시간 미만과 2-3시간 미만 이용한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3시간 이용 비율의 증가가 높았는데, 2011년에 18.0%에서 2012년에는 27.0%로 9.0%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들의 일반도서 독서율을 살펴보면, 지난 1년간 1권 이상 책을 읽은 비율인 독서율은 2011년에 83.8%로 나타났다. 청소년 독서율은 성인 독서율 66.8%에 비해 높지만, 2010년의 청소년 독서율(92.3%)에 비하면 8.5%나 감소한 것이다. 2011년 청소년 독서율을 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가 93.8%, 중학생 79.3%, 고등학교 79.1%로 초등학교가 가장 높으며, 중·고등학생과 10%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사이에서 스마트폰 이용이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독서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0 학생-성인 독서율

(단위 : %)

구분 \ 년도		2010	2011
학생	성인	65.4	66.8
	소계	92.3	83.8
	초등학생	97.6	93.8
	중학생	86.9	79.3
	고등학생	89.8	79.1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1, 2012). 국민독서실태 조사. p.32.

나. 유해매체 이용률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이용한 경험이 있는 비율을 말하는 생애경험률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표 III-2-41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사례수*(명)	매체 이용 경험(%)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	휴대폰 성인물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초등학생 (5-6학년)	1,514	3.6	2.6	5.7	5.2	4.7	2.3	6.4	17.9	-
중·고등학생	15,487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위기청소년	1,351	76.3	59.6	47.5	51.8	71.6	31.0	40.8	55.3	8.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d).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p.160.

* 주 :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사례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위기청소년의 유해매체 생애경험률은 위기청소년이 모든 매체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성인용 게임 이용 비율(17.9%)이 가장 높았으며, 온라인 사행성 게임(6.4%),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5.7%),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5.2%)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컴퓨터 성인물(45.5%)과 성인용 간행물(40.0%) 이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성인용 게임(32.3%), 성인용 영상물(27.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도 성인용 간행물(76.3%)과 컴퓨터 성인물(71.6%)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성인용 영상물(59.6%), 성인용 게임(55.3%) 등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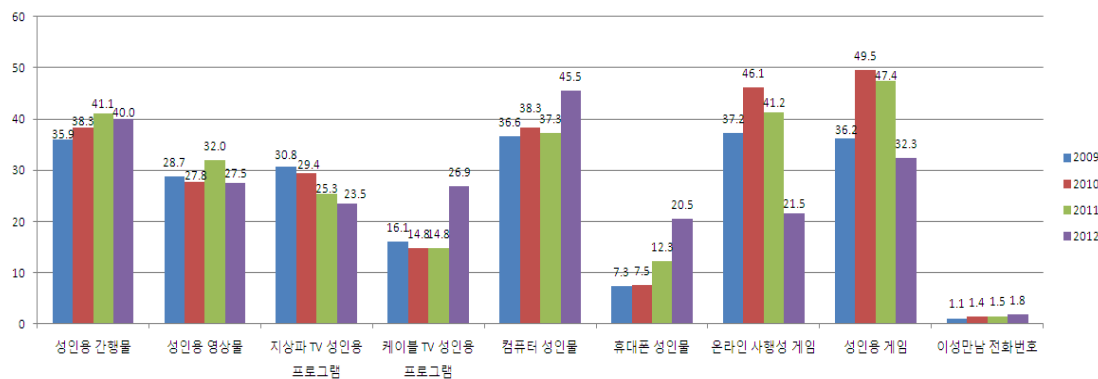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인용 게임을 통한 유해매체 접촉이 가장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나 위기청소년의 경우에는 컴퓨터와 간행물을 통한 유해매체 접촉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2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변화추이

	사례수* (명)	매체 이용 경험(%)								
		성인용 간행물	성인용 영상물	지상파TV 성인용 프로그램	케이블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용	휴대폰 성인용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이성만남 전화번호
2009	15,225	35.9	28.7	30.8	16.1	36.6	7.3	37.2	36.2	1.1
2010	16,572	38.3	27.8	29.4	14.8	38.3	7.5	46.1	49.5	1.4
2011	15,954	41.1	32.0	25.3	14.8	37.3	12.3	41.2	47.4	1.5
2012	15,487	40.0	27.5	23.5	26.9	45.5	20.5	21.5	32.3	1.8

* 출처 : 여성가족부(2012d).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p.38.

* 주 : 무응답을 포함한 전체 사례수



【그림 III-2-7】 유해매체 이용 생애경험률 변화추이(2009~2012)

한편, 지난 4년간(2009-2012년) 중·고등학교의 아동·청소년의 유해매체 이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휴대폰 성인물 경험률,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 컴퓨터 성인물이 증가한 반면, 온라인 사행성 게임, 성인용 게임,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 등의 경험률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휴대폰 성인물의 경우에는 유해매체 생애 경험률이 2009년에 7.3%에서 2012년에 20.5%로 2009년 대비 180.8% 증가하였고, 케이블 TV 성인용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2009년에 16.1%에서 2012년에 26.9%로 2009년 대비 67.1% 증가하였으며, 컴퓨터 성인물의 경우에는 2009년에 36.6%에서 2012년에 45.5%로 2009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온라인 사행성 게임은 유애매체 생애경험률이 2009년에 37.2%에서 2012년에 21.5%로 2009년 대비 42.2% 감소하였고, 성인용 게임은 2009년 36.2%에서 2012년 32.3%로 2009년 대비 10.8% 감소하였으며, 지상파 TV 성인용 프로그램은 2009년 30.8%에서 2012년 23.5%로 2009년 대비 2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 여전히 간행물을 통한 성인물 접촉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에 휴대폰, 케이블 TV 프로그램, 컴퓨터 등을 통한 성인물 접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케이블 TV나 휴대폰을 통한 성인물 접촉 증가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 아동·청소년 도서발행 비율

아동·청소년들에게 도서는 지적 발달은 물론 정신적 건강의 향상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매체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유익한 도서의 발행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납본된 도서를 기준으로 대한출판문화협회에서 집계하는 출판통계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아동·청소년도서는 전체 발행 도서 중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해 오고 있다. 2012년에 아동·청소년도서의 신간 발행 종수 점유율은 18.9%로 문학(2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으며, 신간 발행 부수는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2-43 총 신간 발행 수 대비 아동 신간 발행 수

구분	신간 발행 종수(종)				신간 발행 부수(부)			
	2010년	2011년	2012년	점유율(%)	2010년	2011년	2012년	점유율(%)
총계	40,291	44,036	39,767	100.0	106,309,626	109,550,227	86,906,643	100.0
아동	7,352	9,546	7,495	18.9	26,199,626	37,705,148	26,537,234	30.5

* 출처: 대한출판문화협회(2011, 2012). 「출판통계」 재구성. p.1.

하지만 지난 3년간 아동·청소년 도서의 발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에는 2010년에 비해 신간 발행 종수와 신간 발행 부수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2010년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아동·청소년도서의 감소폭(-21.5%)이 학습참고서의 감소폭(-36.1%) 다음으로 가장 컸는데, 신생아 출산율 저하와 아동인구의 감소로 아동용 대형기획물(전집)의 발행이 위축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한출판문화협회, 2012). 그렇지만 2011년의 아동·청소년분야의 신간 발행 종수가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도 학부모 성향에 따른 아동·청소년용 전집 도서의 발생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임희진, 김현산, 2012: 146), 매년 전집 도서의 발행 여부에 따라서 아동·청소년

도서의 발행 수가 크게 변동하고 있어서 부모의 선호보다는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을 먼저 고려하는 방향에서의 도서 발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② 알권리

가.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규칙 공지 정도

학교규칙은 학교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으로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의 규정과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공지할 의무를 가진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III-2-44 학교규칙 공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8	11.5	54.4	25.3	100.0(9,4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	6.1	45.1	42.6	100.0(2,815)	32.305***
	중학교	11.4	12.8	55.3	20.5	100.0(3,266)	
	일반/특목/자율고	7.5	14.1	62.2	16.2	100.0(2,795)	
	특성화고	12.2	17.4	56.8	13.6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1	11.0	54.5	26.4	100.0(3,933)	52.691***
	중소도시	9.4	11.8	53.4	25.4	100.0(4,380)	
	읍면지역	8.4	12.0	57.9	21.7	100.0(1,172)	

*** $p < 0.001$

학교에서의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의 공지 정도에 대해서 89.7%가 긍정적으로(‘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응답하였으며, 20.3%는 부정적으로(‘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의 내용에 대해서 공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규칙을 공지한 정도는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87.7%)에 대한 공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특성화 고등학생(70.4%)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80.9%)에 대한 공지 정도가 가장 높았고, 읍면지역 학생(79.6%), 중소도시 지역 학생(7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나 대도시 지역의 학교일수록 학교규칙 및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공지가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 제공 정도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얼마나 제공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III-2-45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단위 : %(명))

구분		아니다	그렇다	전체(N)	χ^2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65.5	34.5	100.0(2,825)	93.692***
	중학교	79.2	20.8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83.2	16.8	100.0(2,797)	
	특성화고	81.2	18.8	100.0(610)	
	소계	76.4	23.6	100.0(9,507)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80.6	19.4	100.0(2,822)	709.217***
	중학교	88.3	11.7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90.3	9.7	100.0(2,797)	
	특성화고	89.0	11.0	100.0(610)	
	소계	86.7	13.3	100.0(9,504)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초등학교	31.3	68.7	100.0(2,824)	76.091***
	중학교	80.8	19.2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77.7	22.3	100.0(2,798)	
	특성화고	82.1	17.9	100.0(610)	
	소계	65.3	34.7	100.0(9,507)	

*** $p < 0.001$

조사 결과,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23.6%만이 제공받고 있었고,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자료는 13.3%만 제공받고 있었으며, 권리 침해시 상담·구제 관련 정보는 34.7%만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1~3명 정도만이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고 대부분 정보를 제공받은 경험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정책 및 인권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은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에 청소년 관련 정책,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 자료, 권리 침해 시 상담 구제받는 방법 모두에 대해서 중·고등학생들에 비해서 정보를 많이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아동·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2~3시간 정도씩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휴대폰 이용의 증가는 정보사회에서 요청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지만, 이와 함께 유해한 매체에의 접근 위험성도 높이고 있다. 최근 컴퓨터, 휴대폰 사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성인물의 접촉이 증가하는 것도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들의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사용의 증가는 청소년 독서를 하락과도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의하면, 컴퓨터, 인터넷, 휴대전화 이용으로 인한 시간 부족(18.2%)이 책 읽는 습관이 들지 않아서(24.9%), 학교나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21.7%) 다음으로 청소년들의 독서 장애 요인의 세 번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비중은 2008년 이후에 매년 증가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1: 46). 한편,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 규칙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지되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나,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권 및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서 대부분의 아동·청소년들이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정책이나 유엔아동권리협약, 권리침해 시 상담 또는 구제받는 방법 등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고, 유익한 매체의 이용을 확대하며, 아동·청소년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권 및 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을 유해한 매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유해정보 접속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동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의 개발은 정부뿐만 아니라 컴퓨터 및 스마트폰 판매업자,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등에게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정보 제공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김경준·김희진·성윤숙, 2012: 148-149). 또한 엑스키퍼, 안심, 스마트보안관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유해정보 차단 프로그램이 상당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각 학교의 가정통신문이나 학교사이트, 각 지역의 청소년시설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 유치원, 각급 학교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체활용 지침서의 개발과 동시에 학부모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매체활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습관화되기 전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치원 시기 등 어릴 때부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흥미롭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잘 구성해야 한다. 셋째, 기업들의 아동·청소년

에 대한 책임성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유해한 매체에 대해 자율적인 규제를 실시하는 우수 기업들에게 아동·청소년 친환경 그린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외, 2012: 149-150). 넷째,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별 레저·스포츠 및 체험활동 등의 개발을 통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사용보다 스포츠나 체험활동을 선호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놀이문화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릴 때부터 한 명의 아동·청소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나 체험활동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아동·청소년들이 한 가지 이상의 특기를 가지게 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형성하게 하고 건전한 생활태도를 가져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들의 아동·청소년 정책 및 인권과 관련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초·중·고에 아동·청소년 인권 및 정책에 관한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사진전, 박람회, 연극제, 영화제 등 각종 이벤트를 기획·운영하여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인권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교원들의 학생 인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청 단위에서 교원 대상의 연수를 실시하고, 이를 각 학교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제37조 가, 제28조 2항)

(1) 지표의 현황

① 체벌

가. 체벌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아동·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학교, 학원에서의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학교 교사에 의한 체벌,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을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0.6%,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9.8%,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13.4%로,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6 최근 1년간 체벌 받은 경험 정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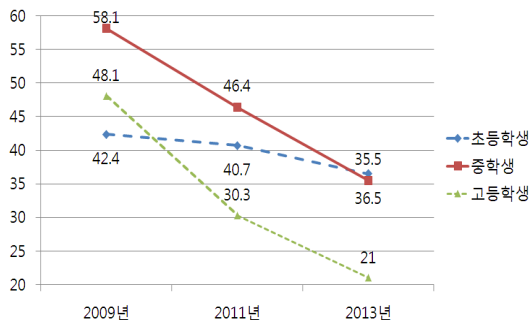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체벌	전체		69.4	22.3	6.1	1.5	0.7	100.0(9,492)	13.2
	성별	남자	68.7	22.4	6.3	1.6	1.0	100.0(4,974)	
		여자	70.1	22.2	5.8	1.4	0.5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63.5	24.2	8.7	2.4	1.1	100.0(2,821)	294.851***
		중학교	64.5	25.6	7.4	1.8	0.8	100.0(3,270)	
		일반/특목/자율고	79.0	17.5	2.6	0.5	0.4	100.0(2,793)	
	학업 성적	특성화고	78.9	17.2	2.5	1.1	0.3	100.0(609)	589.814***
		상	72.9	14.0	8.0	2.9	2.3	100.0(2,844)	
		중	72.1	13.6	8.6	4.2	1.5	100.0(3,986)	
		하	64.6	15.3	11.0	5.6	3.5	100.0(2,640)	
교사에 의한 체벌	전체		70.2	14.2	9.0	4.2	2.3	100.0(9,488)	63.614***
	성별	남자	62.3	15.8	12.6	5.9	3.4	100.0(4,969)	
		여자	78.9	12.5	5.1	2.4	1.1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81.9	9.2	4.7	2.8	1.3	100.0(2,821)	160.69***
		중학교	64.3	16.6	10.5	5.8	2.8	100.0(3,267)	
		일반/특목/자율고	66.4	16.3	11.3	3.3	2.6	100.0(2,790)	
	학업 성적	특성화고	65.6	14.8	10.7	5.9	3.0	100.0(610)	1725.613***
		상	75.2	12.7	5.8	3.2	3.0	100.0(2,846)	
		중	76.0	11.9	6.7	3.2	2.2	100.0(3,979)	
		하	65.3	16.1	9.5	5.3	3.7	100.0(2,634)	
학원교 사에 의한 체벌	전체		86.6	5.3	4.0	2.6	1.5	100.0(8,976)	165.64***
	성별	남자	83.4	6.1	5.1	3.1	2.2	100.0(4,696)	
		여자	90.0	4.5	2.8	2.0	0.7	100.0(4,281)	
	학교 유형	초등학교	86.5	6.1	3.5	2.4	1.5	100.0(2,756)	4.9
		중학교	79.7	7.1	6.7	4.1	2.4	100.0(3,128)	
		일반/특목/자율고	93.9	2.6	1.6	1.3	0.7	100.0(2,567)	
	학업 성적	특성화고	92.2	3.8	2.7	0.8	0.6	100.0(525)	41.842***
		상	86.0	5.7	4.0	2.8	1.6	100.0(2,714)	
		중	86.8	5.5	4.0	2.3	1.3	100.0(3,806)	
		하	86.7	4.7	4.0	2.8	1.7	100.0(2,439)	

*** $p < 0.001$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교생이 36.5%, 중학생이 35.5%, 일반계 고등학생이 21.0%, 특성화 고등학생이 21.1%로, 가정에서 나이가 어릴수록 체벌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유형별로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경우에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8.7%, 중학생의 경우에는 7.4%,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6%,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5%로, 고등학생에 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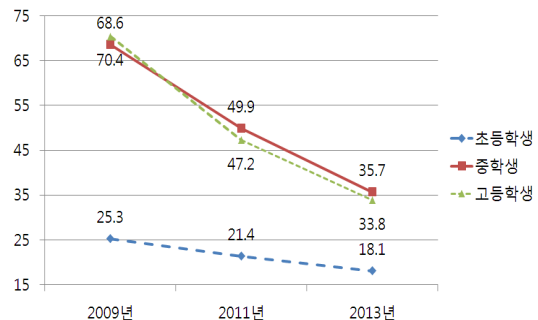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정에서 부모(보호자)에 의한 체벌을 3배 정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과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37.7%,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21.1%로, 학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훨씬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18.1%, 중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5.7%, 일반계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3.6%, 특성화 고등학생의 체벌 경험률이 34.4%로, 학교에서 교사에 의한 체벌은 중학생이 가장 많고, 초등학생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10%를 넘고 있어, 아직도 학교에서 잦은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원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은 성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6.6%, 여학생의 체벌 경험률은 10.0%로, 학원에서 교사들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 대한 처벌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벌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체벌을 받는다는 응답이 남학생은 5.1%, 여학생은 2.8%로, 남학생이 여학생의 2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2.4	40.7	36.5
중학생	58.1	46.4	35.5
고등학생	48.1	30.3	21.0

【그림 III-2-8】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25.3	21.4	18.1
중학생	68.6	49.9	35.7
고등학생	70.4	47.2	33.8

【그림 III-2-9】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 체벌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로 체벌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42.4%였으나 2011년에는 40.7%, 2013년에는 36.5%로 감소하였

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58.1%였던 것이 2011년에 46.4%, 2013년에는 35.5%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48.1%에서 2011년에는 30.3%, 2013년에는 21.0%로 크게 감소하였다.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25.3%였으나 2011년에는 21.4%, 2013년에는 18.1%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68.6%였던 것이 2011년에 49.9%, 2013년에는 35.7%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70.4%에서 2011년에는 47.2%, 2013년에는 33.8%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체벌은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 교사에 의한 청소년의 체벌은 2009년과 비교해 보면, 2013년 현재 과반수 이상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 학생에 대한 인권과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효과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에도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중·고등학생의 체벌이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보여진다.

② 정서적 학대

가.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도 체벌 경험률과 같이 부모 또는 보호자, 학교 교사, 학원 교사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에 대한 조사 결과,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33.1%,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7.3%,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12.4%로, 10명 중 3명의 아동·청소년은 부모(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나 보호자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4.6%)이 여학생(33.6%)보다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었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9.0%), 일반계 고등학생(35.8%), 특성화 고등학생(33.2%), 초등학생(26.9%)의 순으로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욕적인 말·욕설 빈도를 살펴보면, 한 달에 1~2회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다는 응답은 중학생이 10.2%, 일반계 고등학생이 10.7%로, 초등학생(6.9%)이나 특성화 고등학생(7.9%)에 비해 중학생이나 일반계 고등학생이 자주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는 것으로 나타나, 입시를 앞두고 있는 사춘기 연령대의 청소년에 대한 부모나 보호자의 반응이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로 표현되는 것으로 짐작하게 한다. 학업성적별로는 성적이 하(39.6%)인 경우에 상(31.9%)이나 중(31.9%)인 경우보다 부모(보호자)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많이 듣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은 성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47 최근 1년간 모욕적인 말·욕설을 들은 경험 정도

(단위: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정도	한 달에 1-2회정도	1주일에 1-2회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전체(N)	χ^2
부모에 의한 욕설	전체	65.9	18.0	9.2	3.9	3.0	100.0(9,491)	
	성별	남자	65.4	17.7	9.6	3.8	100.0(4,973)	414.696***
		여자	66.4	18.3	8.8	3.9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1	14.3	6.9	3.1	100.0(2,815)	57.965***
		중학교	61.0	20.3	10.2	4.7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64.2	19.5	10.7	3.2	100.0(2,793)	
		특성화고	66.8	15.9	7.9	6.2	100.0(609)	
	학업 성적	상	68.1	17.1	8.4	3.7	100.0(2,847)	101.014***
		중	68.1	17.7	8.6	3.3	100.0(3,984)	
		하	60.4	19.2	11.0	4.9	100.0(2,643)	
학교 교사에 의한 욕설	전체	72.7	13.4	7.2	3.8	2.9	100.0(9,476)	
	성별	남자	69.4	13.1	8.8	4.6	100.0(4,966)	1003.306***
		여자	76.4	13.6	5.6	2.8	100.0(4,510)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2	7.1	2.7	1.6	100.0(2,813)	442.123***
		중학교	67.0	15.6	9.4	4.6	100.0(3,266)	
		일반/특목/자율고	66.3	16.6	9.0	4.4	100.0(2,788)	
		특성화고	66.2	15.5	8.6	6.4	100.0(609)	
	학업 성적	상	75.2	12.7	5.8	3.2	100.0(2,846)	1725.613***
		중	76.0	11.9	6.7	3.2	100.0(3,979)	
		하	65.3	16.1	9.5	5.3	100.0(2,634)	
학원교 사에 의한 욕설	전체	87.6	5.7	3.2	2.0	1.5	100.0(8,972)	
	성별	남자	86.3	5.7	3.6	2.4	100.0(4,696)	1821.477***
		여자	89.0	5.6	2.8	1.6	100.0(4,276)	
	학교 유형	초등학교	88.8	5.6	2.7	1.5	100.0(2,754)	159.834***
		중학교	82.1	7.6	4.9	3.3	100.0(3,127)	
		일반/특목/자율고	91.8	3.9	2.1	1.3	100.0(2,565)	
		특성화고	94.2	2.6	1.5	0.7	100.0(526)	
	학업 성적	상	87.7	5.9	2.8	1.9	100.0(2,713)	13.78*
		중	87.4	5.6	3.6	2.1	100.0(3,806)	
		하	87.8	5.5	3.1	2.1	100.0(2,436)	

* $p<0.05$, *** $p<0.001$

학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학업성적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30.6%)이 여학생(33.6%)보다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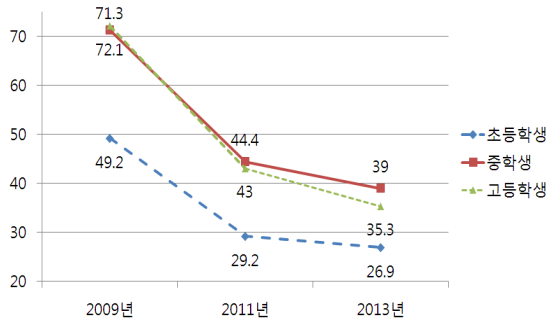
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33.8%), 일반계 고등학생(33.7%), 중학생(33.0%), 초등학생(12.8%)의 순으로, 초등학생에 비해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훨씬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인 하(34.7%)인 경우에 상(24.8%)이나 중(24.0%)인 경우에 비해서 학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3.7%)이 여학생(11.0%)보다 학원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욕설을 많이 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17.9%)이 모욕적인 말·욕설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초등학생(11.2%), 일반계 고등학생(8.2%), 특성화 고등학생(5.8%)의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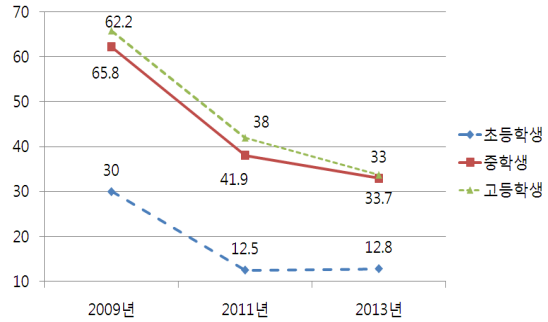
한편, 2009년, 2011년, 2013년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로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 또는 보호자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009년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9년에 초등학생이 49.2%였으나 2011년에는 29.2%, 2013년에는 26.9%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71.3%였던 것이 2011년에 44.4%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다시 39.0%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72.1%에서 2011년에는 43.0%로 크게 감소하였고, 2013년에는 35.3%로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도 2009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과 다르게 2011년 이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은 2009년에 초등학생이 30.0%였으나 2011년에는 12.5%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12.8%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62.2%에서 2011년에 38.0%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33.0%로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65.8%에서 2011년에는 41.9%, 2013년에는 33.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모욕적인 말·욕설도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도 아동·청소년들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체벌과 마찬가지로 아직도 30%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보호자)나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듣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들은 경우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언어폭력의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49.2	29.2	26.9
중학생	71.3	44.4	39.0
고등학생	72.1	43.0	35.3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30.0	12.5	12.8
중학생	62.2	41.9	33.0
고등학생	65.8	41.9	33.7

【그림 Ⅲ-2-10】 부모로부터 모욕적인 말
· 욕설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림 Ⅲ-2-11】 교사로부터 모욕적인 말
· 욕설 경험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③ 청소년 폭력

가. 폭력피해 경험

이 지표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피해 생애 경험률과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률(심한 욕설이나 모욕, 폭행이나 구타, 따돌림, 돈이나 물건 갈취, 협박, 성희롱이나 추행)을 분석하였다.

중·고등학생들의 폭력피해 생애경험률은 11.4%로, 10명중 1명이 폭력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9.7%, 여학생이 13.4%로 여학생들의 피해가 많으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12.9%, 고등학생이 10.1%로 중학생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2학년(13.5%)의 피해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중학교 1학년(13.1%), 중학교 3학년(12.0%), 고등학교 1학년(11.8%), 고등학교 2학년(10.0%), 고등학교 3학년(8.3%)의 순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폭력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8 폭력 피해 생애경험률

		폭력 피해 경험(%)		사례수(명)
		있다	없다	
전 체		11.4	88.6	15,382
성 별	남자	9.7	90.3	8,140
	여자	13.4	86.6	7,242
교 급	중학생	12.9	87.1	7,558
	고교생	10.1	89.9	7,824
학 년	중1	13.1	86.9	2,549
	중2	13.5	86.5	2,485
	중3	12.0	88.0	2,524
	고1	11.8	88.2	2,596
	고2	10.0	90.0	2,916
	고3	8.3	91.7	2,3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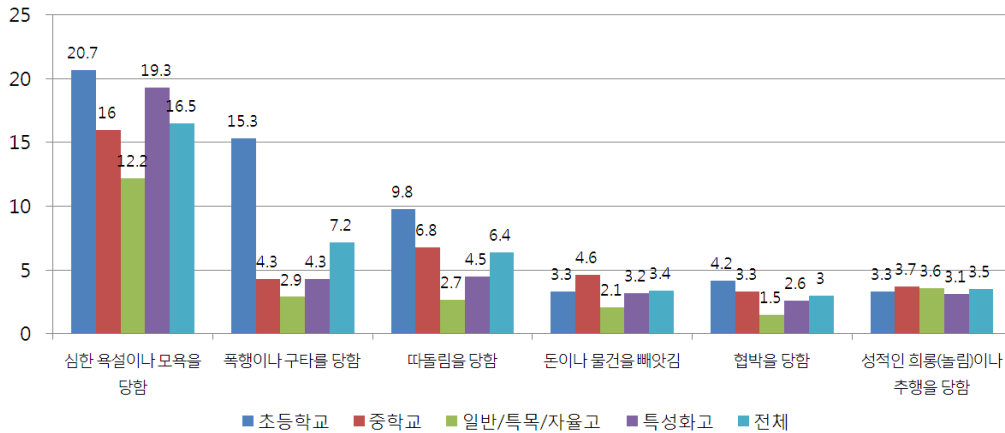
* 출처 : 여성가족부(2012d).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p.102.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경험한 폭력피해 경험률은 학교 내 폭력 유형 중에서 심한 욕설이나 모욕이 1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폭행이나 구타(7.2%), 따돌림(6.4%),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3.5%), 돈이나 물건 갈취(3.4%), 협박(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은 다른 폭력 유형으로 인한 피해에 비해서 최소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청소년폭력 유형 중에서 언어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49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특목/ 자율고	특성화고	전체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0.7	16.0	12.2	19.3	16.5(9,513)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15.3	4.3	2.9	4.3	7.2(9,511)
따돌림을 당함	9.8	6.8	2.7	4.5	6.4(9,510)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3.3	4.6	2.1	3.2	3.4(9,509)
협박을 당함	4.2	3.3	1.5	2.6	3.0(9,512)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3.3	3.7	3.6	3.1	3.5(9,5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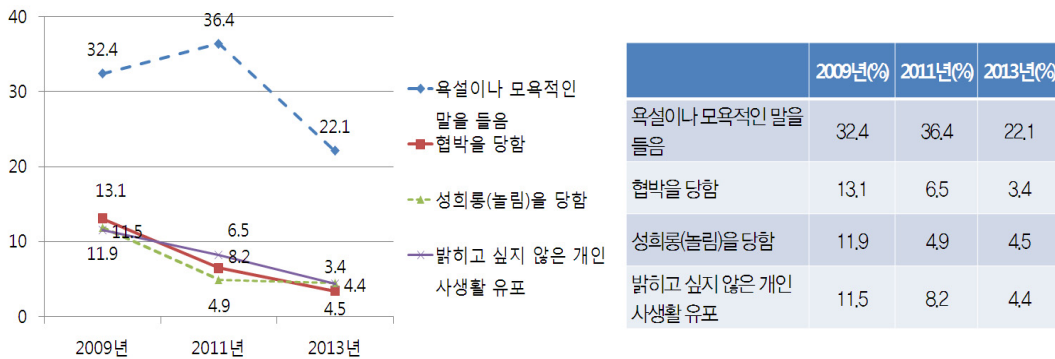
【그림 III-2-12】 학교 내 선·후배, 친구로부터의 폭력 피해 경험

학교 내 폭력피해 경험을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육설이나 모욕(20.7%), 폭행이나 구타(15.3%), 따돌림(9.8%), 돈이나 물건 갈취(3.4%)의 피해가 중·고등학생들보다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생의 폭행이나 구타 경험률은 15.3%로 중·고등학생의 피해경험(3~4%)의 3배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9.8%), 돈이나 물건 갈취(3.3%), 협박(4.2%),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3.7%)에 대한 피해 경험이 고등학생에 비해서 많았고, 특히, 따돌림 피해 경험은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으나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 경험은 3.6%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는 심한 육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률이 19.3%로 중학생(16.0%)이나 일반계 고등학생(12.2%)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조사 결과에서 지난 1년간 초등학생의 학교 내 폭력 피해 경험이 가장 심각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0명 중 2명이 선후배나 친구로부터 심한 육설이나 모욕을 경험했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고,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폭력 피해 유형 중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심각했으며, 특성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심한 육설이나 모욕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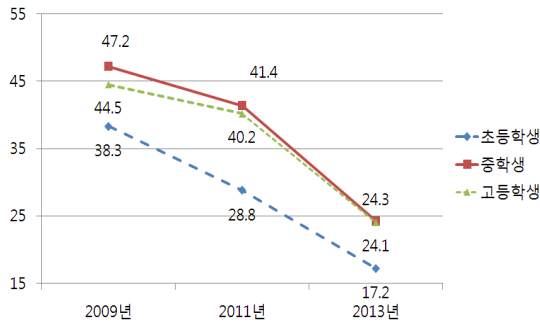
이 지표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채팅, 게시판 댓글 등 인터넷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 협박, 성희롱, 사생활 유포 등의 피해경험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13년도에 인터넷에서의 아동·청소년의 피해 경험은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22.1%), 협박(3.4%), 성희롱(4.5%), 사생활 유포(4.4%), 따돌림(2.4%)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2-13】 인터넷 상에서의 폭력 피해 경험(3개년 추이 : 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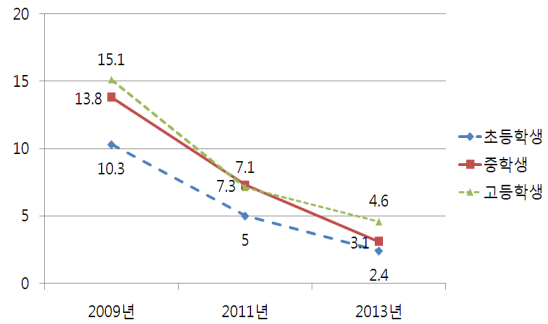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인터넷에서의 초·중·고등학생 전체의 피해경험의 비교를 통해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피해 경험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로 인한 피해는 2009년에 32.4%에서 2011년에 36.4%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22.1%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협박 피해 경험도 2009년에 13.1%였으나 2011년에는 6.5%, 그리고 2013년에는 3.4%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경험도 2009년에 11.9%에서 2011년에는 4.9%, 그리고 2013년에는 4.5%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 경험도 2009년에는 11.5%에서 2011년에 8.2%, 그리고 2013년에는 4.2%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상에서의 피해경험을 피해 유형별로 구분해서 학교급별로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38.3	28.8	17.2
중학생	47.2	41.4	24.3
고등학생	44.5	40.2	24.1

【그림 III-2-14】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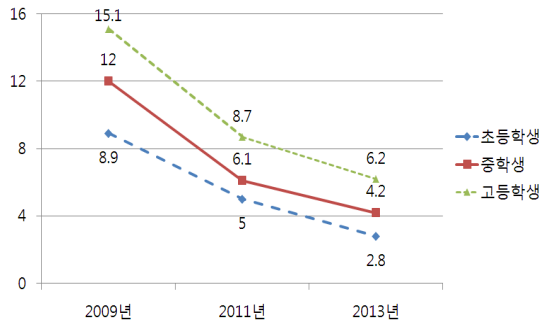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10.3	5.0	2.4
중학생	13.8	7.3	3.1
고등학생	15.1	7.1	4.6

【그림 III-2-15】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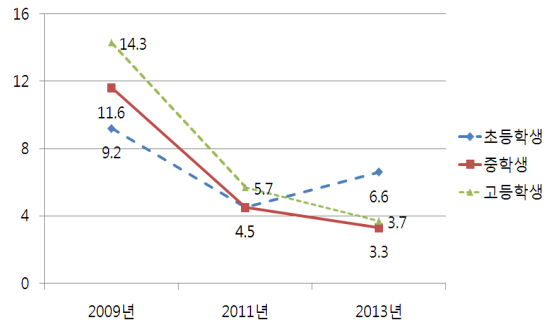
먼저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은 경험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조사가 실시된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38.3%에서 2011년에 28.8%, 그리고 2013년에는 17.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47.2%에서 2011년에 41.4%, 그리고 2013년에는 24.3%로 감소하였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44.5%에서 2011년에 40.2%, 그리고 2013년에는 24.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이 2009년 이후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생 모두 다른 유형의 피해에 비해서 여전히 피해경험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인터넷 상에서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상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은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10.3%에서 2011년에 5.0%로 절반 이상 감소하였고, 2013년에도 2.4%로 다시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3.8%에서 2011년에 7.3%로 감소하였고, 2013년에 다시 3.1%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15.1%에서 2011년에 7.1%, 그리고 2013년에는 4.6%로 감소하였다. 인터넷 상에서의 초·중·고등학생들의 협박에 대한 피해가 2009년 이후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8.9	5.0	2.8
중학생	12.0	6.1	4.2
고등학생	15.1	8.7	6.2

【그림 III-2-16】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9년(%)	2011년(%)	2013년(%)
초등학생	9.2	4.5	6.6
중학생	11.6	4.5	3.3
고등학생	14.3	5.7	3.7

【그림 III-2-17】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인터넷 상에서 성희롱(놀림)을 당한 경험도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 이후로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8.9%에서 2011년에는 5.0%, 그리고 2013년에는 2.8%로 감소하였으며, 중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2.0%에서 2011년에 6.1%, 그리고 2013년에는 4.2%로 감소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는 15.1%에서 2011년에 8.7%, 그리고 2013년에는 6.2%로 감소하였다. 2009년 이후로 초·중·고등학생들의 성희롱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에도 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상에서의 성희롱 피해 경험이 6.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상에서 개인 사생활 유포를 당한 경험은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2011년에는 감소하다가 2013년에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는 11.6%에서 2011년에 4.5%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2013년에도 3.3%로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2009년에 14.3%에서 2011년에 5.7%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13년에는 3.7%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에 9.2%에서 2011년에는 4.5%로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6.6%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상에서의 사생활 유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정책제언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기타 국제 인권문서들은 “아동의 존엄성과 신체적 완전성의 존중 및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신체적 처벌을 비롯한 모든 폭력으로부터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153). 특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아동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체벌 등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와 함께 전면적인 금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은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가정이나 학교에서 아동·청소년들의 10명 중 3명은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가정이나 학교보다는 덜하지만 학원에서도 10명 중 1명은 체벌을 경험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동에 대한 체벌이 사라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벌은 학업성과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체벌을 많이 당하고 있어서 교육적 성과로 인한 아동 사이의 차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정, 학교,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폭력 피해 중에는 심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등이 행해지는 언어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체벌,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등 각종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하지만 청소년폭력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행위 주체들 간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 개선을 위한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이나 폭력이 인권 침해라는 인식을 명확히 하고 캠페인이나 교육 등을 통해서 이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체벌은 허용될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 곳곳에 남아 있어서 아직까지도 가정이나 학교, 그리고 사회교육기관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체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아동·청소년 체벌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체벌 금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부모나 교사, 학생들의 폭력적인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언어폭력이 폭력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욕설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욕설 예방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 언어폭력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들로 하여금 영화, 연극, 토론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게 지원함으로써 언어문화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도 다양한 언어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수 사례가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공간에서의 아동·청소년들의 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사이버 폭력 피해에 대해서 상담하고 신속히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폭력 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악성댓글, 음란사이트,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 않았다.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해서 수시로 상담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나 지자체 단위에 센터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외, 2012).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¹⁹⁾

1) 부모의 지도와 책임

(1) 지표의 현황

① 보호시설

가.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는 <표 III-3-1>에 제시되어 있다. 여성가족부(2012a)가 평일 방과후 부모님이나 돌봐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아동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매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만 9-12세는 15.3%, 만 13-24세는 1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13.5%, 여학생이 16.4%로 여자 아동이 거의 매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 1-2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만 9-12세가 17.7%, 만 13-24세가 17.9%이고, 주 3-4일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경우는 만 9-12세가 11.3%, 만 13-24세가 9.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보호자가 없는 날이 거의 없는 아동은 만 9-12세가 55.7%, 만 13-24세는 57.7%였다.

19) 이 절은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김지혜 교수는 각 중분류 항목의 ‘(1) 지표의 현황’을, 정익중 교수는 ‘(2) 정책제언’을 집필함). 이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자료집(워크숍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표 III-3-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단위 : %)

구분	거의없다	1-2일	3-4일	거의매일
청소년 전체	57.1	17.8	10.1	15.0
만9-12세	55.7	17.7	11.3	15.3
만13-24세	57.7	17.9	9.6	14.8
남	58.3	17.8	10.4	13.5
여	55.9	17.9	9.8	16.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68.

나. 보육시설 수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을 설립주체별로 구분하여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각종 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직장 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가정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부모협동 어린이집, 위 어린이집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보건복지부, 2012c). 각 보육시설의 설립주체별로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2>와 같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총 42,52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가정 어린이집이 22,935개소(5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 어린이집 14,440개소(34.0%), 국·공립 어린이집 2,203개소(5.2%),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444개소(3.4%), 법인·단체 어린이집 869개소(2.0%), 직장 어린이집 523개소(1.2%), 부모협동 어린이집 113개소(0.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연도별 어린이집 설치·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해마다 어린이집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정어린이집이 2003년 8,933개소에서 2012년 22,935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2 어린이집 연도별 설치·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03	1,329	1,632	787	11,225	8,933	미분류	236	24,142
2004	1,349	1,537	966	12,225	10,583	미분류	243	26,903
2005	1,473	1,495	979	12,769	11,346	42	263	28,367
2006	1,643	1,475	1,066	12,864	11,828	59	298	29,233
2007	1,748	1,460	1,002	13,081	13,184	61	320	30,856
2008	1,826	1,458	969	13,306	15,525	65	350	33,499
2009	1,917	1,470	935	13,433	17,359	66	370	35,550
2010	2,034	1,468	888	13,789	19,367	74	401	38,021
2011	2,116	1,462	870	14,134	20,722	89	449	39,842
2012	2,203	1,444	869	14,440	22,935	113	523	42,527

* 출처 : 보건복지부(2012c), 보육통계, p.2.

다.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를 설립주체별로 구분한 현황은 <표 III-3-3>과 같다. 2012년 현재 보육시설에 재원하고 있는 총 아동 수는 1,487,361명이며, 민간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이 768,256명(51.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 어린이집 371,671명(25.0%), 국·공립 어린이집 149,677명(10.0%),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113,049명(7.6%), 법인·단체 어린이집 51,914명(3.5%), 직장 어린이집 29,881명(2.0%), 부모협동 어린이집 2,913명(0.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3 어린이집 재원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2003	103,474	140,994	37,911	461,640	103,935	미분류	10,391	858,345
2004	107,335	135,531	48,414	507,398	119,787	미분류	11,787	930,252
2005	111,911	125,820	56,374	552,360	129,007	933	12,985	989,390
2006	114,657	120,551	58,808	582,329	148,240	1,238	14,538	1,040,361
2007	119,141	118,211	55,906	612,484	177,623	1,444	15,124	1,099,933
2008	123,405	113,894	53,818	615,647	210,438	1,491	16,809	1,135,502
2009	129,656	112,338	52,718	623,045	236,843	1,655	18,794	1,175,049
2010	137,604	114,054	51,126	671,891	281,436	1,898	21,901	1,279,910
2011	143,035	112,688	50,676	706,647	308,410	2,286	24,987	1,348,729
2012	149,677	113,049	51,914	768,256	371,671	2,913	29,881	1,487,361

* 출처 : 보건복지부(2012c), 보육통계, p.3.

라.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는 특수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들의 현황을 나타낸 지표로 <표 III-3-4>와 같다. 특수 어린이집은 부모나 아동의 특성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으로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2004년 이전 영아전담어린이집으로 지정받았거나 국고보조금으로 영아전담 신축비를 지원받은 어린이집이고,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32조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상시 12명 이상의 장애아(단, 미취학 장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정원의 20%내에서 장애아 종일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거나 장애아 종일반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은 채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통합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이며,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시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어린이집이고, 24시간 어린이집은 24시간동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 또한 휴일 어린이집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며, 방과후 어린이집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다(보건복지부, 2012c).

표 III-3-4 특수보육어린이집 일반 현황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총계
영아전담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57	220	21	277	54	-	-	629
	아동(명)	아동정원	2,841	14,105	837	11,556	1,060	-	-	30,399
		영아아동현원	2,603	10,768	753	10,332	1,041	-	-	25,497
	보육교직원(명)	영아반보육교사	489	1,875	148	1,953	220	-	-	4,685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34	100	7	28	2	-	-	171
	아동(명)	아동정원	1,311	5,409	328	1,090	40	-	-	8,178
		장애아동현원	1,040	3,845	260	813	36	-	-	5,994
	보육교직원(명)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440	1,629	108	337	13	-	-	2,527
장애아통합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527	43	42	195	26	1	2	836
	아동(명)	아동정원	49,854	4,833	3,769	17,802	491	37	138	76,924
		장애아동현원	2,470	165	201	672	46	3	8	3,565
	보육교직원(명)	장애아반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911	63	68	230	9	1	3	1,285

구분			설립주체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총계
방과후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87	69	103	150	13	1	4	427
	아동(명)	아동정원	7,608	7,505	5,534	12,834	244	122	544	34,391
		방과후 아동현원	1,605	630	2,171	1,375	29	-	65	5,875
	보육교직원(명)	방과후 보육교사	90	22	86	62	-	-	3	263
시간연장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1,177	359	182	2,590	3,760	6	90	8,164
	아동(명)	아동정원	92,428	35,496	13,726	160,441	67,547	374	7,958	377,970
		시간연장 아동현원	5,272	1,838	1,080	15,014	15,470	52	561	39,287
	보육교직원(명)	시간연장 보육교사	859	246	149	2,181	2,458	6	96	5,995
휴일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138	41	14	59	28	-	7	287
	아동(명)	아동정원	11,815	4,429	1,293	3,169	518	-	549	21,773
		휴일 아동현원	74	143	114	208	33	-	-	572
	보육교직원(명)	휴일반 보육교사	173	101	48	153	36	-	11	522
24시간	어린이집(개소)	어린이집수	53	13	3	103	90	-	6	268
	아동(명)	아동정원	4,311	1,005	344	6,350	1,663	-	608	14,281
		24시간 아동현원	167	58	6	395	224	-	21	871
	보육교직원(명)	24시간 보육교사	54	20	3	129	103	-	5	314

* 출처 : 보건복지부(2012c). 보육통계. p.119.

2012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어린이집은 10,782개소이며, 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25.4%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8,164개소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836개소, 영아전담 어린이집 629개소, 방과후 어린이집 427개소, 휴일 어린이집 287개소, 24시간 어린이집 268개소,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171개소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민간 어린이집이 277개소(44.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220개소(35.0%)였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100개소(58.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34개소, 19.9%)이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27개소(6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많은 수는 민간 어린이집(195개소, 23.3%) 이었다. 방과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150개소(35.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법인·단체 어린이집(103개소, 24.1%)이었으며, 시간연장 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이 3,760개소(46.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2,590개소, 31.7%)이었다. 휴일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138개소(48.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민간어린이집(59개소, 20.6%)이고, 24시간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이 103개소(3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가정어린이집(90개소, 33.6%)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보육교사 대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의 현황은 <표 III-3-5>와 같다.

표 III-3-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 : 명)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보육아동 수	1,040,361	1,099,933	1,135,502	1,175,049	1,279,910	1,348,729	1,487,361
보육교사 수	104,320	120,963	139,060	150,477	166,937	180,247	284,237
교사 1인당 아동 수	10.0	9.1	8.2	7.8	7.7	7.5	5.2

* 출처 : 보건복지부(2012b), 보건복지통계연보 재구성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2012년 기준으로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2명인데, 이는 보육교사 284,237명이 1,487,361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는 결과이다. 2006년도에는 교사 1인당 아동 수가 10.0명이었으며, 매년 교사대 아동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보육의 질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바.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중에서 집에 보호자가 없거나 방과후에 특별활동을 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설치·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수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임희진·김현신, 2012: 182). 청소년 방과후 공적서비스는 방과후 학교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구분할 수 있는데, 방과후 학교는 학교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시설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

방과후 학교 참여실태는 <표 III-3-6>과 같다. 2012년 초·중·고등학생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비율은 57.6%이며, 학생 1인당 월평균 방과후학교 이용비용은 1만3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52.6%, 중학생은 49.4%, 고등학생은 77.1%이며, 1인당 월평균 이용 비용은 초등학생 1만 5천원, 중학생 4천원, 고등학생 2만 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방과후 학교 참여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일반고등학교가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을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임희진·김현신, 2012: 183). 이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가 맞벌이부모의 자녀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특기적성 교육을

받고자 하는 아동이 이용하는 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강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인권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등학생은 반대의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09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등학생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인권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증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저소득·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청소년들 중 학교 수업 후 나홀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에 대한 학습능력 배양과 적성교육 실시, 급식 지원, 건강관리, 상담 등 종합적인 학습과 복지 및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이다. 연도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7>과 같다. 2012년 현재 200개소에서 8,000여명의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인원은 2,300,000명이다. 2005년 처음 시작할 때에는 46개소였으며, 정부에서는 2017년까지 500개소로 증가시킨다는 목표치를 갖고 있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bbs=INDX_001&clas_div=A).

표 III-3-6 방과후 학교¹⁾ 참여 실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²⁾		계	
	참여율 ³⁾ (%)	비용 ⁴⁾ (만원)	참여율 ³⁾ (%)	비용 ⁴⁾ (만원)	참여율 ³⁾ (%)	비용 ⁴⁾ (만원)	참여율 ³⁾ (%)	비용 ⁴⁾ (만원)
2009	43.1	1.2	43.1	0.6	80.1	2.6	51.3	1.3
2010	45.0	1.3	50.0	0.7	84.6	2.8	55.6	1.4
2011	50.4	1.6	48.3	0.6	80.9	2.6	56.6	1.5
2012	52.6	1.5	49.4	0.4	77.1	2.2	57.6	1.3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5.2.), 2013 청소년 통계, p.22.

* 원자료 : 통계청(각 년도), 사교육비조사보고서

* 주 : 1) 방과후 초등 돌봄 프로그램, 특기·적성관련 프로그램, 교과 관련 프로그램이 포함

2) 일반고등학교임

3) 참여율은 무상+유상임

4)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금액임

표 III-3-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개소	46	100	151	185	178	171	200	200
지원인원(명)	2,350	4,200	6,300	7,680	7,245	6,700	8,000	8,000
연인원(명)	282,000	1,260,000	1,890,000	2,165,760	2,064,825	1,905,000	2,300,000	2,300,000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

② 부모와의 관계

가. 부모와의 대화시간

여성가족부(2012a)에서 2011년도에 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은 <표 III-3-8>과 같다. 먼저,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이 6.8%였으며, 30분 미만인 42.1%, 30분-1시간 미만인 21.7%, 1-2시간 미만인 11.3%, 2시간 이상이 1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은 전혀 하지 않는 청소년이 2.5%, 30분 미만인 22.4%, 30분-1시간 미만인 26.8%, 1-2시간 미만인 18.2%, 2시간 이상이 27.0%로 아버지에게 비해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9-12세에 비해 만 13-24세 청소년의 대화시간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3-8 부모와의 대화시간

(단위 : %)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미만	30분-1시간미만	1-2시간 미만	2시간이상	해당없음
아버지	청소년전체	6.8	42.1	21.7	11.3	12.6	5.5
	만9-12세	5.5	33.7	23.7	13.4	19.5	4.1
	만13-24세	7.2	44.8	21.0	10.7	10.4	5.9
어머니	청소년전체	2.5	22.4	26.8	18.2	27.0	3.1
	만9-12세	3.1	14.0	21.6	19.3	39.1	2.8
	만13-24세	2.3	25.1	28.4	17.9	23.1	3.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 정책제언

현재 보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저소득계층 영유아 대상의 선별적 서비스로 진행되던 보육정책이 점차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2012년 기준으로 약 7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정책이 국민으로부터 환영받기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 때문이다. 지나친 민간독점 공급체계를 건드리지 않고 보육예산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2012년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5.2%에 불과한데(표 III-3-2 참조), 이를 최소 30% 정도까지 끌어 올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공과 민간보육시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영아에 대한 보육시설과 장애아동 등을 위한

특수보육어린이집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어서 공공성 측면에서 이들 시설의 확충이 요청된다.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특수보육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25.4%에 해당한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간 연장 어린이집(75.7%)이고,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은 7.8%,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5.8%에 불과한 실정이다(표 III-34 참조). 다른 형태의 특수보육은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만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이를 확대하기보다 육아휴직 등을 통해 영유아가 부모의 돌봄 하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원조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일제 보육의 확실적인 확대보다는 일시적 보육 필요 발생 시 탄력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제 일시돌봄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 자녀가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서 보육시설에 보낼 수 없게 되거나 급한 일로 자녀를 돌보기 어렵게 되었을 때 자녀를 돌봐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미취학아동 대상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부모가 부담 없이 맡길 수 있도록 접근성이 높은 역세권에 영유아양육지원센터를 마련해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은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이 강화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특히 표준보육서비스(child care minimum)를 강력히 제도화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표준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어린이집을 통·폐합하여 부모가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개선시켜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자칫 미달 어린이집에 낭비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질 높은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을 것이다(오정수·정익중, 2013).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은 결국 보육교사의 질로 결정된다.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을 계기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하향 조정되어 2012년 기준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2명이고(표 III-35) 보육교직원(보육교사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관리체계가 강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여건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어린이집이 민간독점 공급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어린이집의 이윤창출을 위해서는 가능한 낮은 임금의 교사를 구해야 하고 보육교사 양성이 매우 다양하여 낮은 임금에도 일할 수 있는 예비인력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좋은 교사를 고용할 유인이 생기지 않는다.

2012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은 9시간 28분, 보수(수당 포함)는 월 155만원이었고, 2009년에 보육교사의 일일 근무 시간은 평균 9시간 53분, 보수(수당 포함)는 월 13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에 비해 2012년에 일일 근무 시간은 25분 줄어든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직종과 비교할 때에는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어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2012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보육교사

인력은 284,237명으로 1급 보육교사 비율이 49.2%, 2급이 42.2%이며 3급 교사가 8.6%이다. 직장어린이 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은 73.3% 이상이며, 법인, 법인 외, 부모협동 어린이 집도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이 62~67% 수준으로 높은 편이나,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의 1급 교사(원장 포함) 비율은 각각 54.7%, 54.4%에 불과하다(이미화·서문희·이정원·이정림·도남희·권미경 외, 2012). 돌봄의 질은 주로 제공인력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장시간 근무와 낮은 급여 수준 등 근무환경도 개선하여 보육교사가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고 유치원과 같이 보조교사, 종일제 교사 등 추가 인력 공급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도 교육 인력인 만큼 현행 최저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오정수·정익중, 2013).

보육서비스는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초등학교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는 아직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양극화로 인한 빈곤·방임의 확대, 이혼의 급증,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빈곤 맞벌이 가족의 증가 등 아동의 양육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해 일주일 동안 거의 매일 방과후 어른 없이 혼자 혹은 형제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만 9-12세는 15.3%, 13-24세는 14.8%로 나타나(여성가족부, 2011b), 방과후 방치 및 방임의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표 III-3-1 참조). 또한 빈곤층 아동의 경우에 저녁식사 후 아동이 혼자서 혹은 어른 없이 형제자매와 지내는 경우도 역시 6-8세 10.9%, 12-18세 30.1%로(이봉주·곽금주·구인회·김민화·김선숙·김지현 외, 2009), 빈곤층 가구 내 아동의 방과후 야간방임은 더욱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주·야간에 아동이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는 경우에 유괴는 물론 화재, 감전, 익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인의 보호 없이 홀로 집에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안전문제 뿐 아니라 과도한 인터넷 사용, 게임중독, 부적절한 TV시청, 무분별한 간식 등으로 공격적인 행동, 산만함, 학습결손,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 등 복합적인 문제가 노출되어 아동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정익중, 2011; 정익중·이정림, 2008).

그러나 아동의 야간방임 현황을 비롯한 야간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정확한 통계조차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아동복지법 내 이용시설로서 빈곤 및 맞벌이 가족의 자녀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부분적으로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 중 저녁 8시 이후 야간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센터가 2007년에 전체의 25.4%였으나, 2011년에는 54.6%로(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2012), 2배 이상 증가한 현상을 볼 때 빈곤 맞벌이 가족 내 아동의 야간보호 욕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의 방과후 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방과후 서비스는 발달단계별 지원체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방과후 서비스가 초등학생 위주의 사업내용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많아 청소년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이 적절히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호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게 될 때 발달단계에 맞는 지원체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청소년에게 적합한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방과후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양적인 팽창과 함께 질적인 수준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시급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류연규·김영미·정익중, 2011; 정익중·박현선·오승환·임정기, 2009).

현재 우리나라는 방과후 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여러 중앙부처에서 다양하게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 방과후 보육,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 교육부의 방과후 학교, 방과후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안전통합시스템(Wee 프로젝트) 등이 비슷한 사업내용을 전개하면서 각기 다른 전달체계와 다른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민간영역에서도 위스타트, 우리아이희망네트워크, 시소와 그네 등 유사한 서비스가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각 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갈등으로 인해 서로의 다양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존재하며 서비스 중복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또한 아직 방과후 서비스를 모두 합쳐도 저소득 지역을 조밀하게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한 통합논의는 서비스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기능별 유사성 때문에 단순하게 통합을 강조하기보다 이러한 다양성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고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각 서비스체계를 인정하되 기본규정을 정립하여 대상자 중복이나 불필요한 경쟁을 막기 위한 장치를 지역종합계획 공동수립, DB구축, 공통평가, 예산 및 인력의 통합 등 시스템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정익중·박현선 외, 2009). 더불어 이용자의 혼란을 막고 공급자간의 지나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방과후돌봄교실 등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방과후서비스기관은 소관 부처는 상이하더라도 방과후아동센터(가칭) 등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48.9%이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24.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3-8 참조). 일반적으로 가족 내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보다 긍정적인 양육방식이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활사건을 수차례 경험하더라도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경민·정익중, 2009).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부모교육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부모들이 갖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부모역할에 적합한 사회적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고 있으며, 부모교육은 그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부모교육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는 물론 다양한 지역사회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지만 부모교육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이나 위기 상황의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들에게는 교육내용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김경민·정익중, 2009). 따라서 부모교육을 부모가 공권력에 접촉할 때 의무화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처음 보낼 때, 자녀를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자녀를 중학교에 처음 입학시킬 때 등 국가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대신 부모도 그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집에 대한 국가지원이 확대되고 있고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도 의무교육화 되면서 5세부터 중학교까지 10년간 의무교육이 실시되므로 부모교육 의무화를 통해 국가지원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노충래·정익중·전종철, 2012; 정익중, 2011).

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1) 지표의 현황

① 가출청소년, 소년소녀가정

가. 가출청소년 비율

가출인이란 만 14세 이상의 자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호에 따른 청소년을 가출청소년(14-19세), 그 외를 가출성인으로 통칭한다(경찰청, 2012). 경찰청(2012)의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전체 가출인은 65,028명이고, 가출청소년은 20,43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이 15,114명이고, 2010년 19,44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고 접수된 현황으로 실제 가출청소년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에 비해 여자 청소년의 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성과 관련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응책 마련이 요청된다.

표 Ⅲ-3-9 가출인 신고 접수 현황

(단위 : 명)

연도	가출청소년(14-19세)			성인가출인			가출인(전체)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발생	남	여
2009	15,114	5,251	9,863	40,583	17,894	22,689	55,697	23,145	32,552
2010	19,440	6,654	12,786	40,640	18,039	22,601	60,080	24,693	35,387
2011	20,434	7,354	13,080	44,594	21,087	23,507	65,028	28,441	36,587

* 출처 : 경찰청(2012), 2012 경찰백서

위의 경찰청 자료는 신고접수된 가출 청소년의 현황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가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5.1%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3-10>과 같다.

표 Ⅲ-3-10 최근 1년간 가출 경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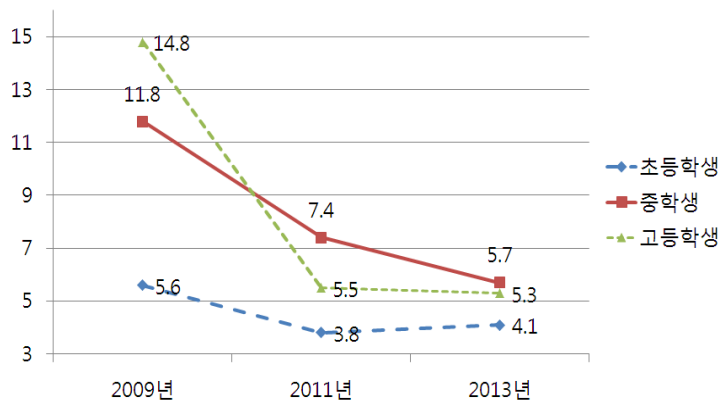
구분		가출한 적이 있다	가출한 적이 없다	전체(N)	χ^2
전체		5.1	94.9	100.0(9,503)	129.714***
성별	남자	6.3	93.7	100.0(4,974)	
	여자	3.7	96.3	100.0(4,529)	
학교 유형	초등학교	4.1	95.9	100.0(2,829)	1467.425***
	중학교	5.7	94.3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4.9	95.1	100.0(2,792)	
	특성화고	7.1	92.9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5	95.5	100.0(8,495)	1005.248***
	한부모가정	9.9	90.1	100.0(755)	
	조손가정	12.9	87.1	100.0(80)	
	기타	3.9	96.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4.0	96.0	100.0(4,310)	511.709***
	중	5.5	94.5	100.0(3,527)	
	하	6.8	93.2	100.0(1,653)	

*** $p < 0.001$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가출 경험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6.3%, 여학생은 3.7%가 가출경험이 있었고,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에 재학중인 고등학생 중 7.1%가 가출경험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학생(5.7%), 일반/특목/자율고 재학생(4.9%), 초등학생(4.1%)의 순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이 12.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9.9%),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4.5%)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우 6.8%가 최근 1년 동안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4.0%, 중위층 아동·청소년은 5.5%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아동·청소년의 가출경험에 대한 연도별 변화추이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III-3-1>과 같다. 2009년에 비해 가출경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 14.8%, 2011년에 5.5%, 2013년 5.3%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에 비해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1】 최근 1년간 가출경험(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나. 가출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최근 1년간 가출경험이 있었던 아동·청소년에게 가출의 주된 이유를 질문한 결과는 <표 III-3-11>과 같다. 가장 많은 이유는 부모님 등 보호자와의 문제였으며(65.7%), 이어서 학업부담(14.5%),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9.1%)의 순이었다. 학교유형별로 가출의 이유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유형의 학교 학생들과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된 가출 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가 73.8%였으며, 그 다음이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12.8%), 학교문제(2.8%), 학업부담(2.7%)의 순이었다. 반면에, 일반/특목/자율고의 학생들은 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67.9%였고, 다음으로 학업부담(14.3%),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8.7%)의 순이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모두 보호자와의 문제로 인한 가출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업부담과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도시와 중소도시 지역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유는 보호자와의 문제, 학업부담,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인 순이었으나 읍면지역의 아동·청소년의 가출이유는 보호자

와의 문제,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학업부담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과 지역규모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가출 이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3-11 가출을 한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보호자와의 문제	학교 문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친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14.5	65.7	2.1	0.4	9.1	8.3	100.0(471)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2	66.1	1.0	1.6	7.4	7.7	100.0(108)	523.121***
	중학교	16.4	61.9	2.4	0.0	9.5	9.8	100.0(183)	
	일반/특목/자율고	14.3	67.9	2.3	0.0	8.7	6.8	100.0(137)	
	특성화고	2.7	73.8	2.8	0.0	12.8	8.0	100.0(43)	
지역 규모	대도시	15.1	65.5	1.3	0.0	9.1	9.0	100.0(174)	16.421*
	중소도시	14.7	68.0	2.3	0.4	7.3	7.4	100.0(237)	
	읍면지역	11.8	57.2	3.6	1.4	16.1	10.0	100.0(60)	

* $p<0.05$, *** $p<0.001$

가출을 한 주된 이유에 대해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3-12>와 같다. 모든 학교유형에서 학업부담으로 인한 가출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 11.1%, 2011년 13.2%, 2013년 16.2%로 증가폭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큰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학교문제로 인한 가출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로는 이용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93.7%로 가장 많았고, 청소년 상담기관 1.3%, 청소년 쉼터 1.2%, 청소년수련관 1.0%, 청소년 전화 1388 0.8%의 순이었다. 지역규모별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은 청소년쉼터의 이용률이 2.6%로 중소도시(0.5%), 읍면지역(0.0%)보다 많았으며, 청소년상담기관은 읍면지역 청소년의 이용률이 5.7%로 대도시(0.0%)와 중소도시(1.2%)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2=210.875, p<0.001$). 가족유형에 따라서도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차이를 보였는데($\chi^2=97.953, p<0.001$),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가출시 청소년상담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11.1%로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1.3%)이나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0.0%)에 비해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

표 III-3-12 가출을 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위 : %)

	학교유형	학업부담	부모님과 의 문제	학교문제	경제적 어려움	친구들과 함께하기 위해	기타
2009년	초등학교	11.1	62.2	8.1	3.0	6.7	8.9
	중학교	13.6	66.1	5.1	2.5	8.5	4.2
	고등학교	10.2	70.1	5.4	2.0	9.5	2.7
2011년	초등학교	13.2	55.0	2.3	2.8	1.2	25.4
	중학교	14.6	63.6	3.8	0.0	8.4	9.6
	고등학교	3.3	73.9	5.2	3.9	4.6	9.1
2013년	초등학교	16.2	66.1	1.1	1.7	7.3	7.7
	중학교	16.3	61.9	2.4	0.0	9.5	9.8
	고등학교	11.5	69.3	2.4	0.0	9.7	7.1

* 주 : 2009년의 경우 '① 가출한 적 없음 ② 부모님과 의 문제(불화, 폭행, 간섭 등) ③ 학업에 대한 부담감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⑤ 학교 문제(갈등, 폭력 등), ⑥ 친구들과 함께 하기 위해 ⑦ 기타'으로 문항 출제 되어 있어서, '① 가출한 적 없음' 문항을 제외시키고 나머지를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연도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3-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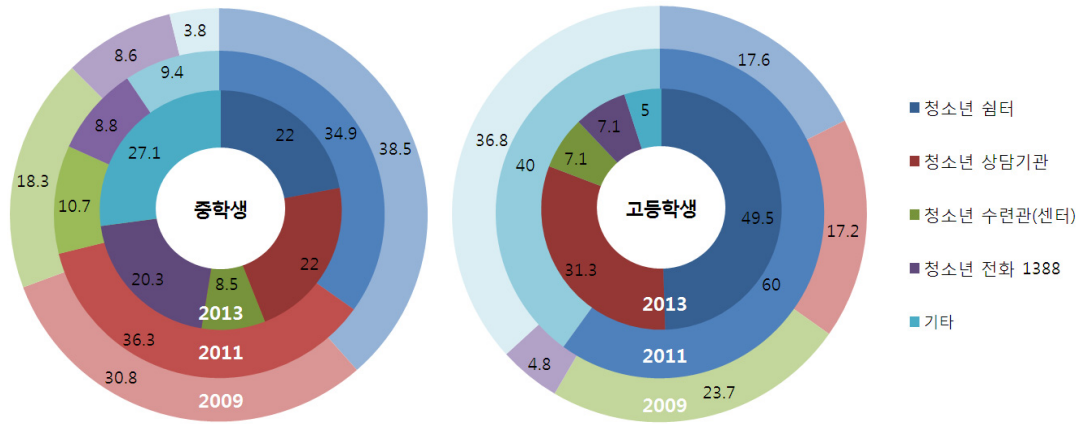
표 III-3-13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이용해 본 적 없다	청소년 쉼터	청소년 상담 기관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전화 1388	기타	전체(N)	χ^2
전체	93.7	1.2	1.3	1.0	0.8	2.0	100.0(360)	
지역 규모	대도시	94.6	2.6	0.0	0.0	0.4	100.0(136)	210.875***
	중소도시	92.9	0.5	1.2	2.0	1.3	100.0(179)	
	읍면지역	94.3	0.0	5.7	0.0	0.0	100.0(46)	
	양부모가정	94.5	0.9	1.3	1.2	0.4	100.0(285)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92.0	1.6	0.0	0.0	2.9	100.0(59)	97.953***
	조손가정	88.9	0.0	11.1	0.0	0.0	100.0(9)	
	기타	100.0	0.0	0.0	0.0	0.0	100.0(5)	

*** $p < 0.001$

중학생의 경우,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2009년 38.5%, 2011년 34.9%, 2013년 22.4%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청소년 상담기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이용도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에 청소년 전화의 이용률은 2009년 8.6%, 2011년 8.8%, 2013년 20.7%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청년 쉼터 이용은 2009년 49.5%, 2011년 60.0%, 2013년 18.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2】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 3개년 추이(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시설로 청소년 가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가출한 청소년은 신속하게 보호하고 상담하여 가출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다(여성가족부, 2012b). 전문화 및 차별화된 서비스를 위하여 일시, 단기 및 중장기 쉼터로 특성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현재 일시쉼터 13개소, 단기쉼터 49개소, 중장기쉼터 30개소 등 총 92개소의 청소년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III-3-14 연도별 청소년쉼터 운영 및 이용 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일시쉼터(개소)	7	9	9	10	10	10	13
단기쉼터(개소)	43	45	42	47	49	48	49
중장기쉼터(개소)	21	25	25	24	24	25	30
계(개소)	71	72	76	81	83	83	92
이용인원(명)	11,018	14,360	15,133	16,519	16,687	23,427	-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p.122-123.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71개소, 2009년 81개소, 2012년 92개소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용인원도 2006년도에 11,018명에서 2009년 16,519명, 2011년 23,42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2012)의 신고·접수된 가출청소년 현황과 비교해 보면, 2011년도에 신고 접수된 20,434명보다 더 많은 23,427명의 청소년들이 2011년도에 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되지

많은 가출청소년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11년부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접근과 개입을 위해 아웃리치 전담인력을 전국 일시쉼터에 배치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을 강화하고 의료특화 이동형 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라.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의 2012『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소년소녀가정은 2011년 현재 1,02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소년소녀가 세대주인 경우가 699가구(68.5%)이며, 세대원인 가구는 321가구(31.5%)이다. 아동·청소년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8가구(0.8%), 초등학교 아동이 103가구(10.1%), 중학생이 264가구(25.9%), 고등학생이 601가구(58.9%)이다. 소년소녀가정 중 50%이상은 고등학생이 가장이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이하도 1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소년소녀가정이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15 소년소녀가정 현황

(단위 : 명)

연도	세대주	세대원	재학별					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2003	3,994	2,190	99	1,309	1,966	2,668	142	6,184
2004	3,504	1,940	87	1,244	1,681	2,331	101	5,444
2005	2,755	1,577	85	901	1,343	1,923	80	4,332
2006	2,086	1,185	39	572	1,031	1,570	59	3,271
2007	1,630	871	25	401	789	1,226	60	2,501
2008	1,337	721	12	292	621	1,080	53	2,058
2009	1,054	542	10	196	440	904	46	1,596
2010	905	422	9	149	375	753	41	1,327
2011	699	321	8	103	264	601	44	1,020

* 출처 :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② 대안적 양육

가.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요보호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bs=INDX_001&clas_div=A).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빈곤이나 부모의 실직, 학대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2012년 현재 3,944명으로 가장 많고,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 아동이 1,989명이며, 부모의 비행이나 가출로 인한 요보호아동이 708명, 기아가 235명, 미아가 50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요보호아동의 전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발생유형별로 보면, 부모의 빈곤·실직·학대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는 다소 증가하다가 2009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혼모에 의한 요보호아동과 기아의 수도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부모의 비행이나 가출로 인한 요보호아동은 2003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6 발생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222	9,393	9,420	9,034	8,861	9,284	9,028	8,590	7,483	6,926
빈곤·실직·학대	4,463	4,265	4,877	4,925	5,354	5,876	4,994	4,613	3,928	3,944
비행·가출	595	581	1,413	802	748	706	707	772	741	708
미혼모	4,457	4,004	2,638	3,022	2,417	2,349	3,070	2,084	2,515	1,989
기아	628	481	429	230	305	202	222	191	218	235
미아	79	62	63	55	37	151	35	210	81	50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다음으로 보호유형별로 요보호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3-17>과 같다. 2012년 현재 전체 요보호 아동 6,926명 중 3,748명(54.1%)이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장애아동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의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2,289명(33.0%)이 가정위탁을 받고 있고, 772명(11.2%)이 입양되었으며, 소년 소녀가정은 117명(1.7%)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입양과 소년소녀가정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7 보호유형별 요보호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10,222	9,393	9,420	9,034	8,861	10,534	10,153	8,590	7,483	6,926
시설보호	4,824	4,782	4,818	4,366	3,245	4,964	4,767	4,842	3,752	3,748
가정위탁	2,392	2,212	2,322	3,101	3,378	2,838	2,734	2,124	2,350	2,289
입양	2,506	2,100	1,873	1,259	1,191	1,304	1,314	1,393	1,253	772
소년소녀가정	500	299	407	308	247	178	213	231	128	117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

(2) 정책제언

가출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청소년의 5.1%가 가출경험이 있다고 답했고(표 III-3-10 참조),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을 묻는 질문에 93.7%가 이용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 쉼터의 이용률은 12%로 나타나(표 III-3-13 참조) 쉼터는 위기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위상을 좀 더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출청소년의 경우에 고위험청소년이지만 범죄청소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재활율도 높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쉼터의 숫자가 2006년 71개에서 2012년 92개로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표 III-3-14 참조), 대다수 쉼터들이 큰 규모로 존재하기보다 영세한 규모로 존재하고 있고 여러 개의 쉼터가 동일법인 내 운영되기 보다 각 쉼터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쉼터유형간 연계가 부족한 편이다. 쉼터의 전달체계 내에서 가출청소년 발견에서부터 가정 복귀, 장기보호, 자립 등 서비스가 연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쉼터에서 일시쉼터와 중장기쉼터 기능을 보강하여 통합적 형태(일시쉼터-단기쉼터-중장기쉼터)로 운영하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동일 법인에서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하거나 지역 내 쉼터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속적인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동일 법인이 여러 개의 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은 쉼터를 규모화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에 의해 서비스의 연속성이나 인력의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쉼터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쉼터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일시쉼터와 중장기쉼터의 연결고리 역할을 적절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쉼터 서비스의 중심 역할은 단기쉼터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정익중·백혜정·박현선·천창암·박현동, 2009).

대부분 청소년쉼터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았고, 이러한 높은 이직율은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에 걸림돌이 되었다. 전문화된 인력은 대인 서비스의 질과 책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클라이언트인 아동·청소년에게까지 파급효과를 가져온다(정익중·이경립·이정은, 2010; 정익중·이정은·이상균, 2011).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례관리와 정서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국가 전문자격자(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되, 전문인력 당 청소년비율을 1대 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정 수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 질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전문화된 인력의 잦은 이직과 소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문 자격에 합당한 급여 처우 조건을 개선, 야간 근무에 대한 3교대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정익중·백혜정 외, 2009).

소년소녀가정은 미성년자가 가구주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이는 아동복지 후진국임을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대로 상당수 가정위탁으로 전환되었으며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를 더 빨리 다른 형태의 가정의 보호로 전환하여 미성년자가 후견인 없이 가구주가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대안적 양육을 받는 요보호아동과 기아의 수는 점점 감소하고 있으나 2012년 기준 54.1%가 시설보호를 받고 있으며 33.0%는 가정위탁을 받고 있고 11.2%는 입양되고 있다(표 III-3-17 참조). 아직 시설보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형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위탁가정을 위한 제도가 점점 개선되고 있지만 아동권리협약에서 권고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 아동을 대안적 양육에 의뢰하기 전에 친가족의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아동을 위탁한 후에도 가족복귀를 위해 친가족을 지원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 동시에 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의지가 없거나 부적합한 경우 친권을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고 아동을 입양 보내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을 사정하여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에 적합하게 배치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2011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신설되었다.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전문적 사정에 의한 가정의 배치(가정위탁, 시설입소, 입양 등)가 필요한 경우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아동·청소년담당 공무원, 아동·청소년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사례를 사정하고 심의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욕구에 부합되는 맞춤형 서비스가 통합적인 형태로 제공되고, 배치 이후에도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적어도 6개월에 1회 정도 모니터링하여 현재의 보호체계가 적절한 지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더 적절한 보호체계가

로 전환하거나 친가족으로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오정수·이혜원·정익중, 2006; 정익중, 2009b). 하지만 이러한 체계가 아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운영실적을 지자체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이를 좀 더 실질적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위탁부모들은 친권으로 인하여 양육에 대한 권리가 불분명하고, 역할에 대한 법적 규정도 없으며, 양육과정에서 책임문제, 주변의 부정적이고 낮은 사회적 인식, 자원봉사자로 한정된 낮은 위상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일반위탁가정 발굴에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위탁가정 발굴 확대를 위해서는 위탁부모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가정위탁에 대한 대국민 공익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오정수·정익중, 2013). 또한 위탁아동 중에는 어린 시절부터 학대 등 다양한 가정 내 생활사건을 통해 상처를 경험하여 문제행동이나 학업부진, 장애 등의 문제를 경험하는 아동이 많이 존재한다(김경민·정익중, 2009). 이들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을 돌보기 위해서는 일반위탁부모의 발굴과정에서 장애아동이나 학대피해아동을 돌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을 발굴하거나 기존 일반위탁부모 중에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을 돌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제공하여 다른 위탁아동과 차별화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노충래 외, 2007). 특수욕구를 가진 아동이 점점 증가하여 전문위탁가정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부 그룹홈이나 아동양육시설을 치료기능을 가진 전문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보호의 궁극적 목적은 친가정의 역량강화를 통한 아동의 친가정 복귀이다. 하지만 서비스 제공에서 친가정은 거의 배제되고 주로 위탁가정과 위탁아동에게 집중되어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현재 친부모의 참여와 책임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제재가 부재하다 보니 친부모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도 친부모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있을 뿐 강제할 수 없어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위탁아동의 종결 후 배치를 살펴보면 전체 종결 위탁아동의 친가정 복귀율은 11.8%로서 매우 낮은 실정이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빠른 시일 내에 친가정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려면 초기 사정 시 위탁서비스의 적절성을 철저히 점검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아동을 위탁할 때부터 친가정을 위탁보호의 파트너로 인식하고 친부모를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특히 아동을 위탁가정에 맡긴 친부모들이 아동에 대한 애착이 감소되고 가정위탁에 대한 의존감이 생기지 않도록 아동과 친부모가 정기적인 만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친부모의 아동과의 정기적인 만남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적인 규제도 필요하다(정익중, 2009a). 친부모의 역량강화, 친부모와 아동의 재결합을 위한 프로그램에 보다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직접적으로 친부모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해도 친부모가 거주하는 지역의 자원이나 사회복지기관을 연계해서 친부모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친가정 복귀가 어려울 경우 더 철저한 영구배치계획이나 자립지원계획을 통해 다른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오정수·정익중, 2013).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 총 17개로서 종사자 1인당 약 190여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지역적으로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한 개 시도에 하나로써 도 단위에 있는 센터는 하나의 센터가 그 도 전체에 흩어져 있는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그리고 아동의 친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탁아동 전체에 대한 사례관리는 물론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미국의 아동복지연맹(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CWLA)은 고위험에 처한 아동을 위해서는 1인의 사회복지사가 12명의 아동을, 위탁가정의 경우에 1인당 12명에서 25명이 적당하다고 적정사례수 기준을 세워놓았다(정익중, 2006). 전국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가 15,486명의 위탁아동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위탁아동에 대한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아동복지법』이 2011년에 개정되면서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사회 내 요보호아동의 가정보호를 발전시키고 가정위탁 된 아동의 복지와 친가정 복귀를 위해서는 가정위탁을 담당하는 기관을 시도나 시군구 차원에서 더 개설하고 전담인력을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각 시도에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를 거점센터로 지정하고 시군구 차원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새로 개설하거나 기존의 사회복지관이나 아동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위탁아동, 위탁가정 그리고 친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오정수·정익중, 2013).

3) 입양

(1) 지표의 현황

① 입양

가. 국내·외 입양 현황

정부는 요보호아동의 친가정 복귀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귀가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우선적으로 국내입양을 추진하고(07 국내입양우선추진제),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조치 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이러한 조치로 인해 <표 III-3-18>에서 볼 수 있듯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았으나, 2007년부터는 국내입양이 국외입양보다 많이 이루어졌다. 2011년도에 국내입양된 아동은 1,548명이며, 국외입양된 아동은 916명으로 총 2,464명의 아동이 입양조치 되었다.

표 III-3-18 국내 외 입양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국내	1,641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국외	2,258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계	3,899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 출처 : 보건복지부(2012a), 2011 보건복지백서, p.180.

(2) 정책제언

국내입양 활성화는 중요한 아동복지 목표 중의 하나이지만 국내입양은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표 III-3-18 참조).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입양활성화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 비밀입양, 홍보부족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정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주장해왔지만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제도나 정책은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친권을 중요시하는 현 제도로 인하여 기아로 입소된 아동들의 경우도 국내입양이든 해외입양이든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다. 그리고 입양부모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 미흡하고, 입양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아주 부족하여 지방의 경우는 훈련된 입양 담당 직원을 채용하는 것조차 어렵다. 또한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별 입양기관에만 떠넘기고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키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가 없는 것도 현실이다.

비밀입양은 오랫동안 입양가정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부모가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함으로 인하여 아동은 입양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며, 아동이 성장하면서 갑자기 입양사실을 알게 됐을 때 아동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오정수·정익중, 2013).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만 입양 사실이 공개되고 입양아동이 성공하거나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며 문제가 없는 경우는 사회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입양의 좋은 경우보다는 나쁜 경우만을 보게 되므로 비밀입양은 입양의 좋은 점이나 성공경험을 알리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반면 공개입양은 비밀입양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방지하며 입양의 좋은 점을 사회에 적극 알리는 데도 도움이 되므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 공개입양의 장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과 동시에 입양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감소시키도록 국민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정익중·김미숙·김철민·조은경·김승형·이화미, 2011). 사회문화적으로 오래 내려온 입양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 데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에 비해 입양을 원하는 부모들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신생여아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아 상당수의 가정이 여아를 입양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반면에 남아나 장애아는 국내입양을 하려는 사람이 적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다가 국외입양을 가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이나 태도가 금방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제도뿐 아니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업도 꾸준히 해야 할 것이다(정해린·안은미·최혜림·정익중, 2012).

연령이 낮을수록 입양에 대한 생각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김유경·변미희·임성은, 2010). 입양이 활성화되고 사회의 자연스런 문화로 정착되려면 정부는 입양에 대한 국민들의 사고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물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단계별로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체계화하고,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서는 입양가족도 정상적인 가정범주 중 하나이고,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을 위한 콘텐츠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에서 긍정적인 입양사례를 발굴하여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출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편견 해소 및 국민적 공감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명인의 입양사례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입양가족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감성적 스토리텔링을 통해 입양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입양하면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해야 한다(정익중·김미숙 외, 2011).

마지막으로 아동이 입양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입양기관에서 부모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아동중심의 입양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더불어 입양대상아동 발생 자체를 막기 위해 미혼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국민인식의 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점점 많은 미혼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만 아직도 가족과의 갈등과 사회의 편견이 커서 많은 미혼모들이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감소시키고 요보호 아동에 대한 연대책임의식을 강조함과 동시에 미혼모가 친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등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이제는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입양가정, 미혼모 가정 등이 당당하게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오정수·정익중, 2013).

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1) 지표의 현황

① 학대·방임

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보건복지부(2012a)에 의하면, 2011년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총 10,146건이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사례로 판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은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6,058건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 2,921건 이었던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1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도 2003년 19개소였으나 2011년도에는 44개소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3-19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	건수(건)	2,921	3,891	4,633	5,202	5,581	5,578	5,685	5,657	6,058
	증가율(%)	17.9	33.2	19.1	12.3	7.3	-0.1	1.9	-0.5	7.1
아동보호 전문기관수	기관수(개소)	19	37	38	42	43	43	44	44	44
	증가수(개소)	2	18	1	4	1	-	1	-	-

* 출처 : 보건복지부(2012a), 2011 보건복지백서, p.172.

* 주 :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나.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아동학대는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등으로 그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2012년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을 살펴보면 <표 III-3-20>과 같다.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의 경우에는 전체 피해아동의 연령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신체학대는 만 13-15세가 748명(26.2%)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이고, 다음으로 만 10-12세(24.6%), 만 7-9세(17.8%)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학대도 만 13-15세가 945명(25.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 10-12세(24.1%), 만 7-9세(17.4%)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었다. 성학대의 경우에는 만 13-15세가 38.8%, 만 10-12세 27.8%, 만 16-18세 12.8%의 순이었으며, 방임은 만 10-12세가 577명(20.3%)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만 13-15세(18.0%), 만 7-9세(17.6%)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임사례 중 1세미만(9.9%)과 1-3세(14.6%)가 다른

학대 유형에 비해 두드러지게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자녀출산 후 병원 및 시설 등에 아동을 버리고 가는 경우이다(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표 III-3-20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단위 : 건(%))

유형연령(만)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계
1세미만	39(1.4)	93(2.5)	1(0.2)	281(9.9)	414(4.2)
1-3세	252(8.8)	378(10.0)	8(1.8)	415(14.6)	1,053(10.6)
4-6세	359(12.6)	471(12.4)	34(7.6)	430(15.1)	1,294(13.0)
7-9세	509(17.8)	660(17.4)	49(11.0)	500(17.6)	1,718(17.3)
10-12세	702(24.6)	914(24.1)	124(27.8)	577(20.3)	2,317(23.3)
13-15세	748(26.2)	945(25.0)	173(38.8)	512(18.0)	2,378(23.9)
16-18세	249(8.7)	324(8.6)	57(12.8)	134(4.7)	764(7.7)
계	2,858(100.0)	3,785(100.0)	446(100.0)	2,849(100.0)	9,938(100.0)

* 출처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p.96.

* 주 : 중복포함

다. 방임 경험률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은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소홀한 아동양육 및 보호로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임희진·김현신, 2011:115).

최근 1년간 아동·청소년의 방임 경험 유무와 빈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III-3-21>과 같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경험은 한 번도 없는 경우가 41.7%, 연 1-2회 정도가 34.4%, 월 1-2회가 14.2%, 주 1-2회가 5.1%, 주 3회 이상이 4.5%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교유형과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먼저 학교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급학교로 갈수록 방임의 빈도가 높았으며, 특히 특성화고 학생의 경우 주 3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족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방임 빈도가 주 3회 이상이 10.7%로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방임의 빈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거나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경험을 살펴보면, 한 번도 없는 경우가 91.7%였으며, 연 1-2회가 6.2%, 월 1-2회가 1.4%, 주 1-2회가 0.4%, 주 3회 이상이 0.2%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유형과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특성화고 학생들이 한 번도 없는 빈도가 88.7%로 다른 학교 유형에 비해 낮았으며,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이(83.8%),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86.2%)이 한 번도 없는 빈도가 다른 항목에 비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보호자)이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경험과 관련하여서는 한 번도 없다는 응답이 92.4%, 연 1-2회가 5.2%, 월 1-2회가 1.5%, 주 1-2회가 0.6%, 주 3회 이상이 0.4%였으며, 이 항목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교유형별로는 다른 항목에 비해 초등학생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비율이 94.9%로 높았는데, 이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아플 경우에 부모가 돌봄을 더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아파도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한 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보호자)이 자신이 식사를 못해도 몰랐던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체의 86.2%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연 1-2회가 6.7%, 월 1-2회가 3.8%, 주 1-2회가 2.1%, 주 3회 이상이 1.1%였다.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와 한부모가정, 경제적 수준이 하위층인 아동·청소년들의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결석해도 부모님(보호자)이 모른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 전체의 98.1%가 한 번도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연 1-2회가 1.1%, 월 1-2회가 0.4%, 주 1-2회가 0.3%, 주 3회 이상이 0.2%였다.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조손가정, 경제적 하위계층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χ^2	
돌봐주는 사람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봄	전체	41.7	34.4	14.2	5.1	4.5	100.0(9,510)	1326.677***	
	학교 유형	초등학교	55.2	26.2	10.7	4.0	3.9		100.0(2,827)
		중학교	37.8	36.4	15.5	5.7	4.6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34.4	40.1	16.0	5.7	3.9		100.0(2,797)
		특성화고	33.9	35.5	15.4	5.0	10.2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6	35.1	13.6	4.8	3.9	100.0(8,501)	215.828***
		한부모가정	31.4	28.6	20.3	9.0	10.7	100.0(756)	
		조손가정	44.4	29.9	16.4	6.0	3.4	100.0(80)	
		기타	41.0	28.5	16.2	6.3	8.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46.9	33.4	12.6	3.8	3.3	100.0(4,314)	802.393***
		중	40.8	35.1	14.3	5.6	4.2	100.0(3,529)	
		하	30.2	35.6	18.4	7.7	8.2	100.0(1,654)	

*** $p < 0.001$

표 III-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χ^2
더러운 옷이나 이부자리 사용	전체	91.7	6.2	1.4	0.4	0.2	100.0(9,505)	703.382***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0	4.0	0.6	0.2	100.0(2,824)	
		중학교	90.5	7.2	1.5	0.6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0.6	6.9	1.8	0.4	100.0(2,797)	
		특성화고	88.7	8.2	2.6	0.6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2	6.0	1.2	0.4	100.0(8,495)	1129.398***
		한부모가정	86.8	8.7	2.7	0.9	100.0(757)	
		조손가정	83.8	10.9	3.9	1.4	100.0(80)	
		기타	92.3	4.2	3.5	0.0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93.8	5.0	0.9	0.2	100.0(4,314)	711.338***
		중	91.9	6.3	1.2	0.5	100.0(3,523)	
		하	86.2	9.4	3.2	0.7	100.0(1,655)	
아파도 그냥 내버려둠	전체	92.4	5.2	1.5	0.6	0.4	100.0(9,503)	952.411***
	학교 유형	초등학교	94.9	3.4	0.8	0.5	100.0(2,823)	
		중학교	91.0	6.1	1.6	0.9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1.9	5.8	1.7	0.5	100.0(2,796)	
		특성화고	90.8	5.6	2.7	0.1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2.9	4.9	1.3	0.6	100.0(8,492)	948.863***
		한부모가정	87.3	8.0	3.0	0.7	100.0(757)	
		조손가정	85.9	5.4	7.2	1.4	100.0(80)	
		기타	90.7	6.2	1.6	1.1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94.5	3.9	1.2	0.3	100.0(4,314)	313.757***
		중	92.6	5.1	1.3	0.6	100.0(3,523)	
		하	86.8	8.5	2.4	1.4	100.0(1,653)	
식사를 못해도 모름	전체	86.2	6.7	3.8	2.1	1.1	100.0(9,506)	141.757***
	학교 유형	초등학교	93.0	4.1	1.5	0.8	100.0(2,824)	
		중학교	85.6	6.9	4.0	2.4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81.4	8.8	5.6	2.8	100.0(2,797)	
		특성화고	79.1	8.8	5.1	4.1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7.0	6.6	3.6	1.9	100.0(8,497)	126.007***
		한부모가정	78.1	8.2	6.2	4.6	100.0(756)	
		조손가정	81.1	5.8	8.6	3.0	100.0(80)	
		기타	84.3	6.8	3.0	4.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90.5	5.1	2.7	1.1	100.0(4,314)	4034.255***
		중	85.1	7.9	4.0	2.1	100.0(3,524)	
		하	77.2	8.6	6.3	4.8	100.0(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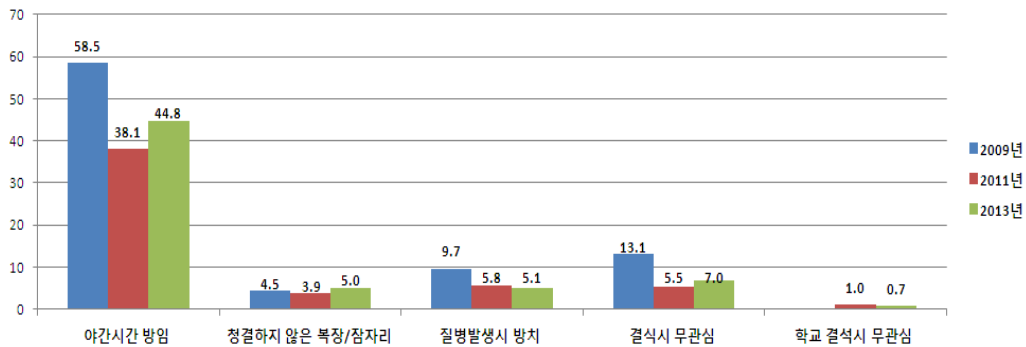
*** $p < 0.001$

표 Ⅲ-3-21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유무 및 빈도(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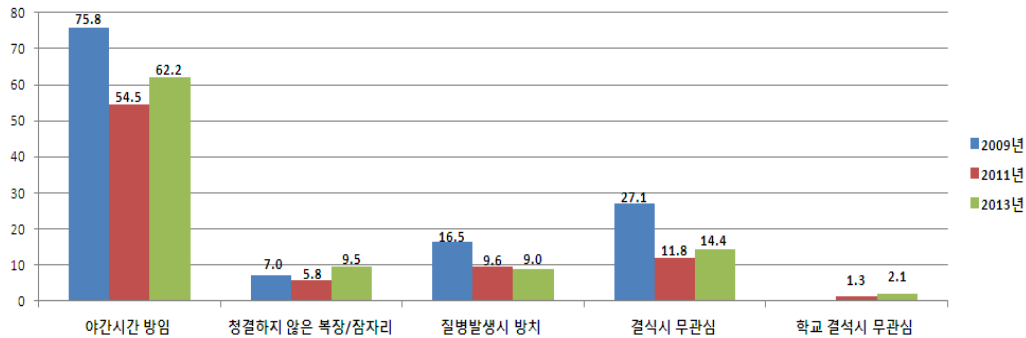
구분		한번도 없음	연1-2회 정도	월1-2회 정도	주1-2회 정도	주3회 이상	전체(N)	χ^2
학교를 결석해도 모름	전체	98.1	1.1	0.4	0.3	0.2	100.0(9,504)	1354.145***
	학교 유형	초등학교	99.3	0.5	0.1	0.1	100.0(2,822)	
		중학교	97.9	1.1	0.4	0.5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97.9	1.2	0.6	0.1	100.0(2,797)	
		특성화고	94.3	3.2	1.8	0.2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98.3	1.0	0.3	0.2	100.0(8,495)	614.48***
		한부모가정	96.2	2.1	1.0	0.5	100.0(755)	
		조손가정	90.2	2.4	4.8	0.0	100.0(80)	
		기타	96.2	1.9	1.5	0.4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98.5	0.8	0.4	0.2	100.0(4,313)	276.388***
		중	98.5	0.8	0.3	0.3	100.0(3,524)	
		하	96.0	2.3	0.9	0.3	100.0(1,654)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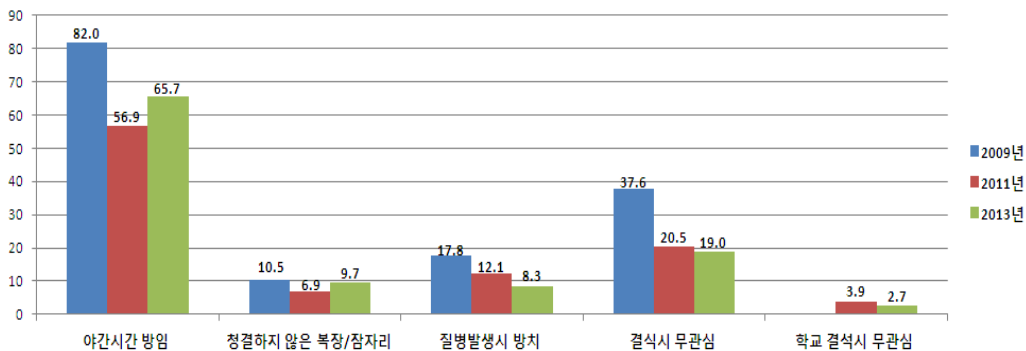
최근 1년간 방임경험 빈도에 대한 3개년 비교결과는 <그림 Ⅲ-3-3>, <그림 Ⅲ-3-4>, <그림 Ⅲ-3-5>과 같다. 학교 결석시 무관심한 경우는 초·중·고등학생 모두 2009년에 비해 빈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질병발생시 방치하는 빈도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결하지 않은 복장이나 잠자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경우에 다소 증가하였으며, 야간시간 방임은 전 연령에 걸쳐 2009년보다 2011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Ⅲ-3-3】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3개년 추이 : 초등학생)



【그림 III-3-4】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3개년 추이 : 중학생)



【그림 III-3-5】 최근 1년간 방임 경험 빈도 3개년 추이(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 정책제언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표 III-3-19 참조). 학대의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야말로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한미현, 2006). 따라서 학대예방을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하고,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이 실제적인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을 통해 학대행위를 막는 노력은 예방차원에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교육도 강화하여 아동 스스로가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 저소득계층 부모들의 장시간 노동 및 인식부족으로 인해 저소득층

의 영유아들의 의료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존하는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들을 활성화하여 지역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을 통하여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만약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기발견 및 개입이 가능토록 하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방문의 기회가 많은 사회복지사나 지역방문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증상 및 원인, 조기발견에 대한 교육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아동양육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향후 아동학대행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시기로 보편적 가정방문제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학대 고위험 집단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며 다학제팀으로 구성되는 가정방문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노충래 외, 2012).

특히 영유아기에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 의심 아동을 발견하는 통로로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전 국민 수준의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생후 4개월부터 만 6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7회의 건강검진과 3회의 구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는 전 국민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보편적 건강서비스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실제 수검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지정된 검진기관이 있어 자신이 다니는 소아과 의원에서 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나 거주지에 따라 검진기관이 멀어 어린 자녀를 데리고 방문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발생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녀양육 및 영유아건강검진에 관심이 높은 가정만 이 제도를 활용하고, 실제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예방 및 선별되어야 할 위기가정은 이 제도 활용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노충래 외, 2012).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보다 강화하면 아동학대의 보편적 예방 및 아동학대 위험가정의 조기발견 시스템으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반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건강교육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지표들이 추가되어야 한다. 검진 항목 안에 신체학대, 성학대, 정서학대, 방임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소아과의원이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1차 기관으로써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 0-6세까지 7회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의지에 따라 수검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영유아검진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다. 7회의 검진을 모두 필수검진으로 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영아기에 1회 이상, 유아기에 1회 이상의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강제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영유아검진 수검기록은 예방접종기록과 함께 어린이집, 초등학교 등의 입학 시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영유아건강검진 제도를 한 번 이용하지 않은 가정의 경우 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높으므로 필수적으로 가정방문을

실시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노충래 외, 2012).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완전하게 종결이 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가족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지원의 기본은 가족 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아동이 가족 내에서 올바른 양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11년 전체 서비스 제공횟수는 총 393,624회인데, 그 중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310,406회(78.9%),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51,147회(13.0%),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제외한 부모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는 32,071회(8.1%)가 제공되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학대행위자에 대한 서비스는 예전보다 증가했지만 아동학대의 감소를 위해서는 학대행위자들의 행태 변화 유도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대행위자가 주로 알코올중독이나 정신장애 등 심각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전문적인 교육과 치료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으로서 이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도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 해외에서는 학대로 자녀와 격리된 부모는 아동보호서비스 센터가 제안한 모든 것을 실천해야만 아동을 데리고 올 수 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센터의 조치에 대해 잘 따르지 않으면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해 강제적인 교육이나 수강명령제도가 없다. 또한 전통적으로 친권을 중요시하여 피해자 아동과 가해자 부모를 분리시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가해자 교육과 피해자 보호가 쉽지 않다. 이 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방임은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이를 인지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다. 방임의 경우 학대보다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적 관심도 쉽게 받지 못했고 적극적인 개입의 대상도 아니었다. 하지만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들 중 약 절반이 방임의 희생자로 간주할 수 있을 만큼 방임은 학대의 다른 유형들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으로 피해를 가져온다. 특히 방임은 가해자나 외부인에게 문제라는 인식자체가 전혀 없어 아동이 성장하여도 계속해서 누적되어 나타나기 쉽다. 방임은 타인과 관계를 맺거나 주변세계를 탐색할 의지가 사라지도록 천천히 지속적으로 아동의 영혼을 잠식해 들어간다. 방임부모로 인한 불안정 애착은 아동의 전 생애주기 발달에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일으킬 수 있다. 부부생활 적응과 부모의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초래하여 세대를 이어가며 방임문제가 대물림되기도 한다(정익중, 2011).

아동방임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아동방임의 예방을 위해서는 방임에 대한 인식개선이 출발점이다.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쟁취하지 못하는 아동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방임문제에 대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학대가 범죄인 것처럼 방임도 범죄이다. 학대의 경우는

이를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지만 방임의 경우는 아직도 사회적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자녀가 방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보호자뿐만 아니라 방임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회일반의 인식도 하루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다.

5)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1) 지표의 현황

① 보호기관심사

가. 아동복지시설 평가 등급

1998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9년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시설평가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상태를 살펴볼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2010년도에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는 <표 III-3-22>와 같다.

표 III-3-22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 등급분포(n=266)

(단위 : 개(%))

	등급구분				
	최우수(A)	우수(B)	양호(C)	보통(D)	미흡(F)
총점	149(56.02)	83(31.20)	18(6.77)	13(4.89)	3(1.13)
시설 및 환경	218(81.95)	33(12.41)	14(5.26)	1(0.38)	-
재정 및 조직운영	71(26.69)	130(48.87)	43(16.17)	11(4.14)	11(4.14)
인적자원관리	96(36.09)	120(45.11)	33(12.41)	12(4.51)	5(1.88)
프로그램 및 서비스	167(62.78)	62(23.31)	18(6.77)	8(3.01)	11(4.14)
아동의 권리	205(77.07)	40(15.04)	7(2.63)	11(4.14)	3(1.13)
지역사회관계	161(60.53)	63(23.68)	20(7.52)	11(4.14)	11(4.14)

* 출처 :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p.131.

평가는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의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 세부항목별 등급 및 총점의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도 평가결과, 총점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관은 149개소(56.0%)이며, 우수 등급 83개소(31.2%), 양호 18개소(6.8%), 보통 13개소(4.9%), 미흡 3개소(1.1%)로 우수 이상이 87.2%, 양호 이하가 12.8%였다. 세부항목별로는 재정 및 조직운영 항목에서 양호 이하가 65개소(24.5%)였으며, 인적자원관리 항목에서 양호 이하가 50개소(18.8%)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 즉, 프로그램이나 시설은 대부분 우수하나 재정 및 조직운영과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는 다소 개선해야 할 기관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권리는 최우수가 205개소(77.1%), 우수가 40개소(15.0%), 양호가 7개소(2.6%), 보통 11개소(4.1%), 미흡 3개소(1.1%)로 시설에서의 아동권리측면은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을 3년에 한 번씩 평가하고 있다. 2001년 아동복지시설 제1기 평가가 있었을 당시에 비해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평가가 있었고 2013년에도 아동복지시설 제5기 평가가 진행되었다.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 준비정도도 매우 우수하고 평가에 대한 거부감도 많이 사라지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아동복지시설 평가는 여전히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평가지표를 사전 개발하여 아동복지시설이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가 직전에서야 평가지표를 공표하여 시설이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인력을 혹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적어도 1년 전부터 지표개발을 준비하여 시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신규 지표의 경우는 지난 3년간이 아니라 지난 1년간을 평가함으로써 늦게 개발된 평가지표에 이전 실적을 꿰맞춰야 하는 수고를 덜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고득점 취득이 아니라 실제 현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적 평가에 의존했던 지난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한다. 횡수나 참여인원 비율 중심으로 양적 평가하는데서 벗어나 아동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했는지, 계획서에 목표와 내용이 명시되었는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지 등을 함께 평가하여 질적 수준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평가는 책임성 확보와 서비스 향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지 상벌의 수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이 아동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주는 것이지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원장을 교체하거나 예산과 인력을 삭감하는 등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지만 평가의 부작용도 생길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 즉, 평가는 초기단계에 하위 기관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조직과 구성원들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평가의 결과를 지나치게

상벌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평가의 경쟁이 격화되어 동일분야 구성원들 간의 연대와 협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속한 분야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특징점을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나뉘야 하지만 평가의 무한경쟁 하에서는 그런 나눔의 행위는 본인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선두주자들도 미숙한 하위시설에 정보를 나눠주지 않고 동반자가 아니라 경쟁상대로 생각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평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이 사라지길 바란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평가에서 발견된 강점에 더욱 집중투자해서 강화하기 보다는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작업에 주력한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평가의 치명적인 부작용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들이 평가항목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시설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질적 수준 제고라는 처음 의도와는 달리 모든 시설들을 차별성이 없는 비슷비슷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평가가 자리를 잡을수록 개척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 그 내부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비슷비슷한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주관부처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음 평가지표 개발과 더불어 선제적으로 만들어 준비해야 한다.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²⁰⁾

1) 장애

(1) 지표의 현황

① 장애 아동·청소년보호

가.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장애아동·청소년 취학률과 관련하여 연도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1>과 같다. 2012년 현재, 특수학교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85,012명이며, 이 중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학생 수는 총 24,932명(29.3%)이고,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총 60,080명

20) 이 절은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홍나미 교수(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집필하였음(김지혜 교수는 각 중분류 항목의 ‘(1) 지표의 현황’을, 홍나미 교수는 ‘(2) 정책제언’을 집필함). 이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자료집(워크숍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70.7%)이다. 일반학교 중에서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학생이 44,43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52.3%이며, 일반학급에 배치된 학생은 15,64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18.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상학생 중 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일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대상학생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1 연도별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현황

(단위 : 명(%))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학생 수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08	23,400(32.7)	37,857	10,227	48,084(67.3)	71,484(100.0)
2009	23,801(31.7)	39,380	12,006	51,386(68.3)	75,187(100.0)
2010	23,944(30.0)	42,021	13,746	55,767(70.0)	79,711(100.0)
2011	24,741(29.9)	43,183	14,741	57,924(70.1)	82,665(100.0)
2012	24,932(29.3)	44,433	15,647	60,080(70.7)	85,012(100.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5.

다음으로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을 살펴보면, <표 III-4-2>와 같다. 특수학교의 학급당 정원은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 특수학급의 학급당 정원도 이와 같다. 현원을 보면, 특수학교의 경우에 유치원이 평균 3.6명, 초등학교가 평균 4.9명, 중학교가 평균 6.2명, 고등학교가 평균 7.5명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에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특수학급의 경우에는 유치원 평균 3.3명, 초등학교 4.3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6.9명으로 모두 정원 이내에 배치되어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대전, 전북 등이 중, 고등학교의 정원 초과 현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2 시·도별 학교과정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7	5.2	6.9	7.6	3.7	4.3	6.1	7.5	3.7	4.6	6.4	7.5
부산	4.0	4.8	6.1	7.0	3.5	4.2	5.8	7.5	3.9	4.4	5.9	7.2
대구	3.6	5.2	5.9	7.2	1.9	4.3	5.7	8.3	2.4	4.5	5.8	7.6
인천	3.6	4.1	6.6	8.4	4.3	5.1	6.7	7.4	4.1	4.9	6.6	7.9
광주	4.0	5.1	5.3	7.1	4.0	4.2	5.4	6.9	4.0	4.4	5.4	7.0
대전	4.5	4.8	7.6	9.2	3.1	5.1	5.1	7.3	3.5	5.0	5.8	8.3
울산	3.0	4.3	5.0	7.4	3.4	4.7	5.4	6.8	3.3	4.6	5.2	7.1
경기	3.4	5.4	6.3	7.3	3.0	4.5	5.2	6.4	3.2	4.7	5.4	6.7
강원	5.8	4.0	5.3	7.4	3.5	3.8	5.9	6.9	4.4	3.9	5.7	7.2
충북	3.3	4.8	5.7	7.2	3.1	5.0	5.6	7.4	3.2	4.9	5.7	7.3
충남	3.4	4.3	5.6	7.3	3.9	4.0	4.9	6.3	3.8	4.0	5.1	6.8
전북	3.4	5	7.4	9.1	2.4	3.7	5.2	7.4	3.0	4.0	6.0	8.5
전남	2.3	5.5	7.7	8.8	3.0	4.4	5.1	6.9	2.9	4.6	5.6	7.6
경북	3.7	4.8	5.9	7.7	2.6	3.7	4.7	6.5	3.1	3.9	5.1	7.2
경남	3.4	4.9	5.2	6.7	4.0	4.4	5.4	6.3	3.8	4.4	5.3	6.5
제주	1.7	4.1	5.2	5.4	3.3	4.3	5.7	8.0	2.6	4.2	5.5	6.1
평균	3.6	4.9	6.2	7.5	3.3	4.3	5.4	6.9	3.5	4.5	5.7	7.2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32.

* 주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나. 장애 청소년 취업률

장애 청소년 취업률은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과 일반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일반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으로 구분하여 취업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특수학교 졸업생의 2012년도 취업률은 39.1%이고,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2012년도 취업률은 60.8%, 일반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은 37.4%로 나타나서 일반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나, 장애정도, 졸업인원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취업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교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의료관련 업종에 7.9%가 취업하였으며, 복지관 등에 7.1%, 포장조립운반 업종에 5.6%가 취업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강원, 경남 지역에서 50%이상의 취업률을 보였다.

표 III-4-3 2012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 취업현황

시·도	졸업생수 (명)	진학자수 (명)	취업자수(명)													취업률 (%)
			공예	포장조립업반	농림수산식품업	제과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이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531	302	2	14	-	-	-	-	29	2	-	4	22	53	126	55.0
부산	181	90	1	5	-	-	1	-	6	1	-	-	7	33	54	59.3
대구	159	50	-	2	-	-	-	-	6	-	-	-	4	4	16	14.7
인천	126	59	-	2	-	-	-	-	6	1	-	-	10	19	38	56.7
광주	94	36	-	-	-	-	-	-	6	-	-	-	1	1	8	13.8
대전	79	55	-	3	-	-	-	-	9	-	-	-	-	5	17	70.8
울산	51	31	-	-	-	-	1	-	-	-	-	-	-	-	1	5.0
경기	356	157	-	15	1	-	6	-	-	2	-	-	19	31	74	37.2
강원	95	73	-	4	-	2	-	-	9	-	-	-	-	4	19	86.4
충북	132	92	-	1	-	-	1	-	7	-	-	-	-	8	17	42.5
충남	87	62	-	-	-	-	-	-	-	-	-	-	1	2	3	12.0
전북	136	69	-	7	-	1	1	-	3	1	-	-	1	2	16	23.9
전남	111	27	-	3	2	-	3	-	9	1	-	-	8	1	27	32.1
경북	153	114	-	-	-	-	-	-	-	-	-	-	2	1	3	7.7
경남	135	104	-	7	1	-	-	-	-	2	2	-	1	6	19	61.3
제주	43	15	-	-	-	-	-	-	-	-	-	-	4	1	5	17.9
계	2,469	1,336	3	63	4	3	13	-	90	10	2	4	80	171	443	39.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3.

*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2)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3) 이료 : 이료술은 체표에 물리적 자극을 가하여 피로 회복과 건강 증진을 꾀할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의료유사업에 속하는 처치 방법. 이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의 수기요법 및 침, 뜸, 전기치료 등의 기타 자극요법을 총칭함(출처 : 서울맹학교 홈페이지 <http://www.bl.sc.kr/sub/bl/youngsan/sub01/index.do>)

다음으로 일반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복지관 등에 21.2%가 취업을 했고, 그 다음으로 포장조립업반업에 10.3%, 서비스업에 7.4%가 취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제주가 60%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4 2012년도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취업현황

시·도	졸업생수 (명)	진학자수 (명)	취업자수(명)													취업률 (%)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림수산식품	제조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401	55	3	17	-	1	-	-	-	48	17	21	94	31	232	67.1
부산	151	62	-	10	2	2	1	-	-	4	1	1	24	4	49	55.1
대구	112	87	-	4	-	-	-	-	-	1	-	-	3	5	13	52.0
인천	169	55	7	10	-	-	-	-	-	3	1	1	13	13	48	42.1
광주	68	44	-	3	-	-	4	-	-	1	-	-	6	2	16	66.7
대전	98	48	-	3	-	-	-	-	-	6	3	3	6	3	24	48.0
울산	57	40	-	-	-	-	-	-	-	2	-	-	1	1	4	23.5
경기	689	192	1	47	3	9	3	4	-	34	10	11	119	85	326	65.6
강원	64	24	-	6	-	-	-	-	-	2	-	4	5	14	31	77.5
충북	99	25	-	17	1	-	-	-	-	8	1	3	20	3	53	71.6
충남	167	81	-	21	2	-	-	-	-	3	3	1	11	8	49	57.0
전북	65	29	-	8	-	-	-	-	-	1	-	1	5	3	18	50.0
전남	115	28	-	9	5	1	-	-	-	3	2	5	12	9	46	52.9
경북	136	58	-	4	2	-	1	-	-	3	-	1	18	13	42	53.8
경남	147	63	-	8	-	1	1	-	-	2	-	1	14	18	45	53.6
제주	38	18	4	4	-	1	-	-	-	2	1	-	3	2	17	85.0
계	2,576	909	15	171	15	15	10	4	-	123	39	53	354	214	1,013	60.8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4.

*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2)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일반고등학교의 일반학급 졸업생 중 진학자를 제외한 취업대상자들은 포장조립운반업에 5.7%, 복지관 등에 2.7%, 서비스업에 2.5%가 취업한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대전, 강원, 충남, 제주가 50% 이상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5 2012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취업현황

시·도	졸업자수 (명)	진학자수 (명)	취업자수(명)													취업률 (%)
			교육	포장조리교반	농림수산식품	제조제빵	IT및정보서비스	상업	의료	서비스업	사무직	노무직	복지관등	기타	소계	
서울	163	72	-	3	-	1	-	-	-	1	3	-	3	20	31	34.1
부산	53	35	-	1	-	-	-	-	-	1	-	-	3	3	8	44.4
대구	90	58	-	2	-	-	-	-	-	-	-	-	2	6	10	31.3
인천	29	18	-	1	-	-	-	-	-	2	-	-	-	1	4	36.4
광주	12	10	-	-	-	-	-	-	-	-	-	-	-	-	-	-
대전	51	36	-	4	-	-	-	-	-	1	-	1	-	3	9	60.0
울산	56	45	-	1	-	-	-	-	-	1	-	-	-	-	2	18.2
경기	236	104	-	3	-	3	-	-	-	3	3	-	2	36	50	37.9
강원	33	18	-	2	-	-	-	-	-	1	-	1	1	3	8	53.3
충북	72	31	-	5	-	-	-	-	-	1	1	2	-	10	19	46.3
충남	30	16	-	3	-	-	-	-	-	-	-	-	-	6	9	64.3
전북	50	29	-	1	-	1	-	-	-	-	-	-	-	5	7	33.3
전남	39	7	-	-	1	-	-	-	-	-	-	2	3	3	9	28.1
경북	59	27	-	3	-	1	1	1	-	-	-	2	-	3	11	34.4
경남	95	51	-	-	-	-	-	-	-	2	-	1	-	5	8	18.2
제주	26	15	-	1	-	1	-	-	-	-	-	1	-	7	10	90.9
계	1,094	572	-	30	1	7	1	1	-	13	7	10	14	111	195	37.4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p.115.

* 주 : 1) 취업률 = {취업자수/(졸업자수-진학자수)} × 100]

2) 복지관 등 :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2) 정책제언

장애아동·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표로 장애아동·청소년의 취학률과 취업률을 살펴보았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배치현황을 보면,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수는 감소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Disability Rights Convention)」에서 강조하고 있는 통합교육 제공의 원칙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흐름도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지표로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하면(교육부, 2013b),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2조 6항). 이처럼 통합교육은 평등과 장애로 인하여 차별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급속하게 증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교육 대상자의 통계수치가 통합교육의 발전수준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교육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합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을 받는 물리적 통합을 보장할 뿐 아니라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적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박승희, 2003). 즉, 통합교육이란 장애학생이 일반학생과 단지 통합교실에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소속감을 가지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평가 등이 수정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학교에 배치된 장애학생들에게 기존의 교육 환경에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의 보편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일반학생의 학습권을 주장하며 장애학생을 배제시키고 통제하는 것은 보편성을 내세우지만 장애학생의 인권은 고려하지 못하여 기득권을 옹호하는 일이 될 것이다(박래균, 2013). 따라서 장애 학생의 신체 특성이나 경험,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교육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회의 평등 뿐 아니라 결과의 평등까지 결과의 수준이 조정되는 등 장애학생에게 개별화교육과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지원 및 인력확보를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학교장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학교장의 인권감수성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학생의 교육지원에 대한 명시화된 법령을 통해서 보다 정교한 지원이 뒷받침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반학생에게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버릴 수 있도록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일반학생들은 원반 담임선생님과 공조체제로 장애학생의 학습 발달 상황과 행동에 대해 공유하고, 원반에 특수학급을 초대하여 장애학생과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통한 수업이 운영된다면 통합교육의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장애청소년의 취업률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은 편인데, 이는 실제로 많은 장애 학생들이 성인기 진입을 위해 필요한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성인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에서 진로·직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육과학기술부(2010.1.7.)에서 「장애 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장애학생의 성공적인 전환과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재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안이 효과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교육부(2013b)에서 추진 중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추진하고,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과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 청소년의 취업은 해당 직무기술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지원 구조가 필요하므로, 실제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이영선·김환희, 2013). 이러한 접근은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장애 청소년의 취업률 상황을 보완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생존 및 발달

(1) 지표의 현황

① 생존과 발달 보장

가. 15-19세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15-19세 여성의 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표 III-4-6>과 같다.

2011년도의 15-19세 여성 청소년의 출산율은 1,000명당 1.8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는 1983년도에 13.0명, 1993년도 4.4명, 2003년도 2.5명으로 점차 출산율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5-19세 청소년의 경우에 대부분 미혼인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표 III-4-6 15-19세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명)

연도	15-19세 출산율 ¹⁾	합계출산율 ²⁾
1983	13.0	2.06
1988	5.7	1.55
1993	4.4	1.65
1998	2.8	1.45
2003	2.5	1.18
2004	2.3	1.15
2005	2.1	1.08
2006	2.2	1.12
2007	2.2	1.25
2008	1.7	1.19
2009	1.7	1.15
2010	1.8	1.23
2011	1.8	1.24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편)

* 주 : 1) 15-19세 출산율 :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 당 명

2) 합계 출산율 :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명)

나. 0세의 기대여명

0세의 기대여명이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평균수명”이다(임희진·김현신, 2011: 137).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0세 기대여명은 81.20세이며, 남자는 77.65세, 여자는 84.45세로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8세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년에는 기대수명이 68.44였으며, 1995년에는 73.53세, 2000년도는 76.02세, 2005년도는 78.63세, 2010년도는 80.79세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III-4-7 0세의 기대여명

(단위 : 세)

연도	남자	여자	전체
1985	64.45	72.82	68.44
1990	67.29	75.51	71.28
1995	69.57	77.41	73.53
2000	72.25	79.60	76.02
2003	73.86	80.81	77.44
2004	74.51	81.35	78.04
2005	75.14	81.89	78.63
2006	75.74	82.36	79.18
2007	76.13	82.73	79.56
2008	76.54	83.29	80.08
2009	76.99	83.77	80.55
2010	77.20	84.07	80.79
2011	77.65	84.45	81.20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 주 :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년 수

다. 영아사망률

영아사망률은 당해년도 출생아 가운데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수를 출생아 천명당으로 나타내는 보건지표로 국제적으로 국민 보건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된다(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9).

지표는 생존기간별로 구분을 하는데 출생한지 0-27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신생아 사망이라고 하며, 생후 28-364일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는 신생아 후기 사망이라고 한다. 영아사망이란 이를 모두 포함하여 출생 후 0-364일 이내에 사망하는 것을 지칭한다. 2011년도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천명당 3.0명으로 2010년(3.2명)대비 5.1% 감소하였으며,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에서 제공한 e-나라지표에 의하면, 2010년 OECD 34개국의 영아사망률은 평균 4.3명으로

한국(3.2명)이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스웨덴(21명)이나 일본(23)보다는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8 연도별 영아사망률

(단위 : 명/1,000명 당)

	2007			2008			2009			2010			2011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신생아사망률	2.2	1.9	2.1	2.0	1.8	2.0	1.8	1.7	1.7	2.1	1.5	1.8	2.0	1.5	1.7
신생아후기사망률	-	-	-	-	-	-	1.5	1.4	1.5	1.6	1.2	1.4	1.6	1.2	1.3
영아사망률	3.8	3.4	3.6	3.6	3.4	3.5	3.3	3.1	3.2	3.7	2.7	3.2	3.4	2.7	3.0

* 출처 :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주이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9)

* 원자료 : 통계청(각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조사

* 주 : 1) 영아사망률 : 연간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수

2) '08조사(2005~2006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2년주기 조사로 변경

3) '10년조사(2007~2008 영아모성사망조사)부터 신생아후기 사망률은 산출하지 않음

라. 아동·청소년 사망률

0-24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자 수 및 사망률은 <표 III-4-9>와 같다. 2011년 연령별 사망률을 살펴보면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가 0세 318.9명, 1-4세가 20.9명, 5-9세가 10.0명, 10-14세가 12.6명, 15-19세가 28.3명, 20-24세가 41.7명으로 0세인 영아를 제외하면, 15세 이상의 청소년이 14세 이하보다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14세를 제외한 연령은 조금씩 사망률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0-14세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슷한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표 III-4-9 연령별(0-24세) 사망자 수 및 사망률

연령별	2008		2009		2010		2011	
	사망자수(명)	사망률 ¹⁾	사망자수(명)	사망률 ¹⁾	사망자수(명)	사망률 ¹⁾	사망자수(명)	사망률 ¹⁾
0세	1,580	345.5	1,415	325.7	1,506	345.0	1,435	318.9
1-4세	455	24.7	405	22.0	386	20.9	389	20.9
5-9세	386	13.4	384	14.0	277	10.8	239	10.0
10-14세	431	12.5	441	13.1	417	12.7	402	12.6
15-19세	1,004	29.9	1,073	31.2	1,034	29.4	1,003	28.3
20-24세	1,525	47.3	1,507	47.9	1,411	45.1	1,318	41.7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 주 :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의 연령별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표 III-4-10>과 같다. 2011년에 1-9세의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운수사고, 선천기형의 순으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10-19세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이었다. 20-29세는 10-19세와 마찬가지로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악성신생물(암)의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2008년도부터 연도별로 살펴보면, 10-19세, 20-29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10 연령별 3대 사망원인 구성비 및 사망률

		연령					
		1~9세		10~19세		20~29세	
		사망원인	사망률 ¹⁾	사망원인	사망률 ¹⁾	사망원인	사망률 ¹⁾
2008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자해(자살)	22.6
	2순위	악성신생물(암)	2.7	고의적자해(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암)	2.9	악성신생물(암)	5.8
2009년	1순위	운수사고	3.2	운수사고	5.0	고의적자해(자살)	22.6
	2순위	악성신생물(암)	2.7	고의적자해(자살)	4.6	운수사고	10.4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암)	2.9	악성신생물(암)	5.8
2010년	1순위	운수사고	2.8	고의적자해(자살)	5.2	고의적자해(자살)	24.4
	2순위	악성신생물(암)	2.1	운수사고	4.8	운수사고	9.0
	3순위	선천기형	1.3	악성신생물(암)	3.0	악성신생물(암)	5.0
2011년	1순위	악성신생물(암)	2.6	고의적자해(자살)	5.5	고의적자해(자살)	24.3
	2순위	운수사고	2.1	운수사고	4.7	운수사고	7.9
	3순위	선천기형	1.4	악성신생물(암)	3.0	악성신생물(암)	5.3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 :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마. 사고사망률

아동·청소년의 사고 사망률과 사망의 외인은 <표 III-4-11>과 같다. 사고사망률이란 운수사고, 추락사고, 익사사고, 화재사고, 중독사고, 자살, 타살로 인해 인구 10만명당 사망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다. 2011년의 연령별 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0세가 인구 10만명당 16.9명, 1~9세가 4.8명, 10~19세가 12.7명, 20~29세가 36.8명으로 20세 이상의 사고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0세, 10~19세, 1~9세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1 사고 사망률

(단위 : 명/10만명 당)

연령	2008	2009	2010	2011	사망의 외인						
					운수 사고	추락 사고	익사 사고	화재 사고	중독 사고	자살	타살
0세	19.7	18.2	18.6	16.9	1.3	0.9	—	—	—	—	4.4
1-9세	7.5	6.7	5.5	4.8	2.1	0.7	0.7	0.2	—	—	0.7
10-19세	12.7	13.9	12.7	12.7	4.7	0.2	0.7	0.2	—	5.5	0.4
20-29세	39.4	41.0	39.0	36.8	7.9	0.7	0.9	0.1	0.1	24.3	0.7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 주 : 1) 사망률 :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수

2) 운수사고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육상, 수상, 항공의 교통 및 비교통 사고(논발의 트랙터 사고 등)를 포함, 반면 교통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사고를 의미

3) 추락 사고는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를 포함

연령별 사망원인을 보면, 0세는 타살이 인구 10만명당 44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운수사고(13명)와 추락사고(0.9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0세 영아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부주의나 보호자에 의한 살해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1-9세는 운수사고가 인구 10만명당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추락사고와 익사사고, 타살이 모두 0.7명이었다. 10-19세는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5.5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운수사고(4.7명), 익사사고(0.7명)의 순이었다. 20-29세는 자살이 인구 10만명당 2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수사고(7.9명), 익사사고(0.9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10-19세를 제외한 다른 연령에서는 사고사망률이 조금씩 감소하였다.

바. 자살률

통계청의 2011년도 아동·청소년 자살률 조사에 의하면, 10-14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8명이 고, 15-19세는 8.9명이며, 20-24세는 17.7명, 25-29세는 30.1명으로 10세이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로 살펴보면, 10-14세는 남녀 차이가 별로 없으나 15세 이후부터는 남자청소년의 자살률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의 증가에 따라 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는 전 연령층에서 최근 10년 동안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최근 5년간 자살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원인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표 III-4-12 자살률

(단위 : 명/10만명 당)

연령	남			여			전체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2001	2006	2011
10-14세	0.7	0.7	1.8	1.3	1.2	1.7	0.9	1.0	1.8
15-19세	5.8	6.6	10.1	4.9	5.9	7.6	5.3	6.2	8.9
20-24세	12.2	12.5	20.3	7.4	11.3	14.7	9.8	11.9	17.7
25-29세	17.2	17.6	35.2	7.3	13.3	24.6	12.4	15.5	3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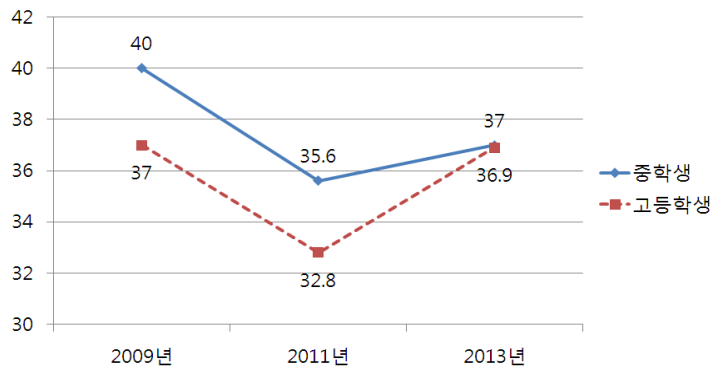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최근 1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본 연구에서 질문한 결과는 <표 III-4-13>과 같다.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63.1%였으며, 가끔 생각한다는 32.3%, 자주 생각한다는 4.6%로 나타났고, 성별과 학교유형,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별로는 여학생이 최근 1년간 자살을 생각해 본 경험이 있다(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는 응답이 45.8%, 남학생이 28.9%로 여학생의 자살생각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일반/특목/자율고 37.3%, 중학교 36.9%, 특성화고 34.9%의 순으로 일반 학생의 자살생각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대도시 지역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율이 38.5%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는 조손가정의 청소년의 49.3%가 자살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가족유형에 비해 높았으며, 학업성적은 하위인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율(44.5%)이 중상위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층 청소년의 자살생각 비율(44.9%)가 중상위층에 비해 높았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4-13 최근 1년간 자살 생각 여부

(단위 : %(명))

구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	전체(N)	χ^2
전체		63.1	32.3	4.6	100.0(6,669)	
성별	남자	71.1	25.7	3.2	100.0(3,497)	71.053***
	여자	54.2	39.6	6.2	100.0(3,172)	
학교 유형	중학교	63.0	31.5	5.4	100.0(3,269)	51.723***
	일반/특목/자율고	62.7	33.2	4.1	100.0(2,791)	
	특성화고	65.1	32.2	2.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61.5	33.7	4.8	100.0(2,776)	44.47***
	중소도시	64.4	30.9	4.7	100.0(3,017)	
	읍면지역	63.7	32.4	3.9	100.0(876)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3.8	31.9	4.3	100.0(5,941)	48.09***
	한부모가정	57.4	35.6	7.0	100.0(571)	
	조손가정	50.8	36.4	12.9	100.0(46)	
	기타	60.4	32.9	6.7	100.0(100)	
학업 성적	상	68.2	28.3	3.5	100.0(1,738)	5.316*
	중	66.2	30.0	3.7	100.0(2,633)	
	하	55.5	38.0	6.5	100.0(2,289)	
경제적 수준	상	64.7	31.6	3.7	100.0(2,551)	1.7
	중	66.1	29.8	4.1	100.0(2,626)	
	하	55.1	37.8	7.1	100.0(1,481)	

* $p<0.05$, *** $p<0.001$ 

* 주 : 1) '가끔 있다+자주 있다'='있다'로 계산

2) 문구: 2009년, 2011년 '자살'에서 2013년 '죽고 싶다는'으로 변경.

3) 문구: 2009년 '전혀 없다, 가끔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자주 생각해 본 적이 있다'에서 2011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가끔 생각한다, 자주 생각한다'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III-4-1】 최근 1년 동안 자살생각 여부(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청소년이 최근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3개년 추이비교는 <그림 III-4-1>과 같다. 가끔 생각한다와 자주 생각한다를 생각한 적이 있다고 분석한 결과, 2009년에는 중학생의 40.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1년도에는 35.6%, 2013년도에는 37.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2009년에 37.0%가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2011년에는 32.8%, 2013년에는 3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4-14>와 같다. 자살생각을 한 청소년 중 40.4%가 그 원인이 학교성적이었으며, 가족 간의 갈등이 27.6%,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이 9.6%, 경제적 어려움이 2.0%로 성적으로 인한 원인이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학교유형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인 학교 성적때문이라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았으며, 특성화고 학생들은 가족간의 갈등이 28.1%로 더 높은 분포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가장 많았으며 (41.6%),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청소년들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과 중위층은 학교성적으로 인해, 하위층은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해 자살을 더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14 자살 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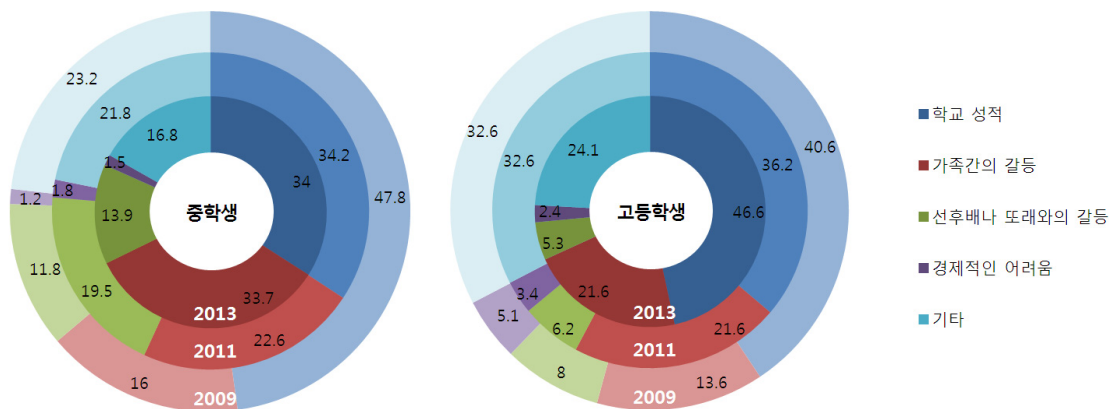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학교 성적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 폭력 등)	경제적 어려움	기타	전체(N)	χ^2
학교 유형	전체	40.4	27.6	9.6	2.0	20.5	100.0(2,443)	177.124***
	중학교	34.0	33.7	13.9	1.5	16.8	100.0(1,205)	
	일반/특목/자율고	50.5	20.3	5.2	1.8	22.2	100.0(1,031)	
	특성화고	27.1	28.1	5.9	5.6	33.3	100.0(2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1.6	26.7	9.5	1.6	20.6	100.0(2,138)	19.74***
	한부모가정	31.5	35.2	9.5	4.5	19.4	100.0(239)	
	조손가정	33.6	38.4	4.8	5.6	17.6	100.0(23)	
	기타	37.6	23.4	16.4	3.5	19.1	100.0(40)	
경제적 수준	상	44.7	25.5	9.1	0.5	20.2	100.0(895)	17.31**
	중	43.8	25.2	10.7	0.9	19.4	100.0(884)	
	하	30.1	33.7	8.6	5.5	22.1	100.0(659)	

** $p < 0.01$, *** $p < 0.001$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4-2>과 같다. 먼저, 중학생의 경우에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7.8%, 2011년 34.2%, 2013년 34.0%로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16.0%, 2011년 22.6%, 2013년 33.7%로 증가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2009년 40.6%, 2011년 36.2%, 2013년 46.6%로 2013년도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살생각도 2009년 13.6%, 2011년 21.6%, 2013년 21.6%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 : 1) 2009년에만 '외로움'이라는 이유가 있어서 기타에 포함시킴

2) 문구: 2009년 '친구관계문제'에서 2011년 '친구와의 갈등'으로, 2013년에는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으로 변경

3) 문구: 2009년, 2011년 '가정불화'에서 2013년 '가족 간의 갈등'으로 변경

【그림 III-4-2】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

사. 고민거리 대화상대

자신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III-4-15>와 같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9.3%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친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어머니 34.4%, 형제/자매 5.4%, 아버지 5.3%의 순이었고, 담임선생님(1.0%), 학교 상담선생님(0.8%), 이웃이나 친척(0.6%), 청소년 상담관련 센터(0.4%)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어머니와 고민을 나눈다는 응답이 51.3%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친구와 고민을 나누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가족유형에서는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부모보다 친구(46.1%)와 고민을 나누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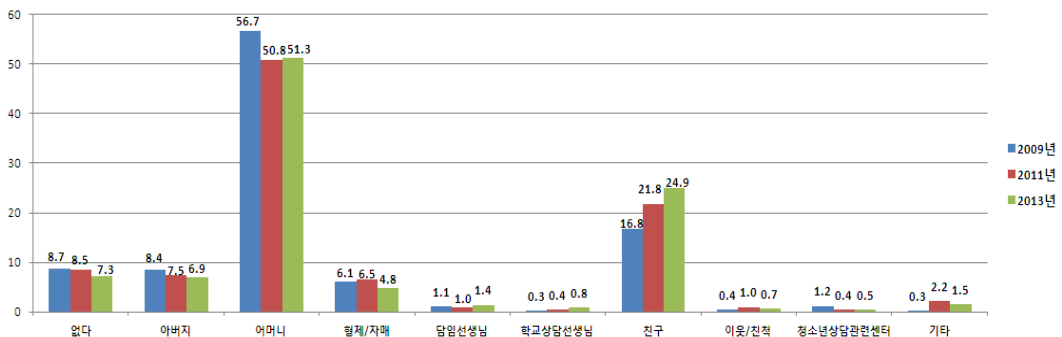
표 III-4-15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없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담임 선생님	학교 상담 선생님	친구	이웃 /친척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	기타	전체(N)	χ^2
전체		9.3	5.3	34.4	5.4	1.0	0.8	41.6	0.6	0.4	1.2	100.0(9,3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7.3	6.9	51.3	4.8	1.4	0.8	24.9	0.7	0.5	1.5	100.0(2,784)	491.755***
	중학교	11.1	5.2	28.6	4.8	1.0	1.0	46.1	0.6	0.3	1.3	100.0(3,231)	
	일반/특목/자율고	8.5	3.6	26.6	6.8	0.8	0.6	51.0	0.7	0.4	1.1	100.0(2,768)	
	특성화고	11.8	5.8	23.7	4.9	0.4	0.3	51.9	0.8	0.1	0.3	100.0(6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8.8	5.0	35.8	5.3	1.0	0.7	41.4	0.5	0.4	1.1	100.0(8,433)	86.605***
	한부모가정	13.6	7.6	24.2	5.3	1.1	1.3	42.7	1.3	0.4	2.5	100.0(750)	
	조손가정	22.0	2.9	20.5	12.7	1.1	1.3	28.2	6.1	0.0	5.1	100.0(80)	
	기타	5.3	9.0	13.5	9.1	3.6	0.0	58.3	0.0	0.4	0.8	100.0(101)	
경제적 수준	상	7.1	6.3	40.2	4.8	1.1	0.6	37.5	0.6	0.4	1.5	100.0(4,255)	111.921***
	중	9.0	4.7	32.2	5.8	1.0	0.9	44.6	0.8	0.3	0.7	100.0(3,486)	
	하	15.5	4.0	24.4	6.0	0.7	0.8	46.1	0.6	0.4	1.5	100.0(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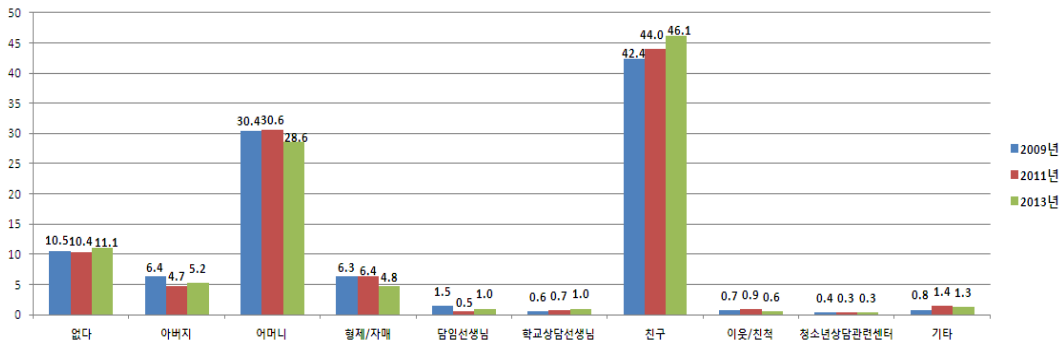
*** $p < 0.001$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3>, <그림 III-44>, <그림 III-45>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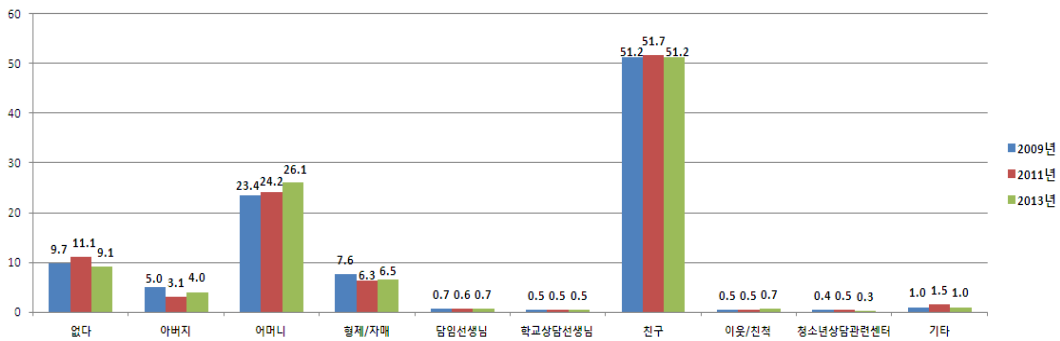
【그림 III-4-3】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초등학생의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011년과 2013년은 감소하였으며, 친구는 2009년 16.8%에서 2011년 21.8%, 2013년 24.9%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4-4】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중학생)

중학생의 경우, 아버지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에 6.4%이고, 2011년에는 4.7%로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5.2%로 다시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어머니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009년 30.4%, 2011년 30.6%, 2013년 2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는 2009년 42.4%에서 2011년 44.0%, 2013년 46.1%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4-5】 자신의 고민/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3개년 추이 :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초·중학생과는 달리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어머니라는 응답이 2009년 23.4%에서 2011년 24.2%, 2013년 26.1%로 다소 증가하고 있었으며, 친구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연도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아. 범죄 피해건수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는 <표 III-4-16>과 같다. 2011년도에 만 13세에서 20세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는 총 59,820건이며, 이는 청소년 인구 1,000명당 11.0건에 해당한다. 성별로는 남자 청소년은 인구 1,000명당 12.8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여자 청소년은 8.9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3년도에 청소년 인구 1,000명당 5.5명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13.1명이었다. 2010년도부터는 다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III-4-16 청소년의 범죄 피해건수

연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청소년 ²⁾ 전체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¹⁾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¹⁾	피해 건수(건)	추계 인구수(명)	피해율 ¹⁾
2003	17,892	2,751,257	6.5	10,858	2,520,331	4.3	28,750	5,271,588	5.5
2004	25,000	2,705,387	9.2	17,038	2,463,396	6.9	42,038	5,168,783	8.1
2005	26,733	2,703,107	9.9	17,116	2,447,997	7.0	43,849	5,151,104	8.5
2006	27,526	2,729,734	10.1	17,355	2,450,374	7.1	44,881	5,180,108	8.7
2007	34,487	2,758,794	12.5	20,280	2,461,537	8.2	54,767	5,220,331	10.5
2008	38,680	2,797,367	13.8	22,580	2,480,493	9.1	61,260	5,277,860	11.6
2009	44,797	2,831,004	15.8	24,895	2,501,424	10.0	69,692	5,332,428	13.1
2010	39,695	2,841,982	14.0	24,363	2,518,442	9.7	64,058	5,360,428	12.0
2011	37,034	2,882,185	12.8	22,786	2,565,557	8.9	59,820	5,447,742	11.0

* 출처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홍영오(2008) 재구성

* 원자료 :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2008~2011년 자료는 2009~2012 범죄분석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임.

* 주 : 1) 피해율 : 인구 1천명당 피해건수 추계인구는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KOSIS: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이용

2) 청소년 : 만 13세에서 만 20세

자.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III-4-17>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우리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은 52.9%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7.1%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7.7%로 여학생(47.6%)보다 많았으며, 학교 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3.5%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48.6%, 일반/특목/자

율고 49.2%, 특성화고 44.0%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경우에 우리 동네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9.5%였고, 중위층은 50.5%, 하위층이 41.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4-17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0	36.1	42.6	10.3	100.0(9,493)	
성별	남자	10.4	31.9	44.6	13.1	100.0(4,975)	116.408***
	여자	11.7	40.6	40.3	7.3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	26.9	44.5	19.0	100.0(2,819)	73.741***
	중학교	12.7	38.8	41.3	7.3	100.0(3,269)	
	일반/특목/자율고	10.1	40.6	43.3	5.9	100.0(2,796)	
	특성화고	13.2	42.8	36.7	7.3	100.0(609)	
경제적 수준	상	9.6	30.9	44.7	14.8	100.0(4,305)	41.086***
	중	10.3	39.2	42.8	7.7	100.0(3,526)	
	하	16.2	42.8	36.7	4.3	100.0(1,653)	

*** $p < 0.001$

차.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률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II-4-18>과 같다. 조사에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은 56.8%였으며,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3.2%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5.1%로 여학생(47.6%)보다 높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53.8%, 일반/특목/자율고 51.6%, 특성화고 42.5%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의 경우에 우리 동네가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4%였고, 중위층은 55.2%, 하위층이 4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과 학교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4-18 현재 거주하는 동네의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11.5	31.7	43.9	12.9	100.0(9,510)	
성별	남자	10.1	24.8	47.9	17.2	100.0(4,981)	21.678**
	여자	13.0	39.4	39.4	8.2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4	23.2	44.8	23.6	100.0(2,826)	185.781***
	중학교	12.6	33.6	44.3	9.5	100.0(3,279)	
	일반/특목/자율고	12.2	36.1	44.3	7.3	100.0(2,795)	
	특성화고	15.9	41.6	35.4	7.1	100.0(609)	
경제적 수준	상	9.5	26.1	45.8	18.6	100.0(4,313)	65.895***
	중	11.1	33.7	45.6	9.6	100.0(3,533)	
	하	17.5	42.1	35.2	5.2	100.0(1,655)	

** $p < 0.01$, *** $p < 0.001$

(2) 정책제언

이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생존과 발달에 관련한 지표를 살펴보았다. <표 III-4-9>의 연령별 사망자 수 및 사망률에서 보듯이 15-19세와 20-24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은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자살의 범위를 자살생각과 자살시도까지 포함할 때 자살의 심각성은 더욱 분명해진다. <표 III-4-13>에서와 같이 최근 1년간 죽고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가끔 생각한다가 32.3%, 자주 생각한다가 4.6%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자살을 생각했던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시작한 첫 해 안에 자살계획과 시도를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Borges, Behjet, Medina-Mora, Orozco, & Nocl, 2008), 매우 주목해야 할 통계수치라고 볼 수 있다.

자살생각을 하게 된 주된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III-4-2>와 같이 중학생은 학교성적으로 인한 자살생각은 감소하였지만 가족 간의 갈등은 증가하였으며, 고등학생은 학교성적과 가족 간의 갈등이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정신건강 면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고민은 표면적으로 성적이나 진로의 어려움으로 드러나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즉, 자신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부모와 친구들로부터 공감을 받지 못하면 결국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 자살을 소망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증가하는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2011년 3월 30일에 제정하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2.3.30.), 2009년-2013년간의

『제2차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보건복지부, 2008.12.23.)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2011.4.8.)에서는 2011년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 체계는 학생들의 자존감 증진 및 생명존중의식을 고취시키는 일상 예방교육인 “예방활동”, 우울 및 자살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자살시도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위기관리”, 그리고 불행하게 자살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의 “사후대응”으로 구성되었으며, 단계 상황별 적극적이며 신속하게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학교 내·외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되었다. 이처럼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여 정부가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자살예방 프로그램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자살예방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지만, 각 분야별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들은 기관의 연계와 협조가 유기적이지 못하고,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자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 부처에서 제시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내에서 위기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운영한다면 죽음 앞에 내몰린 청소년의 생존과 발달권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뒷받침된다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생명존중과 관련된 예방활동과 위기관리 체계를 구축과 함께, 학교가 자체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교사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등 배제를 줄여 소속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에 대한 현황에서 <표 III-4-15>에서와 같이, 친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위기 아동·청소년을 돕는데 또래관계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다른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또래 조정 프로그램’이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한다는 조사결과(교육부, 2013.4.23.)는 이를 뒷받침한다. 또래상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뿐 아니라 자살을 포함한 위기 문제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보건복지부(2012.9.12.)의 자살예방 원탁회의에서 언급되었듯이, 언론은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은 충동적인 성향이 있으므로 자살과 관련한 자극적인 언론보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체계』가 자살예방과 위기관리 강화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3) 보건서비스

(1) 지표의 현황

① 건강관리조치

가. 보건교사 배치현황

교육부(2013b)의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현황은 <표 III-4-19>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전체 초등학교 5,895개교 중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학교는 4,219개교로 배치율은 71.6%이다. 중학교는 전체 3,162개교 중 1,623개교만이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어서 51.3%의 배치율을 보였으며, 고등학교는 2,303개교 중 1,568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배치율 68.1%), 특수학교는 156개교 중 133개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다(배치율 85.3%).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교사의 배치율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51.3%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위해 배치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표 III-4-19 보건교사 배치현황

(단위 : 명)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전체 학교 수	5,895	3,162	2,303	156	11,516
보건교사배치(배치율(%))	4,219(71.6)	1,623(51.3)	1,568(68.1)	133(85.3)	7,543(65.5)

* 출처 : 교육부(2013c).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p.5.

*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2) 교육통계서비스

나. 의료급여 대상자 수

『의료급여법』에 의하면 의료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노숙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북한이탈주민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에 의하면, 2011년도에 0세-24세의 의료급여 대상자는 총 473,465명이며, 연령별로는 10-19세 청소년이 다른 연령에 비해 대상자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의료급여 대상 아동·청

소년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8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II-4-20 의료급여 대상자 수

(단위 : 명)

연도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합계
2003	4,428	33,012	88,496	126,586	148,669	61,932	463,123
2004	5,261	34,487	92,169	137,618	149,950	64,351	483,836
2005	8,258	67,917	141,744	165,317	159,314	69,113	611,663
2006	5,210	61,829	148,713	184,578	172,483	68,080	640,893
2007	7,070	53,523	141,445	190,788	185,232	66,647	644,705
2008	6,801	46,386	129,235	190,752	197,224	69,333	639,731
2009	5,910	29,959	73,023	146,222	190,204	76,037	521,355
2010	6,290	29,296	63,926	136,668	190,850	81,384	508,414
2011	5,675	28,606	55,665	121,758	178,942	82,819	473,465

* 출처 : 보건복지부(2012b),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p.350.

다. 학교급식 만족도

아동·청소년의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4-21>과 같다. 응답한 전체 학생 중 학교급식에 만족한다(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는 학생은 75.3%이고, 만족하지 않는다(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고 응답한 학생은 2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86.3%, 중학교는 77.6%, 일반/특목/자율고는 64.0%, 특성화고 62.5%로 고등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규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대도시 지역 학생들은 만족한다는 응답이 76.5%, 중소도시는 73.2%, 읍면지역 78.4%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만족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층 학생이 급식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78.5%, 중위층 학생은 74.6%, 하위층 학생은 68.3%로 하위층 학생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1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전체(N)	χ^2
전체		6.0	18.7	58.1	17.2	100.0(9,483)	
학교 유형	초등학교	2.8	10.8	59.2	27.1	100.0(2,825)	27.111***
	중학교	4.4	17.9	60.6	17.0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10.0	26.1	55.0	9.0	100.0(2,786)	
	특성화고	11.5	25.9	53.8	8.7	100.0(604)	
지역 규모	대도시	6.0	17.5	57.8	18.7	100.0(3,926)	30.504***
	중소도시	6.5	20.3	57.4	15.8	100.0(4,380)	
	읍면지역	4.4	17.1	61.6	16.8	100.0(1,176)	
경제적 수준	상	5.4	16.1	57.4	21.1	100.0(4,305)	27.294***
	중	5.8	19.6	59.8	14.8	100.0(3,522)	
	하	8.2	23.6	56.5	11.8	100.0(1,642)	

*** $p < 0.001$

라. 학교급식 안전현황

통계청의 「사회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통계청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3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2012년도에 사회조사에 응답한 13-24세 청소년 중 학교 및 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급식의 안전에 대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경우(매우 안전, 약간 안전)는 26.0%, 보통은 49.5%, 불안(약간불안, 매우불안)은 24.6%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3-19세 청소년이 20-24세 청소년에 비해 안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2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에 대한 인식

(단위 : %)

	매우 안전	약간 안전	보통	약간 불안	매우 불안
2012	4.7	21.3	49.5	20.5	4.1
13-19세	6.1	24.1	47.7	17.9	4.1
20-24세	2.5	16.8	52.2	24.5	4.0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p.37.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청소년들의 주된 이유는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부족'이 3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 28.1%,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가 14.0%의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13-19세 청소년은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비율이 더 높았고, 20-24세 청소년은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이라는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4-23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 안전이 불안한 이유

(단위 : %)

	정부의 관리미흡	급식관리자의 식품안전의식 부족	언론의 급식에 대한 불안감 보도	실제 안전하지 못한 식품이 급식되는 것을 본적이 있기 때문	급식안전에 대한 교육·홍보 부족	기타
2012	19.5	33.2	14.0	28.1	4.3	0.9
13-19세	18.5	30.0	14.2	31.0	4.9	1.4
20-24세	20.6	37.1	13.8	24.7	3.6	0.2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 통계. p.37.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2.

* 주 : 학교 및 보육시설의 급식안전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

(2) 정책제언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표로 보건교사 배치현황, 의료급여 대상자 수, 학교급식 만족도, 학교급식 안전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 절에서는 보건교사 배치현황과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황을 중심으로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보건교사 배치현황인 <표 III-4-19>을 보면,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로 나타났으며, 중학교는 전체학교 중 51.3%로 가장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어 급속한 신체변화와 정신건강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는 사춘기 청소년을 위한 보건서비스는 부족한 상황이다. 아동·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학교이므로 학교에서의 건강관리는 가정에서의 건강관리만큼 중요한 영역이다. 『학교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교사의 역할은 학교보건 계획, 학교환경 위생,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질병 예방, 보건지도, 건강 상담 및 평가, 보건교육 등으로 기술되어있다(교육부, 2013c). 따라서 학생들의 체계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가 중요시 되는 현 시점에서,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건교사는 학교의 유일한 보건 전문 인력이므로 학교 보건교육과 보건업무의 성과는 보건교사 개인 의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이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모형이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박경선·배을규, 2012).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음식을 제공하여 건강유지 및 증진 뿐 아니라 편식교정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권대

중·박옥진, 2012). 우리나라 현재 학교급식 규모는 2012년 현재 전체의 99.9%인 11,476개교에서 학생 697만 명이 급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교육부, 2013c),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모두 급식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처럼 학교급식은 양적인 성장을 가져왔으나, 급격한 확대에 의한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미비 및 위생 관리 체계의 소홀함 등이 지적되어 왔으며, 식중독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2006년 6월, 위탁급식 집단 식중독 사고 발생 이후 2007년 1월에 급식방식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어 직영급식을 원칙으로,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및 영양관리기준,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8.31.).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수립되어 추진됨으로써(교육과학기술부, 2012.8.31.), 위탁급식 직영전환,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설, 식품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제 운영 강화 등 학교급식 안전관리가 강화되었다.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빠르게 안정화되어가는 학교급식 정책방향은 바람직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한 식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식재료 공급체계가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아직까지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에서는 별도의 급식실을 설치하는 등 위생적으로 청결한 급식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이 종교적 신념과 신앙으로 급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을 위해 영양섭취를 고려한 대체 음식이 고려되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교급식문화에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운영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과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급식과 관련된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강화되어 학교급식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

(1) 지표의 현황

① 건강 평가 및 관심도

가. 주관적 건강평가

아동·청소년의 주관적인 건강평가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4-24>와 같다. 응답한 전체 학생 중 건강하다(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는 응답은 83.6%였으며, 건강이 좋지 않다(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은 16.4%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경우에 건강하다는 응답이 92.5%였고, 중학생은 83.7%, 일반/특목/자율고는 76.2%, 특성화고는 76.3%로 고등학교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이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3.9%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79.1%였으며,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81.1%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87.7%가 건강하다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83.4%, 하위층은 73.5%가 건강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4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전체(N)	χ^2
전체		1.3	15.1	62.4	21.2	100.0(9,493)	11.264*
학교 유형	초등학교	0.7	6.8	55.6	36.9	100.0(2,812)	
	중학교	1.4	14.9	65.2	18.5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0	21.9	64.7	11.5	100.0(2,798)	
	특성화고	1.1	22.7	67.9	8.4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3	14.8	62.4	21.5	100.0(8,485)	18.632**
	한부모가정	2.2	18.6	62.5	16.6	100.0(754)	
	조손가정	0.6	18.3	61.0	20.1	100.0(80)	
	기타	1.3	13.5	57.9	27.2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1.1	11.2	58.9	28.8	100.0(4,296)	10.528*
	중	1.0	15.7	66.8	16.6	100.0(3,531)	
	하	2.7	23.9	61.9	11.6	100.0(1,653)	

* $p < 0.05$, ** $p < 0.01$

② 신체적 건강

가. 운동실천율

건강관리를 위해 학교 체육시간을 제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2.7%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월 1-2회는 21.2%, 주 1-2회는 27.9%, 주 3회 이상은 2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5 운동실천 여부와 빈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하지 않는다	월 1-2회 정도	주 1-2회 정도	주 3회 이상	전체(N)	χ^2
전체		22.7	21.2	27.9	28.2	100.0(9,449)	
성별	남자	15.3	18.8	29.3	36.6	100.0(4,932)	24.07***
	여자	30.8	23.8	26.4	19.0	100.0(4,517)	
학교 유형	초등학교	9.5	15.4	30.9	44.2	100.0(2,808)	25.624***
	중학교	20.5	24.9	29.9	24.7	100.0(3,266)	
	일반/특목/자율고	37.2	22.0	23.0	17.8	100.0(2,773)	
	특성화고	29.7	23.9	25.6	20.8	100.0(602)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2.6	21.3	28.1	28.0	100.0(8,444)	45.327***
	한부모가정	25.5	21.5	24.5	28.5	100.0(752)	
	조손가정	13.3	17.0	34.1	35.6	100.0(79)	
	기타	19.5	15.0	32.4	33.1	100.0(152)	
경제적 수준	상	17.3	19.5	30.9	32.3	100.0(4,290)	46.127***
	중	25.5	22.4	27.1	25.0	100.0(3,504)	
	하	30.8	22.7	22.1	24.5	100.0(1,64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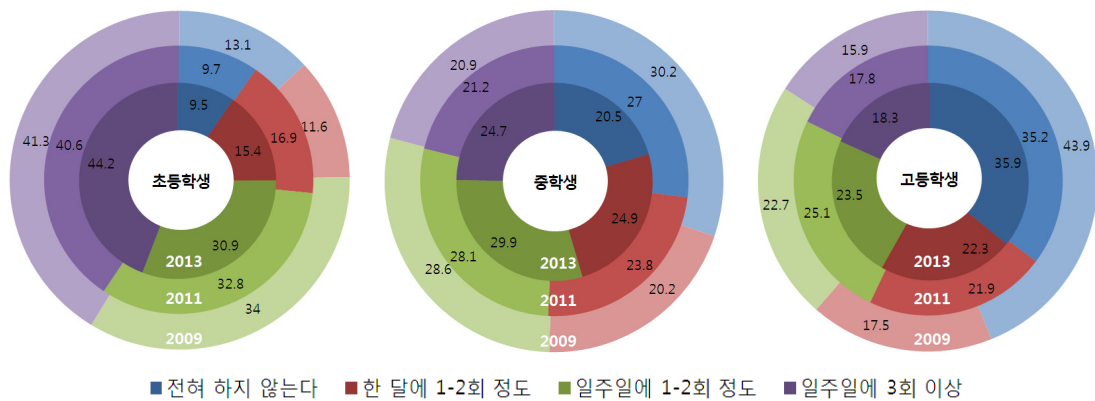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운동실천율을 살펴보면, 남학생은 84.7%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학생은 69.2%가 운동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학생의 운동실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학생은 주 3회 이상 운동한다는 응답이 36.6%로 가장 높았으나, 여학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8%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주 1-2회 정도(26.4%)로 나타나서 남학생의 운동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의 경우에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9.5%, 중학생은 20.5%, 일반/특목/자율고는 37.2%, 특성화고는 29.7%로 고등학교생의 운동실천율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생은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경우가 44.2%로 가장 높았으나 중고등학교생은 주 1-2회 정도의 운동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초등학교생이 중·고등학교생에 비해 더 자주 운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양부모가정 22.6%, 한부모가정 25.5%, 조손가정 13.3%로 한부모 가정 자녀들의 운동실천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경우에 주 3회 이상 운동하는 빈도가 35.6%로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전혀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이 17.3%인 반면에 중위층은 25.5%, 하위층은 30.8%로 나타나서 경제적 수준이 낮은 아동·청소년의 운동실천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운동실천율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6>과 같다.



* 주 : 2009년 ‘현재 특별히 하고 있는 운동(단,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은 제외)이 있다면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에서 2011년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로 변경, 2013년의 경우 2011년과 동일

【그림 III-4-6】 운동실천율(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먼저, 초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13.1%였으나, 2011년에는 9.7%, 2013년에는 9.5%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41.3%, 2011년 40.6%, 2013년 44.2%로 2013년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30.2%였으나, 2011년에는 27.0%, 2013년에는 20.5%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20.9%, 2011년 21.2%, 2013년 24.7%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의 경우, 2009년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43.9%였으나, 2011년에는 35.2%, 2013년에는 35.9%로 운동을 하지 않는 비율은 2009년에

비해 2011년과 2013년은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2009년 15.9%, 2011년 17.8%, 2013년 18.3%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아침식사 결식율

아동·청소년의 결식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기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 결과는 <표 III-4-26>과 같다. 응답한 아동·청소년 중 거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7.0%였으며, 보통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7.7%, 보통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15.3%, 거의 매일 하는 편이라는 응답은 60.0%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은 성별, 가족유형, 경제적 수준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하였으며, 학교 유형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III-4-26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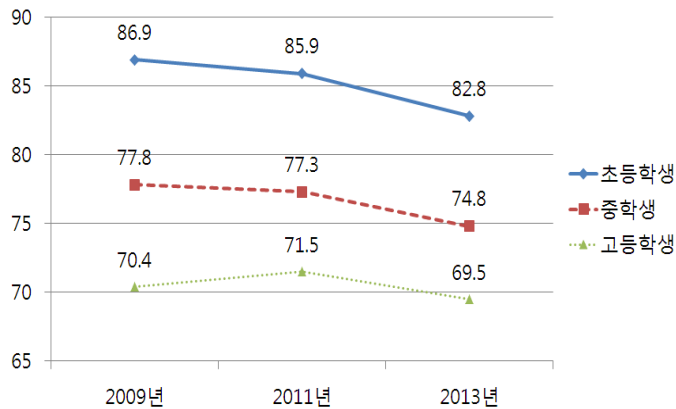
구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전체(N)	χ^2
전체		17.0	7.7	15.3	60.0	100.0(9,486)	18.881*
성별	남자	15.9	7.6	15.0	61.5	100.0(4,968)	
	여자	18.3	7.8	15.6	58.4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0.4	6.8	13.6	69.2	100.0(2,817)	7.8
	중학교	17.0	8.2	15.9	58.9	100.0(3,267)	
	일반/특목/자율고	19.8	7.9	16.3	56.0	100.0(2,793)	
	특성화고	35.1	7.8	15.1	41.9	100.0(60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5.8	7.5	15.1	61.6	100.0(8,479)	28.406***
	한부모가정	29.4	10.1	17.8	42.7	100.0(756)	
	조손가정	21.8	6.3	13.5	58.4	100.0(77)	
	기타	19.6	7.2	16.2	57.0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12.5	7.0	14.9	65.6	100.0(4,302)	70.185***
	중	18.2	8.2	15.6	58.0	100.0(3,520)	
	하	26.1	8.6	15.8	49.5	100.0(1,650)	

* $p<0.05$, *** $p<0.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에 거의 매일 먹지 않는 비율은 15.9%로 여학생(18.3%)에 비해 낮았으며,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은 61.5%로 여학생(58.4%)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은 거의 매일 먹는다는 응답이 61.6%였으나, 한부모가정은 42.7%, 조손가정은 58.4%로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결식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별로는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거의 매일 먹는 비율이 65.6%인데 비해 중위층은 58.0%, 하위층은

49.5%로 경제적 수준에 따른 결식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는지에 대한 3개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면, <그림 III-4-7>과 같다. 초등학생은 2009년에 86.9%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에는 85.9%, 2013년에는 82.8%로 아침식사를 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게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데, 중학생의 경우 2009년에 77.8%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나, 2011년에는 77.3%, 2013년에는 74.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09년 70.4%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011년에는 71.5%, 2013년에는 69.5%가 아침식사를 한다고 응답하여 모든 연령에 걸쳐 아침식사를 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 : 2009년 보기는 ‘매일 하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하지 않는 편이다’에서 2011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하는 편이다’,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그림 III-4-7】 등교 전 아침식사 여부(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음으로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III-4-27>과 같다. 아침 결식 이유 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한 것은 입맛이 없다는 응답이 34.7%였다.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23.1%, 학교에 일찍 가야해서가 21.9%, 가족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가 6.8%,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가 6.3%였으며, 다이어트를 위해서가 1.3%,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가 0.3%를 차지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과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거나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못 먹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은 아침에 입맛이 없어서 안 먹는 빈도가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경제적 수준이 하위인 아동·청소년들은 상위나 중위에 비해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된 비율이 높았으며, 식사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는 응답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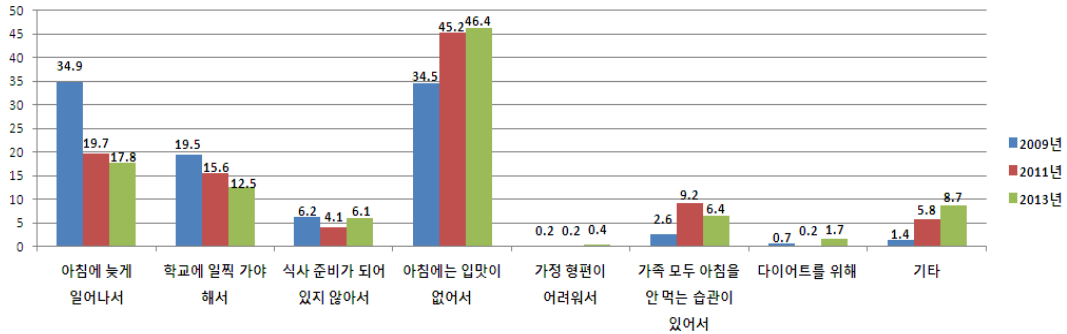
표 III-4-27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주된 이유

(단위 : %(명))

구분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다이어트를 위해서	기타	전체(N)	χ^2
전체	23.1	21.9	6.3	34.7	0.3	6.8	1.3	5.6	100.0(2,34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8	12.5	6.1	46.4	0.4	6.4	1.7	100.0(487)	68.734***
	중학교	23.9	18.3	6.6	36.9	0.4	7.3	1.1	100.0(824)	
	일반/특목/자율고	27.8	27.3	6.9	26.6	0.2	6.0	1.6	100.0(774)	
	특성화고	16.0	35.0	3.5	30.4	0.0	8.5	0.7	100.0(263)	
경제적 수준	상	22.9	17.9	6.8	38.7	0.2	5.6	2.0	100.0(842)	48.651***
	중	22.9	21.7	5.1	36.9	0.1	7.2	0.7	100.0(926)	
	하	23.8	27.9	7.3	25.7	0.8	8.1	1.4	10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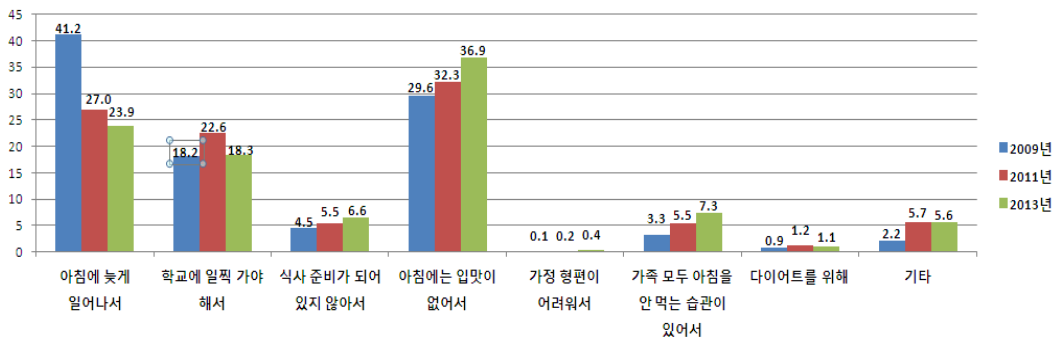
*** $p < 0.001$

등교 전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8>, <그림 III-4-9>, <그림 III-4-10>과 같다. 먼저, 초등학교의 경우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3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34.5%),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9.5%)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45.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19.7%),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5.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4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17.8%),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2.5%)의 순이었다.



【그림 III-4-8】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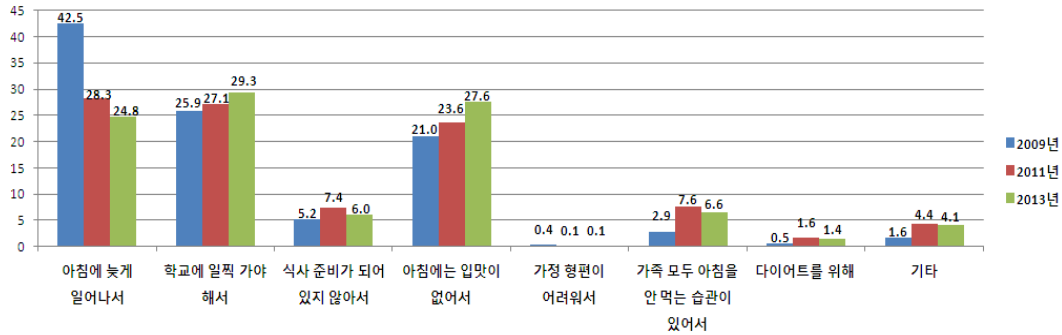
중학생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41.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9.6%),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8.2%)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7.0%),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2.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2011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가 3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3.9%),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18.3%)의 순이었다.



【그림 III-4-9】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2009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가 42.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5.9%),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1.0%), 의 순이었고, 2011년에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8.3%),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27.1%),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3.6%)의 순이었다. 2013년에는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가 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27.6%),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24.8%)의 순이었다.



【그림 III-4-10】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다. 수면시간

아동·청소년의 수면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에 가는 날에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하였다.

아동·청소년들의 평균 취침시간은 밤 11시 32분이었고,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10시 34분, 중학생 11시 27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12시 29분, 특성화고 학생 12시 10분이었다. 평균 일어나는 시간은 6시 34분이었으며,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보면, 초등학생 7시 10분, 중학생 7시 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 6시 20분, 특성화고 학생 6시 21분이었다. 이를 토대로 평균 수면시간을 산출한 결과는 <표 III-4-2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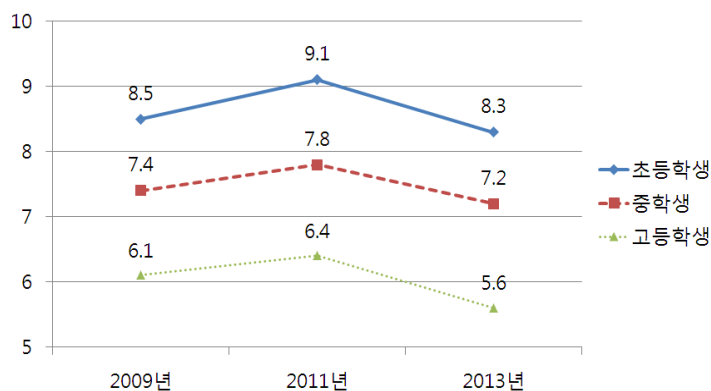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6분이었고, 이를 학교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8시간 19분, 중학생은 7시간 12분,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5시 27분, 특성화고 학생은 6시간 11분이었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이 7시간 6분,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이 7시간 1분,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이 7시간 15분이었다. 경제적 수준은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은 평균 7시간 14분이었으며, 중위층은 7시간 5분, 하위층은 6시간 22분으로 나타났다.

표 III-4-28 수면시간

(단위 : %(명))

구분		5시간 미만	5시간-6시간 미만	6시간-7시간 미만	7시간-8시간 미만	8시간-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평균	전체(N)
전체		6.6	14.5	19.5	24.7	21.8	12.9	7시 6분	100.0(9,195)
학교 유형	초등학교	0.6	0.6	3.1	17.1	41.4	37.1	8시 19분	100.0(2,763)
	중학교	1.8	6.0	19.8	42.8	24.8	4.9	7시 12분	100.0(3,142)
	일반/특목/자율고	17.5	36.8	33.1	11.1	1.4	0.2	5시 27분	100.0(2,705)
	특성학교	11.4	22.3	32.3	26.4	6.8	0.8	6시 11분	100.0(584)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7	14.6	19.3	24.5	21.9	13.0	7시 6분	100.0(8,234)
	한부모가정	6.9	14.8	24.3	25.7	16.6	11.8	7시 1분	100.0(716)
	조손가정	5.2	9.9	12.7	32.2	29.2	10.7	7시 15분	100.0(75)
	기타	4.7	9.5	11.3	26.5	31.0	17.0	7시 21분	100.0(150)
경제적 수준	상	5.8	12.3	16.2	23.2	25.2	17.3	7시 14분	100.0(4,180)
	중	6.1	14.4	19.8	27.0	21.6	11.1	7시 5분	100.0(3,420)
	하	10.1	20.5	27.4	23.5	13.1	5.4	6시 22분	100.0(1,583)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평균 수면시간에 대한 3개년 비교 결과는 <그림 III-4-11>과 같다. 초등학생의 수면시간은 2009년 8.5시간이었으며, 2013년에는 8.3시간으로 약간 줄어들었으며, 중학생 또한 2009년 7.4시간에서 2013년 7.2시간으로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생은 2009년 6.1시간에서 2013년 5.6시간으로 다른 학교유형에 비해 수면시간의 줄어든 폭이 다소 큰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III-4-11】 평균수면시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아동·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는 <표 III-4-29>와 같다.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52.8%였으며, 부족하지 않다는

응답은 47.2%로 과반수 이상의 아동·청소년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학교유형별로는 고등학생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이 양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경제적 수준과 관련하여서는 상위층보다는 하위층 아동·청소년이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III-4-29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예	아니오	전체(N)
전체		52.8	47.2	100.0(9,436)
학교 유형	초등학교	32.0	68.0	100.0(2,829)
	중학교	53.6	46.4	100.0(3,242)
	일반/특목/자율고	69.5	30.5	100.0(2,765)
	특성화고	69.1	30.9	100.0(601)
	양부모가정	52.0	48.0	100.0(8,436)
가족 유형	한부모가정	62.3	37.7	100.0(749)
	조손가정	54.4	45.6	100.0(79)
	기타	46.4	53.6	100.0(151)
경제적 수준	상	46.9	53.1	100.0(4,280)
	중	53.2	46.8	100.0(3,499)
	하	67.0	33.0	100.0(1,644)

* $p < 0.05$,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이 수면시간이 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 3가지를 복수 응답하도록 한 결과는 <표 III-4-30>과 같다. 수면시간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59.7%), 다음으로 채팅이나 문자메시지(49.4%), 가정학습(45.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가정학습(61.6%), 드라마·영화시청·음악청취 등(60.2%), 학원·과외(53.1%), 게임(43.3%), 채팅·문자메시지(31.9%) 순이었고, 중학생은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67.6%), 채팅·문자메시지(55.9%), 학원·과외(51.1%)의 순이었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수면시간 부족의 이유로 가장 높은 응답이 야간 자율학습(52.6%)이었고, 다음으로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49.9%), 채팅·문자메시지(47.7%)의 순이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수면 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70.9%), 채팅·문자메시지(66.8%), 게임(53.9%)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55.0%)가

수면부족의 가장 큰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채팅·문자메시지(52.9%), 가정학습(36.3%)의 순이었다.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67.7%), 채팅·문자메시지(56.3%), 게임(43.9%)의 순이었고,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채팅·문자메시지(57.4%),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50.2%), 게임(46.7%)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채팅·문자메시지(52.1%),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50.4%), 학원·과외(38.1%)의 순이었고, 중위층은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59.6%), 채팅·문자메시지(53.5%), 게임(36.6%)의 순이었다. 경제적 하위층 아동·청소년의 수면부족 이유는 드라마·영화 시청·음악 청취(60.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채팅·문자메시지(54.6%), 게임(41.9%)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30 잠이 부족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야간 자율 학습	학원, 과외	가정 학습	게임	채팅, 문자 메시지	성인 사이트 이용	드라마, 영화, 음악 청취 등	기타	전체(N)
전체		25.2	44.1	45.7	40.9	49.4	2.1	59.7	17.8	5,044
성별	남자	25.6	44.0	41.5	53.8	42.9	3.9	55.9	16.9	2,421
	여자	24.8	44.2	49.5	29.1	55.4	0.5	63.2	18.7	2,624
학교 유형	초등학교	0.0	53.1	61.6	43.3	31.9	2.1	60.2	22.2	901
	중학교	7.9	51.1	42.7	46.9	55.9	0.6	67.6	15.5	1,769
	일반/특목/자율고	52.6	39.9	46.8	31.7	47.7	3.4	49.9	15.4	1,952
	특성화고	24.5	15.6	18.8	53.9	66.8	2.6	70.9	29.4	423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25.9	45.6	47.2	39.4	48.9	2.0	58.8	17.5	2,114
	한부모가정	19.3	30.9	34.4	52.3	54.6	3.7	68.1	20.6	2,283
	조손가정	21.4	47.4	31.9	55.8	48.9	2.0	57.2	18.0	648
	기타	26.8	44.0	38.2	51.1	39.8	2.2	58.7	19.1	4,444
경제적 수준	상	23.0	52.1	52.7	35.4	45.7	2.2	55.5	16.4	474
	중	24.1	43.1	42.0	44.7	51.1	1.9	62.1	16.6	44
	하	31.1	31.3	38.8	44.9	53.2	2.4	63.3	22.4	72

* 주 : 1+2+3순위, 복수응답

라. 비만을

아동·청소년의 비만을 지표에서는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을 비만,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이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을 과체중, 85백분위수 미만을 정상이라고 구분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에서 발표한 2011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2-18세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9.7%이고, 이를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11.0%, 여자 아동·청소년의 비만율은 8.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5세의 비만율이 2.8%, 6-11세가 8.4%, 12-18세가 13.1%로 아동·청소년의 나이가 증가할수록 비만율도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18세 전체 아동의 과체중 비율은 7.7%로 남자 아동·청소년이 5.3%, 여자 아동·청소년이 10.5%였다. 연령별로는 2-5세가 9.4%, 6-11세가 11.1%, 12-18세가 4.9%로 비만과는 달리 6-11세의 과체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III-4-31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2011)

연령	정상 ¹⁾	과체중 ²⁾	비만 ³⁾	전체(N)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분율(표준오차)	
전체(2-18세)	82.6(1.1)	7.7(0.8)	9.7(0.9)	1,716
2-5세	87.8(1.8)	9.4(1.7)	2.8(0.9)	424
6-11세	80.5(1.8)	11.1(1.5)	8.4(1.4)	632
12-18세	82.0(1.6)	4.9(1.1)	13.1(1.5)	660
남자(2-18세)	83.8(1.5)	5.3(0.8)	11.0(1.3)	904
2-5세	90.2(2.3)	6.5(1.8)	3.2(1.4)	225
6-11세	80.2(2.8)	10.2(2.0)	9.6(2.0)	326
12-18세	83.6(2.2)	1.8(0.8)	14.6(2.2)	363
여자(2-18세)	81.2(1.7)	10.5(1.3)	8.3(1.3)	812
2-5세	84.9(3.1)	12.9(3.0)	2.2(1.0)	199
6-11세	80.9(2.7)	12.0(2.5)	7.1(1.7)	306
12-18세	80.1(2.7)	8.6(1.9)	11.3(2.3)	307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413.

* 주 : 1) 정상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BMI, Kg/m²) 기준 85백분위수 미만

2) 과체중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85백분위수 이상 95백분위수 미만인면서 체질량지수 25미만

3) 비만 : 2007년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연령별 체질량지수 기준 95백분위수 이상 또는 체질량지수 25이상

마. 청소년 유병률

아동·청소년의 천식 유병률은 <표 III-4-32>와 같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가 발표한 2011 국민건강 통계에 의하면, 1-11세의 천식유병률은 8.3%이고, 12-18세는 3.3%로 11세 이하 아동의 천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천식유병률이 높았다. 이를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하인 경우 천식 유병률이 7.2%, 중하가 6.4%, 중상이 4.2%, 상이 4.9%로 소득수준이 중하 이하인 경우가 중상 이상에 비해 천식 유병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의 천식 질병과 관련한 건강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II-4-32 소아청소년 천식 유병률(2011)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천식유병률 ¹⁾	1-11세	8.9(1.5)	606	7.6(1.4)	564	8.3(1.0)	1,170
	12-18세	3.9(1.2)	350	2.7(0.9)	306	3.3(0.7)	656
소득수준 ²⁾	하	6.9(1.9)	219	7.6(2.2)	213	7.2(1.5)	432
	중하	7.2(2.1)	245	5.6(1.9)	216	6.4(1.4)	461
	중상	5.2(1.7)	246	3.1(1.5)	213	4.2(1.2)	459
	상	5.5(1.8)	239	4.1(1.4)	218	4.9(1.1)	457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509.

* 주 : 1) 천식 유병률 : 의사로부터 천식 진단을 받은 분을

2) 소득수준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성별·연령별(5세단위) 사분위로 분류

다음으로 선천성 심장질환과 아토피피부염, 주의력 결핍장애, 요로감염, 폐렴 등 아동·청소년의 주요 질환별 유병률은 <표 III-4-33>과 같다.

표 III-4-33 소아청소년 질환별 유병률(2011)

연령		남자		여자		전체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유병률(%) (표준오차)	N
선천성심장질환 ¹⁾	1-11세	0.6(0.3)	606	1.0(0.5)	564	0.8(0.3)	1,170
	12-18세	0.0(-)	351	0.7(0.4)	306	0.3(0.2)	657
아토피피부염 ²⁾	1-11세	12.0(1.6)	606	13.4(1.8)	564	12.7(1.2)	1,170
	12-18세	7.0(1.4)	351	13.1(2.0)	306	9.8(1.3)	657
주의력결핍장애 ³⁾	1-11세	0.9(0.5)	606	0.4(0.3)	564	0.7(0.3)	1,170
	12-18세	0.7(0.4)	351	0.4(0.2)	306	0.5(0.2)	657
요로감염 ⁴⁾	1-11세	3.3(0.9)	606	2.4(0.7)	564	2.9(0.6)	1,170
	12-18세	1.6(0.8)	351	0.4(0.3)	306	1.0(0.5)	657
폐렴 ⁵⁾	1-11세	12.1(1.7)	606	11.8(2.0)	564	12.0(1.4)	1,170
	12-18세	4.2(1.2)	351	4.6(1.6)	306	4.4(1.0)	657

* 출처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p.516.

* 주 : 1) 선천성심장질환 유병률 : 의사로부터 선천성심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을

2) 아토피피부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아토피피부염 진단을 받은 분을

3) 주의력결핍장애 유병률 : 의사로부터 주의력결핍장애 진단을 받은 분을

4) 요로감염 유병률 : 의사로부터 요로감염 진단을 받은 분을

5) 폐렴 유병률 : 의사로부터 폐렴 진단을 받은 분을

선천성 심장질환의 유병률은 1-11세가 0.8%, 12-18세가 0.3%였으며,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은 1-11세 12.7%, 12-18세 9.8%였고, 주의력 결핍장애 유병률은 1-11세 0.7%, 12-18세 0.5%였다. 요로감염은 1-11세의 유병률이 2.9%, 12-18세가 1.0%였으며, 폐렴 유병률은 1-11세 12.0%, 12-18세 4.4%였다. 모든 질환에서 11세 이하 아동의 유병률이 더 높았으나 특히, 폐렴의 경우 11세 이하 아동의 발생 비율이 높아서 집중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 유병률 차이를 살펴보면, 선천성심장질환과 아토피피부염은 여자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남자보다 높고, 주의력결핍장애와 요로감염은 남자 아동·청소년의 유병률이 여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렴은 남녀 간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③ 정서적 안정

가. 우울증 지수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우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울증 정도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34>과 같다. 먼저,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5.5%는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성별로는 남학생의 25.9%, 여학생의 46.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17.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7.3%,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9.1%, 특성화고 학생은 44.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34.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44.1%,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34.6%, 하위층은 52.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21.7%, 여학생의 36.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의 14.0%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0.8%,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0.2%, 특성화고 학생은 36.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28.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34.5%,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4.4%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28.9%, 하위층은 40.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표 III-4-34 우울증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이유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전체		36.0	28.5	29.6	5.9	100.0(9,515)	199.4***
	성별	남자	45.2	28.9	22.1	3.8	100.0(4,984)	
		여자	26.0	28.1	37.9	8.1	100.0(4,531)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7	22.4	13.9	4.0	100.0(2,828)	146.594***
		중학교	32.3	30.4	31.6	5.7	100.0(3,278)	
		일반/특목/자율고	19.1	31.8	41.2	7.9	100.0(2,799)	
		특성화고	23.6	31.9	38.3	6.2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6.6	28.7	29.3	5.4	100.0(8,503)	3.9
		한부모가정	29.5	26.4	34.2	9.9	100.0(757)	
		조손가정	30.2	31.9	29.6	8.2	100.0(80)	
		기타	39.6	28.0	25.6	6.8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44.0	26.5	24.7	4.8	100.0(4,312)	10.881**
		중	33.6	31.7	29.6	5.0	100.0(3,534)	
		하	20.4	26.7	42.6	10.3	100.0(1,656)	
이유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전체		41.5	29.6	24.4	4.5	100.0(9,516)	0.7
	성별	남자	49.7	28.7	18.7	3.0	100.0(4,984)	
		여자	32.5	30.6	30.7	6.2	100.0(4,5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9	20.1	11.2	2.8	100.0(2,829)	5.3
		중학교	37.3	31.9	26.2	4.6	100.0(3,278)	
		일반/특목/자율고	24.6	35.3	34.0	6.2	100.0(2,799)	
		특성화고	28.3	35.6	31.8	4.3	100.0(610)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2.1	29.4	24.2	4.3	100.0(8,504)	5.8
		한부모가정	33.9	31.5	27.9	6.6	100.0(757)	
		조손가정	39.1	29.1	24.9	6.9	100.0(80)	
		기타	44.7	31.1	19.0	5.3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49.3	26.3	20.4	4.0	100.0(4,312)	17.405*
		중	39.1	32.0	25.3	3.6	100.0(3,535)	
		하	26.2	33.3	32.9	7.6	100.0(1,656)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전체		40.3	26.4	27.5	5.9	100.0(9,501)	364.635***
	성별	남자	50.7	27.3	18.7	3.2	100.0(4,974)	
		여자	28.8	25.3	37.2	8.7	100.0(4,527)	
	학교 유형	초등학교	64.3	19.2	12.6	3.8	100.0(2,819)	65.133***
		중학교	36.4	27.9	29.5	6.1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22.8	31.3	38.5	7.4	100.0(2,798)	
		특성화고	29.5	28.6	35.1	6.7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40.9	26.4	27.2	5.5	100.0(8,492)	60.276***
		한부모가정	32.4	25.6	32.5	9.5	100.0(756)	
		조손가정	38.9	27.9	23.2	10.0	100.0(80)	
		기타	44.5	24.9	22.7	7.9	100.0(153)	
	경제적 수준	상	48.6	23.4	23.1	4.9	100.0(4,304)	2736.7***
		중	37.2	29.6	28.5	4.7	100.0(3,530)	
		하	25.0	27.2	36.9	10.9	100.0(1,654)	

* $p<0.05$, ** $p<0.01$, *** $p<0.001$

마지막으로 이유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33.4%가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남학생의 21.9%, 여학생의 45.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여학생의 우울정도가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의 16.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35.6%,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45.9%, 특성화고 학생은 41.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32.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42.0%가,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33.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28.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33.2%, 하위층은 4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우울정도에 대한 문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정도가 더 심각하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과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 경제적 하위층의 우울정도가 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청소년은 중학교 1학년 37.0%, 중학교 2학년 38.8%, 중학교 3학년 40.7%, 고등학교 1학년 43.7%, 고등학교 2학년 44.2%, 고등학교 3학년 46.3%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연령이 증감함에 따라 스트레스 인지율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도별로 보면, 큰 차이는 없으나 2008년도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 스트레스 인지율이 다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5 스트레스 인지율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40.5	40.3	41.0	43.1	47.0	52.0
2009	40.1	39.4	40.5	42.3	44.4	53.4
2010	39.9	40.7	41.7	42.8	44.8	53.2
2011	36.9	39.2	40.8	41.1	43.5	50.5
2012	37.0	38.8	40.7	43.7	44.2	46.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160-161.

* 주 :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아동·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받은 스트레스 정도를 원인별로 파악한 결과는 <표 III-4-36>과 같다.

표 III-4-36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 정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학업 문제	전체	11.8	18.9	44.8	24.5	100.0(9,506)	95.692***
	초등학교	24.5	29.3	33.3	12.9	100.0(2,827)	
	중학교	8.6	17.3	48.7	25.5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2.9	9.9	51.1	36.1	100.0(2,798)	
	특성화고	11.1	20.5	49.0	19.5	100.0(610)	
가정 불화	전체	50.1	31.1	15.1	3.7	100.0(9,507)	569.201***
	초등학교	55.3	26.0	13.9	4.7	100.0(2,825)	
	중학교	51.0	30.8	14.5	3.7	100.0(3,275)	
	일반/특목/자율고	45.9	35.3	16.3	2.6	100.0(2,797)	
	특성화고	40.6	36.7	18.2	4.5	100.0(610)	
또래와의 관계	전체	43.1	35.0	17.8	4.1	100.0(9,502)	210.367***
	초등학교	52.2	27.1	15.5	5.2	100.0(2,822)	
	중학교	41.4	34.9	19.4	4.4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36.9	41.6	18.7	2.8	100.0(2,798)	
	특성화고	38.5	42.1	16.1	3.3	100.0(609)	
경제 적인 어려움	전체	56.1	31.3	10.9	1.7	100.0(9,490)	6.98**
	초등학교	72.7	21.1	5.2	1.1	100.0(2,820)	
	중학교	56.6	33.2	8.8	1.4	100.0(3,267)	
	일반/특목/자율고	43.7	38.7	15.3	2.2	100.0(2,795)	
	특성화고	33.0	35.1	28.3	3.6	100.0(609)	
외모 및 신체 조건	전체	35.3	35.5	24.1	5.1	100.0(9,493)	36.494***
	초등학교	55.2	27.3	13.8	3.8	100.0(2,823)	
	중학교	31.4	37.7	25.2	5.8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22.7	41.2	30.7	5.4	100.0(2,792)	
	특성화고	22.1	35.3	36.9	5.7	100.0(610)	
미래에 대한 불안	전체	27.3	21.0	33.9	17.7	100.0(9,501)	152.015***
	초등학교	60.9	24.2	11.1	3.7	100.0(2,824)	
	중학교	20.6	26.4	38.3	14.7	100.0(3,271)	
	일반/특목/자율고	5.3	13.2	48.7	32.8	100.0(2,797)	
	특성화고	9.0	13.6	47.6	29.8	100.0(610)	

** $p<0.01$, *** $p<0.001$

학업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답(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한 비율은 69.3%이고,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18.8%였으며,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는 21.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2.6%였으며, 외모 및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29.2%였

다. 진로 등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51.6%로 나타나서 아동·청소년들은 학업과 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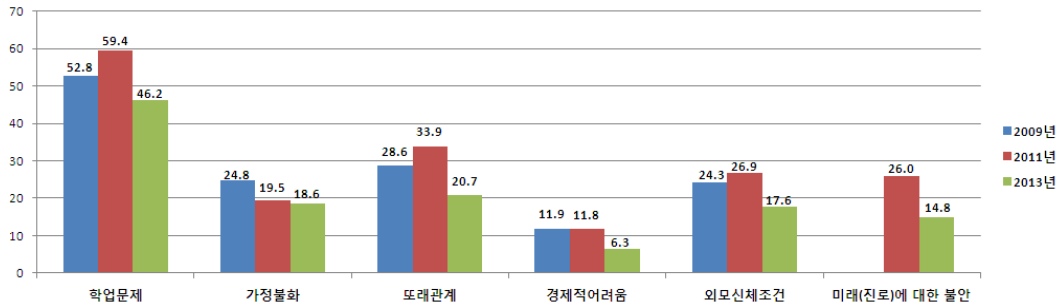
각 항목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의 스트레스 원인은 학업문제가 46.2%, 가정불화가 18.6%, 또래와의 관계가 20.7%, 경제적인 어려움이 6.3%, 외모 및 신체조건이 17.6%, 미래에 대한 불안이 14.8%로 학업문제와 또래와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의 스트레스 원인을 살펴보면, 학업문제가 74.2%, 가정불화가 18.2%, 또래와의 관계가 23.8%, 경제적인 어려움이 10.2%, 외모 및 신체조건이 31.0%, 미래에 대한 불안이 53.0%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학업문제가 87.2%, 가정불화가 18.9%, 또래와의 관계가 21.5%, 경제적인 어려움이 17.5%, 외모 및 신체조건이 36.1%, 미래에 대한 불안이 81.5%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살펴보면, 학업문제가 68.5%, 가정불화가 22.7%, 또래와의 관계가 19.4%, 경제적인 어려움이 31.9%, 외모 및 신체조건이 42.6%, 미래에 대한 불안이 77.4%로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업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의 3개년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III-4-12>, <그림 III-4-13>, <그림 III-4-14>과 같다. 본 항목에서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은 2011년도에 추가된 항목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2009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는 2009년도에 52.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11년에는 59.4%로 상승하였다가 2013년에는 46.2%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또래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2009년 28.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2011년에는 33.9%로 상승하다가 2013년에 20.7%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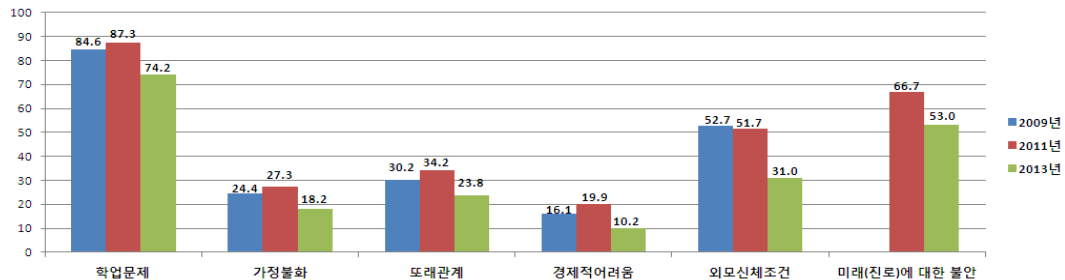
중학교의 경우도 모든 항목에서 2009년도나 2011년도에 비해 2013년도에 스트레스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대해 2009년에는 52.7%, 2011년도에는 51.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31.0%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고등학교의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를 살펴보면, 가정불화로 인한 스트레스가 2009년도(26.6%)나 2011년도(33.0%)에 비해 2013년도(19.5%)에 인지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학생과 유사하게 외모나 신체조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2009년도 53.0%, 2011년도 60.5%에 비해 2013년도에는 37.3%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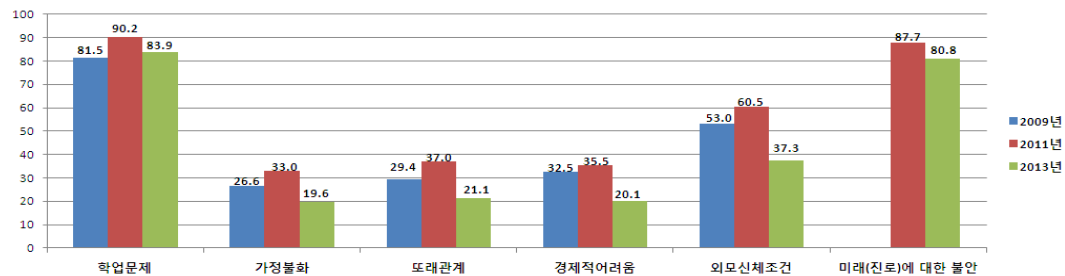


- * 주 : 1) 문항 : 2009년 ‘평상시 아래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에서 2011년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로 변경, 2013년은 2011년과 동일
 2) 문항 : 2009년 ‘전혀 받지 않는다’, ‘거의 받지 않는다’, ‘보통이다’, ‘조금 받는다’, ‘많이 받는다’에서 2011년과 2013년은 ‘보통이다’를 제외한 4척도
 3) 문항 : 2009년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것’에서 2011년 ‘가정 불화’로 변경, 2013년 2011년과 동일
 4) 문항 : 2009년, 2011년 ‘친구관계’에서 2013년 ‘도래관계’로 변경
 5) 2011년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추가, 2013년 2011년과 동일
 6) 데이터분석은 2009년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7) ‘조금 받는다’와 ‘많이 받는다’를 합산하여 ‘스트레스 받는다’로 계산

【그림 III-4-12】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초등학교)



【그림 III-4-13】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중학생)



【그림 III-4-14】 원인별 스트레스 인지정도(3개년 추이 : 고등학교)

다. 자아존중감

아동·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의 응답결과는 <표 III-437>과 같다.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4가지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에 비해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76.2%였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은 72.3%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75.9%,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80.7%, 특성화고 학생은 7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7.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70.7%,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59.7%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8.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75.0%, 하위층은 71.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하위층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는 69.5%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의 77.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65.1%,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67.5%, 특성화고 학생은 65.1%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0.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63.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47.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6.8%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66.3%, 하위층은 57.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여 가족유형에서는 조손가정이 경제적 수준에서는 하위층으로 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이 별로 없다라는 문항에는 69.5%가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교생의 83.8%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중학생은 65.3%,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은 62.4%, 특성화고 학생은 58.4%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의 아동·청소년은 70.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63.6%,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58.1%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78.6%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66.0%, 하위층은 53.5%가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여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손가정일수록, 경제적으로 하위층일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37 자아존중감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체		7.6	16.2	52.0	24.2	100.0(9,505)	107.327***
		초등학교	16.6	11.1	40.8	31.5	100.0(2,823)	
	학교 유형	중학교	5.6	18.6	55.4	20.5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1.6	17.7	58.7	22.0	100.0(2,798)	
	가족 유형	특성화고	4.8	19.4	55.4	20.4	100.0(610)	
		양부모가정	7.3	15.5	52.3	24.8	100.0(8,493)	
		한부모가정	8.6	20.7	51.7	19.0	100.0(757)	
		조손가정	15.0	25.4	51.6	8.1	100.0(79)	
		기타	13.3	22.8	38.5	25.4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9.3	11.9	47.8	31.0	100.0(4,304)	
중		6.9	18.0	56.4	18.6	100.0(3,533)		
하		4.8	23.3	53.8	18.1	100.0(1,65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		5.3	25.2	49.8	19.7	100.0(9,489)	789.118***
		초등학교	7.0	15.2	49.9	27.9	100.0(2,816)	
	학교 유형	중학교	5.9	29.1	49.2	15.9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2.7	29.8	50.7	16.8	100.0(2,797)	
	가족 유형	특성화고	5.8	29.1	49.1	16.0	100.0(609)	
		양부모가정	4.9	24.7	50.4	20.0	100.0(8,481)	
		한부모가정	7.7	28.5	46.3	17.5	100.0(753)	
		조손가정	15.4	36.7	38.6	9.3	100.0(80)	
	경제적 수준	기타	7.4	29.8	42.7	20.1	100.0(154)	
		상	5.5	17.7	50.7	26.1	100.0(4,300)	
중		4.4	29.3	51.7	14.6	100.0(3,526)		
내가 자랑스러워 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전체		28.1	41.4	27.1	3.3	100.0(9,495)	914.643***
		초등학교	48.0	35.8	13.9	2.2	100.0(2,825)	
	학교 유형	중학교	23.2	42.1	30.6	4.1	100.0(3,264)	
		일반/특목/자율고	16.5	45.9	34.4	3.2	100.0(2,797)	
	가족 유형	특성화고	15.7	42.7	36.6	4.9	100.0(609)	
		양부모가정	28.7	41.4	26.7	3.2	100.0(8,487)	
		한부모가정	21.3	42.3	31.5	4.9	100.0(754)	
		조손가정	24.9	33.2	39.9	2.0	100.0(80)	
	경제적 수준	기타	33.9	36.5	24.6	5.1	100.0(153)	
		상	38.4	40.2	19.0	2.3	100.0(4,303)	
중		21.5	44.5	31.1	2.9	100.0(3,529)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전체		4.4	20.5	52.3	22.7	100.0(9,505)	308.52***
		초등학교	7.3	15.6	45.9	31.2	100.0(2,829)	
	학교 유형	중학교	4.1	21.2	53.8	20.8	100.0(3,273)	
		일반/특목/자율고	1.7	24.1	56.8	17.4	100.0(2,796)	
	가족 유형	특성화고	5.2	23.3	52.9	18.7	100.0(608)	
		양부모가정	4.1	20.1	52.5	23.3	100.0(8,495)	
		한부모가정	6.2	25.1	51.0	17.7	100.0(757)	
		조손가정	13.9	27.8	43.3	15.1	100.0(79)	
	경제적 수준	기타	8.8	20.2	47.2	23.7	100.0(154)	
		상	4.9	15.1	51.2	28.8	100.0(4,308)	
중		3.3	23.1	54.8	18.9	100.0(3,533)		
	전체		5.8	29.3	49.7	15.2	100.0(1,651)	141.334***
		하						
	학교 유형							
	가족 유형							
	경제적 수준							

** $p < 0.01$, *** $p < 0.001$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그렇다라는 응답이 75.0%였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77.1%였고, 중학생의 74.6%, 일반/특목/자율고 학생의 74.2%, 특성화고 학생의 71.6%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유형별로는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75.8%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68.7%,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의 58.4%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 아동·청소년은 80.0%가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위층은 73.7%, 하위층은 64.9%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라. 행복도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한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III-4-38>과 같다. 행복하다(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고 응답한 아동·청소년은 81.1%였으며, 초등학생은 89.3%, 중학생은 80.3%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은 75.1%, 특성화고 학생들은 73.8%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하다고 느끼는 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별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정도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은 82.0%가 행복하다고 하였고, 한부모가정 아동·청소년은 71.8%, 조손가정 아동·청소년은 64.7%가 행복하다고 응답하여 양부모 가정에 비해 한부모나 조손가정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행복도를 살펴보면, 상위계층은 행복하다는 응답이 86.9%였으며, 중위층은 81.3%, 하위층은 65.0%가 행복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하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가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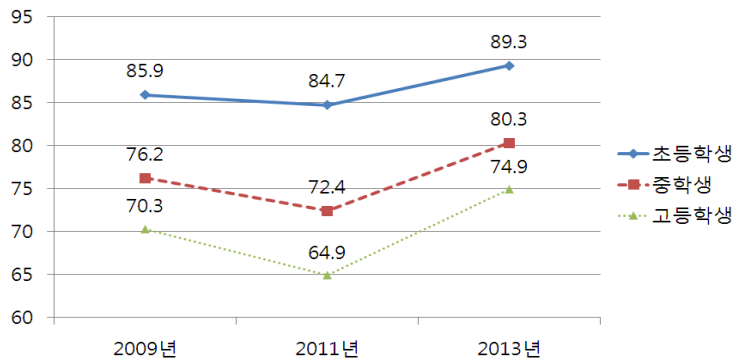
표 III-4-38 행복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행복하지 않다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	전체(N)	χ^2
전체		2.0	17.0	59.7	21.4	100.0(9,485)	
학교 유형	초등학교	1.7	9.0	49.5	39.8	100.0(2,816)	3994.522***
	중학교	2.4	17.3	62.6	17.7	100.0(3,268)	
	일반/특목/자율고	1.7	23.2	65.5	9.6	100.0(2,792)	
	특성화고	2.2	24.0	64.3	9.5	100.0(60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7	16.2	60.1	21.9	100.0(8,476)	370.86***
	한부모가정	3.4	24.9	56.6	15.2	100.0(753)	
	조손가정	7.7	27.6	47.0	17.7	100.0(80)	
	기타	5.2	17.2	55.3	22.3	100.0(154)	
경제적 수준	상	1.4	11.6	56.0	30.9	100.0(4,299)	1321.507***
	중	1.5	17.2	65.4	15.9	100.0(3,520)	
	하	4.3	30.7	57.1	7.9	100.0(1,652)	

*** $p < 0.001$

아동·청소년들의 행복도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15>과 같다. 초등학생의 경우 행복하다라는 응답이 2009년 85.9%에서 2011년 84.7%, 2013년 89.3%이고, 중학생은 2009년 76.2%에서 2011년 72.4%, 2013년 80.3%이며, 고등학생은 2009년 70.3%, 2011년 64.9%, 2013년 7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연령에 걸쳐 2011년에는 행복한 정도가 다소 감소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주 : 1) 2009년에는 '보통이다'라는 보기가 있으며, 3개년 데이터분석을 위해 '보통이다'를 제외시키고, 100으로 환산하여 계산
2) 행복한 편이다+매우 행복하다 = '행복하다'로 계산

【그림 III-4-15】 행복도(3개년 추이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음으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III-4-39>와 같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37.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6%) 순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은 학업부담(40.9%), 미래에 대한 불안(23.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9.8%) 순이었으며, 여학생은 학업에 대한 부담(33.5%), 미래에 대한 불안(22.4%),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1.8%)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별로는 초등학생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7.0%)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7.8%),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6.9%) 순이었다. 중학생은 학업부담(37.4%), 미래에 대한 불안(15.5%),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3.5%) 순이었으며, 일반/특목/자율고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담(42.8%), 미래에 대한 불안(33.9%),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4.4%) 순이었다. 특성학교 학생들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36.9%), 학업부담(13.8%),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12.6%)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학업부담(38.3%), 미래에 대한 불안(22.8%),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0.3%) 순이었고, 한부모 가정 아동·청소년들은 학업부담(28.3%), 미래에 대한 불안(24.3%),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4.8%)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학업부담(45.4%), 미래에 대한 불안(18.0%),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2.1%)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상위층은 학업부담(44.8%), 미래에 대한 불안(17.6%),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12.2%) 순이었으며, 중위층도 학업부담(40.6%), 미래에 대한 불안(22.1%),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9.2%) 순이었다. 하위층은 미래에 대한 불안(28.7%), 학업부담(26.4%),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14.0%)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유형, 가족유형, 경제적 차이에 따른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III-4-39 행복하지 않은 주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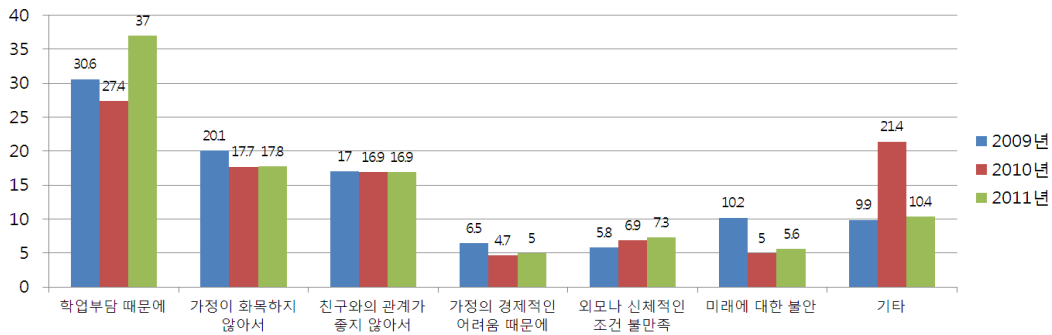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학업 부담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타	전체(N)	χ^2
전체		37.3	10.6	9.1	4.5	6.2	22.8	9.4	100.0(1,782)	
성별	남자	40.9	9.8	6.6	4.1	5.3	23.3	10.1	100.0(920)	1407.837***
	여자	33.5	11.5	11.8	5.0	7.2	22.4	8.7	100.0(862)	
학교 유형	초등학교	37.0	17.8	16.9	5.0	7.3	5.6	10.4	100.0(296)	271.181***
	중학교	37.4	13.5	11.4	3.4	7.7	15.5	11.1	100.0(638)	
	일반/특목/자율고	42.8	4.4	4.1	3.4	4.1	33.9	7.3	100.0(689)	
	특성화고	13.8	12.3	7.3	12.6	7.1	36.9	10.0	100.0(158)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8.3	10.3	9.6	3.5	6.2	22.8	9.3	100.0(1,510)	268.596***
	한부모가정	28.3	14.8	3.9	10.7	6.9	24.3	11.1	100.0(210)	
	조손가정	45.4	7.7	12.1	8.9	4.3	18.0	3.6	100.0(28)	
	기타	43.1	2.3	16.5	7.6	3.2	17.6	9.6	100.0(33)	
경제적 수준	상	44.8	10.0	12.2	0.7	4.7	17.6	10.0	100.0(555)	1451.617***
	중	40.6	8.1	9.2	1.6	7.9	22.1	10.4	100.0(652)	
	하	26.4	14.0	5.9	11.6	5.6	28.7	7.8	100.0(571)	

*** $p < 0.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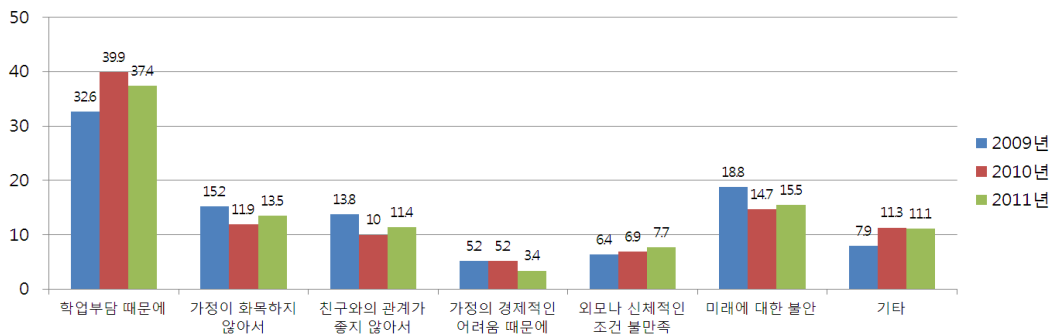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3개년 추이는 <그림 III-4-16>, <그림 III-4-17>, <그림 III-4-18>과 같다. 먼저, 초등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0.6%에서 2011년 27.4%, 2013년 37.0%로 2009년과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5.8%, 2011년 6.9%, 2013년 7.3%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10.2%였으

나, 2011년에는 5.0%, 2013년에는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16】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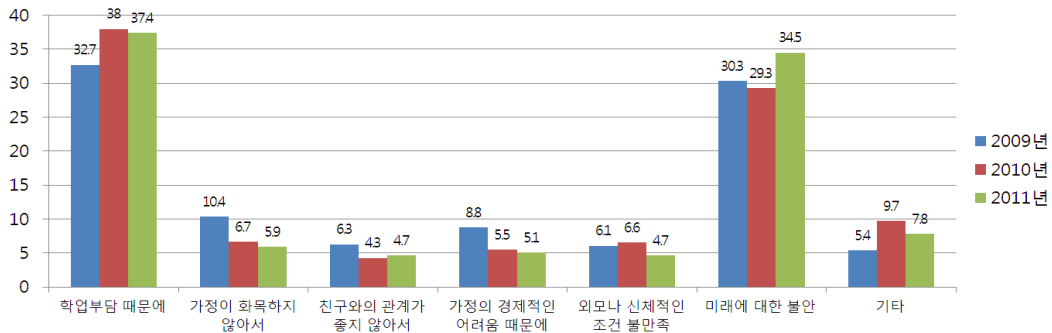
중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2.6%에서 2011년 39.9%, 2013년 37.4%로 2009년에 비해 2011과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6.4%, 2011년 6.9%, 2013년 7.7%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18.8%였으며, 2011년에는 14.7%, 2013년에는 1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17】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중학생)

고등학생은 학업부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이 2009년 32.7%에서 2011년 38.0%, 2013년 37.4%로 2009년에 비해 2011년과 2013년에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 6.1%, 2011년 6.6%, 2013년 4.7%로 나타났다.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다는 응답은 2009년에는 30.3%였고, 2011년에는 29.3%, 2013년에는 34.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18】 행복하지 않은 이유(3개년 추이 : 고등학생)

(2) 정책제언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 증진을 평가하는 지표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주관적 건강평가를 살펴보았다. 아동과 청소년은 생애초기 잠재적 시기로 건강불평등 문제가 덜 부각되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시기는 평생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로 건강정책의 관심을 받아야 하는 우선순위 집단이다(안진상·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표 III-4-24>와 같이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평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개선정책이 선행될 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체적 건강에 대한 지표로는 운동 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수면시간, 비만율, 청소년 유병률을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낮은 수준의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의 아침결식이나 비만 등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형성하여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학업성적이나 인지기능에 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정신건강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노은이, 2013),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빈곤이 아동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구빈곤을 완화하는 소득보장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권은선·구인회, 2010). 또한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지원 뿐 아니라 가족단위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적으로 모색되기 위하여 생애 주기별로 영양, 신체활동, 생활습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며, 학업위주의

사회에서 아동의 건강증진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지표로는 우울증 지수, 스트레스 인지율, 자아존중감, 행복도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경우,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하고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성적과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은 성인과 달리 우울은 성인기의 우울과는 달리 우울 감정이 감추어진 상태로 나타나 조기발견이 어려운 편인데, 매사에 부정적이고 무례하고 반항적인 행동, 공격적 행동 등을 하거나 두통, 복통, 피로감 등의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Harter & Marold, 1994),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2007년부터 학생정신건강서비스지원(SOC: System of care)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5월에는 전국의 초1·4학년, 중1·고1 학년 학생(약 210만명)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 스트레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학교폭력징후, 자살생각 등 정서와 행동발달 경향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전문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위기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학생정신건강 학교-지역협력 모델 구축·지원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부처별 서비스 중복을 피해 위기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노력으로 보인다. 2012년에 설립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무기력하고 만성화된 정서·행동 장애를 가진 청소년이 다시 행복하고 건강해 질 수 있는 치료와 재활의 장이 될 것이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발전 방안으로 첫째, 정신건강서비스지원인 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와 개입과정이 대상자에게 비정상 또는 낙인감 없이 전달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아동·청소년기의 주요 정서·행동 발달경향을 조기에 진단하고 정신건강문제로의 악화의 방지 및 정상적인 발달지원을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은 집중 사례로 지정하여 추적관찰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를 통하여 지원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과 사례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며, 유형별 위기상황에서의 개입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어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일관된 서비스가 아동·청소년에게 지원될 것이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마다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촘촘히 설치되어야 하며, 전문성 있는 담당자들이 배치되어 효과적인 상담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학교와 지역사회에서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프로그램

을 실시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 및 의존적 태도에서 벗어나려는 청소년의 심리적, 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역기능적인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1) 지표의 현황

① 성교육

가. 성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최근 12개월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표 III-4-40>과 같다.

중학교 1학년 75.1%, 중학교 2학년 74.6%, 중학교 3학년 71.5%, 고등학교 1학년 67.6%, 고등학교 2학년 67.8%, 고등학교 3학년 52.0%로 중학교 1학년 이후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는 입시 등 학업부담으로 인해 고학년에게 성교육이 실시되는 비율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각 학년별 수준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이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표 III-4-40 연간 성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81.3	75.5	72.7	74.6	65.2	43.8
2011	77.1	74.8	70.9	69.0	61.7	43.1
2012	75.1	74.6	71.5	67.6	67.8	52.0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158-189.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정책제언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의 지표로 성교육 경험률 현황을 살펴보았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게 되어있지만(교육부, 2013c), 학년이 증가할 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었다. 성범죄와 청소년의 임신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가 이에 대한 관심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회적 태도는 성교육에 대한 낮은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은 여러 교과에서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예방차원의 체계적·지속성이 미흡하고,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낮은 만족도 및 전문 인력 등의 관련 인프라 부족이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교육부, 2013c). 따라서 성교육은 의무적으로 실시되기보다는 전문 인력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궁금증을 해소되고,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성지식과 관련된 정보 뿐 아니라 성폭행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권교육이 성교육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2013년 6월 『성 폭력 방지 대책』에서는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콘텐츠를 개발할 것이며, 2015년까지 초·중·고등학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하고, 2016년부터 보급할 방침이라고 제시하였다(여성가족부, 2013.6.21.).

앞으로 이러한 정책은 아동·청소년이 ‘성’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권을 폭 넓게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이 나의 권리도 보호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성적 주체로서 발달하는 아동·청소년의 성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모둠별 활동을 통한 토론식 교육으로 진행되어 아동·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발달단계에 따라 ‘성’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경험들에 차이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성적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등에 대한 자기이해 뿐 아니라 타인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청소년의 생식 보건 권리를 위해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를 위해서는 예방차원의 성교육 뿐 아니라 성학대 또는 성폭력에 노출된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개입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가질 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부부생활이나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가질 위험이 높다(한인영·김진숙·유서구, 2007). 성폭력 피해아동을 위하여 맞춤형 지원과 치료를 위한 원스톱 지원센터와 해바라기 센터 등이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개입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반복되는 조사와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경험하고, 지속적인 치료 서비스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가족부(2011.4.25.)에서는 이를 위해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 때 전문가 도움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원스톱지원센터 4곳에만 배치되었으므로 더 많은 인력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성폭력과 관련한 신고, 개입, 사후관리 서비스는 민감하고 전문적 대처가 필요하므로 가해자별, 연령별, 대상 특성을 고려한 개입 및 중재 서비스의 개발이 지원되어야 한다(손병덕, 2012).

6) 약물남용 방지 대책

(1) 지표의 현황

① 예방교육

가.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2012년도 제8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흡연예방 및 음주예방 등의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현황은 <표 III-4-41>, <표 III-4-42>와 같다.

표 III-4-41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67.7	64.4	62.3	56.5	51.0	35.2
2011	64.0	63.2	60.6	54.0	48.4	34.3
2012	67.5	68.9	68.5	59.8	59.2	45.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72-73.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송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먼저, 연간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을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은 67.5%, 2학년은 68.9%, 3학년은 68.5%이며, 고등학교 1학년은 59.8%, 2학년은 59.2%, 3학년은 4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 학년은 2010년도에 비해 2012년도에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흡연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았다. 성교육과 마찬가지로 입시 등의 학업부담으로 인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각 연령에 적합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III-4-42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단위 : %)

연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10	53.5	45.8	40.7	33.2	28.5	16.5
2011	50.2	47.3	40.7	30.7	25.7	17.0
2012	47.1	44.6	41.6	29.9	25.9	18.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92-93.

* 주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수업시간, 방학교육, 강당에서의 교육 등 모두 포함) 술(알코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청소년의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은 중학교 1학년 47.1%, 2학년 44.6%, 3학년 41.6%였으며, 고등학교 1학년 29.9%, 2학년 25.9%, 3학년 18.1%로 성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과 마찬가지로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학년에 걸쳐서 성교육이나 흡연예방교육에 비해 음주예방교육 경험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내실 있는 음주예방 교육의 증대가 요청된다.

② 음주·흡연

가. 흡연을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조사한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하면, 2012년도 청소년의 흡연율은 11.4%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3.6%, 2학년이 6.9%, 3학년이 10.9%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 14.0%, 2학년이 15.9%, 3학년이 16.3%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흡연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43 현재 흡연을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12.8	8.0	17.8	5.4	8.3	10.4	16.6	17.8	19.2
2009	12.8	8.3	17.5	4.7	8.7	11.3	16.0	17.9	18.6
2010	12.1	8.0	16.2	4.9	8.7	10.4	14.8	15.6	18.1
2011	12.1	8.1	16.1	4.4	8.7	10.9	15.5	16.1	16.9
2012	11.4	7.2	15.4	3.6	6.9	10.9	14.0	15.9	16.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46-47.

* 주 :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

나. 음주율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의한 청소년 음주율 추이는 <표 III-4-44>와 같다. 2012년 현재 중고등학생의 음주율은 19.4%로 흡연율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는 중학교 1학년이 6.6%, 2학년이 9.8%, 3학년이 14.3%이며, 고등학교 1학년이 22.4%, 2학년이 30.0%, 3학년이 32.2%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음주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는 2008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44 현재 음주율 추이

(단위 : %)

연도	중·고	중	고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2008	24.5	15.1	34.5	10.7	14.9	19.6	30.1	36.6	37.3
2009	21.1	13.3	29.1	9.5	13.4	16.8	24.6	31.1	31.8
2010	21.1	13.3	28.9	9.6	12.8	17.3	24.4	30.2	32.1
2011	20.6	12.0	29.0	8.3	11.8	15.6	24.3	30.6	32.3
2012	19.4	10.3	28.2	6.6	9.8	14.3	22.4	30.0	32.2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pp.76-77.

* 주 : 최근 30일 동안 1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는 사람의 비율

(2) 정책제언

약물남용 방지 대책에 대한 지표로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과 흡연을 및 음주율 현황을 살펴보았다. 흡연예방과 음주예방 교육을 포함한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중·고등학생에게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교육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 <표 III-4-42>에서 보듯이 고등학생의 교육 경험률은 24.6%에 그치고 있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실태조사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최근 발표된 보고서(부산시교육청, 2012)에서는 최초 흡연시기를 묻는 질문에 초등학교 4~5학년 때라고 보고하고 있어, 실제 약물에 노출되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중·고등학생뿐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실태조사 현황에 초등학생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는 예방교육의 방향과 지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되고,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 시기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황성현(2012)에 의하면, 지위비행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청소년 초기에는 가족과 부모가 중요하지

만, 청소년 중기와 후기는 비행친구와의 차별적 접촉을 포함한 친구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특성과 시기별로 약물남용 예방교육 내용과 개입 전략은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약물남용교육은 1-2회의 단순 교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는 학업중심의 교과 과정 운영으로 인해 약물남용예방교육은 형식적인 대집단 교육으로 끝날 경우가 많은 편이다. 이러한 태도는 아동·청소년에게도 흡연과 음주의 단점과 폐해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담배와 술에 집중되기 보다는 자신을 통제하고 존중할 수 있는 영역까지 확대된 교육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약물과 비행이라는 행동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흡연과 음주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수 있음을 교사들과 담당 관련자들은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내면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자신의 불안을 감추거나 부인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2012.11.2)는 2012년 청소년정신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서 우울한 경험 및 자살생각을 하는 학생은 흡연, 음주, 수면 등의 건강행태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 경험이 자살생각을 한 적이 없는 학생보다 흡연율과 음주율은 약 2배, 수면 미충족률은 약 1.5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예방교육의 내용에는 우울과 스트레스 관리 및 대처전략 등 아동·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아동·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와 관련된 규제가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성인이나 구매대행업체의 대리 구매, 청소년의 신분증 변조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에게 흡연 장소를 제공하거나 방치하는데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편의점 등의 담배 진열 등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어야 한다(이경심·이순례·김지연, 2013). 마지막으로, 약물남용 예방교육은 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청소년들보다 유해환경에 더 노출되었으면서도 어른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으므로, 흡연과 음주를 더 많이 하게 된다. 쉼터나 검정고시 학원 등에서도 약물남용예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7)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1) 지표의 현황

①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가. 빈곤율

아동빈곤율은 일반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로 구분할 수 있다.

표 III-4-45 아동빈곤율(절대 빈곤율) 변화 추이

(단위 : %)

연도	도시근로자가구	전가구기준
2003	3.3	5.4
2004	2.8	6.4
2005	3.9	5.7
2006	3.3	5.7
2007	2.9	5.2
2008	3.4	7.8
2009	3.1	4.8
2010	2.6	4.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107.

* 원자료 : 김문길 외(2011),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 1) 1인가구, 농어촌지역 제외
2) 0~18세 미만을 기준으로 분석
3) 경상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율은 전체 가구 중 가구경상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의 비율로 측정한다. 아동빈곤율이란 전체 아동이 있는 가구 중에서 최저생계비 이하인 아동가구의 수를 백분율화한 것이다(여성가족부, 2012b). 2010년도 아동빈곤율은 도시근로자가구 기준으로 2.6%이며, 전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4.7%로 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의 아동빈곤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3년에 비해 2010년의 아동빈곤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발표하며,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보건복지부, 2013). 2012년도의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46>과 같다.

0-24세의 수급자는 총 364,65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28.0%에 해당하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수급자 대비 아동·청소년의 수급자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0-4세 수급자가 22,412명, 5-9세가 41,804명, 10-14세가 93,517명, 15-19세가 146,939명, 20-24세가 59,978으로 10-19세 청소년의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4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단위 : 명)

연도	0-24세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수급자 전체
2003	416,139	29,287	79,755	116,868	140,609	51,018	1,292,690
2004	432,666	30,641	82,724	127,251	141,729	50,321	1,337,714
2005	464,888	32,015	87,408	143,017	150,698	51,750	1,425,684
2006	471,503	30,757	85,431	147,672	158,400	49,243	1,449,832
2007	468,795	29,405	79,163	144,829	165,833	49,565	1,463,140
2008	457,122	27,073	70,251	138,023	169,986	51,789	1,444,010
2009	466,872	28,338	65,428	135,623	179,584	57,899	1,482,719
2010	445,080	27,106	56,051	124,724	176,277	60,922	1,458,198
2011	407,415	25,104	47,787	109,979	163,648	60,897	1,379,865
2012	364,650	22,412	41,804	93,517	146,939	59,978	1,300,499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32.

* 주 : 수급자전체는 시설수급자(2012년도 93,543명)를 제외한 일반수급자 전체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을 살펴보면, 중년기의 수급자가 36.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노년기(28.9%), 청소년기(16.3%), 청년기(1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 현황은 영유아가 해당연령의 총 인구수 대비 수급자가 1.0%였으며, 학령기 아동이 2.2%, 청소년기가 3.9%, 청년기가 1.0%, 중년기 2.5%, 노년기 6.3%로 나타나서 노인의 빈곤율이 가장 높지만,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기의 수급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 빈곤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표 III-4-47 생애주기별 일반수급자 현황

구분	영유아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합계
수급자수(명)	29,111	63,541	212,020	146,520	473,209	376,098	1,300,499
수급자비율(%)	2.2	4.9	16.3	11.3	36.4	28.9	100
총인구수(명)	2,816,103	2,907,732	5,392,155	14,795,891	19,056,331	5,980,060	50,948,272
총인구수대비 수급자비율(%)	1.0	2.2	3.9	1.0	2.5	6.3	2.6

* 출처 :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15.

* 주 : 1) 생애주기는 영유아기(0-5세), 학령기(6-11세), 청소년기(12-19세), 청년기(20-39세), 중년기(40-64세), 노년기(65세 이상)로 분류함
2) 총인구수는 통계청 주민등록인구

②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가. 아동급식 지원현황

정부는 가족기능의 결손으로 결식의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해 2000년 10월부터 아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2000년도에는 석식만을 지원하였으나, 2001년 이후 조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2004년부터는 방학이나 토요일, 공휴일 중식지원도 실시하고 있다. 아동급식은 복지관, 민간 및 종교단체의 급식소에서 교육 또는 복지프로그램과 병행하여 급식을 제공하거나, 일반음식점 이용, 도시락, 주부식 배달 등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2a).

표 III-4-48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지원대상자	13,792	235,202	214,009	257,276	271,606	415,519	476,444	475,811	471,961

* 출처 : 보건복지부(2012a). 2011 보건복지백서. p.178.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1 보건복지백서의 연도별 아동급식 지원 현황은 <표 III-4-48>과 같다. 2011년도에 급식지원을 받은 아동은 471,961명이며, 2003년 13,792명, 2007년 271,606명인 것에 비하면 지원아동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현황

정부에서는 방임될 우려가 있는 아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구 공부방)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전면 지원하기 시작하였다(여성가족부, 2012b).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인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혼자 지내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 보호자 및 지역사회 연계 등의 통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를 살펴보면, <표 III-4-49>와 같다.

2012년 12월 현재 전국에 신고·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총 4,036개소이며(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이중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3,500개소이다. 500여개소가 정부의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기는 하지만, 2012년 정부지원 지역아동센터는 3,500개로 2004년도에 500개이던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월 지원 단가도 2004년에는 67만원이었으나, 2012년에는 395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지원예산은 2004년 12억원, 2008년 282억원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767억원이었다.

표 III-4-49 연도별 지역아동센터 지원개소 및 단가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지원개소(개소)	500	800	902	1,800	2,088	2,788	2,946	3,260	3,500
지원단가(만원/월)	67	200	200	200	220	상반기:220 하반기:320	320	370	395
예산(억원)	12	98	98	206	282	457	543	695	76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132.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다음으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에 총 108,357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미취학 4,028명, 초등학교 저학년 19,495명, 초등학교 고학년 18,535명, 중학생 20,017명, 고등학생 3,663명, 탈학생 223명이 이용하고 있었다. 지역아동센터의 증가와 함께 연도별 이용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50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합계	23,347	43,749	58,851	76,229	87,291	97,926	100,233	104,982	108,357
미취학	1,564	3,023	4,133	4,127	4,585	4,838	4,376	4,578	4,028
초·중·고 학생	18,348	34,617	25,149	32,867	35,972	39,053	37,865	19,218	19,495
			21,426	28,177	33,163	38,032	40,233	18,189	18,535
중학생	2,880	5,129	6,846	9,224	11,380	13,600	15,075	17,374	20,017
고등학생	555	958	1,095	1,413	1,862	2,072	2,346	3,014	3,663
탈학생	-	-	103	104	133	331	338	285	223
기타	-	22	99	317	196	-	-	-	-

* 출처 :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p.38.

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학교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취약 아동·청소년의 교육적 필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 지원 사업으로 학습능력 증진 프로그램, 문화체험 활동, 심리정서 발달 지원 프로그램, 진로탐색 프로그램, 복지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2b).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신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이 200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어 종래 지역 단위로 사업학교가 선정되었던 기준이 학교단위로 전환되어 개별학교에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읍면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연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표 III-4-51>과 같다. 2011년도에 지원학교는 총 1,356개교로 2010년도의 534개교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예산도 2010년도에는 810억원이었으나 2011년도에는 1,566억원으로 증가하였다.

표 III-4-51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

구분	2003~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대상지역(개)	8 (서울6,부산2)	15 (기존8,신규7)	30 (기존15,신규15)	60 (기존30,신규30)	60 (기존60)	100 (기존60,신규40)	100 (기존60,신규40)	114 (교육지원청)
학교 수(교)	45 (초29,중16)	82 (초50,중32)	163 (초99, 중61,고3)	322 (초187, 중132,고3)	322 (초187, 중132,고3)	538 (초304, 중230,고4)	534 (초296, 중234,고4)	1,356 (초670, 중681,고5)
학생 수(명)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명))	40,707 (4,758)	75,189 (9,765)	153,178 (16,719)	326,826 (35,110)	304,464 (27,904)	490,081 (40,275)	452,467 (35,725)	1,086,434 (71,853)
지원액(억원)	238	160	359	642	514	866	810	1,566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275.

* 원자료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사업 평가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1년도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현황

* 주 : 1) 유치원 원아를 제외한 초·중·고등학생에 한함

2) 2007년에는 학생 수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학생 수 포함

라.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드림스타트(DreamStart)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여성가족부, 2012b). 지원대상은 0세부터 12세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이며, 아동에게는 건강·복지·보육 등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에게는 자녀양육지도와 직업훈련, 고용촉진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대상 선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족 및 차상위계층 가정, 공동생활가정, 대리양육, 결손가정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여성가족부, 2012b). 2004년 민간단체에 의해 추진된 ‘위스타트’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여 2007년 드림스타트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드림스타트센터의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는 <표 III-4-52>와 같다. 2011년도에는 131개 시·군·구에서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372억원의 예산으로 44,651명의 아동과 29,332명의 가구를 지원하였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설치지역과 예산, 지원아동과 가구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I-4-52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및 이용아동 수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설치지역(개소)	16	32	75	101	131
사업예산(억원)	50	98	225	301	372
아동 수(명)	3,769	9,901	26,208	32,641	44,651
가구 수(가구)	2,465	6,516	17,141	21,699	29,332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135.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마.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

정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의 ‘빈곤 대물림’ 현상을 예방하고, 저소득 아동의 자립의지 함양을 위하여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09년도 부터는 ‘디딤씨앗통장’이라는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디딤씨앗통장은 도움이 필요한 시설보호,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시설 아동에게 전달되며, 0-17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아동이 저축한 만큼 국가가 월 3만원 한도내에서 추가로 적립하여 저축액이 두 배가 되게 하는 것이다. 디딤씨앗통장으로 모아진 저축은 학자금, 취업훈련, 주거마련 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된다. 2011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일부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은 <표 III-4-53>과 같다. 2011년도의 가입대상은 45,088명이며, 이 중 가입자는 42,985명으로 가입률은 95.3%이다. 월평균 정립액은 31,826원이며, 적립금 누계는 아동 510억원, 정부 409억원으로 총 919억원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에 비해 2010년과 2011년에 가입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월평균 적립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표 III-4-53 아동발달계좌(디딤씨앗통장) 개설현황

연도	가입대상(명)	가입자(명)	가입률(%)	월평균 적립액(원)	적립금 누계(억원)		
					아동	정부	계
2009	43,143	36,469	84.5	25,184	258	223	481
2010	42,030	40,829	97.1	29,129	377	308	685
2011	45,088	42,985	95.3	31,826	510	409	91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138.

* 원자료 :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부 성과자료집

(2) 정책제언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지표로 사회보장서비스 내용인 아동급식 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과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을 살펴보았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면서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와 통합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센터가 확대되었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 및 개발과 ‘맞춤형 통합 서비스’의 기능을 통해 지역사회 고위험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우수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의 보장이라는 목적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은 공공에서 제공되는 다른 서비스와 연계가 취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등에서 지원하는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기도 한다. 따라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어린 시기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격차를 예방적인 접근으로 줄일 수 있도록 영유아 연령대에 보다 집중 할 필요가 있다(이봉주, 2010). 이러한 전략은 사회보장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연령별로 대상을 차별화하여 아동·청소년 생애 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최은진·김미숙·이명수·윤명주·정지원, 2012).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국고의 지원을 받기 시작하여, 2012년 현재 3,500개 소로 증가하였으며 연도별 이용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도 서비스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 보호와 학습 뿐 아니라 문화, 대인관계, 인권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지역아동센터가 빠르게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빈곤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센터의 운영기관 또는 기관장의 역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 질과 지역사회와의 연계체계 등에 있어 지역편차가 큰 편이며, 관리체제도 갖추어져 있지 못한 곳도 있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 아동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환경을 갖추 수 있도록 객관적 지표와 평가를 통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용하는 대상이 빈곤가족의 아동 뿐 아니라 다문화, 장애 아동 등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지역아동센터는 이들의 욕구를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역할과 기능도 변화해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보장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교과부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WEE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센터(CYS-Net)를, 보건복지부에서는 드림스타트와 디딤씨앗통장 등을 담당하고 있다. 부처마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지만 중복예산 발생에 대한 대처가 미흡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겹치거나 모호하여 수요자들

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여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마다 센터존재 여부와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서비스 질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셋째, 기관의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대상 아동·청소년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관의 중점적인 기능과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사정과 빠른 개입을 위해서 인권감수성 교육이 필요하다.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할 권리를 누리고, 존중받는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기관장과 종사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열악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소진을 막고 임파워링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과 재교육 기회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²¹⁾

1) 교육에의 권리

(1) 지표의 현황

① 교육의 기회

가. 취학률

취학률은 취학 적령 재직 학생수를 취학 적령 인구로 나누어 100을 곱한 것이다. 취학 적령은 보통 유치원의 경우 3-5세, 초등학교는 6-11세, 중학교는 12-14세, 고등학교는 15-17세, 고등교육기관은 18~21세이다. <표 III-5-1>의 취학률을 산출하는데 적용된 취학 적령 인구는 통계청(2010)의 '장래 인구 추계'를 기준하였고, 2010년까지는 확정 인구이며, 2011년 이후는 잠정 추계이므로 다음 추계 시 변경될 수 있는 수치이다. 표에서 보는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통념상 아동으로 간주되는 유치원과

21) 이 절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으며, 본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자료집(워크숍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볼 때에 유치원은 2000년에 26.2%였던 것이 2012년에는 44%로 증가되었고, 의무교육에 해당되는 대상인 초등학생은 98.6%가 취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통념상 청소년이라 할 수 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중에서 의무교육의 대상에 해당되는 중학생의 취학률은 2000년의 95%에서 2012년의 96.1%로 미세한 증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고등학생은 의무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2000년에는 89.4%로 90%를 넘지 못했으나 2012년에는 92.6%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연령인 9-24세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대한민국의 전체 고등교육기관²²⁾에 취학하고 있는 비율이 2000년에는 52.5%로 취학 적령인구의 과반수를 약간 넘었으나 2012년에는 68.4%에 달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취학률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고 있다. 2010년의 OECD 국가 간 취학률을 비교해보면 3-5세의 연령에서 OECD 평균 취학률이 95.9%이고, 한국은 99.7%로 한국이 취학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14세 연령을 대상으로 중학교까지 취학률을 살펴보면 OECD 평균은 82.9%인데 반해 한국은 85.9%로 한국이 교육의 기회를 OECD 평균보다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4).

표 III-5-1 각급학교의 연도별 취학률(2000, 2008~2012)²³⁾

(단위 : %)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치원	26.2	37.8	39.5	40.2	40.9	44.0
초등학교	97.2	99.0	97.9	99.2	99.1	98.6
중학교	95.0	93.2	96.2	97.0	96.7	96.1
고등학교	89.4	90.0	92.5	91.5	91.9	92.6
전체 고등교육기관	52.5	70.5	70.4	70.1	71.0	68.4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21

나. 진학률

진학률은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를 당해년도 졸업자로 나누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표 III-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12년까지 거의 100%에 가까운 99.9%에 해당한다. 또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는 비율도 2000년에 99.6%였고, 2012년에는 99.7%로 대부분의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22) 전체 고등교육기관은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원격대학, 사이버 대학, 사내대학, 기능대학, 전공대학이 포함되어 있다.

23)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되었고,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 수에는 연도 및 기관에 따라 17세 이하의 학생이 포함되었다.

진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교육 과정에 진학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2000년에는 전체 62%였던 것이 2012년에는 71.3%로 나타나 비교적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77.8%를 정점으로 진학률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일반계고와 전문계고의 고등교육 과정에의 진학률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반계고는 2008년 87.9%의 진학률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다가 2012년에는 76.2%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계고는 원래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이기에 2000년 고등교육 과정으로의 진학률이 42%로 낮았으나 2009년 73.5%로 많이 증가했다가 2012년에는 54.9%로 다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2 교육단계별 진학률 추이(2000, 2008~2012)²⁴⁾

(단위 : %)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초등학교→중학교과정		99.9	99.9	99.9	99.9	99.9	99.9
중학교→고등학교과정		99.6	99.7	99.6	99.7	99.7	99.7
고등학교 →고등교육기관	전체	62.0	77.0	77.8	75.4	72.5	71.3
	일반계고	83.9	87.9	84.9	81.5	75.2	76.2
	전문계고	42.0	72.9	73.5	71.1	63.7	54.9
	일반고	-	-	-	-	[75.8]	[76.6]
	특수목적고	-	-	-	-	[67.4]	[64.2]
	특성화고	-	-	-	-	[61.0]	[50.0]
	자율고	-	-	-	-	[69.3]	[72.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22

다. 학업중단율

학업중단율은 학업을 중단한 자의 수를 전년도 재적 학생 수로 나눈 것을 나타내는 비율이다. 아동과 청소년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들에게 가정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개인의 질병 또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지식기반 사회인 현대사회 속에서 특히, 학벌사회인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당사자에게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을 중단한 이유가 자신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의 조건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빼앗기는 차원의 인권문제가 되므로 한 국가의 학업중단율이 높다는 것은 당사국이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알리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24) 2011년부터 고등학교 유형이 개정되어 기존 유형 졸업자는 2013년까지 발생하였다. 일반계·전문고 진학자는 2011년 이후는 대학 등록자 기준, 2011년 이전은 대학 합격자 기준임(전체 고등학교 진학률은 대학 등록자 기준으로 보정한 수치임)

<표 III-5-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업중단율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교에서 2000년에 0.4%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 0.6%로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0.7%였던 학업중단율이 2011년에는 0.9%로 증가되었다. 고등학교에서는 학업중단율이 더 높아서 2000년도에 2.3%였던 것이 2011년에는 1.9%로 낮아진 것을 볼 수 있다. 2011년에 해외유학생을 학업중단자에 포함시켰는데도 전년도에 비해 학업중단율이 낮아진 것은 고무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1년 한국의 초·중·고 전체 학생 수가 각각 3,132,484명, 1,910,578명, 1,960,338명이고 각각 학업중단율이 0.6%, 0.9%, 1.9%이므로 학업중단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각각 18,795명, 17,195명, 37,246명으로 모두 합하면 73,236명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 의해 매년 7만명이 넘는 아동 및 청소년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한다는 것은 국가로서도 큰 사회문제이고 차후에 이들의 학교와 사회에 다시 진입시키기 위하여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해당 당사자에게는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III-5-3 연도별 학업중단율 추이(2000, 2008~2011)²⁵⁾

(단위 : %)

구분(학년도)	2000	2007	2008	2009	2010	2011
초등학교	0.4	0.5	0.5	0.3	0.6(0.3)	0.6(0.3)
중학교	0.7	1.0	1.0	0.8	1.0(0.8)	0.9(0.8)
고등학교	2.3	1.8	1.8	1.8	2.0(1.7)	1.9(1.7)
전체 고등교육기관	6.1	7.3	6.8	6.5	6.7	6.4
일반대학	3.9	4.8	4.1	4.0	4.0	4.0
전문대학	5.5	8.3	7.8	7.3	7.4	7.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24

한편,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표 III-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응답자 6,664명 중 23.2%가 학업을 중단할 생각을 해보았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5명 중 1명이 넘는 비율로 매우 심각한 수치라 할 수 있다. 응답자의 23.2% 중 여학생이 24%로 남학생보다 많았고, 고등학생이 29.2%로 10명 중 3명꼴로 학업중단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5) 고등교육기관의 학업중단율(제적률)=[제적 학생수/전년도 재적 학생수]×100. 중학교는 2003년부터 의무교육시행으로 학업중단자를 유예 및 면제자로 보았고, 고등학교에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학교, 자율고가 포함되었다. 2011년도부터 유학자가 학업중단자에 포함되었고, 2011~2012년의 ()는 2010년 이전 기준(유학·이민 제외)으로 산출한 값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제적학생은 미등록, 미복학, 자퇴, 학사경고 등 기타사유에 의해 학적에서 제외된 학생이다.

2011년 실제로 학업을 중단한 중·고 학생의 각 0.9%, 1.9% 학업중단율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2012), 잠재적인 학업중단율을 보여주고 있는 심각한 결과이다. 특히, 학업성적이 낮은 34.8%의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더 생각했으며, 경제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31.4%의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할 생각을 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수준과 학업수준의 상관관계와 이들의 학업중단율과의 상관관계 또한 읽을 수 있다.

표 III-5-4 최근 1년 동안 학교 포기 결심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23.2	76.8	100.0(6,664)	
성별	남자	22.5	77.5	100.0(3,494)	508.223***
	여자	24.0	76.0	100.0(3,170)	
학교 유형	중학교	16.9	83.1	100.0(3,265)	24.4***
	고등학교	29.2	70.8	100.0(3,399)	
지역 규모	대도시	22.6	77.4	100.0(2,775)	150.412***
	중소도시	22.8	77.2	100.0(3,011)	
	읍면지역	26.6	73.4	100.0(878)	
학업 성적	상	13.0	87.0	100.0(1,740)	12.04*
	중	19.9	80.1	100.0(2,630)	
	하	34.8	65.2	100.0(2,285)	
경제적 수준	상	20.5	79.5	100.0(2,554)	1.9
	중	21.1	78.9	100.0(2,619)	
	하	31.4	68.6	100.0(1,479)	

* $p<0.05$, *** $p<0.001$

라. 학교부적응 이유

<표 III-5-5>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부적응은 위에서 서술한 학업중단보다는 교육받을 권리의 침해에 있어서 덜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교에서의 부적응이 학업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볼 때에 학교부적응에 대하여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지표는 2012년에는 없던 지표로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아 2013년에 새롭게 채택된 지표이다. 아직 국가의 관련기관에서 이에 관련된 통계가 산출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 2013년에 실시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상황에 관하여 조사되었다. 조사지에서는 조사에 응한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를 질문하였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무려 응답자의 반수에 가까운 48.2%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학생(44.5%)보다 여학생이(52.3%), 초등학생(35.2%)과 중학생(49.9%) 보다는 고등학생(57.4%)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도시(49.1%)보다는 읍면(53.1%) 거주 학생들이, 성적이 높은 학생(39.4%)보다는 낮은 학생(62.5%)들이,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생들(41.8%)보다는 낮은 학생(62.1%)들이 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5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경험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48.2	51.8	100.0(9,488)	
성별	남자	44.5	55.5	100.0(4,970)	195.517***
	여자	52.3	47.7	100.0(4,518)	
학교 유형	초등학교	35.2	64.8	100.0(2,808)	57.29***
	중학교	49.9	50.1	100.0(3,278)	
	고등학교	57.4	42.6	100.0(3,402)	
지역 규모	대도시	49.1	50.9	100.0(3,934)	3.2
	중소도시	46.1	53.9	100.0(4,382)	
	읍면지역	53.1	46.9	100.0(1,172)	
학업 성적	상	39.4	60.6	100.0(2,844)	111.816***
	중	45.1	54.9	100.0(3,985)	
	하	62.5	37.5	100.0(2,642)	
경제적 수준	상	41.8	58.2	100.0(4,300)	285.483***
	중	49.6	50.4	100.0(3,520)	
	하	62.1	37.9	100.0(1,654)	

*** $p < 0.001$

한편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들을 열거하고 그 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택하라고 하였을 때에 <표 III-5-6>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4,566명의 전체 응답자 중에서 70.4%의 다수가 ‘학교의 수업이 싫어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다음으로 57.5%가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다른 취미 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로 40%가 응답을 하였으며, 37.3%는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로 응답하였고, 24.4%는 ‘성적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이 응답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는 일시적이거나 상시적이지 않은 응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수업이 싫어서’와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적이 좋지 않아서’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 아이들이 학교 수업과 일반적인 공부에 너무 시달려 이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반응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학교가기 싫은 이유로 두 번째로 응답이 많았던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도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내지는 공부에 시달려 심신이

매우 피로한 상태라고 판단할 수 있다. 대체로 특성화고의 학교유형에 다니는 학생과, 읍면 거주 학생과,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학교에 이러한 이유들에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실태조사에서 당시 전국 남녀 일반계와 전문계 고등학교 9,627명의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11.38%가 학습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31.29%가 학교의 규범 때문에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류방란·최윤선·신희경·이규재, 2007: 62). 2013년의 조사내용과 비교해 보면 6년 전보다 학교 규범보다는 수업에 더 혐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들이 보다 학교에서 즐겁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측면에서 학교 수업의 개선을 위하여 정부나 교육 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이 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표 III-5-6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

(단위 : %(명))

구분	괴롭힘을 당해서	성적이 좋지 않아서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학교 수업이 싫어서	학교 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전체(N)
전체	5.9	24.4	9.7	1.2	2.8	70.4	37.3	57.5	40.0	22.7	100.0(4,566)
성별	남자	6.0	23.0	10.7	1.4	3.1	71.6	36.8	54.6	20.2	100.0(2,206)
	여자	5.7	25.7	8.8	1.0	2.4	69.2	37.7	60.1	24.9	100.0(2,360)
학교 유형	초등학교	13.2	23.9	12.4	1.1	2.3	63.2	23.9	41.9	50.7	100.0(987)
	중학교	6.2	22.4	10.3	1.3	3.6	72.1	41.4	61.0	37.4	100.0(1,633)
	일반/특목/자율고	1.8	28.1	7.7	0.8	2.3	71.0	40.0	63.1	36.1	100.0(1,574)
	특성화고	1.9	19.0	8.2	2.3	2.4	78.9	42.8	59.2	39.6	100.0(372)
지역 규모	대도시	5.3	24.8	9.2	1.2	3.0	69.5	38.2	58.2	38.6	100.0(1,930)
	중소도시	6.2	24.2	9.3	1.3	2.9	70.5	34.9	57.4	40.5	100.0(2,015)
	읍면지역	6.5	23.9	12.3	0.5	1.4	72.7	42.0	55.2	42.3	100.0(622)
학업 성적	상	6.2	13.7	11.3	0.6	2.6	65.5	36.3	64.8	39.3	100.0(1,117)
	중	6.0	23.5	9.0	1.2	2.1	69.7	35.6	56.5	40.5	100.0(1,794)
	하	5.5	32.8	9.4	1.5	3.6	74.4	39.6	53.6	39.9	100.0(1,645)
경제적 수준	상	5.4	22.1	11.6	0.4	2.0	68.7	35.8	56.7	40.9	100.0(1,791)
	중	6.0	25.4	9.3	0.6	2.6	71.6	37.9	57.6	39.0	100.0(1,743)
	하	6.4	27.0	6.9	3.4	4.3	71.0	38.8	58.5	40.1	100.0(1,024)

* 주 : 1+2+3순위, 복수응답

또 다른 학교부적응의 실태조사 결과로는 <표 III-5-7>, <표 III-5-8>, <표 III-5-9>에서 각각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응답한 학생들의 무단결석,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 학교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음의 대답에서 이들이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표 III-5-7>에서

는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한 학생들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대체적으로 무단결석을 전혀 하지 않은 학생들이 96.2%에 달하나 나머지 3.8%의 학생들은 무단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무단결석은 학교부적응 상태를 나타내 주고 있지만 향후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이들에 대하여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다각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역시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무단결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 무단결석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7 최근 1년 동안 보호자나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에 무단결석한 경우

(단위 : %(명))

구분		한주에 1-2번	한달에 1-2번	한학기에 1-2번	전혀 없다	전체(N)	χ^2
전체		0.5	0.8	2.5	96.2	100.0(9,511)	
성별	남자	0.5	1.0	2.8	95.6	100.0(4,978)	772.231***
	여자	0.4	0.7	2.2	96.7	100.0(4,533)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0.4	0.5	1.7	97.4	100.0(2,828)	3.1
	중학교	0.3	0.8	2.7	96.2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0.3	0.8	2.8	96.2	100.0(2,799)	
	특성화고	2.4	3.2	4.7	89.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0.5	1.0	2.6	95.9	100.0(3,940)	34.267***
	중소도시	0.5	0.8	2.5	96.2	100.0(4,392)	
	읍면지역	0.2	0.4	2.5	96.9	100.0(1,179)	
학업 성적	상	0.2	0.4	1.1	98.3	100.0(2,851)	133.999***
	중	0.3	0.5	2.1	97.1	100.0(3,994)	
	하	1.0	1.8	4.8	92.4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0.4	0.4	1.8	97.5	100.0(4,316)	1103.846***
	중	0.4	1.0	2.7	95.9	100.0(3,526)	
	하	0.9	1.7	4.2	93.3	100.0(1,656)	

*** $p < 0.001$

다음으로 <표 III-5-8>에서는 수업시간에 엷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의 결과인데 수업시간에 엷드려 잠을 잔다고 모두 학교부적응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행태는 학교의 수업에 대한 일반적 태도라 할 수 없기에 학교부적응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업시간에 엷드려 잠을 자는 경우가 전체 응답학생의 60%에 달하고 있어 3명 중 2명 가까이 수업시간에 엷드려 잠을 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학교부적응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85.7%가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 주에 1-2번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72.2%라고 응답한 것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수업이 거의 황폐화된 것을 의미하는 수치여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수학생들의 집단인 특목고 학생들에서도 한 주에 1~2번 엎드려 잔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이 35.5%에 달하고 있어 이는 선행학습과 지나친 공부에 학생들이 지쳐있는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표 III-5-8 최근 1년 동안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잔 경우

(단위 : %(명))

구분		한주에 1-2번	한달에 1-2번	한학기에 1-2번	전혀 없다	전체(N)	χ^2
전체		36.4	12.0	11.3	40.3	100.0(9,505)	
성별	남자	38.8	11.8	10.5	38.8	100.0(4,974)	719.122***
	여자	33.8	12.2	12.2	41.8	100.0(4,530)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3.0	3.2	8.0	85.8	100.0(2,825)	100.267***
	중학교	38.9	17.2	15.8	28.2	100.0(3,272)	
	일반계고	61.3	14.9	9.5	14.3	100.0(2,452)	
	특성화고	72.2	10.1	7.2	10.5	100.0(609)	
	자율고	51.1	18.5	15.1	15.3	100.0(255)	
	특목고	35.5	13.9	23.7	26.9	100.0(92)	
지역 규모	대도시	35.4	11.7	11.2	41.7	100.0(3,940)	108.535***
	중소도시	36.8	12.1	11.1	40.1	100.0(4,388)	
	읍면지역	38.2	12.6	13.0	36.1	100.0(1,176)	
학업 성적	상	21.4	10.9	12.2	55.6	100.0(2,850)	14.9
	중	32.1	12.9	12.0	42.9	100.0(3,989)	
	하	59.1	11.8	9.3	19.8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27.3	10.6	11.2	50.9	100.0(4,315)	744.434***
	중	38.6	13.6	11.8	36.0	100.0(3,521)	
	하	55.2	12.4	10.7	21.6	100.0(1,656)	

*** $p < 0.001$

또한 <표 III-5-9>에서는 최근 1년 간 학교에 다니는 것이 즐거운 경우를 조사한 결과인데 여기에서 학교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7.6%에 달하고 있어 이들은 학교부적응 학생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즐겁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1.3%로 나타나 이들도 잠재적으로 향후 학교부적응 학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학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은 7.6%의 학생들은 향후 학업중단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대상이어서 이들에 대한

교육적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13.1%가 학교 가는 것이 전혀 즐겁지 않은 상태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업성적과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등교가 전혀 즐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5-9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6	21.3	51.0	20.1	100.0(9,511)	
성별	남자	7.9	21.8	49.6	20.7	100.0(4,984)	1137.866***
	여자	7.4	20.8	52.5	19.4	100.0(4,526)	
세부 학교 유형	초등학교	5.9	12.7	46.2	35.2	100.0(2,822)	356.128***
	중학교	7.8	22.0	52.6	17.6	100.0(3,280)	
	일반/특목/자율고	8.0	27.7	54.1	10.2	100.0(2,801)	
	특성화고	13.1	27.8	50.1	9.0	100.0(608)	
지역 규모	대도시	7.9	20.7	51.3	20.0	100.0(3,942)	323.858***
	중소도시	7.1	21.1	50.4	21.3	100.0(4,391)	
	읍면지역	8.6	23.7	51.8	15.9	100.0(1,177)	
학업 성적	상	4.4	16.0	50.3	29.3	100.0(2,851)	264.138***
	중	6.3	19.7	54.2	19.8	100.0(3,997)	
	하	13.1	29.5	46.8	10.7	100.0(2,645)	
경제적 수준	상	5.4	16.5	50.9	27.2	100.0(4,311)	964.053***
	중	7.8	23.6	52.5	16.1	100.0(3,530)	
	하	12.9	28.8	48.0	10.3	100.0(1,656)	

*** $p < 0.001$

마.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학생 1인당 학교교육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 및 행정지원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가 한 국가의 전체 교육비 규모를 보여주는 거시적 지표라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실질적으로 개별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미시적 지표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산출에 활용되는 항목은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서 지출된 경상비(인건비, 인건비 외)와 자본비로 구성된다. OECD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구매력 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사용한다. 구매력지수는 실제 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로서 OECD 및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3년을 주기로 몇 가지 물품에 대한 가격을 비교함으로써 산출한다. 우리나라 2009년 구매력지수 환율은 US 1\$당 804.11원이며, 국민 1인당 GDP는 US \$27,171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6). 이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산출은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경상비와 자본비를 더한 총액을 학생 수와 구매력지수를 곱한 수로 나누어 얻은 수치를 말한다.

표 III-5-10 주요 국가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2009)

(단위: 미국달러의 구매력지수(PPP))

국가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전체
		전체중등교육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OECD 평균	7,719	9,312	8,854	9,755	13,728	9,252
한국	6,658	9,399	7,536	11,300	9,513	8,542
캐나다	8,262	8,997	x(1)	10,340	20,932	m
핀란드	7,368	8,947	11,338	7,739	16,569	9,910
프랑스	6,373	10,696	9,111	12,809	14,642	9,913
독일	6,619	9,285	8,130	11,287	15,711	9,779
이탈리아	8,669	9,112	9,165	9,076	9,562	9,055
일본	7,729	9,256	8,985	9,527	15,967	10,035
영국	9,088	10,013	10,124	9,929	16,338	10,587
미국	11,109	12,550	12,247	12,873	29,201	15,812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p.68

<표 III-5-10>에서는 OECD 주요 국가와 한국의 교육단계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잘 비교할 수 있다. 2009년의 국제비교 통계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OECD의 주요 국가들 중 가장 낮은 공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기중등교육 단계는 초등고등교육과 마찬가지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낮으나 후기중등교육 단계에서는 1,545달러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이 전체적으로 주요국가 중 공교육비 지출이 가장 낮게 나타난 큰 이유는 고등교육에서 가장 큰 차이로 낮은 공교육비 지출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교육단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표 III-5-7>에서 나타난 OECD 주요국가 중 가장 많은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구매력지수 PPP 기준 15,812달러를 지출하고 있는 미국이다. 전체교육단계에서 이는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와 비교해 볼 때 초등교육 약 1.7배, 전기중등교육 약 1.6배, 후기중등교육 약 1.1배, 고등교육 약 3.1배에 달하고 있다.

한편, 대한민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나타내는 구매력지수 추이는 2000년 746.21에서 2004년 796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2007년까지 768.65달러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더니 2008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09년에는 804.11 달러로 가장 높은 공교육비 지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66).

바. 사교육 경험률

사교육 경험률은 모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 있는가를 알아보는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한국과 같이 학벌사회 속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경쟁이 극심한 교육의 상황에서 사교육의 경험이 곧 사회계층에의 진입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아동과 청소년 개개인의 교육의 기회균등 권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커다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표 III-5-11 사교육 경험 여부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단위 : %) χ^2
전체		74.2	25.8	100.0(9,507)	
성별	남자	72.9	27.1	100.0(4,979)	1600.577***
	여자	75.7	24.3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83.8	16.2	100.0(2,828)	1291.368***
	중학교	80.4	19.6	100.0(3,273)	
	일반고	66.5	33.5	100.0(2,450)	
	특목고	83.8	16.2	100.0(92)	
	자율고	70.6	29.4	100.0(255)	
	특성화고	28.0	72.0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77.5	22.5	100.0(3,937)	997.458***
	중소도시	73.2	26.8	100.0(4,394)	
	읍면지역	67.4	32.6	100.0(1,176)	
학업 성적	상	82.5	17.5	100.0(2,848)	576.589***
	중	77.0	23.0	100.0(3,996)	
	하	61.1	38.9	100.0(2,646)	
경제적 수준	상	83.4	16.6	100.0(4,309)	519.425***
	중	71.9	28.1	100.0(3,531)	
	하	55.4	44.6	100.0(1,654)	

*** $p < 0.001$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을 높이거나 진학을 위해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의 결과에서 보면 <표 III-5-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체 응답자 9,507명 중 74.2%가 사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초등학교의 사교육 경험률은 더 높아서 83.8%로 나타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80.4%, 60.4%로 보이고 있다. 세부유형 학교를 비교해 보면 사교육 경험의 차이는 극명한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집단인 특목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률은 초등학생과 같이 83.8%로 가장 높고, 대학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집단인 특성화고 학생들의 사교육 경험은 가장 낮은 28%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읍면에

거주하거나 경제수준이 낮거나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사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도에는 약 21조 6천억이 넘었던 사교육비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12년도에는 약 19조원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가 경제상황이 양극화되어 중산층이 붕괴되면서 대학진학을 포기하거나,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할 수 없는 가정경제가 그 이유로 추정된다.

표 III-5-12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액 (2009~2012)

(단위 : 억 원)

시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고	전체
2012	77,554	61,162	51,679	49,083	190,395
2011	90,461	60,006	50,799	47,640	201,266
2010	97,080	60,396	51,242	47,512	208,718
2009	102,309	62,656	51,294	47,853	216,259

* 출처 : 통계청(2013). 사교육비 조사.

사.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지표는 해당교육 단계의 교원 수 대비 학생 수로 정의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한사람의 교원에게 얼마나 많은 수의 학생이 배정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교원 1명이 지도하는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을 시에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가르침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교수 내용들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 교육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교원 1인 당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보다 교육의 효과가 높아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혹 뒤처지는 학생이 있으면 그에게 상대적으로 더 지도를 하여 같은 수준으로 교육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

<표 III-5-1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교원들이 학생 개개인에게 더욱 시간과 노력을 배려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를 살펴보면 2000년 초등학교에서는 교원 1인당 28.7명이 배정되었으나, 2012년에는 16.3명으로 평균 12명 이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에서도 2000년에 교원 1인당 20.1명의 학생 수가 2012년에는 16.7명으로 감소되었고, 고등학교에서도 2000년 19.9명에서 14.4명으로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기회가 늘어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Ⅲ-5-13 교원 1인당 학생 수(2000, 2008~2012)

(단위 : 명)

구분	2000	2008	2009	2010	2011	2012	
유치원	19.5	15.5	15.2	14.8	14.6	14.5	
초등학교	28.7	21.3	19.8	18.7	17.3	16.3	
중학교	20.1	18.8	18.4	18.2	17.3	16.7	
고등학교	전체	19.9	15.5	15.7	15.5	14.8	14.4
	일반고	20.9	16.4	16.7	16.5	—	—
	전문고	18.2	13.4	13.3	13.1	—	—
	일반고	—	—	—	—	15.8	15.4
	특수목적고	—	—	—	—	11.0	10.3
	특성화고	—	—	—	—	12.5	12.1
	자율고	—	—	—	—	15.2	14.6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p.26.

<표 Ⅲ-5-14>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국제비교를 통해 2010년 주요국가의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살펴보면 유아교육 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교육 단계보다 다소 적지만 초등 이상의 단계에서는 교육단계가 높아질수록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OECD 평균의 경우 유아교육 단계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 초등교육 단계는 15.9명이지만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 단계는 각각 13.7명, 13.8명으로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 그 수치가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교원 1인당 학생 수의 높고 낮음은 국가별로 교육단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핀란드, 이탈리아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한국, 프랑스, 영국 등은 다소 많은 경향을 띤다. 한국의 경우 2010년 교육단계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유아교육 17.1명, 초등교육 21.1명, 전기중등교육 19.7명, 후기중등교육 16.5명으로 교육단계별 차이는 OECD 평균의 경향을 따르고 있다. 모든 교육단계에서 한국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교육단계별로 유아교육 27명, 초등교육 52명, 전기중등교육 6명, 후기중등교육 27명의 차이를 보여 전기중등교육이 OECD 평균과 가장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2: 134).

표 III-5-14 주요 국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0)

(단위: 명)

구분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전체
			전기중등교육			후기중등교육			
			전체	국공립	사립	전체	국공립	사립	
OECD 평균	14.4	15.9	13.7	13.5	13.1	13.8	13.7	13.9	13.8
한국	17.1	21.1	19.7	19.7	19.9	16.5	16.0	17.3	18.0
캐나다	x(3)	x(3)	17.7	17.8	15.6	15.8	15.9	14.4	17.7
핀란드	11.0	14.0	9.8	9.8	9.8	17.1	16.4	21.4	13.7
프랑스	21.5	18.7	15.0	14.7	16.3	9.7	9.6	10.0	12.3
독일	12.6	16.7	14.9	14.9	14.4	13.2	13.4	12.2	14.4
이탈리아	11.8	11.3	11.9	11.9	m	12.1	12.1	m	12.0
일본	15.9	18.4	14.4	14.6	12.7	12.2	11.5	13.9	13.2
러시아	m	19.2	x(9)	10.1	m	x(9)	m	m	11.3
영국	15.9	19.8	17.1	17.3	16.4	15.2	12.4	19.8	16.0
미국	14.6	14.5	14.0	14.4	10.7	15.0	15.6	10.7	14.4

*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p.134.

아. 대안학교 수와 종류

2013년도에 마련된 대안학교 수와 종류의 지표는 2012년도에 없었던 지표이다. 이 지표는 한국에서 매년 약 7만 명이 넘는 학업중단 아동 및 청소년들이 나오고 있고, 가출청소년은 추정해서 전국에 약 20만 명 정도로 말하고 있으며, 앞에서 조사한 결과에 나타나있는 것과 같이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 수도 상당한 상황을 고려해서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교육의 권리 차원에서 이들이 학업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대안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한국에서 현재 설립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종류는 크게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각종학교로서의 대안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비(미)인가 대안학교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도입 첫해인 1998년에 기존의 비(미)인가 대안학교 중 6개교를 대안형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환한 것을 기점으로, <표 III-5-15>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3년 6월 1일 기준 고등학교 24개교, 중학교 11개교가 각각 설립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중학교 11개교 중 공립이 2개교, 사립이 9개교로 되어 있고, 고등학교 24개교 중에는 공립이 3개교에 불과하고 21개교는 사립으로 운영되고 있다.

표 III-5-15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현황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경기	두레자연중학교	사립	'03	화성시
	이우중학교	사립	'03	성남시
	헌산중학교	사립	'03	용인시
	중앙기독교중학교	사립	'06	수원시
	한겨레중학교	사립	'06	안성시
강원	팔월중학교	사립	'11	홍천군
전북	전북동화중학교	공립	'09	정읍시
	지평선중학교	사립	'02	김제시
전남	용정중학교	사립	'03	보성군
	성지송학중학교	사립	'02	영광군
	청람중학교	공립	'13	강진군
중학교 : 11교(공립2, 사립9)				
지역	학교명	설립주체	지정년도	소재지
부산	지구촌고	사립	'02	연제구
대구	달구벌고	사립	'03	동구
인천	산마을고	사립	'00	강화군
광주	동명고	사립	'99	광산구
경기	두레자연고	사립	'99	화성시
	경기대명고	공립	'02	수원시
	이우고	사립	'03	성남시
	한겨레고	사립	'06	안성시
강원	전인고	사립	'05	춘천시
	팔월고	사립	'06	홍천군
충남	한마음고	사립	'03	천안시
	공동체비전고	사립	'03	서천군
충북	양업고	사립	'98	청원군
전북	세인고	사립	'99	완주군
	푸른꿈고	사립	'99	무주군
	지평선고	사립	'09	김제시
전남	영산성지고	사립	'98	영광군
	한빛고	사립	'98	담양군
	한울고	공립	'12	곡성군
경북	경주화랑고	사립	'98	경주시
경남	간디고	사립	'98	산청군
	원경고	사립	'98	합천군
	지리산고	사립	'04	산청군
	태봉고	공립	'10	창원시
고등학교 : 24교(공립3, 사립21)				

* 출처 : 교육부(2013a), 201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3. 6.1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 60조의 3에 근거한 각종학교로서 특성화된 대안학교는 2008년과 2009년에 각 1개교가 경기도와 서울에 개교하여 2개교에 불과하던 것이 <표 III-5-16>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3년에는 7개 시와 도에서 공립 5개교와 사립 14개교로 총 19개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각각 실용음악, 북한이탈청소년, 음악전문, 예술, 셰마, 국제화 교육, 폴리텍, 기독교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대체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009년 현재 위탁형 대안학교는 13개 시·도에 46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해당 교원은 675명, 학생은 1,283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상 학생 별로 보면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5개교,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19개교,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곳이 12개교이다. 그리고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10개교, 선택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곳이 3개교가 있으며 나머지는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III-5-16 각종학교로서 대안학교 현황

시도	학교명(과정)	설립구분	설립연도	소재지
서울	서울실용음악학교(고)	사립	'09	중구 신당동
	여명학교(고)	사립	'10	중구 남산동
	지구촌학교(초)	사립	'12	구로 오류동
	서울다솜학교(고)	공립	'12	중구 흥인동
인천	인천청담학교(고)	사립	'11	연수 동춘동
	인천해밀학교(중·고 통합)	공립	'12	남구 구월동
	인천한누리학교(초·중·고 통합)	공립	'13	남동 논현동
대전	그라시아스음악학교(고)	사립	'12	서구 도마동
	요재미학교(초)	사립	'13	유성 구암동
경기	은혜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용인시
	화요일아침예술학교(고)	사립	'11	경기 연천군
	쉐마기독교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기 양주시
	TLBU글로벌학교(초·중 통합)	사립	'08	경기 고양시
	경기새울학교(중)	공립	'13	경기 이천시
충북	글로벌선진학교(중·고 통합)	사립	'11	충북 음성군
	한국폴리텍다솜학교(고)	사립	'12	충북 제천시
충남	여해학교(중)	공립	'13	충남 아산시
경북	한동글로벌학교(초·중·고 통합)	사립	'11	경북 포항시
	글로벌선진학교 문경캠퍼스(중·고 통합)	사립	'13	경북 문경시
7개 시·도, 19교(공립5, 사립14)				

* 출처 : 교육부(2013a), 201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3. 6.1 기준)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형태가 다양할 뿐 아니라 교육당국의 관할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쉽지 않은데 2006년에 55개교가 선정된 이후 2009년 현재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100여개가 넘는 것으로 추측된다. 비(미)인가 대안학교는 학교급을 통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학교가 모두 54개교로 통합한 형태가 단일한 형태보다 더 많으며 통합의 형태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한 경우가 37개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12학년을 모두 통합한 경우가 11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한 경우가 6개였다. 비(미)인가 대안학교 설립 초기에는 주로 학업중단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통합형이 많았지만 초등 대안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증가하면서 초·중, 초·중·고

통합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이혜영·강대중·하태욱, 2009: 68~74).

자. 방과후학교 운영 수

교육과 관련된 지표 중 방과후학교 운영 수는 위의 2012년에는 없었던 지표이다. 2013년에 이 지표가 채택된 이유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방과 후에 홀로 집에 남아 있는 아동과 청소년이 늘어나면서 학습의 부진과 인터넷이나 게임중독과 같은 아동 및 청소년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방과후학교의 지표는 이렇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방과 후에 주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III-5-17 일반어린이집 방과 후 보육 현황

구분	방과후 보육 실시 시설수(개소)								보육아동(명)		
	총계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방과후(현원)		
									남	여	소계
계	644	33	118	18	417	46	2	10	2,938	2,436	5,374
서울	65	6	3	3	44	8	-	1	158	135	293
부산	61	1	13	3	41	2	-	1	300	226	526
대구	91	2	18	2	62	7	-	-	344	300	644
인천	20	2	-	1	14	1	1	1	41	45	86
광주	14	1	8	-	5	-	-	-	146	70	216
대전	11	3	2	1	2	3	-	-	37	15	52
울산	9	2	2	-	3	1	-	1	86	47	133
세종	-	-	-	-	-	-	-	-	-	-	-
경기	105	4	8	1	76	12	1	3	369	353	722
강원	12	-	3	1	7	1	-	-	89	87	176
충북	11	-	7	-	2	-	-	2	81	31	112
충남	20	5	5	1	8	1	-	-	84	71	155
전북	68	-	16	3	48	1	-	-	380	390	770
전남	14	-	7	-	7	-	-	-	86	68	154
경북	63	2	13	-	46	1	-	1	400	332	732
경남	74	5	9	2	50	8	-	-	307	243	550
제주	6	-	4	-	2	-	-	-	30	23	53

* 출처 : 보건복지부(2012c). 보육통계. p.115(2012. 12. 31 기준)

* 주 : 어린이집 특성이 방과후 전담이나 방과후 통합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에서 방과후 보육을 한 어린이집 수 및 이용한 아동 수

이러한 방과후학교의 필요성은 보육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젊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보육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관련 시설에서 정규 보육시간이 마쳐진 후에도 방과후 보육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2012년 대한민국의 방과후 보육 시설 수는 <표 III-5-1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국에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직장 등의 644개소가 있고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보육아동 수는 5,374명이다. 이 중에

민간이 운영하는 방과 후 보육시설이 417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105개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구 91개, 전북 68개, 서울 65개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표 III-5-18>는 초등학교의 방과후학교에 해당하는 초등돌봄교실 운영학교 및 학생수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돌봄교실의 운영학교 수는 2008년 3,334개교였는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7,086개교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수도 2008년 약 5만 5천 명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약 16만 명 가까이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5-18 초등돌봄교실 운영 현황

구 분	2012	과년도 현황			
		2011	2010	2009	2008
운영학교수(개(%))	5,652(96.0)	5,430(92.4)	5,177(88.5)	4,146(71.2)	2,962(50.8)
운영학급수(개)	7,086	6,639	6,200	4,622	3,334
참여학생수(명)	159,248	124,013	104,496	77,155	54,638
초등돌봄강사(명)	14,298	10,651	11,555	8,145	6,061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방과후학교 통계자료('12.4.30 기준)

한편 <표 III-5-19>는 초·중·고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수를 보여주고 있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100% 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수는 각각 5,887개교와 3,178개교이다. 2008년에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학생수가 약 410만 명 정도였으나 2012년에는 약간 늘어나 약 484만 명 정도가 참가하였다.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의 참여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일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의 참여비율을 학교급 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이 71.1%, 중학생이 67.6%, 그리고 고등학생이 가장 많이 참여하여 77.3%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2012년 방과후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살펴보면 교과와 특기적성의 비율이 교과가 60.9%이고 특기적성이 39.1%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의 양극화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심화되어 고등학교에서는 교과가 84.6%이고 특기적성이 15.4%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 61.4%로 교과의 38.6%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표 III-5-19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구 분	2012				과년도 현황			
	초	중	고	계	2011	2010	2009	2008
운영학교수(개교)	5,887	3,178	2,296	11,361	11,307	11,226	11,149	11,076
비율(%)	100.0	100.0	99.8	99.9	99.9	99.9	99.9	99.9
참여학생수(천명)	2,099	1,260	1,481	4,840	4,559	4,573	4,276	4,096
비율(%)	71.1	67.6	77.3	71.9	65.2	63.3	57.6	54.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방과후학교 통계자료('12.4.30 기준)

한편, <표 III-5-20>는 유형별, 학교급별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수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가 교과프로그램(38.6%)보다 특기, 적성 프로그램(61.4%)이 배나 많게 서비스되고 있고, 중학교에서는 반대로 교과프로그램(66.2%)로 특기, 적성 프로그램(33.8%)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상은 고등학교에서 더 심해 교과프로그램(84.6%)이 특기, 적성 프로그램(15.4%)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중학교로 갈수록 대학입학 시험을 겨냥한 교과프로그램이 방과후학교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표 III-5-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2012				과년도 현황			
		초	중	고	계	2011	2010	2009	2008
교과	수(개)	97,246	96,600	173,179	367,025	355,158	338,891	161,348	117,534
	비율(%)	38.6	66.2	84.6	60.9	66.9	68.5	56.4	51.0
특기	수(개)	154,783	49,387	31,435	235,605	175,492	156,074	124,581	112,805
	비율(%)	61.4	33.8	15.4	39.1	33.1	31.5	43.6	49.0
계	수(개)	252,029	145,987	204,614	602,630	530,650	494,965	285,929	230,339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방과후학교 통계자료(2012.4.30 기준)

차.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은 2012년에는 없었던 지표이다. 이 지표는 먼저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후 적절한 하루 평균 학습시간을 부여받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다. 그와 동시에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의 수업을 마친 후 하루에 학습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 또한 청소년의 놀 권리와 여가시간 활용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에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표이다. 원래 이 지표가 채택되는 일반적인 이유는 전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 학원 등에서 지나치게 많은 시간 동안 학습을

받고 있어 지식에 편중된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이들의 심신을 해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 덕, 체가 조화된 전인격체를 형성하는 교육의 이념을 구현하는데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채택되었다.

표 III-5-21 방과 후 평일 공부 시간

(단위 : %(명))

구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5시간이상 - 6시간미만	6시간이상	전체(N)	χ^2
전체	20.5	25.0	21.9	15.3	9.8	4.7	2.9	100.0(9,484)	
성별	남자	21.7	26.2	21.4	14.8	9.0	3.8	100.0(4,963)	9.646*
	여자	19.1	23.6	22.4	15.9	10.7	5.6	100.0(4,5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16.1	31.6	23.3	13.8	8.2	4.2	100.0(2,822)	2.3
	중학교	18.8	22.8	25.1	17.6	9.2	4.1	100.0(3,266)	
	일반고	18.7	22.6	20.5	15.9	12.6	6.1	100.0(2,442)	
	특목고	10.4	19.0	16.1	24.0	17.6	3.5	100.0(92)	
	자율고	9.2	22.4	17.0	16.7	17.0	11.5	100.0(254)	
	특성화고	63.0	17.0	6.6	5.6	5.2	1.7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8.5	24.7	22.8	15.4	11.0	4.6	100.0(3,939)	303.231***
	중소도시	21.7	25.1	21.5	15.7	8.6	4.7	100.0(4,373)	
	읍면지역	22.8	25.5	20.0	13.7	10.2	4.9	100.0(1,171)	
학업 성적	상	10.1	22.1	24.7	18.1	13.3	6.9	100.0(2,840)	62.612***
	중	17.7	27.0	23.1	15.8	9.7	4.6	100.0(3,988)	
	하	36.0	24.9	16.9	11.5	6.3	2.4	100.0(2,639)	
경제적 수준	상	13.9	23.9	24.1	16.8	11.8	5.6	100.0(4,295)	47.579***
	중	21.7	27.3	21.9	14.8	8.2	4.1	100.0(3,524)	
	하	34.9	22.9	16.2	12.5	8.0	3.7	100.0(1,652)	

* $p<0.05$, *** $p<0.001$

<표 III-5-21>은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합니까?”라는 질문에 9,484명의 응답자들이 응답한 결과이다. <표 III-5-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방과 후에 1시간 미만의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0.5%, 1시간 이상-2시간 미만의 학습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5%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2~3시간은 21.9%, 3~4시간은 15.3%, 4~5시간은 9.8%, 그리고 6시간 이상 학습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2.9%나 달했다. 그 중에서 학교별로 특이한 점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 학생들은 6시간 이상 공부하는 비율이 9.4%로 전체 평균 2.9%를 많이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특성화고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은 하루 6시간 이상 학습하는 자가 0.8%에 지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로 경제적 수준이 높고, 학업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평일 공부 시간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과 후에도 학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진로교육의 기회

가. 진로교육 체계

21세기 정보사회에 들어와 청년실업 문제는 글로벌 문제로 각국마다 이슈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한민국은 대학입학 시험을 준비하는 교육에 몰입하느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에 매우 등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표 III-5-22>는 2011년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결과에서 13~24세 청소년이 자신이 경험한 진로교육에 대하여 복수로 응답한 내용이다.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진로와 직업 관련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72.3%로 나타났다. 진로와 관련된 현장 학습이나 견학은 54.8%, 상담교사와 진로상담을 한 경험은 60.5%로 응답되었다. 진로와 관련된 검사를 받은 경험은 73.9%이고, 인터넷 동영상으로 진로교육을 받은 경험은 51.3%에 달했다. 소집단 동아리활동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로교육을 경험한 경우는 43.9%이었고, 진로교육에 관한 초청강연은 57.6%로 나타났으며, 학교의 재량활동 시간에 진로교육관련 경험을 한 경우가 55.1%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응답자들은 50-70%의 진로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이는 반면에 30-50%의 응답자들은 전혀 진로교육 경험이 없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응답자의 1/3이상이 진로교육의 경험이 없다는 것은 한국의 진로교육 체계가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 수 있다. 이는 2012년도 인권실태연구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초·중·고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전체 평균 비율이 34.3%인 것과 비교하여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다(임희진·김현신, 2012: 201).

표 III-5-22 진로교육 경험

(단위 : %)								
	진로와 직업 수업	현장 학습, 견학	상담교사 진로 상담	진로 관련 검사	인터넷 동영상 교육	소집단, 동아리 활동	초청 강연	재량 활동
13~24세	72.3	54.8	60.5	73.9	51.3	43.9	57.6	55.1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5.2.), 2012 청소년통계. p.23.

* 원자료 : 여성가족부(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11

* 주 : 복수응답

나. 진로진학 상담교사 배치율

진로진학상담교사제도는 학교의 진로와 진학에 관한 상담과 지도만을 전담하는 교사로서 기존 상담교사보다는 진로진학에 보다 전문성을 가진 교사제도로 2011년 3월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교과교사 제도이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2012년 9월 25일 자 교육동향 소개에 따르면²⁶⁾ 교육과학기술부는 2012년 6월 18일(월), 중학교 단계 진로교육 강화를 위하여 2013년에 배치할 1,551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2013년에는 2012년 실발령자 3,053명을 포함하여 총 4,550명의 진로교사가 활동하게 된다. 2013년 기준 전체 중고교의 84%(중학교는 72%, 고등학교는 100%)에서 진로교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까지 학생 수 100명 이상 모든 고등학교(2,165교)에 배정을 완료하였고, 이번 중학교 배정에 따라 전국의 학생 수 100명 이상 모든 중학교(2,525교)에 배치가 완료되는 것이다.

시도별 선발결과를 보면 경기, 383명, 서울 209명, 부산 119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제주, 세종은 각각 41명, 24명, 10명으로 가장 적게 선발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선발되었지만 지난 2012년 7월 교육청이 공식 출범한 이래 첫 선발로서 새로운 진로교육의 출발이라는 의의가 있다. 반면 전북은 사립 4명 선발에 그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진로교사를 선발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진로교사 배치율(27%)을 기록하게 되었다. 전국 평균은 84%이다. 선발 후 각 시도별로 배정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정원은 시도별 중등교사 총 정원 내에서 별도로 정원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에 선발된 교사들은 내년 1월부터 동계 합숙연수, 학기 중 연수, 하계 집합연수 등 8개월에 걸쳐 총 570시간의 연수를 거쳐 '진로진학상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며, 내년 3월에는 가배치, 9월부터는 정식 진로교사로 발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된다. 중학교 진로교사가 배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중학교 단계에서의 직업체험을 대폭 확대하고, 재학 중 1회 이상의 직업체험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참고로 호주, 아일랜드 등은 이미 중등 단계에서 직업체험을 필수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는 1차적인 진로 결정의 시기로서 진로검사와 진로상담을 통한 소질과 적성의 발견이 중요하며, 직업체험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의 관심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진로진학상담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런 다양한 진로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고졸 취업의 활성화와 선취업 후진학 제도의 확대에 따라 무조건적인 대학진학이 아니라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다.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지속적인 배치 확대는 성적 위주로 학교를 선택하고 진학을 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학교를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공교육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의미가 있다.

26)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InternalForm.do?currentPage=1&editor_use_yn=Y&selectTp=0&article_sq_no=20311&board_sq_no=8 에서 2013년 09월 20일 인출.

(2) 정책제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 인권지표 중 교육에의 권리로 분류된 10개의 지표들은 다시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지표 8개와 진로교육 기회 지표 2개로 분류되었다. 먼저 교육의 기회와 관련된 지표 8개를 연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정책제언을 하자면, 우선 전체적인 총평으로 대한민국의 교육열이 높다는 것은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그 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이고 그에 따라 정기적인 아동인권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실사단이 한국에 실사를 나와 한국의 아동인권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였고, 권고사항에 한국의 아동들이 지나치게 학습시간이 과다하여 아동들의 여가 및 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유엔의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육제도는 아동의 권리를 위해 전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한국의 교육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교육을 통한 한국 아동의 인권침해는 지속될 것이다.

각론으로 교육의 기회 및 진로교육 기회와 관련된 지표들을 살펴보면 취학률과 진학률, 교원 1인당 학생 수, 그리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전체적으로 국제비교에 비해서도 뒤지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진학률에서 고등교육과정으로의 진학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사회가 학벌사회임을 증명하는 자료이다. 다시 말해서 상급학교의 진학에 있어서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그들의 진로 선택권이 매우 제한되어 있고 오직 대학교 입학이라는 진학, 진로가 학습의 최고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대학교평준화와 같은 제도 도입에 준하는 대학입학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의 분야를 다양하게 마련해주어야 한다. 즉,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꾀하고, 학벌로 인한 차별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사회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산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진로교육도 학교에서 병행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제도를 마련한 것은 진로교육정책의 긍정적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학업중단율과 학교부적응, 사교육 경험률, 방과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 진로교육 체계의 지표들이 보여준 부정적 결과는 한국의 대학입시위주의 교육제도와 직접 관련이 있다.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이나 학교부적응 학생들에게는 그들을 선도대상 학생으로 보아 징계나 상담 등 소극적 지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대안학교에의 입학이나 직업교육의 기회를 더욱 확대해주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이다. 교육부는 여성가족부와 MOU를 맺어 청소년 시설 및 기관들에 대안학교를 설치하여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이민희, 2009).

2) 교육의 목표

(1) 지표의 현황

① 학교의 의미와 기능

가.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평생교육 등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이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가정교육의 기능과 의미는 과거에 비해 상당히 퇴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성장기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교육이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그들의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의미와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현대의 학교에 대하여 당사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이 지표를 통해 학교에 대한 아동과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을 주었다. 첫째,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둘째,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 셋째,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 넷째,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이러한 학교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약 9,500명 정도의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다.

먼저 <표 III-5-23>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학교가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답변을 한 학생들은 66.5%로 나타났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학생의 비율은 33.5%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1/3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결과로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학생들은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학교에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표 III-5-23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는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8	24.7	52.7	13.8	100.0(9,507)	
성별	남자	9.7	22.4	52.6	15.3	100.0(4,984)	39.735***
	여자	7.8	27.3	52.7	12.2	100.0(4,5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3.8	9.8	55.4	31.0	100.0(2,825)	324.883***
	중학교	9.6	26.3	55.5	8.6	100.0(3,275)	
	일반고	11.9	35.0	48.7	4.5	100.0(2,452)	
	특목고	5.4	30.3	56.9	7.4	100.0(92)	
	자율고	12.7	31.6	50.1	5.6	100.0(255)	
	특성화고	14.3	40.3	41.1	4.4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9	24.2	52.8	14.1	100.0(3,938)	74.671***
	중소도시	9.0	24.4	52.3	14.3	100.0(4,391)	
	읍면지역	7.7	27.7	53.4	11.3	100.0(1,179)	
학업 성적	상	6.7	20.2	52.1	21.0	100.0(2,846)	226.129***
	중	6.6	22.3	57.3	13.9	100.0(3,996)	
	하	14.3	33.4	46.2	6.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7.0	20.3	53.4	19.3	100.0(4,308)	100.341***
	중	8.6	24.4	56.1	10.9	100.0(3,530)	
	하	13.7	36.9	43.4	6.0	100.0(1,655)	

*** $p < 0.001$

다음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응답은 <표 III-5-24>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66.7%,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33.3%로 앞의 질문에 대한 응답 반응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거의 없었으며,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표 III-5-24 학교가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는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8.4	24.9	51.9	14.8	100.0(9,508)	
성별	남자	9.4	22.4	52.0	16.2	100.0(4,983)	16.886**
	여자	7.3	27.7	51.7	13.2	100.0(4,5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3.1	9.7	53.1	34.0	100.0(2,825)	14.1
	중학교	10.1	26.8	54.5	8.6	100.0(3,275)	
	일반고	10.7	36.1	48.7	4.5	100.0(2,452)	
	특목고	8.4	33.0	52.7	5.8	100.0(92)	
	자율고	10.3	34.9	48.4	6.4	100.0(255)	
	특성화고	13.6	35.5	45.9	4.9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8.5	24.5	51.9	15.0	100.0(3,938)	138.31***
	중소도시	8.5	25.1	51.3	15.1	100.0(4,391)	
	읍면지역	7.4	25.9	53.9	12.8	100.0(1,179)	
학업 성적	상	7.2	21.6	49.2	22.0	100.0(2,848)	465.651***
	중	6.6	22.0	56.6	14.9	100.0(3,995)	
	하	12.4	33.0	47.7	6.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6.8	20.5	51.7	21.1	100.0(4,309)	309.02***
	중	7.8	25.4	55.7	11.1	100.0(3,530)	
	하	13.9	35.4	44.4	6.4	100.0(1,655)	

** $p<0.01$, *** $p<0.001$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응답한 결과는 <표 III-5-25>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72.7%,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27.3%로 앞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 반응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크지 않았으며,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우세하였다. 지역에 따른 응답의 편차는 앞의 질문들에 대한 응답수준과 마찬가지로 거의 유사한 응답의 결과가 나타났고, 역시 앞의 질문들의 응답에 대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들보다 더 부정적인 응답의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5-25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는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1	20.2	56.5	16.2	100.0(9,506)	
성별	남자	8.2	19.6	55.0	17.2	100.0(4,983)	194.16***
	여자	6.0	20.8	58.1	15.2	100.0(4,5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2.9	10.9	53.2	33.0	100.0(2,823)	419.294***
	중학교	8.7	22.9	58.0	10.4	100.0(3,275)	
	일반고	8.7	24.2	59.4	7.8	100.0(2,452)	
	특목고	5.6	26.6	55.2	12.6	100.0(92)	
	자율고	7.1	25.5	58.8	8.6	100.0(255)	
	특성화고	12.1	28.8	51.4	7.8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7.0	19.5	56.6	16.9	100.0(3,937)	42.642**
	중소도시	7.1	20.5	55.8	16.6	100.0(4,391)	
	읍면지역	7.5	21.1	58.6	12.8	100.0(1,178)	
학업 성적	상	6.4	17.1	51.8	24.7	100.0(2,848)	22.1
	중	5.3	18.0	61.0	15.7	100.0(3,992)	
	하	10.7	26.7	54.7	7.9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6.1	16.2	55.1	22.6	100.0(4,307)	227.859***
	중	6.1	21.8	59.9	12.2	100.0(3,530)	
	하	11.7	26.8	52.9	8.6	100.0(1,655)	

** $p < 0.01$, *** $p < 0.001$

학교가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마지막 질문으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물었을 때에 <표 III-5-26>과 같은 결과로 응답을 하였다.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86.9%,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이 23.1%로 앞의 질문들에 비해 긍정적 응답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응답에서도 남녀 편차는 거의 없었다. 앞의 응답과 유사하게 상급학교로 갈수록,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부정적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에 따른 응답의 편차는 거의 없었으나, 특이한 점은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특성화고등학교보다 일반고 학생들이 가장 부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그리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보다 특성화고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가장 긍정적인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특성화고가 미래 직업과 직접 연관이 있고, 자신의 사회생활에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교과과정에서 배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 III-5-26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

(단위 : %(명))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전체(N)	χ^2
전체		7.3	15.9	56.3	20.5	100.0(9,503)	
성별	남자	7.8	14.5	55.7	22.0	100.0(4,981)	111.843***
	여자	6.7	17.5	57.0	18.8	100.0(4,5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	7.6	48.4	41.6	100.0(2,822)	68.914***
	중학교	8.4	16.7	61.0	13.8	100.0(3,273)	
	일반고	10.8	23.7	57.2	8.4	100.0(2,452)	
	특목고	9.5	18.1	60.6	11.9	100.0(92)	
	자율고	10.7	21.2	58.4	9.7	100.0(255)	
	특성화고	8.7	16.6	62.3	12.4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7.3	15.5	55.9	21.3	100.0(3,934)	333.421***
	중소도시	7.5	16.4	55.6	20.5	100.0(4,390)	
	읍면지역	6.8	15.6	60.1	17.5	100.0(1,179)	
학업 성적	상	6.1	14.1	51.2	28.6	100.0(2,846)	547.098***
	중	5.5	14.8	58.8	20.9	100.0(3,991)	
	하	11.4	19.5	58.0	11.1	100.0(2,648)	
경제적 수준	상	6.0	14.7	52.7	26.6	100.0(4,306)	421.74***
	중	6.8	15.1	61.1	16.9	100.0(3,528)	
	하	11.7	20.6	55.6	12.1	100.0(1,655)	

*** $p < 0.001$

②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가. 인권교육 경험

이 지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다양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에 대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인권에 관하여 교육현장에서 이를 존중하고 실제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9,298명의 응답자에게 직접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인권교육을 받았는가에 관하여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표 III-5-27>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45.6%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났다.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수치이다. 1회의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18.6%이고, 5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학생은 7.4%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의 경험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큰 차이는 나지 않았지만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많다는 사실이다. 한편, 응답자의 성적이 낮을수록, 그리고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가 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은 것은 특목고가 대학입학 시험에만 몰입하는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표 III-5-27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인권교육 경험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전체		18.6	15.7	10.4	2.3	7.4	45.6	100.0(9,298)	
성별	남자	18.5	16.0	9.8	2.1	7.2	46.3	100.0(4,860)	596.92***
	여자	18.8	15.3	11.0	2.4	7.7	44.7	100.0(4,438)	
학교 유형	초등학교	18.9	18.2	14.7	4.2	12.6	31.5	100.0(2,765)	1035.795***
	중학교	18.4	14.6	10.8	1.6	6.0	48.5	100.0(3,178)	
	일반고	18.7	14.7	6.4	1.2	4.2	54.7	100.0(2,419)	
	특목고	20.8	7.2	5.0	0.0	3.5	63.4	100.0(92)	
	자율고	16.3	14.0	6.2	1.0	6.2	56.2	100.0(254)	
	특성화고	18.6	16.2	7.4	1.8	5.4	50.5	100.0(590)	
지역 규모	대도시	19.3	15.6	10.1	2.3	7.1	45.6	100.0(3,865)	484.989***
	중소도시	18.1	15.8	11.1	2.2	7.8	45.0	100.0(4,288)	
	읍면지역	18.3	15.6	8.8	2.2	7.5	47.7	100.0(1,146)	
학업 성적	상	19.2	16.6	11.5	2.3	8.8	41.6	100.0(2,813)	513.455***
	중	17.7	16.3	10.7	2.6	8.1	44.6	100.0(3,912)	
	하	19.5	13.7	8.7	1.6	4.9	51.5	100.0(2,559)	
경제적 수준	상	19.0	16.5	11.5	2.5	9.2	41.3	100.0(4,227)	45.521***
	중	18.1	15.3	10.0	2.1	6.5	48.0	100.0(3,443)	
	하	18.9	14.4	8.6	1.9	5.0	51.3	100.0(1,618)	

*** $p < 0.001$

같은 실태조사에서 인권교육의 맥락에서 5,019명의 응답자에게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70.1%가 나온 것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는 응답결과이다. 반면에 약 30% 가까이가 인권교육을 받았어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부정적 답변은 인권교육이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문화이해

가. 다문화교육 현황

다문화교육 현황에 대한 지표는 소수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지표이다. 이 지표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에서 자칫 소외당하기 쉬운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인권보호가 필요한 시점에 시의적절한 지표라 할 수 있다.

표 III-5-28 최근 1년 간 학교에서 받은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

(단위 : %(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교육을 받은 적 없음	전체(N)	χ^2
성별	전체	19.9	12.6	6.7	2.1	4.3	54.4	100.0(9,277)	1734.71***
	남자	18.8	12.6	6.7	1.7	4.0	56.1	100.0(4,847)	
	여자	21.1	12.6	6.7	2.6	4.6	52.5	100.0(4,4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21.9	17.3	12.3	5.2	9.1	34.3	100.0(2,761)	213.445***
	중학교	20.0	11.5	5.9	1.1	3.0	58.5	100.0(3,164)	
	일반고	18.7	10.3	3.2	0.3	1.5	66.0	100.0(2,418)	
	특목고	8.5	8.7	4.1	1.6	2.0	75.1	100.0(92)	
	자율고	15.3	7.7	2.7	0.9	2.9	70.6	100.0(253)	
	특성화고	18.7	8.2	1.9	1.2	1.3	68.7	100.0(588)	
지역 규모	대도시	20.2	13.5	7.1	2.2	5.4	51.7	100.0(3,858)	100.819***
	중소도시	19.6	12.2	6.7	2.1	3.6	55.7	100.0(4,278)	
	읍면지역	19.8	10.9	5.4	2.3	3.1	58.5	100.0(1,140)	
학업 성적	상	19.9	13.2	7.5	2.8	5.6	50.9	100.0(2,811)	28.288***
	중	19.8	13.3	7.4	2.1	4.6	52.8	100.0(3,903)	
	하	19.9	10.7	4.9	1.3	2.4	60.7	100.0(2,549)	
경제적 수준	상	19.4	14.4	8.5	2.9	5.3	49.5	100.0(4,223)	22.392**
	중	21.0	11.5	5.7	1.6	4.0	56.2	100.0(3,431)	
	하	18.9	10.2	4.1	1.4	2.2	63.2	100.0(1,612)	

** $p < 0.01$, *** $p < 0.001$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277명의 응답자에게 “최근 1년 동안 다문화이해 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표 III-5-28>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응답결과가 있었다. 먼저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 과반수가 넘는 54.4%에 달했다. 1회의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전체의 19.9%이었고, 5회 이상 받은 학생은 4.3%이었다. 성별의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학년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이

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경험 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의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역시 대학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 몰입한 결과라 비판적인 분석을 할 수 있다.

한편 같은 실태조사에서 이 질문과 관련하여 다문화이해 교육의 경험이 있는 4,198명의 응답자에게 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에 73.2%가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26.8%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제언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중분류 된 교육의 목표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다문화 및 자연환경 이해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류는 아동권리협약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28조, 29조를 기초로 분류된 것이다. 학교가 공교육제도의 중요한 기관으로 등장한 이래로 학교는 교육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교육의 목표를 세워서 이를 현장에서 수행하는 제도이자 실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아동의 권리에 있어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곳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받을 권리가 당사자들이 실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파악해볼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3 이상이 학교가 자신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주고 있지 못하다고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만 보더라도 한국의 이 시대에서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지표와 관련된 또 다른 질문인 학교가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하고 있는가와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도 20~30% 정도가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10명중 3명 가까이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며 성장하고 있고, 이는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위한 기능과 의미를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결국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 교육과정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가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에서 다른 질문의 응답과는 달리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목고 학생보다 더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기능과 의미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존재하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지식을,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학교는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능하고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현 시점에서 한국의 학교들은 이러한 학교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원하는 학생에게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늘려주고, 일반고등학교 수를 줄이고 특성화고등학교를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특성화된 교과목의 전공을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폴리텍이나 전문대,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에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이수되고 있는 과목들의 전공과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이 곧바로 특성화된 과목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현장에서 인권존중에 대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경험 정도, 학교 규율의 아동·청소년 인권 반영 정도, 중앙 및 지방 정부와 교원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준수 노력 정도의 지표가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응답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가 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특목고가 대학입학 시험에만 몰입하는 교육으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무적인 사실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볼 만한 결과이다. 이러한 관련 지표에 따른 응답결과를 고려해서 정부는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대학입시시험 준비로 오직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등 수능관련 교과목에만 몰입된 교육을 하고 인권교육과 같은 중요한 교육은 등한시하기 때문에 초등교육과정에서 더욱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특목고라 해서 인권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학교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목고에 대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조치를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교육 현황의 지표에 따라 조사된 결과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과반이 넘는 54.4%에 달한 것 역시 소수집단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적 조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 경험 지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의 다문화이해 교육 경험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서 역시 대학입학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 몰입한 결과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또 한 번 증명되었다. 이미 다문화사회가 되어버린 한국의 사회에 대하여 학생들이 다문화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이는 큰 교육적 문제이자 장차 많은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전체의 교과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도입하고 수업시간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장차 한국의 엘리트들로 성장하게 될 특목고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다면 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입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실제로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절대로 어떠한 교과과정에서도 소홀이 다루어져서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초등교과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을 대폭 강화하여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1) 지표의 현황

①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가.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거나 여가활동을 할 시 이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제약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하여 알아보는 지표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을 발간한다. <표 III-5-29>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11년 현재 한국의 문화시설기반은 전국적으로 총 2,072개에 달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이 786개, 등록된 박물관 수가 694개, 등록미술관은 154개, 문예회관은 209개, 지방문화원은 229개에 달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에 있으며 6년 전인 2005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문화시설이 확대되었다.

표 III-5-29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연도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총계
2011	786	694	154	209	229	2072
2010	759	655	145	192	228	1979
2009	703	630	141	182	227	1883
2008	644	579	128	167	223	1741
2007	600	511	115	161	225	1612
2006	572	431	103	155	-	1261
2005	526	364	93	150	-	1133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14

지역별로 보면 <표 III-5-30>와 같이 경기도가 378개로 문화시설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서울이 총 289개, 경북이 174개 순으로 많았다. 가장 문화시설이 적은 광역시는 울산으로 29개에 불과했으며, 문화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주도 42개에 불과하였고, 대전은 50개에 불과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비율은 지방이 64.3%로 차지했고, 수도권은 35.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0 전국 문화기반시설 연도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시·도별	공공도서관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총계
지역1	서울	109	106	33	16	25	289
	부산	31	12	4	12	14	73
	대구	27	13	2	9	8	59
	인천	31	22	4	7	8	72
	광주	16	8	7	6	5	42
	대전	22	16	5	2	5	50
	울산	11	9	—	4	5	29
	경기	169	119	31	28	31	378
	강원	47	69	9	17	18	160
	충북	32	41	7	13	12	105
	충남	51	43	7	16	17	134
	전북	47	33	1	17	14	112
	전남	57	37	16	17	22	149
	경북	60	60	7	24	23	174
	경남	55	51	7	18	20	151
	제주	21	55	14	3	2	95
	총계	786	694	154	209	229	2,072
지역2	수도권	309	247	68	51	64	739(35.6)
	지방	477	447	86	158	165	1333(64.3)
	계	786	694	154	209	229	2,072(100.0)

*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p.13.

나. 청소년 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이 지표는 국가가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권리를 향수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시설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먼저 청소년 수련시설은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필요한 여러 시설, 설비,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청소년지도자의 지도하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한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기능이나 수련활동 및 입지적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전에는 생활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자연권 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로 구분되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주로 도심지에 소재하며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주로 자연 속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원’, 규모가 수련관이나 수련원보다 작고, 도시 근린지역에서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인 ‘청소년문화의집’이 대표적인 청소년 수련시설이다. 이 이외에도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인 ‘청소년 특화시설’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활동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인 ‘청소년야영장’, 그리고 청소년의 숙박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의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인 ‘유스호스텔’이 있다. 1992년 이전에는 수련시설이 150여개에 불과하였지만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12월에는 <표 III-5-31>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738개의 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87).

표 III-5-31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계
계	176	215	176	43	121	7	738
공 공	172	210	41	26	13	7	469
민 간	4	5	135	17	108	0	26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87.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9,491명의 응답자에게 직접 최근 1년 동안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과 같은 청소년시설을 얼마나 자주 이용했는가를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표 III-5-3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1년 동안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동 및 청소년이 62.3%에 달했고, 1년에 1~2번 정도 이용한다는 응답이 28.3%에 이르렀다. 이러한 응답의 비율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표 Ⅲ-5-32 최근 1년 간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이용 현황

(단위 : %(명))

구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번 정도	한 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전체(N)	χ^2
전체		62.3	28.3	6.4	3.0	100.0(9,491)	
성별	남자	62.8	27.2	6.9	3.1	100.0(4,969)	9.2
	여자	61.8	29.5	5.9	2.8	100.0(4,522)	
학교 유형	초등학교	56.6	30.8	7.6	5.0	100.0(2,810)	7.3
	중학교	59.9	31.0	6.3	2.7	100.0(3,276)	
	일반고	68.8	24.3	5.4	1.4	100.0(2,449)	
	특목고	67.6	20.5	8.7	3.2	100.0(92)	
	자율고	74.6	19.4	4.9	1.2	100.0(255)	
	특성화고	69.7	22.6	5.8	1.9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64.8	26.7	5.6	2.9	100.0(3,928)	11.9
	중소도시	61.2	28.5	7.2	3.0	100.0(4,386)	
	읍면지역	58.2	32.6	6.1	3.1	100.0(1,177)	
학업 성적	상	58.7	31.3	6.4	3.6	100.0(2,843)	39.13***
	중	62.8	27.8	6.5	2.8	100.0(3,990)	
	하	65.8	25.7	6.3	2.3	100.0(2,641)	
경제적 수준	상	59.4	30.4	6.8	3.3	100.0(4,302)	19.451*
	중	63.7	27.4	6.1	2.9	100.0(3,522)	
	하	66.9	24.7	6.3	2.1	100.0(1,654)	

* $p<0.05$, *** $p<0.001$

1년에 한 번도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학교급 별로 비교하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대학입학시험을 준비하는데 몰입되어 활동할 시간이 없는 고학년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 대체로 경제적 수준과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할 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고등학생 중에서 특목고 학생들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비율이 다른 일반고나 특성화고, 자율고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최근 대학입학시험이 입학사정관제도나 수시입학제도에서 내신과 다양한 활동 등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나타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될 수 있다.

한편 전국의 시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을 <표 Ⅲ-5-33>에서 살펴보면 경기도가 144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강원이 77개, 경남이 71개, 경북이 66개, 서울이 59개 순으로 많고, 울산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9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으며, 광주가 11개, 대구가 12개, 대전 13개 순으로 적게 설치되어 있다. 광역시 단위에서 볼 때에는 역시 서울이 가장 많은 59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가지고 있고, 인천이 24개, 부산이 23개의 수련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관만으로는 경기도보다 서울이 33개로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반면, 주로 자연권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경기도가 52개로 압도적으로 많고, 서울은 숙박할 수 있는 수련원이 2개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주로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이 산과 해변이 많은 강원지역에 경기도의 4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26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시설이지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을 위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이용시설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과학관육성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생 교육시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휴양림,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목원,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관,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고수부지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시설로써 수련활동 또는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한 이용에 적합한 시설 등이 해당된다.

표 III-5-33 시도별 청소년수련시설 현황 (2011.12.31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총 계
계	176	215	176	43	121	7	738
서울	33	16	2	0	3	5	59
부산	7	9	4	2	1	0	23
대구	5	5	1	0	1	0	12
인천	7	6	5	2	4	0	24
광주	5	4	1	0	1	0	11
대전	4	7	1	0	1	0	13
울산	1	6	2	0	0	0	9
경기	27	40	52	6	18	1	144
강원	14	26	14	5	18	0	77
충북	9	9	13	2	10	0	43
충남	7	11	13	3	12	0	46
전북	13	20	11	3	5	1	53
전남	12	11	10	6	5	0	44
경북	16	11	16	7	16	0	66
경남	13	15	26	4	13	0	71
제주	3	19	5	3	13	0	4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88.

현재 한국의 청소년이용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시설로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국가가 건립한 국립중앙극장,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이 있으며, 각 지역별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등의 시설이 있다. 문화공간은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관(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등으로 분류된다. 과학관 중 대표적인 이용시설로는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이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의 상설전시관에는 4개 분야 약 4,100여점의 전시품이 전시되고 있다. 이 밖에 탐구관, 천체관, 영화관, 특별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서울과학관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관, 영화관, 과학교실, 세미나실, 놀이 및 휴식 공간 등의 공간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생활체육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민이 집 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과 전문선수의 육성을 위한 전문체육시설의 건설을 지원해 왔으며, 각종 국제경기대회 등의 개최를 계기로 국제수준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종류로는 생활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동네운동장, 길거리농구대, 시·군 기본체육시설 등이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91~392).

다.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조사에서 9,491명의 응답자에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은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를 물었다.

이에 대한 응답은 <표 III-5-34>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이 충분하다고 긍정적인 답을 한 학생들이 48.8%였고, 충분하지 않다고 부정적 답변을 한 학생들은 41.2%로 나타났다. 남녀 성별 차이는 응답에서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 반면에 초등학생들은 충분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72%에 달하나 중학생은 45.2%, 일반/특목/자율고등학생은 31.5%에 그쳤다. 성장이 많이 발달된 고학년들에게는 현존하는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학생들은 반수가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다고 대답한 반면, 읍면지역의 응답학생들은 39% 정도만 충분하다고 응답하여 읍면지역에는 시설에 대한 응답자들의 불만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큰 편차는 없었지만 대체로 성적이 낮거나,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학생들이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5-34 여가 및 문화 시설 공간의 충분성

(단위 : %(명))

구분		전혀 충분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은 편이다	충분한 편이다	매우 충분하다	전체(N)	χ^2
성별	전체	15.7	35.5	40.5	8.3	100.0(9,491)	4.1
	남자	15.6	32.6	42.1	9.8	100.0(4,970)	
	여자	15.8	38.9	38.7	6.6	100.0(4,521)	
학교 유형	초등학교	6.5	21.5	53.2	18.8	100.0(2,811)	28.751***
	중학교	16.4	38.4	40.3	4.9	100.0(3,274)	
	일반/특목/자율고	22.6	45.8	29.0	2.5	100.0(2,797)	
	특성화고	22.0	38.9	35.0	4.0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4.7	35.6	40.6	9.1	100.0(3,929)	14.1
	중소도시	14.9	34.6	42.0	8.4	100.0(4,388)	
	읍면지역	21.6	39.4	34.3	4.7	100.0(1,174)	
학업 성적	상	13.2	35.5	40.6	10.7	100.0(2,845)	5.6
	중	14.3	34.1	42.9	8.7	100.0(3,986)	
	하	20.4	37.8	36.7	5.0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12.3	32.5	43.0	12.2	100.0(4,308)	10.9
	중	15.2	37.1	41.8	5.9	100.0(3,519)	
	하	25.2	40.5	31.1	3.2	100.0(1,651)	

*** $p < 0.001$

라.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지표는 실제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지표이다. <표 III-5-35>는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15-24세와 13-24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말이나 휴일에 어떻게 여가를 활용하는가를 복수 응답하도록 하여 조사한 결과이다.

표 III-5-35 주말이나 휴일의 여가활동

(단위 : %)

	TV 및 DVD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활동	컴퓨터 게임 등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일
2009	57.3	6.7	16.5	10.2	47.7	5.6	18.5	7.8	5.6	33.2	33.5
2011	61.6	5.1	15.9	11.4	49.6	8.0	15.5	8.4	5.4	28.7	30.1
남 자	58.2	4.9	11.2	20.3	58.7	6.0	15.6	7.6	2.6	25.3	23.2
여 자	67.1	5.3	20.7	2.3	40.4	10.0	15.5	9.2	8.2	32.1	37.0
중학생	68.9	4.9	9.8	15.7	66.1	9.7	10.7	10.3	3.4	24.5	24.0
고등학생	61.2	3.1	12.4	12.9	56.7	9.5	22.1	8.4	2.6	26.4	24.9
대학생	57.5	5.4	21.7	10.3	40.9	6.4	17.8	8.6	5.3	28.7	36.3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5.2.), 2012 청소년통계. p.17.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 주 : 중복응답

표에서 볼 수 있듯이 TV 및 DVD 시청이 평균 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8% 정도가 컴퓨터 게임을 하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식을 취하는 청소년도 30% 정도에 달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여가 활용 방법은 대체로 활동이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스포츠 활동은 10%가 조금 넘고, 문화예술 관람이 16% 정도로 나타났으며, 여행은 6% 가까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과 여학생은 스포츠 활동에의 참여에서 각각 20.3%와 23%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고, 문화예술 관람에서는 반대로 여학생이 20.7%로 남학생의 11.2%를 배정도 가까이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 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학생 그룹이 TV 및 DVD 시청이나, 컴퓨터 게임 등에서 상대적으로 주목할 만큼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마.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이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여가활동에 시간을 할애하는가를 묻는 지표로 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여가활동을 할 권리가 일상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 여부를 묻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III-5-36 평일 하루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

(단위 : %(명))								χ^2
구분	1시간미만	1시간이상 - 2시간미만	2시간이상 - 3시간미만	3시간이상 - 4시간미만	4시간이상 - 5시간미만	5시간 이상	전체(N)	
전체	29.7	30.8	17.6	8.5	5.7	7.6	100.0(9,504)	
성별	남자	27.4	31.2	18.8	8.9	5.7	100.0(4,976)	81.534***
	여자	32.2	30.5	16.3	8.1	5.7	100.0(4,52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5	26.8	19.8	11.6	8.2	100.0(2,824)	28.342***
	중학교	21.8	34.2	19.9	9.7	6.1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48.4	32.3	11.8	3.5	1.8	100.0(2,794)	
	특성화고	20.2	24.8	21.5	11.8	10.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31.3	30.2	16.7	8.3	5.7	100.0(3,938)	6.6
	중소도시	27.7	31.3	18.6	8.8	5.7	100.0(4,388)	
	읍면지역	31.7	31.5	16.7	8.4	5.7	100.0(1,178)	
학업 성적	상	30.3	33.0	17.5	7.3	5.2	100.0(2,847)	21.63*
	중	28.9	30.9	18.1	9.3	5.9	100.0(3,996)	
	하	30.5	28.4	16.8	8.9	6.0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28.7	32.2	18.0	8.3	5.7	100.0(4,309)	70.455***
	중	28.6	31.0	17.7	9.3	5.5	100.0(3,530)	
	하	34.6	27.0	16.2	7.8	6.2	100.0(1,652)	

* $p < 0.05$, *** $p < 0.001$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는 이 지표와 관련하여 9,504명의 응답자에게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를 물었다. 응답의 결과는 <표 III-5-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1시간 미만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7%로 근 30%에 가까웠다. 1-2시간 여가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30.8%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3시간 여가활동 응답이 17.6%, 3-4시간 여가활동을 하는 학생이 8.5%, 4-5시간 여가활동은 5.7%, 그리고 5시간 이상 여가활동을 한다는 학생도 7.6%로 조사되었다. 한편, 성별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여가활동 시간이 약간 적은 것으로 보이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여가활동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간 차이는 거의 없었고, 대체로 학업성적이 나 경제적 수준도 다른 지표와는 달리 눈에 띄는 만큼 큰 편차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 휴일을 보내는 방법

휴일을 보내는 방법의 지표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휴일에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에 대하여 묻는 지표로 휴일에도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표 III-5-37 휴일에 주로 하는 활동

(단위 : %(명))

구분	공부	독서	TV 시청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인터넷(정보검색, 채팅, 이메일 등)	친구와 놀기	취미활동(음악듣기, 그림그리기 등)	문화행사, 예술행사, 관람영화, 음악회, 운동 경기 등
전체	23.5	8.6	46.6	43.4	17.5	48.2	18.6	9.1
성별	남자	22.8	8.5	41.6	66.3	14.2	50.1	14.3
	여자	24.2	8.7	52.0	18.2	21.1	46.1	23.2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8	14.2	49.0	42.6	7.7	50.9	20.5
	중학교	16.4	6.6	48.7	49.3	19.1	51.9	18.3
	일반고	33.8	5.9	42.3	37.1	24.4	40.7	17.2
	특목고	48.3	12.2	46.8	7.5	38.8	21.4	16.3
	자율고	39.8	5.5	41.2	34.3	30.7	35.5	16.0
	특성화고	7.6	4.7	43.8	49.8	17.9	55.7	17.9
지역 규모	대도시	25.1	8.8	47.1	39.7	17.8	46.4	18.7
	중소도시	22.9	8.6	46.0	46.7	16.1	49.8	18.3
	읍면지역	20.0	7.5	46.9	43.5	21.7	48.1	19.0
학업 성적	상	33.6	12.3	45.3	41.3	17.8	41.0	16.8
	중	22.0	8.1	48.2	43.0	16.5	49.7	18.8
	하	14.7	5.3	45.6	46.4	18.9	53.6	19.9
경제적 수준	상	28.1	10.4	44.9	41.2	15.3	47.3	17.8
	중	20.2	6.8	50.8	46.2	17.5	49.7	17.7
	하	18.3	7.5	42.1	43.4	23.1	47.4	22.1

* 주 : 1+2+3순위, 복수응답

표 Ⅲ-5-37 휴일에 주로 하는 활동(계속)

(단위 : %(명))

구분		운동	휴대전화로 대화하기	쇼핑(인터넷 쇼핑 포함)	집에서 휴식	여행	기타	전체(N)
성별	전체	17.4	14.2	4.6	38.8	5.1	3.1	100.0(9,498)
	남자	26.3	7.7	1.3	31.7	4.5	2.6	100.0(4,972)
	여자	7.7	21.4	8.2	46.7	5.7	3.5	100.0(4,526)
학교 유형	초등학교	23.1	7.0	4.1	33.0	10.8	2.6	100.0(2,822)
	중학교	15.9	17.4	5.1	37.3	3.6	2.5	100.0(3,272)
	일반고	13.5	17.1	4.6	46.0	1.6	2.9	100.0(2,448)
	특목고	8.4	13.0	4.3	55.5	1.4	11.1	100.0(92)
	자율고	21.9	12.2	3.7	39.1	1.6	2.8	100.0(255)
	특성화고	14.4	20.1	4.5	43.0	2.9	7.6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17.0	14.9	5.2	39.4	4.8	2.9	100.0(3,935)
	중소도시	18.2	13.5	4.2	37.4	5.7	3.2	100.0(4,387)
	읍면지역	15.7	14.8	4.2	42.4	3.7	3.0	100.0(1,176)
학업 성적	상	18.9	9.9	3.9	38.5	6.6	2.7	100.0(2,845)
	중	18.8	13.8	4.7	38.0	5.3	2.9	100.0(3,989)
	하	13.8	19.5	5.1	40.5	3.3	3.6	100.0(2,647)
경제적 수준	상	19.6	12.0	5.3	35.7	8.0	2.6	100.0(4,306)
	중	16.2	15.1	4.0	40.6	3.0	3.2	100.0(3,527)
	하	14.3	18.1	3.8	43.4	2.0	4.0	100.0(1,653)

* 주 : 1+2+3순위, 복수응답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전체 9,498명의 응답자들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휴일)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을 골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응답을 물었다. 결과는 <표 Ⅲ-5-37>에서 보는 것과 같이 친구와 놀기가 48.2%로 가장 응답자가 많았다. 다음으로는 TV시청이 46.6%, 게임이 43.4%, 집에서 휴식이 38.8% 순으로 높게 응답되었다. 공부가 이들 다음으로 23.5%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응답의 결과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낮게 응답한 활동은 쇼핑으로 4.6%이고, 여행이 5.1%로 다음으로 낮았다.

한편, 응답의 내용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난 것은 게임에서 남학생이 66.3%를 보인 반면, 여학생은 18.2%로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휴대전화로 대화하기에서도 남학생은 7.7%로 낮은 편인데, 여학생은 21.4%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고, 운동에서는 남학생이 26.3%인데 반해 여학생은 7.7%로 낮게 나왔으며, 문화예술 행사 관람에서도 남학생은 6.5%이고 여학생은 12.0%로 배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에 따라 크지 않은 편차를 보인 것은 친구와 놀기와 TV시청, 공부에서 비교적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다. 집에서 휴식은 여학생이 46.7%, 남학생이

31.7%로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 주목할 점은 특목고 학생 응답자들은 가장 여가를 활용하는 내용이 집에서 휴식이 55.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공부가 48.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공부와 공부로 지친 심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려는 상태임을 응답결과에서 읽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학업성적이 낮은 집단인 특성화고 응답자들은 친구와 놀기가 55.7%로 가장 높았고, 공부는 7.1%로 아주 낮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사. 여가활동 만족도

<표 III-5-38>에서는 2012년 통계청 자료로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만족도를 살펴볼 수 있다. 2011년 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연령인 13-19세 청소년들은 여가활동의 만족도에서 만족이 29.8%, 보통이 45.5%, 불만족이 24.7%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09년도의 15-19세 연령에서의 만족도와 비교해서 만족이 4.6%로 증가하였고, 불만족은 5.8%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표의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전히 4명의 1명꼴로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은 역시 시간부족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2009년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57.9%였는데, 2011년에는 45.1%로 13.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러한 불만족 이유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서라는 이유가 2009년에는 25.9%였는데, 2011년에는 8.3%가 늘어나 34.2를 보이고 있으며, 여가시설부족과 취미가 없어서라는 이유도 각각 2.8%와 2.7%가 증가하였다.

이는 결국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도 경제적 부담 등 기타 다른 이유로 여가활동에 만족하고 있는 청소년은 3명 중 1명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가활동에 불만족을 보이고 있는 청소년들의 반 수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이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으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앞서도 많은 지표들과 지표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분석에서도 언급되었지만 한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지나치게 대학입학을 위한 학습시간이 많아 이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대학입학 경쟁을 완화하는 혁신적인 교육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I-5-38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

	만족	보통	불만족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함께할 사람 없음
2009	21.8	46.1	32.1	54.3	28.4	1.9	1.8	0.8	2.4	7.7	1.8
남자	23.3	45.9	30.8	54.0	30.5	1.8	1.6	0.7	2.6	6.3	2.0
여자	20.4	46.3	33.3	54.6	26.6	2.0	1.9	0.9	2.3	8.9	1.7
15-19세	25.2	44.3	30.5	25.9	57.9	2.2	4.2	2.2	4.4	0.6	1.5
20-29세	26.1	48.0	25.9	53.5	32.1	2.3	3.0	1.4	3.3	1.2	2.0
2011	19.3	48.6	32.1	60.9	23.2	1.0	1.8	1.1	3.4	6.8	1.6
남자	20.6	49.4	30.0	61.0	24.4	1.1	1.8	1.0	3.6	5.5	1.3
여자	17.9	47.9	34.1	60.9	22.1	1.0	1.7	1.1	3.3	7.9	1.8
13-19세	29.8	45.5	24.7	34.2	45.1	1.2	7.0	2.3	7.1	0.7	1.6
20-29세	23.1	51.4	25.5	58.2	27.5	1.8	2.7	1.2	5.4	1.0	2.0

* 출처 : 통계청(2012). 2012 한국의 사회지표.

② 아동·청소년 활동

가.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지표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단체에 가입해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일찍부터 활동하는 것은 심신의 발전에도 좋지만 특히 사회성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507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응답한 결과는 <표 III-5-39>에서 볼 수 있다.

<표 III-5-39>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81.1%가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으며,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응답학생은 9.5%에 불과하였다. 9.3%의 응답자는 가입은 하였지만 활동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청소년단체에 가입한 학생은 여학생(24.2%)이 남학생(17.5%)보다 많았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가입률은 떨어졌고, 특목고 학생이 청소년단체에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비율은 가장 낮아 2.3%에 불과했다. 성적이 낮을수록, 경제수준이 낮을수록 청소년단체 가입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표 III-5-40>에서는 청소년들이 가입한 청소년단체의 성격과 참가율을 살펴볼 수 있다. 2012년 통계청과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의하면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13~19세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참여율은 36.4%로 나타났다. 참가하는 청소년단체의 성격은 친목 및 사교단체가 53.8%로 가장 많았고,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가 46.6%로 두 번째로 많았다. 다음으로 종교단체 28.7%, 시민사회단체 22.1%, 학술단체 10.7%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앞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큰 차이는 없지만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참여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39 최근 1년 간 청소년단체 가입/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가입하지 않았다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전체(N)	χ^2
전체		81.1	9.3	9.5	100.0(9,507)	
성별	남자	82.5	8.6	8.9	100.0(4,978)	8.0
	여자	79.6	10.2	10.2	100.0(4,530)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5	9.7	19.8	100.0(2,822)	13.689**
	중학교	84.4	9.9	5.7	100.0(3,276)	
	일반/특목/자율고	86.7	8.5	4.8	100.0(2,800)	
	특성화고	87.3	8.2	4.6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81.9	7.9	10.2	100.0(3,941)	3.1
	중소도시	82.4	8.6	9.0	100.0(4,391)	
	읍면지역	73.8	16.8	9.4	100.0(1,175)	
학업 성적	상	76.8	10.6	12.7	100.0(2,845)	7.578*
	중	80.9	9.5	9.6	100.0(3,996)	
	하	86.3	7.7	6.0	100.0(2,649)	
경제적 수준	상	77.2	10.2	12.6	100.0(4,309)	5.1
	중	82.8	9.4	7.8	100.0(3,532)	
	하	88.0	6.8	5.2	100.0(1,654)	

* $p < 0.05$, ** $p < 0.01$

표 III-5-40 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단위 : %)

	참여자	친목 및 사교 단체	종교 단체	취미, 스포츠 및 레저 단체	시민사회 단체	학술 단체	기 타
2009	27.4	63.5	24.5	36.9	19.9	11.8	2.4
2011	36.4	53.8	28.7	46.6	22.1	10.7	5.1
13~19세	32.4	39.9	32.6	47.9	29.5	8.6	4.2
20~24세	43.4	71.4	23.7	45.0	12.6	13.3	6.2
중학생	30.6	29.6	37.7	51.9	32.2	7.1	4.7
고등학생	31.9	35.9	33.7	47.0	32.7	8.2	3.6
대학생	45.6	65.5	23.6	46.6	17.7	16.7	5.3

* 출처 : 통계청·여성가족부(2012.5.2.), 2012 청소년통계, p.14.

* 원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나. 동아리활동 참가율

동아리활동 참가율의 지표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들의 활동모임으로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모임이라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 권리가 잘 보장되고 있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이다. 역시 2013년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471명의 응답자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를 물었을 때에 <표 III-5-41>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70.1%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근 30% 가까이는 없다고 대답하였다. 큰 차이는 없었지만 여학생(72.2%)이 남학생(69.7%)보다 동아리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고 있었으며 청소년단체에서의 참여율과는 달리 초등학교(67.5%)보다는 중학생(73.1%)과 고등학생(73.0%)들의 동아리활동이 더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시기에 또래문화가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이한 조사결과는 자율고 학생(76.0%)들이 특성화고(64.4%)나 특목고(66.9%)보다 동아리활동을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학업성적과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동아리활동에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5-41 최근 1년 간 취미나 문화 동아리 활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전체		70.9	29.1	100.0(9,471)
성별	남자	69.7	30.3	100.0(4,952)
	여자	72.2	27.8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67.5	32.5	100.0(2,789)
	중학교	73.1	26.9	100.0(3,276)
	일반고	73.0	27.0	100.0(2,451)
	특목고	66.9	33.1	100.0(92)
	자율고	76.0	24.0	100.0(255)
	특성화고	64.4	35.6	100.0(609)
지역 규모	대도시	72.7	27.3	100.0(3,925)
	중소도시	67.4	32.6	100.0(4,373)
	읍면지역	77.5	22.5	100.0(1,173)
학업 성적	상	73.8	26.2	100.0(2,843)
	중	69.9	30.1	100.0(3,967)
	하	69.3	30.7	100.0(2,644)
경제적 수준	상	72.7	27.3	100.0(4,287)
	중	68.9	31.1	100.0(3,517)
	하	70.5	29.5	100.0(1,654)

* $p < 0.05$

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 정도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과 학교의 지지 정도에 관한 지표는 청소년의 활동할 권리가 가정과 학교에서 제대로 지지받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는 지표이다. 먼저 <표 III-5-42>에서는 위와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 9,488명을 대상으로 가정에서의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이다. 조사결과에서 전체적으로 응답자 가정의 60.1%가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응답자 다섯 가정 중 두 가정에 해당하는 39.9%는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부정적이어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비교의 결과에서는 성별 차이가 크지 않지만 여학생(62.1%)이 남학생(58.3%)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하여 가정에서 조금 더 지지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81.4%)의 청소년활동의 참여가 압도적으로 가정에서 지지를 받는 반면 중학생(49.6%)이 고등학생(53.0%) 보다 가장 낮게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체로 학업성적이 높거나 경제수준이 높은 가정이 청소년활동에의 참여에 지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42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가정의 지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19.7	20.2	42.7	17.4	100.0(9,488)	
성별	남자	22.4	19.3	42.0	16.3	100.0(4,963)	16.679*
	여자	16.8	21.2	43.4	18.7	100.0(4,525)	
학교 유형	초등학교	8.7	9.8	41.2	40.2	100.0(2,809)	14.235**
	중학교	26.5	23.8	41.1	8.5	100.0(3,274)	
	고등학생	22.2	25.3	45.8	7.2	100.0(3,406)	
지역 규모	대도시	18.7	19.4	42.9	19.0	100.0(3,936)	12.4
	중소도시	20.9	20.5	42.1	16.6	100.0(4,375)	
	읍면지역	18.8	21.8	44.2	15.2	100.0(1,177)	
학업 성적	상	14.2	17.4	44.2	24.3	100.0(2,841)	14.9*
	중	16.9	19.5	45.4	18.2	100.0(3,987)	
	하	30.0	24.3	36.9	8.8	100.0(2,643)	
경제적 수준	상	14.7	17.1	43.9	24.3	100.0(4,299)	1.5
	중	22.1	22.5	42.1	13.3	100.0(3,522)	
	하	27.4	23.3	40.9	8.4	100.0(1,653)	

* $p<0.05$, ** $p<0.01$

다음으로 <표 III-5-43>은 응답자 9,483명을 대상으로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이다. 학교에서의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지지도가 가정에서의 경우보다 조금 높게 나왔는데, 학교가 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를 긍정적으로 지지한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69.5%였고, 지지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학생이 30.5%로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여학생이

조금 더 지지를 받고 있었으며,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약간 더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규모나, 학업성적, 경제적 수준에 따른 편차는 다른 경우보다 차이가 많지 않은 것도 특이한 조사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학교가 성적이나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학생들에게 달리 지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 고무적인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

표 III -5-43 청소년단체 및 동아리활동 참여에 대한 학교의 지지 여부

(단위 : %(명))

구분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전체(N)	χ^2
전체		13.6	16.9	52.1	17.4	100.0(9,483)	
성별	남자	16.2	17.4	49.6	16.8	100.0(4,960)	12.824*
	여자	10.8	16.3	54.9	18.0	100.0(4,523)	
학교 유형	초등학교	7.0	9.5	49.3	34.2	100.0(2,807)	8.0
	중학교	16.9	18.4	53.8	10.9	100.0(3,269)	
	고등학생	16.0	21.5	52.8	9.7	100.0(3,406)	
지역 규모	대도시	12.7	16.5	51.6	19.2	100.0(3,930)	9.462**
	중소도시	14.9	17.5	51.6	16.0	100.0(4,378)	
	읍면지역	11.9	15.8	55.8	16.6	100.0(1,175)	
학업 성적	상	9.8	13.9	52.3	23.9	100.0(2,843)	4.7
	중	11.8	16.3	54.3	17.6	100.0(3,980)	
	하	20.5	20.8	48.7	9.9	100.0(2,642)	
경제적 수준	상	11.0	14.9	51.5	22.7	100.0(4,301)	8.7
	중	14.5	18.2	53.5	13.8	100.0(3,521)	
	하	18.5	19.2	50.9	11.3	100.0(1,648)	

* $p<0.05$, ** $p<0.01$

(2) 정책제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중분류된 지표체계는 다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아동·청소년 활동,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 활동 권리로 소분류되어 각 분류에 지표들이 채택되었다. 먼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채택된 지표들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전반적으로 현재 한국은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들이 즉, 시설과 프로그램 및 지도자들이 양적, 질적으로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 무엇보다 청소년활동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정적이고 부족한 인식이 청소년들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에 대해 학부모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려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학부모들이 이렇게 청소년들의 여가시간 활용에 있어서 부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가 가혹하다고 할 만큼의 한국의 학벌사회 속에서 좋은 대학에 입학하여 평생을 고생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는 심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만 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청소년의 여가와 놀 권리,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이들이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이들을 즐길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교입학에 있어서 대학 간의 우열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여 학벌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고용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회체계의 변혁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가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과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개발하고, 독일과 같은 각 직업분야에서 마이스터(Meister)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그 위치에 걸맞은 명예와 보수가 뒤따르도록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도록 유도하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

위기청소년들이나 다문화청소년과 같은 소수집단의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은 매우 중요한 미래지향적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 소외된 청소년집단은 향후 그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진입하게 되면 각종 비행과 문제를 야기해서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을 위해서는 예방적 정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인도적이고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정상적인 위치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엿보이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재원으로는 이들을 최소한의 인권적 차원에서도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들의 복지를 위하여 재원마련을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특히 2012년 청소년백서에는 이들을 위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으므로 이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무상으로 이들의 참여를 지원하여야 한다. 현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용인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을 위한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긍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디딤센터는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함께 예산을 투입하여 최소한 광역시도에 하나씩 설치되는 것이 시급하다. 이와 함께 이주배경 다문화청소년들 중 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인 무지개청소년센터도 서울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전국 광역시도 별로 1개소 씩 설치되어야 한다. 즉, 교육정책을 통해서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다양한 문화 및 여가 활동의 기회를 늘려주어 이들의 권리를 되찾아 줄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이나 문제에 이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정책을 통해서도 권리의 기회균등 차원이나 치료적 차원에서 이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질병들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6. 특별보호조치²⁷⁾

(제22조, 제30조, 제32-36조, 제37조 (b)-(d),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1) 난민아동

(1) 지표의 현황

① 난민아동

가.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이 지표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 소속,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들 중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한 아동·청소년,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아동·청소년,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아동·청소년, 불인정 및 철회된 아동·청소년의 비율을 말한다.

법무부 요청자료에 의하면, 2013년 6월말 현재까지 난민 신청자는 총 5,580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333명(6.0%), 인도적 체류자는 174명(3.1%), 불인정자는 2,507명(44.9%), 철회자는 1,075명(19.3%)으로 난민 지위 인정자 비율이 6.0%에 머무르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해도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가 207명이고, 이 중 난민 지위 인정자는 52명(25.1%), 인도적 체류자는 27명(13.0%), 불인정자는 57명(27.5%), 철회자는 16명(7.7%)으로 난민 신청자 중 1/4 정도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인도적 체류자를 포함하면 38.1%에 이른다. 하지만 난민 불인정 아동·청소년과 철회된 아동·청소년 비율도 35.3%(73

27) 이 절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집필하였으며, 본 원고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자료집 (워크숍자료 13-S39)」에 게재·발표 후 수정·보완하였음.

명)로 이들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난민신청자는 2007년까지 10명 내외에 머무르다가 2008년 이후부터 20명 이상씩 증가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매해 30~40명씩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인정자의 수도 증가하여 2012년도에는 가장 많은 14명이었으며, 인도적 체류자 7명을 포함하면 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 2013.7.18.).

표 III-6-1 아동·청소년 난민 현황

구분	신 청			인 정			인도적 체류			불인정			철 회		
연도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명)	18세 미만 (명)	아동 청소년 비율(%)	전체 (명)
2003 이전	9	3.6	251	0	0.0	14	0	0.0	13	0	0.0	41	3	7.3	41
2004	0	0.0	148	2	11.1	18	0	0.0	1	0	0.0	12	0	0.0	10
2005	9	2.2	410	0	0.0	9	3	23.1	13	0	0.0	76	1	3.2	31
2006	7	2.5	278	0	0.0	11	0	0.0	13	2	1.9	108	0	0.0	46
2007	11	1.5	717	5	38.5	13	2	22.2	9	2	2.4	84	1	1.5	67
2008	20	5.5	364	8	22.2	36	0	0.0	14	1	1.3	75	0	0.0	117
2009	20	6.2	324	6	8.6	70	4	18.2	22	15	1.9	804	3	1.5	206
2010	30	7.1	423	6	12.8	47	5	14.3	35	4	1.3	310	2	2.8	71
2011	29	2.9	1,011	7	16.7	42	4	20.0	20	8	4.0	202	3	3.2	95
2012	38	3.3	1,143	14	23.3	60	7	22.6	31	9	2.0	454	3	1.4	211
2013. 6.	34	6.7	511	4	30.8	13	2	66.7	3	16	4.7	341	0	0.0	180
총합	207	3.7	5,580	52	15.6	333	27	15.5	174	57	2.3	2,507	16	1.5	1,075

*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2013.7.18.)를 토대로 재구성

나. 탈북난민 아동 현황

이 지표는 북한을 탈출하여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한국에 입국한 아동을 말한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들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탈북자들을 공식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탈북자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구에서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좋은벗들은 2006년에 탈북난민의 규모를 탈북자 10만명, 탈북 아동 5만명으로 추정하고,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에서도 탈북자의 규모를 10만명으로 추정하였으나, 2008년 이후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2년에 통일연구원과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보면, 중국 동북 3성 내 체류 탈북자 수는 7,500명(최소 4,500~최대 10,500명), 탈북여성 출산 아동은 20,000명(최소 15,000명~최대 25,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조정현 · 김수암 · 손기웅 · 이규창 · 이금순 · 임순희 외, 2013: 387).

한편, 유엔난민기구의 「2012 세계 난민 동향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말에 전세계적으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탈북자가 1,110명, 망명 신청 대기 중인 탈북자가 1,027명으로 2011년의 탈북 난민 인정자 1,052명, 망명 신청자 490명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망명 신청 국가는 캐나다(719명)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벨기에(109명) 등의 순이었다(한국일보, 2013.6.21.).

또한 통일부 요청자료(통일부, 2013.7.30.)에 의하면,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는 2013년 2월 현재 총 24,695명이며, 이중 남자가 7,600명, 여자가 17,095명으로 여자가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동·청소년 입국자를 살펴보면, 입국자 총 24,695명 중에서 0~9세가 41%(1,022명), 10~19세가 11.7%(2,895명), 20~29세가 27.4%(6,760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6-2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13.2 현재)

(단위 : 명)

구 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계
남	510	1,352	2,107	1,813	1,119	396	303	7,600
여	512	1,543	4,653	5,705	2,983	884	815	17,095
누계	1,022	2,895	6,760	7,518	4,102	1,280	1,118	24,695

* 출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2013.7.30.)

아동·청소년 연령대 입국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0~9세의 경우에 남자는 49.9%(510명), 여자는 50.1%(512명)로 비슷했으며, 10~19세의 경우에는 남자가 46.7%(1,352명), 여자가 53.3%(1,543명)으로 여자가 많았으며, 20~29세의 경우에는 남자가 31.2%(2,107명), 여자가 68.8%(4,653명)로 여자가 남자의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연도별 입국 현황을 살펴보면, 2000년까지는 100명 미만의 청소년이 입국하였으나 2001년에는 124명이 입국하였으며 2002년 이후에는 200명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에는 매년 300명 이상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3 탈북청소년 연도별 입국 현황

(단위 : 명)

연도 대상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전체 (입국자수)	148	312	58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2,706
6-20세 (입국자수)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656	306	501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298.

* 원자료 : 통일부 홈페이지(www.unikorea.go.kr)

다.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이 지표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중에서 학교부적응, 이민, 장기결석 등의 이유로 중도에 탈락한 학생의 비율을 말한다. 최근 탈북청소년들의 중도탈락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도탈락의 사유는 이민 등 출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6-4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12. 4)

	구 분	초	중	고	계
'08년도	'07. 4. 재학생 수(명)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명)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11년도	'10. 4. 재학생 수(명)	773	297	347	1,417
	중도탈락생 수(명)	19	13	35	67
	중도탈락률(%)	2.5	4.4	10.1	4.7
'12년도	'11. 4. 재학생 수(명)	1,021	286	374	1,681
	중도탈락생 수(명)	27	11	18	56
	중도탈락률(%)	2.6	3.8	4.7	3.3

*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http://www.hub4u.or.kr> (검색일: 2013. 7. 30), p.3.

* 주 : 중도탈락률 = (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 / 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탈북청소년의 중도탈락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도에는 초등학교생 3.5%, 중학생 12.9%, 고등학교생 28.1%로 전체 재학생 687명 중 10.8%가 중도 탈락했으며, 2011년도에는 초등학교생 2.5%, 중학생 4.4%, 고등학교생 10.1%로 전체 재학생 1,417명 중 4.7%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2년도에는 초등학교생 2.6%, 중학생 3.8%, 고등학교생 4.7%가 중도 탈락했으며, 전체 재학생 1,681명 중 3.3%가 중도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교생의 탈북 청소년 중도탈락률은 2008년도에 매우 높았으나,

2008년 이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학년도 중도탈락자의 사유를 살펴보면,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탈락률이 43%로 가장 많았고, 장기결석 등(23%), 검정고시, 대안학교 등으로의 진로변경(21%), 학교부적응(9%), 행방불명(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민 등 출국으로 인한 중도 탈락은 2011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2012년도에는 2배로 급증한 반면, 학교부적응 사유로 인한 중도 탈락은 2008년도에 28.3%에서 2009년에 33.9%, 그리고 2010년도에는 57.1%로 증가하다가 2011년도 이후(2011년 11.9%, 2012년 8.9%)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12.6.).

(2) 정책제언

그동안 한국에서의 난민에 대한 정책은 1992년에 비준한 「난민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에 근거해서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국내에서 「난민법」²⁸⁾을 새롭게 제정(2012년 2월 10일)·시행(2013년 7월 1일)하게 됨으로써 이 법에 의해서 난민정책이 시행되게 되었다. 「난민법」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등에 따라 난민의 지위와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난민법 제1조),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제2장), 난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3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제4장), 난민지원시설의 운영(제5장 보칙 제4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난민인정자들의 처우는 난민인정자, 인도적 체류자, 난민신청자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난민 인정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교육, 학력인정, 자격인정 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고”(제33조 교육의 보장),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제35조 학력인정),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제36조 자격인정).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가 입국을 신청하는 경우에 「출입국관리법」 제11조29)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에는 「난민법」 제39조에

28) 법무부. 난민법(시행 2013.7.1.).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29)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지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일본 정부, 일

서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의 경우에는 생계비 등의 지원(제40조)과 주거시설의 지원(제41조), 의료지원(제42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난민신청자 및 그 가족 중 미성년자인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제43조).

「난민법」은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출입국 관리의 차원에서 난민관련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인권보호 관점에서 법을 마련하였고, 아시아 최초로 국제법에 입각한 난민법을 만들어서 난민법 체계의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되고 있다(신지원 · 송영훈 · 박가영 · 신예진, 2012: 36-37). 그러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정책의 방향성과 집행 방식 및 내용 등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난민들의 정착 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등의 과제가 지적되고 있다(송영훈 · 이순복, 2012: 신지원 외, 2012: 40에서 재인용). 특히, 난민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한국어교육과 더불어 자아정체성 유지를 위한 모국어교육의 실시, 다문화 학교나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난민 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는 전문가와 문화중개자의 양성, 그리고 난민 아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폭넓은 민주시민교육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현미 외, 2013). 이밖에 난민인정 절차에서 특히,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반 없이 입국한 무연고아동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며, 출입국항과 구금시설에서 머무르는 경우에도 난민 아동의 개별 상황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현미 외, 2013).

한편, 탈북난민은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와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 따라 각각 정책과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많은 수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불안정한 상태로 거주하고 있으며, 국내로의 입국이나 해외 이주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강제송환으로 인한 탈북자 및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를 위한 제3국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유엔 등 국제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해서 난민협약에 의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되고 있다(이기현, 2012).

국내 체류 탈북자의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³⁰⁾에 의해서 특별히 보호와 지원을 받고 있다.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

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 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제1조), 보호신청(제7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제10조), 학력인정(제13조), 자격 인정(제14조), 직업훈련(제16조), 주거지원등(제20조), 정착금 등의 지급(제21조), 생활보호(제26조),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제26조의2), 생업지원(제26조의3)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탈북 아동·청소년을 위해서 초기 적응교육의 강화, 학교교육의 내실화, 학교 밖 교육 지원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의 운영과 교육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및 탈북청소년 연구 기반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2). 그러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은 획일적인 교육보다 입국전 제3국에서의 교육경험 등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도방법이 모색되어야 하고,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의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며, 탈북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도교사의 양성과 배치, 그리고 다양한 교재의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향규, 2011). 이밖에도 다문화관점에서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고, 탈북청소년들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제안되고 있다(문화정, 2012).

2) 소년사법의 운영

(1) 지표의 현황

① 소년사법의 운영

가.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지난 5년간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 비율은 2008년에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에는 2007년과 같은 수준인 4.4%(83,068명)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년범죄자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09년의 소년법 개정으로 19세가 제외된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지난 5년간 발생한 청소년범죄의 유형을 살펴보면, 절도, 횡령 등의 재산범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폭력범죄, 교통사범, 강력범죄, 저작권법 위반 사범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11년의 경우에 청소년범죄자 83,068명 중 재산범죄는 45.7%, 폭력범죄는 26.8%, 교통사범은 13.9%, 강력범죄는 4.0%, 저작권법 위반범죄는 0.4%로,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흉악범죄, 성폭력범죄 등의 강력범죄는 최근에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범죄 중 절도나 폭행·상해 등의 범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나,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성폭력 등 강력범에 대한 대응 마련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작권법 위반은 2009년에 8,720명에서 2010년에는 275명으로 급감했으나, 2011년에는 318명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5 소년범죄자 구성비

연도	구분	소년범죄자(명)	전체범죄자(명)	구성 비율(%)
2007		88,104	1,989,862	4.4
2008		134,992	2,472,897	5.5
2009		113,022	2,519,237	4.5
2010		89,776	1,954,331	4.6
2011		83,068	1,907,641	4.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38.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주 : 2008년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소년의 연령이 '19세 미만'으로 변경된 바, 2009년도 통계부터는 19세는 성인으로 분류되어 수치에서 제외됨.

표 III-6-6 소년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88,104	134,992	113,022	89,776	83,068
강력범	소 계	1,928	3,016	3,182	3,106	3,289
	흉악범	1,094	1,427	1,608	999	1,268
	성폭력	834	1,589	1,574	2,107	2,021
폭력범	소 계	23,275	34,067	29,488	23,276	22,233
	공 갈	562	1,046	1,495	1,422	1,509
	폭행·상해 등	22,713	33,021	27,993	21,854	20,724
재산범	소 계	33,659	39,688	45,774	40,478	37,978
	절 도	28,839	33,073	38,494	33,534	31,380
	횡령 등	1,167	1,855	1,664	1,483	1,528
	장 물	271	571	820	722	454
사 기		3,382	4,189	4,796	4,739	4,616
교통사범		21,893	27,666	18,138	13,842	11,523
저작권법 위반		2,338	20,272	7,720	275	318
기타		5,011	10,283	8,720	8,799	7,727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39.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 주 : 1) 흉악범 : 살인, 강도, 방화

2) 폭행·상해 등 : 폭행·상해의죄 + 폭력행위등처벌법(공갈죄 제외) + 기타

3) 횡령 등 : 횡령+배임+손괴

4) 교통사범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주차량)

5) 2006년도 통계에는 특별법 위반 현황 중 저작권법 위반 관련통계가 별도로 제시되지 않음.

청소년범죄의 처리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리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의 보호사건으로 결정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임희진·김현신, 2011: 224). 청소년범죄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 현재 전체 소년범죄자 83,060명 중 5.6%(4,691명)만이 기소되었으며, 불기소 55.7%(46,224명), 소년보호송치 36.8%(30,587명) 등으로 소년범죄자의 90% 이상을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추세에서도 소년범죄자는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비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비형사사건 중 기소유예 처분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데 비해서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형사사건으로 기소한 비율은 2007년도에 11.8%였던 것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5.6%까지 감소하였다. 비형사사건 중에서 기소유예 비율도 2007년도에 50.7%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도에는 44.0%로 감소하였으나, 소년보호송치 비율은 2007년도에 24.3%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도에는 36.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7 소년범죄 처리 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기 소	불 기 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참고인 중지	기소 중지
			소계	혐의 없음	기소 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88,104 (100)	10,367 (11.8)	54,424 (61.8)	3,029 (3.4)	44,689 (50.7)	394 (0.4)	6,312 (7.2)	21,368 (24.3)	22 (0.0)	21 (0.0)	93 (0.1)	1,809 (2.1)
2008	134,992 (100)	15,150 (11.2)	88,932 (65.9)	4,944 (3.7)	62,977 (46.7)	2,073 (1.5)	18,938 (14.0)	28,360 (21.0)	30 (0.0)	46 (0.0)	104 (0.1)	2,370 (1.8)
2009	133,022 (100)	7,795 (6.9)	71,100 (62.9)	4,684 (4.1)	56,715 (50.2)	1,184 (1.0)	8,517 (7.5)	32,453 (28.7)	37 (0.0)	16 (0.0)	86 (0.1)	1,535 (1.4)
2010	89,776 (100)	5,443 (6.1)	52,685 (58.7)	4,801 (5.3)	42,021 (46.8)	339 (0.4)	5,524 (6.2)	30,143 (33.6)	9 (0.0)	11 (0.0)	93 (0.1)	1,392 (1.6)
2011	83,060 (100)	4,691 (5.6)	46,224 (55.7)	4,151 (5.0)	36,582 (44.0)	272 (0.3)	5,219 (6.3)	30,587 (36.8)	10 (0.0)	7 (0.0)	86 (0.1)	1,455 (1.8)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60.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범죄분석

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법무부 훈령 제733호인 「선도보호지침」³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31) 법무부 훈령 제733호, 소년보호선도지침,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51&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에 대하여 소년보호사건이나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에 “범죄예방자원 봉사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제3조). “범죄소년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선도 보호하여 재범을 예방하고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제1조). “재범가능성이 희박한 18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며(제4조), 선도방법은 상담, 서신, 전화 등을 통한 접촉선도와 범죄예방위원의 주거지나 복지시설에서 의, 식, 주를 제공하면서 이루어지는 원호선도를 행하고 있다(제18조, 제19조). 선고기간은 재범가능성에 따라 달리하고 있는데, “비교적 재범가능성이 높은 1급 유예소년은 1년,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은 6월로 하고 3개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제25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는 1978년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처음 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1년부터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소년선도보호지침」이 제정되어 전국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여성가족부, 2012b: 35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1년에 소년범죄자 89,068명 중 1.5%(1,363명)로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수치는 2011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범죄자 36,582명의 3.7%에 해당하는 것으로 매우 적은 비율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있는 반면, 많은 청소년들이 특별한 교육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소유예나 보호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는 청소년 인권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없다.

표 III - 6 - 8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현황

연도 \ 구분	소년범죄(명)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인원(명)	비율(%)
2007	88,104	6,610	7.5
2008	134,992	5,886	4.4
2009	113,022	7,104	6.3
2010	89,776	2,967	3.3
2011	89,068	1,363	1.5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52.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은 법무부 훈령 제731호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³²⁾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32) 법무부 훈령 제731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3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있다. “연령과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선도가 요구되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며(제3조),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1년, 재범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기소유예자에 대해서는 6월의 선도기간을 갖는다”(제4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와는 달리 “보호관찰소의 장이 선도업무를 관장해서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선도대상자를 담당할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며”(제10조), “보호관찰관은 선도교육, 집단치료 또는 상담 등 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선도대상자의 가족, 이웃사람, 친구 등과 접촉하고 학비보조, 취학·취업알선, 기타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제11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을 주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대상은 소년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문적인 선도가 필요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53). 소년범죄 기소유예자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은 집계되고 있지 않는데, 전체 기소유예자 위탁 상황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자는 전체 기소유예자 353,564명의 1.4%인 4,950명이며, 2009년의 0.8%(3,807명)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 -6-9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현황

(단위 : 명(%))

연도	구분	기소유예자 전체	선도위탁 상황			
			선도대상자	계속(연장포함)	해제	취소
2007		262,823	5,258(2.0)	12,134	4,218	66
2008		361,907	3,421(0.9)	3,967	2,614	116
2009		467,132	3,807(0.8)	3,669	2,382	129
2010		363,106	4,411(1.2)	34,038	1,915	163
2011		353,564	4,950(1.4)	6,716	2,833	31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54.

* 원자료 : 대검찰청(2012), 검찰연감

(2)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 소년사법의 운영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처벌 위주보다는 교화와 선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범죄소년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7년에 개정된 소년법에서도 처벌위주에서 교화·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하는데 법 개정의 이유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국선보조인제도의 도입, 화해권고제도, 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 등은 소년범죄자의 인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정희철, 2008). 즉, 2007년 개정된 소년법 제17조의 2에서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어 있는 범죄소년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소년, 빈곤한 소년

등에 대하여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년범죄자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제25조의 3에서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게 하고,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하고 있다". 제49조의 3에서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유형의 소년범죄의 발생,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의 축소, 법률에서의 회복적 사법 등 인권적 요소의 결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인권보장적 보호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확대 실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회복적 사법은 "범죄자와 피해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대화를 통하여 화해를 도모하는 일종의 갈등해결 절차로서 형사절차와 낙인을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iers, 2001; 김은경, 2007: 1171에서 재인용). 2007년 개정소년법에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 통합을 통한 재범 방지, 가해소년의 책임수용 등을 목적으로 소년사법에 회복적 사법을 도입하였으나(강경래, 2009), 조정주체와 개시요건, 진행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소년의 건전육성, 적정절차의 보장 등의 가치를 고려하는 사법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강경래, 2009). 둘째, 소년경찰 전문화 교육 등 전문화를 통해서 소년사법이 사회방위적 관점이 아니라 교육적·복지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명숙, 2009). 셋째, 청소년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년범죄에 대한 변화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에 대해 대응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소년범죄 중에서 최근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폭력 범죄나 저작권법 위반사범 등의 범죄 유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년사법에서 범죄소년의 인권을 고려한 처분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별한 교육조치가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비율을 확대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범죄소년의 경우에도 교육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소년범죄자에게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보다 인권적인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방어능력이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자력이 없기 때문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전 사법처리단계에 있는 모든 청소년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제도로 확대해야 한다"(이명숙, 2009: 271~272). 다섯째, 보호처분과 형사처분으로 이원화된 소년 사법절차로 인해서 형사처분으로 처리되었다가 다시 소년부로 송치되는 소년의 경우에 발생하는 미결구금상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와 형사보상법상 불처분결정을 당한 소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이승현, 2013).

3)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1) 지표의 현황

① 자유를 빼앗긴 아동(어떤 형태의 구금, 수감 및 수용환경에의 조치를 포함)

가.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소년법원의 비행소년에 대한 처분에 앞서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소년분류심사원에 일정기간 수용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³³⁾에 의하면, 소년분류심사원은 “법원소년부(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위탁된 소년의 수용과 분류심사, 전문가진단의 일환으로 법원소년부가 상담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상담과 조사,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조사를 의뢰한 소년의 품행 및 환경 등의 조사, 소년원장이나 보호관찰소장이 의뢰한 소년의 분류심사의 임무를 수행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보호소년의 과학적 분류를 위한 조직과 절차를 갖추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인권과 발달 지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이고 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년분류심사원은 “학문적 소양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류심사관을 두어”(제25조),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복지학·범죄학·의학 등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근거하여 보호소년의 신체적·심리적·환경적 측면 등을 조사·판정하고 있다”(제24조). 또한 “보호소년 또는 위탁소년의 처우에서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제5조). “소년분류심사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등의 건강진단과 위생에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조). 또한 “보호소년등으로부터 처우나 일신상의 사정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수시로 보호소년등과 면접을 하여야 하며”(제10조), “보호소년 등이 그 처우에 불복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문서로 청원할 수 있다”(제11조).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법」 제14조 3항에 의해서 법원소년부의 결정에 의하여 1회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61). 2011년 현재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수용된 신수용인원은 6,682명으로 1일 평균 456명에 달하고 있다.

33) 법무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3.3.23.),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지난 5년간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에 5,275명이 수용된 이래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은 2007년 대비 2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10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 현황

(단위 : 명)

구 분 \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신수용인원	5,275	5,620	6,065	6,295	6,682
1일 평균수용인원	289	341	399	419	456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61.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나.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소년법원은 경찰, 검찰, 법원에서 보내온 소년사건에 대해 비행원인을 조사·심리하여 보호처분을 결정하고 있다.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하는 1호 처분에서부터 소년원에 장기 위탁하는 10호 처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년원에서는 7호 처분에서부터 10호 처분까지를 담당하고 있다. 7호 처분은 병원, 요양소 또는 소년의료시설에 6개월간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대덕소년원에서 그 임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8호 처분은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처분은 6개월 내의 소년원 송치, 10호 처분은 2년 이내의 소년원 송치를 말한다(여성가족부, 2012b: 368).

2011년 현재, 보호시설 수용 인원 2,559명 중 7호 처분을 받아 의료보호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7%(69명)이고, 8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51.9%(1,329명), 9호 처분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단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5.2%(644명),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내에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2%(517명)으로 1개월 이내의 수용 청소년이 과반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는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는 것에 비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III-6-11 보호소년의 수용기간별 인원 및 평균수용기간

연도 \ 기간	7호(의료) (명(%))	8호(1개월) (명(%))	9호(단기) (명(%))	10호(장기) (명(%))	계(명(%))	평균수용기간 (개월)
2008(08.6.22~)	66(2.6)	895(35.6)	783(30.9)	782(30.9)	2,526(100)	6.9
2009	52(2.0)	1,218(45.6)	684(25.6)	718(26.8)	2,672(100)	4.93
2010	56(2.0)	1,339(48.6)	771(28.0)	589(21.4)	2,755(100)	5.1
2011	69(2.7)	1,329(51.9)	644(25.2)	517(20.2)	2,559(100)	5.1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69.

* 원자료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2012)

* 주 : 1) 2008.6.22,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장기과정의 기존 일반A, 일반B, 일반C 과정을 10호 처분으로 통합됨.
2) 수용기간별 인원은 처분변경, 처분취소, 유죄판결 항고 등을 제외하고 퇴원 및 임시퇴원 보호소년출원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2008년 6월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8호 처분(1개월 미만) 인원 증가에 따라 평균 수용기간 단축됨.

소년원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부터 송치된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하는 기관”으로(『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능력 개발훈련과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 학생의 취업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년원 학생 중 취업한 인원은 총 1,540명이고, 2011년 현재 소년원 학생 중 취업 인원은 261명으로, 2008년 339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12 소년원 학생 취업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취업인원	277	339	335	328	261	1,54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71.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소년원 학생의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 현황은 2011년 현재 111명으로 전년도 108명에 비해 다소 늘어났으나 고등학교 진학의 비중이 높고 대학교 진학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진학 상황을 비교해보아도 진학자 수가 낮은 편이며, 대학 진학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13 소년원 학생 진학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계	132	113	166	108	111
대학교	63	49	52	38	22
고등학교	69	64	114	70	8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71.

* 원자료 : 법무부(2012), 범죄예방정책국 소년과 통계자료

다.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 또는 일반교도소의 경우에는 분리된 장소에 수용하고 있다. 또한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교육·교화 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 계속 수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73). 2011년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114명으로, 2007년 657명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은 2008년 6월 22일 개정소년법 시행 이후 만 19세 이상의 수용자가 성인교도소로 이송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374).

표 III-6-14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단위 : 명)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수용인원	657	156	169	146	11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74.

* 원자료 :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소년교도소의 학교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일반학과교육을 받은 사람은 35명, 방송통신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은 40명으로, 2009년 이후로 동일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소년교도소 수용인원과 비교해보면 학과교육을 받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표 Ⅲ-6-15 소년교도소 학과교육 현황

(단위 : 명)

구분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교육인원(계)	60	85	75	75	75
일반학과교육	27	35	35	35	35
방송통신고(졸업인원)	33(16)	50(8)	40(6)	40(13)	40(13)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77.

* 원자료 : 법무부(2012), 교정본부 통계자료

(2) 정책제언

우리나라에서는 보호소년, 위탁소년, 유치소년 등 자유가 박탈되어 소년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인권을 우선적으로 해서 보호하고 있다. 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는 보호소년 등에 대한 처우의 기본원칙으로 “소년원장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장은 보호소년, 위탁소년 또는 유치소년을 처우할 때에 인권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들의 “심신발달과정에 알맞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되고 규율이 있는 생활 속에서 보호소년 등의 성장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킴으로써 사회적응력을 길러 건전한 청소년으로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여 보호소년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성장발달이 처우의 가장 우선되는 원칙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보호소년등의 이탈, 난동, 자해, 자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제14조 3),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면회나 서신교환, 가족등과의 전화통화 등을 허가하고”(제18조), 특히, “보호 및 교정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변호인등과 주고받는 편지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도록 하여”(제18조 5항) 보호시설의 운영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소년의 자율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보호소년등의 교육은 학교교육, 직업훈련교육,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보호소년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통한 사회생활에의 원만한 적응”(제28조)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소년의 소년원학교 입교는 곧 보호소년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보며”(제31조),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거나 유치된 소년 및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의 처분을 받은 소년의 수용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하며”(제31조), “보호소년이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 퇴원하여 다른 학교에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제32조). 또한 “소년원장

은 산업체의 기술지원이나 지원금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소년원 외의 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게 하고 있으며”(제3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소년원에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두도록 하여”(제35조) 보호소년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있다.

보호소년 등을 위한 정책은 인권의 보호와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보호소년 수용시설의 환경과 운영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이를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보호소년등의 생활상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보호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개선 정책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소년보호시설이 적정 인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어 공부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소년 등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보이고 있다(이유진, 2011: 130~131). 둘째, 구금을 최소화하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면서 소년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안을 위한 각종 시설과 감호장비의 완화, 시설환경의 기술학교 형태로의 전환 등 모든 소년원의 처우를 개방하는 개방처우시설화가 필요하다(이유진, 2011: 131). 셋째, 교과교육, 인성교육 및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의 기초학력 신장 방안, 교과교육 및 인성교육 지도인력의 배치 및 외부인력 활용, 직업훈련직종의 다양화 및 직업훈련 교사 확충, 단기처분 교육과정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안선영, 2011: 10~11). 넷째, 학교 복귀 후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학교 교과교육의 충실화가 필요하다. 소년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대부분이 특성화교육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원 출원 후 학교에 복귀했을 때 적응하지 못해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성화교육과 더불어 학교 교과교육에도 충실할 필요가 있다(이승현, 2013: 360). 다섯째, 국제적 기준인 자유박탈규칙 제35조에 부합하도록 알몸검사의 개선, 목욕시간의 확보, 지급 물품과 간식 및 운동의 양과 질의 개선, 두발에 대한 자율 결정권 부여 등 보호시설에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이유진, 2011: 131). 여섯째, 보호소년 등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에서 청소년에 대한 욕설, 폭력 등의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의 발표와는 다르게 보호시설 청소년에 대한 폭력문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보호시설이 인권을 침해하는 시설로서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경우가 있다. 시설에의 과밀수용으로 인해서 공격성이 높아진 데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으나(이유진, 2011: 133), 폭력 및 체벌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4)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1) 지표의 현황

① 아동노동을 포함한 경제적 착취

가. 청소년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이 지표에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기 위하여 월평균 근로일수, 월평균 근로시간수, 하루평균 근로시간수를 살펴보았다. 2011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남자청소년 근로자의 경우에 근로시간이 전체 남자청소년근로자보다 많아 근로조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2011년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이 172.6시간, 20-24세 청소년이 187.9시간으로,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89.3시간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평균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20-24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와 같은 8.5시간이며,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8.3시간으로 약간 낮으나 연소근로자 법정근로시간인 7시간을 초과하여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또한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을 성별로 살펴보면,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전체 남자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회하여 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19세 이하가 172.6시간이고, 20-24세 남자청소년이 200.0시간으로,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 전체 남자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 192.7시간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로시간을 하루 평균 근로시간으로 환산해서 살펴보면, 20-24세 남자청소년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이 8.9시간이고, 19세 이하 청소년이 8.5시간, 전체 남자근로자가 8.7시간으로 특히 20-24세 청소년이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한편, 지난 5년간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월평균 근로시간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그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도에 월평균 근로시간은 19세 이하 청소년이 200.2시간, 20-24세 청소년이 193.0시간, 전체근로자가 191.5시간으로,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높았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172.6시간, 20-24세 청소년이 187.9시간, 전체근로자가 189.3시간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9세 이하 청소년의 월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16 평균 근로일 및 근로시간

연도	연령별	남 자		여 자		전 체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근로일수(일)	근로시간수(시간)
2007	전 체	22.2	194.0	22.3	186.2	22.3	191.5
	19세 이하	23.1	204.4	22.3	198.4	22.6	200.2
	20-24세	23.0	205.8	22.1	186.8	22.4	193.0
2008	전 체	21.9	191.6	21.8	182.6	21.8	188.7
	19세 이하	21.0	176.8	22.2	192.0	21.7	185.6
	20-24세	22.3	204.6	21.7	181.3	21.9	188.9
2009	전 체	22.7	197.2	22.8	189.6	22.8	194.8
	19세 이하	21.2	186.9	21.2	179.9	21.2	182.1
	20-24세	22.7	205.9	22.6	188.5	22.6	193.9
2010	전 체	22.5	195.7	22.5	186.9	22.5	192.8
	19세 이하	19.7	165.4	19.9	162.2	19.8	163.5
	20-24세	22.6	200.3	22.4	184.9	22.5	189.9
2011	전 체	22.2	192.7	22.2	182.4	22.2	189.3
	19세 이하	20.3	172.6	20.9	172.6	20.7	172.6
	20-24세	22.4	200.0	22.0	181.5	22.1	187.9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19.

* 원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나.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이 지표는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체근로자 대비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비교하였다. 월평균 청소년근로자는 전체근로자의 60-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을 받고 있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수준은 2011년 현재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 126만 7천원이고 20-24세 청소년은 157만 5천원으로, 2010년 대비 19세 이하 청소년은 24.0%, 20-24세 청소년은 10.4% 증가하였다. 하지만 19세 이하 청소년의 경우에는 2008년 이후 2010년까지 월평균 급여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수준과 비교해 보면, 2011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210만 2천원으로(고용노동부, 2011), 19세 이하 청소년은 전체근로자의 60.3%, 20-24세 청소년은 전체근로자의 74.9% 수준이었다.

표 III-6-17 청소년 근로자의 연령별 임금수준 추이

구 분	임금수준(천원)		증감률(%)	
	19세이하	20-24세	19세이하	20-24세
2006	1,167	1,285	10.2	7.1
2007	1,197	1,324	2.6	3.1
2008	1,166	1,377	-2.6	4.0
2009	1,106	1,381	-5.2	0.3
2010	1,022	1,427	-7.6	3.3
2011	1,267	1,575	24.0	10.4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318.

* 원자료 : 고용노동부(각 연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2008년 이전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2011년도 청소년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청소년은 5,942원이고, 20-29세 청소년은 10,070원으로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2011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30세 이상 성인 임금수준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세 이하 청소년 중에서 정규직은 8,232원, 비정규직은 5,292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4.3%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20-29세 청소년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11,097원, 비정규직이 7,691원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의 69.3%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고용노동부, 2012.6.).

표 III-6-18 연령계층별 시간당 임금총액

(단위 : 원(%))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
전체	15,289	9,372(61.3)	13,769
19세 이하	8,232	5,292(64.3)	5,942
20~29세	11,097	7,691(69.3)	10,070
30~39세	15,521	11,014(71.0)	14,807
40~49세	17,865	10,415(58.3)	16,171
50~59세	16,672	10,014(60.1)	14,638
60세이상	11,292	8,464(75.0)	9,978

* 출처 : 고용노동부(2012. 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p.2.

* 주 : ()는 비정규직/정규직의 수준(비율)

다.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지급 불이행, 부당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경험률을 의미한다. 이 지표는 2009년, 2011년 및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된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표를 산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펴보면, 2013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로, 2011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13.7%에 비해서 다소 낮게 나타났다.

표 III-6-19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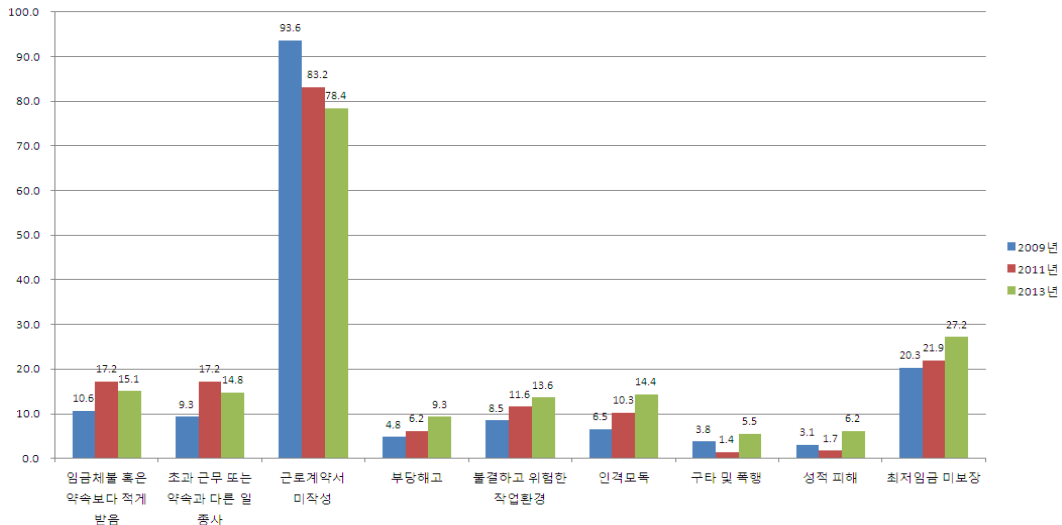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13.3	86.7	100.0(6,692)	
성별	남자	13.9	86.1	100.0(3,513)	383.691***
	여자	12.7	87.3	100.0(3,180)	
학교 유형	중학교	6.5	93.5	100.0(3,281)	717.706***
	일반고/특목/자율고	15.2	84.8	100.0(2,801)	
	특성화고	41.1	58.9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12.2	87.8	100.0(2,784)	167.667***
	중소도시	13.4	86.6	100.0(3,027)	
	읍면지역	16.2	83.8	100.0(881)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12.3	87.7	100.0(5,962)	506.741***
	한부모가정	20.5	79.5	100.0(572)	
	조손가정	37.9	62.1	100.0(46)	
	기타	21.6	78.4	100.0(100)	
학업 성적	상	7.3	92.7	100.0(1,744)	406.592***
	중	11.8	88.2	100.0(2,641)	
	하	19.5	80.5	100.0(2,298)	
경제적 수준	상	10.7	89.3	100.0(2,562)	202.493***
	중	12.3	87.7	100.0(2,635)	
	하	19.5	80.5	100.0(1,485)	

*** $p < 0.001$

또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학생(13.9%)이 여학생(12.7%)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특성화 고등학생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일반 고등학생(15.2%), 중학생(6.5%)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유형은 조손가정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37.9%)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부모가정 학생(20.5%), 양부모가정 학생(12.2%)으로, 양부모 가정 학생보다 조손가정 학생이나 한부모가정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성적은 성적이 하인 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19.5%로 가장 많았고, 중인 학생은 11.8%, 상인 학생은 7.3%로 성적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은 하인 경우가 19.5%로 가장 많았고, 중 12.3%, 상 10.7%로,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한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초과 근무 또는 약속과 다른 일 종사(14.8%), 인격모독(14.4%),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한 경험(13.6%), 부당해고(9.3%), 성적 피해(6.2%), 구타 및 폭행(5.5%)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의 3개년 동안 부당 처우 경험을 비교해 보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확대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 -6-1】 아르바이트 부당 처우 경험률

특히,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경험은 2009년에 6.5%에서 2013년 14.4%로 2배 이상 증가하였고, 구타 및 폭행 경험도 2009년 3.8%에서 2013년 5.5%로 1.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성적 피해 경험도 2009년 3.1%에서 2013년 6.2%로 2배 증가하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의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정책제언

아동·청소년의 경제적 착취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5년에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청소년위원회(현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이 범정부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근로자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으로는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 청소년근로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 추진, 청소년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연소자 근로여건 개선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³⁴⁾.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를 위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급증하는 방학기간 중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2005.6.20.; 이완영, 2008). 매년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연소근로자 보호조항과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또한 청소년근로 관련 법령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중·고교 교사 연수과정에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및 피해구제방법을 포함시키고, 중·고등학생에 대한 노동관계법 및 직업의식 교육을 실시하며, 요식업, 주유소,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다수고용업종 사업주에 대한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노동부 외, 2005.6.20.; 이완영, 2008). 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은 관련교과와 재량·특별활동, 청소년교실 등을 활용하여 직업의식 및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수고용업종 사업주에 대한 교육은 연소자 근로관련 법령 교육과 청소년아르바이트 채용시 근로계약서 작성 지도 등이 포함된다(여성가족부, 2012b: 334). 청소년 근로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홍보방법으로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건전한 직업체험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근로 보호 캠페인을 실시하고, 중·고등학교 및 사업장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정 근로조건 홍보 팜플렛과 포스트 등을 배포하며, 청소년 법정 근로조건 교육용 CD를 제작·배포하고, 관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교육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노동부 외, 2005.6.20.; 이완영, 2008). 청소년 일자리 정보 제공 및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워크넷을 개설하여 청소년층의 진로·직업·진학·취업가이드, 직업심리 검사, 청소년직장체험, 진로와 직업 이터닝 콘텐츠 등을 제공하고 연소근로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1318 알바신고센터를 도입하였다(노동부 외, 2005.6.20.; 여성가족부, 2012b). 이 밖에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비진학 청소년을 구분하여 비진학 연소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을 완화하고, 18세 미만자(15세까지)의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비치 의무제도를 보완하고 18세 미만자의 야업·휴일 근로 인가 요건 및 절차 완화 등 제도개선을 통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있다(노동부 외, 2005.6.20.).

청소년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착취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인 정책 수립과 시행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34) 청소년근로 보호 정책의 주 내용은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청소년위원회, 경찰청, 2005. 6. 20)의 내용을 토대로 하고, 청소년근로보호종합대책에 대한 경제정책 해설인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이완영, 2008)과 「2012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2012b)의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되었음.

서 작성 미준수, 임금체불, 부당해고, 폭언 등 인격모독, 폭력 등 연소근로자 고용 사업주의 법 위반과 청소년들의 피해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초 청소년근로 보호를 위한 계획 수립과는 다르게 그 시행과정이 철저하지 못했고, 청소년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첫째,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근로 관련법 준수 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학기간에 집중되었던 것을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시·도 행정단위 수준에서 시·군·구 등으로 확대하며, 점검대상 업소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경준·김희진·성운숙, 2012). 둘째, 청소년근로 관련법 점검 결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에 워크넷 등 구직사이트에 적발·시정 실태를 공개함으로써 사업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경준 외, 2012). 셋째, 청소년들이 근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및 직원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및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이경상·김기현·김가람, 2011). 넷째, 청소년 근로 시 발생하는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위급할 시 경찰서 등에 긴급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경준 외, 2012). 다섯째, 청소년 다수고용사업장을 중심으로 연소근로자 표준계약서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내용을 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이경상 외, 2011). 여섯째, 불법해고, 임금체불, 폭행 등 근로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청소년 근로자가 신속하게 신고하여 상담·치료 및 법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는 간편신고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김경준 외, 2012).

5)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1) 지표의 현황

① 성적착취, 학대 및 인신매매

가.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이 지표는 청소년성매매 행위자, 알선자, 청소년 등 청소년성매매에 가담된 자와 그들에 대한 구속 등의 조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검거는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 때 2006년에 성매매 대상 청소년의 교육과정 이수제도의 추진을 위하여 성매매 대상청소년 전원을 입건하도록 한 대검찰청의 수사지침으로 인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성매매에 대한 단속 시행 여부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를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242).

2011년 기준으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은 2,006명으로, 이 중 성매매 행위자는 74.5%(1,494명), 성매매 업주 등 성매매 알선자는 8.1%(162명),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17.4%(350명)였다. 또한 검거된 대상 중에서 구속된 사람은 2.0%(41명)이고, 98.0%(1,965명)는 불구속 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성매매 검거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 15.2%로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까지 낮아져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한 법적 제제가 약화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표 III-6-20 청소년 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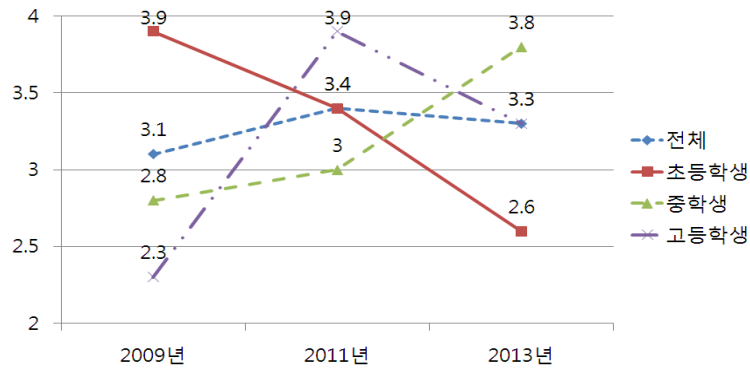
연 도	검거인원	검거대상별			조치	
		행위자	업주 등 관련자	대상 청소년	구속	불구속
2005	1,946	1,611	305	30	295(15.2)	1,651(84.8)
2006	1,745	1,502	183	60	149(8.5)	1,596(91.5)
2007	2,582	1,835	242	505	126(4.8)	2,456(95.1)
2008	2,112	1,464	196	452	81(3.8)	2,031(96.2)
2009	2,182	1,543	264	375	125(5.7)	2,057(94.3)
2010	1,345	972	164	209	56(4.1)	1,289(95.8)
2011	2,006	1,494	162	350	41(2.0)	1,965(98.0)

* 출처 : 여성가족부(2012b), 2012 청소년백서, p.242.

* 원자료 : 경찰청(2012), 행정통계

나.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이 지표는 청소년의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피해 경험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을 2009년, 2011년, 2013년에 본 연구원에서 수행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비교해 보면, 2013년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3.3%로 2009년의 경험률(3.1%)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2011년의 경험률(3.4%)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성적 피해 경험률과 증가율이 가장 높아, 중학생들의 성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적 피해 경험률이 2009년 3.9%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2.6%까지 감소하였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2009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도에는 3.8%까지 증가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3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이 3.3%로 2011년의 경험률(3.9%)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9년의 경험률(2.3%)에 비해서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2】 청소년 성적 피해 경험률(3개년 추이 : 전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편,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률은 성별, 학교유형별, 지역규모별, 가족유형별, 학업성적별, 경제적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학생(3.7%)이 남학생(2.9%)보다 성적 피해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유형별로는 중학생(3.8%), 일반 고등학생(3.5%), 특성화 고등학생(2.8%), 초등학생(2.6%)의 순으로, 지역규모별로는 대도시 학생(3.4%), 읍면지역 학생(3.3%), 중소도시 학생(3.1%)의 순으로, 가족 유형별로는 조손가정 학생(7.2%), 한부모가정 학생(4.3%), 양부모가정 학생(3.1%)의 순으로, 학업 성적별로는 학업성적이 하(4.5%)인 학생들이 상(2.8%)이나 중(2.8%)인 학생보다, 그리고 경제적 수준별로는 경제적 수준이 하(5.4%)인 학생이 가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21 최근 1년 동안의 성적인 피해 경험

(단위 : 명(%))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전체		3.3	96.7	100.0(9,498)	
성별	남자	2.9	97.1	100.0(4,979)	24.926**
	여자	3.7	96.3	100.0(4,519)	
학교 유형	초등학교	2.6	97.4	100.0(2,817)	18.134**
	중학교	3.8	96.2	100.0(3,277)	
	일반/특목/자율고	3.5	96.5	100.0(2,795)	
	특성화고	2.8	97.2	100.0(610)	
지역 규모	대도시	3.4	96.6	100.0(3,941)	36.662***
	중소도시	3.1	96.9	100.0(4,380)	
	읍면지역	3.3	96.7	100.0(1,177)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1	96.9	100.0(8,493)	31.409***
	한부모가정	4.3	95.7	100.0(757)	
	조손가정	7.2	92.8	100.0(80)	
	기타	4.5	95.5	100.0(152)	

구분		있다	없다	전체(N)	χ^2
학업 성적	상	2.8	97.2	100.0(2,848)	14.58*
	중	2.8	97.2	100.0(3,996)	
	하	4.5	95.5	100.0(2,641)	
경제적 수준	상	3.0	97.0	100.0(4,307)	16.142*
	중	2.7	97.3	100.0(3,530)	
	하	5.4	94.6	100.0(1,653)	

* $p < 0.05$, ** $p < 0.01$, *** $p < 0.001$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이 59.6%로 가장 많았고, 성추행이 32.6%, 그리고 강제적 성관계는 5.1%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다른 교급 유형에 비해 성희롱 비율(57.9%)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강제적 성관계 비율(7.7%)은 높았으며, 일반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강제적 성관계 비율이 6.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III-6-22 성적 피해 유형

구분		성희롱	성추행	강제적 성관계	전체(N)
전체		62.6	34.2	5.4	100.0(309)
성별	남자	62.7	31.5	8.6	100.0(142)
	여자	62.5	36.5	2.6	100.0(166)
학교 유형	초등학교	57.9	34.4	7.7	100.0(72)
	중학교	68.9	30.6	3.6	100.0(124)
	일반/특목/자율고	59.0	37.3	6.8	100.0(97)
	특성화고	56.3	43.7	0.0	100.0(16)
지역 규모	대도시	68.2	31.4	2.1	100.0(134)
	중소도시	61.2	34.6	7.6	100.0(135)
	읍면지역	48.4	42.7	8.9	100.0(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62.5	34.1	6.0	100.0(263)
	한부모가정	62.1	37.9	0.0	100.0(32)
	조손가정	84.7	15.3	0.0	100.0(6)
	기타	43.1	42.3	14.6	100.0(7)
학업 성적	상	58.4	36.6	7.7	100.0(80)
	중	65.3	34.5	1.3	100.0(111)
	하	63.6	31.7	7.8	100.0(117)
경제적 수준	상	66.3	29.8	6.4	100.0(125)
	중	64.7	32.9	5.0	100.0(96)
	하	55.1	42.0	4.3	100.0(88)

* 주 : 복수응답

성적 피해를 경험한 후 도움을 받은 사람은 친구가 31.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11.8%), 선생님(6.5%), 인터넷(3.0%), 선배(2.4%)나 형제자매(2.4%) 등의 순으로,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경우보다는 친구에게 알린 경우가 많았으며,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특히, 여학생들(34.5%)이 남학생들(31.6%)보다, 그리고 교급이 높을수록(초 29.1%, 중 31.7%, 일반고 37.9%, 특성화고 35.3%), 대도시(32.3%)나 중소도시(29.8%)보다 읍면지역(48.2%)에 거주할수록, 양부모 가정(34.7%)이 한부모가정(27.2%)이나 조손가정(0.0%)보다, 학업성적이 중간(36.7%)이나 상(35.6%) 이하(28.7%)인 경우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상 28.9%, 중 34.3%, 하 38.1%) 성폭력 피해를 당한 후 친구에게 알린 비율이 높았다. 또한 여학생들(13.8%)이 남학생들(10.5%)보다, 그리고 초등학생(27.3%)이 중학생(8.5%)이나 고등학생(일반고 4.4%, 특성화고 18.3%)보다, 읍면지역(10.2%)보다 대도시(12.3%)나 중소도시(12.9%) 지역에 거주할수록, 양부모가정(12.5%)이 한부모가정(9.9%)이 조손가정(0.0%)보다, 성적이 낮을수록(상 8.5%, 중 12.2%, 하 15.1%),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상(11.5%)이나 하(7.7%)보다 중간(17.5%)인 경우에 부모님이나 보호자에게 알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조손가정의 청소년들은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비율이 76.2%이며, 도움을 받은 경우에도 선배에게만 도움을 받았으며, 보호자나 친구 등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III -6-23 성적 피해를 당한 후 도움을 받는 사람

(단위 : 명(%))

구분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친구	선배	부모님 (보호자)	형제·자매	선생님	전문 상담가 (상담 전화)	경찰	인터넷	기타	전체(N)	χ^2
전체	36.0	33.2	2.5	12.3	2.5	6.7	0.3	0.6	3.1	2.7	100.0(311)	
성별	남자	42.8	31.6	3.2	10.5	0.0	5.2	0.7	0.0	4.0	100.0(142)	293.559***
	여자	30.2	34.5	1.9	13.8	4.6	8.0	0.0	1.1	2.3	100.0(168)	
학교 유형	초등학교	22.9	29.1	1.3	27.3	1.2	15.5	1.3	0.0	1.3	100.0(75)	27.797***
	중학교	37.1	31.7	3.5	8.5	3.6	6.7	0.0	0.0	5.7	100.0(123)	
	일반/특목/자율고	46.5	37.9	1.1	4.4	1.5	1.2	0.0	2.0	1.7	100.0(95)	
	특성화고	26.8	35.3	8.1	18.3	5.6	0.0	0.0	0.0	6.0	100.0(17)	
지역 규모	대도시	38.3	32.3	1.0	12.3	1.6	6.9	0.7	0.7	2.6	100.0(137)	94.853***
	중소도시	34.1	29.8	3.9	12.9	3.4	7.9	0.0	0.7	4.5	100.0(135)	
	읍면지역	34.5	48.2	2.6	10.2	2.5	2.1	0.0	0.0	0.0	100.0(39)	
가족 유형	양부모가정	34.8	34.7	1.9	12.5	2.6	6.5	0.4	0.7	2.9	100.0(264)	132.194***
	한부모가정	37.2	27.2	3.6	9.9	2.9	11.1	0.0	0.0	6.2	100.0(34)	
	조손가정	76.2	0.0	23.8	0.0	0.0	0.0	0.0	0.0	0.0	100.0(6)	
	기타	32.6	36.7	0.0	30.8	0.0	0.0	0.0	0.0	0.0	100.0(7)	
학업 성적	상	32.3	35.6	0.0	8.5	3.0	9.8	0.0	0.0	3.2	100.0(80)	30.551***
	중	32.0	36.7	4.1	12.2	2.9	8.7	0.0	0.0	3.3	100.0(110)	
	하	42.4	28.7	2.7	15.1	1.8	1.9	0.8	1.6	2.9	100.0(120)	
경제적 수준	상	39.2	28.9	1.9	11.5	0.7	10.5	0.0	0.0	2.7	100.0(126)	29.752***
	중	29.7	34.3	2.9	17.5	5.9	6.8	0.0	0.0	2.3	100.0(97)	
	하	38.4	38.1	2.9	7.7	1.3	1.4	1.1	2.1	4.6	100.0(88)	

*** $p < 0.001$

다.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

이 지표는 심리·정서적지원, 의료지원, 시설입소연계지원, 수사·법적 지원 등 성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이다.

표 III-6-24 성폭력 피해자 지원내용

(단위 : 건(%))

연 도	심리·정서적 지원	의료 지원	시설입소 연계	수사·법적 지원	기 타	계
2007년	38,031(57.0)	5,001(7.5)	727(1.1)	15,288(22.9)	7,673(11.5)	66,720(100)
2008년	40,803(61.5)	3,773(5.7)	638(1.0)	10,416(15.7)	10,663(16.1)	66,293(100)
2009년	36,367(61.2)	3,750(6.3)	925(1.6)	8,510(14.3)	9,868(16.6)	59,420(100)
2010년	41,941(56.6)	5,419(7.3)	1,350(1.8)	13,205(17.8)	12,187(16.4)	74,102(100)
2011년	42,290(57.2)	5,724(7.7)	1,138(1.5)	12,043(16.3)	12,743(17.2)	73,938(1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1a).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p.6.

* 주 : '04년 이후 운영실적 항목에서 「시설입소연계」 항목은 '쉼터', '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입소'를, 「기타」 항목은 '장애인 등록', '국가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신청'등 포함함.

2011년도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건수는 73,938건으로 이 중 57.2%가 심리·정서적 지원이고, 의료지원 7.7%, 시설입소연계지원 1.5%, 수사·법적 지원 16.3%, 기타 지원 17.2%로 심리·정서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고 시설입소 연계 비율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지난 5년간 지원내용을 비교해보아도 심리·정서적 지원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변함이 없었다(여성가족부, 2011a).

한편, 성폭력 피해청소년의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현재 성폭력 피해 보호시설 입소자는 총 226명으로, 이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51.8%(117명)이며, 보다 자세하게는 7세 미만이 6.2%(14명), 7-13세가 6.6%(15명), 14-19세가 38.9%(88명)으로 14-19세가 가장 많았다. 또한 2011년도에 성매매 보호시설에 입소한 전체 장애인은 64명이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은 34.4%에 해당하였다. 보호시설 입소자들은 200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는데, 2008년 437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26명으로 48.3%나 감소하였다.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의 보호시설 입소도 2008년 이후에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에 241명에서 2009년에 171명, 2010년에 160명, 2011년에는 11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1a).

표 III-6-25 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시설 입소 현황

(단위 : 명(%))

연 도	구 분	7세미만	7-13세	14-19세	20세 이상	계
2007년	전 체	23(6.5)	38(10.7)	150(42.3)	144(40.6)	355(100)
	장애인	1(1.0)	4(4.2)	46(47.4)	46(47.4)	97(100)
2008년	전 체	21(4.8)	60(13.7)	160(36.6)	196(44.9)	437(100)
	장애인	0(0)	12(10.7)	51(45.5)	49(43.8)	112(100)
2009년	전 체	13(4.2)	33(10.6)	125(40.1)	141(45.2)	312(100)
	장애인	0(0)	3(3.3)	33(36.7)	54(60.0)	90(100)
2010년	전 체	10(3.5)	30(10.6)	120(42.6)	122(43.3)	282(100)
	장애인	0(0)	5(5.6)	29(32.2)	56(62.2)	90(100)
2011년	전 체	14(6.2)	15(6.6)	88(38.9)	109(48.2)	226(100)
	장애인	-	-	22(34.4)	42(65.6)	64(100)

* 출처 : 여성가족부(2011a).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p.8.

(2) 정책제언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크게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처벌 강화와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과 아동·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구성된다. 즉, 가해자 대상의 정책은 신상정보 등록·공개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법적 처벌 강화 등이 있으며,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의 정책은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이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등록·공개(고지)제도는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최초로 제정·시행되면서 시행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적극적인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신상정보의 열람은 당초 경찰서에서만 이루어지는 소극적인 열람방식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인터넷 열람으로, 그리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지역주민에게 우편 고지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b: 245~247).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를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시설 등에 취업하는 제한함으로써 성범죄 예방 및 유사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012년 현재 총 449,430개소가 취업대상기관으로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원 및 교습소,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의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의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체육시설 등이 해당된다³⁵⁾.

35) 여성가족부(2013a). 성보호정책가이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 (인출일: 2013. 8. 23.)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최근 친고죄가 없어져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성범죄자를 처벌하며,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즉,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과 강간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성폭력 범죄자가 형기를 마친 후에도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감시하게 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기존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그리고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도 징역 1년 이상에서 징역 2년 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또한 16세 미만 아동 대상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여 재범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였다(서울신문, 2013.6.18; 김경준 외, 2012: 39).

성폭력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지원을 원스톱으로 통합·지원하여 피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였으며, 1366 긴급전화 등의 응급신고 체계 구축, 의료지원, 법률지원, 취학·주거지원, 상담 및 보호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김경준 외, 2012: 39). 또한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지행동 상담·치료교육과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교육을 실시하여 재발방지와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지원을 하고 있다³⁶⁾.

이상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과거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조치로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어 보다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법 제도적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처벌된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형량도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높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성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법 적용이 엄격하게 되어서 사회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동시에 장기적인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에 성기호중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사실무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재판과정에서 변호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질문 등을 제지할 수 있는 방안, 진술조력인, 피해자국선변호인 등의 적극적인 피해청소년 지원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³⁷⁾. 넷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정책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때만 관심을 갖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서는 안 된다. 아동·청소년 대상의 성범죄 발생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적

36) 여성가족부(2013a), 성보호정책가이드(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 (인출일: 2013. 8. 23.)

37) 둘째와 셋째의 정책 제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3년 9월 29일에 개최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 토론에서 이승현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제안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인 정책은 수사기관의 경쟁만을 부추기며 그 효과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개발과 시행을 통해서 효과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성폭력 피해자 방문서비스 실시, 장기적 후유증에 대한 치료와 상담,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 특히 13세 미만의 아동과 13-19세 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한 차별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폭력 전문 시설 및 전문가 확보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이유진·강지명·윤옥경·조운오, 2012). 여섯째, 사회에 부각되어 있지 않고 숨겨져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에 대한 대응은 이슈 중심적이기 때문에 이슈에 대하여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는 보이지 않는 데에서 더욱 심각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조사 및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장애 아동·청소년, 기출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아동·청소년 등 취약한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 IV 장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IV. 요약 및 정책제안³⁸⁾

1. 요약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영역에서는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등 2개 중분류에 각 2개의 소분류, 총 9개의 지표항목을 살펴보았다.

국제적 권고와 국내 여론에도 불구하고 아동정책 조정 및 국제조약 이행·평가·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운영되지 않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 근거와 독립성은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운영인력과 예산은 부족하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은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국제적 수준에 비하면 열악하며, 무엇보다도 아동·청소년 예산을 산출하는 기준과 자료조차도 통일되지 않아 ‘아동·청소년 예산’의 정의와 산출내역을 통일하여 변화추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인프라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인권감수성과 인권적 인식 수준은 약 70~90% 내외로 높은 편이었으나 일부 응답에서 따돌림이나 폭력을 정당화할 우려가 다소 있었고, 인권 침해 개선을 위한 단체 참가 등 실천적 행동의사는 5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활영역별 아동·청소년의 인권존중 정도는 가정(90.1%), 지역사회(81.1%), 학교(80.1%)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우리나라 전반적인 아동·청소년 인권수준에 대해서는 67.6%만 ‘존중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들어보지도 못한 경우가 46.8%로 과반에 이르고 있고 협약의 내용을 아는 경우는 13.1%에 불과했다.

38) 이 장은 김영지, 김경준, 김지혜, 이민희가 집필하였음. 연구 요약과 정책제안에 대해 ‘대분류 1.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관련내용은 김영지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대분류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관련내용은 김영지 연구위원과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대분류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및 ‘대분류 4.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관련내용은 김지혜 교수(남서울대학교)가, ‘대분류 5.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관련내용은 이민희 교수(평택대학교)가, 그리고 ‘대분류 6. 특별보호조치’ 관련내용은 김경준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아동·청소년은 학업성적과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8가지 차별유형과 관련하여, 일년에 1-2회 이상 경험률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이 35.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연령차별 33.7%, 성차별 31.1%,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26.7%, 지역차별 5.7%, 가정형편에 따른 차별 4.2%, 종교차별 3.1%,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 0.8% 순으로 나타났다. 한달에 1-2회 이상 경험률 또한 경험정도의 순서는 일년에 1-2회 이상의 경우와 같았으며, 10명 중 한 명은 한 달에 한두번 이상 학업성적에 따른 차별(14.6%), 연령차별(12.2%), 외모나 신체조건에 따른 차별(11.2%), 성차별(10.4%)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7%,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친구로 사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7.9%로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비해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3개년 추이를 살펴볼 때, 다문화 및 장애 청소년에 대한 편견은 줄어들고 이들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긍정적 변화로 판단된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의식과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과 차별예방교육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해야 한다.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에서는 이름과 국적 및 신분의 등록 및 유지, 의견표명권 및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결사·집회의 자유, 사생활의 보호, 정보접근권, 차별·고민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등 7개 하위영역의 27개 지표를 살펴보았다.

가정에서의 의견존중 현황을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질문으로 알아본 결과, 의견을 존중받는(‘그런편이다’와 ‘매우 그렇다’를 합한 값) 응답률이 진로·직업(87.8%) 결정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상급학교 진학결정(84.7%), 집안의 중요한 문제결정(80.1%) 순으로 나타난 반면, 공부시간이나 방법(79.6%)을 결정할 때 존중받는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상황에서 80% 이상이 의견을 존중받는다는 응답을 보여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의 의견존중도는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과 초등학생의 의견존중도가 높았고 특성화고등학생의 경우 의견존중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에서의 참여와 관련하여 학생의 의사결정권을 보장받는 정도는 교육활동에 대해서는 48.2%,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서는 54.6%가 보장받는다고 응답하였다. 학생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임원 자격제한 여부, 예산과 공간 등 지원 여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자치수준은 미흡한 편이었고 학생회 운영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응답이 50~60%를 상회하고 있었다.

사회에서의 참여활동과 관련하여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떤 기구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로

나타난 반면, 들어본 적도 없는 경우도 62.4%로 나타났다. 10명 중 2~3명의 아동·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나 모임 가입 등의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51.6%의 아동·청소년이 청소년의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5.7%)’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 부족’ 31.5%, ‘참여기회나 방법 부족’ 14.3%, ‘참여활동 정보 부족’ 13.3% 등의 순이었다.

‘학교의 종교행사에 원하는 학생만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40.7%로 60%에 가까운 종교학교가 학생들의 종교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용모검사 경험은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고, 복장검사의 경우 두 집단 모두 2011년에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 다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소지품검사는 중학생이 2011년에 2.0%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 1년간 아동·청소년의 체벌 경험률을 보면, 부모 또는 보호자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30.6%,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29.8%, 학원 교사에 의한 체벌 경험률은 13.4%로, 10명 중 3명은 부모(보호자)나 교사에 의한 체벌을 경험하였으며, 10명 중 1명 이상은 학원 교사에 의해 체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2011년, 2013년에 걸쳐 체벌 경험률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영역에서는 부모의 지도와 책임,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입양,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의 5개 하위영역의 17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부모의 지도와 책임영역에서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은 가정 어린이집이 53.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민간 어린이집이 34.0%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5.2%에 불과하였다. 즉,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를 갖고 있으며, 공공성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정책이 선별적 서비스에서 보편적 서비스로 전환되면서 보육시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성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30% 수준으로 상향시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과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보육어린이집 등의 확충도 요구된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을 살펴보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48.9%이고, 어머니와 대화하는 시간이

전혀 없거나 30분 미만인 청소년의 비율이 24.9%인 것으로 나타나서 부모의 양육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의 5.1%는 가출경험이 있고, 가출청소년의 93.7%는 가출시 이용해 본 기관의 서비스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출청소년을 위한 보호기관인 청소년 쉼터의 이용은 1.2%에 불과하여 쉼터유형간 연계 및 인력의 전문성 확보 등을 통해 가출청소년을 위한 전달체계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안적 양육을 받는 요보호아동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시설보호의 비중이 54.1%로 크기 때문에 아동이 가정형태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와 친가정 복귀를 위한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입양과 관련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입양을 추진하고, 국내입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국외입양 조치되도록 함으로써 국외 입양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정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함께 입양에 대한 사회의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인식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유기 및 신체적·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영역을 살펴보면, 학대피해아동 보호건수는 2003년 2,921건에서 2011년 6,05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003년 19개소에서 2011년 44개소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해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영유아 검진제도의 강화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위험가정을 조기발견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도 있다. 방임과 관련하여서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의 아동·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에 비해 방임의 빈도가 높았으며, 경제적으로 하위계층의 아동·청소년이 방임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은 신체학대나 성학대에 비해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아동의 전 생애주기 발달에서 다양한 관계의 문제를 심각하게 초래한다. 따라서 방임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 및 경제적 하위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과 함께 방임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전체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양육 및 보호조치에 대한 심사 영역에서는 3년마다 실시되는 아동복지시설 평가결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2001년부터 실시된 시설평가로 인해 아동복지시설은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날로 향상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의 사전 개발과 질적평가의 도입, 시설 간 무리한 경쟁 방지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4)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영역에서는 장애, 생존 및 발달, 보건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약물남용 방지 대책,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의 7개 하위영역의 37개 지표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살펴보았다.

먼저, 장애 영역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대상 학생 배치 현황과 관련하여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학생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흐름이 통합교육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로 장애 아동·청소년의 인권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아동·청소년의 비율이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통합뿐만 아니라 각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육과정 지원 및 전문인력을 위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며,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편견과 낙인을 버릴 수 있도록 장애인식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장애학생의 취업률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켜 성인기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2013b)에서 추진 중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추진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내 기관 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음으로 생존 및 발달에 관한 지표를 살펴보면, 10-19세, 20-29세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은 모두 고의적 자해(자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36.9%가 자살생각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청소년의 자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청된다. 증가하는 청소년의 자살률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이루어 체계적으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 구성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이 제정되어 정부기관과 민간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친구가 4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또래상담 활성화를 통해 청소년들이 또래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돕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건서비스에 대한 지표를 살펴보면,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65.5%이고, 특히 중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은 51.3%에 불과하다. 급속한 신체변화와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노출되

어 있는 사춘기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교사 배치율을 높이고, 보건교사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도 요청된다. 학교급식과 관련하여서는 급격한 양적 확대로 인해 시설의 미비 및 위생관리 체계의 소홀함 등이 지적되어 왔다. 현재 교육부에서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는 모든 학교에서 별도의 급식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모니터링과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 아동·청소년들의 종교적 신념을 고려한 대체 음식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먼저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지표를 살펴본 결과, 아동·청소년은 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관적 평가뿐만 아니라 운동실천율, 아침식사 결식율, 수면시간, 비만율, 청소년 유병률 등 신체적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지표들에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가구빈곤을 완화하는 소득보장정책이 필요하며,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개입이 요청된다. 이러한 정책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별로 영양, 신체활동, 생활 습관 관리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건강증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신건강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은 행복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원인으로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서행동 특성검사가 낙인감 없이 실시되어야 하며, 학교폭력이나 우울,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을 집중 사례로 지정하여 추적관찰 하는 등의 사례관리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의 지표로 성교육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학년이 증가할수록 성교육 경험률이 감소하고 있었다. 성교육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실시되기 보다는 전문인력을 통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지식과 관련된 정보 뿐만 아니라 성폭행예방교육을 포함한 성인권교육이 성교육에 포함되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약물남용 방지 대책 영역에서는 약물남용 예방교육 경험률과 흡연을 및 음주를 현황을 살펴보았는데, 약물남용 경험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효과적인 약물남용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중·고등 학생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시기부터 집중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 시기별로 교육내용을 차별화시키고 1-2회의 단순교육이 아닌 지속적 교육 형태로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더 노출되어 있고, 어른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약물남용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사회보장 및 아동보호시설 영역에서는 사회보장서비스 내용으로 아동급식 지원현황,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 현황,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을 살펴보았다. 정부에서는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회보장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담당 부처 간의 적극적인 연계가 필요하다. 또한 각 지역마다 센터 존재 여부와 전문인력 수준에 따라 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 인프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기관 종사자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대분류의 하위내용은 크게 교육에의 권리(제28조), 교육의 목표(제28조 2항 및 3항, 제29조, 30조),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제31조)으로 중분류되었다. 이 분류는 2013년도에는 세부적으로 다시 지표가 분류되어 교육에의 권리는 교육의 기회와 진로교육의 기회로 분류되었다. 중분류 중 교육의 목표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다문화이해로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중분류인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아동·청소년 활동, 소수집단 문화 및 여가활동 권리로 세부적 분류가 이루어져 지표들이 형성되었다.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지표산출과는 달리 지표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보다 세부적인 체계로 나누어 범주화함으로써 과거와 비교하여 더욱 명료한 지표들의 의미와 위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세부지표들의 산출이 보다 용이하도록 지표체계가 구성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먼저 교육에의 권리와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적인 총평을 하자면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취학률, 진학률,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에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발전적으로 확대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업중단율, 학교부적응, 사교육 경험률, 방과 후 하루 평균 학습시간들의 지표에 따른 조사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고질병인 교육열이 지나치게 과열되어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장과 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국가로서 한국은 유엔으로부터 한국의 학습시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아동들의 여가 및 놀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받았음에도 전혀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교육제도가 혁명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교육을 통한 한국 아동의 인권침해는 지속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입학시험 위주의 교육에 있어서 경쟁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학교 평준화와 같은 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아동과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진학의 분야를 다양하게 마련해줄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다양화를 꾀하고, 취업 시 학벌로 인한 차별을 완화시키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교육부가 진로진학상담 전담교사 제도를 마련한 것은 이러한 방향의 정책에 첫 걸음을 내딛은 것으로의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의 중분류 된 교육의 목표는 아동권리협약의 교육목표와 관련된 28조, 29조를 기초로 분류된 것이다. 공교육제도의 중요한 기관으로 학교가 등장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의 목표를 통해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천할 수 있는 학교의 의미와 기능을 가져야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에 대하여 학교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은 그 무엇보다 실천적인 교육현장에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을 교육의 최우선 목표로 가짐으로써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학교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응답자의 1/3 이상이 부정적으로 응답하고 있어 학교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학교의 교육목표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최우선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데 있어 본연의 기능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가 지식기반사회에서 지식을 쌓는 것 또한 인권의 보장과 함께 중요한 기능이자 의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학교가 앞에서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와 적성에 맞는 지식과 자신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기능하고 의미를 가져야 되는 데 한국의 학교들은 이러한 의미와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는 원하는 학생에게 일반고등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늘려주고, 일반고등학교 수를 줄이는 한편, 특성화고등학교를 점차 확대해 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고등교육과정에서도 관련 전공을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폴리텍이나 전문대, 그리고 일반 4년제 대학의 고등교육과정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수되고 있는 과목들의 전공과가 설치되어야 한다. 한편,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곧 바로 특성화된 과목과 관련된 직업을 찾아 취업할 수 있는 길을 교육부가 고용노동부와 협의해서 열어주어야 한다. 한편, 학교에서 학생들의 인권보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은 더욱 심각하다.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면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거의 과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나 한국의 인권교육 실태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고무적인 사실은 대학입학을 준비하는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 경험이 많아지고 있는 응답결과를 고려해서 정부는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인권교육을 정책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의 목표와 관련하여 중분류된 다문화이해에 있어서는 먼저 조사된 결과에서

다문화이해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역시 전체의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가 소수집단에 대한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교육적 초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다문화교육과 관련된 과목을 도입하고 수업시간도 늘려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뒷전으로 밀려난 인성교육, 감성교육, 수련활동, 환경교육, 성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터넷 및 게임 중독 예방교육 등도 교과과정에서 절대로 소홀이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 지표에서 교육의 목표로 요구하고 있는 인권교육과 다문화교육, 환경교육은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 초등교 교과과정에서부터 이러한 교육들을 대폭 강화하여야 한다.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으로 중분류된 지표체계 중 먼저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채택된 각각의 지표들에 따라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 현재 한국에는 청소년들이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이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제반여건들 중 가장 주목해야할 사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여가와 놀 권리, 문화예술을 향수할 수 있는 권리가 교육제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지하고 있듯이 한국의 아동 및 청소년들은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모두 대학입학의 지상과제에 몰입하여 성장기에 매우 중요한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을 학교 안에서나 밖에서나 소홀히 할 수뿐이 없는 제도적 환경에 처해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앞에서 정책 제언을 한 것과 같이 대학교 평준화에 준하는 혁신적 제도가 먼저 도입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통해 사회에 진입하여 학벌에 따라 임금의 격차가 크지 않도록, 고용영역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 한국의 학벌사회체계가 변형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도 사회에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고 교과과정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여 독일과 같이 각 직업분야에서 마이스터(Meister) 인증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위기청소년들이나 다문화청소년과 같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방치된 청소년집단은 향후 그들이 성장해서 사회에서 각종 비행과 문제를 야기해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게 할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적 정책이 가장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적 차원에서 일찍부터 인도적이고 복지적으로 이들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현재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용인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여야 한다. 앞에서 서술한 청소년디딤센터를 통해서 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이를 위한 시설과 장기간의 치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고, 단기간 치료를 요하는 소수집단 청소년들에게는 다양한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 긍정적인 정서적, 심리적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수집단인 이주배경청소년들 중 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위하여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도 그의 기능과 역할의 대상을 전체 이주배경청소년들로 확대하여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6) 특별보호조치

『특별보호조치』는 난민아동, 소년사범의 운영, 자유가 박탈된 아동, 경제적 착취, 성적 착취의 5개 영역에 각 3개 지표로 구성, 총 15개 지표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았다. 난민아동은 넓은 의미에서 국내·외에 체류 중인 탈북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탈북난민 아동 수,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을 지표로 하였고, 소년사범의 운영 영역에서는 자유 박탈 이외의 처벌을 받아 특별한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의 비율,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을 지표로 하였다. 자유가 박탈된 아동의 경우에는 소년법원의 처분 과정이나 처분 후에 일정 시설에 수용되어 자유가 박탈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을 지표로 하였다. 경제적 착취 영역에서는 경제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청소년근로자의 임금수준,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을 지표로 하였으며, 성적 착취 영역에서는 청소년성매매 및 성적 피해 및 지원 현황 파악을 위하여 청소년성매매 검거현황 및 조치 현황,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을 지표로 구성하였다.

우리나라의 18세 미만 난민 아동·청소년은 2013년 6월 현재 난민 신청자가 207명이고, 이 중 난민지위 인정자가 52명으로, 난민신청자 중 1/4 정도가 난민지위를 인정받고 있다. 난민신청자는 2008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에는 매해 30~40명에 달하며, 난민인정자 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아동의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그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못하지만, 2012년에 통일연구원과 존스 홉킨스 보건대학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중국 동북 3성내 약 2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2013년 2월 현재 29세 미만이 24,695명이며, 2004년 이후 매년 300명 이상씩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아동은 2012년 2월에 제정된 난민법에 의해서 보다 향상된 지위와 처우를 인정받고 있지만, 난민 아동의 특성을 감안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무연고아동이 난민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와 출입국항과 구금시설에 머무는 과정에서 아동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 북한을 탈출하여 해외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탈북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강제 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고, 난민인정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와 국제사회와 연대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탈북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탈북과정에서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기 위한 정책의 개발과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인 지도방법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자 비율은 2011년에 전체범죄자의 4.4%로, 최근 5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는 대부분의 범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흉악범, 성폭력범 등 강력범은 최근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리는 소년범죄자 90% 이상을 형사사건보다는 비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사법의 운영이 처벌보다는 선도 위주로 전환하고, 범죄소년에 대해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은 2011년에 소년범죄자 89,068명 중 1.5%인 1,363명으로 최근 5년간 가장 적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자의 경우에는 전체 기소유예자 353,564명의 1.4%인 4,950명이며, 2009년 이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년사법의 운영에서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권보장적 보호이념을 가지고 있는 회복적 소년사법에 대한 확대, 사법인력의 전문화,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이루어지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비율의 확대, 국선변호인 제도의 확대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심사하고 적절한 처분을 결정하기 위해서 처분에 앞서서 비행소년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신수용인원은 6,682명으로, 1일 평균 456명에 달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소년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 수용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보호시설 수용인원 2,559명 중 7호 처분을 받아 의료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7%(69명), 8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1개월 이내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51.9%(1,329명), 9호 처분을 받아 6개월 이내에 단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5.2%(644명), 10호 처분을 받아 2년 이내에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20.2%(517명)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소년원에 단기 및 장기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1개월 미만 수용된 소년들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은 소년은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데, 2011년 현재 소년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은 114명으로 2007년 657명 이후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유가 박탈되어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한 개선 정책, 소년원의 처우를 개방하는 개방처우 시설화, 교과교육의 전문화 및 충실화, 보호시설에서의 처우 개선, 보호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11년 현재 청소년근로자들은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으며, 특히, 20~24세 남자청소년의 경우에는 전제 남자근로자 평균보다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2011년 현재 19세 이하가 126만 7천원, 20~24세가 157만 5천원으로, 각각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급여 210만 2천원의 60.3%와 74.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19세 이하가 5,942원, 20~29세가 10,070원으로, 2011년의 시간당 최저임금 4,320원보다는 높은 수준이나 30세 이상 성인 임금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에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로, 2011년(13.7%)에 비해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를 받은 경험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7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최저임금 미보장(27.2%), 임금체불 또는 약속보다 적게 받은 경험(1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사례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거나 부당 해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불결하고 위험한 작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인격모독, 구타 및 폭행, 성적 피해 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착취를 예방하고 근로청소년의 인권과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연소자 다수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근로기준법 준수실태 점검 강화,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적발·시정 실태 공개, 청소년 고용주 및 직원 대상의 노동인권 교육 강화, 청소년고용 사업장에 대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과 신고 체계 구축, 연소근자 표준계약서 제작·배포, 인권침해 간편 신고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성매매로 검거된 인원으로 2006명으로 이 중 성매매 행위자는 1,494명(74.5%), 성매매 알선자는 162명(8.1%), 성매매 대상 청소년은 350명(17.4%)로 성매매 단속 시행 여부에 따라 증감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성매매 검거자에 대한 구속률은 2005년(15.2%) 이후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까지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 경험은 전체적으로 2011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경우에 2009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3.8%로 나타나, 다른 교급에 비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성적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피해 유형은 성희롱(59.6%)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성추행(32.6%), 강제적 성관계(5.1%) 등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 피해를 당한 후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도움을 청하고 있으나, 조손가정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3.8%만이 도움을 청하고 상당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 범죄자에 대한 법률의 강화뿐만 아니라 법 적용이 엄격하게 될 필요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중장기적인 정책의 개발 시행,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숨겨져 있는 청소년 대상에 대한 발굴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

2. 주요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앞에서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 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제안된 정책제안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과제를 2-3개씩, 총 17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각 과제별로 정책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관련법 개정사항, 예산 및 조달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책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정책과제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 등 관련 부처의 검토를 받아 수정하였다.

표 IV-2-1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과제 총괄표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Ⅰ.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과제1.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기구 기능 활성화	사례조사	모델 개발	모델 보급	모델 개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무총리실
과제2.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	개발	시범적용	보급	확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Ⅱ. 시민적 권리와 자유					
과제1.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현황조사	현황조사	지원방안 마련	활성화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
과제2.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현황조사	법제도 개선	확대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과제3.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Ⅲ. 가정환경 및 대안 양육					
과제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30% 확대	10%	10%	20%	30%	보건복지부
과제2. 입양 아동·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교육실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보건복지부
과제3.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제도 실시	가정방문 서비스 활성화	피해아동 쉼터지원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고위험가정 집중적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

과제명	추진일정				주관부처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후	
Ⅳ.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과제1.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및 청소년또래상담 활성화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협의체 운영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생명존중 교육홍보	교육부, 보건복지부
과제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위클래스 사업 등 확대	문제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실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3.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부처간 사업대상 및 내용 조정	부처간 사업대상 및 내용 조정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인프라 구축 지원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Ⅴ.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과제1. 부처간 사업 조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방과후 여가 및 문화 활동 강화	부처간 사업조정	부처간 사업조정	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과제2. 청소년디딤센터, 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무지개지원 센터 확대	무지개지원 센터 확대	여성가족부
과제3. 초·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실시	교육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Ⅵ. 특별보호조치					
과제1.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해외지원 네트워크 조사	해외지원 네트워크 조사	해외 공관 조직예산 확충	지원 네트워크 구축	외교부, 통일부
과제2.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인권침해적인 처우 개선	소년보호 시설 조사	소년보호 시설 조사	소년보호 시설 확충	개선 및 점검	법무부
과제3. 성폭력피해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	피해실태 및 우수사례 조사	피해실태 및 우수사례 조사	매뉴얼 개발	매뉴얼 보급 및 개선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현황과 이를 위한 국가·사회적 노력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일이 중요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희망센터 등의 모니터링 기구가 있으나 아동정책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미흡,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와 옴부즈퍼슨의 독립성과 지속성 부족,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체계에 아동·청소년 권리 전담 단위나 전문가가 포함되지 못한 부분 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이후 공식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으로 민간단체에서 3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을 갖춘 인권 모니터링기구와는 성격과 위상이 다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인권관련 정책권고 및 진정사건 처리업무를 수행하고는 있으나 11명의 인권위원 중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71.8%였으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경우는 17.6%에 불과해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조정 기능 강화

법적으로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정기적 회의개최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의제를 다루는 전문기구로서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독립성과 지속성 보장을 위한 중장기 운영모델 개발

독립성과 권한을 갖는 모니터링기구 운영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 내 조직/

국가인권위원회 조직/별도의 독립적 기구 등 모니터링 기구의 성격과 위상, 기구의 법적 근거, 인력 및 재원 확보 등의 내용을 검토한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 임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11명 중에 아동·청소년 인권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아동·청소년 친화적 홍보 강화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의견수렴 및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모델 개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고, 아동정책실무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한다. 또한 아동정책실무위원회 전문위원을 채용한다(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1조 4항에 근거). 모니터링 기구의 위상과 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아동·청소년인권 모니터링 기구 운영모델을 개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임명 시에 아동·청소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

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등 효과적인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 제도화를 위한 작업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2015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모델 개발 : 연구·조사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및 제도화(법적 근거 마련, 예산 확보) · 인권기구 설립준비 기획 단 구성·운영	· 독립적 인권기구로서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모델 개발 내용에 따라 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행정부처 내 조직/국가인권위원회 조직/별도의 독립적 기구 등 모니터링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내용에 따라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등의 개정 및 새로운 법안 입법 여부 등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5~2016년)에는 2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3단계(2017~)에는 아동·청소년 인권모니터링 기구의 성격과 위상에 따라 조직 설립·운영 소요예산 편차가 매우 클 것이므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소요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인권기구의 새로운 모델 개발 관련 예산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와 별도로 현재 운영 중인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 운영예산인 1억원은 전국의 아동·청소년 인권 모니터링 기구로 기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는 독립적 인권기구 설립과 별개로 민간차원의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하는 의미있는 기구이므로 운영 예산을 매년 1억원 이상씩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모델 연구·조사비	·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100
	워크숍, 정책협의회,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 워크숍, 세미나 등 10,000,000원 × 5회	50
2단계 (2015~2016년)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 간담회, 공청회 등 10,000,000원 × 10회	100
	인권기구 설립준비 기획단 운영	· 운영비 100,000,000원 × 1년	100
3단계 (2017년~)	아동·청소년인권모니터링 기구 운영	· 모니터링 기구 성격에 따라 추후 예산반영	
총계			35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정책화한 것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라 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정책, 행정행위 등이 아동·청소년의 이익과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하여 이들의 인권신장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다양한 사회정책 분야에서는 해당 정책의 주류화 및 활성화를 위한 과학적 평가체계로서 ‘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성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아동·청소년 정책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고 범부처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평가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주류화와 아동권리협약의 주요원칙인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의 원칙 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아동·청소년정책, 법·제도, 예산자원, 다양한 행정적 의사결정이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 최선의 이익이 모든 영역의 정부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아동·청소년 인지적 거버넌스체계(child and youth-sensitive governance mechanism)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기초연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 도구로 제안한 것으로, 정부가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모든 정책과 활동에서 협약의 주요원칙인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 달성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도입을 위해서는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관련 국내외 사례분석과 시사점 도출,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지표체계 개발, 이의 시행을 위한 운영모델, 추진체계, 추진방법, 주요 절차와 주체별 역할 등 세부 운영방안 모색 등을 포함하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

②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시범 운영 및 정책관계자 교육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마련된 운영모델에 근거하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3지역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중앙부처의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함으로써 운영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중앙 및 지방의 아동·청소년 정책관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③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관련 법적 근거 및 추진체계 마련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제도화 및 확산과정으로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센터 설립 및 아동·청소년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을 통해 평가·자문 및 피드백 등을 실시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센터 운영방안은 기존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별도 설립 또는 기존 센터의 기능 확대 방안 중 광범위한 검토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년)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조사·연구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 기초 조사·연구를 수행한다. 201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 예정인 ‘아동·청소년영향평가제도 운영 방안 연구’가 이를 대신할 예정이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시범운영 및 교육 실시

자치단체 단위에서 시범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선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준비 중인 서울성북구, 서울강북구, 광주광역시 등과 협의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정책관계자 대상으로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제도화 및 확산

아동·청소년 영향분석 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아동·청소년 영향분석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확산시켜 나간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년)	제 2단계 (2015~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중앙지원단 운영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시범 운영 · 아동·청소년 정책관계자 교육	·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센터 설립 ·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아동·청소년 영향평가 실시 및 확산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분야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이 별도 제정하거나 기존의 아동·청소년 관련법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는 형태로 기존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최적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제도를 운영할 경우에 청소년 관련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년)에는 5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5~2016년)에는 5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17개 시·도의 영향평가제도 운영비를 포함하여 1,0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와 2단계 예산은 전액 국고로 운영하고, 3단계의 평가센터 운영은 국고로, 17개 시·도의 영향평가제도 운영비는 지방비로 운영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조사비 50,000,000원 × 1종	50
2단계 (2015~2016년)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중앙지원단 운영	· 중앙지원단운영 100,000,000원 × 1기관	100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시범 운영	· 시범운영비 100,000,000원 × 3지역	300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정책관계자 교육	· 관계자교육 20,000,000원 × 5회	100
3단계 (2017년)	아동·청소년 영향분석평가센터 설립·운영	· 센터운영비 200,000,000원 × 1기관	200
	자치단체별 아동·청소년영향평가 실시 및 확산	· 영향평가 50,000,000원 × 17개 시·도	850
총계			1,60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과 많은 학생들이 학업부담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학교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안에 의견을 표명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만들어 나가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9.3%(일반고는 87.2%)의 학생들이 학업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학업부담(37.3%)이었다.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그 가장 큰 이유는 학교수업이 싫어서(70.4%)로 나타났다.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생의견이 반영되는 비율은 54.6%, 그리고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자율적인 학생회 활동을 하는 경우가 14.5%로 그렇지 않은 경우(28.8%)의 절반(잘 모름 56.7%)이었으며, 학생회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경우는 18.1%(잘 모름 66.0%)로 나타났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는 아동권리협약 제12조(참여권)의 학교 내 실현을 위한 주요 과제로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자아의 발견 및 역량 강화,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변화와 실천의 경험, 또래간 및 학생 - 교사 간의 존중과 민주적 소통 과정 등이 즐거운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민주시민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으며 학생 참여를 통한 학교문화 개선으로 상호존중과 배려, 소통 중심의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한국의 아동·청소년 대다수는 학생이므로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참여권을 증진하고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듦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①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교규칙 내용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강화

현행 교육관련법은 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자치활동 보장 관련 조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학교규칙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실천하지 않아 학생 자치권이 제한받는 경우가 많다. 교육기본법 제12조는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과정에서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 운영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39) 이 부분은 정책제안에 대한 관련부처 검토 과정에서 김철홍 과장(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음.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동법 제17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규칙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4항은 학칙 제·개정 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동법 제59조의4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학생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말하고 학생들의 의견 수렴결과를 제안할 수 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법에 규정된 학생의 자치권과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는지 학교규칙 제·개정 현황과 준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우수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미흡학교 학교장 및 생활지도 담당 교사 대상 교육·연수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우수사례 발굴·홍보를 통해 학생자치활동 우수사례가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학생회 및 동아리 등 자치조직의 자율성 보장 및 자치공간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한 자치활동 혁신사례 발굴·확산 및 모든 학교에 학생자치예산 지원 연차적 확대 실시

학생자치와 참여의 실현을 위해서는 학생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보장 여부, 학교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 제공 여부, 공식적인 학생참여 통로 마련 여부, 학생들의 자치 공간 마련 여부, 자율적인 모임 운영이 가능 여부 등이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또한 학생회와 관련하여 학생회 임원 선출과정의 민주성 및 자율성과 학생회의 자율적 권한 보장(학교규칙 제·개정 발의권, 학생회 활동 공간과 예산 및 비품을 제공받을 권리, 학생회 예산안과 결산 심의·의결권,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항에 대한 학생회 의결사항을 학교당국에 전달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권리,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권, 불필요한 사전·사후 승인 절차로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이 중요하다.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의 방안으로 이러한 모니터링 지표에 따른 자치활동 우수학교를 선정·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자치활동 성공사례와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를 확산하도록 한다. 더불어 모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치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자치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자치예산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4~ 지속적 실시) : 학생자치활동 실태 파악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학생자치활동 실태 및 자치권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통해 행정통계를

생산함으로써(학생회 임원선출 자율성 보장 학교 수, 대의원회의실이나 학생자치실 확보 학교 수, 학생회의 실시 횟수, 학생대표와 학교장 간담회 횟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대표 참여 학교 수 등) 학생자치활동 개선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도록 한다. 더불어 정량적 행정통계 보완을 위한 ‘학생자치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학생, 교사, 학교장, 학부모 및 시·도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면접조사,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의 문제점과 어려움, 현장의 요구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보다 실효적인 자치활동 활성화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 모니터링 결과는 학교평가 지표영역에 포함시킴으로써 현장의 관심을 제고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교 역량 강화, 학생회 및 동아리 자치공간 및 자치예산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

자율·참여·소통 중심의 학교문화 개선을 위해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문화 개선 연구학교’ 사업내용 중 학생자치활동 분야를 강조하여 다양한 자치활동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가칭)’ 운영을 통해 학급회의, 학생회,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자치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치활동을 실천을 통해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 보급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 관련 학교장 및 담당교사, 학생대표 연수를 통해 자치문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하도록 한다. 모든 학교에서 학생자치조직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치활동을 실천함으로써 자치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자치예산 지원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학교규칙 제·개정과정에 학생 참여 등 자치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2단계 과제를 확대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지속적 실시)	제 2단계 (2015~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학생자치활동 실태 및 자치권 관련 학교규칙 제·개정 및 준수여부 모니터링	·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 ·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자치역량 교육 · 학생자치예산 지원	·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 확대 ·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자치역량 교육 확대 · 학생자치예산 지원 확대

4) 관련법 개정사항

학생자치활동과 관련 조항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다. 단위학교에서는 법에 규정된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규칙을 제·개정하도록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4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의 학생참여가 국·공립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적용되도록 개정 검토하고, 학생 관련 안전에 대한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제3항의 문구를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이 아니라 학생대표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이의 면담권을 보장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생들 대상의 형식적 의견청취로 끝나지 않도록 학교당국이 책임있는 답변을 제공할 의무를 조항에 명시하도록 한다. 더불어 학교장의 학생자치활동 지원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동시행령 제30조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5~2016년)에는 5,19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8,69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생자치예산 지원의 경우, 2단계 시기에는 초·중·고등학교 중 3,000개교에 대해 1백만원씩을 지원하고, 3단계 시기에는 5,000개교까지 지원을 확대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전체 12,000개 학교 지원이 완료되도록 한다.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사업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50%와 지방비 50%로 운영하고, ‘학생자치예산 지원’사업과 연수 예산은 일반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년~ 지속적 실시)	학생자치활동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 연구·조사비 100,000,000원 × 1종	100
	학생자치활동 실태 행정조사	(비예산)	
2단계 (2015~2016년)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	· 연구학교 운영 10,000,000원 × 100개교	1,000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학교장,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자치역량 교육	· 교사 및 학교장 연수 50,000,000원 × 17개 시·도	850
		· 학생연수 20,000,000원 × 17개 시·도	340
	학생자치예산 지원	· 자치예산 지원 1,000,000원 × 3,000개교	3,000
3단계 (2017년~)	학생자치활동 연구학교 운영 확대	· 연구학교 운영 10,000,000원 × 200개교	2,000
	학생자치활동 담당교사, 학교장, 학생회 및 동아리 대표 자치역량 교육(계속)	· 교사 및 학교장 연수 50,000,000원 × 17개 시·도	850
		· 학생연수 20,000,000원 × 17개 시·도	340
	학생자치예산 지원 확대	· 자치예산 지원 1,000,000원 × 5,500개교	5,500
		총계	13,98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중 하나인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보장은 모든 권리의 바탕으로 강조되고 있다. 협약 제12조는 아동·청소년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성인은 이를 비중있게 반영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조사결과, 51.6%만이 청소년 참여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우리사회에서 참여가 어려운 이유로는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35.7%)과 시간 부족(31.5%)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1998년부터 청소년정책 분야에 청소년참여기구 설치·운영되어 왔으나 참여기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경우는 9.3%에 불과했고, 들어본 적 없는 경우는 과반수가 넘었다(62.4%).

아동·청소년 참여권 확대를 위해 형식적 참여에서 실질적 참여로,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의 제한적 참여프로그램 제공에서 생활전반에서의 참여 증진과 우리사회 전반에서 아동·청소년의 위상 확대(독자적 판단능력을 갖춘 참여의 주체)로 발전되도록 한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참여기구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 및 권한 강화

청소년특별회의,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운영위원회, 대한민리아동총회 등 참여프로그램은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점이 있으나 참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참여통로를 찾지 못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참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장이 되고 있다. 이들 참여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및 권한과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며, 아동·청소년의 제안 내용에 대한 정책 피드백을 활성화 한다.

또한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지원대상 수를 확대하여 생활근거지인 지역사회 중심의 참여경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이 생활 속에서 인식한 문제 개선을 위해 직접 기획·시행해 보는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단위학교 학생회, 시·도 및 전국단위 학생회 조직 구성을 활성화하여 이들과 청소년

참여기구와의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비학생 아동·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단위에서 다양한 자율·자치 동아리를 활성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모니터링 가정, 학교, 문화, 근로영역, 사법 및 행정절차 등 모든 장면에서 아동·청소년 의견청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관련 제도 및 법령을 검토하고, 개선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 ‘아동의 의견표명권’에서 제시된 참여권 보장 내용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③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
청소년 예산의 일부를 청소년이 제안한 의제에 배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청소년정책에 대한 청소년참여를 실현하고 정책수요자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 지속적 확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 프로그램(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등) 운영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청소년 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실시하여 청소년 참여예산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아동·청소년 참여권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기초연구 실시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모든 생활영역 및 환경(가족, 보건의료, 대안양육, 학교, 놀이 및 문화활동, 직장, 폭력상황 등)에서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기초연구를 통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2호에 따른 체크리스트 개발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1단계에 이어 참여기구 및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참여예산제를 시범운영하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청소년 참여예산제 확대 실시, 법·제도 개선 지속 실시

지방자치단체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확산하고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작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참여기구 및 프로그램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지속적 실시)	제 2단계 (2015~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대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대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모니터링 ·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및 참여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대 · 아동·청소년 참여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 확산

4) 관련법 개정사항

아동·청소년 참여권 관련 법·제도 개선 사항 기초연구 결과에 따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사법, 청소년정책 등의 분야의 법 제·개정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해 지방재정법 및 지역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검토하여 별도 조례 필요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년)에는 2,094백만원이 소요되고, 2단계(2015~2016년)에는 2,37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에는 2,695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청소년육성기금과 지방비에서 50%씩 지원하도록 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년~ 지속적 실시)	참여기구 예산 확대	· 시·도 참여위원회 15,000,000원 × 17개	255
		· 시·군·구 참여위원회 4,000,000원 × 171개	684
		· 청소년운영위원회 3,000,000원 × 310개	930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확대	·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70팀 × 2,500,000원	175
2단계 (2015~2016년)	참여기구 예산 확대	· 연구·조사비 50,000,000원 × 1종	50
		· 시·도 참여위원회 20,000,000원 × 17개	340
		· 시·군·구 참여위원회 4,500,000원 × 180개	810
		· 청소년운영위원회 3,500,000원 × 320개	1,120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확대	10팀 × 17개 시도 × 3,000,000원	510
	아동·청소년 참여권 관련 법·제도 모니터링 기초연구	· 연구·조사비 20,000,000원 × 5개 분야	100
3단계 (2017년~)	참여기구 예산 확대	· 시·도 참여위원회 25,000,000원 × 17개	425
		· 시·군·구 참여위원회 5,000,000원 × 190개	950
		· 청소년운영위원회 4,000,000원 × 330개	1,320
	청소년참여 지역사회변화프로그램 확대	15팀 × 17개 시도 × 3,000,000원	765
		총계	7,159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청소년들의 권리를 알게 하고, 권리 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방법 등에 관한 정보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못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유엔아동권리 협약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청소년은 단지 13.3%로, 약 10명 중 9명의 청소년들은 인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도 34.7%만이 제공받고 있어 10명 중 6·7명은 권리침해 시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인권 관련 정보 부족은 인권침해 시 적절한 대처를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인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침해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들이 성적 피해를 당한 사례를 보면, 피해 후에 전문상담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0.3%에 불과하며, 상당수(33.2%)가 친구의 도움을 받으며,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도 36.0%로 나타난 바 있다. 현재 대다수 아동·청소년들이 전문가의 상담 및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인권 관련 정보 및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고 발달단계를 고려한 인권 홍보자료의 개발·보급

학교별(초등학생용,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인권 홍보자료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권 홍보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또한 아동들이 겪는 인권상황을 발달단계에 맞는 인권에니메이션, 인권영화, 인권음악회, 인권 UCC, 인권게임 등을 제작하여 보급한다.

② 아동·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권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인권을 주제로 한 사진전, 박람회, 연극, 축제 등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체험프로그램을 조사하여 만든 프로그램을 보급함으로써 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 또한 청소년 문화시설 등에 인권 체험관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각급 학교에서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아동·청소년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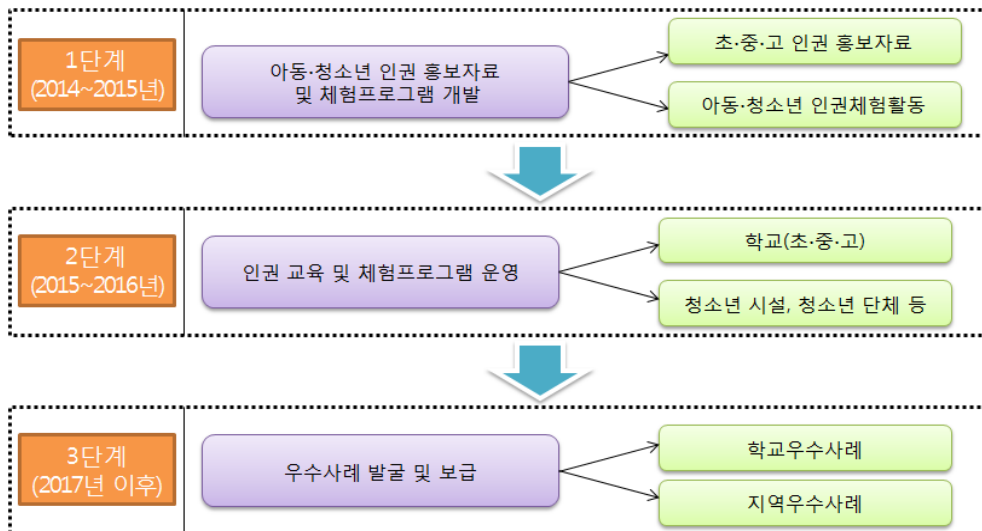
아동·청소년들의 발달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인권 홍보자료와 국내·외 사례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권 홍보자료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전국 학교 및 청소년시설에 보급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한다. 이를 위해 학교 인권 담당 교사 및 청소년시설의 담당자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이를 포상하고, 전국 시·도에 보급하여 확산한다.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인권 홍보자료 개발·보급비, 인권 체험 프로그램 개발·보급비, 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권담당자 연수비가 2,110백만원, 2단계(2015~2016년)에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인권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인권담당자 연수비가 1,060백만원, 3단계(2017년)에는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및 연수담당자 연수비가 88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그램 개발비 및 우수사례집 제작·배포비는 국고에서 100%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권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국고 50%, 지방비 50%로 조달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인권홍보자료 개발·보급비	· 개발비 30,000,000원 × 3종 · 인쇄·보급비 1,200개교 × 3종 × 3부 × 10,000원	90 1,080
	인권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비	· 개발비 50,000,000원 × 2종 · 인쇄·보급비 1,200개교 × 2종 × 3부 × 10,000원	100 720
	연수프로그램 개발비 및 담당자 연수비	· 연수프로그램 개발비 30,000,000원 × 2종 · 연수비 1,200명 × 50,000원	60 60
2단계 (2015~2016년)	인권교육프로그램 운영비	·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	500
	인권체험프로그램 운영비	· 운영비 5,000,000원 × 100개교	500
	인권 담당자 연수비	· 연수비 1,200명 × 100,000원	60
3단계 (2017년)	우수사례집 제작비	· 사례집 개발 50,000,000원 × 2종	100
	우수사례집 배포비	· 사례집 배포 1,200개교 × 2종 × 3부 × 10,000원	720
	인권담당자 연수비	· 연수비 1,200명 × 50,000원	60
		총계	4,050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최근 민간독점의 보육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 5.2%에 불과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저소득층 영유아 대상의 선별적 서비스로 진행되던 보육정책이 점차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2012년 기준 약 7조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보육서비스가 민간독점 공급체계로 가면서 공공과 민간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과 가정보육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가정보육시설은 인력의 전문성이나 경력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주요 내용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최소 30%까지 확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균이하인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와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4~2015년) :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10%까지 확대 및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이 평균 이하인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또한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보육행정체계, 보육위원회, 보육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② 제 2단계(2016~2017년) :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20%까지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표준보육서비스를 제도화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국공립 어린이집 30%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을 전체 어린이집 대비 30%까지 확대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2015년)	제 2단계 (2016년~2017)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국 · 공립 어린이집 비중 10% 까지 확대 • 평균 이하인 지역 중심으로 확충	• 국 · 공립 어린이집 비중 20% 까지 확대 • 표준보육서비스 제도화	• 국 · 공립 어린이집 비중 30% 까지 확대

4) 관련 법 개정 사항

국공립보육시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은 기초자치단체장의 결정에 의해 확충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에 따라 보육시설 확충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국공립어린이집 10% 확대 기간에 해당하는 1단계(2014~2015년)에는 2,350,000백만원이 소요되며, 20%까지 확대 기간에 해당하는 2단계(2015~2016년)에는 4,700,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0%까지 확대 기간에 해당하는 3단계(2017년)에는 4,700,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조달은 국공립보육시설 특별기금 조성 및 민관연대를 통한 민간기업의 참여, 공동주택의무보육시설 활용 등의 방법이 있다. 먼저 중앙정부 보육예산의 일부를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특별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고 전액시 1개소당 설치비용 20억원이 예상된다. 또한 민관연대를 통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민관 연대시 1개소당 설치비용 5억원 정도가 예상된다. 공동주택 의무보육시설 활용시에는 설치비용이 2억원 정도 예상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10%까지 확대	· 2,000,000,000 × 1,000개(국고전액) · 500,000,000 × 500개(민관연대) · 200,000,000 × 500개(공동주택의무보육시설)	2,000,000 250,000 100,000
2단계 (2015~2016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20%까지 확대	· 2,000,000,000 × 2,000개(국고전액) · 500,000,000 × 1,000개(민관연대) · 200,000,000 × 1,000개(공동주택의무보육시설)	4,000,000 500,000 200,000
3단계 (2017년)	국·공립 어린이집 비중 30%까지 확대	· 2,000,000,000 × 2,000개(국고전액) · 500,000,000 × 1,000개(민관연대) · 200,000,000 × 1,000개(공동주택의무보육시설)	4,000,000 500,000 200,000
		총계	11,750,000

과제 III-2 입양 아동·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를 위한 교육·홍보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국내입양 활성화가 중요한 아동복지 목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방해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편견, 입양활성화에 협조적이지 못한 제도, 비밀입양, 홍보부족 등이 있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의 책임을 개별 입양기관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계몽과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입양에 대한 사고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정책 주요 내용으로는 입양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각 학교의 학부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개입양가족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추진 절차

- ① 제 1단계(2014년~2015년) : 각 학교의 학부모,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 대상 입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실시
- 실제적이고 적절한 입양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확산을 위한 사전단계로 시범교육 실시 후 평가를 통해 콘텐츠를 수정한다.
- ② 제 2단계(2015년~2016년) : 학부모 및 공공기관·기업체 직원 대상 입양교육 실시
- 초·중·고등학교의 학부모 대상 교육시 입양관련 내용을 안내 또는 교육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체 직원 대상으로도 직원 교육시간을 할애하여 입양교육을 실시한다.
-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공개입양 가족의 성공사례 발굴하여 대국민 홍보 실시
- 공개입양 가족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책자와 언론, 캠페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년~2015년)	제 2단계 (2015년~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각급 학교별 입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시범교육 및 콘텐츠 수정	• 교과과정 내 입양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 공개입양 가족의 성공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 실시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각급 학교별로 입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을 실시하는 1단계(2014~2015년)에는 2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 없으며, 3단계(2017년)에는 5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입양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시범교육	- 입양교육 콘텐츠 개발 100,000,000 - 시범교육 실시 100,000,000	200
2단계 (2015~2016년)	교과과정 내 입양관련 내용을 포함한 교육 실시	별도의 예산 필요 없음	-
3단계 (2017년)	공개입양 가족의 성공사례 발굴 및 대국민 홍보 실시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비 500,000,000	500
		총계	700

과제 III-3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학대피해 아동 가족지원제도 실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학대피해 아동보호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바른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교육 및 인식개선을 통해 학대행위를 막는 예방책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방과 함께 조기발견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 심각하고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에 아동학대 사례를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동학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발생을 막기 위한 가해자 치료와 교육 프로그램 필요하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이 있다.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처벌 이후 다시 학대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대행위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는 13%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피해아동이 학대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학교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쉼터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을 위한 영유아 가정방문서비스의 제도화,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방문간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다.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강화하여 건강교육 및 발달검사 항목에 아동학대 의심지표 추가하고 7회의 건강검진 중 한 번도 수검하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등이 필요하다.

② 학대피해아동 가족지원 제도 실시

가족내 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 및 교육을 강제화하여 일정기간 동안의 치료와 교육 조치 미이행시 친권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필요가 있다. 가족내 학대행위자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③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쉼터 지원

학대당한 아동이 학대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학교생활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에 쉼터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년~2015년) :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서비스 활성화, 영유아건강검진항목 추가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등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정방문 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아동학대를 사전 예방하고 조기 발견한다. 영유아건강검진 항목 중 아동학대 의심지표를 추가한다. 학대아동 발견시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쉼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제 2단계(2015년~2016년)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기존의 취약계층 대상 사업의 가정방문 서비스 이외에 영유아건강검진 미이수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하고,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와 가족의 트라우마 해소를 위한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법 제정

드림스타트, 위스타트 및 영유아검진대상 아동의 가정방문을 통해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으로 판별된 경우에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를 실시한다. 필요시 학대행위자와 아동을 강제적으로 분리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강제 치료 및 교육 관련 법을 제정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2015년)	제 2단계 (2015~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서비스 활성화, 영유아건강검진항목 추가	취약계층을 대상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법 제정

4) 관련 법 개정 사항

아동학대 사건처리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53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5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5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취약계층의 가정방문 서비스 활성화, 영유아건강검진항목 추가 아동학대 센터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아동학대 관련 지표 추가 개발 30,000,000 · 센터설립 및 운영비 300,000,000 × 5개소	30 1,500
2단계 (2015~2016년)	취약계층을 대상 가정방문 서비스 확대, 학대행위자 및 가족 대상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학대행위자 및 가족대상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 5,000,000 × 100회	500
3단계 (2017년)	고위험 가정에 대한 집중적 가정방문 서비스 실시, 아동학대 사건처리 관련 법 제정	· 학대행위자 분리 관련 법 제정을 위한 연구 50,000,000	50
		총계	2,080

과제 IV-1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협의체 운영 및 청소년 또래상담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15-24세 아동·청소년 사망원인 중 고의적 자해(자살)이 가장 높고, 아동·청소년의 자살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살생각을 하고 있는 청소년의 비율도 36.9%에 이르고 있다. 자살생각이 실제 자살계획과 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정책 마련 필요하다. 특히 청소년의 고민거리 대화상대는 친구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또래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지역협의체 운영

지역사회 내 청소년 자살관련 위기사례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기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의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협의체에서는 자살 위기 청소년의 조기발견, 지원, 위기사례관리,

관련 실무자 교육 등을 담당한다.

②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의 활성화

학교폭력 및 청소년 자살 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③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각급학교에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지역 협의체 운영

지역내 청소년 자살관련 위기사례를 논의할 수 있는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 내에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함께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과 민간의 프로그램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1단계에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중심으로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또래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실시 후 제도화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각급 학교별로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교육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 보급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2015년)	제 2단계 (2016~2017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지역 협의체 운영	•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0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4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청소년 자살예방 관련 지역 협의체 운영	· 지역협의체 운영비(인건비 및 회의비 등) 100,000,000 × 10개 지역	1,000
2단계 (2015~2016년)	청소년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화	· 또래상담 프로그램 개발 연구비 100,000,000 · 또래상담 프로그램 시범운영비 200,000,000 · 또래상담 프로그램 매뉴얼 배포 및 교육비 100,000,000	400
3단계 (2017년)	생명존중교육 강화	· 각 학교별 생명존중 교육강화 매뉴얼 제작 및 보급 100,000,000	100
		총계	1,500

과제 IV-2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례관리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및 활성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성적과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스트레스를 인지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적과 학력중심의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특히, 청소년기의 우울은 조기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은 관찰과 관리가 필요하다.

2) 주요 내용

①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을 집중사례로 지정하여 추적관찰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를 실시하며, 정신건강문제 유형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한다.

②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 확대
각 학교에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를 확대하여 전문가에 의한 효과적인 상담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년~2015년)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매뉴얼 개발팀을 구성하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유형별 위기개입 매뉴얼을 개발한다.

② 제 2단계(2015년~2016년) :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 확대
위클래스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각 학교에 확대설치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과 자원연계 및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발굴을 실시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별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학교폭력, 우울 및 자살생각 등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아동·청소년을 집중사례로 지정하여 추적 관찰하면서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2년~2014년)	제 2단계 (2015년~2017년)	제 3단계 (2018년~계속)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 지원사업 설치 확대	• 정신건강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별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실시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2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5,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6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사례관리를 위한 위기개입 매뉴얼 개발	· 매뉴얼 개발 및 배포비 200,000,000	200
2단계 (2015~2016년)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 확대	· 위클래스 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치 운영비 500,000,000 × 10개소	5,000
3단계 (2017년)	정신건강문제 판별 아동·청소년을 대상의 사례관리 실시	· 사례관리 운영비 20,000,000 × 30개소	600
		총계	5,800

과제 IV-3 아동·청소년 사회보장 서비스의 부처간 중복 조정 및 인프라 구축 지원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에서 일부 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사업, 교육부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사업이 지원대상과 서비스가 중복되므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영유아 연령대에 집중하는 등의 차별화를 통해 사회보장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아동·청소년의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아동·청소년 사회보장서비스의 부처간 중복을 조정하기 위하여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적극적 연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의 드림스타트와 디딤씨앗통장, 교육부의 초등 돌봄교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WEE 사업, 여성가족부의 방과 후 아카데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센터의 연계를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원대상 및 서비스의 중복을 피함으로써 예산이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것을 방지한다. 드림스타트는 영유아 연령대에 집중하는 것으로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실시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각 부처간 사업 대상 및 내용을 조정하여 예산 중복 방지
정부차원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의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조정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저소득·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각 지역에서 서비스 대상과 내용, 예산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협의회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모색하며, 지역네트워크를 활성화 한다.

③ 제 3단계(2017년~계속) : 각 지역별 복지인프라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각 서비스의 대상 및 내용 조정 후 지역별 분포 확인하여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2015년)	제 2단계 (2015~2016년)	제 3단계 (2017년~계속)
주요내용	각 부처간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 및 내용 조정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지역별로 인프라 균형을 위한 지원

4)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5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1,6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5,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각 부처간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사업 대상 및 내용 조정	· 사업조정관련 연구비 및 회의비	50
2단계 (2015~2016년)	저소득·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회 구성	· 지역협의회 운영비(인건비 및 회의비 등) 100,000,000 × 16개 지역	1,600
3단계 (2017년)	지역별로 인프라 균형을 위한 지원	· 추가지원비 500,000 × 10개지역	5,000
		총계	6,650

과제 V-1 부처간 사업 조정 및 관계자 협의를 통한 방과 후 여가 및 문화활동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학교 활동시간이 부족하다. 2013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에서 9,504명의 응답자에게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을 물었을 때에 1시간 미만의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9.7%, 1~2시간 여가활동을 하는 응답자가 30.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에 비해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시간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제도는 학교의 정규수업시간 수에 포함되지 않는 보충적 교육인데 여기서 아동 및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이 정규수업시간에 충분히 하지 못한 활동들을 수행하여야함에도

학습의 연장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밖 활동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의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교과목을 학습시키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학교의 다양한 교과목의 학습을 통하여 지식을 전수하고,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은 이들이 학교 밖에 나왔을 때에 이들의 가정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의 영역에서 돌보는 과업으로 정책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의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는 이 사업의 목적에 ‘학습능력의 배양을 넣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를 통해 교육정책에서 다루어야 할 대상을 청소년정책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업무의 분장으로 이를 바로잡아 정부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문성에 따라 각 부처의 고유 업무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 및 청소년의 방과후학교 활동시간의 확대

2012년 초·중·고등학생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에 참여한 비율은 57.6%이며, 초등학생의 참여율은 52.6%, 중학생은 49.4%, 고등학생은 77.1%인데,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높은 것은 대부분의 일반 고등학교가 보충학습이나 자율학습 등을 방과후학교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 고학년으로 갈수록 청소년들의 활동시간이 부족함으로 활동시간을 대폭 확대하여 이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꾀하도록 하고 이는 이들의 인권적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② 청소년의 학교 밖 방과후아카데미를 ‘방과후활동’으로 개칭 및 활동 강화에 주력

청소년정책은 학교교육정책이 주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 치우치므로 이를 보완하여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전체 청소년의 덕성을 함양하고 신체가 건강하도록 성장시키는 것을 정책의 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에 합당하게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을 청소년기본법 제48조 2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방과 후 활동’으로 개칭하여 학습능력은 학교에서 전담하여 배양하도록 하고, 청소년정책의 사업에서는 본연의 청소년들의 여가 및 문화활동의 활성화에 주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수련활동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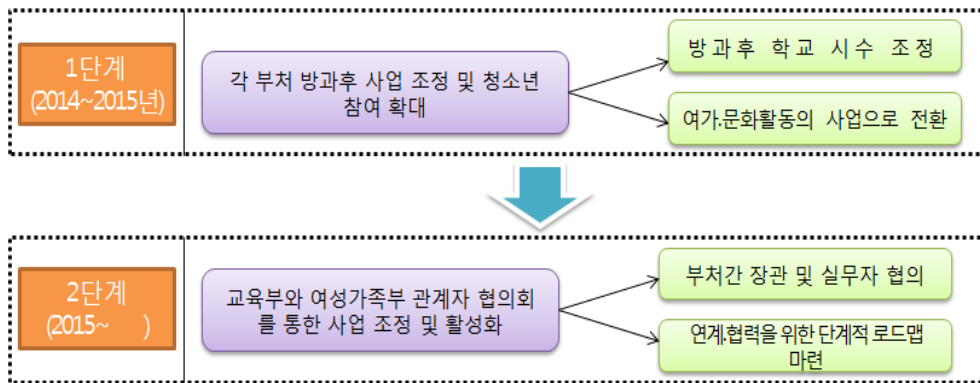
교육부와 여성가족부는 이미 지난 2011년 양부처가 MOU를 맺어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을 위하여 협력관계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 제도와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활동

제도와 연계·협력을 위하여 합의한 이후 크게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양 부처 간에 아직 신뢰의 관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고 있는 문제로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각 학교 내에서 수행되어 소극적인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학교 소재의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는 학교에서 수행하고 계획된 창의적 체험활동들을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에 유치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개선 및 재정적 지원 등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들의 여가 및 문화 활동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각 방과후학교와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재검토
교육부는 먼저 방과후학교 제도에서 지나치게 학습위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실태분석과 함께 전국의 교육청들에게 학습과 활동에 대한 방과후학교 시수를 조정하여 방과후학교 운영에 있어서 특기 및 적성과 관련된 활동과 이동 및 청소년의 자유롭고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의 참여기회를 대폭 확대하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전달한다. 여성가족부도 청소년기본법에 명시된 청소년육성의 이념에 맞추어 현행 방과후아카데미 사업에서 ‘아카데미’라는 명칭을 없애고 ‘방과후 활동’으로 개칭하여 이 사업에서 학습능력을 배양하는 사업목적을 폐기하고 다양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위주의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년~계속) : 아동 및 청소년의 여가 및 문화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의 실무자 관계협의회를 통한 지속적 협의 및 제도와 사업의 조정을 통한 업무 수행 개시
2011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가 맺은 MOU를 토대로 정기적 실무자 관계협의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양 부처 장관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개최되도록 한다. 이후 실무자 관계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먼저 아동 및 청소년들의 방과후학교와 방과후아카데미 사업 간 조정을 꾀하여 방과후학교의 활동관련 과목을 근린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위탁하도록 하고, 방과후아카데미에서 주로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청소년, 장애부모 가정 청소년,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던 학습지도 등 학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방과후학교에서 전담하도록 업무협의를 한다. 다음으로 교육부의 창의적 체험활동과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수련활동과의 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단계적 로드맵을 실무자 관계협의회에서 마련하여 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이 학교 밖 근린 지역사회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행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수행하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청소년기본법 제48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③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보다 적극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학교교육연계협의회를 설치하고, 이 연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별도의 소요예산이 필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제 V-2 청소년디딤센터 및 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가 부족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서는 청소년복지 지원 시설로서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명시하고 있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용인에 기출,

정서·행동장애 등 고위기 청소년의 치료·재활 사업을 총괄 조정할 중앙 허브기관으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건립하여 지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광역시·도에 지부 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아서 전국의 많은 위기청소년들을 위한 치료재활시설이 많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다문화 시대에 부합한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시설이 부족하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하여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다문화 시대를 맞아 이주배경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2012년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신설된 조항의 내용이라 아직 관련 시설이 건립되어 있지 않아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은 없고 다문화청소년들 중에서 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지원을 위한 무지개청소년센터가 서울에 1개소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의 대상과 기능을 확대해서 전국적으로 시설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① 고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및 재활 시설인 청소년디딤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학습·정서·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에게 적합한 치료·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로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조속히 시행에 옮겨야 한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치료재활센터로 용인에 중앙 허브기관으로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디딤센터를 전국 광역시·도 자치단체와 매칭펀드로 재정을 부담하여 조속히 설치하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한다.

②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서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중앙 허브화 및 전국적 확대 설치
지난 2012년 8월에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에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립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조속히 이를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에 다문화청소년들 중에서 주로 북한이탈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 소재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이주배경청소년들을 위한 시설로 기능과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중앙센터로 개편하고 허브역할을 부여한 후 이를 모델로 전국 광역시·도에도 무지개청소년센터를 중앙정부의 일정 재정지원을 얻어 확대해 나아가도록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년)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위한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관련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선하고 이 시설이 청소년복지시설로서 전국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인 청소년디딤센터의 전국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에서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이 청소년쉼터와 자립지원관에 관하여만 별표로 마련되어 있는 것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 청소년디딤센터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들을 확대·개선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5년~계속) : 청소년디딤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

2014년도에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인 청소년디딤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전국적 확대 설치를 위한 관련법 조항을 개정한 이후에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매칭펀드로 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개최한다. 용인 소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는 건립 당시 중앙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서울, 경기도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광역자치단체부터,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이 많은 광역시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과 협의한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는 전국적 확대 설치를 위한 관련법 개정이 완수되면 곧 시행에 들어가 이미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무지개청소년센터를 북한이탈청소년들을 포함한 전체 이주배경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중앙의 허브역할을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모델로 전국 광역시·도의 자치단체에 설치되도록 지방의 관계자들과 협의한 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광역시·도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설치하도록 한다.

추진단계	제 1단계 (2014년~2015년)	제 2단계 (2015년~계속)
주요내용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관련 조항 개정 검토	• 무지개청소년센터의 중앙 허브화 및 전국적 확대

4) 관련 법 개정 사항

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의 개정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0조(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관련 조항을 폐기하고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4호를 신설하여 “4.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이주배경이 다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차별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제반 여건을 조성해주고 교육, 활동, 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주는 시설”로 새롭게 마련하여 동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에 다른 시설들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②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별표 3의 개정

위의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면서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이 시행령 별표 3에 있으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인 청소년디딤센터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서 기능할 무지개청소년센터에 대한 설치 및 운영 기준도 상세하게 마련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5~2016년)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6~2017년)에는 15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8~2025년)에는 2,1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디딤센터) 확대 설치 비용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 확대 설치 비용은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매칭펀드 형태로 각 50%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단위: 억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디딤센터) 확대 설치	(2015~2016)	설치비용	서울 1개소 75(중앙정부)+75(광역단체)	150
	(2016~2017)	설치비용	경기 1개소 75(중앙정부)+75(광역단체)	150
	(2018~2025)	설치비용	매년 2개소씩 14개소 설치 75X14(중앙정부)+75x14(광역단체)	2,100
소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2,400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센터(무지개청소년 센터) 확대 설치	(2015~2016)	설치비용	서울 1개소 50(중앙정부)+50(광역단체)	100
	(2016~2017)	설치비용	경기 1개소 50(중앙정부)+50(광역단체)	100
	(2018~2025)	설치비용	매년 2개소씩 14개소 설치 50X14(중앙정부)+50x14(광역단체)	1,400
소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			1,600
합 계				4,000

과제 V-3 초·중등 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교육 경험이 미흡하다. 이번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서 9,298명의 초·중등 교과과정에 있는 응답 학생들에게 최근 1년 동안 얼마나 자주 인권교육을 받았는가에 관하여 물었을 때에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대답한 학생이 45.6%로 나타나 거의 과반에 가까운 상황이다. 저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의 경험이 많아 초등학교가 68.5%, 중학교는 51.5%, 일반고가 45.3%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적이 우수한 집단인 특목고는 36.6%만 인권교육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학입학 시험에 몰입하는 교육과정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이 소홀히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의 인권교육 효과성이 미흡하다. 위의 같은 조사에서 인권교육이 경험이 있는

학생 5,019명에게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가를 물었을 때에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적 답변이 70.1%가 나온 것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증명해주고 있다. 그러나 약 30% 가까이가 인권교육을 받았어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 인권교육이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은 초등학교보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많아서 인권교육을 경험한 고등학생의 41%가 교육이 별로 도움이 안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므로 인권교육이 양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 주요 내용

① 대학 입학시험의 부담이 적은 초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이수 시간의 확대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국은 학벌사회 체제가 존재하고 서열화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육과정이 대학입학 준비를 위한 교과과정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인권교육과 같은 중요한 교육이 이수 교과목으로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 입학시험의 부담이 가장 적은 교육과정인 초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 이수 시간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②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인권교육 강화 및 학교평가 지표로 인권교육 강화 지표 신설

중등교육과정에서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권교육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인권교육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권고정도로는 제대로 인권교육이 시행될 가능성이 적으므로 학교평가의 지표에 인권교육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여 교과과정에 인권교육의 시수의 확보 여부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인권교육 내용의 질적 개선

2013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매우 부족하지만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질적 개선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한다. 인권교육 자료의 개발은 연령대 별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 및 제작되도록 하며, 인권교육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교육공학적 접근과 체험교육 등의 다양한 교수방법이 강구되어서 인권교육이 다양해지고, 수준별, 단계별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양질의

인권교육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년 상반기) : 교육부 주관으로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교육부는 먼저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기 위하여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야 하므로 전국적인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2014년도에 실시하도록 한다.

② 제 2단계(2014년 하반기) :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014년도 상반기에 실시되는 초·중등교육과정에 대한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후 이를 기초하여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고, 개발된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평가지표는 전국의 초·중·고 학교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 3단계(2015년~계속) : 인권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의 지속적 개선
2014년에 실시되는 전국 초·중등교육과정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교육의 로드맵을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들을 도출하여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개발하여 지속적인 인권교육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의 조항에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①항으로 하고 ②항으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①항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교육을 교과과정에서 일정 시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넣어서 법을 개정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년 상반기)에는 2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4년 하반기)에는 6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5년~계속)에는 1,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은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교육청이 매칭펀드 형태로 각 50%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국비와 지방비로 재원을 마련한다.

(단위: 백만원)

항목	산 출 내 역			금액
초중등교육과정인권교육 실태조사	(2014 상반기)	실태조사 비용	전국의 초중등학교 대상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200
소계	3년 주기로 인권교육 실태조사 실시			200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2014 하반기)	지표개발 비용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연구용역 발주	60
소계	3년 주기로 평가지표 개선			60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 자료 개발	(2015~계속)	자료개발 비용	초중등교육과정 인권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	1,000
소계	매년 지속적 교육자료 개발			
합 계				1,260

과제 VI-1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최근 제3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 아동·청소년의 인권문제가 주요 이슈로 되고 있다. 2013년 5월 10일,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한 탈북청소년에 대한 북한으로의 강제 추방으로 인해서 이들 청소년의 안전문제가 국제사회의 이슈로 등장하였다. 라오스, 중국 등 탈북청소년의 주요 루트인 제3국의 비인도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과 북한당국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들 청소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우리 정부의 외교력과 정보력 등에 대해서도 비판과 반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탈북 아동·청소년의 안전 및 인권보호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제3국으로 탈출한 탈북청소년들이 북한으로 다시 압송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과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정치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를 판단하기보다는 탈북청소년의 인권의 관점에서 지원해야 한다.

2) 주요 내용

① 해외 체류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교부 정책인프라 강화

제3국에서 탈북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문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재외공관의 조직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김수임, 2013).

②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성·운영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제3국의 탈북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 국제인권단체, 유엔기구 등으로 구성된 탈북자 지원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김수임, 2013).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탈북 아동·청소년 체류 해외 지원 네트워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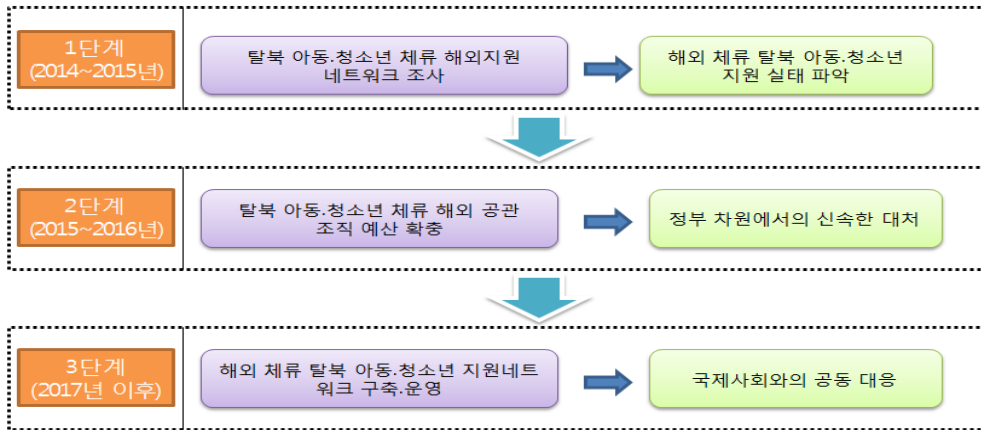
탈북 아동·청소년들이 체류하고 있는 제3국에서의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의 지원 현황을 파악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탈북 아동·청소년 체류 해외 공관 조직 및 예산 확충

우선적으로 현안 사항이 되고 있는 제3국의 탈북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해외 공관 지원 조직을 확충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구축·운영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인권단체와의 정례적인 모임을 통하여 해외 체류 탈북 아동·청소년의 인권보호 방안을 논의하고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와 탈북 아동·청소년 체류 국가의 태도의 변화를 유도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요청된다. 북한이탈 주민의 강제송환 금지와 신변보호 및 신속한 대처를 위한 조직의 구성 등을 포함하는 조항을 명문화하여 탈북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1,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1,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조사 및 조직관련 예산은 정부에서 국고로 100% 지원하고, 지원네트워크 운영 예산은 정부 및 민간 후원을 통하여 공동으로 조달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탈북 아동·청소년 체류 해외 지원 네트워크 조사	· 조사비	100,000,000원 × 1건	100
2단계 (2015~2016년)	탈북 아동·청소년 체류 해외 공관 조직 및 예산 확충	· 인건비	50,000,000원 × 2인 × 10기관	1,000
3단계 (2017년)	해외 체류 탈북 아동 · 청소년 지원네트 워크 구축·운영	· 네트워크 운영비 · 인건비	30,000,000원 × 10기관 50,000,000원 × 2인 × 10기관	300 1,000
총계				2,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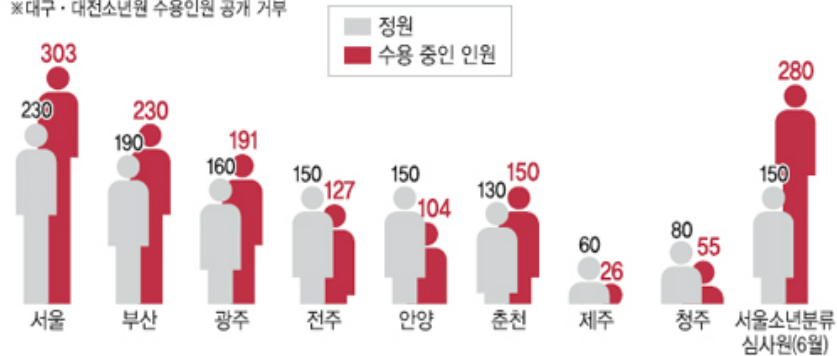
과제 VI-2 보호시설 과밀화 해소 및 인권 침해적인 처우 개선

1) 제언배경 및 필요성

보호시설의 과밀화로 인한 기본적인 인권침해 및 보호소년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보호소년이 수용되는 시설이 적정인원을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부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해 보호소년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호시설에의 과다 수용은 보호소년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보호소년 간 갈등과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부산소년원에서 발생한 집단난동사건도 수용시설의 과밀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부산일보, 2013.5.18).

전국 소년원 포화상태 현황 (단위: 명, 8일 현재)

※대구·대전소년원 수용인원 공개 거부



* 출처 : 세계일보(2013.8.9). 소년범 날로 늘는데 . . . 소년원은 '만원'

또한 보호시설에서 보호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처우가 발생하고 있다. 소년보호시설에서 보호소년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알몸검사, 두발정리, 목욕시간 제한, 운동시간 제한 등은 보호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특히, 8호 처분을 받은 소년의 경우에 1개월 수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두발정리로 인해서 사회복귀 후 사회와의 단절감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이승현, 2013).

2) 주요 내용

①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독립 및 소년원의 기능별 분리

위탁소년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수용대상과 기능이 상이한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리를 추진한다 즉, 부산 및 광주소년분류심사원의 신축을 추진함으로써 기능에 따른 위탁소년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소년의료보호시설, 8호 전담 소년원 등 소년원의 기능별 분리를 통해서 기능에 따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한다.

② 소년원 시설 및 생활관의 소규모화

보호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년원 시설의 소규모화를 추진하고, 보호소년이 생활하는 생활관의 경우에 집단생활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인실을 1인실 또는 2~3인의 소인실로 개선한다.

③ 부족인력 확보 방안 마련

보호소년의 인권침해적인 처우를 개선을 위해서 수용과밀화 해소 문제뿐만 아니라 보호소년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④ 수용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보호소년의 처우 개선

소년보호시설의 처우규칙 등의 개정을 통하여 두발, 운동, 목욕 등 보호소년에 대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소년보호시설 및 보호소년 처우규칙 현황 조사

소년보호시설의 보호소년 수용현황 조사 및 확충 규모를 추산하고, 소년보호시설에서의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규칙 현황 조사를 통하여 인권친화적인 규칙으로의 개정을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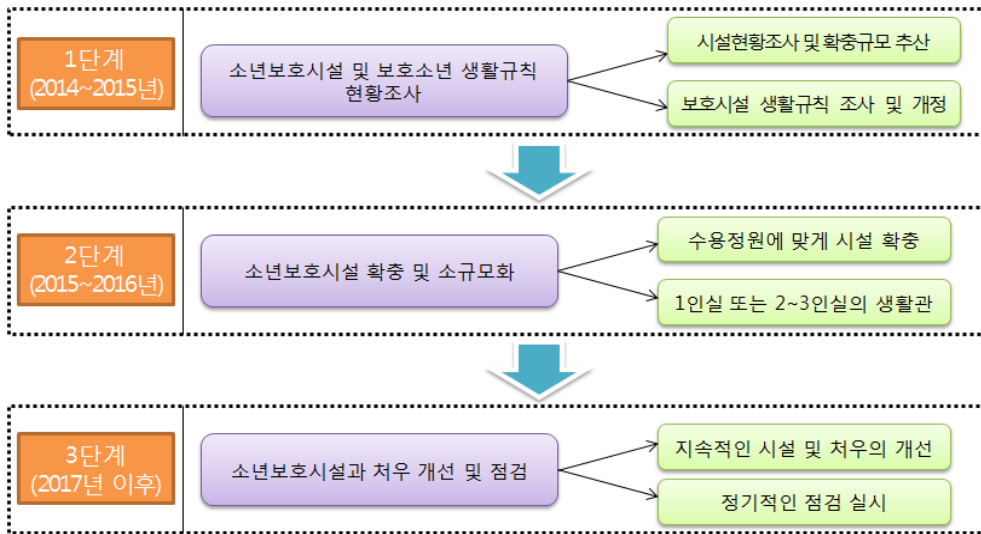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소년보호시설 개선 및 소규모화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수용정원에 맞게 보호시설을 개·보수기관과 신·증축 기관으

로 분리한 후 단계적으로 시설의 개선을 추진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소년보호시설과 처우 개선 및 점검

소년보호시설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보호소년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4) 관련 법 개정 사항

소년사법 관점에서 소년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새롭게 규정되어야 할 사안에 대하여 조사·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호소년의 이발과 목욕의 조항에 월 목욕 횟수와 시간을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이발의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수용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리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호소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운동시간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5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12,0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12,0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년보호시설 확충 및 처우 개선비는 국고에서 100% 전액 지원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소년보호시설 및 보호소년 생활규칙 현황 조사	· 조사비	50,000,000원 × 1건	50
2단계 (2015~2016년)	소년보호시설 확충 및 소규모화	· 신· 중측기관 개선비	3,000,000,000원 × 3기관	9,000
		· 개· 보수기관 개선비	1,000,000,000원 × 3기관	3,000
3단계 (2017년~)	소년보호시설과 처우 개선 및 점검	· 신· 중측기관 개선비	3,000,000,000원 × 3기관	9,000
		· 개· 보수기관 개선비	1,000,000,000원 × 3기관	3,000
		총계		24,050

과제 VI-3

성폭력피해 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보급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수사과정에서 성폭력피해청소년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성폭력을 당한 아동·청소년들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떠올리기 싫은 사건을 재차 떠올리게 됨으로써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수사원칙과 운영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추가적인 사건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수사당국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권적 차원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안정과 회복을 먼저 생각하는 수사가 더욱 요청된다.

2) 주요 내용

①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성폭력 수사현장에서 수집된 국내·외 우수사례 등을 바탕으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수사지침을 마련한다.

② 아동·청소년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실무 매뉴얼 개발보급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감안하여 개발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 수사현장에 보급한다.

3) 추진 절차

① 제 1단계(2014~2015년) : 2차 피해실태 및 피해 예방 우수사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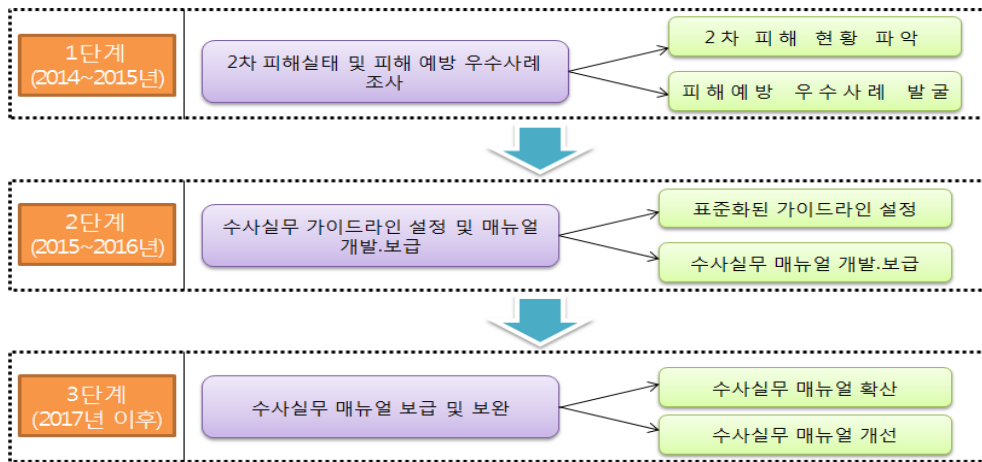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2차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2차 피해 예방 사례를 조사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② 제 2단계(2015~2016년) :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표준화된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실무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한다.

③ 제 3단계(2017년~) : 수사실무 매뉴얼 보급 및 보완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실무 매뉴얼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수사실무 매뉴얼을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보완한다.



4) 관련 법 개정사항

수사실무 가이드라인이 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아동·청소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근거조항을 마련하도록 한다.

5)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1단계(2014~2015년)에는 100백만원이 소요되고, (2015~2016년)에는 300백만원이 소요되며, 3단계(2017년)에는 30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례조사 및 매뉴얼 개발·보급비는 국고에서 100% 전액 지원한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산 출 내 역		금액
1단계 (2014~2015년)	2차 피해실태 및 피해 예방 우수사례 조사	· 조사비	100,000,000원 × 1건	100
2단계 (2015~2016년)	수사실무 가이드라인 설정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개발·보급비	300,000,000원 × 1건	300
3단계 (2017년)	수사실무 매뉴얼 보급 및 보완	· 개발·보급비	300,000,000원 × 1건	300
		총계		700

참 고 문 헌

참 고 문 헌

- 강경래 (2009). 소년사법과 회복적 사법. **피해자학 연구**, 17(1), 241-266.
- 경기학생인권의 광장. <http://shr.goe.go.kr>.
- 경찰청 (2012). **2012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 고용노동부 (2011). **2011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과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2012.6.).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분석**. 과천: 고용노동부.
- 관계부처합동 (2013.6.21.).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news/news03_01.jsp?func=view&currentPage=0&key_type=&key=&search_start_date=&search_end_date=&class_id=0&idx=691944에서 2013년 9월 25일 인출.
- 광주광역시교육청 (2011).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ordinInfoP.do?ordinSeq=527262&gubun=KLAW>에서 2013년 5월 18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0.1.7.). 장애학생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추진.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428385>에서 2013년 9월 22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1.2.). **2011년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추진계획**.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1.4.8.).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관리 강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737679>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 방과후학교 통계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과학기술부 (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hub4u.or.kr>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2012.8.31.).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및 급식환경 개선대책.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2593>에서 2013년 9월 22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본부 (2012). 제 8차(2012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통계. 충청북도: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stat.mw.go.kr/front/statData/publicationView.jsp?menuId=47&bbsSeq=13&nttSeq=20652&searchKey=&searchWord=&nPage=1>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간추린 교육통계.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 (2013a). 201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 · 고등학교(2013. 6.1 기준).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3b). 201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1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c). 2013년도 학생 건강증진 기본방향(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3.4.23.). 친구사이 갈등은 우리 스스로 척척.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89513>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구정우 · 공석기 · 박병진 (2011).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 국가인권위원회 (2006). 유엔 인권조약 감시기구의 일반논평 및 일반권고.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2006.2.20.).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결정문(안).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447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08.9.25.). 07진인4150 학생에 대한 집회 해산 등에 의한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1193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1.11.17). 차별금지기본법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3028에서 2013년 10월 11일 인출.
- 국가인권위원회 (2013.2.15.). 선거권연령관련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 웹사이트 http://www.humanrights.go.kr/03_sub/body02_2_v.jsp?m_link_url=03_sub/body02_2_v.jsp&m_id1=27&m_id2=378&m_id3=390&m_id4=561&id=3045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권대중 · 박옥진 (2012).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위한 위생관리 및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한국사회안전학회지**, 8(2), 119-144.
- 권은선 · 구인회 (2010). 빈곤이 아동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62(4), 129-148.
- 기획재정부 (2013). **2013 나라살림 예산**. 서울: 기획재정부.
- 김경민 · 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5, 93-120.
- 김경준 · 김희진 · 성윤숙 (2012). **청소년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김미숙 (2011).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보건 · 복지 Issue & Focus**, 106, 1-8.
- 김수임 (2013). 탈북청소년 강제송환 사건과 탈북자 보호방안. **정세와 정책**, 7, 8-11.
- 김승권 · 김인숙 · 박동은 · 이배근 · 이용교 · 이재연 외 공역 (2009). **아동권리협약 이행 핸드북**.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김영지 (2012). 아동 · 청소년 친화도시 : 유니세프 CFC와 유네스코 GUIC 사례를 중심으로. **세계인권선언 64주년 기념 인권교육 토론회**.
- 김영지 · 김희진 · 김진숙 · 김진호 · 안재희 · 이경자 (2008). **국제기준대비 한국청소년 인권수준연구 Ⅲ : 청소년인권실태의 국제비교** (연구보고 08-R09).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유경 · 변미희 · 임성은 (2010). **국내입양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0-30-11).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경 (2007). 21세기 소년사법 개혁과 회복적 사법의 가치. **형사정책연구**, 18(3), 1159-1188.
- 김철홍 (2013). 인권교육의 국내 · 외 동향과 발전과제. **2013 아동 · 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 자료집, 199-232.
- 김태홍·윤덕경·김영택·주재선·배호중·김기곤 (2012). **국가 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김현미·이호택·이혜진·신정희·이연주 (2013).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연구보고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
- 나달숙 (2008). 양심적 병역거부의 국제적 논의와 현황. **토지공법연구**, 41, 453~479.
- 노동부·교육인적자원부·청소년위원회·경찰청 (2005.6.20).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과천: 노동부.
- 노은이 (2013). **아동·청소년 비만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42). 서울: 서울연구원.
- 노충래·정익중·전종설 (2012). **아동학대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통한 아동학대 발생방지 방안 마련**. 서울: 법무부.
- 뉴시스 (2013.5.10.). 광주세계인권도시포럼 15일 개막...112개 도시 498명 참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ticle&ar_id=NISX20130510_0012072856에서 2013년 5월 10일 인출.
- 대검찰청 (각년도). 범죄분석. 대검찰청 웹사이트 <http://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대법원 (2004.7.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 위반.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62090&q=%EB%B3%91%EC%97%AD%EB%B2%95%20%EC%9C%84%EB%B0%98&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s:6:0,d:1:1,p:2:0&onlycount=&sp=&d1=&d2=&d3=&d4=&d5=&pg=29&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0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종립 사립고교 종교교육 사건. 종합법률정보 웹사이트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059119&q=%EC%A2%85%EA%B5%90%EA%B5%90%EC%9C%A1&nq=&>

- w=total&section=&subw=&subsection=&subId=2&csq=&groups=&category=&outmax=1&msoort=&onlycount=&sp=&d1=&d2=&d3=&d4=&d5=&pg=0&p1=&p2=&p3=&p4=&p5=&p6=&p7=&p8=0&p9=&p10=&p11=&p12=&sysCd=&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tabId=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대한민국정부 (200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보고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pp. 14-202).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대한민국정부(2013). 제2차 UPR 권고사항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견.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03&strWrtNo=4543&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600000&strOrgGbnCd=100000 에서 2013년 9월 12일 인출.
- 대한출판문화협회 (2011, 2012). 출판통계. 대한출판문화협회 웹사이트 <http://www.kpa21.or.kr>에서 2013년 9월 25일 인출.
- 류방란·최운선·신희경·이규재 (2007).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실태 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류연규·김영미·정익중 (2011). 여성고용 증진을 위한 여성·아동·가족복지정책.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편.), **고용친화적 복지전략 연구** (연구보고서 2011-06) (pp.99-187).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매일노동뉴스 (2012.10.22.). 법정선거연령 18세로 낮아질까.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351>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모상현·김영지·김영인·이민희·황옥경 (2010).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Ⅴ: 발달권·참여권 기본보고서** (연구보고 10-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모상현·김희진 (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 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연구보고 09-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문화체육관광부 (2011, 2012). **국민독서실태 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문희정 (2012). 다문화관점에서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국가 교육정책 분석: 교육과학기술부

- 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3(2), 145~166.
- 미디어오늘 (2013.4.14.). 찬반 논란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 3년새 20배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39>에서 2013년 4월 14일 인출.
- 민현주의원실 (2013.3.6.). 입양, 이제는 아동의 인권보호와 어른들의 슬픔과 사랑이 함께 고려되어야(2013. 3. 6일자 보건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 보도자료). <http://blog.naver.com/newrules77?Redirect=Log&logNo=50165884448>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박경선 · 배을규 (2012). 보건교사의 역량모형 개발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5(1), 1-13.
- 박래균 (2013). 우리나라 인권교육의 현실과 장애인권 담론을 말하다. **인천장애우권익문제 연구소 인권센터 자료집: 제7기 인권상담전문가 아카데미**, 1-13.
- 박승희 (2003). **한국장애 학생 통합교육: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의 관계 재정립**. 서울: 교육과학사.
- 박종보 (2007).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신앙의 자유. **법학논총**, 24(3), 49~67.
- 법무부. 난민법 (시행 2013.7.1.).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법무부. 보호소년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법무부 (2013.7.18.). 아동 · 청소년 난민 현황.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요청자료.
-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 ·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웹사이트 https://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97&strWrtNo=110&strAnsNo=A&strRtnURL=MOJ_40402000&strOrgGbnCd=104000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법무부 훈령 제731호.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34&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00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법무부 훈령 제733호. 소년보호선도지침. 법무부 웹사이트 http://www.moj.go.kr/HP/COM/bbs_03/ShowData.do?strNbodCd=noti0039&strWrtNo=751&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40202000&strOrgGbnCd=1000

- 00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병무청 (2012). 최근 10년간 입영 및 집총거부자 발생현황(2012 국정감사 요구자료(2012. 7.31. 현재)). http://www.mma.go.kr/kor/s_info/assembly/assembly01/assembly0101/126_4051_1295.html에서 2013년 7월 29일 인출.
- 보건뉴스 (2013.6.4.). 유니베라, 아동친화경영 우수기업 뽑혀. <http://www.bokuennews.com/news/article.html?no=73489>에서 2013년 6월 4일 인출.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 2013.6.19.).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C%95%84%EB%8F%99%EB%B3%B5%EC%A7%80%EB%B2%95&x=0&y=0#liBgcolor0>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08.12.23.). 자살예방종합대책 발표: 2013년까지 자살률을 10만명당 20명 미만으로.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328790>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a). **2011 보건복지백서**.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bbsSeq=1&nttSeq=19217&nttClsCd=02&searchKey=&searchWord=&nPage=1>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b).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stat.mw.go.kr/front/statData/mohwAnnalsWpView.jsp?menuId=14&nttSeq=20398&bbsSeq=1&nPage=1&searchKey=&searchWord=>에서 2012년 8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c). **2012년 보육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1601&page=1&CONT_SEQ=283136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3.3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19739>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8.9.). ‘꿈, 행복을 향한 도전’ 대한민국아동총회 개최.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CONT_SEQ=275279&

- MENU_ID=0403&PAR_MENU_ID=04에서 2013년 9월 6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2.9.12.). 청소년 자살, 주요 원인은 스트레스 등 정신장애. 민·관·언론이 함께해야 해결 가능.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48790>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서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http://www.mw.go.kr/front_new/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0503&CONT_SEQ=287349&page=1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3). **2012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웹사이트 http://korea1391.org/new_index/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3). **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통계**. 서울: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웹사이트 <http://knhanes.cdc.go.kr/knhanes/index.do>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 (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2012). **2012년도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사업결과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 (2012). **제9회 대한민국아동총회 결과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부산시교육청 (2012). **2012년 부산지역 초중고 학생 흡연 및 음주 실태조사**. 부산: 부산시교육청.
- 부산일보 (2013.5.8). [사설] 소년원 11평에 17명 넣고 교화 제대로 되겠나. 부산일보 웹사이트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508000161>에서 2013년 10월 11일 인출.
- 서울맹학교. 이료재활과정. <http://www.bl.sc.kr/sub/bl/youngsan/sub01/index.do>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서울신문 (2013.6.18.). “성범죄자에 관용 없다” 처벌 대폭강화. 서울신문 웹사이트 <http://www.seoul.co.kr/news/seoulPrint.php?id=20130618006014>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서울학생인권조례. <http://www.st-rights.or.kr>.

- 세계일보 (2013.8.9). 소년범 날로 느는데... 소년원은 '만원'. 세계일보 웹사이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8/08/20130808004286.html?Ourl=naver>에서 2013년 10월 11일 인출.
- 손병덕 (2012). 아동의 권리침해 현황: 성폭력과 학대로부터 아동보호. **한국범죄학**, 6(2), 157-184.
- 시사코리아저널 (2012.12.10.). 광주시, 세계적인 '민주·인권도시' 위상 정립. 시사코리아저널 웹사이트 <http://www.korea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9>에서 2012년 12월 10일 인출.
- 신지원·송영훈·박가영·신예진 (2012). **한국 난민정책의 방향성과 정책의제 연구**. 경기: IOM 이민정책연구원.
- 아시아경제 (2012.4.30.). 성북구, 전국 최초 어린이 친화도시 비전 선포. 아시아경제 웹사이트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043010574878496>에서 2012년 4월 30일 인출.
- 안선영 (2011).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NYPI Youth Report 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진상·김희정 (2013). 아동·청소년의 건강불평등 결정요인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4(2), 205-231.
-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 (1997).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서울: 내일을 여는 책.
- 여성가족부 (2011a).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자료**.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b). **홀로 남아 보호가 필요한 아동(나홀로 아동) 안전현황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1.4.25.). 성폭력 피해아동 진술때 전문가 도움 지원.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policy/societyView.do?newsId=148710996>에서 2013년 10월 4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2a). **2011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b). **2012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c).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d). **청소년유해환경 접촉 종합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2e). **청소년이 만드는 행복한 세상! 꿈을 찾아가는 청소년**.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a). 정보호정책가이드. 여성가족부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korea/view/policyGuide/policyGuide07_05_01.jsp에서 2013년 8월 23일 인출.
- 여성가족부 (2013b).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c).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 지방자치단체**.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13.6.21.). 성폭력 방지 종합 대책안.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4191>에서 2013년 9월 22일 인출.
-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2). **2012년 청소년 희망센터 사업결과 보고**. 서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연합뉴스 (2013.10.25). 버려지는 아기의 임시보호 시설 베이비박스의 명암. 연합뉴스 웹사이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10/25/02000000000A_KR20131025167600039.HTML?input=1179m에서 2013년 10월 25일 인출.
- 오정수 · 이해원 · 정익중 (2006). **세계의 아동복지서비스**. 서울: 나눔의 집.
- 오정수 · 정익중 (2013). **아동복지론(제2판)**. 서울: 학지사.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44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권고사항(58차 회기- 2011년 9월 19일~10월 7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및 권고사항 자료집** (정책자료 2011-04) (pp. 465-489). 서울: 보건복지부 ·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2006).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선택의정서**. 서울: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 이경상 · 김기현 · 김가람 (2011).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방향과 과제**. 서울: 여성가족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심 · 이순례 · 김지연 (2013). 청소년 흡연관련 정책현황 및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22, 285-317.
- 이기현 (2012).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통일정책연구**, 21(2), 119~142.
- 이명숙 (2009). 비행청소년 교정보호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시스템 비교: 한국, 이태리,

- 벨기에 소년보호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0(4), 239~278.
- 이미화 · 서문희 · 이정원 · 이정림 · 도남희 · 권미경 외 (2012).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조사 보고**. 서울: 보건복지부 · 육아정책연구소.
- 이민희 (2009). **청소년기관 위탁 대안학교 청소년의 역량개발 정책방안 연구** (연구보고 09-R16-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봉주 (2010). 드림스타트 사업의 현황과 과제. **복지동향**, 43, 8-10.
- 이봉주 · 광금주 · 구인희 · 김민화 · 김선숙 · 김지현 외 (2009).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이승현 (2013). 특별보호조치에 있어서 인권지표의 적정성. **아동 · 청소년 인권정책 개발 워크숍 자료집**, 359-361.
- 이영선 · 김환희 (2013). 발달장애청소년의 전환성과 탐색. **장애와 고용**, 23(3), 83-103.
- 이완영 (2008).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근로 보호 종합대책 마련. **나라경제**, 72-75.
- 이유진 (2011). **소년보호시설 인권상황 관련 의식조사**. 서울: 법무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유진 · 강지명 · 윤옥경 · 조윤오 (2012).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연구보고 12-R13).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종원 · 장근영 · 김형주 (2007). **국제기준 대비 청소년인권 실태조사 연구 II: 청소년 인권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보고 07-R05).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향규 (2011). **탈북청소년의 교육 중단연구(II)** (연구보고 RR 2011-30).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혜영 · 강대중 · 하태욱 (2009). **대안학교 운영실태 분석 연구** (연구보고 2009-0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익산시 (2010). 익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법제처 웹사이트 <http://www.law.go.kr/ordinInfoPWah.do?ordinSeq=4681130000128&gubun=ELIS>에서 2013년 10월 25일 인출.
- 인권운동사랑방 (연도미상). **유엔어린이 · 청소년권리조약(Convention on the rights on the child)에 대한 이해**. 미간행자료.
- 임희진 · 김현신 (201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 (연구보고 11-R1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임희진 · 김현신 (201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 (연구보고 12-R11). 서울: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복희 (1997). 국제법상 난민보호와 그 문제해결. **국제법상학회논총**, 42(2), 175-196.
- 정익중 (2006). 새로운 아동복지서비스의 수요와 전문인력 개발의 과제. **사회과학연구**, 12, 95-115.
- 정익중 (2009a). 가정위탁 내 친가정 복귀의 현황과 과제. **제3회 가정위탁정책세미나 자료집: 가정위탁보호제도의 과제와 발전방안**, 49-75.
- 정익중 (2009b).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 정익중 (2011). 아동방임의 재조명: 방임의 사회적 방임을 넘어서. **동광**, 107, 1-33.
- 정익중 · 김미숙 · 김철민 · 조은경 · 김승형 · 이화미 (2011). **대국민 입양홍보 중장기 전략 연구**.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입양정보원.
- 정익중 · 박현선 · 오승환 · 임정기 (2009). **아동청소년 방과후 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지역 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서울: 공동체.
- 정익중 · 백혜정 · 박현선 · 천창암 · 박현동 (2009). **청소년 쉼터 운영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연구보고 09-R2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익중 · 이경림 (2008). **야간요보호 아동 통합 지원사업 성과분석보고서**.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정익중 · 이경림 · 이정은 (2010).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소진이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1, 205-234.
- 정익중 · 이정은 · 이상균 (2011). 지역아동센터 야간보호교사의 소진과 이직이 아동의 학교 적응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7, 137-163.
- 정해린 · 안은미 · 최혜림 · 정익중 (2012). TV 드라마에 나타난 입양의 이미지. **한국아동복지학**, 39, 69-92.
- 정희철 (2008). 개정 소년법의 소년사법의 효율성. **고려법학**, 51(0), 327-346.
- 조정현 · 김수암 · 손기웅 · 이규창 · 이금순 · 임순희 · 한동호 (2013).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1). **2011년 가정위탁지원센터 평가결과 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012). **2011년 가정위탁보호 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2012). **2011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보고서**. 서울: 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 질병관리본부 (2012.11.2.). 우울한 청소년이 흡연, 음주 등의 건강행태 더 나빠.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5859996>에서 2013년 9월 23일 인출.
- 최병각 (2007). **아동권리협약과 소년사법**.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최은진 · 김미숙 · 이명수 · 윤명주 · 정지원 (201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인프라 현황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2-R15-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최창욱 · 박영균 · 김진호 · 임성택 · 전성민 (2006). **국제기준 대비 한국 청소년의 인권수준 실태연구 : 청소년인권지표 개발** (연구보고 06-R0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통계청 (2010). **장래 인구 추계**. 서울: 통계청.
- 통계청 (2012). 201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wnsearch/search.jsp>에서 2013년 10월 9일 인출.
- 통계청 (2013). **사교육비 조사**. 서울: 통계청.
- 통계청 (각년도). 사망원인통계.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parentId=D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통계청 (각년도). 생명표.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2&pubcode=LL&type=F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통계청 (각년도). 인구동태출생편. 국가통계포털 웹사이트 http://kosis.kr/ups/ups_01List01.jsp?grp_no=1002&pubcode=CC&type=F에서 2013년 7월 14일 인출.
- 통계청 · 여성가족부 (2013.5.2.). 2013 청소년 통계. 통계청 웹사이트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287091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영아사망추이.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769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 현황.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421&bbs=INDX_001&clas_div=A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2505&bbs=INDX_001&clas_div=A에서 2013년 8월 1일 인출.
- 통계청 e-나라지표. 청소년인구 및 구성비.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97에서 2013년 9월 13일 인출.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로코리아 웹사이트 <http://www.lawkorea.com>에서 2013년 7월 30일 인출.
- 통일부 (2013.7.30.).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
- 한겨레 (2013.5.30.) 아동친화경영 모범기업 9곳 뽑았습니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89762.html에서 2013년 5월 30일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2.9.25.). 2013년「진로진학상담교사」4,550명으로 확대. 한국교육개발원 웹사이트 https://www.kedi.re.kr/khome/main/research/selectInternalForm.do?currentPage=1&editor_use_yn=Y&selectTp=0&article_sq_no=20311&board_sq_no=8에서 2013년 09월 20일 인출.
- 한국일보 (2013.6.21.). 유엔 전세계 탈북 난민 1110명. 한국일보 웹페이지 <http://news.hankooki.com/service/pront/Print.php?po=news.hankooki.com/1page/politics/201306/h2013062121004021000.htm>에서 2013년 7월 29일 인출.
- 한미현 (2006). **아동보호서비스의 실제: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 서울: 집문당.
- 한인영 · 김진숙 · 유서구 (2007). 아동기 성학대 피해의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회 국제학술발표대회지**, 2, 541-456.
- 헌법재판소 (2011.8.30.).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2008헌가22, 2009헌가7·24, 2010헌가16·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헌법재판정보 웹사이트 http://search.court.go.kr/ths/pr/ths_pr0101_P1.do에서 2013년 10월 1일 인출.
- 형혁규 · 김성봉 (2013).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 현황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693, 1-4.

황성현 (2012). 초·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지위비행에 관한 상호작용론적 연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청소년학연구*, 19(10), 23-43.

Andrews, A. B., & Kaufman, N. H. (1999). *Implementing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 standard of living adequate for development*. Westport, CT: Praeger.

Ben-Arieh, A. (2008a). The child indicators movement: Past, present, and future. *Child Indicators Research*, 1, 3-16.

Ben-Arieh, A. (2008b).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ren's well-being: Towards a more policy-oriented perspective. *European Journal of Education*, 43(1), 37-50.

Borges, G., Behjet, C., Medina-Mora, M.E., Orozco, R., & Nocl, M. K. (2008). Suicide ideation, plan, and attempt in Mexican adolescent mental health survey. *Journal of the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7(1), 41-52.

Brann, P., Walter, G., & Coombs, T. (2011). Benchmarking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organizations. *Australian Psychiatry*, 19(2), 125-131.

Carvalho, E. (2008). Measuring children's rights: An alternative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6, 545-563.

Chaaban, J. M. (2009). Measuring youth development: A nonparametric cross-country 'youth welfare index'. *Social Indicators Research*, 93, 351-358.

Danish Institute for Human rights (2006). *Human rights indicators at programme and project level: Guidelines for defining indicators, monitoring and evaluation*. Copenhagen, Denmark, The Danish Insititute for Human Rights.

de Beco, G. (2008). Human rights indicators for assessing state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dic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77, 23-49.

Ennew, J., & Miljeteig, P. (1996). Indicators for children's rights: Progress report on a project.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4, 213-236.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FRA) (2010). *Developing*

- indicators for the protection, respect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the European Union* (Conference Edition). Vienn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FRA) (2013). *Child rights' indicators in the field of family justice*. Vienna: European Union Agency for Fundamental Rights.
- Fattore, T., Mason, J., & Watson, E. (2007). Children's conceptualization(s) of their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5–29.
- Gran, B. K. (2010). Comparing children's rights: Introducing the children's right index.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8, 1–17.
- Green, M. (2001).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indicators: Current approaches to human rights measurement. *Human Rights Quarterly*, 23, 1062–1097.
- Habashi, J., Wright, L., Hathcoat, J. D. (2012). Patterns of human development indicators across constitutional analysis of children's rights to protection, provision, and particip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5, 63–73.
- Hanafin, S., Brooks, A., Carroll, E., Fitzgerald, E., Gabhainn, S. N., & Sixsmith, J. (2006). Achieving consensus in developing a national set of child well-being indicators. *Social Indicators Research*, 80, 79–104.
- Hater, S., & Marold, D. B.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contributing to adolescent suicidal ideation.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64, 71–91.
- Human Rights Council (2012). *Report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 Republic of Korea* (A/HRC/22/10). Geneva: UN Human Rights Council.
- Kapoor, I. (1996). *Indicators for programming in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A preliminary study*. Gatineau, Quebec: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 Lippman, L. H. (2007). Indicators and indices of child well-being: A brief American hist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3, 39–53.

- Malhotra, R., & Fasel, N. (2005). *Quantitative human rights indicators: A survey of major initiatives*.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OHCHR) (2007). *Using indicators to promote and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Asian sub-regional Workshop Report), New Delhi, India, 26-28 July, 2007
- Pond, K., Kim, R., Carroquino, M., Pirard, P., Gore, F., & Cucu, A., et al. (2007). Workgroup report: Developing environmental health indicators for European children: World health organization working group.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 115(9), 1376-1382.
- UNICEF (2007). *Implementation handbook for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v. 3rd ed.). Geneva: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 United Nations(UN) (1989).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A/RES/44/25). 외교통상부 역(1991). 유엔아동권리협약 정부 공식 국문번역본.
- United Nations(UN) (2012). *Human Rights Indicators: A Guide to Measurement and Implementation*. Geneva: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1996).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5).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1).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6). *The rights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CRC/C/GC/9).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09). *The rights of the child to be heard* (CRC/C/GC/1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0). *General guidelines regarding the form and content of periodic reports to be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paragraph 1(b), of the convention* (CRC/C/58/Rev.2).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ited Nations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UNCRC) (2013). *The rights of children to have his or her best interests taken as a primary consideration* (CRC/C/GC/14). Geneva: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Vaghri, Z., Arkada, A., Kruze, S., & Hertzman, C. (2011). CRC general comment 7 indicators framework: A tool for monitoring the implementation of child rights in early childhood. *Journal of Human Rights*, 10, 178–188.

부 록

1.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지표항목별 생산방법)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3. 설문지

부 록

부록 1. 20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지표항목별 생산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1. 인권 일반 및 일반원칙	1-1. 인권 일반(제4조, 42조)	1-1-1. 인권인프라	1-1-1-1. 아동·청소년 인권기구·조직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청소년희망센터 2012년도 사업결과보고서
			1-1-1-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기획재정부(2013) 2013 나라살림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1-1-2. 인권인식	1-1-2-1. 인권감수성과 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6.1)~4)* 초등용: 문 38.*
			1-1-2-2.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7.1)~2), 3)~7)* (초등 제외 문 47.3), 5)) 초등용: 문 39.*
			1-1-2-3. 아동·청소년 인권 수준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고용: 문 51.* 초등용: 문 42.*
			1-1-2-4. 인권 관련 협약, 기구에 대한 인지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3.1)~3)* 초등용: 문 35.*
	1-2. 일반 원칙(제2조, 제3조)	1-2-1. 차별금지	1-2-1-1. 차별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5.1)~8) 초등용: 문 37.
			1-2-1-2. 차별의식 및 태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8.1)~4) 초등용: 문 16.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1-2-2.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아동·청소년 영향평가제도 운영 현황(추후 생산)
2. 시민적 권리와 자유	2-1. 이름과 국적(제7조), 신분의 등록 및 유지(제8조)	2-1-1. 국적 및 신분	2-1-1-1. 출생신고율	경찰청(2013) 영아유기율
	2-2. 의견 표명권(제12조), 표현의 자유(제13조)	2-2-1. 가정에서의 참여	2-2-1-1. 부모의 자녀의견 존중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1.1)~4) (초등 제외 문 21.2)) 초등용: 문 19.
		2-2-2. 학교에서의 참여	2-2-2-1. 학교 내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의 의사 결정권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1) (초등 제외)
			2-2-2-2. 교칙 제·개정 학생 참여 허용 비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2) 초등용: 문 32.
			2-2-2-3. 학생회 운영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5.1)~3) (초등 제외)
			2-2-2-4.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6. (초등 제외)
		2-2-3. 사회 참여	2-2-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 과정 참여정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청소년자료집 -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채택율
			2-2-3-2. 청소년참여기구 인지도 및 활동 경험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제8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과제 청소년자료집 -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복지부(2012). 아동총회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8. (초등 제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2-2-3-3 청소년의 선거참여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0. (초등 제외)
			2-2-3-4. 참여권 보장 수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1. 초등용: 문 33.
			2-2-3-5. 참여의 장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2. 초등용: 문 34.
	2-3.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14조)	2-3-1. 양심적 병역 거부	2-3-1-1. 양심적 병역거부자 비율	병무청(2013). 연도별 병역거부자 현황
		2-3-2. 학교에서의 종교자유	2-3-2-1.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3) (초등 제외)
	2-4. 결사 및 집회의 자유(제15조)	2-4-1. 결사·집회	2-4-1-1. 결사·집회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9.1)~3) (초등 제외)
	2-5. 사생활의 보호 (제16조)	2-5-1.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2-5-1-1. 학교에서의 용모·복장·소지품 검사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4.1)~3) (초등 제외)
		2-5-2. 학생 정보 보호	2-5-2-1. 학교에서의 교육비 미납 학생 정보 공개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4) (초등 제외))
			2-5-2-2. 학교에서의 학생의 징계처분 내용 공개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5) 초등용: 문 32.
			2-5-2-3. 학교에서의 개인 시험성적 공개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6) 초등용: 문 32.
	2-6. 정보접근권 (제17조)	2-6-1. 매체에 대한 접근	2-6-1-1. 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2-6-1-2. 유해매체 이용률	여성가족부(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6-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대한출판문화협회(2012, 2013). 출판통계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2-6-2. 알권리	2-6-2-1. 학교의 학생에 대한 학교생활규정 공지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7.7) 초등용: 문 32.
			2-6-2-2. 아동·청소년 친화적 정보제공 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4.1)~3) 초등용: 문 36.
	2-7. 체벌, 고문 및 기타 비인도적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제37조 가, 제28조 2항)	2-7-1. 체벌	2-7-1-1. 체벌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4.1)~4), 문 24-1.1)~2) 초등용: 문 22. 문 22-1.
		2-7-2. 정서적 학대	2-7-2-1. 모욕적인 말·욕설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5.1)~6) 초등용: 문 23.
		2-7-3. 청소년 폭력	2-7-3-1. 폭력피해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6.1)~5) 초등용: 문 24.
			2-7-3-2. 사이버 공간에서의 피해 경험률	여성가족부(2012). 2011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3. 가정 환경 및 대안 양육	3-1-1. 보호시설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2. 보육시설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보건복지부(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재구성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청소년통계 e-나라지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현황 및 지원 변화 추이
		3-1-2. 부모와의 관계	3-1-2-1. 부모와의 대화시간	여성가족부(2012). 2011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3-2.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제20조)	3-2-1. 가출청소년, 소년소녀 가정	3-2-1-1. 가출청소년 비율	경찰청(2012). 2012 경찰백서
			3-2-1-2. 가출 시 이유와 서비스 이용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3. 23-1. 23-2 (초등 제외) 초등용: 문 21. 문 21-1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 백서
			3-2-1-4. 소년소녀가정 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3-2-2. 대안적 양육	3-2-2-1. 대안적 양육을 받는 아동·청소년 비율	보건복지부. e-나라지표, 요보호아동현황보고(http://www.index.go.kr)
	3-3. 입양(제21조)	3-3-1. 입양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1보건복지백서
	3-4. 아동학대, 유기 및 신체적, 심리적 회복과 사회복귀 (제19조 및 제39조)	3-4-1. 학대·방임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보건복지부(2012). 2011보건복지백서
			3-4-1-2.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3). 2012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3-4-1-3. 방임 경험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2.1)~5) 초등용: 문 22.1)~4)
	3-5. 양육 및 보호 조치에 대한 심사(제25조)	3-5-1. 보호기관 심사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등급	보건복지부·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0).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	4-1. 장애 (제23조)	4-1-1. 장애아동·청소년 보호	4-1-1-1. 장애 아동·청소년 취학률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연차보고서
	4-2. 생존 및 발달 (제6조 2항)	4-2-1. 생존과 발달 보장	4-2-1-1. 15-19세 출산율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출생편)
			4-2-1-2. 0세의 기대여명	통계청(각년도), 생명표
			4-2-1-3. 영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영아모성사망조사, 사망원인통계연보
			4-2-1-4. 아동·청소년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4-2-1-5. 사고 사망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연보
			4-2-1-6. 자살률	통계청(각년도), 사망원인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8.(초등 제외) 문 8-1.(초등 제외)
			4-2-1-7. 고민거리 대화 상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9. 초등용: 문 8.
			4-2-1-8. 범죄 피해건수	대검찰청(각년도). 범죄분석. 홍영오(2008) 재구성.
			4-2-1-9. 교통사고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0.2) 초등용: 문 41.2)
			4-2-1-10. 범죄로부터의 안전성 인식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0.1) 초등용: 문 41.1)
	4-3. 보건서비스 (제24조)	4-3-1. 건강관리 조치	4-3-1-1. 보건교사배치현황	교육부(2013).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보건복지부(2012),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4-3-1-3. 학교급식 만족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4. 초등용: 문 4.
			4-3-1-4. 학교급식 안전 현황	통계청·여성가족부(2013) 2013 청소년통계
	4-4.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제24조)	4-4-1. 건강 평가 및 관심도	4-4-1-1. 주관적 건강평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6. 초등용: 문 6.
		4-4-2. 신체적 건강	4-4-2-1. 운동실천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5. 초등용: 문 5.
			4-4-2-2. 아침식사 결식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 문 3-1. 초등용: 문 3. 문 3-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4-4-2-3. 수면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 문 2.* 문 2-1.* 초등용: 문 1. 문 2.* 문 2-1.*
			4-4-2-4. 비만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4-4-2-5. 청소년 유병률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2012). 2011 국민건강 통계
		4-4-3. 정서적 안정	4-4-3-1. 우울증 지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0. 1)~3) 초등용: 문 9. 1)~3)
			4-4-3-2. 스트레스 인지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7.1)~6) 초등용: 문 7.1)~6)
			4-4-3-3. 자아존중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0.4)~7) 초등용: 문 9.4)~7)
			4-4-3-4. 행복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1. 문 11-1. 초등용: 문 10. 문 10-1.
	4-5. 청소년의 생식보건 권리	4-5-1. 성교육	4-5-1-1. 성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4-6. 약물남용 방지 대책 (제33조)	4-6-1. 예방교육	4-6-1-1. 약물남용예방교육 경험률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4-6-2. 음주·흡연	4-6-2-1. 흡연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5. 교육, 여가 및 문화적 활동	4-7. 사회 보장 및 아동 보호시설 (제26조 및 제18조 3항)	4-7-1. 사회보장 서비스 대상	4-6-2-2. 음주율	교육과학기술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2012). 제8차(2012년)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통계
			4-7-1-1. 빈곤율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2. 사회보장 서비스 내용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보건복지부(2013). 20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4-7-2-1. 아동급식지원현황	보건복지부(2012). 2011 보건복지백서
			4-7-2-2.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보건복지부·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2013). 2012 전국 지역아동센터 실태조사 보고서
			4-7-2-3.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2-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4-7-2-5. 아동발달계좌 개설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5-1. 교육 예의 권리 (제28조)	5-1-1. 교육의 기회	5-1-1-1. 취학률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통계
			5-1-1-2. 진학률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통계
			5-1-1-3. 학업중단율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통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5.(초등 제외)
			5-1-1-4. 학교부적응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4. 문 14-1. 문 16.* 문 17.* 초등용: 문 13. 문 13-1. 문 14.* 문 15.*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5-1-1-6. 사교육 경험률*	통계청(2013). 사교육비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2. 초등용: 문 1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5-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간추린 통계 한국교육개발원(2012).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5-1-1-8. 대안학교 수와 종류	교육부(2013). 2013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2013. 6.1 기준)
			5-1-1-9. 방과후학교 운영수	보건복지부(2012). 보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방과후학교 통계자료
			5-1-1-10. 하루 평균 학습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3. 초등용: 문 12.
		5-1-2. 진로교육 기획	5-1-2-1. 진로교육 체계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5-1-2-2.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율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3년 진로진학상담교사 관련 보도자료
	5-2. 교육의 목표 (제29조)	5-2-1. 학교의 의미와 기능	5-2-1-1. 학교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19.* 초등용: 문 17.*
		5-2-2. 교육현장의 인권존중 노력	5-2-2-1. 인권교육 경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0.1),3)* 문 20-1.1),3)* 문 20-2.* 초등용: 문 18.* 문 18-1.* 문 18-2.*
		5-2-3. 다문화이해	5-2-3-1.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교육 현황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0.2)* 문 20-1.2)* 초등용: 문 18.* 문 18-1.*
	5-3. 여가, 놀이 및 문화·예술 활동 (제31조)	5-3-1.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5-3-1-1. 전국 문화예술 기반시설 수	문화관광체육부(2012). 2012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5-3-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7.* 문 27-1.* 초등용: 문 25.* 문 25-1.*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5-3-1-3. 지역 내 문화 및 여가시설 충분성에 대한 인식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8. 초등용: 문 26.
			5-3-1-4.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5-3-1-5. 하루 평균 여가활동 시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29. 초등용: 문 27.
			5-3-1-6. 휴일을 보내는 방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0. 초등용: 문 28.
			5-3-1-7. 여가활동 만족도	통계청(2013). 2012 한국의 사회지표
		5-3-2. 아동·청소년 활동	5-3-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통계청·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통계 보도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1. 초등용: 문 29.
			5-3-2-2. 동아리 활동 참가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2. 초등용: 문 30.
			5-3-2-3. 청소년활동에 대한 가정·학교 지지정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중등용: 문 33.1)~2)* 초등용: 문 31.*
6. 특별 보호 조치	6-1. 난민아동 (제22조)	6-1-1. 난민아동	6-1-1-1. 아동·청소년 난민 비율	법무부(2013.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요청자료
			6-1-1-2. 탈북난민 아동 현황	법무부(2013.7.). 통일부 정착지원과 요청자료
			6-1-1-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교육과학기술부(2012.6.).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6-2. 소년 사법	6-2-1. 소년사법	6-2-1-1.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표항목	생산방법 (* 2013 신규문항)
			6-2-1-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 구속, 수감 등 자유 가 박탈된 아동(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3-1. 구속, 수감 등 자유가 박탈된 아동 (제37조 나, 라), 사형 및 종신형의 금지와 회복적 접근 (제37조 가)	6-3-1-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2.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3-1-3.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 경제적 착취	6-4-1. 경제적 착취	6-4-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4-1-3. 아르바이트 부당처우 경험률	중등용: 문 48, 문 48-1. (초등제외)
	6-5. 성적착취	6-5-1. 성적 착취	6-5-1-1.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여성가족부(2012). 2012 청소년백서
			6-5-1-2. 청소년의 성적 피해 경험률	중등용: 문 49, 문 49-1. * 문 49-2. 초등용: 문 40, 문 40-1. * 문 40-2.
			6-5-1-3.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	여성가족부(2011).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부록 2. 지표별 통계자료원 현황

1) 승인통계 활용지표⁴⁰⁾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15414)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각종 매체이용실태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확보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매체이용 문화를 고양 시키고 효과적인 정책적 대응방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총 5,670명)	2년 (2011)	기타 (조사대상→조사전문기관 (리서치&리서치)→ 여성가족부)	조사 실시 익년 3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2-6-1-1. 매체 이용률
국민독서실태 조사 (11318)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우리 국민들의 독서실태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만들기 위한 독서환경 문제점을 파악, 바람직한 독서 진흥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개인 (○ 전국의 만 18세이상 성인남녀 2,000명 ○ 학생 3,000명(전국 초·중고 각 1,000명 (초·중학생 4~6학년)) ○ 총 5,000명)	2년 (2001)	우편조사 (응답자→조사전문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체육관광부)	익년 3월 (언론(보도자료)+ 간행물) (전국)	2-6-1-1. 매체 이용률
청소년유해환경 정착 종합실태조사 (16701)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유해환경정착 등을 파악하여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종합적·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정책의 기초자 료로 활용	개인 (전국 초등학교 5학년 이상 19세미만 청소년 18,000명- 일반청소년 16,500명 (초 5~6-1,500명, 중고등학교-15,000명) - 위기청소년 1,500명)	2년 (2006)	우편조사 (조사대상→위탁기관 (매트릭스)→여성가족부)	익년 3월 (간행물) (전국)	2-6-1-2. 유해매체 이용률

40) 통계별 설명자료 출처: 통계청 승인통계 현황 <http://www.narastat.kr/bms/pub/scs/css/selectConfmStatsList.do>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청소년종합실태 조사 (15413) (여성가족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청소년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 장기 청소년정책의 비전과 목표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개인 (○ 조사대상 - 청소년 : 만 9세~24세 총 2,200명 이상(7구 내 대상청소년 전원) - 성인 : 조사 청소년의 부모(주 양육자) 2,200명)	3년 (2011)	우편조사 (조사대상→위탁기관 (통계청)→여성가족부)	조사실시 익년 1월 (간행물) (전국)	3-1-1-1. 방과후 보호자 부재 이동수 3-1-2-1. 부모와의 대화시간 5-1-2-1. 진로교육체계
학대피해아동 보호현황 (11764)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학대아동보호 현황을 파악하 여 각종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	1년 (2006)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부(조사 내용 DB구축, 조사표는 자체보관))	익년 5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3-4-1-2. 아동학대사례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인구동태표본조사 (10112) (통계청)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개인 (- 32,500 가구 (1,091개 조사구))	1년 (1963)	우편조사 (조사원→지방통계청 (사무소)→통계청)	- (-) (시도)	4-2-1-1. 15-19세 출신율
생명표 (10135) (통계청)	일반통계 (기공통계) (해당없음)	현재의 연령별 사망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장래의 기대여명을 산출하여 보건·의료정책수립, 보험 료율,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의 기초자료 및 장래인구 추계작성, 국가간 경제사회보건 수준비교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기타 (작성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	1년 (1971)	(기초자료수집→인구동태 신고자료보장→연령별 사망률산출→연령별 사망률산출→장래인구 산출→생존률산출→ 총생존자수산출→ 기대여명산출)	매년 12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4-2-1-2. 0세의 기대여명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영아모성사망 조사 (11733)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전수)	모성사망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모성사망예방 정책수 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국제기구(OECD 등)로부터 의 통계 자료요구에 대한 제출을 위한	기타 (모성사망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료기관)	2년 (1993)	(종합병원·병원 : 대한의무기록협회→ 보건사회연구원→보건 복지부 · 의원→시·군(보건소) →시·도(보건소)→보건 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조사년도인년12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4-2-1-3. 영아 사망률 (성별)
사망원인통계 (10154) (통계청)	지정통계 (가공통계) (해당없음)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개인 (대한민국 국민 으로서 대한민국 영토내 거주자 및 외국에 거주하는 자)	1년 (1980)	(가공분석: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과 통 계법에 따라 전국 읍면 동에서 신고된 사망신 고서로 작성)	매년 9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4-2-1-3. 영아 사망률 (성별) 4-2-1-4. 아동청소년 사망률(성별, 연령별) 4-2-1-6. 자살률
범죄분석통계 (13501) (대검찰청)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범죄의 현황과 범죄심리 및 그 양적·질적 변화를 조사 출정하여, 범죄의 예방과 범죄대책수립 등 형사대책 및 사회정책 수립에 기초자료제공	개인 (-)	1년 (1963)	(전국 각 지방 경찰청→경찰청→ 검찰청)	매년 9월 (간행물) (전국)	4-2-1-8. 범죄 피해간수
국민건강영양 조사 (11702) (보건복지부)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국민의 건강수준, 건강관련 의식 및 행태, 식품 및 영양섭취 실태에 대한 국가 및 시도 단위 통계 산출 - 만성질환 및 관련 위험요인의 시계열 추이 파악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정책목표 수립 및 평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 보건정책 근거자료 제공	가구 (제6기, 2013~2015) ○ 전국 11,000여 가구 내 가구원 - 3년 간 576개 조사구, 조사구당 207가구 - 매년 전국 192개 조사구, 3,840개 가구 만 1세 이상 가구원)	1년 (1969)	유연조사 (조사원(실문, 경진 및 계측)→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조사대상연도 인년 12월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4-4-2-4. 비만율 4-4-2-5. 청소년 유병률

통계명 (승인번호) (작성기관)	통계종류 (작성형태) (전수/표본)	조사목적	조사대상 (규모)	작성주기 (최초승인 년도)	조사방법 (조사체계)	공표시기 (공표방법) (공표범위)	해당 지표항목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11758) (보건복지부)	일반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중·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수립된 정책의 평가에 활용	개인 (- 전국 중1~ 고3 약 80,000여명 - 중고등학교 각 400개 표본추출, 학교당 학년별 1개 학급)	1년 (2005)	- (표본학교→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학교컴퓨터실에서 일괄조사 - 조사수행협조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조사일시:연년 11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4-5-1-1. 성교육 경험률 4-6-1-1. 약물남용예반 교육 경험률 4-6-2-1. 흡연율 4-6-2-2. 음주율
사교육비조사	지정통계 (조사통계) (확률표본)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사교육 실태, 원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	개인/가구 (1,094학교, 1,407학급의 담당교사 및 학부모 44,000명)	1년 (2007)	- (학부모(학생)→ 조사대상 학교→ 지법통계청(사무소, 출장소)→통계청)	익년 1월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시도)	5-1-1-6. 사교육 경험률
출입국자통계	일반통계 (보고통계) (해당없음)	내·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상황을 파악하여 출입국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책판단 및 수립의 기초자료 제공	개인	1년 (1975)	- (각 출입국사무소→ 법무부)	익년 5월경 (언론(보도자료)+ 전산망(인터넷)+ 간행물) (전국)	6-1-1-1. 이동 청소년 난민 비율

2) 행정통계 활용지표

자료명	발간기관	발간주기	해당 지표항목
2013 나라살림 예산	기획재정부	1년	1-1-1-2.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여성가족부		1-2-2-1. 아동·청소년 이익의 우선 고려 노력
2012 청소년백서	여성가족부	1년	2-2-3-1. 청소년정책사업 결정과정 참여정도
			3-2-1-3. 가출청소년 보호시설 수
			4-7-1-1. 빈곤율
			4-7-2-2. 지역아동센터 지원현황
			4-7-2-3. 교육복지우선사업사업 현황
			4-7-2-4. 드림스타트센터 설치 현황
			4-7-2-5. 아동발달계좌 현황
			5-4-1-2.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용시설 수
			6-1-1-2. 탈북난민 아동 현황
			6-2-1-1. 소년사건 중 형사사건과 보호사건 비율
			6-2-1-2.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청소년 비율
			6-2-1-3.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청소년 비율
			6-3-1-1. 소년분류심사원의 위탁소년 수용현황
			6-3-1-2. 보호소년의 수용 및 교육 현황
			6-3-1-3. 소년범죄자의 소년교도소 수용현황
			6-4-1-1. 청소년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6-4-1-2. 청소년 근로자의 임금수준
			6-5-1-1. 청소년성매매 검거인원 및 조치 현황
출판통계	대한출판문화협회	1년	2-6-1-3. 아동·청소년 도서 발행 비율
보육통계	보건복지부	1년	3-1-1-2. 보육시설 수
			3-1-1-3. 보육시설 재원 아동 수
			3-1-1-4. 취약보육 이용 아동 수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의 수
			5-1-1-9. 방과후학교 운영 수
2013 청소년 통계	통계청·여성가족부	1년	3-1-1-6. 방과후 전담시설 이용 아동·청소년 수
			4-3-1-4. 학교 및 급식 안전 현황
			5-4-1-4. 여가 및 문화예술 활동 참여도
2012 경찰백서	경찰청	1년	5-4-2-1. 아동·청소년단체 활동 참가율
2012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부	1년	3-2-1-1. 가출청소년 비율
			3-1-1-5. 보육교사 1인당 아동의 수
			3-2-1-4. 소년소녀가정현황
2011 보건복지백서	보건복지부	1년	4-3-1-2. 의료급여 대상자 수
			3-3-1-1. 국내외 입양 현황
			3-4-1-1. 학대피해아동 보호 건수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수
			4-7-2-1. 아동급식 지원현황

자료명	발간기관	발간주기	해당 지표항목
2010 사회복지시설평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년	3-5-1-1. 아동복지시설 평가 등급 비율
2012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교육과학기술부	1년	4-1-1-1. 장애아동 · 청소년 취학률 4-1-1-2. 장애 청소년 취업률
2013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교육부		4-3-1-1. 보건교사 배치현황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보건복지부	1년	4-7-1-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
2012 간추린 교육통계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1년	5-1-1-1. 취학률 5-1-1-2. 진학률 5-1-1-3. 학업중단율 5-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2012) 국제지표로 본 한국교육	한국교육개발원		5-1-1-5. 학생 1인당 공교육비 5-1-1-7. 교원 1인당 학생 수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특성화 중·고등학교 (‘13. 6월 기준)	교육부		5-1-1-8. 대안학교 수와 종류
2012년 방과후학교 통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5-1-1-9. 방과후학교 운영 수
2012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1년	5-4-1-1. 전국 문화예술 기반 시설 수
2012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1년	5-4-1-7. 여가활동 만족도
탈북청소년 입국 현황	통일부		6-1-1-2. 탈북난민 아동 현황
탈북학생 주요 통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6-1-1-3. 탈북청소년 중도탈락률
2012년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실적 보고	여성가족부	1년	6-5-1-3. 성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및 보호시설 입소 현황

부록 3. 설문지


조사학교 ID
 (기록하지 마세요)

201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중고등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책 연구 기관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조사 연구와 정책 개발 업무를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의 인권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기초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 자료로만 활용되므로 개인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응답 내용은 학교에서나 선생님이 절대로 볼 수 없으며,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쁘신데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37-715)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http://www.nypi.re.kr>

주관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담당자: 김영지 연구위원/김경준 선임연구위원 (02)2188-8846/8832
 수행기관: ㈜한국리서치 담당자: 황인창 차장/염숙희 팀장 (02)3014-0086/0131

조사 일시	2013년 ____월 ____일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설문지 작성 요령

설문지에는 여러분 자신에 관한 질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대로 대답해야 하는 질문도 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밝혀야 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잘 읽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만일 이해가 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앞에 계신 면접원 또는 선생님께 손을 들고 질문해도 좋습니다.

♣ 표시하는 방법

질문 다음에는 대개 1에서 4(또는 1에서 5)까지의 숫자 중 하나를 골라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문장을 읽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면 ①에, ‘그렇지 않은 편이다’면 ②에, ‘그런 편이다’면 ③에, ‘매우 그렇다’면 ④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나는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①’에 표시했습니다.

♣ 표시한 것을 바꾸고 싶을 때

<보기2>와 같이 처음 답을 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맞다고 생각하는 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지우개 또는 볼펜으로 지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기2>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a 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 응답을 선택한 후 지시문에 따라 해당 번호로 이동

항목 오른쪽에 지시문이 있는 경우는, 응답을 한 후 선택한 항목의 오른쪽에 색칠된 지시문이 이동하라고 하는 번호로 이동해야 합니다.

<보기3>

문 A. 학생은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결석한 적이 있다 → 「문 B」로 가세요
② 결석한 적이 없다 → 「문 C」로 가세요

☞ 나는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B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 강조 지침

색칠이 되어 있는 항목, **굵은 글씨에 밑줄이** 되어있는 항목은 반드시 지침에 따라 응답합니다.

<보기4>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결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합니다. 결석을 하지 않았으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문 B. 최근 1년간 결석을 한 이유를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몸이 아파서 ② 학교가기 싫어서 ③ 게임을 하느라 ④ 늦잠을 자서

☞ 결석한 이유를 ‘모두’ 응답하도록 질문이 구성되어 있음. 최근 1년간 몸이 아파서, 늦잠을 자서 각각 1번씩, 총 2번 결석을 하였으므로 ①번과 ④번에 각각 응답하였음.

문 1. 학교에 가는 날(평일) 일어나는 시간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보통 몇 시 몇 분입니까?

- 1) 일어나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2) 잠자리에 드는 시간 (보통 _____시 _____분)

문 2.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 예 → 「문 2-1」로 가세요
② 아니오 → 「문 3」으로 가세요

문 2-1.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야간 자율학습	⑤ 채팅, 문자 메시지
② 학원, 과외	⑥ 성인 사이트에서 성인물(동영상, 만화, 잡지 등) 이용
③ 가정학습(숙제, 인터넷 강의)	⑦ 드라마, 영화 시청, 음악 청취 등
④ 게임(인터넷 게임, 휴대전화 게임 포함)	⑧ 기타()

→ 「문 2-1」을 응답한 후 문 3으로 가세요

문 3. 학교에 가기 전 아침 식사를 합니까?

- ①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② 보통 하지 않는 편이다 → 「문 3-1」로 가세요
③ 보통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④ 거의 매일 하는 편이다 → 「문 4」로 가세요

문 3-1.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② 학교에 일찍 가야 해서
③ 식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④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⑥ 가족 모두 아침을 안 먹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⑦ 다이어트를 위해서 ⑧ 기타 ()

→ 「문 3-1」을 응답한 후 문 4로 가세요

문 4. (학교 급식을 하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 급식(영양, 맛과 양 등)에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문 5. 학교 체육시간에 하는 운동을 제외하고 건강관리를 위해 특별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한 달에 1-2회 정도
- ③ 일주일에 1-2회 정도
- ④ 일주일에 3회 이상

문 6.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매우 건강이 좋지 않다
-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 ③ 건강한 편이다
- ④ 매우 건강하다

문 7.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업 문제(학업 부담, 성적 등)	①	②	③	④
2) 가정 불화	①	②	③	④
3) 또래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4) 경제적인 어려움	①	②	③	④
5) 외모·신체 조건	①	②	③	④
6)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①	②	③	④

문 8.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 「문 9」로 가세요
- ② 가끔 생각한다 → 「문 8-1」로 가세요
- ③ 자주 생각한다 → 「문 8-1」로 가세요

문 8-1. (죽고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성적 ② 가족 간의 갈등 ③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학교폭력 등)
- ④ 경제적인 어려움 ⑤ 기타 ()

→ 「문 8-1」을 응답한 후 문 9로 가세요

문 9.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경우에는 가장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없다 ② 아버지 ③ 어머니 ④ 형제/자매
- ⑤ 담임선생님 ⑥ 학교 상담선생님 ⑦ 친구 ⑧ 이웃/친척
- ⑨ 청소년 상담 관련 센터(예: 청소년 전화 1388) ⑩ 기타 ()

문 10. 다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나 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이유 없이 외로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이유 없이 불안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이유 없이 슬프거나 우울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5)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7)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 11. 현재 얼마나 행복합니까?

- ① 전혀 행복하지 않다 → 「문 11-1」로 가세요
- ② 행복하지 않은 편이다 → 「문 11-1」로 가세요
- ③ 행복한 편이다 → 「문 12」로 가세요
- ④ 매우 행복하다 → 「문 12」로 가세요

문 11-1. 행복하지 않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학업 부담 때문에
- ②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서
- ③ 친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 ④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 ⑤ 외모나 신체적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 ⑥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때문에
- ⑦ 기타 ()

→ 「문 11-1」을 응답한 후 문 12로 가세요.

문 12. 최근 1년 동안 학교 수업 이외에 성적을 높이거나 진학을 위해 사교육(과외·학원·학습지)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13. 평일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공부합니까?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⑦ 6시간 이상

문 1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14-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15」로 가세요

문 14-1.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만 골라 () 안에 해당 번호를 적어 주세요.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괴롭힘을 당해서	⑥ 학교수업이 싫어서
② 성적이 좋지 않아서	⑦ 학교규율이 엄격하고 자유롭지 않아서
③ 선생님이 불공평한 대우를 해서	⑧ 몸 상태 혹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④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⑨ 다른 취미활동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⑤ 가족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⑩ 기타()

→ 「문 14-1」을 응답한 후 문 15로 가세요.

문 15. 최근 1년 동안 공부를 그만두고 학교를 포기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문 16. 최근 1년 동안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했는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주에 1~2번	한달에 1~2번	한학기에 1~2번	전혀 없다
1) 지각	①	②	③	④
2) 무단결석 (보호자나 선생님께 알리지 않고 학교에 가지 않은 경우)	①	②	③	④
3) 일부러 수업에 빠짐	①	②	③	④
4)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	①	②	③	④
5) 숙제를 하지 않음	①	②	③	④

문 17.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서 쉽게 친구를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 친구들은 나를 존중하고 배려해 준다	①	②	③	④
3) 선생님은 학생들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4) 선생님은 학생들을 공정하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에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①	②	③	④
6)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	①	②	③	④

문 18. 다음은 주변의 또래 청소년에 대한 태도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문화 가정(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외국인인 가정)의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다문화 가정의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3) 신체적·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언어장애, 다운증후군 등)가 있는 또래 청소년이 있다면 친구로 사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또래 청소년을 놀리거나 따돌렸다	①	②	③	④

문 19. 다음의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는 학생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인성을 길러준다	①	②	③	④
3) 학교는 학생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4) 학교는 학생들의 미래 직업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쳐준다	①	②	③	④

문 20.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문 20-1. **[교육을 받아본 것에 모두 응답하세요]**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내 용	문 20. 교육을 받은 횟수	문 20-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인권교육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①	②	③	④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2) 다문화 이해 교육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①	②	③	④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3) 청소년 근로교육(아르바이트 등)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	①	②	③	④
	⑥ 교육을 받은 적 없음				

문 20-2. **[문 20의 1) 인권교육에서 '① 1회'부터 '⑥ 5회 이상'에 응답한 경우만]**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학교 정규교과시간 ② 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③ 청소년단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④ 사회단체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⑤ 기타 ()

문 24. 최근 1년 동안 부모님(또는 보호자)이나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부모님(보호자) 으로부터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학교 선생님께서	3)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4)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문 24-1. 최근 1년 동안 학원 선생님께서 신체적 벌(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욕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학원을 다닌적 없음
학원 선생님께서	1) 신체적 벌(체벌)	①	②	③	④	⑤	⑨
	2)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①	②	③	④	⑤	⑨

문 25.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26. 최근 1년 동안 인터넷(채팅, 게시판 댓글 등)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들음	①	②	③	④	⑤
2)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성희롱(놀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밝히고 싶지 않은 사생활이 널리 알려짐	①	②	③	④	⑤
5) 사이버 공간(게시판 댓글, 채팅 등)에서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문 3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 ① 가입하지 않았다
- ② 가입은 하였지만 별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다
- ③ 가입하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문 32. 최근 1년 동안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동호회 포함) 활동(학교 내외 동아리 모두 포함)을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문 33. 가정이나 학교에서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참여를 얼마나 지지하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지지하는 편이다	매우 지지한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문 34. 최근 1년 동안 학교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용모(머리 모양·길·염색 또는 화장)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복장(바지나 치마 길이)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정해진 규정에 따르지 않고 사물함이나 가방 안의 개인 소지품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35. 다음은 학생회 운영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교사나 교장의 간섭없이 학생회 활동을 할 수 있다	①	②	③
2) 학생회 임원 후보가 되려면 성적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3)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장소, 시간 등을 보장한다	①	②	③

문 36. 학생회 대표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까?

- ① 참여할 수 없다
- ② 참여할 수는 있지만 회의내용을 듣기만 하고 의견을 말할 수는 없다
- ③ 참여하여 회의내용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37.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아침 보충수업(0교시 수업), 야간자율학습, 방학 보충수업 등 추가학습은 학생이 자기 의사에 따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학교는 학교의 규칙, 규정 등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학교의 종교행사에는 원하는 학생만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 다니는 학교가 (개신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학교가 아닌 경우는 ⑨ 번에 표시하세요. ⑨ 종교학교가 아님				
4) 선생님은 교육비(급식비 등)를 내지 않은 학생의 이름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5) 학교는 학생의 징계 받은 내용과 이름을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6) 선생님은 개인의 시험 성적을 다른 학생들 앞에서 공개한다	①	②	③	④
7) 학교는 학생들에게 학교규칙을 알려주고 규정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문 38.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등과 같은 청소년 참여기구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청소년 참여기구: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청소년정책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기구

- ①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
- ② 이름을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 ③ 알고 있으나 참여해 보지는 않았다
- ④ 잘 알고 있으며 참여해 본 경험이 있다

문 39.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문제, 선거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참여활동을 얼마나 자주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1) 사회문제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	①	②	③	④
2)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나 인터넷 카페에 가입	①	②	③	④
3) 사회문제에 관한 거리집회나 문화행사 등에 참여	①	②	③	④

문 40. 현재 대통령,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 ① 만 19세보다 낮추어야 한다
- ② 현재 만 19세를 유지해야 한다
- ③ 만 19세보다 높여야 한다
- ④ 잘 모르겠다

문 41. 우리 사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듣고 청소년이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② 그렇지 않은 편이다
- ③ 그런 편이다
- ④ 매우 그렇다

문 42.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참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
- ②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 ③ 부모님(보호자)이 하지 못하게 한다
- ④ 학교에서 하지 못하게 한다
- ⑤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 ⑥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기회나 방법이 없다

문 43. 다음의 인권 관련 협약이나 기관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유엔(UN)아동권리협약 : 국가와 사회가 보장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내용이 담겨있는 국제조약

내 용	모른다	이름만 들어봤다	이름도 들어봤고, 어떤 것(또는 곳)인지도 알고 있다
1) 유엔(UN)아동권리협약*	①	②	③
2) 학생인권조례	①	②	③
3) 국가인권위원회	①	②	③

문 44. 다음은 청소년 인권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아니다	그렇다
1)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알기 쉽게 풀이한 청소년용 정책 홍보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2) 유엔(UN)아동권리협약 내용 등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쉽게 알 수 있게 만든 자료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3)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상담·구제받을 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있다	①	②

문 45. 다음은 학생이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부당한 차별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남자 또는 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향이나 사는 지역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7)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8) 어머니나 아버지가 안 계신다고, 혹은 부모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⑤

문 46. 다음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어려움(따돌림 등)에 처한 친구가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2) 인권이 침해된 사람을 돕기 위해 단체나 모임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①	②	③	④
3) 가난해서 굶어 죽거나 아파도 치료를 못 받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4)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①	②	③	④

문 47.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필리핀, 중국 등)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문 48.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 48-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49」로 가세요

문 48-1.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 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없다	1-2 번	3번 이상
1)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②	③
2) 계약 시간보다 초과하여 일을 하였거나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하였다	①	②	③
3) 아르바이트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①	②	③
4) 이유 없이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	①	②	③
5) 작업 환경이 불결하고 위험하였다	①	②	③
6) 폭언 등 인격 모독을 당했다	①	②	③
7) 구타나 폭행을 당했다	①	②	③
8) 성적 피해(성희롱·성추행)를 경험했다	①	②	③
9) 최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 당 4,580원, 2013년 기준 시간 당 4,860원)보다 적은 돈을 받고 일을 했다	①	②	③

→ 「문 48-1」을 응답한 후 문 49로 가세요

문 49. 최근 1년 동안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성적 피해'란, 아래 내용이 포함된 모든 성 관련 피해를 의미합니다.
 · 성희롱: 성적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놀림
 · 성추행: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
 · 강제적 성관계: 폭력 등을 동원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

- ① 있다 → 「문 49-1」로 가세요
 ② 없다 → 「문 50」으로 가세요

문 49-1.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어떤 피해를 경험했습니까?

- ① 성희롱 ② 성추행 ③ 강제적 성관계

문 49-2. [성적인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만 응답하세요] 성적인 피해를 당한 후 주로 누구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래에서 한 사람만 선택해 주세요.

- 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② 친구
 ③ 선배 ④ 부모님(보호자)
 ⑤ 형제·자매 ⑥ 선생님
 ⑦ 전문 상담가(상담 전화) ⑧ 경찰
 ⑨ 인터넷 ⑩ 기타()

→ 「문 49-2」를 응답한 후 문 50으로 가세요

문 50. 내가 사는 동네는 범죄나 교통사고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 '범죄'란 폭력, 금품 갈취, 절도, 성추행 같은 행동들을 의미합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는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2) 우리 동네는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문 51.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세요.

내 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내가 살고 있는 지역	①	②	③	④
4) 우리나라 전체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설문 조사의 결과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배문 1. 아래에서 학생의 가족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가족구성원 중에서 결혼을 해 따로 살고 있는 가족(예: 시집간 언니)은 제외하고,
1) 함께 살고 있거나,
2)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은 모두 표시해 주세요.
※ 예 1: 시집 가서 따로 사는 언니, 삼촌 집에서 사는 사촌형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 2: (같이 살다가) 직장이 지방에 있어서 내려가 있는 큰형은 표시합니다.

- ① (외)할아버지 ② (외)할머니 ③ 아버지 ④ 어머니
⑤ 새아버지 ⑥ 새어머니 ⑦ 형제 또는 자매 ⑧ 친척
⑨ 기타 _____ ⑩ 없음

배문 2. 부모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나요? 부모님께서 학교를 완전히 마치신(졸업하신) 학교를
표시해 주세요.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닙니다.
예) 중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 경우 초등학교 졸업에 표시합니다

	학교 안다님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원 졸업 (석사박사)	잘 모르겠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배문 3. 부모님께서 현재 직업을 갖고 계십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세요.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지 여부	
	있음	없음
1. 아버지	①	②
2. 어머니	①	②

배문 4. 학생의 학업 성적(2013년 1학기)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으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세요.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 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배문 5.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매우 못 산다 <----- 보통 수준 -----> 매우 잘 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peatedly conduct cross sectional survey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based on child and youth right indicators, thereby building up time-series data to understand the status of and changes in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 doing so, the study is intended to monitor the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 a comprehensive and systemic manner and provide basic data to help establish policies on the child and youth right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have been produced and published every year a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2013 study has improved the survey system, which conducted biannual surveys of different aspects of human rights, to establish a framework to conduct holistic human right surveys and supplement the human right indicator system and survey tools.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dicator system included 130 indicators in six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9); Civil Rights and Freedom (27);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17);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37);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25);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15).

The 2013 subjects included 9,521 children and youths covering from the four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third grade in high school. To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this study analyzed and used administrative statistic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relevant statistics from different fields to complement the result of the survey.

This study consists of three reports: a basic report, data analysis report, and a statistics. The basic report,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I, h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 data analysis report, which is newly published this year, are compilations of papers on human rights and aim to disperse human right data across the

society and improve their academic use. The statistics, The 2013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Lastly, this study has suggested policy recommendations in each of the six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selected 17 priority areas for human right policies and presented detailed action plans.

Key words: Children's rights, youth's rights, human right indicators, status of human right, repeated cross sectional survey.

201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3-R01 미래 환경변화 및 청소년정책 전망 연구 I : 미래 청소년 환경변화에 대한 전망 / 이경상 · 최항섭 · 그레이스정
- 13-R02 후기 청소년 세대 생활 · 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지경 · 이광호
- 13-R03 국가 청소년활동정책 체계화 연구 / 김현철 · 임희진 · 정효진 · 민경석
- 13-R04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 김기현
- 13-R05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 / 맹영임 · 길은배
- 13-R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 배경내
- 13-R07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연구 / 김영한 · 조아미 · 이승하
- 13-R08 스마트폰 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연구 / 이창호 · 김경희
- 13-R09 청소년참여기구 활성화 방안 연구 / 최창욱 · 전명기
- 13-R10 아동 · 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 II : 아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 이유진 · 윤옥경 · 조윤오
- 13-R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장근영 · 배상률 · 성은모 · 이해연 · 김균희 · 이용교 · 홍승혜
- 13-R11-1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기초통계분석보고서 / 장근영 · 이해연 · 배상률 · 성은모 · 김균희
- 13-R11-2 청소년이 행복한 마을 지표 개발 및 조성방안 연구 I : 행복에 대한 부모와 자녀(청소년)의 상호기대 차이 연구 / 성은모 · 오현석 · 최윤미
- 13-R1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박주희
- 13-R12-1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 김승경
- 13-R12-2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질적연구보고서 / 이창호
- 13-R12-3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김승경 · 박주희
- 13-R13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김영지 · 김경준 · 김지혜 · 이민희
- 13-R13-1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데이터분석보고서 : 청소년의 인권의식과 태도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 유성렬 · 김신영
- 13-R13-2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 2013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 / 김영지 · 김경준
- 13-R14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 사업보고서 / 이종원 · 서정아 · 황진구 · 한영근 · 허효주 · 이영화
- 13-R14-1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1 : 청소년의 학업성적과 비행, 비행친구의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 이종원
- 13-R14-2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2 : 초기 청소년 생활만족도 변화와 영향 요인: 가족구조와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 서정아
- 13-R14-3 한국아동 · 청소년패널조사2010 IV 데이터분석보고서 3 : 청소년의 체험활동 참여변화와 자아인식 · 사회적 발달 -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종단분석 - / 황진구 · 허효주

협동연구과제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체계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1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정책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오해섭 · 박정배 (자체번호 13-R15)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2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2013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 / 박정배 · 오해섭 (자체번호 13-R15-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4-03 아동 · 청소년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연구Ⅲ: 교육분야 지원체계
구축 / 홍영란 · 현영섭 (자체번호 13-R15-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1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총괄보고서 / 모상현 ·
김형주 · 이선영 (자체번호 13-R16)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2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정신건강지표
개발을 통한 정신건강지원체계구축연구 / 최은진 · 김미숙 · 전진아 (자체번호 13-R16-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5-03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Ⅲ: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한 현작적용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이창호 · 강석영 · 이동훈 (자체번호 13-R16-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1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총괄보고서: 청소년 한부모 유형 및 생활주기별
대응방안 / 김지연 · 황여정 · 이준일 · 방은령 · 강현철 (자체번호 13-R17)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형
개발 / 김은지 · 김동식 · 최인희 · 선보영 · 김나연 · 정다은 (자체번호 13-R17-1)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6-03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 연구Ⅱ: 국내 입양 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원 방안 / 신윤정 · 이상림 · 김윤희 (자체번호 13-R17-2)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1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윤철경 · 유성렬 · 김신영 · 임지연
(자체번호 13-R18)
-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3-37-02 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Ⅰ / 전영실 · 김지영 · 박성훈
(자체번호 13-R18-1)

수 시 과 제

- 13-R19 자유학기제 도입과 청소년 체험활동연계 방안 / 성은모
- 13-R20 청소년운영위원회 활성화 전략 연구 / 최창욱
- 13-R21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만족도 변화에 관한 연구 / 황진구 · 김희진
- 13-R22 전국 청소년단체 실태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 / 김영한
- 13-R23 청소년영향평가제 도입방안 기초연구 / 윤철경 · 김윤나
- 13-R24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임희진
- 13-R25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슈페이퍼 발간) / 장근영
- 13-R26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이슈페이퍼 발간) / 이창호

수탁과제

- 13-R27 영천시 청소년수련원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 / 김영한 · 서정아 · 김상연
- 13-R28 2013년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 배상률 · 김형주 · 성은모
- 13-R29 2013삼성전자 임직원과 함께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모델 개발 연구 / 황진구
- 13-R30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3 / 황진구 · 유성렬
- 13-R31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 청년문화 조성방안 연구 / 김승경
- 13-R32 제9회 청소년특별회의 의제연구 / 최창욱
- 13-R33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 / 황진구 · 김지연 · 이해연 · 김광혁
- 13-R34 국립대구청소년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세부사업계획 수립연구 / 김영한 · 이유진 · 한상철 · 추승연 · 김상연
- 13-R35 2013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 양계민
- 13-R36 201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평가 / 김지연 · 이경상
- 13-R37 한중청소년 특별교류의 성과와 향후 발전방안 / 윤철경 · 이창호 · 최금해 · 오해섭
- 13-R38 청소년국제활동 효과성 및 만족도 연구사업 / 양계민
- 13-R39 청소년가족연계서비스 구축모형 개발연구 / 서정아 · 황진구 · 조성은
- 13-R40 청소년 희망카드(가칭) 도입방안 연구 / 김경준 · 모상현
- 13-R41 2013년 성남시 청소년실태조사 연구 / 최창욱 · 황진구 · 이종원
- 13-R42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BSG매니저 전문가 과정 연구용역 / 김승경 · 맹영임
- 13-R43 자유헌기제 학생자율선택프로그램(농림수산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최창욱 · 송병국
- 13-R44 RCY 미래전략 개발 및 참여청소년 효과성 연구 / 장근영 · 맹영임
- 13-R45 2013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 배상률 · 황여정
- 13-R46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 안선영
- 13-R47 유소년스포츠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 / 임지연 · 장덕선
- 13-R48 휴먼네트워크 멘토링의 효과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분석 연구 / 성은모 · 이주석
- 13-R49 2013년 또래조정사업 (2014년 1월 발간예정) / 양계민 · 김지경 · 김지연 · 이종원
- 13-R50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성은모 · 최창욱
- 13-R51 대구광역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연구 (2014년 1월 발간예정) / 김형주 · 배상률 · 강영배 · 김정주 · 김혁진 · 이은미
- 13-R52 학생모니터단 운영 (2014년 2월 발간예정) / 오해섭 · 김경준 · 김영지
- 13-R53 학교문화개선연구선도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경준 · 오해섭 · 김영지
- 13-R54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1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경준 · 모상현 · 이해연
- 13-R54-2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초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3 학교규칙 운영 매뉴얼 [워크북] (중등용) (2014년 2월 발간예정) / 허종렬 · 이지혜 · 박형근 · 이수경 · 전진현
- 13-R54-4 외국의 학생인권 법령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4-5 교사용 인권교육자료집 (2014년 2월 발간예정) / 이양희 · 김인숙 · 정병수 · 황소영 · 신혜원
- 13-R55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초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영지 · 김현철 · 김희진 · 김인아 · 김재근 · 김정희
- 13-R55-1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중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현철 · 김영지 · 김희진 · 송인숙 · 표혜영

- 13-R55-2 창의적 체험활동 매뉴얼 (고등학교) (2014년 2월 발간예정) / 김희진 · 김영지 · 김현철 · 박정수 · 박지만 · 오수정
- 13-R56 디지털교과서 · 스마트교육 연구학교 시계열효과 분석연구 (2014년 2월 발간예정) / 장근영 · 김형주
- 13-R57 학업중단 학생 교육 지원 (2014년 6월 발간예정) / 김영지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3-S01 인성교육실천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 학교규칙 및 학생자치활동을 중심으로 (1/28~29)
- 13-S02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 (1/7~8)
- 13-S03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동계연수 II (1/7~8)
- 13-S04 청소년 체험활동 및 문화활동 실태조사 설문지 제작 워크숍 (2/5)
- 13-S05 NYPI 기획세미나 - 자유학기제와 청소년체험활동 : 외국 사례와 방향성 모색 (2/21)
- 13-S06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 전문가 워크숍 (2/21)
- 13-S07 NYPI 기획세미나 방송과 청소년보호 (2/28)
- 13-S08 청소년 한부모의 기본권과 법제 (2/13)
- 13-S09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청소년의 행복을 묻는다 : 성장 환경과 발달 모습 (3/20)
- 13-S10 후기청소년세대 현황과 정책과제 세미나 (4/10)
- 13-S11 제2차 2012년도 고유과제 연구성과 발표회 - 청소년 역량 개발 방향성 모색 : 체험활동과 인프라 조성 - (4/18)
- 13-S12 탈북청소년 연구동향 및 사회통합정책에의 시사점 (4/9)
- 13-S13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워크숍 (4/29, 30)
- 13-S14 학교문화 개선(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연구 · 선도학교 컨설팅 위원 워크숍 (4/29)
- 13-S15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방향과 입법과제 (5/21)
- 13-S16 청소년의 스마트폰 이용 어떻게 볼 것인가(6/1)
- 13-S17 도전정신 중심의 청소년문화 조성 방안 세민 (5/22)
- 13-S18 대안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5/24)
- 13-S19 아동 ·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방안 (6/1)
- 13-S20 해외 이슈배경 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의 함의 (6/3)
- 13-S21 2013년 미래환경변화전망에 따른 청소년 정책의과제 I 콜로키움 자료집 : 미래에 대한 접근 (6/4)
- 13-S22 아동 · 청소년 인권지표 개선방안 모색 워크숍 (6/11)
- 13-S23 201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1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사건가 분석 (6/21)
- 13-S24 NYPI 개원 24주년 기념 국제세미나 (7/3)
- 13-S25 2013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 제2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잠재성장모형 분석 (7/14)
- 13-S26 자유학기제의 성공을 위한 청소년체험활동의 연계방안 (7/5)
- 13-S27 청소년상담의 이해와 상담기법 (8/5~7)
- 13-S28 입양제도 변화에 대응한 청소년 한부모 지역사회 지원체계 모색 (6/18)
- 13-S29 독일 · 프랑스 · 덴마크의 청소년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7/5)
- 13-S30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센터 관계자 간담회 (7/17, 19)
- 13-S31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 및 프로그램개발 연구 시범운영 모니터링 위원 간담회 (7/22)
- 13-S32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1 : 교육단계 (7/23)
- 13-S33 고졸비진학 청소년 관련 정책 평가와 논의 2 : 직훈단계 (7/24)

- 13-S34 2013년도 진로교사 심화연수 - 청소년상담 기법(C-4) (7/29~31)
- 13-S35 2013 진로진학상담교사 하계연수 (7/22~25)
- 13-S36 탈북청소년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탐색 (8/29)
- 13-S37 제2차 학교문화개선 연구선도학교 워크숍 (9/9~10)
- 13-S38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함양 지원체계 구축 전문가 워크숍 (9.13~14)
- 13-S39 아동·청소년 인권정책개발 워크숍 (9/27)
- 13-S40 영국·핀란드·스웨덴·일본의 청소년 활동정책 현황과 과제
- 13-S41 유소년 스포츠 국제교류를 통한 공공외교 강화의 현황과 정책과제 (10/15)
- 13-S42 STATA를 이용한 패널데이터 분석방법 (10/16)
- 13-S43 스티그마의 이해와 대응전략 (10/24)
- 13-S44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한 정책 (11/18)
- 13-S45 지역아동센터 표준 운영과정(초안) 시범운영 결과 검토 워크숍 (10/25)
- 13-S46 제3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11/14)
- 13-S47 한-중 국제세미나 (11/19)
- 13-S48 2013 아동·청소년 권리 학술대회 (11/27)
- 13-S49 청소년 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모색 (11/26)
- 13-S50 RCY 미래전략 및 발전방향 탐색 (11/29)
- 13-S51 자유학기제, 지역사회에서 길을 찾다 (11/28)
- 13-S52 2103년 아동청소년패널 제3차 콜로키움 자료집 데이터분석방법론 패널 데이터의 가중치 산출 및 활용 (12/17)
- 13-S53 아동·청소년 성보호 종합대책 연구Ⅱ : 아동·청소년 성매매 예방 및 피해지원 대책연구 정책협의회 및 전문가 워크숍 (12/16)
- 13-S54 청소년 역량지수 개발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12/13)

학 술 지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1호(통권 제68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2호(통권 제69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3호(통권 제70호)
- 「한국청소년연구」 제24권 제4호(통권 제71호)

청소년지도총서

- 청소년지도총서① 「청소년정책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② 「청소년수련활동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③ 「청소년지도방법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④ 「청소년문제론」, 교육과학사
- 청소년지도총서⑤ 「청소년교류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⑥ 「청소년환경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⑦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⑨ 「청소년상담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⑩ 「청소년복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⑪ 「청소년문화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⑫ 「청소년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⑬ 「청소년 자원봉사 및 동아리활동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⑭ 「청소년기관운영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⑮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연구방법론」, 교육과학사
 청소년지도총서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1 「좋은교사와 제자의 만남」,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2 「행복한 십대 만들기 10가지」,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3 「집나간 아이들 - 독일 청소년 중심」, 교육과학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고 04 「청소년학 용어집」, 교육과학사

기타 발간물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2호 : 부모 비동거 대학재학생의 주거유형 및 주거비부담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3호 : 스마트폰확산에 따른 청소년보호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4호 : 청소년참여활동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5호 : 청소년 문제행동 저연령화 실태 및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6호 : 탈북청소년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7호 : 청소년활동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8호 : 청소년 건강 표준모델 개발 방안 연구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49호 : 청소년이 제안하는 자유학기제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50호 : 인터넷게임중독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7호 :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8호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Ⅱ : 2012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9호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Ⅲ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0호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Ⅱ : 2012년 청소년 민주 시민역량 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1호 :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실태조사
 NYPI 청소년 통계브리프 12호 :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실태와 체험활동의 효과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집필진 ◆

- 김 영 인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 교수)
이 용 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교수)
정 익 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문대학원 · 교수)
천 정 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홍 나 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과 · 교수)

◆ 자문·협력진 ◆

- 강 현 철 (호서대학교 정보통계학과 · 교수)
구 정 화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교수)
권 오 현 (통계청 품질관리과 · 행정사무관)
김 민 (순천향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김 대 유 (서문여자중학교 · 교사)
김 동 학 (법무부 · 사무관)
김 미 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연구실 · 연구위원)
김 신 영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학과 · 교수)
김 윤 나 (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교수)
김 인 숙 (유엔아동권리협약 NPO연대 · 사무국장)
김 철 홍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과 · 과장)
김 태 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 형 욱 (경기도교육청 · 경기도학생인권옹호관)
류 은 숙 (인권연구소‘창’ · 연구 활동가)
모 상 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박 병 식 (동국대학교 법학과 · 교수)
양 태 정 (한국교육개발원 유 · 초 · 중등교육통계팀 · 팀장)

오 동 석 (아주대학교 법학부 · 교수)
오 승 근 (명지전문대학 청소년교육복지과 · 교수)
유 성 렬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이 대 성 (고양 백신고등학교 · 교사)
이 덕 난 (국회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이 명 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사무관)
이 배 근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 회장)
이 승 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이 영 선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 · 센터장)
이 지 혜 (한서초등학교 · 교사)
이 창 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경영기획실 · 실장)
이 채 식 (대구한의대학교 청소년교육상담학과 · 교수)
이 호 균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센터장)
임 성 택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 교수)
전 경 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전 명 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활동진흥본부 · 본부장)
정 건 희 (청소년자치연구소 · 소장)
정 병 수 (국제아동인권센터 · 사무국장)
정 영 숙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사무관)
조 금 주 (상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 교수)
조 선 화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전문위원)
조 주 은 (국회입회조사처 · 입법조사관)
지 수 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희망센터 · 실장)
최 기 상 (국립특수교육원 인권보호팀 · 연구사)
최 윤 진 (중앙대학교 청소년학과 · 교수)
허 종 렬 (서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 교수)
홍 인 기 (상탄초등학교 · 교사, 좋은교사운동 · 정책위원)
한 유 정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 팀장)

연구보고 13-R13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III

인 쇄 2013년 12월 24일

발 행 2013년 12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발행인 이 재 연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주)계문사 전화 02)725-5216 대표 류윤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아카이브팀)

ISBN 978-89-7816-781-9 94330

978-89-7816-769-7 (세트)